발간사

소년법의 이념은 소년의 요보호성에 따라 개별처우를 실현하는 것으로, 비행소년의 개별처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개인적 특성과 주변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류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는 매년 10만명 내외의 소년범죄자가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그리고 소년범죄자 중 재범자의 비율이 거의 40%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서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소년범 개개인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각종 조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조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소년범에 대한 조사는 경찰, 검찰, 법원 및 교정단계에서 제각기 수행하고 있어 절차의 중복 및 지연, 전문성 및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년의 요보호성에 따른 개별처우를 통해 소년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소년범의 특성에 적합한 조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요구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의 중복 및 지연으로 인한 효율성 문제 및 전문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소년조사제도의 개선방안 및 소년조사 담당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소년범죄자의 각종 조사의 의뢰주체인 소년범 담당 판·검사와 조사주체인 보호관찰소와 분류심사원 및 법원의 소년조사관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운영실태 및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각종 소년조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연구의 결과가 효율적인 소년조사제도의 운영에 도움되어 소년법의 요보호성에 따른 개별처우라는 소년법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법무부 보호관찰과와 소년과의 관계자 여러분,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에 성실히 응해주신 소년담당 판·검사여러분, 보호관찰소, 분류심사원 및 법원의 조사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연구를 담당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홍영오 연구위원과 경기대학교 황태정 교수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1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 일수

국문요약

1. 연구목적

매년 10만명 내외의 소년범이 발생하고 소년범죄자의 비율이 거의 40%에 이르는 상황에서 소년범죄자에 대한 처우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시급한 실정으로서, 소년의 요보호성에 따른 개별처우를 통해 소년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소년범의 특성에 적합한 조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의 중복 및 지연으로 인한 효율성 문제 및 전문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소년조사제도의 개선방안 및 소년조사 담당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크게 문헌연구, 공식통계분석, 심층면접과 설문조사 및 검사 결정전조사서 기록조사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하여 소년법과 소년조사제도에 대한 의의, 연혁 및 기능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였고, 공식통계분석을 통하여 소년범의 실태 및 추세, 처리현황 및 각종 조사의 수행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소년범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는 소년담당 검사와 판사, 조사를 수행하는 보호관찰관, 분류심사관, 법원의 소년조사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각종 소년조사제도의 시행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검사 결정전조사서에 대한 기록조사 분석을 통해 조사관의 의견제시시 처분 결정요인을 알아보았다.

3. 연구결과

가. 소년범죄의 발생추세

최근 10년 동안 전체 소년범은 2000년 143,643명을 기록한 이후 2005년 67,478명에 이르기까지 계속 감소하였다가 2006년 69,211명, 2007년 88,104명, 2008년 134,992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2009년에는 113,022명으로 전년대비 1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8년 6월 22일 시행된 개정소년법에 따라 소년범의 나이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변경되어 연령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감소된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19세(19,429명)를 포함할 경우에는 132,451명으로 2008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89,776명으로 2009년에 비해 20.6%가 감소하였다. 2010년에 19세(18,570명)를 포함할 경우에도 108,346명으로 나타나, 2009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년범은 2005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이후에는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되었다. 19세를 포함하여 계산했을 경우에도 2008년 이후에는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인구 10만명당 범죄자수를 살펴 보면, 2009년에는 14세 미만 9.4명, 14~15세 2,293.8명, 16~17세 2,552.7명, 18세 2,189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14세 미만 5.8명, 14~15세 1,777.4명, 16~17세 2,533.3명, 18세 2,123.1명으로 나타나 16~17세에 소년인구 10만명당 범죄자 수가 가장 많았고, 전년에 비해서는 14세 미만과 14~15세의 인구비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자 중 전과가 없는 범죄자의 비율은 2000년 64.5%에서 2010년 61.7%에 이르기까지 60%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에는 다소 감소추세에 있고, 전과자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범 이상자의 비율이 2008년 7.1%에서 2009년 8.8%, 2010년 10.7%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이후의 소년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리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0년에는 기소 30.7%, 불기소 50.4%, 소년부송치 17%로 불기소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기소, 소년부 송치의 순이었다. 하지만 2005년 기소 16.8%, 불기소 60%, 소년부 송치 20.1%로서 처음으로 소년부 송치의 비율이 기소 비율보다 높았고, 그 이후에는 현재까지 이 순서가 이어지고 있다. 2010년에는 기소 6.1%, 불기소 58.7%, 소년부 송치 33.6%로 나타나 기소율이 2000년에 비해 1/5수준으로 낮아졌고, 소년부 송치율은 거의 배 이상 높아졌다.

2000년 이후의 소년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리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0년에는 기소 30.7%, 불기소 50.4%, 소년부송치 17%로 불기소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기소, 소년부 송치의 순이었다. 하지만 2005년 기소 16.8%, 불기소 60%, 소년부 송치 20.1%로서 처음으로 소년부 송치의 비율이 기소 비율보다 높았고, 그 이후에는 현재까지 이 순서가 이어지고 있다. 2010년에는 기소 6.1%, 불기소 58.7%, 소년부 송치 33.6%로 나타나 기소율이 2000년에 비해 1/5수준으로 낮아졌고, 소년부 송치율은 거의 배 이상 높아졌다.

나. 소년범에 대한 조사현황

보호관찰관에 의한 소년범만의 조사현황을 살펴보면, 법원의 결정전조사는 2009년 3.274건에서 2010년 5,758건, 2011년 8월 현재 5,270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검사 결정전조사 역시 2009년 3,670건에서 2010년 4,524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판결전조사는 2009년 1,178건에서 2010년 701건, 2011년 8월 현재 498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판결전조사의 감소는 법원에서 법원조사관에게 의뢰하면서 보호관찰관에게 의뢰하는 조사건수를 줄였기 때문이다.

보호관찰관에 의한 소년범만의 조사현황을 살펴보면, 법원의 결정전조사는 2009년 3.274건에서 2010년 5,758건, 2011년 8월 현재 5,270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검사 결정전조사 역시 2009년 3,670건에서 2010년 4,524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판결전조사는 2009년 1,178건에서 2010년 701건, 2011년 8월 현재 498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판결전조사의 감소는 법원에서 법원조사관에게 의뢰하면서 보호관찰관에게 의뢰하는 조사건수를 줄였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 소년조사관의 조사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0년에는 총 1,128건 중 일반조사가 34.3%로 가장 많았고, 교육 33%, 청소년법정이 12.5%였다. 2011

년 10월 27일 현재 총 1,144건 중 일반조사가 40%로 가장 많았고, 교육 27.9%, 청소년법정 12.9%였다.

다. 조사의뢰자와 조사관 대상 설문/심층면접 및 기록조사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관 204명 전체를 대상으로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 전반에 대해서 조사관들은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가 존재한다'는 사항이 문제 있다는 인식이 4점 만점에 3.34점으로 제시된 19개의 사항 중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는 '조사 전문 인력의 부족'이 3.29점,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이 3.27점,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 담당'이 2.98점, '조사담당 직원에 대한 재교육 및 교육시간 부족'이 2.96점으로 문제 사항 상위 5개에 포함되었다.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가 존재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문제있음이 50.0% 약간 문제있는 편임이 38.2%로 88.2%가 문제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에 대해서는 매우 문제있음이 42.2%, 약간 문제있는 편임이 44.1%로 86.3%가 문제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개선과제 1순위로 응답자들의 34.3%가 '조사 전문 인력 부족'이라고 답했으며, 16.7%는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이라고, 11.8%는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 존재'라고 응답하였다. 1+2+3순위에서는 응답자들의 55.4%는 '조사 전문 인력의 부족'이라고 답했으며, 47.1%는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이라고, 37.3%는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 존재'라고, 28.9%는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 담당'과 '조사담당 직원에 대한 재교육 및 교육시간 부족'이라고, 19.6%는 '중요하지 않은 사건의 의뢰(조사의뢰 실적 때문)'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조사를 의뢰하는 판사와 검사들은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서, '조사에 따른 개별처우 프로그램의 부족'을 4점 만점에 2.90점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았고, '소년범 전문 조사관 부재' 2.78점, '조사 전문 인력의 부족'은 2.76점,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

가의 조사 담당' 등 조사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높았다. 조사에 따른 개별 처우 프로그램의 부족에서는 매우 문제있음이 15.7%, 약간 문제있는 편임이 51.5%로 67.8%가 문제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 1순위에서는 조사전문인력의 부족이 22.2%로 가장 높고, 소년범 전문 조사관 부재는 15.9%, 범죄유형별 표준화된 위험성 평가도구 부재는 14.3%, 조사에 따른 개별처우 프로그램의 부족은 12.7%로 나타났다. 1+2+3순위의 복수응답에서는 조사에 따른 개별처우 프로그램의 부족이 42.9%로 가장 높았고, 소년범 전문 조사관 부재는 34.9%, 범죄유형별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 부재는 33.3%로 높았다.

조사자의견의 결정요인에 대한 검사 결정전조사서 기록조사 결과, 검사 결정전조사에서 조사자의 최종의견, 즉 기소유예인지 소년부송치인지를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전계획여부, 범행동기의 유흥미·용돈마련여부, 범행동기의 우발·충동여부, 동종전과건수, 대인범죄전력여부, 피해합의여부, 친부모동거여부, 모 애착정도, 음주여부, 학력, 가족의 보호능력이었다. 즉 범행 관련하여 사전계획여부, 범행동기가 유흥비·용돈마련인지, 우발·충동적으로 한 것인지가 중요하며, 범죄전력과 피해회복 측면에서는 동종전과 수, 대인범죄 전력, 피해합의 여부가 중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해서는 친부모와 동거여부, 모 애착정도가 중요하며, 학업과 관련하여서는 학력이 중요하며, 생활행태에서 음주여부, 그리고 변화의지 및 지지환경에서는 가족의 보호능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오 등(2009)에서 밝힌 결정전조사에서 검사의 처분 결정 즉 기소유예와 소년부송치에 영향을 끼친 요인은 성적인 요소, 과거 처분유형의 수, 동종전과 수, 흡연여부, 보호자의 보호능력이었다. 이에 비해 판사들의 판결결과(법무부, 2006)는 연령, 직업, 범죄경력, 동종전과, 최초 범죄연령, 보호관찰 성적, 부모관계, 부 학력, 부 직업, 가정 월수입, 보호자 보호능력, 가출횟수, 최초 가출연령, 이사 횟수, 최종학력, 중퇴경험, 학교성적, 행동발달 상황, 출결상황, 교우관계, 죄명, 범행동기, 범죄계획성, 피해회복 여부, 공범유무 등이 관련있었다. 이에 비해, 성별, 심신경함여부, 구조적 결손사유(부모의 사망, 이혼 등), 기능적 결손사유, 범행 가담정도, 범행시 음주여부 등은 판사들의 판결결과와 관련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소년조사제도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년조사제도의 중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조사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되, 전문조사관이 있는 검찰단계와 법원(재판)단계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가. 조사의 중복문제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년에 대해서는 수사·재판·교정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조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한 조사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였다. 크게 조사기관간 정보공유·협력 강화, 조사방식 및 조사서 양식의 개선, 조사대상의 범위, 조사기관별 역할 조정, 조사주체의 중복문제 해소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1) 조사기관간 정보공유·협력 강화

소년조사제도에 있어서 조사절차의 중복과 정보공유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각 조사기관간의 정보 및 자료수집에 대한 상호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의 YOIS(Youth Offending Informaiton System)라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이 우리나라도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시행중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의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Korean Integrated Criminal System)이 시행중이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단, KICS는 주로 수사·기소·재판관련 전자문서공유 위주의 시스템으로서 소년사건처리에 필요한 자질이나 환경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보는 공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이를 다루거나 영국의 YOIS와 같이 소년사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한국판 소년사범정보시스템(Korean Youth Offending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2) 조사방식 및 조사서 양식의 개선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로는 검사 결정전조사나 판결전조사에서 조사내용의 중요성이나 조사자의견 제안시 비중을 두는 요인 그리고 재범위험성에 대한 의견제안시 비중을 두는 요인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은 각 조사유형별로 조사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여 조사서 양식을 동일하게 통일하되, 각 조사유형별로 필요한 내용만을 추가로 첨가하고, 조사기간간 공백기에 대한 생활 및 환경조사만을 추가로 조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각 조사유형별로 조사서 양식을 통일하되 검사 결정전조사서나 판결전조사서의 내용에 분류심사시의 행동관찰 등을 추가하는 방법이다.

3) 조사대상의 범위

검찰에서의 소년범죄자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 형법범은 70,045명이었는데, 보호관찰소관에 의해 2010년에 검사 결정전조사를 받은 인원은 4,524명(6.5%)에 불과하였고,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처분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0년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받은 인원은 45,090명이었는데 분류심사 및 상담조사를 받은 인원은 11,024명으로 24.4%에 불과하였다. 대부분의 소년들이 소년보호이념에 따라 개별처우를 받기 위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기초자료없이 처분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대상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조사를 통해 소년에게 얼마나 다양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각 처분유형에 적합한 소년의 특성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될 것이다. 즉 개별처우를 위해 소년에게 적합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역으로 각각의 처분에 적합한 소년의 특성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검사 결정전조사, 법원 결정전조사, 분류심사 및 상담조사와 같이 조사결과에 따라 다양하게 처분할 수 있는 조사에 그렇다. 예를 들어 검사 결정전조사에서는 단순히 기소, 기소유예, 소년부송치가 아니라 각 처분결정에 따라 다양한 다이버전의 대안이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소년법의 취지에 맞는 개별처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최근 개정된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의 유형이 보다 더 다양해 진 상황에서 다음의 조사기관별 역할 조정에서 설명하겠지만 개정 소년법에 부응하여 화해권고제도를 비롯하여 청소년참여법정, 심리상담조사명령, 처분전 훈육 등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보호처분 유형과 다양한 제도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조사기관별 역할 조정

조사의 중복과 관련하여 기관 실무자에 따라서는 경찰·검찰의 수사단계와 법원단계의 조사관 조사, 분류심사, 판결전조사가 성격과 절차, 방법이 다른 각각 고유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관점에서 절차의 중복이라고만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조사기관별 역할 조정을 통해 조사의 중복 또는 기능의 중복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조사의 내용상에 크게 차이가 없는 검사 결정전조사, 판결전조사, 법원 결정전조사를 행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타 조사관들은 조사가 불가능한 위탁된 소년의 자질심사만을 위해 분류심사와 상담조사만을 전담하고, 법원의 형사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조사관은 소년부에서 보호소년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앞에서도 기술했다시피, 검찰의 처리결과 소년부 송치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개정 소년법에 의해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매우 다양해 진 상황에서 소년법의 이념에 부응하여 가장 적절한 개별처우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조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가정법원에서 이들을 조사하는 소년조사관은 전국적으로 29명 그도 대부분 겸임 또는 겸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법원조사관이 이들과 함께 보호소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가정법원에는 소년범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참여법정, 심리상담조사명령, 처분전 훈육 등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여 다양한 조사가 필요가 실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호관찰 이행사항 점검이 필요한 보호관찰처분 경험이 있는 소년에 대한 법원 결정전조사는 보호관찰관에게 조사의뢰하고 나머지는 소년조사관을 통해 조사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다.

5) 조사주체의 중복문제 해소

중복조사의 문제는 실무적으로는 양형자료조사의 영역에서, 특히 보호관찰관에 의한 판결전 조사와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자료조사의 중첩 문제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양형자료조사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을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소년조사의 영역에서는 조사의 창구가 어느 쪽으로 단일화되는 것이 바람직할지를 제안하였다.

양형자료에 대한 조사의 담당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히 소송의 구조나 법체계의 차이 등을 이유로 기계적으로 구분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누가 양형인자의 조사에 있어서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업무의 독자성을 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를 통하여 적절한 양형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 할 것이다. 또한 어떠한 제도의 도입 여부와 같은 입법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는 항상 제도의 이상과 함께 사법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가치가 더불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법체계 내에서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보호관찰 등 피고인의 처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관찰관이 양형자료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제안과 함께 법원조사관에 대해서는 소년부송치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개정 소년법에 의해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매우 다양해지고, 가정법원에서는 이에 부응하여 소년범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참여법정, 심리상담조사명령, 처분전 훈육 등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여 다양한 조사가 필요가 실정이기도 하므로, 소년조사관을 포함한 법원조사관들은 보호소년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나. 조사관 및 조사의 전문성 향상

본 연구의 설문결과, 보호관찰관, 분류심사원, 소년조사관들은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가 존재한다'는 사항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고, 다음으로는 '조사 전문 인력의 부족',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 담당',

‘조사담당 직원에 대한 재교육 및 교육시간 부족’ 등이 문제점의 상위 5개에 포함되었다. 또한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개선과제 1순위로 응답자들의 34.3%는 조사 전문 인력 부족이라고 답했으며, 16.7%는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이라고, 11.8%는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 존재라고 응답하였다. 1+2+3순위에서는 응답자들의 55.4%는 조사 전문 인력의 부족이라고 답했으며, 47.1%는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이라고, 37.3%는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 존재라고, 28.9%는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 담당과 조사담당 직원에 대한 재교육 및 교육시간 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1) 조사인력의 전문화

조사관의 전문화와 관련하여 보호관찰 직원의 인력부족은 기본적으로 직원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한 배치를 어렵게 만들게 되므로 과중한 업무량으로 조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새로운 조사제도의 신설 등으로 보호관찰소관뿐만 아니라 분류심사관 및 법원의 소년조사관들의 조사업무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직원의 충원없이 각종 조사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인력의 충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최근 형기 후 보호관찰제의 도입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조사업무만을 담당하는 인력을 충원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소년보호이념에 따른 개별처우를 달성하기 위한 조사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조사인력의 충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형사사법절차상에서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잘 운영되어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성인과 소년의 특성은 다르기 때문에 소년 전문 조사관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인력은 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법무부에서 조사서의 신뢰도를 제고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조사관인정제와 관련하여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조사관인정제에서 나아가 보다 전문적으로 ‘소년범 전문 조사관인정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년의 심리와 특성, 소년의 비행 및 범죄 특성, 소년의 재범관련 특성 및 요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

식 및 식견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 또한 조사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조사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이 아닌 조사업무 전담 인원을 임용·배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심리학, 형사정책학, 범죄학, 사회학 등이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보호관찰관 중 양형조사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은 보직을 순환하지 않고 전문성을 쌓도록 하고 있다.

2) 조사관 교육 확대를 통한 전문성 제고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에도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의 교육과정만으로는 조사담당 보호관찰 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심지어 조사관과의 심층면접에서 조사관들은 과도한 업무로 인해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또한 법무연수원이나 법원연수원이 아닌 외부의 전문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음으로 인해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심지어 개인적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받을 의향이 있을 때조차도 조사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부담으로 인해 교육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관의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대학이나 전문 상담기관 또는 워크숍등을 통해 각종 심리검사 등 조사관련 과목에 대한 교육 등 지속적인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원이나 전문상담기관의 각종 교육을 수강하거나 워크숍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문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전문 상담기관과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현재 각종 조사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심리검사 및 점차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각종 재범위험성평가의 요강과 지침서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된다.

3) 범죄유형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 조사의뢰자인 판·검사의 57.2%와 조사관의 59.3%는 '범죄유형별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 부재'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의뢰자의 14.3%와 조사관의 14.8%는 소년조사제도에서 가장 우

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로 '범죄유형별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 부재'를 제1순위로 선택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재범위험성과 조사자의견 제안시에 비중을 두는 요인들에 대한 결과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검사 결정전조사에서 조사자의 최종의견, 즉 기소유예인지 소년부송치인지를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법무부(2006)의 판결전조사 조사자의견 관련 요인 및 조윤오(2010) 분류심사원의 최종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을 고려해 볼 때 조사관의 의견 및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개인의 경험에 많이 의존하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조사관의 의견 및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가 시급히 개발되어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재범위험성이 평가되고 조사자의견에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국내에서 위험성평가도구의 개발 및 시행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로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범요인을 밝히기 위한 재범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재범연구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재범연구를 위해서는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어야하나, 현재는 개인의 정보보호에 대한 강조가 너무 강하여 재범연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재범연구에서 학자들의 관심은 범죄자 개개인의 정보에 관심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재범여부만이 관심있을 뿐이므로 학술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재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경찰청이나 검찰의 제한된 장소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거나, 더 나아가 경찰청이나 검찰청 내의 제한된 컴퓨터만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소년의 요보호성에 따른 개별처우를 통해 소년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소년범의 특성에 적합한 조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요구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의 중복 및 지연으로 인한 효율성 문제 및

전문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소년조사제도의 개선방안 및 소년조사 담당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년조사제도에 대해 현재 시행중인 각종 조사의 운영실태분석과 운영당사자인 검사와 판사 및 조사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각종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이 더욱 다양해졌고, 최근 소년범에 대한 처우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이념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소년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및 화해권고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즉 피해자의 요구를 고려하고, 가해자를 지역사회에 재통합시키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당사자 간의 자율적 갈등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소년보호재판의 회복적 사법의 실천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부응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회복적 사법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 절차인 화해권고제도를 비롯하여 청소년참여법정, 심리상담조사명령, 처분전 훈육 등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등 보호소년에 대한 처분 유형은 매우 다양해 졌으므로 이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재판단계에서 소년조사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록조사 연구에서 조사방법이나 조사내용의 차이로 인해 검사 결정전조사, 판결전조사, 분류심사에 대한 조사자의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한가지 틀에서 비교하지 못했다. 따라서 한가지 틀로 각조조사서에 대한 기록조사를 통해 조사자의 의견제시 결정요인을 밝힐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고, 검사와 판사 등의 처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도 각각의 조사서에 대한 분석으로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보다 기본적으로 조사자의 의견제시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소년범의 재범요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범죄경력조회가 쉽지 않아 소년범에 대한 재범예측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도 조사관들의 재범위험성평가에서 비중을 두는 요인과 조사자의견제시에서 비중을 두는 요인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조사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담당자뿐만 아니라 조사의뢰자인 검사나 판사도 재범위험성평가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범죄유형별로 소년범의 재범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가 개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홍 영 오

01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범죄분석」에 따르면, 2009년 113,022명, 2010년 89,776명의 소년범이 발생하여 소년범죄자의 수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매년 10만명 내외의 소년범이 발생하고 있다. 소년형법범의 소년인구 10만명당 소년범죄자수 역시 2010년은 1,180명으로 2009년의 1,358명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소년범죄자 중 재범자의 비율은 거의 40%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써, 2010년에는 38.3%로 2009년의 35.7%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매년 10만명내외의 소년범이 발생하고 소년범죄자의 비율이 거의 40%에 이르는 상황에서 소년범죄자에 대한 처우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시급한 실정이다.

소년법의 이념은 소년의 요보호성에 따라 개별처우를 실현하는 것으로, 비행소년의 개별처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개인적 특성과 주변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류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이는 소년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이 40%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각국에서도 소년범 개개인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각종 조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조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소년범에 대한 조사는 경찰, 검찰, 법원 및 교정단계에서 제각기 수행하고 있어 절차의 중복 및 지연, 전문성 및 효율성에 대

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형사사법단계별 각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법원 등에서 검사의 결정전조사, 법원의 결정전조사, 판결전조사, 환경조사, 분류심사, 상담조사 등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필요성의 충족여부 이외에 중복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며, 한정된 조사인력으로 조사가 지연되는 등 중복과 지연의 문제로 인해 효율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검찰단계에서 검사 결정전조사를 받은 이후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은 경우나 형사법원에서 판결전조사를 받은 이후 소년부로 이송되는 경우에 소년부에서는 법원 결정전조사를 또다시 위탁할 여지가 있다.

검사의 중복성 이외에도 최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청구전조사 및 성인의 판결전조사 등 새로운 조사의 도입 및 각종 조사에 대해서도 예전의 형식적 의뢰에 비해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조사의뢰가 많아지는 등 기관에 따라서는 조사담당자의 조사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조사인력의 충원 및 전문성 확보가 각종 형사정책제도의 성패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나 전문인력 확보방안 및 조사담당자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소년의 요보호성에 따른 개별처우를 통해 소년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소년범의 특성에 적합한 조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요구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의 중복 및 지연으로 인한 효율성 문제 및 전문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소년조사제도의 개선방안 및 소년조사 담당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년조사제도에 대해 현재 시행중인 각종 조사의 운영실태분석과 운영당사자인 검사와 판사 및 조사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각종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크게 문헌연구, 공식통계분석, 심층면접과 설문조사 및 검사 결정전조사서 기록조사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하여 소년법과 소년조사제도에 대한 의의, 연혁 및 기능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였고, 공식통계분석을 통하여 소년범의 실태 및 추세, 처리현황 및 각종 조사의 수행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소년범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는 소년담당 검사와 판사, 조사를 수행하는 보호관찰관, 분류심사관, 법원의 소년조사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각종 소년조사제도의 시행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검사 결정전조사서에 대한 기록조사 분석을 통해 조사관의 의견제시시 처분 결정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분류심사서의 처분결정요인, 판결전조사의 처분결정요인과 비교하였다.

1.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소년법과 소년조사제도의 의의와 연혁 및 운영현황과 조사인력에 대한 내용이고 둘째, 외국의 소년조사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소년법과 소년조사제도의 의의와 연혁 및 운영현황에 대한 내용은 소년법의 의의와 이념, 소년조사제도의 의의와 이념 및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다. 소년조사제도의 조사인력에 대해서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조사인력의 자격조건과 교육현황을 살펴보았다.

외국의 소년조사제도에 대해서는 일본, 독일, 영국, 미국의 전반적인 소년조사제도를 개관하고, 구체적으로 형사사법단계별 소년조사제도 및 조사담당자 채용조건과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양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2. 공식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한 「범죄백서」와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범죄분석」을 중심으로 공식통계를 통해 소년조사제도의 운영실태 및 추세를 분석하였다. 소년조사제도의 현황에 앞서 소년범의 인원 및 전체 범죄인원 중 점유비율, 연령별 소년의 형법범 인원 및 소년인구 10만명당 범죄자 수 등 소년범의 현황과 추세를 분석하였다.

다음은 소년범을 대상으로 한 각종 조사제도의 연도별, 조사주체별 조사현황을 분석하였다. 보호관찰관의 검사 결정전조사, 법원 결정전조사 및 판결전조사의 조사수행 현황, 그리고 분류심사관의 분류심사, 상담조사, 검사 결정전조사 수행현황, 마지막으로 법원 소년조사관의 소년범 대상 조사수행현황을 분석하였다.

3.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소년조사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를 의뢰하는 판사와 검사, 조사를 수행하는 보호관찰관, 분류심사관 및 법원의 소년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조사를 의뢰하는 검사와 판사 중 소년 담당 검사 및 판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은 2011년 10월 5명의 검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직급은 평검사에서 부장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소년범 담당기간은 2년에서 10년까지 다양하였다(〈표 1-1〉참조).

표 1-1 심층면접 판·검사의 인적사항

사례	나이	성별	직급	소년담당근무기간	소속
1	45	남	부장검사	4년	지청
2	35	여	검사	1년	지청
3	40	남	부부장검사	7개월	검찰청
4	41	남	검사	8개월	지청
5	30	여	검사	3년	지청
6	48	여	부장판사	3년 8개월	가정법원
7	42	남	판사	8개월	지방법원
8	38	여	판사	3년	가정법원
9	40	여	판사	1년 8개월	가정법원
10	47	남	부장판사	9개월	지방법원
11	35	남	판사	8개월	지원
12	43	여	부장판사	8개월	지방법원

검사를 대상으로 한 면접은 각 검사의 사무실에서 40분 정도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의 내용은 크게 소년범의 처분 결정과 관련한 내용, 소년범의 요보호성 관련 내용, 검사의 결정전조사제도와 관련 내용이었다. 소년부판사 4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은 각 판사의 사무실에서 40분 정도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의 내용은 크게 전반적인 소년조사제와 관련한 내용, 소년범의 요보호성 관련 내용, 법원의 결정전조사제도, 분류심사, 상담조사, 법원의 소년조사관을 통한 소년보호사건 조사, 심리상담조사, 분류심사, 화해권고를 위한 조사 등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년판사 3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은 각 판사의 사무실에서 40분 정도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의 내용은 크게 전반적인 소년조사제와 관련한 내용, 소년범의 요보호성 관련 내용, 판결전조사제도 등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다음은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은 보호관찰관, 분류심사관 및 법원의 소년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표 1-2〉 참조), 이들 중 보호관찰관을 대상으로 한 면접은 각 대상자의 사무실에서 1시간 정도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의 내용은 크게 소년조사제도 전반적인 내용, 소년범의 요보호성 관련 내용,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판결전조사서, 법원의 결정전조사서 의뢰 관련 내용과 작성 관련 내용 등이었다. 분류심사관을 대상으로 한 면접은 각 대상자의 사무실에서 50분 정도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의 내용은 크게 소년조사제도 전반적인 내용, 소년범의 요보호성 관련 내용,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분류심사서, 상담조사서 의뢰 관련 내용과 작성 관련 내용 등이었다. 법원의 소년조사관을 대상으로 한 면접은 각 대상자의 사무실에서 50분 정도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의 내용은 크게 소년조사제도 전반적인 내용, 소년범의 요보호성 관련 내용, 소년보호사건 조사서 의뢰 관련 내용과 작성 관련 내용 등이었다.

표 1-2 심층면접 조사관의 인적사항

사례	나이	성별	담당부서	조사담당근무기간	소속
1	47	남	조사과	5년	보호관찰소
2	30	여	조사과	5년 10개월	보호관찰소
3	35	여	행정지원과	1년 10개월	보호관찰소
4	43	남	조사과	3년	보호관찰지소
5	37	남	보호관찰과	5년	보호관찰지소

사례	나이	성별	담당부서	조사담당근무기간	소속
6	47	여	관찰과	1년 10개월	대안교육센터
7	40	남	교무과	2년 3개월	소년원
8	49	여	교무과	1년 3개월	소년원
9	40	남	교무과	9개월	분류심사원
10	32	남	관찰과	3개월	대안교육센터
11	40	여	조사관실	9년 4개월	가정법원
12	37	여	소년	5년 3개월	가정법원
13	35	여	사무과	1년 2개월	가정지원

다음으로 설문조사는 심층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소년조사 유형별로 운영 실태를 전국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검찰청, 가정법원, 형사법원, 보호관찰소, 분류심사원, 소년원 및 대안교육센터에서 각각 2명 또는 3명의 소년담당 판·검사와 조사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즉 검사 대상 설문지는 전국의 57개 검찰청 또는 지청에 2명의 소년담당 검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조사관 대상 설문지는 전국의 54개 보호관찰소와 10개의 소년보호기관 및 가정법원에 2명 또는 3명씩을 대상으로 대면면접 또는 설문지 배부를 통해 이루어졌다.

검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홍영오 등(2009)의 연구에 사용되었던 설문문항과 새롭게 추가된 문항을 이용하였으며, 설문조사의 내용은 크게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과 검사 결정전조사제도와 관련 내용이었다.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은 한달동안 소년사건 담당 건수, 소년범 조사의뢰 건수, 소년조사제도 전반의 문제점(20가지 항목에 대한 문제정도), 소년조사제도의 우선적 개선상항에 등이다. 검사의 결정전조사제도와 관련한 내용은 결정전조사 의뢰 건수, 결정전조사 의뢰시 주 고려 사항 및 주된 사건, 결정전조사서의 필요성 및 활용정도, 조사관의 전문성, 결정전조사서의 완성도 및 작성양식의 만족도, 검사 결정전조사제도의 문제점, 경찰단계의 환경조사서 첨부여부 등이다(〈표 1-3〉 및 〈부록〉 참조).

표 1-3 소년담당 검사 대상 설문지의 주요 내용

영 역	세부 내용
1) 소년조사제도 전반	· 한달동안 소년사건 담당 건수 · 소년범 조사의뢰 건수 · 소년조사제도 전반의 문제점 · 소년조사제도의 우선적 개선사항
2) 검사 결정전조사제도	· 검사 결정전조사 의뢰 건수(의뢰않는 이유) · 검사 결정전조사 의뢰시 주 고려 사항 및 주된 사건 · 검사 결정전조사의 필요성 · 조사관의 전문성 · 검사 결정전조사서의 활용정도 및 주된 활용내용 · 검사 결정전조사서의 내용별 중요성 · 검사 결정전조사서의 완성도 및 작성양식 만족도 · 검사 결정전조사제도의 문제점 · 경찰단계의 환경조사서 첨부여부
3) 인적 사항	· 성별, 근무연수, 소년범 담당 기간 · 자료검토시간, 연령

소년부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내용은 크게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과 법원 결정전조사제도 및 분류심사제도와 관련 내용으로서 세부내용은 검사의 설문지와 조사유형만 다를 뿐 내용은 같다(〈표 1-4〉 및 〈부록〉 참조). 형사부 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내용은 크게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과 판결전조사제도와 관련 내용이었다(〈부록〉 참조).

표 1-4 소년부판사 대상 설문지의 주요 내용

영 역	세부 내용
1) 소년조사제도 전반	· 한달동안 소년사건 담당 건수 · 소년범 조사의뢰 건수 · 소년조사제도 전반의 문제점 · 소년조사제도의 우선적 개선사항
2) 법원 결정전조사제도	· 법원 결정전조사 의뢰 건수(의뢰않는 이유) · 법원 결정전조사 의뢰시 주 고려 사항 및 주된 사건 · 법원 결정전조사의 필요성 · 조사관의 전문성 · 법원 결정전조사서의 활용정도 및 주된 활용내용 · 법원 결정전조사서의 내용별 중요성 · 법원 결정전조사서의 완성도 및 작성양식 만족도 · 법원 결정전조사제도의 문제점 · 검사 결정전조사서 첨부여부
3) 분류심사제도 (상담조사제도도 조사명만 다를 뿐 내용은 같음)	· 분류심사 의뢰 건수(의뢰않는 이유) · 분류심사 의뢰시 주 고려 사항 및 주된 사건 · 법원 결정전조사의 필요성 · 조사관의 전문성

영 역	세부 내용
	· 분류심사서의 활용정도 및 주된 활용내용 · 분류심사서의 내용별 중요성 · 분류심사서의 완성도 및 작성양식 만족도 · 분류심사제도의 문제점 · 검사 결정전조사서 첨부여부
4) 인적 사항	· 성별, 근무연수, 소년범 담당 기간 · 자료검토시간, 연령

* 형사소년담당 판사의 설문지는 소년조사제도 전반과 판결전조사제도에 대해서만 질문함.

조사 담당 보호관찰관, 분류심사관 및 심사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내용 역시 크게 소년범의 처분 결정과 관련한 내용과 각종 조사제도와 관련 내용이었다. 먼저 보호관찰관을 대상으로는 크게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과 각종 조사제도와 관련 내용이었다.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은 한달 동안 조사유형별 조사서 작성건수, 조사유형별 조사서 작성시간, 소년조사제도 전반의 문제점(20가지 항목에 대한 문제정도), 소년조사제도의 우선적 개선상항에 등이다. 각종 조사제도에 대한 내용은 먼저 검사 결정전조사제도와 관련한 내용은 검사 결정전조사 작성 건수, 검사 결정전조사를 의뢰받은 주된 사건, 검사 결정전조사 의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인식, 검사 결정전조사서의 필요성 및 활용정도, 조사관의 전문성, 조사자 의견제안시 비중을 두는 요인과 이유, 재범위험성 의견제안시 주된 요인과 이유, 조사자 의견제안시 유불리 요인, 검사 결정전조사서 작성양식의 만족도, 검사 결정전조사서 작성시의 가장 큰 어려움, 검사 결정전조사제도의 우선적 개선사항, 검사 결정전조사가 유용한 사건유형과 조사대상, 경찰단계의 환경조사서 첨부여부 등이다. 이 외에 판결전조사제도와 법원 결정전조사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알아보았다(〈표 1-5〉 및 〈부록〉 참조). 분류심사관을 한 설문내용도 조사제도 유형만 다를 뿐(〈부록〉 참조), 크게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과 검사 결정전조사제도, 분류심사제도, 상담조사제도와 관련 내용이고, 법원의 소년조사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내용도 조사제도 유형만 다를 뿐(〈부록〉 참조) 보호관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기본 내용은 같다.

표 1-5 보호관찰관 대상 설문지의 주요 내용

영 역	세부 내용
1) 소년범의 처분 결정	· 검사의 처분 결정시의 참고자료 · 소년범의 처분 결정시 검사가 비중두는 요인 · 검사가 기소 대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요인 · 검사가 기소유예 대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는 요인
2) 검사의 결정전조사제도	· 결정전조사 조사 건수 · 결정전조사 의뢰시 검사의 주 고려 사항 및 주된 사건 · 결정전조사 의뢰시 검사가 제외하는 사건 부류 · 신병결정에 필요한 경우의 의뢰 여부 · 선도조건의 내용결정 관련 의뢰 여부 ·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활용정도 · 조사자 의견제안시 가장 비중두는 요인 · 재범위험성 의견제안시 가장 비중두는 요인 · 조자사 의견제안시 소년에게 유불리한 요인 · 소년의 태도, 부모의 태도, 환경요인 고려 정도 · 조사관의 전문성 · 결정전조사서 작성시의 어려움 · 결정전조사제도의 문제점
3) 인적 사항	· 성별, 연령, 조사담당 근무연수 · 담당 총 조사건수, 결정전조사건수, 조사서 작성시간

* 판결전조사와 법원결정전조사도 조사유형만 다를 뿐 같은 내용
* 분류심사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검사의 결정전조사제도 뿐만 아니라 분류심사, 상담조사에 대해서도 질문함.
* 소년조사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소년보호사건 조사보고서에 대해 질문함.

4. 기록조사 분석

기록조사 분석은 검사 결정전조사서 조사항목인 범죄관련 요인, 생활환경관련 요인, 학교 관련 요인, 피해회복관련 요인,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진술태도, 향후 생활계획 등의 항목 중 어떤 요인이 조사관의 처분 결정(기소유예 대 소년부송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 분석을 위한 자료는 홍영오·노성호·이수정·고려진(2009)의 연구에서 검사의 결정전조사에서 검사의 처분에 대한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기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기록조사 자료는 2008년에 전국의 보호관찰소와 소년보호기관(서울분류심사원과 소년원)에서 작성된 검사 결정전조사서 1,240사례의 자료이다. 기록조사의 내용은 범죄관련사항(공범수, 범행에서의 역할, 흉기·폭력·위협이나 강합, 성적인 요소, 신체 및 대물피해여부 등), 범죄 및 수사경력(최초 형사입건 당시 연령, 첫 형사입건 종류, 전과, 동종전과 유형, 대인범죄전력), 생활

환경(동거가족, 부모의 직업·학력, 친부모 결혼형태, 부모의 애착 및 관심, 훈육 및 감독, 가족구성원의 유대 등), 성장과정, 학교생활, 교우관계(가출경험, 전학 횟수, 학업성적, 무단결석정도, 자퇴 및 퇴학경험, 학교에 대한 태도, 음주, 흡연, 약물, 성경험여부 등), 심리·정신건강상태 및 성격(문신여부, 건강상태, 대인관계 등),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가족들의 보호의지 및 실질적 보호능력), 진술태도, 향후 생활계획 등이었다(〈표 1-6〉 참조).

표 1-6 검사 결정전조사 기록조사 내용

구분	세부내용
인적사항	사건번호, 죄명, 성명, 출생연도, 학력, 직업(학생이 아닌 경우 일자리 소유/자격증/직업훈련여부)
범죄관련사항	공범수, 범행에서의 역할, 흉가폭력위협이나 강압, 성적인 요소, 신체 및 대물피해여부, 방화, 피해자의 수성별·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사전계획여부, 범행시 음주여부·환각제사용여부, 범행의 동기, 피해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견
범죄 및 수사경력	최초 형사입건 당시 연령, 첫 형사입건 종류, 전과, 동종전과 유형, 대인범죄전력
생활환경	동거가족, 부모의 직업·학력, 친부모 결혼상태, 가족구성원 중 음주벽, 정신질환, 전과, 신체장애여부, 생계책임자, 월평균 가구소득, 생활정도, 학대경험, 부모의 애착 및 관심·훈육 및 감독·애정, 가족구성원의 유대, 가옥소유형태, 잦은 이사여부
성장과정, 학교생활, 교우관계	가출경험, 전학횟수, 학업성적, 무단결석정도, 자퇴경험, 퇴학경험, 학교에 대한 태도, 음주·흡연·약물·성경험여부, 비행친구 유무, 폭력집단 가입/활동경험, 적응문제, 문제행동으로 인한 제재여부, 교우관계의 원만성, 여가생활
심리·정신건강상태 및 성격	문신여부, 건강상태, 정신병리, 충동적 태도, 심리적 불안정, 분노, 공격성, 자살시도여부, 지능지수, 대인관계, 우울증, 반사회성, 정신분열증, 경조증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진술태도, 향후 생활계획	가족들의 보호의지 및 실질적 보호능력, 사회적 지지망, 범행사실 인정여부, 진술태도, 범행에 대한 태도, 범행의 정당성, 보호자 진술태도, 뚜렷한 향후생활계획 존재여부, 범죄행동에서 벗어나기 위한 동기나 의지의 존재여부
조사자의 의견	조사자가 제시한 처분(기소,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 홍영오 등(2009). 소년범의 검사 결정전조사제도를 위한 위험성평가도구 개발연구. p. 29

그리고 이 분석 결과와 기존의 분류심사서의 처분결정요인, 판결전조사의 처분결정요인과 비교하여 조사자의 의견개진에 대한 기준 마련 및 표준화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또한 기존의 분류심사서의 처분결정요인, 판결전조사의 처분결정요인과 비교하여 조사유형에 따라 조사관들이 비중을 두는 요인이 상이한지 비슷한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제2장

소년조사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

홍영오 · 황태정

02

소년조사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소년사법의 이념과 소년조사제도

1. 소년사법의 이념

소년은 인격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자로서 인격과 이성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며, 성인에 비하여 비행을 저지르기도 쉽지만 그만큼 개선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성인과 동일한 책임비난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에서 소년사법의 역사는 소년에 대해서는 가급적 극단적인 제재를 회피하고자 하고, 제재를 가하더라도 성인에 비해 그 정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그 흐름이 전개되어 왔다. 즉 전통적인 소년사법은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교육적·복지적 측면을 강조하거나 형사정책적 측면을 강조하는 등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문제소년의 비행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소년과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소년보호'의 이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1800년대 들어 미국에서 소년범과 성인범 재판의 분리(매사추세스주, 1870), 세계 최초의 소년법원 설치(일리노이주, 1899) 등 소년에 대한 특별한 처우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정책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흐름은 정점에 이르게 된다.[1] 「소년법」[2](이하 '법'이라 함) 또한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고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소년사법체계가 이러한 소년보호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소년에 대한 특별한 처우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고 있는 소년범죄의 흉포화 및 저연령화 현상과 맞물려 소년의 보호에 치중해 왔던 종래의 소년사법정책이 비행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되지 못했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특히 국친사상과 소년의 보호라는 명목 하에 성인에게는 당연히 인정되는 절차적 권리가 소년사법에서는 경시되어 소년의 인권이 오히려 침해받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소년사건에 있어서도 소년의 인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소년사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3] 특히 미국에서는 1999년 법무부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이 '균형적·회복적 사법'(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 개념을 소년사법의 목표로 제시하면서 종래 소년보호를 중심으로 하던 소년사법이념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전환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7년 12월 개정 소년법이 소년법 적용대상의 연령을 하향조정한 것 또한 이러한 움직임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움직임의 향후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소년조사제도의 목적과 기능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그렇다면 이러한 소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년이 소년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즉 소년에게 '반사회성'이 있는지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소년에게 반사회성이 인정된다면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하여 특별한 처우가 필요할 것인지

1)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제11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25/5.

2) 법률 제11005호, 2011. 8. 4. 타법개정.

3) 이윤호, 교정학개론, 박영사, 2003, 360면.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특별한 처우가 필요하다면 어떤 종류의 처우가 가장 적합할 것인지 역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소년에 대한 가장 적절한 처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년의 인격과 환경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소년조사제도는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의 개별화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대다수 국가에서 비행소년의 개인적 특성에 부합하는 처우를 시행하기 위해 그들의 환경적 여건과 육체적·정신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각종의 조사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4].

소년조사제도는 소년사법절차 전반에서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고 그 법적 효과도 다르다. 예컨대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의 결정전 조사(법 제49조의2)는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 보호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로서 제재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인 반면, 재판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전 조사(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나 형사법원의 판결전 조사(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은 동종의 제재 내에서 제재의 정도와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소년원에서의 분류심사(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등 참조)는 이미 결정된 제재를 집행함에 있어 교정교육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과정과 처우과정을 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사제도 간의 기능 차이를 조사의 법적 성격 면에서 관찰하면 전2자는 소년심판을 보조하는 사법작용으로서의 성격을, 후자는 이미 결정된 제재를 집행함에 있어 비행소년의 개선·갱생을 위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복지행정작용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다른 한편으로 이를 조사의 시기 면에서 관찰하면 전2자가 심판전 조사의 성격을, 후자가 심판후 조사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들 조사제도는 모두 소년에 대한 처우의 개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조사제도가 갖는 양면적인 기능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는 통합적 기능으로 파악함이 타당할 것이다.

4) 최석윤,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0권 제2호(2008), 한국비교형사법학회, 720면.

제2절 현행법상 소년사법체계와 소년조사제도

1. 현행법 개관

가. 현행법상 소년사법체계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면서(법 제2조) 소년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 소년법은 형법상 형사처분의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소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크게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두 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은 비행소년[5]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주체를 단계별로 상정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이들 주체가 소년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이러한 주체로 ①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 ② 경찰, ③ 검사, ④ 형사법원, ⑤ 소년법원 등을 설정하고 있다.

(1) 보호자·학교장·시설장 등의 소년사건 처리

먼저 소년법은 비행소년을 가장 초기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체로 보호자나 학교장 또는 이들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사회복리시설 및 보호관찰소의 장을 상정하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보호자나 학교장 등에 의하여 소년의 비행이 법률 이전의 단계에서 진압되고 해소되는 것이겠으나, 소년법은 이러한 해결 또는 보호자나 학교장 등이 비행소년의 신병을 확보하여 제3의 기관에 인도하는 방식에 의한 해결 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이

5) '비행소년'은 종래 강학상 용어로서 훈령·예규 등에 등장하고 있을 뿐이었으나(예컨대 경찰청예규 「소년업무처리규칙」 제2조 제5호 등), 2007년 소년법 개정시 국가의 비행예방정책 수립·시행의무(법 제67조의2)가 신설되고 동조가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 등 소년법 제4조 제1항의 소년 모두를 '비행소년'으로 통칭함으로써 법률용어가 되었다.

제4조 제1항 각호의 소년, 즉 비행소년을 발견한 경우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법 제4조 제3항).

(2) 경찰의 소년사건 처리

법률은 보호자나 학교장 다음으로 비행소년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주체로 법률은 사법경찰관을 들고 있다. 사법경찰관은 1차 수사기관으로서 비행소년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고, 법령에 의해 소년을 체포하거나 일시보호[6]하는 등 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수단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자체적으로 소년에 대한 종국적 처분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년법은 사법경찰관이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 즉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발견한 경우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4조 제2항). 그런데 소년법은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처리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범죄소년의 처리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범죄소년은 관련 규정을 종합할 때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14세 이상의 소년으로서 형사 성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년법이 이에 대한 명문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사법경찰관이 범죄소년을 발견한 경우 형사사건의 일반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 후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제4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54조). 소년법의 이러한 태도에 따라 적어도 사법경찰관이 발견한 범죄소년의 요보호성에 대한 선의권(先議權)은 검사에게 주어지게 되고, 여기서 범죄소년에 대한 검사선의주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6) 경찰관은 촉법소년에 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및 아동복지법 제10조에 의하여 일시 보호할 수 있으며(경찰청예규 「소년업무처리규칙」 제42조 제1항), 긴급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소년을 발견하거나 또는 보호자, 기타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일시보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위의 예규 제44조).

(3) 검사의 소년사건 처리

소년법은 검사가 비행소년을 만났을 때의 상황도 규정하고 있다. 검사가 범죄소년을 접하게 되는 경로는 경찰로부터 송치받는 경우(형사소송법 제196조 제4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54조)가 대부분일 것이고, 드물게는 관할 소년부로부터 송치받은 경우(법 제7조 제1항)나 직접 인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범죄소년은 형사성년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검사가 공소제기를 통하여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고, 기소재량을 행사하여 기소유예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범죄소년은 형사처분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소년법상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의 대상도 된다는 점, 소년에게는 가급적 형벌 외의 경미한 대체제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소년법의 기본이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은 범죄소년에 의한 소년사건이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7조 제1항 및 제49조 제2항의 반대해석)에는 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49조 제1항).

(4) 형사법원의 소년사건 처리

형사법원이 비행소년과 접하는 경로는 형사성년자인 범죄소년이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형사소송법 제246조) 한 가지이다. 이 경우 형사법원은 일반적인 심리절차를 밟거나, 피고사건이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법 제50조).

(5) 소년법원의 소년사건 처리

마지막으로 소년법원이 비행소년과 접하는 경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호자·학교장 등의 통고(법 제4조 제3항), 경찰로부터의 송치(법 제4조 제2항), 검사로부터의 송치(법 제49조 제1항), 형사법원으로부터의 송치(법 제50조) 등 매우 다양하다. 소년법원은 비행소년에 대한 원칙적 선의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건들은 법원소년부가 자체적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다. 법원소년부가 소년

사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다른 기관으로 보내어 처리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①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법원소년부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한다(법 제6조).[7] 다음으로 ② 법원소년부가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법원소년부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법 제49조 제2항 및 제7조 제1항).[8] 마지막으로 ③ 법원소년부가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이어서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이다. 이 경우 형사법원으로부터 송치되어 온 사건인 경우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결정으로써 사건을 해당 법원으로(법 제51조), 검사로부터 송치되어 온 사건인 경우 새로 공소제기가 필요하므로 결정으로써 사건을 송치한 검사에게 다시 송치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2항).[9]

나. 소년조사의 유형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체제 내에는 비행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제도를 구분하고 있다. 이를 시계열적으로 보면 먼저 수사단계에서는 경찰에 의한 환경조사와 검사에 의한 결정전 조사가 있다. 재판단계에서는 법원의 소년조사관 조사,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위탁조사·상담조사, 보호관찰소에 대한 위탁조사, 소년보호사건에서의 결정전 조사, 소년형사사건에서의 판결전 조사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교정단계에서도 보호관찰소에 의한 환경조사, 각 수용시설별로 실시하는 분류심사제도(소년원의 분류심사, 교도소의 분류심사)가 있다. 이들 조사제도는 각 단계별·제도별·기능별로 조사의 성격과 목적이 상이하다.

---

7) 다만 전자의 경우 임의적 이송(법 제6조 제1항), 후자는 필요적 이송(법 제6조 제2항)이라는 부분은 다르다.

8) 다만 이때에도 검사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경우(법 제49조 제2항)에는 임의적 송치이지만, 처음으로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법 제7조 제1항)에는 필요적 송치라는 부분은 다르다.

9) 이 경우는 양자 모두 필요적 송치이다(법 제51조 및 제7조 제2항).

(1) 광의의 조사와 협의의 조사

먼저 소년에 대한 조사를 광의의 조사와 협의의(또는 고유의) 조사로 구분하는 견해이다. 광의의 조사를 법원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비행 및 요보호성에 대한 법률적·사회적 증거를 수집하고 수집된 증거에 따라 판단하는 일련의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광의의 개념보다는 협의 또는 고유의 소년조사가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소년조사의 범주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고유의 의미의 소년조사를 '조사관이 판사의 명령에 의하여 비행 및 반사회성에 대한 사회적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보고하는 활동', 즉 법원조사관의 조사만으로 한정하는 견해[10], '비행의 원인을 규명하고 보호필요성의 판단자료를 수집하는 전문적인 활동'으로 정의하는 견해[11], '비행소년을 둘러싼 가정·학교·사회의 환경적 특성 및 비행소년의 성격·능력·행동특성 등 개인적 자질에 대한 조사와 진단을 통해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처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제도'로 정의하는 견해[12] 등이 있다. 생각건대 소년사건의 조사를 소년사법의 고유한 이념, 즉 소년에 대한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통하여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인격조사 또는 사회조사의 일종으로 본다면 소년법에 규정된 법원소년부의와 법원조사관의 조사,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등을 고유한 의미의 소년조사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심판전 조사와 심판후 조사

다음으로 소년에 대한 조사를 심판전 조사와 심판후 조사로 나누는 견해이다. 굳이 말하자면 아래에서 살펴볼 소년사법절차에서의 많은 조사절차 중 재판단계 이전까지의 조사가 심판전 조사, 그 이후의 교정단계에서의 조사가 심판후 조사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양자의 가장 큰 차이는 심판전 조사는 법원·검찰

10) 유진식, 소년법, 육법사, 1982, 249면.
11) 김동림, 소년법, 화성사, 2000, 351면.
12) 이춘화, 소년조사제도론, 한국학술정보, 2007, 36면.

등 사법기관의 판단을 위해 이루어지는 사법작용인데 반해 심판후 조사는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개별처우를 위한 법집행기관의 행정작용이라는 점에 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심판후 조사는 심판전 조사의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양자는 내용상 밀접한 상호연관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양자를 구별하는 실익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 수사단계

가. 경찰 : 환경조사

(1) 조사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경찰은 1차 수사기관으로서 소년이 연루된 사건을 가장 근거리에서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경찰은 소년법의 규정에 따라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관할 소년부에,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은 일반원칙에 따라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후자와 같이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이 가능한 경우라도 경찰은 성인범과 다른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에 대한 적절한 형식과 내용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하여 경찰은 경찰청훈령인 「범죄수사규칙」[13] 제12장 제1절에서 '소년사건에 관한 특칙'을 두어 소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의 경찰관의 마음가짐과 태도 및 소년사건 수사시의 특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예규로 「소년업무 처리규칙」[14]을 제정·운영함으로써 소년의 과학적 선도·보호, 유해환경 정화, 비행방지, 비행소년에 대한 합리적 처우 등 소년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기 위한 소년업무 처리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양자는 범죄수사규칙이 제시하는 범죄수사에 있어서의 소년에 대한 특칙을 소년업무처리규칙이 좀 더 구체화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3) 경찰청훈령 제604호, 2010.10.26. 개정

14) 경찰청예규 제413호, 2009.11.19. 개정 (기존의 「소년경찰직무규칙」이 2007.12.31. 개정되면서 제목이 변경된 것임)

(2) 조사의 기본이념

범죄수사규칙은 경찰관이 소년사건을 수사할 경우 소년의 건전육성과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 및 성행교정을 염두에 둘 것을 요구하고 있고(범죄수사규칙 제207조), 소년업무처리규칙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년경찰활동에 있어서의 기본정신을 건전육성의 정신, 소년의 특성 이해, 처우의 개별화, 처우의 과학화, 비밀 보장, 관계자의 존경과 신뢰 획득 등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소년업무처리규칙 제7조). 범죄수사규칙이 사건수사시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않는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이나(범죄수사규칙 제208조), 소년업무처리규칙이 관계자 소환·면접, 관계사항 공표시의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소년업무처리규칙 제8조 내지 제10조) 역시 소년사건의 처리가 이러한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조사의 내용

전술한 바와 같이 경찰관은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관할 소년부에, 범죄소년은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먼저 소년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가 촉법소년 또는 우범소년임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경찰관은 해당 소년에 대하여 적당한 선도보호의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자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 감호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조치[15]를 강구하거나 이를 소

15) 아동복지법 제10조 (보호조치)
①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5.7.13, 2006.9.27>
1.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년보호사건으로 하여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214조 제1항·제3항). 다만 촉법소년의 경우 그 행위가 형법상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이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범죄수사규칙은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소년보호사건으로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 '소년보호사건송치서'[16]를 작성하고 여기에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범죄수사규칙 제215조), 소년업무처리규칙은 이 경우 송치서류는 '소년보호사건송치서' 및 '진술조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년업무처리규칙 제40조 및 제45조).

이와 달리 소년사건의 피의자가 범죄소년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소년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형사사건의 일반원칙에 따라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제4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54조). 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 사건송치서[17], 압수물총목록[18], 기록목록[19], 의견서[20], 피의자환경조사서, 피의자 등록기준지조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성폭력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조치를 함에 있어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1항제4호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안에서 약물 및 알콜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6)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9호 서식.
17)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8호 서식.
18)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9호 서식.
19)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0호 서식.
20)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1·172호 서식. 경찰관이 소년을 관계기관에 송치할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

회회답서[21] 및 범죄경력조회(지문조회)통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범죄수사규칙 제192조 제1항).

위와 같은 제반 규정들을 종합할 때, 먼저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는 범죄소년의 경우 '피의자신문조서'[22]를(형사소송법 제244조, 범죄수사규칙 제22조 참조),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소년업무처리규칙 제40조 및 제45조). 이외에 범죄수사규칙은 경찰관이 소년사건을 수사할 경우 범죄원인, 동기, 그 소년의 성격, 행상, 경력, 교육정도, 가정상황, 교우관계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소년환경조사서(소년카드)'[23]를 작성하여야 하고, 심리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소년의 '비행성예측자료표'[24]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 제209조 제1항).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소년에 대한 조사는 이러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4) 조사의 방식

경찰관은 비행소년을 수사 또는 조사할 때에는 사실의 존부 및 내용, 비행동기 및 원인, 소년의 성격·행동 및 경력, 가정·학교·직장 및 교우관계, 주거지의 환경, 소년의 비행방지에 협력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자의 유무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소년업무처리규칙 제30조). 또한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전문가의 협력 확보, 단시간·주간조사 원칙, 변호인 참여 허용, 심신이상시 수진(受診) 등의 최대한 보장을 통하여 조사내용의 임의성과 진실성 확보에

정되는 처우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소년업무처리규칙 제32조 제1항), 이러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비행의 내용, 비행의 동기 및 원인, 재비행의 위험성, 보호자의 실정 및 재비행방지에 대한 보호자의 방침 또는 희망, 기타 관계기관·단체 등의 의견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소년업무처리규칙 제32조 제2항). 만약 사건의 담당자가 소년업무 담당부서 이외의 경찰관인 경우에는 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조 제3항).

21)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3호 서식.

22)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6호 내지 제32호 서식.

23)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6호 서식.

24)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7호 서식.

유의하여야 한다(소년업무처리규칙 제31조).

소년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은 청소년 지원센터, 소년원, 학교 그 밖의 관계기관과 긴밀히 연락하여야 하며(범죄수사규칙 제210조),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도 피의자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하는 등 보호자와도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211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법 제55조 제1항)의 이념상 소년인 피의자에 대하여 되도록 구속을 피해야 함은 당연하다. 부득이하게 소년을 구속·체포 또는 동행하는 경우에도 그 시기와 방법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범죄수사규칙 제212조).

소년사건 처리에 있어서의 밀행주의(密行主義) 원칙에 따라 경찰관이 소년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소년의 주거·성명·연령·직업·용모 등에 의하여 그 자를 본인으로 주지[25]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신문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범죄수사규칙 제213조), 만약 고의로 언론매체에 알려 이러한 사실이 게재·방송되도록 한 경우 언론매체 종사자에 관한 소년법상 형사처벌규정에 따라 해당 범죄에 대한 공범의 성립이 가능할 것이다(법 제68조 참조).

나. 검찰 : 검사의 결정전 조사

(1) 조사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소년사건 중 검사가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공소제기가 가능한 사건, 즉 형사성년자인 범죄소년에 의한 사건에 한정된다(법 제4조 참조).[26] 범죄소년은 형사성년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검사가 공소제기를 통하여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고, 기소재량을 행사하여 기소유예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범죄소년은 형사처분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소년법상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의 대상

25) '추지'(推知, 미루어 생각해 앎)의 잘못된 표현으로 생각됨.

26) 검사가 범죄소년을 접하게 되는 경로는 경찰로부터 송치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나, 관할 소년부로부터 송치받은 경우(법 제7조 제1항)나 드물게는 직접 인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도 된다는 점, 소년에게는 가급적 형벌 외의 경미한 대체제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소년법의 기본이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은 범죄소년에 의한 소년사건이 일정한 정도로 경미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49조 제1항).

범죄소년에 의한 소년사건의 처리에 대하여 검사선의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소년사법체계 하에서 검사는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고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소년사건의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처분을 위해 소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소년전담검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소년전담검사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소년사건의 처리가 비행사실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면 소년의 요보호성에 따른 개별처우라는 소년법의 기본이념을 몰각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년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소년의 인격과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통하여 소년에 대한 보호필요성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27]

위와 같은 필요성에서 2007년 개정된 소년법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관할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경력·생활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면 보호관찰관이 이를 조사하여 회보하도록 하는 제도, 즉 '검사의 결정전 조사'(법 제49조의2)를 신설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가 소년사건을 처리하면서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소년원장,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등에게 소년의 품행·경력·생활환경·요보호성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소년의 교화·개선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도록 하는 소년법상 검사의 결정전 조사 업무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법무부훈령으로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28](이하 '검사결정전조사규정'이라 함)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27) 이춘화, "소년법상의 검사 결정전 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2호(2009·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61면.

28) 법무부훈령 제737호, 2009. 9.21. 일부개정.

(2) 조사의 내용

조사를 맡게 된 조사관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검사결정전조사규정 제6조 제2항). 조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① 인적사항(성명, 주소, 학력, 직업, 가족관계 등), ② 신체 및 정신상태(신체특징, 건강상태, 병력진단, 심리검사)[29], ③ 범죄관련 사항(범행개요 및 동기, 피해회복 여부, 범죄경력), ④ 생활환경(가족사항, 생활정도, 성장과정, 학교, 직업, 교우관계), ⑤ 보호자 상담(보호자 관심도, 보호능력 유무), ⑥ 소년 상담(진술태도, 향후 생활계획), ⑦ 기타 결정 전 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동조 제1항).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조사관은 조사대상 소년에 대한 재범위험성 및 성행, 개선 가능성, 사회적 위험성,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 등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동조 제3항).

(3) 조사의 방식

(가) 검사의 조사요구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에게 피의자의 품행·경력·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9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조사요구의 사유로는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만을, 조사요구의 대상 또한 품행·경력·생활환경만을 들고 있다. 그러나 검사결정전조사규정은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여 법률상 조사요구의 사유 외에 구속·불구속 여부, 구속취소 등 신병 결정에 필요한 경우, 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

29) 다만 병력진단과 심리검사는 조사 대상 소년이 정신과적 치료력이나 정신과적 장애가 있거나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동항 단서).

조건[30]의 내용 결정에 필요한 경우, 기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사의 내용 또한 품행 · 경력 · 생활환경 외에 '요보호성'을 별도의 항목으로 두고 있다(검사결정전조사규정 제2조).

조사요구는 조사요구서 및 관련 자료를 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검사결정전조사규정 제4조 제2항). 조사요구는 소년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년 피의사건을 관할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에 대하여 하게 되는데(검사결정전조사규정 제3조 제1항), 검찰청에 대응하는 보호관찰소 등이 수개일 경우 해당 기관과 검찰청 및 피의자의 주거지 간 거리, 보호관찰소 등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검사가 조사 담당기관을 선정한다(동조 제2항).

(나) 보호관찰소장 등의 조사

검사의 조사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장 등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보호관찰관 · 분류심사관 등에게 피의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9조의2 제2항).

구체적으로 검사의 조사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장 등은 결정전 조사 접수 · 처리부에 그 내용을 등재한 후 조사를 담당할 조사관(보호관찰관, 분류심사관, 상담조사관 등)을 지정한다(검사결정전조사규정 제4조 제3항). 지정된 조사관은 조사대상 소년의 신체 · 성격 · 소질 · 환경 · 학력 · 경력 등과 그 상호관계를 규명하여 교화 · 개선에 가장 적합한 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검사결정전조사규정 제5조 제1항), 이를 위하여 심리학 · 교육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 범죄학 · 의학 등의 전문적 지식과 면접조사 · 심리검사 · 정신의학적 진단 · 행동관찰 · 자료조회 · 현지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이때 보호관찰소장 등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 · 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동조 제4항).

30)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선도,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대안교육, 보호관찰관 선도 등

조사는 원칙적으로 구속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치소 등 수감장소에서, 불구속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소 등에 소환하여 조사하거나 소년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 방문하여 조사한다(검사결정전조사규정 제4조 제4항).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9조의2 제3항, 검사결정전조사규정 제5조 제3항).

(다) 검사에 대한 통보

검사에 대한 통보는 조사를 마친 후 해당 조사의 내용을 통보하는 것과 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는 것의 두 가지 형태로 규정되고 있다.

먼저 조사를 마치면 보호관찰소장 등은 조사서를 작성한 후 특별한 사정으로 검사에게 통보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구속사건에 대하여는 조사요구서 접수 후 6일 이내에, 불구속사건에 대하여는 조사요구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검사에게 해당 조사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검사결정전조사규정 제4조 제5항). 통보는 조사서 및 관련 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차후에 원본을 검사에게 추송하여야 한다(동조 제6항).

다음으로 조사대상 소년이 별건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거나, 소재불명·주거이전·사망 기타 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관찰소장 등은 신속히 검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검사결정전조사규정 제7조 제1항). 이러한 경우 검사는 지체없이 결정 전 조사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라) 검사의 처분

검사는 보호관찰소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소년피의자를 교화·개선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검사결정전조사규정 제8조 제1항). 결정전조사를 실시한 사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보받은 조사서 등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3. 재판단계

소년법은 소년부 판사가 법원에 소속된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외에(법 제11조),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 · 심리학자 · 사회사업가 · 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2조). 이러한 규정은 소년법이 조사방침으로서의 의학 · 심리학 · 교육학 · 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도록 한 것(법 제9조)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년법의 이러한 규정에 따라 재판단계에서의 조사는 법원소속 소년조사관에 의한 조사, 전문가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보호관찰소의 조사 등으로 나뉠 수 있게 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조사를 시행하는 기관 별로 조사의 법적 근거와 내용 및 절차를 살펴본다.

가. 법원 : 법원조사관 조사

(1) 조사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소년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소년에 대한 사회복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년의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소년에게 필요한 지도와 원조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소년법원에서의 조사는 심리에 필요한 사실관계의 조사는 물론 소년의 인격이나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적절한 처분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법원을 구성하는 판사를 보좌함으로써 이러한 기능을 맡는 전문직을 조사관이라 하고, 특히 심리학 · 사회학 · 교육학 · 사회사업학 · 정신의학 등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들로써 구성된 조사관으로 하여금 소년법원에서 이러한 역할을 맡아 소년법원의 이념을 실현토록 한 것이 소년조사제도이다.[31]

31) 한국소년법학회 編, 소년법, 세창출판사, 2006, 221면; 이춘화, 소년조사제도론, 한국학술정보, 2007,

소년법은 소년사건에 있어 소년에 대한 적절한 처분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 모두 소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소년보호사건에서의 조사와 관련하여 소년법은 1958년 7월 제정시부터 '소년보호관'으로 하여금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 기타 필요사항의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소년보호관은 소년과 보호자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구명함에 특별한 유의하여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제정소년법 제10조 제1항·제2항). 1963년 7월 개정시 소년보호관은 '조사관'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이 명칭은 현행법(법 제11조)까지 이어지고 있다.[32] 소년형사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소년법은 제정소년법 당시부터 법원이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56조).

한편 법원조직법도 2005년 3월 개정을 통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조사관을 둘 수 있는 직제규정을 신설하였다. 동법은 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면서(법원조직법 제54조의3 제1항 및 제2항), 이러한 조사관의 자격, 직제 및 인원,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4항).

법원조직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원조사관 등 규칙」[33]은 법원조사관을 4급·5급 법원공무원 또는 대법원장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한 다른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고(동 규칙 제2조 제1항), 가사조사관·소년조사관 및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은 조사서기관·조사사무관·조사주사·조사주사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약직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34]

156-157면.

32) 소년법은 이밖에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법 제56조) 형사법원이 소년형사사건에서 소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33) 대법원규칙 제2253호, 2009. 9.28. 일부개정.

34)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동항 단서).

(2) 조사의 내용

소년에 대한 조사는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9조). 즉 조사의 대상은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이고, 조사의 내용은 이들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이며, 조사의 방식은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관은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① 비행사실, 그 동기와 비행 후의 정황 및 비행전력, ② 소년과 보호자의 교육정도, 직업, 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소년의 교우관계 및 소년의 가정환경, ③ 소년비행화의 경위 및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상황과 향후의 보호 능력, ④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재비행의 위험성과 정도, ⑤ 소년의 심신상태, ⑥ 그 밖에 심리와 처분을 함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조사한다(소년심판규칙 제11조 제1항).

(3) 조사의 방식

(가) 소년부 판사의 조사명령

소년보호사건이 수리되면 소년부 판사는 배당받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거쳐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요보호성에 관한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조사를 조사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를 조사명령이라 한다.[35]

소년법은 소년부 판사가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으로, 즉 조사명령을 임의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11조 제1항). 그러나 소년법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통고

35) 한국소년법학회 編, 소년법, 세창출판사, 2006, 218면.

된 소년의 경우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통고된 소년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1조 제2항).

(나) 조사관의 조사

소년에 대한 조사는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9조). 즉 조사의 대상은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이고, 조사는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하여야 한다.

먼저 조사의 대상과 관련하여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은 먼저 소년과 보호자의 진술서 등 소년의 비행사실에 관한 사건기록을 검토하게 된다. 사건기록에는 비행사실 자체에 대한 기록 외에도 비행의 동기, 가족상태, 생활관계 등 비행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건기록의 검토가 끝나면 사건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언제 어떤 대상자에 관하여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조사활동이 시작된다.[36] 조사방법에는 면접, 출장, 서면 또는 전화에 의한 조회, 각종 검사, 관계기관의 기록 검토 등의 방법이 있으며, 조사방법은 조사기간과 조사대상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조사관은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공무소나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보고 또는 필요한 사건기록이나 서류를 넘겨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 관찰 또는 심리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및 제3항). 출석요구서(소환장)를 송달하였으나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사관은 소년부 판사로부터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다(법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다음으로 조사관은 인간관계과학의 전문적인 지식, 즉 '의학·심리학·교육

36) 김동림, 소년법, 화성사, 2000, 359면.

학·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소년법은 이러한 전문지식의 활용을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2조). 소년부 판사는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의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년법에 따른 임시조치(법 제18조)를 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소년심판규칙 제13조).

(다) 소년부 판사에 대한 보고

소년에 대한 조사가 종료하면 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소년심판규칙 제12조 제1항). 소년에 대한 조사의 목적은 소년의 인격과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선택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소년에 대한 처우를 선택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자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년심판규칙은 조사관이 보고의 전후에 소년부 판사에게 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나. 소년분류심사원 : 분류심사 및 상담조사

(1) 조사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함에 있어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이러한 전문가 진단은 조사방침으로서의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도록 한 것(법 제9조)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실질적인 운용을 위하여 절대적인 전제가 되는 전문화된 조사관의 인력 확보가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조사관에 의한 조사제도는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소년조사는 결국 소년분류심사원에 의한 자질심사로 대체되고 있다.[37]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소년처우법'이라 함)[38]은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소년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4년 1월 개정 소년원법은 이전까지 소년분류심사원의 업무었던 소년법상 임시조치(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위탁소년에 대한 분류심사(보호소년처우법 제2조 제2항 제1호) 외에 소년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를 업무에 추가하였고(동항 제2호), 이러한 상담조사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심리학 · 교육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 범죄학 · 의학 등의 학문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갖춘 분류심사관을 두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보호소년처우법 제24조 및 제25조). 한편 2007년 12월 개정 보호소년처우법은 소년법에 검사의 결정전 조사(법 제49조의2)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검사가 요구한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의 업무범위에 추가하고 있다(보호소년처우법 제2조 제2항 제3호).

1977년 소년분류심사원이 처음 개원한 이래 5개소(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가 설치되어 운영된 적도 있었지만, 2011년 10월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단 1곳만이 설치 ·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폐지되거나 보호관찰소로 전환되었다.[39]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될 때까지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는 소년원이 수행하고, 위탁소년은 소년원의 구획된 장소에 수용한다(보호소년처우법 제52조).

37) 한국소년법학회 編, 소년법, 서울: 세창출판사, 2006, 225-226면; 장영민·김구슬,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0권 제1호(2005/09),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80면.

38) 법률 제10541호, 2011. 4. 5. 일부개정. 기존의 「소년원법」의 법명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8723호, 2007.12.21. 일부개정, 2008. 6.22. 시행)으로 변경.

39) 최석윤,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0권 제2호(2008), 한국비교형사법학회, 726면.

(2) 조사의 내용

소년에 대한 분류심사는 보호소년처우법 제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분류심사, 상담조사 및 검사의 결정전 조사가 의뢰된 경우 해당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여 심사대상인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최선의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보호소년처우법 제24조 제1항). 보호소년처우법은 이러한 상담조사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학문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갖춘 분류심사관을 두도록 규정하고(동법 제25조), 분류심사를 할 때에는 이들로 하여금 심리학·교육학·사회학·사회복지학·범죄학·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보호소년등의 신체적·심리적·환경적 측면 등을 조사·판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4조 제2항).

소년분류심사원은 ① 소년법상 임시조치(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위탁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② 소년법상 전문가 진단(법 제12조)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 ③ 소년법상 검사의 결정전 조사(법 제49조의2) 규정에 따라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의 조사, ④ 위에 해당하지 않는 소년으로서 소년원장이나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 등 네 가지를 업무영역으로 하고 있다(보호소년처우법 제2조 제2항).

보호소년처우법은 위의 네 가지 유형의 소년 중 '위탁소년'(동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분류심사를 할 때에는 ① 신상관계 : 소년의 인적사항, 학력, 지니고 있는 문제, 비행의 개요, 비행 이력, 보호자 및 가족상황, 그 밖에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 ② 신체적 측면 : 소년의 건강상태, 신체특징, 결함 여부 및 병력 등의 진단, ③ 심리적 측면 : 소년의 지능을 중심으로 한 능력, 성격의 특징, 신경증·정신병 등 정신기능의 장애 여부, 적응 및 욕구, 자기개선 의지 등의 측정, ④ 환경적 측면 : 출생 이후 현재까지 소년의 가정·학교·사회생활 등의 조사, ⑤ 행동특징 : 수용생활 및 검사·면접할 때 등 소년이 처한 환경 조건에 따라 반응하는 특이사항 및 경향의 관찰, ⑥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각종 기록 및 상담 결과, 관계인과의 면접, 그 밖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종합·분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반면(동법 시행령 제51조), 그 이외의 소년, 즉 법원소년부로부터 의뢰된 상담조사나 검사로부터 의뢰된 결정전 조사 등의 경우에는 해당 의뢰기관이 요청한 영역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40]

(3) 조사의 방식

(가) 조사의 담당자

보호소년처우법은 이러한 상담조사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학문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갖춘 분류심사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보호소년처우법 제25조). 분류심사관은 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심사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 ② 분류심사 업무를 목적으로 특별채용된 사람, ③ 심리학·교육학·사회학·사회복지학·범죄학·의학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소년분류심사원장이 임명한다(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분류심사관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양과 전문지식을 갖춘 분류심사 전문요원을 두고 제51조 제1항 각 호의 자료수집과 심리검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소년분류심사원장은 각종 전문교육, 관련 학회 등에 분류심사관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등 분류심사관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분류심사에 필요한 각종 검사기구의 구비, 분류심사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지원 등 분류심사의 과학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나) 조사방식의 유형

보호소년처우법 제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분류심사, 상담조사 및 검사의 결정전 조사는 면접조사, 심리검사, 정신의학적 진단, 행동관찰, 자기기록 검토, 자

40) 법원소년부로부터 의뢰된 상담조사의 경우에는 소년의 진로지도 및 품행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동시행령 제52조 제2항).

료조회, 현지조사 등의 방법에 따른다(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① 분류심사 : 소년에 대한 분류심사는 일반분류심사와 특수분류심사로 나뉜다. 일반분류심사는 일반적인 경우, 즉 문제 또는 비행의 원인이 비교적 단순한 소년에 대하여 실시하며, 면접조사와 신체의학적 진찰, 집단검사, 자기기록 검토, 자료조회, 행동관찰 등을 주로 하여 실시하는 분류심사를 말하며, 특수분류심사는 일반분류심사결과 문제 또는 비행원인이 중대하고 복잡한 경우, 즉 상습비행자, 성격·행동이상자, 저능자, 신체기능이상자, 마약류 또는 유해화학물질 남용자 등에 대하여 개별검사와 정신의학적 진단, 현지조사 등을 추가하여 실시하는 분류심사를 말한다(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제3항 및 별표4 참조).

② 면접조사 : 소년에 대한 면접조사는 직접면담의 방법으로, 소년의 보호자 및 참고인에 대한 면접조사는 직접면담 외에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분류심사관은 면접조사를 함에 있어 면접대상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친절하게 대하고 용모·태도·언어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③ 행동관찰 : 소년에 대한 행동관찰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하고 그 결과가 분류심사등에 유용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소년분류심사원장은 행동관찰 업무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담당직원의 교육, 부서간의 협조 독려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④ 자료조회 :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은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이나 분류심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학교생활기록부, 그 밖에 교육 및 분류심사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보호소년처우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다) 심사결과 작성 및 통지

분류심사관은 신상관계, 신체적 측면, 심리적 측면, 환경적 측면, 행동특징,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보호소년처우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조사된 분류심사자료를 종합하여 분류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보호소년처우법 시행령 제53조).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이렇게 작성된 분류심사의 결과 및 의견 등을 각각 의뢰한 법원소

년부 또는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보호소년처우법 제27조 제1항), 위탁소년 또는 상담조사의뢰를 받은 소년이 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소년의 분류심사 결과 및 의견 또는 상담조사 결과 및 의견을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집행하는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다. 보호관찰소 : 판결전조사 및 결정전조사

(1) 조사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판결전 조사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인격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 등 사회적 사실에 관한 자료를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사회내처우 적격성 여부 등을 판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법원 및 범죄자 처우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양형과 처우과정에 참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수집된 자료를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고한다는 의미에서 양형자료 조사제도 또는 정상 조사제도라고도 한다.[41]판결전 조사제도는 원래 공판절차가 사실인정 절차와 양형절차로 2원화된 미국의 형사사법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우의 결정을 위한 조사제도로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 12월 「보호관찰법」[42] 제정시 소년 형사범에 대하여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소년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법률상 제도로 도입되었다(보호관찰법 제26조). 이후 1995년 12월 개정된 「형법」[43]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제도가 신설되면서(형법 제62조의2) 이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44]은 소년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판결전 조사를 하도록 하였다(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9조).

판결전 조사는 소년의 경우 그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해 적절한 처우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반해, 성인 형사범의 경우 이 제도의 도입이 오히려 절차의

41) 한국소년법학회 編, 소년법, 서울: 세창출판사, 2006, 342면.
42) 법률 제4059호, 1988.12.31, 제정(시행 1989. 7. 1).
43) 법률 제5057호, 1995.12.29. 일부개정(시행 1996. 7. 1).
44) 법률 제5178호, 1996.12.12. 전부개정(시행 1997. 1. 1).

혼란을 초래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가 수집되어 형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처음에는 소년 형사범에 대해서만 법적 근거를 두었다. 그러나 소년 형사범에 도입된 판결전 조사가 양형 및 사회내 처우의 판단자료로서의 유용성을 인정받게 되면서 실무상 성인 형사범에 대해서도 판결전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판결전 조사제도는 형사범에 대하여 사회내 처우의 적격성을 심사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회내 처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살인 등의 사건에 대한 조사 요구도 증가하는 등 실질적으로 양형결정을 위한 양형조사의 성격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 왔고, 성인형사범에 대한 판결전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성인 형사범에 대한 객관적 양형자료의 필요라는 현실적 요청에 의해 2004년부터는 성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 요구 건수가 소년의 판결전 조사 건수보다 더 많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45]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08년 12월 개정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46](이하 '보호관찰법'이라 함)에서는 이를 성인 형사범에도 적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보호관찰법 제19조).

한편 같은 개정에서는 또한 소년 형사범뿐 아니라 보호소년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자료로서 법원소년부의 요청에 따라 결정전 조사가 실무상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결정전 조사의 법적 근거 및 구체적 실시절차 또한 신설되었다(동법 제19조의2).

(2) 조사의 내용과 방식

(가) 조사의 담당자

판결전 조사는 보호관찰직 공무원이 담당한다. 조사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없지만 주로 조사과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47] 보호관찰법은 법무부장관이 판결전 조사 등 조사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전문성 확보를 위

45) 2006 판결전조사 분석,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 2006/12, 14면.

46) 법률 제9168호, 2008.12.26. 일부개정 (시행 2009. 3.27)

47) 이춘화, 소년조사제도론,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7, 179면.

하여 조사관을 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보호관찰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조사관은 ①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보호관찰직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인 보호관찰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중 별표 1[48]의 전문분야의 판결전 조사 등 조사 분야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② 필기시험 및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를 통과하였을 것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동조 제2항). 필기시험 및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 등 조사관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동조 제3항).

(나) 형사법원 및 법원소년부의 조사요구

판결전 조사의 대상은 유죄판결을 하여야 할 형사범이므로 판결전 조사를 요구하는 법원은 기본적으로 형사법원이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상 보호관찰부 선고유예(형법 제59조의2) 및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부 집행유예(형법 제62조의2)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보호관찰법 제19조 제1항).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또한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전 조사(보호관찰법 제19조 제1항) 또는 결정전 조사(동법 제19조의2 제1항)를 요구하는 때에는 피고인 또는 소년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고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보호관찰법 시행령 제7조).

이에 반하여 결정전 조사의 대상은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보호소년

48) 공통분야에는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 ② 소년법의 이해, ③ 보호관찰 관련 법령의 이해, ④ 보호관찰제도론, ⑤ 보호관찰실천기술, ⑥ 사회봉사명령제도론, ⑦ 수강명령제도론, ⑧ 판결전조사제도론, ⑨ 보호관찰 윤리 등 9과목이 있으며 이를 총 50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분야로는 ①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기법 및 사례연구 분야, ② 보호관찰 관련 법령·제도 분야, ③ 소년보호관찰 분야, ④ 사회봉사명령 분야, ⑤ 수강명령 분야, ⑥ 판결전조사 등 조사 분야, ⑦ 심리학·심리검사 관련 분야, ⑧ 범죄유형별 대상자 특성 및 재범사례연구 분야, ⑨ 리더십 관련 분야 등 9과목이 있다.

이므로 그 주체는 법원소년부가 된다. 즉 법원소년부는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소년법 제12조), 따라서 법원이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보호관찰법 제19조의2 제1항). 법원소년부의 조사의뢰시 조치 및 조사의뢰 이후 보호관찰소의 장의 조치는 판결전조사의 경우와 동일하다(동조 제2항·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참조).

(다) 보호관찰소의 조치

법원으로부터 판결전 조사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결정전 조사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다(동법 제19조의2 제2항 참조).

4. 교정단계

가. 보호관찰소 : 환경조사

(1) 조사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보호관찰소에서는 교도소 등에 수용된 소년수형자와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등 시설에 수용중인 소년범에 대한 환경을 조사하여 필요한 개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가석방 및 가퇴원의 심사자료로 활용되는 한편, 가석방·가퇴원 전에 환경조사를 하여 범죄유발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 기반을 조성하고 석방시 재범방지를 위하여 환경을 개선·조정하는 등 교정교육의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보호관찰실시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환

경조사는 보통 조사관이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이를 퇴원 후의 재범위험성 및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 조사의 내용

환경조사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수용자의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수용 전의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생계대책 등이다(보호관찰법 제26조 제1항). 보호관찰법 시행령은 환경조사서의 기재내용을 ① 인수인·가족관계 및 주변의 상황, ② 범죄 또는 비행에 관한 사회의 감정, ③ 피해변상 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 ④ 수용전의 직업·생활환경 및 교우관계, ⑤ 석방후 취업계획 또는 생계의 전망, ⑥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⑦ 기타 참고사항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보호관찰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환경조사 회보는 보호관찰법 시행령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게 되는데, 서식에는 법률과 시행령에서 적시한 내용 외에 최종학력, 공범관계, 사회적응 가능성, 조사자의 의견 등이 기재되도록 되어 있으며, 생활환경 부분에는 출생·성장·결혼·건강·종교·생활수준 등 다양한 내용이 기재된다(보호관찰법 시행령 별지 8호 서식 참조).

(3) 조사의 방식

수용기관의 장은 소년수형자 및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호처분(소년원송치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이하 '수용자'라 함)을 수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상조사서를 보내 환경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보호관찰법 제26조 제1항). 만약 환경조사를 의뢰한 후 수용자의 신상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수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보호관찰법 시행령 제12조).

수용기관의 장으로부터 환경조사를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용자의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수용 전의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생계대책 등을 조사하여 수용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면담하거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보호관찰법 제26조 제2항). 환경조사의 통보는 위에서 언급한 보호관찰법 시행령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나. 소년원 : 분류심사

(1) 조사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소년원은 소년원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처우가 가능하도록 전국 10개 소년원[49]을 각각 특성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년원의 분류처우제도란 이들 10개 소년원 중에서 소년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가장 잘 맞는 소년원에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분류하는 한편 소년에게 적합한 처우기간을 결정해 주는 제도이다.[50] 우리나라의 소년법원은 소년원 송치처분시 소년원의 종별은 지정하지 아니한 채 소년원 측에 이를 일임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원은 교육대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호소년 개개인에 대한 분류조사 결과 밝혀진 제 사실과 분류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호소년의 특성에 적합한 분류수용, 처우기간 및 교육과정을 지정한다.[51]

먼저 보호소년처우법은 법무부장관이 보호소년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을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보호소년처우법 제4조), 동법 시행령에서 이러한 기능을 ① 초·중등교육 소년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②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③ 의료·재활교육 소년원 : 약물 오·남

49) 2011년 10월 현재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읍내정보통신학교(대구소년원),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 송천정보통신학교(전주소년원), 대산학교(대전소년원),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한길정보통신학교(제주소년원), 미평여자학교(청주소년원) 등 10개 소년원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50) 이춘화, 소년조사제도론,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7, 185면.

51) 송광섭·점승헌, "소년원 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11호(1999), 131면.

용, 정신·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④ 인성교육 소년원 :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의 4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보호소년처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2) 조사의 내용과 방식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처우를 하여야 하며(동법 제8조의2), 이러한 분류처우를 함에 있어서는 분류심사 결과와 법원소년부로부터 송부된 자료를 고려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소년원에 수용되는 소년들은 거의 대부분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수용분류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소년원의 분류심사는 소년의 특성을 새로이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이미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처우과정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년원의 분류업무는 법원에서 보내준 자료, 즉 처분결정서와 분류심사결과통지서 등을 검토한 후 자료만으로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수용소년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52] 소년의 분류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훈령인 「보호소년 수용지침」[53]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소년원장은 제9조에 따른 분류처우 대상 보호소년에 대하여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이러한 개별처우계획에는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교육, 인성교육 등 개별 교육·처우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 경우 보호소년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개별처우계획은 교정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내용을 본인 및 보호자등에게 알려 보호소년이 스스로 교육에 참여하고, 자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52) 이춘화, 소년조사제도론,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7, 186-187면.

53) 법무부훈령 제588호, 2007. 7.23. 일부개정.

다. 교도소 : 분류심사

(1) 조사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교도소에서의 분류심사제도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들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개별조건에 맞게 처우하기 위한 제도이다. 교도소의 분류심사에 대한 내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54] (이하 '수용자처우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55] 수용자처우법은 분류심사의 근거규정이자 기본원칙으로 교도소장은 수형자에 대하여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수용자처우법 제55조).

한편 분류심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수용자처우법은 분류급에 관한 사항, 작업·직업훈련·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등의 처우방침에 관한 사항, 보안상의 위험도 측정 및 거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이송에 관한 사항, 가석방 및 귀휴심사에 관한 사항, 석방 후의 생활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류심사의 내용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수용자처우법 시행령 제63조).

(2) 조사의 내용과 방식

수형자의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신입 수형자에 대하여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신입심사)와 기존 수형자에 대하여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재심사)로 구분된다(수용자처우법 제59조 제2항). 신입심사시에는 개별처우계획을 위한 다양한 기초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용자처우법은 성장과정, 학력 및 직업경력, 생활환경, 건강상태 및 병력사항, 심리적 특성, 마약·알

54) 법률 제10865호, 2011. 7.18, 일부개정(시행 2011.10.19).

55) 이전까지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던 「수형자분류처우규칙」은 2008년 12월 수용자처우법 시행규칙의 제정과 함께 폐지되었다.

코올 등 약물중독 경력, 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 범죄경력 및 범행내용, 폭력조직 가담여부 및 정도, 교정시설 총 수용기간, 교정시설 수용 중에 받은 징벌 관련 사항, 도주(음모·예비·미수 포함) 또는 자살기도 유무와 횟수, 상담관찰 사항, 수용생활태도, 범죄피해의 회복 노력 및 정도, 석방 후의 생활계획, 그 밖에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수용자처우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 재심사를 할 때에는 신입심사시 조사사항 중 변동된 사항 외에 교정사고 유발 및 징벌 관련 사항, 소득점수를 포함한 교정처우의 성과, 교정사고 예방 등 공적 사항, 추가사건 유무, 그 밖에 재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는데 그치고 있다(동조 제2항).

교도소장은 개별 수형자에게 필요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이하 '분류심사'라 함)하여야 한다(수용자처우법 제59조 제1항). 이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지능·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고(동조 제3항), 분류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듣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동조 제4항), 분류심사와 그 밖에 수용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가족 등을 면담하거나 법원·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회할 수도 있다(수용자처우법 제60조 제1항).

앞에서 살펴본 신입심사와 재심사의 분류조사사항에 대한 조사는 수용기록 확인 및 수형자와의 상담, 수형자의 가족 등과의 면담, 검찰청, 경찰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외부전문가에 대한 의견조회, 그 밖에 효율적인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게 되며(수용자처우법 시행령 제70조), 이밖에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신입심사 대상자 및 그 밖에 처우상 필요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수형자의 인성, 지능, 적성 등의 특성을 측정·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제2항).

제3절 소년조사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소년범에 대한 연구는 주로 비행에 대한 연구나 소년법을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고, 소년조사제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소년조사제도에 초점을 맞춘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소년원에 근무하고 있는 이용성(2011)의 '보호직공무원의 비행소년조사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석사학위 청구논문이 있다. 이 논문은 비행소년조사제도에 대한 문헌 및 자료를 분석하여 비행소년의 조사제도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진단하였으며,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소속으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 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조사관 인정제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소년조사제도와 조사관 인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비행소년조사제도이 개선방안으로 크게 세가지 즉 조사의 전문성 강화(인력의 전문화, 조사방법 및 검사도구의 전문화, 조사관 인정제도의 개선안), 비행소년조사기관의 업무개선(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년원, 법원), 비행소년조사기관간 협력 강화(각 조사기관의 역할조정, 정보시스템 상호연계, 조사대상 범위의 조정)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논문은 보호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조사관 인정제도 중심으로 설문이 이루어졌고, 조사의롸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현황이나 문제점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 다른 학위논문으로는 김용운(2006)의 '소년법상 조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석사학위 청구논문이 있다. 이 논문은 주로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소년법상 조사제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실태 및 문제점 분석과 외국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소년법상 조사제도의 문제점을 크게 이념과 대상의 문제점, 법적·제도적 문제점, 각 조사기관별 문제점으로 분석하고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균형·회복적 사법이념의 도입, 조사대상 범위의 조정, 조사기관간 상호연계성 강화, 조사기관의 전문성 제고, 인권보장 확대, 미결·위탁수용제도 개선, 보호처분 다양화 및 각 조사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연구자도 기술하듯이 문헌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조사 주체인 검사, 판사 및 보호관찰관, 분류심사관 및 소년조사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소년조사제도에 대해 가장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는 이춘화의 '소년사건에서의 조사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박사학위 청구논문(2002a)과 소년조사제도론(2007)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소년사건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조사제도에 대해 조사를 받은 소년범, 특히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소년과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수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법처리과정의 각 단계별로 조사과정에서 경험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다음은 경찰, 검사, 판사, 소년조사관, 보호관찰관, 분류심사관 등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 논문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된다고 지적된 것은 조사의 중복에 따른 문제로써 조사자료의 누적, 조사양식의 일원화, 정보의 공유 방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다만, 10년전에 이 논문에서 되었던 문제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이 외에 조사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제도적 기반조성으로서 관련기관의 협력체제 구축, 검사선의주의에 따른 보완, 처우의 개별화를 위한 기반조성, 처우실태와 추후조사의 실시, 인권과 평등성의 보장, 정책결정자와 담당직원의 인식제고에 대한 개선방안 및 각 조사기관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 논문에서도 검사, 판사, 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가 개선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목적이 있어 개선방안 이외에 조사제도의 문제점이나 조사의 실태에 대해서는 의견을 알아보지 않아 조사주체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개선방안도 구체적이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심판전조사뿐만 아니라 심판후조사인 소년원의 분류심사, 교도소·구치소의 분류심사까지 다루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법적인 성격이나 조사의 목적, 조사의 주체 및 효과가 크게 다르지 않은 심판전조사만을 다루었다.

소년조사제도에 대한 초기 논문으로는 1991년 서울가정법원에 근무한 유진식의 '소녀조사관제도의 분석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이 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으로는 종합적 조사기관의 설치(가칭 국립고학조사연구원)를 통한 소년조사관 직제상의 문제점 개선, 조사방법의 개선(면접 이외의 관찰이나 심리검사 활용), 조사기능의 활성화(전건 조사제의 실시, 인테이크제의 도입, 시험관찰제의 시행), 조사관 능력의 개발화(교육·훈련·국외연수 등 이수, 사기앙양책

의 강구) 등 이다. 20년 전에도 조사관 능력을 개발하여 인간관계에 대한 전문지식과 과학적인 조사기법을 배양하고 자질를 향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특히 유진식은 "일본최고재판소 조사관연수소(調査官研修所)에서는 매년 50명씩 신규조사관을 선발하여 2년간 연수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신규 채용된 조사관에게는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상당수의 전문조사관을 양성시키고 재직중인 조사관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훈련을 받도록 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1985년 서울가정법원의 박태영은 '조사업무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가정법원의 구성확충과 증설, 조사관의 대폭 증원, 조사관의 전문화(법원공무원 교육원에서 일반법률과목이 아닌 전문과목 교육 실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위탁교육), 조사환경의 개선(독립된 조사실 확보), 조사보고서 양식의 개선(보다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불필요한 항목 삭제, 필요한 항목 추가 등)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현재에는 이 당시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도 있다. 유진식과 박태영의 논문은 주로 법원 조사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루었다.

이와 관련해서 김지선(2000)은 '소년보호처분유형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소년보호처분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 소년 조사제도를 지적하였다. 소년 조사관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소년법원이 소년의 정신적·심리적 상태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의 진단과 의견을 참작하거나 병원에 위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며 소년 조사관의 인원부족과 소년 조사관 활동에 대한 소년부 판사의 신뢰성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는 소년은 주로 피의자 신문조사나 진술조사에 의존하나 이 자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처분결정을 하기 이전에 요보호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는 부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보가 누락된 경우와 누락되지 않은 경우에 처분에 큰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소년 조사관제도의 적극 활용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 소년조사제도와 관련된 연구로는 조윤오(2010)의 '법무부 조사제도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분류심사서 최종의견 결정 요인을 중심으로'라는 연

구가 있다. 이 연구는 분류심사원의 전문 조사관들이 실제 작성한 808건의 분류심사서를 분석하여 분류심사원의 조사관의 최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사용이 편리하고, 과학적이며 전문화된 체크리스트 방식의 분류심사서를 만들기 위한 사전 과정으로 시도되었다. 연구자는 "무조건적인 외국의 평가서 번역사용은 우리나라의 소년범죄의 발생현황과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고위험 소년을 계속 범죄의 길로 고착화시키거나 저위험 소년을 잘못 구금시키는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분류심사서 양식 및 작성 절차, 고위험 선정 요인 등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토의로 조사제도의 전문성 확보를 강조하였다.

이 외에는 소년조사제도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소년사법제도(김은경 외, 2007; 법무부 2005a, 2005b, 2008; 송인택 2008; 원혜욱, 2003; 장영민・김구슬 2005)나 소년범의 사법처리과정(강영철, 1999; 도중진・이순래・이천현, 2005; 민학기 1997; 유학희, 2009; 천진호 2008; 최병각・오영근, 1995; 허경미 2005)을 다룬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판결전조사 분석(법무부, 2006)과 분류심사(김준호・이동원 1994; 원혜욱, 2002; 이창재, 2002; 이춘화, 2002a, 2009b; 최석윤, 2008), 검사 결정전조사(이춘화, 2009a; 홍영오・노성호・이수정・고려진; 2009) 등과 같이 조사유형별로 통계와 조사서를 분석한 자료들이 있다.

제3장

우리나라의 소년조사제도 운영현황

홍 영 오

03

우리나라의 소년조사제도 운영현황

본 장에서는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한 「범죄백서」와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범죄분석」,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사법연감」을 중심으로 공식통계분석을 통해 소년조사제도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소년조사제도의 현황에 앞서 소년범의 인원 및 전체 범죄인원 중 점유비율, 연령별 소년의 형법범 인원 및 소년인구 10만명당 범죄자 수 등 소년범의 현황과 추세를 분석하였다.

다음은 소년범을 대상으로 한 각종 조사제도의 연도별, 조사주체별 조사현황을 분석하였다. 보호관찰관의 검사 결정전조사, 법원 결정전조사 및 판결전조사의 조사수행 현황, 그리고 분류심사관의 분류심사, 상담조사, 검사 결정전조사 수행현황, 마지막으로 법원 소년조사관의 소년범 대상 조사수행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 조사 주체별로 인원 및 교육실시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1절 소년범죄의 발생 현황

1. 소년범죄 발생 현황

최근 10년 동안 전체 소년범 인원 및 전체 범죄인원(처분인원 기준) 중 점유비율을 〈표 3-1〉에 제시하였다. 전체 소년범은 2000년 143,643명을 기록한 이후

2005년 67,478명에 이르기까지 계속 감소하였다가 2006년 69,211명, 2007년 88,104명, 2008년 134,992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2009년에는 113,022명으로 전년대비 1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8년 6월 22일 시행된 개정소년법에 따라 소년범의 나이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변경되어 연령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감소된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19세(19,429명)를 포함할 경우에는 132,451명으로 2008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89,776명으로 2009년에 비해 20.6%가 감소하였다. 2010년에 19세(18,570명)를 포함할 경우에도 108,346명으로 나타나, 2009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년범은 2005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이후에는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되었다. 19세를 포함하여 계산했을 경우에도 2008년 이후에는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전체 소년범 인원 및 전체 범죄인원 중 점유비율(2000년 ~ 2009년)

구분	전체소년범	소년형법범	소년특별법범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범죄인원 중 점유비율(%)
2000	143,643	94,465 (65.8%)	49,178 (34.2%)	0.3	6.8
2001	130,983	82,746 (63.2%)	48,237 (36.8%)	-8.8	5.6
2002	115,423	75,982 (65.8%)	39,441 (34.2%)	-11.9	5.0
2003	96,085	67,135 (70.0%)	28,950 (30.0%)	-16.8	4.2
2004	72,770	51,298 (70.5%)	21,472 (29.5%)	-24.3	3.2
2005	67,478	50,652 (75.1%)	16,826 (24.9%)	-7.3	3.4
2006	69,211	50,846 (73.5%)	18,365 (26.5%)	2.6	3.7
2007	88,104	60,426 (68.6%)	27,678 (31.4%)	27.3	4.5
2008	134,992	79,766 (59.1%)	55,226 (40.9%)	53.2	5.5
2009	113,022	81,378 (72.0%)	31,644 (28.0%)	-16.3	4.5
2010	89,776	70,045 (78.0%)	19,731 (22.0%)	- 20.6	4.6

* 출처: 범죄백서(법무연수원, 2010), 범죄분석(대검찰청, 201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은 형법범에 포함
* 소년범의 나이: 2000년에서 2008년까지는 12세~19세, 2009년 이후에는 2008.6.22. 시행된 개정 소년법에 따라 10세~18세

전체 범죄인원 중 소년범의 점유비율은 2000년 6.8%에서 2004년 3.25%에 이르기까지 계속 감소하였다가 2008년 5.5%에 이르기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였다. 2008년 6월 22일 시행된 개정소년법에 따라 소년범의 나이기준이 19세에서 18

세로 변경된 2009년에는 4.5%로 전년에 비해 1.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에는 4.6%로 전년에 비해 0.1%p 증가하였다.

소년범죄자 형법범과 특별법범의 구성비율을 분석한 결과, 2000년 65.8%를 기록한 이후 2002년까지는 60%대를 유지하다가 2003년 처음으로 70%에 올랐고, 이후 2006년까지 705대를 유지하였다. 2007년 68.6%롤 감소하였고, 2008년에는 59.1%까지 감소하였다가 소년범의 나이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변경된 2009년에는 다시 72%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78%로 나이기준이 바뀐 이후에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소년·성인별 형법범 인원 및 인구비를 〈표 3-2〉에 제시하였다. 소년 형법범은 2000년 94,485명을 기록한 이후 2005년 50,652명에 이르기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 이후에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비 역시 2000년에 소년 인구 10만명당 1,658.3명을 기록한 이후 2005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2008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였 다. 소년범의 나이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변경된 2009년에는 인구10만명당 1,357.6명이었고, 2010년에는 1,179.9명으로 감소하였다. 전체 형법범 중 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11%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2004년까지 감소하다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였다. 소년범의 나이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변경된 2009년에는 전년에 비해 0.5%p 감소하였고, 2010년에는 7.7%로 전년에 비해 0.1%p 감소하였다.

표 3-2 소년·성인별 형법범 인원 및 인구비(2000년~2009년)

구분 / 연도	소년			성인	
	인원	소년비	인구비	인원	인구비
2000	94,465 (100)	9.9	1,653.8	858,147 (100)	2,580.5
2001	82,746 (88)	11.0	1,512.7	857,831 (100)	2,531.3
2002	75,982 (80)	8.6	1,440.0	802,645 (94)	2,328.4
2003	67,135 (71)	6.5	1,298.1	958,005 (112)	2,736.6
2004	51,298 (54)	6.1	995.5	795,848 (93)	2,245.9
2005	50,652 (54)	6.4	975.1	743,640 (87)	2,079.5
2006	50,846 (54)	6.5	971.3	736,149 (86)	2,035.8
2007	60,426 (64)	7.8	1,141.7	719,194 (84)	1,969.0
2008	79,766 (84)	8.3	1,491.7	876,977 (102)	2,378.4
2009	81,378 (86)	7.8	1,357.6	963,064 (112)	2,587.8
2010	70,045 (74)	7.7	1,179.9	833,966 (97)	2,182.1

* 출처: 범죄백서(법무연수원, 2010), 범죄분석(대검찰청, 2011)

* ( )안은 지수로서 2000년의 인원을 100으로 했을 때의 인원
* 소년범의 나이: 2000년에서 2008년까지는 12세~19세, 2009년 이후에는 2008.6.22. 시행된 개정 소년법에 따라 10세~18세
* 인구비는 소년인구 10만명당 범죄자수(단, 연도별 소년범의 나이를 기준으로 함)
* 소년비는 (소년범/(소년범 + 성인범) X 100)

연령층별로 소년 형법범의 인원 및 인구비를 〈표 3-3〉에 제시하였다. 14세 미만은 2000년 978명에서 2001년 1,125명으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2005년, 2006년, 2007년에는 100명대로 감소하였다가 2008년 346명으로 증가하였고, 소년범의 나이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변경된 2009년에는 244명, 2010년에는 147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에 비해 14~15세는 2000년 25,198명에서 2008년 30,031명, 2009년 31,784명으로 증가하였다. 16~17세는 2000년 32,586명을 기록한 이후 2008년까지는 1~2만명대였으나 2009년 35,013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10년 31,208명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18~19세는 2000년 35,703명에서 2008년 20,493명으로 감소하였다. 개정된 소년법에 따라 나이 기준이 18세로 바뀐 이후인 2009년에는 14,337명, 2010년에는 14,480명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표 3-3 소년 형법범 연령층별 현황(2000년~2010년)

연령 / 연도	계	14세 미만		14세~15세		16세~17세		18~19세	
		인 원	인구비	인 원	인구비	인 원	인구비	인 원	인구비
2000	94,465 (100)	978 (1.0)	79.3	25,198 (26.7)	1,934.2	32,586 (34.5)	2,173.8	35,703 (37.8)	2,129.9
2001	82,746 (100)	957 (1.1)	77.4	20,488 (24.4)	1,630.8	27,291 (32.6)	1,975.9	34,010 (40.6)	2,130.3
2002	75,982 (100)	1,125 (1.5)	89.4	19,262 (25.3)	1.561.4	25,137 (33.1)	1,934.0	30,458 (40.1)	2,051.9
2003	67,135 (100)	891 (1.3)	68.2	18,265 (27.2)	1,480.6	22,409 (33.4)	1,779.6	25,570 (38.1)	1,861.6
2004	51,298 (100)	523 (1.0)	38.5	13,931 (27.2)	1,109.1	16,485 (32.1)	1,338.1	20,359 (39.7)	1,559.0
2005	50,652 (100)	198 (0.3)	14.2	24,420 (48.2)	1,881.1	17,098 (33.8)	1,391.1	16,586 (32.7)	1,303.3
2006	50,846 (100)	190 (0.3)	13.5	18,941 (37.2)	1,404.6	17,612 (34.6)	1,412.2	14,103 (27.7)	1,142.7
2007	60,426 (100)	195 (0.3)	14.0	23,890 (39.5)	1,725.7	21,233 (35.1)	1,650.8	15,108 (25.0)	1,232.0
2008	79,766	346	24.8	30,031	2,107.7	28,896	2,026.4	20,493	1,618.5

연령 / 연도	계	14세 미만		14세~15세		16세~17세		18~19세	
		인 원	인구비	인 원	인구비	인 원	인구비	인 원	인구비
	(100)	(0.4)		(37.7)		(36.2)		(25.7)	
2009	81,378 (100)	244 (0.3)	9.4	31,784 (39.1)	2,293.8	35,013 (43.0)	2,552.7	14,337 (17.6)	2,189.0
2010	70,045 (100)	147 (0.2)	5.8	24,210 (34.6)	1,777.4	31,208 (44.5)	2,533.3	14,480 (20.7)	2,123.1

* 출처: 범죄백서(법무연수원), 범죄분석(대검찰청)
* ( )안은 분포백분율
* 소년범의 나이: 2000년에서 2008년까지는 12세~19세, 2009년 이후에는 2008.6.22. 시행된 개정 소년법에 따라 10세~18세
* 인구비는 소년인구 10만명당 범죄자수(단, 연도별 소년범의 나이를 기준으로 함)

소년인구 10만명당 범죄자수를 살펴 보면, 2009년에는 14세 미만 9.4명, 14~15세 2,293.8명, 16~17세 2,552.7명, 18세 2,189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14세 미만 5.8명, 14~15세 1,777.4명, 16~17세 2,533.3명, 18세 2,123.1명으로 나타나 16~17세에 소년인구 10만명당 범죄자 수가 가장 많았고, 전년에 비해서는 14세 미만과 14~15세의 인구비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비를 살펴 보면, 2000년에는 14세 미만 1.0%, 14~15세 26.7%, 16~17세 34.5%, 18~19세 37.8%로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으며, 19세가 제외된 2009년에는 14세 미만 0.3%, 14~15세 39.1%, 16~17세 43.0%, 18세 17.6%로 나타나, 19세가 제외되면서 16~17세와 14~15세의 비중이 다소 높아졌다. 2010년에는 14세 미만 0.2%, 14~15세 34.6%, 16~17세 44.5%, 18~19세 20.7%로 전년에 비해 18세의 구성비는 다소 증가하였고, 14~15세의 비중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소년 형법범죄의 유형별 구성비를 살펴보았다(〈표 3-4〉 참조). 크게 강력(흉악)범죄, 강력(폭력)범죄, 재산범죄의 세가지 유형으로 살펴본 결과, 2002년까지는 강력(폭력)범죄의 구성비가 가장 높았으나, 2003년 이후에는 재산범죄의 구성비가 가장 높았다. 유형별로는 먼저 강력(흉악)범죄는 2000년 3.9%에서 2009년까지 3%대를 유지하였으나, 2010년에는 4.4%를 보였다. 강력(폭력)범죄는 2000년 57.2%, 2001년 58.7%, 2003년 50%를 보인 이후 2004년 46.8%로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하였다. 이후에는 3~40%대를 반복하였으며, 2008년 42.7%를 기

록한 이후 2009년 36.2%, 2010년 33.2%로 감소추세에 있다. 재산범죄는 2000년 36.9%를 2001년 35.6%를 기록한 이후 2002년 45%에서 2006년 58%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며, 2007년 55.9%, 2008년 49.8%로 감소하였다. 2009년 다시 56.2%, 2010년 57.8%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4 소년 형법범죄의 유형별 구성비(2000년~2010년)

구분	계	강력(흉악)범죄		강력(폭력)범죄		재산범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2000	95,335	3,799	3.9	54,556	57.2	35,196	36.9
2001	83,572	3,015	3.6	49,052	58.7	29,723	35.6
2002	75,982	2,323	3.0	37,872	50.0	34,151	45.0
2003	67,135	2,359	3.5	31,401	46.8	32,009	47.7
2004	51,298	1,708	3.3	21,788	42.5	26,429	51.3
2005	50,652	1,549	3.1	21,009	41.5	26,848	53.0
2006	50,846	1,857	3.7	18,104	35.6	29,506	58.0
2007	60,426	1,928	3.2	23,275	38.5	33,659	55.9
2008	79,766	3,016	3.8	34,067	42.7	39,688	49.8
2009	81,378	3,182	3.9	29,488	36.2	45,774	56.2
2010	70,045	3,106	4.4	23,276	33.2	40,478	57.8

* 출처: 범죄백서(법무연수원), 범죄분석(대검찰청)
* 강력범(폭력) :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폭처법위반 포함
* 강력범(흉악) :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다음은 소년범죄자의 전과여부를 살펴보았다(〈표 3-5〉 참조). 소년범죄자 중 전과가 없는 범죄자의 비율은 2000년 64.5%에서 2010년 61.7%에 이르기까지 60%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에는 다소 감소추세에 있고, 전과자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범 이상자의 비율이 2008년 7.1%에서 2009년 8.8%, 2010년 10.7%로 증가하고 있다.

표 3-5 소년범죄자의 전과현황 (2000년~2010년)

(단위: 명(%))

구분	계	전과없음	전과			
			1범	2범	3범	4범 이상
2000	140,893 (100)	90,875 (64.5)	22,608 (16.0)	11,311 (8.0)	6,536 (4.5)	9,563 (7.0)
2001	128,430 (100)	80,942 (63.0)	20,942 (16.3)	10,342 (8.0	6,218 (4.8)	9,986 (7.7)
2002	112,812 (100)	71,662 (63.5)	18,326 (16.2)	9,036 (8.2)	5,046 (4.5)	8,742 (7.7)
2003	94,038 (100)	61,025 (64.9)	14,751 (15.7)	7,263 (7.7)	4,106 (4.4)	6,893 (7.3)
2004	68,803 (100)	44,267 (64.3)	11,187 (16.2)	5,227 (7.6)	3,138 (4.6)	4,984 (7.2)
2005	62,932 (100)	42,017 (66.8)	9,307 (14.8)	4,601 (7.3)	2,672 (4.2)	4,335 (6.9)
2006	64,225 (100)	44,236 (68.9)	9,193 (14.3)	4,124 (6.4)	2,428 (3.8)	4,244 (6.6)
2007	81,090 (100)	55,543 (68.5)	11,540 (14.2)	5,332 (6.6)	3,090 (3.8)	5,585 (7.2)
2008	114,699 (100)	79,285 (69.1)	15,476 (13.5)	7,553 (6.6)	4,299 (3.7)	8,086 (7.1)
2009	102,573 (100)	65,990 (64.3)	15,103 (14.7)	7,637 (7.4)	4,799 (4.7)	9,044 (8.8)
2010	82,368 (100)	50,830 (61.7)	12,091 (14.7)	6,546 (7.9)	4,070 (4.9)	8,831 (10.7)

* 출처: 범죄백서(법무연수원), 범죄분석(대검찰청)
* 주 : 미상은 제외

2. 소년범죄자 처리현황

가. 검찰처리현황

2000년 이후의 소년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리현황을 살펴본 결과(〈표 3-6〉 참조), 2000년에는 기소 30.7%, 불기소 50.4%, 소년부송치 17%로 불기소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기소, 소년부 송치의 순이었다. 하지만 2005년 기소 16.8%, 불기소 60%, 소년부 송치 20.1%로서 처음으로 소년부 송치의 비율이 기소 비율보다 높았고, 그 이후에는 현재까지 이 순서가 이어지고 있다. 2010년에는 기소 6.1%, 불기소 58.7%, 소년부 송치 33.6%로 나타나 기소율이 2000년에 비해 1/5수준으로 낮아졌고, 소년부 송치율은 거의 배 이상 높아졌다.

표 3-6 연도별 소년범죄자의 검찰처리현황

(단위: 명(%))

연도	계	기 소			불 기 소			소년부 송 치	가정 보호 송치	기타
		소 계	구공판	구약식	소 계	기소유예	기타			
2000	143,643 (100.0)	44,095 (30.7)	12,398 (8.6)	31,697 (22.1)	72,464 (50.4)	61,920 (43.1)	10,544 (7.3)	24,435 (17.0)	33 (0.0)	2,616 (1.8)
2001	130,983 (100.0)	42,884 (32.7)	9,646 (7.4)	33,238 (25.4)	63,994 (48.9)	53,493 (40.8)	10,501 (8.0)	21,221 (16.2)	62 (0.0)	2,822 (2.2)
2002	115,423 (100.0)	35,073 (30.4)	7,694 (6.7)	27,379 (23.7)	58,132 (50.4)	46,984 (40.7)	11,148 (9.7)	18,925 (16.4)	22 (0.0)	3,271 (2.8)
2003	96,085 (100.0)	23,938 (24.9)	5,743 (6.0)	18,195 (18.9)	51,163 (53.7)	41,953 (43.7)	9,660 (10.1)	17,208 (17.9)	37 (0.0)	3,289 (3.4)
2004	72,770 (100.0)	17,045 (23.4)	3,632 (5.0)	13,413 (18.4)	40,617 (55.8)	33,128 (45.5)	7,489 (10.3)	12,040 (16.5)	26 (0.0)	3,042 (4.2)
2005	67,478 (100.0)	11,350 (16.8)	2,771 (4.1)	8,579 (12.7)	40,486 (60.0)	33,683 (49.9)	6,803 (10.1)	13,555 (20.1)	10 (0.0)	2,077 (3.1)
2006	69,211 (100.0)	9,315 (13.5)	2,496 (3.6)	6,819 (9.9)	43,495 (62.8)	36,808 (53.2)	6,687 (9.7)	14,105 (20.4)	20 (0.0)	2,276 (3.3)
2007	88,104 (100.0)	10,367 (11.8)	2,815 (3.2)	7,552 (8.6)	54,424 (61.8)	44,689 (50.7)	9,735 (11.1)	21,368 (24.3)	22 (0.0)	504 (2.1)
2008	134,992 (100.0)	15,150 (11.2)	4,823 (3.6)	10,327 (7.6)	88,932 (65.9)	62,977 (46.7)	25,955 (19.2)	28,360 (21.0)	30 (0.0)	2,520 (1.9)
2009	113,022 (100.0)	7,795 (6.9)	3,929 (3.5)	3,866 (3.4)	71,100 (62.9)	56,715 (50.2)	14,385 (12.6)	32,453 (28.7)	37 (0.0)	1,637 (1.4)
2010	89,776 (100.0)	5,443 (6.1)	1,368 (1.5)	1,527 (1.7)	52,685 (58.7)	42,021 (46.8)	10,664 (11.9)	30,143 (33.6)	9 (0.0)	1,496 (1.7)

* 출처: 범죄분석(대검찰청)

나. 법원처리현황

소년범죄자의 법원 처리 현황을 살펴보았다. 단, 소년범죄자는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결과를 분석한 결과(〈표 3-7〉 참조), 2000년에는 정기형 8.7%, 부정기형 12.7%, 집행유예 30.9%, 소년부 송치 31.8%로 나타나 소년부 송치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집행유예, 부정기형의 순이었다. 2001년에서 2007년까지는 정기형의 비율이 0%(0.2%~0.9%)대를 보였으나 2008년 4.3%, 2009년 7.5%, 2010년 8.9%로 다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소년부 송치율은 2008년 34.2%, 2009년 32%, 2010년 29.9%로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7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결과

(단위: 명(%))

연도	계	무기형	정기형	부정기형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무죄	소년부송치	기타
2000	17,446 (100.0)	16 (0.1)	1,514 (8.7)	2,209 (12.7)	5,391 (30.9)	1,369 (7.8)	159 (0.9)	69 (0.4)	5,545 (31.8)	1,171 (6.7)
2001	9,483 (100.0)	-	70 (0.7)	2,039 (21.5)	2,875 (30.3)	564 (5.9)	61 (0.6)	10 (0.1)	3,375 (35.6)	489 (5.2)
2002	8,305 (100.0)	1 (0.0)	73 (0.9)	1,876 (22.6)	2,549 (30.7)	631 (7.6)	44 (0.5)	10 (0.1)	2,755 (33.2)	366 (4.4)
2003	5,961 (100.0)	-	26 (0.4)	1,266 (21.2)	2,014 (33.8)	472 (7.9)	39 (0.7)	10 (0.2)	1,886 (31.6)	248 (4.2)
2004	5,212 (100.0)	1 (0.0)	25 (0.5)	956 (18.3)	1,795 (34.4)	503 (9.7)	53 (1.0)	15 (0.3)	4,192 (28.6)	372 (7.1)
2005	4,296 (100.0)	-	18 (0.4)	659 (15.3)	1,223 (28.5)	420 (9.8)	48 (1.1)	14 (0.3)	1,565 (36.4)	349 (8.1)
2006	3,543 (100.0)	-	18 (0.5)	624 (17.6)	934 (26.4)	367 (10.4)	54 (1.5)	9 (0.3)	1,265 (35.7)	272 (7.7)
2007	4,151 (199.0)	1 (0.0)	10 (0.2)	671 (16.2)	1,129 (27.2)	362 (8.7)	57 (1.4)	10 (0.2)	1,597 (38.5)	314 (7.6)
2008	5,026 (100.0)	-	215 (4.3)	531 (10.6)	1,504 (29.9)	554 (11.0)	55 (1.1)	14 (0.3)	1,717 (34.2)	436 (8.7)
2009	6,160 (100.0)	-	462 (7.5)	587 (9.5)	1,828 (29.7)	681 (11.1)	93 (1.5)	20 (0.3)	1,971 (32.0)	518 (8.4)
2010	5,294 (100.0)	-	472 (8.9)	503 (9.5)	1,577 (29.8)	590 (11.1)	85 (1.6)	25 (0.5)	1,584 (29.9)	458 (8.7)

* 출처 : 사법연감(법원행정처)의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20세미만자 재판 인원수표 참고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처분결과를 분석한 결과(〈표 3-8〉 참조), 2000년에는 2호처분(단기보호관찰)이 3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호처분(장기보호관찰)이 29.4%, 1호처분(보호자감호위탁)의 순이었다. 2001년에서 2005년까지는 3호처분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호처분, 1호처분의 순이었다가, 2007년과 2008년에는 다시 3호, 2호, 1호 처분의 순이었다. 2007년 12월 개정된 소년법에 따라 7개에서 10개의 보호처분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1호처분과 4호처분, 1호처분과 5호처분 등으로 병합처분의 비율이 50%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이 1호 처분으로 10%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불개시 처분은 2000년에서 2005년에 이르기까지 10%미만이었으나, 2006년 13.2%로 10%를 넘은 이후에는 2007년 16.8%, 2008년 17.2%, 2009년 15.4%, 2010년 16.3%에 이르기까지 15%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표 3-8 소년보호사건 처분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	계	보호처분								불처분	심리불개시	기타
		소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2000	35,342 (100)	32,270 (91.3)	7,385 (20.8)	10,783 (30.5)	10,404 (29.4)	896 (2.5)	10 (0.0)	1,502 (4.2)	1,290 (3.6)	1,322 (3.7)	1,512 (4.2)	238 (0.7)
2001	30,496 (100)	27,314 (89.6)	6,057 (19.9)	8,818 (29.4)	8,981 (29.4)	717 (2.4)	7 (0.0)	1,420 (4.7)	1,314 (4.3)	1,255 (4.1)	1,798 (5.9)	129 (0.4)
2002	26,677 (100)	24,048 (90.1)	4,487 (16.8)	7,873 (29.5)	8,334 (31.2)	879 (3.3)	5 (0.0)	1,322 (5.0)	1,148 (4.3)	1,268 (4.8)	1,120 (4.2)	241 (0.9)
2003	26,484 (100)	22,569 (85.2)	4,869 (18.1)	7,388 (27.9)	7,652 (28.9)	534 (2.0)	–	1,177 (4.2)	1,012 (4.1)	1,224 (4.6)	2,448 (9.2)	243 (0.9)
2004	22,678 (100)	19,958 (88.0)	3,353 (14.8)	6,642 (29.3)	7,329 (32.3)	547 (2.0)	–	1,027 (4.5)	1,060 (4.7)	1,106 (4.9)	1,431 (6.3)	173 (0.8)
2005	24,303 (100)	21,135 (87.0)	4,166 (17.1)	6,906 (28.4)	7,479 (30.7)	557 (2.4)	5 (0.0)	1,053 (4.3)	949 (3.9)	1,228 (5.1)	1,758 (7.2)	182 (0.7)
2006	25,262 (100)	20,241 (80.1)	4,596 (18.1)	7,013 (27.8)	6,426 (25.4)	462 (1.8)	10 (0.0)	883 (3.3)	851 (3.4)	1,512 (6.0)	3,344 (13.2)	156 (0.0)
2007	35,514 (100)	26,874 (75.7)	6,536 (18.4)	10,425 (29.4)	7,648 (21.5)	478 (1.3)	27 (0.1)	957 (2.7)	803 (2.3)	2,056 (5.8)	5,957 (16.8)	627 (1.8)

	계	소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병합	불처분	심리불개시	기타
2008	39,532 (100)	30,222 (76.4)	6,214 (15.7)	130 (0.3)	181 (0.5)	–	10 (0.0)	410 (1.0)	–	6 (0.0)	762 (1.9)	857 (2.2)	21,652 (54.8)	2,020 (5.1)	6,801 (17.2)	489 (1.3)
2009	47,865 (100)	35,819 (74.8)	5,883 (12.2)	71 (0.1)	268 (0.6)	23 (0.0)	2 (0.0)	128 (0.3)	100 (0.2)	22 (0.0)	919 (1.9)	992 (2.1)	27,411 (57.3)	3,041 (6.4)	7,377 (15.4)	1,628 (3.4)
2010	45,090 (100)	32,416 (71.9)	4,527 (10.0)	37 (0.1)	116 (0.3)	34 (0.1)	13 (0.0)	73 (0.2)	81 (0.2)	11 (0.0)	861 (1.9)	806 (1.8)	25,857 (57.3)	3,105 (6.9)	7,338 (16.3)	2,231 (4.9)

* 주 : 2007년 이전의 2호 및 3호 처분은 타처분과 병합된 인원수임. 다만, 2008년 이후의 병합처분은 별도 분리함.

* 출처 :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3. 소년범죄자 시설내 처우 현황

소년범죄자의 시설내 처우현황을 살펴보았다(〈표 3-9〉 참조). 먼저 소년교도소의 수형인원을 살펴본 결과, 2000년 1,782명에서 2004년 1,478명에 이르기까지 계속 1,000명을 넘었으나, 2004년 641명, 2008년 156명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2009년에는 1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 수용인원은 2000년 2,931명에서 2003년까지 2,0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04년 1,804명, 2006년 1,468명에 이르기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07년 1,511명, 2008면 1,732명으로 증가추세

를 보이다가 2009년에는 2,775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소년교도소 수형인원 및 소년원의 수용인원

(단위: 명(%))

연 도	소년교도소 수형인원	소년원 수용인원			1일평균 수용인원
		계	남 자	여 자	
2000	1,782	2,931	2,750 (93.8)	181 (7.6)	2,197
2001	1,470	2,738	2,565 (93.7)	173 (7.6)	2,713
2002	1,122	2,415	2,215 (91.7)	200 (7.6)	2,045
2003	1,476	2,101	1,928 (91.8)	173 (8.2)	1,758
2004	641	1,804	1,661 (92.1)	143 (7.9)	1,563
2005	427	1,543	1,395 (92.1)	148 (9.6)	1,464
2006	356	1,468	1,284 (87.4)	184 (12.5)	1,118
2007	657	1,511	1,293 (85.6)	218 (14.4)	1,503
2008	156	1,732	1,415 (81.7)	317 (18.3)	1,161
2009	169	2,775	2,337 (84.2)	438 (15.8)	1,191

* 출처 : 범죄백서(법무연수원)

제2절 형사사법단계별 소년조사제도 운영실태

1. 조사현황

먼저 최근 보호관찰관에 의한 조사현황을 〈표 3-10〉에 제시하였다. 성인까지 포함했을 경우 2009년에 청구전조사 304건, 검사 결정전조사 3,670건, 판결전조사 3,597건, 법원 결정전조사 4,234건, 환경조사 2,009건 등 총 13,814건을 조사하였고, 2010년에는 청구전조사 1,376건, 소급청구전조사 2,251건, 검사 결정전조사 4,524건, 판결전조사 1,599건, 법원 결정전조사 6,399건, 환경조사 1,739건 등 총 17,885건을 조사하여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2011년에는 8월 현재 청구전조사 1,421건, 소급청구전조사 591건, 검사 결정전조사 2,817건, 판결전조사 1,110건, 법원 결정전조사 5,684건, 환경조사 924건 등 총 12,547건을 조사하였다.

보호관찰관에 의한 소년범만의 조사현황을 살펴보면, 법원의 결정전조사는

2009년 3.274건에서 2010년 5,758건, 2011년 8월 현재 5,270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검사 결정전조사 역시 2009년 3,670건에서 2010년 4,524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판결전조사는 2009년 1,178건에서 2010년 701건, 2011년 8월 현재 498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판결전조사의 감소는 법원에서 법원조사관에게 의뢰하면서 보호관찰관에게 의뢰하는 조사건수를 줄였기 때문이다.

표 3-10 보호관찰의 조사 현황 (성인 vs. 소년)

(단위: 건)

구분 \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9월		
	전체	소년	성인	전체	소년	성인	전체	소년	성인
청구전조사	304	19	285	1,376	100	1,276	1,421	127	1,294
소급청구전조사	-	-	-	2,251	-	2,251	591	-	591
검사결정전조사	3,670	3,670	-	4,524	4,524	-	2,817	2,817	-
판결전조사	3,597	1,178	2,419	1,598	701	897	1,110	498	612
법원결정전조사	4,234	3,274	960	6,398	5,758	640	5,684	5,270	414
환경조사	2,009	N/A	N/A	1,738	N/A	N/A	924	N/A	N/A
계	13,814			17,885			12,547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2011

범죄유형별로 판결전조사 접수사건을 살펴보면(〈표 3-11〉 참조), 판결전조사는 절도사범이 26.78%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사범(15.2%), 폭력사범(14.2%), 강력사범(10.6%)의 순이었다. 법원 결정전조사는 폭력사범이 65.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이 절도사범(16.6%), 교통사범(7.6%)의 순이었다. 검사 결정전조사는 절도사범이 4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폭력사범(34.7%), 교통사범(7.1%), 성폭력사범(5.7%)의 순이었다.

표 3-11 조사유형별 접수사건의 사범현황(2008년)

(단위: 명)

구분	폭력	교통	절도	사기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계
판결전조사	611 (14.2%)	387 (9.0%)	1,143 (26.7%)	119 (2.7%)	457 (10.6%)	105 (2.4%)	57 (1.3%)	651 (15.2%)	35 (0.8%)	708 (16.5%)	4,273
법원 결정전조사	2,182 (65.9%)	252 (7.6%)	551 (16.6%)	14 (0.4%)	24 (0.7%)	32 (0.9%)	19 (0.5%)	50 (1.5%)	2 (0%)	185 (5.5%)	3,311

구분	폭력	교통	절도	사기	강력	마약	풍속	성폭력	경제	기타	계
검사 결정전조사	492 (34.7%)	101 (7.1%)	586 (41.4%)	43 (3.0%)	17 (1.2%)	1 (0%)	9 (0.6%)	82 (5.7%)	6 (0.4%)	78 (5.5%)	1,415
청구전조사	1 (1.0%)	–	–	–				91 (98.9%)			92
계	3,285	740	2,280	176	498	133	85	874	43	971	9,091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11). 2010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 판결전조사는 성인포함. 청구전조사는 성인만.

소년사건만을 대상으로 판결전조사의 사범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표 3-12〉 참조), 절도사범이 4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폭력사범(15.7%), 성폭력사범(14.6%), 강력사범(11.4%), 교통사범(7.4%)의 순이었다.

종합적으로, 사범별 조사현황을 살펴본 결과 폭력사범과 절도사범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성폭력사범과 교통사범의 순이었다.

표 3-12 소년사건 판결전조사 접수사건의 사범현황(2008년)

(단위: 명(%))

소년	계
폭력사범	205(15.7)
교통사범	97(7.4)
절도사범	570(43.8)
사기횡령사범	9(0.6)
강력사범	149(11.4)
마약사범	7(0.5)
풍속사범	–
성폭력사범	190(14.6)
경제사범	–
기타사범	73(5.6)
계	1,300(100.)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11). 2010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다음은 분류심사원에 의한 소년범 조사현황이다(〈표 3-13〉 참조). 분류심사는 2005년 4,281명에서 2009년 5,627건, 2010년 5,723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상담조사 역시 2005년 1,890명에서 2009년 5,106명, 2010년 5,301건, 2011년 8월 현재 3,506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표 3-13 분류심사관의 조사 현황

(단위: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8
분류심사	4,281	3,839	4,640	5,198	5,627	5,723	3,732
상담조사	1,890	3,135	4,437	5,952	5,106	5,301	3,506
대안교육	1,423	1,710	3,974	6,410	7,348	12,862	-
합 계	7,594	8,684	13,051	16,990	18,081	23,886	-

* 출처: 소년보호통계(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0),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자료.
* 대안교육 : 일반학교에서 의뢰한 학교부적응 학생, 검찰에서 의뢰한 조건부기소유예 대상자, 법원에서 의뢰 또는 결정한 교육대상자에게 실시하는 3일, 5일, 10일 과정의 체험중심 인성교육임.

다음은 서울가정법원 소년조사관의 조사현황을 살펴본 결과(〈표 3-14〉 참조), 2010년에는 총 1,128건 중 일반조사가 34.3%로 가장 많았고, 교육 33%, 청소년법정이 12.5%였다. 2011년10월 27일 현재 총 1,144건 중 일반조사가 40%로 가장 많았고, 교육 27.9%, 청소년법정 12.9%였다.

표 3-14 조년조사관의 조사 현황

(단위: 명(%))

구분	심리 상담	화해 권고	청소년법정	교육	일반 조사	집행	전문가진단	통고	계
2010	111(9.8)	53(4.7)	141(12.5)	372(33.0)	387(34.3)	42(3.7)	22(2.0)	0(0.)	1,128
2010.10	77(6.7)	33(2.9)	148(12.9)	319(27.9)	458(40.0)	98(8.6)	7(0.6)	4(0.4)	1,144

* 서울가정법원의 통계임.

2. 조사인력 현황

보호관찰소 중 조사과라는 직제가 설치된 기관은 전국적으로 9곳(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창원, 광주, 전주)으로 조사과 설치기관의 조사인력은 총 47명이고, 조사과 직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의 규모 및 조사의뢰 건수에 따라 1-3명의 조사전담직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보호관찰 인력 전체의 현황을 살펴보면(〈표 3-15〉 참조), 조사인력을 포함했을 경우 대졸 85.7%, 대학원이상 6.6%였으며 대학 중퇴 이하가 7.4%를 차지하였다. 보호관찰소의 조사경력자는 582명으로 전체의 49.8%를 차지하였는데, 전체 직원의 45.5%는 경력 1-2년이었고, 2-5년이 3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보호관찰소 직원의 조사경력

(단위: 명(%))

기간	1-2년	2-5년	5-8년	8-10년	10년 이상	계
경력자수	265(45.5)	210(36.1)	52(8.9)	24(4.1)	31(5.3)	582(49.8)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11). 2010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또한 전체 직원의 자격증 소지현황을 살펴보면(〈표 3-16〉 참조), 사회복지사가 전체 직원의 27.7%, 범죄심리사 16.3%, 정신보건임상심리사와 청소년상담사가 4.9%, 임상심리사 3.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임상심리전문가를 특별채용(14명, 6-7급)하여 조사팀에 배치하여 다양한 범죄인의 진단과 분석 등 조사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법무부, 2010).

표 3-16 보호관찰소 직원의 조사경력

(단위: 명(%))

자격증 명	인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3(4.9)
임상심리사	9(3.4)
범죄심리사	43(16.3)
사회복지사	73(27.7)
청소년상담사	13(4.9)
기타	112(42.5)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11). 2010 판결전조사 성과분석.

최근 법무부에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에 한해 조사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조사서의 신뢰도를 제고할 목적으로 조사관 인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가 훈령으로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조사관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조)하고 있다. 그리고 제3조에 조사관의 직무를 판결전조사, 결정전조사, 환경조사, 보호관찰 사안조사, 청구전조사, 분류심사, 검사 결정전조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56]. 교육훈련[57], 교과목

56)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판결전조사,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험과조사서 평가[58], 등 3단계를 거쳐 조사관 인정을 하게 되며, 교육훈련은 조사제도론, 심리학의 이해, 심리검사, 이상심리와 정신병리의 이해, 인지행동치료의 이해 등 7과목의 교육훈련을 받고, 교과목 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조사서 평가는 평가위원단에서 평가 대상 직원이 작성한 실제 조사서 3개를 무작위 추출하여 내용을 평가하게 된다. 동법 제15조에는 조사관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조항을 규정하여 제1항에 '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보호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인사권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관 자격 취득자를 제3조의 직무에 우선 보직토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사관 자격 취득자를 조사업무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였다. 2010년 제 1회 시험에서는 142명(보호관찰 103명, 소년보호 39명)이 합격하였다.

분류심사관은 전국 12기관에 총 34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그 중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11명이 근무하고 있다(〈표 3-17〉 참조). 법무부는 분류심사전문요원으로 사회과학전공의 대졸자를 7급으로 1989년 30명, 1992년 6명을 특채하였으며, 2003년도부터 학사는 9급, 석사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3년 이상 경력자는 8급으

의2에 따른 결정전조사; 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환경조사; 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보호관찰 사안조사; 5.「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청구전조사; 6.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청구전조사; 7.「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청구전조사; 8.「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조사 또는 분류심사; 9.「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른 검사의 결정전조사; 10.「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따른 조사; 11.「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사; 1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수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 또는 검찰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

57) 제8조(조사관 자격인정을 위한 교육) ① 조사관 자격 인정시험에 응시하려느 자는 "조사제도론"과 "심리학"분야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1급 임상심리사 또는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심리한 분야의 교육 이수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법무연수원의 사이버교육에 의한다.

58) 제9조(조사관 자격 인정시험) ① 조사관 자격 인정시험은 제8조 제1항의 "조사제도론"과 "심리학" 분야의 객관식 필기시험 및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로 한다. ② 제1항의 객관식 필기시험은 각 분야별 60점 이상 취득시 합격한 것으로 보며, 60점 이상 취득 분야에 대해서는 차후 시험을 면제한다. ③ 1급 임상심리사 또는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심리학 분야의 시험을 면제한다. ④ 제1항의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는 85점 이상 취득 시 합격한 것으로 본다.

로 3회에 걸쳐 총 13명을 특채하여, 각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에서 심리검사와 청소년적성검사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이용성, 2011).

표 3-17 기관별 분류심사관 인원 수

기관명	인원 수	비고
부산소년원	3	분류심사, 결정전조사
대구소년원	3	분류심사, 상담조사, 결정전조사
광주소년원	2	분류심사, 결정전조사
전주소년원	2	분류심사, 상담조사, 결정전조사
대전소년원	3	"
춘천소년원	3	"
제주소년원	1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11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2	상담조사, 결정전조사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1	"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2	"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1	"
계	34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2011

법원조사관은 전국적으로 총 129명이 있으며, 그 중 소년조사관은 2010년 현재 전국에 총 29명이 있다(〈표 3-18〉 참조). 서울가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 4명으로 가장 많고, 대부분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는 1~2명이 있다. 다만, 대부분은 겸임이거나 겸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18 각급 법원별 법원조사관 현황

법원별	조사관					비고
	소년	가사	가정보호	법원	계	
대법원				6	6	특허담당
서울중앙지방법원				7	7	특허담당 2명
서울가정법원	4	20	2		26	일반직 12명 포함
의정부지방법원	2	2	2		2	겸임
고양지원		1	1		1	
인천지방법원	3	4	3	3	7	겸임
수원지방법원	4	4	4	3	7	겸임

법원별	조사관					비고
	소년	가사	가정보호	법원	계	
성남지원		1	2		3	겸직
여주지원		1	1		1	겸직
평택지원		1	1		1	겸직
안산지원		2	1		3	겸직
안양지원	1	1	1		2	겸직
춘천지방법원	1	1	1		1	겸임
강릉지원		1	1		1	겸직
원주지원		1	1		1	겸직
속초지원		1	1		1	겸직
영월지원		1	1		1	겸직
대전지방법원				2	2	
대전가정지원	2	2	2		2	겸임
홍성지원		1	1		1	겸직
공주지원		1	1		1	겸직
논산지원		1	1		1	겸직
서산지원		1	1		1	겸직
천안지원		2	2		4	겸직
청주지방법원	1	1	1		2	겸임
충주지원		1	1		1	겸직
제천지원		1	1		1	겸직
영동지원		1	1		1	겸직
대구지방법원				2	2	
대구가정지원	1	5	1		5	겸임
부산지방법원				4	4	
부산가정지원	1	5	5		6	겸임
울산지방법원		1	1		1	겸임
창원지방법원	1	1	1		1	겸임
진주지원		1	1		1	겸직
통영지원		1	1		1	겸직
밀양지원		1	1		1	겸직
거창지원		1	1		1	겸직
광주지방법원				2	2	
광주가정지원	2	2	2		2	겸임
목포지원	2	2	2		2	겸직
장흥지원	1	1	1		1	겸직
순천지원		2	1		3	겸직
해남지원		1	1		1	겸직
전주지방법원	2	2	2		2	겸임
군산지원		1	1		2	겸직

법원별	조사관					비고
	소년	가사	가정보호	법원	계	
정읍지원		1	1		1	겸직
남원지원		1	1		1	겸직
제주지방법원	1	1	1		1	겸임
계	29	84	60	29	129	

* 출처 : 사법연감(법원행정처)

3. 소년조사 인력 교육과정

조사담당 보호관찰관에 대한 교육을 채용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조사업무에 종사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체계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연수체계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단지 구체적인 교육과정의 내용상의 차이를 통해서만 차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업무와 관련된 교육과정은 연 2회 법무연수원에서 이루어지며, 기본과정에서는 주로 조사인터뷰 기법, 싸이코패스의 이해, 조사제도의 목적과 운영방안, PCL-R(K-SORAS) 등 심리평가, 판결전조사작성 사례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2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실무심화과정은 조사제도의 목적, 조사관 인증제 질적 평가, 선진 인터뷰 기법, 조사매뉴얼, 아동조사방법 및 각종 조사의 사례분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표 3-19〉 참조).

표 3-19 보호직(보호관찰) 5~9급 교육과정(2009)

조사실무기본과정	조사실무심화과정
ㅇ 조사 인터뷰 기법 ㅇ 싸이코패스의 이해 ㅇ 조사제도의 목적과 운영 방안 ㅇ PCL-R(K-SORAS) 등 심리평가 설계 ㅇ 판결전 조사 작성 사례 ㅇ 양형 이론 ㅇ 자료분석, 보고서 작성 서식의 활용 ㅇ 청구전조사대상 성폭력 범죄인의 성행 및 유형분석 ㅇ 판결전 조사 매뉴얼 ㅇ 조사서 작성 실습 ㅇ 심리학의 이해(사이버교육)	ㅇ 조사제도의 목적 ㅇ 조사관인증제 질적 평가 ㅇ 살인 범죄의 이해 ㅇ 선진 인터뷰 기법 ㅇ 조사 매뉴얼(판결전, 청구전) ㅇ 판결 · 결정전조사 사례분석 ㅇ 청구전 조사 사례 분석 ㅇ 평가도구의 활용실태 및 발전방향 ㅇ 조사 정책방향 ㅇ 아동 조사 방법 ㅇ 조사서 작성실습 ㅇ 이상심리와 정신병리의 이해(사이버교육)

* 출처: 법무연수원

분류심사 전문교육은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을 통해 행해지고 있다. 2011년에는 사이버교육은 10일간 실시되었고, 집합교육은 3일간 실시되었다. 집합교육의 과목은 심리검사의 이해, 소년보호관계법령의 이해, 청렴과 공직자의 이해, 특수 인성검사-R 및 특수지능·적성검사의 이해, 비행청소년 면접기법, 분류심사 정책방향, 올바른 분류심사서 작성의 실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분류심사관 보임 자격을 위한 필수 교육으로는 분류심사 제도론(15시간), 판결전조사 제도론(15시간), 청구전조사 제도론(15시간), 이상심리와 정신병리의 이해(15시간), 인지행동치료의 이해(15시간), 심리검사의 이해(10시간), 심리학의 이해(15시간) 등이며, 위의 7과목은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이루어지며, 교육 종료 시 객관식 시험에 합격해야 이수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의 교육훈련 이수 현황을 살펴보면(〈표 3-20〉 참조), 성격검사(MMPI, PAI, 로샤 등)의 해석 및 활용을 수료한 인원이 가장 많았고(19.7%), 다음이 판결전 실무과정(17.0%), 심리검사 도구 활용(14.2%), 성범죄자 조사전문가 양성과정(12.0%)의 순이었다.

표 3-20 보호관찰관 교육훈련 이수 현황

교육과정명	인원
성범죄자 조사전문가 양성	105(12.0)
판결전조사 실무과정	149(17.0)
범죄심리사 양성	43(4.9)
약물 및 중독치료 상담과정	88(10.0)
성폭력 상담원 과정	15(1.7)
가정폭력 및 가족치료 상담	30(3.4)
청소년 성범죄자 인지행동치료과정	9(1.0)
청소년 심리상담	8(0.9)
성격검사(MMPI, PAI, 로샤 등)의 해석 및 활용	175(19.7)
지능검사(K-WAIS) 해석 및 활용	10(1.1)
애니어그램 강사 양성	78(8.9)
미술치료 기법	26(2.9)
심리검사 도구 활용	124(14.2)
이상심리와 정신병리	39(4.4)
기타	179(20.5)

제4장

소년조사제도에 대한 인식 분석

홍 영 오

04

소년조사제도에 대한 인식 분석

본 장에서는 소년조사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를 의뢰하는 판사와 검사, 조사를 수행하는 보호관찰관, 분류심사관 및 법원의 소년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설문조사결과를 조사대상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조사유형에 따라서는 조사대상자가 다소 적었지만[59] 조사자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어 통합하기보다는 조사유형별로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조사대상자별로 조사의 유형이 달랐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관은 검사 결정전조사, 법원 결정전조사, 판결전조사를, 분류심사원은 검사 결정전조사, 분류심사, 상담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의뢰자 중에서 검사는 검사 결정전조사를, 형사소년 판사는 판결전조사를, 소년부판사는 법원 결정전조사, 분류심사, 상담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 절에서는 검사 결정전조사서에 대한 기록조사 분석을 통해 소년조사 담당자들이 조사자의견을 제시할 때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59) 10월말 현재 설문이 다 수거되지 못하였는데, 특히 법원에서의 설문지 수거가 다소 늦어져 수거된 설문만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또한 자료제시에 있어 가능한 한 조사대상자들의 의견을 모두 제시하였다.

제1절 소년조사 담당자의 소년조사제도 인식

1. 보호관찰관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보호관찰소에서 소년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의 일반적 특성을 몇 가지 항목을 통해 살펴보았다(〈표 4-1〉 참조). 먼저 성별로는 여자가 27.7%, 남자가 72.3%로 남자가 다수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7.2%, 30대가 40.4%, 40대가 39.8%, 50대가 12.7%였으며, 연령의 평균은 40.1세였다. 조사담당자로서의 근무연수는 1년 미만 23.6%, 1년 이상 3년 미만 29.1%, 3년 이상 5년 미만이 18.8%, 5년 이상 7년 미만이 10.3%, 7년 이상이 18.2%였으며, 근무연수의 평균은 53.6개월이었다.

표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특 성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 편차
성별	남자	120	72.3		
	여자	46	27.7		
	합계	166	100.0		
연령	20대	12	7.2	40.1 (세)	7.7 (세)
	30대	67	40.4		
	40대	66	39.8		
	50대	21	12.7		
	합계	166	100.0		
조사담당 근무연수	1년미만	39	23.6	53.6 (개월)	66.3 (개월)
	1년이상~3년미만	48	29.1		
	3년이상~5년미만	31	18.8		
	5년이상~7년미만	17	10.3		
	7년이상	30	18.2		
	합계	165	100.0		
전부서 근무연수	1년미만	11	10.5	59.8 (개월)	71.8 (개월)
	1년이상~3년미만	45	42.9		
	3년이상~5년미만	16	15.2		
	5년이상~7년미만	9	8.6		
	7년이상	24	22.9		
	합계	105	100.0		

조사관의 소속부서를 살펴본 결과, 관찰과가 3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조사과 25.3%, 행정지원과 19.3%였다(〈표 4-2〉 참조). 이전의 근무부서는 관찰과가 21.7%로 가장 많았고, 집행과 10.8%였으며 34.9%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

표 4-2 조사대상자의 소속 부서

부 서		빈도	백분율(%)
현소속부서	관찰과	60	36.1
	법무부 행정지원	1	0.6
	소장/지소장	4	2.4
	업무총괄	2	1.2
	조사과	42	25.3
	집행과	3	1.8
	행정지원과	32	19.3
	기타	20	12.0
	무응답	2	1.2
	합계	166	100.0

본 조사에 참여한 보호관찰관의 소속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4-3〉 참조). 전국의 51개 보호관찰소에서 본 조사에 참여하였다.

표 4-3 조사대상자의 소속 기관

기관명	응답자수	기관명	응답자수
서울보호관찰소	7	청주보호관찰소	3
서부지소	3	충주지소	3
북부지소	3	대구보호관찰소	5
서울동부보호관찰소	3	서부지소	3
서울남부보호관찰소	3	안동지소	3
의정부보호관찰소	3	경주지소	3
고양지소	3	포항지소	3
인천보호관찰소	6	김천지소	3
부천지소	3	상주지소	2
서부지소	3	부산보호관찰소	6
수원보호관찰소	5	동부지소	3
성남지소	3	울산보호관찰소	3

기관명	응답자수	기관명	응답자수
여주지소	3	창원보호관찰소	3
안산지소	3	진주지소	3
평택지소	3	통영지소	3
안양지소	3	밀양지소	2
춘천보호관찰소	3	광주보호관찰소	6
강릉지소	3	목포지소	3
원주지소	3	순천지소	3
속초지소	3	해남지소	2
대전보호관찰소	5	전주보호관찰소	2
홍성지소	3	군산지소	3
공주지소	3	정읍지소	2
논산지소	3	남원지소	2
서산지소	3	제주보호관찰소	3
천안지소	3	합계	166

본 설문에 참여한 조사관의 조사와 관련된 자격증은 보유 현황은 〈표 4-4〉와 같다. 조사관자격증 소지자가 13.3% 가장 많았고, 다음이 MBTI일반 강사 4.8%, 임상심리전문가 4.2%, 사회복지사 1급 3.6%, 범죄심리사 3.0%의 순이었다.

표 4-4 조사대상자의 보유 자격증

자 격 증		빈도	백분율 (%)
조사와 관련 자격증	없음	79	47.6
	무응답	23	13.9
	조사관자격	22	13.3
	MBTI 일반강사	8	4.8
	임상심리전문가	7	4.2
	사회복지사 1급	6	3.6
	범죄심리사	5	3.0
	에니어그램 일반 강사	4	2.4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4	2.4
	사회복지사 2급	4	2.4
	범죄심리사 2급	3	1.8
	사회복지사	3	1.8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1급	3	1.8
	약물치료사	3	1.8

자 격 증		빈도	백분율 (%)
조사와 관련 자격증	청소년 지도사 2급	2	1.2
	청소년 지도사 3급	2	1.2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	1.2
	임상심리사 2급	2	1.2
	가정폭력상담사	1	0.6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사	1	0.6
	교통사고 분석사	1	0.6
	심리상담1급	1	0.6
	성폭력상담사	1	0.6
	약품상담전문가	1	0.6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1	0.6
	약물전문가	1	0.6
	아동심리 상담사	1	0.6
	인터넷중독예방사	1	0.6
	청소년 상담사 2급	1	0.6
	청소년 지도사	1	0.6
	청소년 상담사	1	0.6
	청소년 지도사 1급	1	0.6
	MMPI	1	0.6
	MBTI전문가	1	0.6
	MBTI 2급	1	0.6
	STROVG 직업상담사	1	0.6
	약물중독예방사	1	0.6
	범죄심리사 1급	1	0.6
	상담관련 자격증	1	0.6
	합계	166	122.3

* 백분율의 비율이 100%를 넘는 이유는 한명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자격증 수 기준이 아니라 조사관기준으로 백분율을 계산했기 때문임. 이하의 표 계산에서도 중복응답을 한 경우나 주관식으로 응답을 받은 경우에는 백분율이 조사대상 기준임.

조사관의 조사 관련 교육시간은 0시간이 2010년에는 36.6%였으나 2011년에는 40.7%로 높아지는 등, 평균 교육시간이 2010년에서 40.2시간에서 2011년에는 10월 현재 28.6시간으로 감소하였다.

표 4-5 조사대상자의 조사관련 교육 시간

시 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2010년 조사관련 교육시간	0시간	59	36.6	40.2	43.2
	24시간이하	15	9.3		
	25~72시간	51	31.7		
	73~120시간	27	16.8		
	121시간이상	9	5.6		
	합계	161	100.0		
2011년 10. 조사관련 교육시간	0시간	66	40.7	28.6	37.2
	24시간이하	27	16.7		
	25~72시간	50	30.9		
	73~120시간	14	8.6		
	121시간이상	5	3.1		
	합계	162	100.0		

조사관이 2010년과 2011년에 교육받은 조사 관련 교육과목은 다음과 같다.

표 4-6 조사대상자의 조사관련 교육 과목

과 목		빈도	백분율(%)
2010년 교육과목	판결전 조사 제도론	51	47.7
	심리학의 이해	51	47.7
	청구전조사 제도론	42	39.3
	심리검사의 이해	34	31.8
	인지행동치료의이해	30	28.0
	이상심리와 정신병리의 이해	29	27.1
	분류심사제도론	29	27.1
	이상심리학	8	7.5
	MMPI의이해	7	6.5
	조사실무기본과정	7	6.5
	조사실무	6	5.6
	조사제도론	5	4.7
	조사실문심화과정	5	4.7
	워크샵	5	4.7
	무응답/모름	5	4.7
	청구권조사 전담 직원교육	4	3.7
	결정전 조사 제도론	3	2.8
	인지행동치료의이해	3	2.8
	정신병리의 이해	3	2.8
	Hare PCL-R	2	1.9
	청구권 조사 사례연구	2	1.9

과 목		빈도	백분율(%)
2010년 교육과목	에니어그램	2	1.9
	MBTI	2	1.9
	법죄심리사 자격취득 과목 이수	2	1.9
	형사소송법	2	1.9
	판결전 조사 메뉴얼교육	2	1.9
	조사서작성	2	1.9
	상담심리 기본과정	1	0.9
	MBTI초중보수과정	1	0.9
	조사사례연구교육	1	0.9
	정신건강	1	0.9
	제도론	1	0.9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척도	1	0.9
	성폭력조사 전문과정	1	0.9
	심리검사 일반	1	0.9
	약물중독 예방전무가	1	0.9
	교육학개론	1	0.9
	가족치료 전문가 과정	1	0.9
	PAI	1	0.9
	보호관찰 법령의 이해	1	0.9
	이상행동	1	0.9
	범죄심리워크샵	1	0.9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	1	0.9
	약품 상담가 자격 취득과정	1	0.9
	심리치료 조사방법	1	0.9
	한국형 에니어그램 강사과정	1	0.9
	부모 교육훈련	1	0.9
	심리검사과정	1	0.9
	법무연수원 교육과정	1	0.9
	조사직원 신규교육	1	0.9
	조사실무중급과정	1	0.9
	조사관 오리엔테이션	1	0.9
	PCL-R의 이해	1	0.9
	합계	107	
2011년 교육과목	청구전조사 제도론	27	27.0
	심리학의 이해	26	26.0
	심리검사의 이해	25	25.0
	판결전 조사 제도론	25	25.0
	분류심사제도론	23	23.0
	인지행동치료의이해	17	17.0
	이상심리와 정신병리의 이해	15	15.0
	조사실문심화과정	12	12.0
	이상심리학	11	11.0
	조사실무기본과정	8	8.0
	무응답/모름	7	7.0
	조사실무	6	6.0
	심리검사 일반	4	4.0
	인지행동치료의이해	3	3.0
	에니어그램	3	3.0

과 목		빈도	백분율(%)
	워크샵	3	3.0
	조사제도론	3	3.0
	MMPI의이해	3	3.0
	결정전 조사 제도론	2	2.0
	조사실무중급과정	2	2.0
	KORAS-G	2	2.0
	위험성 평가도구의 이해와 활용	2	2.0
	MBTI	2	2.0
	상담기법	1	1.0
	상담심리 기본과정	1	1.0
	면접기법	1	1.0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척도	1	1.0
	제도론	1	1.0
	소년범의 이해	1	1.0
	법교육	1	1.0
	심리검사과정	1	1.0
	조사주의 교육	1	1.0
	성인재범위험성 평가	1	1.0
	조사서작성	1	1.0
	인터넷중독 예방사	1	1.0
	조사면담기법	1	1.0
	가족치료 전문가 과정	1	1.0
	교육학개론	1	1.0
	보호관찰 직무교육	1	1.0
	범죄심리워크샵	1	1.0
	조사인증제 관련 사이버교육	1	1.0
	성폭력예방 전문지도자 과정	1	1.0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	1	1.0
	한국형 에니어그램 강사과정	1	1.0
	사이버교육	1	1.0
	상담심리 기본과정	1	1.0
	회보세미나	1	1.0
	약물남용(알코올중독)	1	1.0
	자체사례발표	1	1.0
	정신병리의 이해	1	1.0
	합계	100	

나. 조사관의 조사 업무량

다음은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보호관찰소에서 소년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의 조사 건수 및 조사서 작성 소요시간 등을 알아보았다(〈표 4-7〉 참조). 한 달 동안 담당하는 총 조사 건수는 10건 이하가 64.8%, 11건 이상 20건 이하가 29.7%, 21건 이상이 5.5%였으며, 조사 건수의 평균은 10.4건이었다. 한 달 동안 담당하

는 소년범 조사 건수는 5건 이하가 55.8%였으며, 6건 이상 10건 이하가 21.2%, 11건 이상이 23.0%였으며, 평균 소년범조사 건수는 7.0건이었다. 한 달 동안 담당하는 검사의 결정전조사 건수는 없다가 27.3%였으며, 5건 미만이 53.3%, 5건 이상 10건 미만이 12.1%, 10건 이상 20건 미만이 6.1%, 20건 이상이 1.2%였으며, 평균 검사의 결정전조사 건수는 2.7건이었다. 한 달 동안 담당하는 성인 판결전조사 건수는 없다가 52.1%였으며, 5건 미만이 41.8%, 5건 이상 10건 미만이 4.2%, 10건 이상 20건 미만이 1.8%였으며, 평균 성인 판결전조사 건수는 1.2건이었다. 한 달 동안 담당하는 소년 판결전조사 건수는 없다가 64.2%였으며, 5건 미만이 30.9%, 5건 이상 10건 미만이 4.2%, 10건 이상 20건 미만이 0.6%였으며, 평균 소년 판결전조사 건수는 0.8건이었다. 한 달 동안 담당하는 법원의 결정전조사 건수는 없다가 12.1%였으며, 5건 미만이 55.2%, 5건 이상 10건 미만이 15.8%, 10건 이상 20건 미만이 17%였으며, 평균 법원의 결정전조사 건수는 4.6건이었다.

검사의 결정전조사서를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일이하 82.2%, 2일에서 3일 17.8%였으며, 평균 작성시간은 14.6시간 이었다. 판결전조사서를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일이하 77.8%, 2일에서 3일 17.2%, 4일에서 5일 5.1%였으며, 평균 작성시간은 22.1시간 이었다. 법원의 결정전조사서를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일이하 86.2%, 2일에서 3일 13.8%였으며, 평균 작성시간은 14.7시간 이었다. 보호관찰소에서 소년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이 생각하는 한 달에 적당한 조사 건수는 5건이하 43.6%, 6건 이상 10건 이하 44.2%, 11건이상 12.1%였으며, 평균 건수는 7.0건 이었다.

표 4-7 조사서 작성 조사관의 조사 업무량

건 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월평균 총 조사건수	10건이하	107	64.8	10.4	10.2
	11~20건	49	29.7		
	21건이상	9	5.5		
	합계	165	100.0		
월평균 소년범 조사건수	5건이하	92	55.8	7.0	6.5
	6건~10건	35	21.2		

건 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11건이상	38	23.0		
	합계	165	100.0		
월평균 검사의 결정전 조사 건수	없음	45	27.3	2.7	4.1
	5건미만	88	53.3		
	5건이상~10건미만	20	12.1		
	10건이상~20건미만	10	6.1		
	20건이상	2	1.2		
	합계	165	100.0		
월평균 성인 판결전 조사 건수	없음	86	52.1	1.2	2.4
	5건미만	69	41.8		
	5건이상~10건미만	7	4.2		
	10건이상~20건미만	3	1.8		
	합계	165	100.0		
월평균 소년 판결전 조사 건수	없음	106	64.2	0.8	1.7
	5건미만	51	30.9		
	5건이상~10건미만	7	4.2		
	10건이상~20건미만	1	0.6		
	합계	165	100.0		
월평균 법원의 결정전 조사 건수	없음	20	12.1	4.6	4.6
	5건미만	91	55.2		
	5건이상~10건미만	26	15.8		
	10건이상~20건미만	28	17.0		
	합계	165	100.0		
검사의 결정전 조사 소요시간	1일이하	60	82.2	14.6	17.3
	2일~3일	13	17.8		
	합계	73	100.0		
판결전 조사 소요시간	1일이하	77	77.8	22.1	26.6
	2일~3일	17	17.2		
	4일~5일	5	5.1		
	합계	99	100.0		
법원의 결정전 조사 소요시간	1일이하	125	86.2	14.7	17.6
	2일~3일	20	13.8		
	합계	145	100.0		
한달 적당 조사 건수	5건이하	72	43.6	7.0	4.1
	6건이상~10건이하	73	44.2		
	11건이상	20	12.1		
	합계	165	100.0		

다.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1) 소년조사제도에서 문제 사항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다음의 사항들이 얼마나 문제라고 인식하는 지를 알아보았다(〈표 4-8〉 참조).

먼저 조사관들은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가 존재한다는 사항이 문제 있다는 인식이 4점 만점에 3.4점으로 제시된 19개의 사항 중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는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이 3.3점이며, 조사 전문 인력의 부족이 3.3점,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 담당이 3.0점, 조사담당 직원에 대한 재교육 및 교육시간 부족이 3.0점으로, 문제 사항 상위 5개에 포함되었다.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가 존재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문제있음이 51.8% 약간 문제있는 편임이 41.0%로 92.8%가 문제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에 대해서는 매우 문제있음이 44.0%, 약간 문제있는 편임이 42.8%로 86.8%가 문제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조사 전문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매우 문제있음이 42.8%, 약간 문제있는 편임이 42.2%로 85.0%가 문제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 담당에 대해서는 매우 문제있음이 30.1%, 약간 문제있는 편임이 45.2%로 75.3%가 문제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조사담당 직원에 대한 재교육 및 교육시간 부족에 대해서는 매우 문제있음이 18.1%, 약간 문제있는 편임이 63.9%로 82.0%가 문제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소년조사제도의 문제 사항 인식

사 항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조사전문인력의 부족	전혀 문제되지 않음	3	1.8	3.3	0.8
	별로 문제되지 않음	22	13.3		
	약간 문제있는 편임	70	42.2		
	매우 문제있음	71	42.8		
	합계	166	100.0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 존재	전혀 문제되지 않음	6	3.6	3.4	0.7

사 항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별로 문제되지 않음	6	3.6		
	약간 문제있는 편임	68	41.0		
	매우 문제있음	86	51.8		
	합계	166	100.0		
조사담당 직원에 대한 재교육 및 교육시간 부족	전혀 문제되지 않음	3	1.8		
	별로 문제되지 않음	27	16.3		
	약간 문제있는 편임	106	63.9	3.0	0.6
	매우 문제있음	30	18.1		
	합계	166	100.0		
전문가 자원봉사자의 미활용	전혀 문제되지 않음	33	19.9		
	별로 문제되지 않음	94	56.6		
	약간 문제있는 편임	26	15.7	2.1	0.8
	매우 문제있음	13	7.8		
	합계	166	100.0		
범죄유형별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 부재	전혀 문제되지 않음	13	7.8		
	별로 문제되지 않음	80	48.2		
	약간 문제있는 편임	59	35.5	2.4	0.8
	매우 문제있음	14	8.4		
	합계	166	100.0		
형사사법단계별 조사내용의 중복	전혀 문제되지 않음	8	4.8		
	별로 문제되지 않음	65	39.2		
	약간 문제있는 편임	76	45.8	2.6	0.7
	매우 문제있음	17	10.2		
	합계	166	100.0		
범죄유형에 대한 조사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전혀 문제되지 않음	10	6.0		
	별로 문제되지 않음	80	48.2		
	약간 문제있는 편임	68	41.0	2.4	0.7
	매우 문제있음	8	4.8		
	합계	166	100.0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 담당	전혀 문제되지 않음	6	3.6		
	별로 문제되지 않음	35	21.1		
	약간 문제있는 편임	75	45.2	3.0	0.8
	매우 문제있음	50	30.1		
	합계	166	100.0		
조사기관의 역할중복 (조사유형별 역할분장 부재)	전혀 문제되지 않음	5	3.0		
	별로 문제되지 않음	72	43.4		
	약간 문제있는 편임	66	39.8	2.6	0.8
	매우 문제있음	23	13.9		
	합계	166	100.0		

사 항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소년범 전문 조사관 부재	전혀 문제되지 않음	10	6.0	2.5	0.7
	별로 문제되지 않음	69	41.6		
	약간 문제있는 편임	75	45.2		
	매우 문제있음	12	7.2		
	합계	166	100.0		
조사기관간의 연계성 부족 (조사기관간 정보 미공유)	전혀 문제되지 않음	13	7.8	2.3	0.7
	별로 문제되지 않음	96	57.8		
	약간 문제있는 편임	50	30.1		
	매우 문제있음	7	4.2		
	합계	166	100.0		
조사대상 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전혀 문제되지 않음	47	28.3	1.8	0.6
	별로 문제되지 않음	98	59.0		
	약간 문제있는 편임	21	12.7		
	합계	166	100.0		
조사 대상 소년에게 진술거부권 미고지	전혀 문제되지 않음	69	41.6	1.8	0.8
	별로 문제되지 않음	73	44.0		
	약간 문제있는 편임	19	11.4		
	매우 문제있음	5	3.0		
	합계	166	100.0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	전혀 문제되지 않음	3	1.8	3.3	0.7
	별로 문제되지 않음	19	11.4		
	약간 문제있는 편임	71	42.8		
	매우 문제있음	73	44.0		
	합계	166	100.0		
조사에 따른 개별처우 프로그램의 부족	전혀 문제되지 않음	6	3.6	2.7	0.7
	별로 문제되지 않음	55	33.1		
	약간 문제있는 편임	87	52.4		
	매우 문제있음	18	10.8		
	합계	166	100.0		
소년조사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식 부재	전혀 문제되지 않음	12	7.2	2.5	0.8
	별로 문제되지 않음	71	42.8		
	약간 문제있는 편임	64	38.6		
	매우 문제있음	19	11.4		
	합계	166	100.0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이나 판결결과의 미통보	전혀 문제되지 않음	14	8.4	2.6	0.8
	별로 문제되지 않음	59	35.5		
	약간 문제있는 편임	76	45.8		
	매우 문제있음	17	10.2		
	합계	166	100.0		

사 항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중요하지 않은 사건의 의뢰 (조사의뢰 실적 때문)	전혀 문제되지 않음	9	5.4	2.9	0.8
	별로 문제되지 않음	40	24.1		
	약간 문제있는 편임	73	44.0		
	매우 문제있음	44	26.5		
	합계	166	100.0		
법적인 강제력 부재	전혀 문제되지 않음	12	7.2	2.5	0.8
	별로 문제되지 않음	74	44.6		
	약간 문제있는 편임	64	38.6		
	매우 문제있음	16	9.6		
	합계	166	100.0		

2) 소년조사제도에서 개선 과제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표 4-9〉 참조).

개선과제 1순위로 응답자들의 35.5%는 조사 전문 인력 부족이라고 답했으며, 16.3%는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이라고, 14.5%는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 존재라고 응답하였다. 1+2+3순위에서는 응답자들의 55.4%는 조사 전문 인력의 부족이라고 답했으며, 49.4%는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이라고, 42.2%는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 존재라고, 31.9%는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 담당이라고, 29.5%는 조사담당 직원에 대한 재교육 및 교육시간 부족이라고, 20.5%는 중요하지 않은 사건의 의뢰(조사의뢰 실적 때문)라고 응답하였다.

표 4-9 소년조사제도에서 개선 과제

개선해야 할 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1+2+3 순위	
	명	%	명	%	명	%	명	%
조사전문인력의 부족	59	35.5	19	11.4	14	8.4	92	55.4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 존재	24	14.5	28	16.9	18	10.8	70	42.2
조사담당 직원에 대한 재교육 및 교육시간 부족	7	4.2	18	10.8	24	14.5	49	29.5
전문가 자원봉사자의 미활용	4	2.4	4	2.4	4	2.4	12	7.2
범죄유형별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 부재	5	3.0	3	1.8	7	4.2	15	9.0

개선해야 할 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1+2+3 순위	
	명	%	명	%	명	%	명	%
형사사법단계별 조사내용의 중복	0	0.0	4	2.4	4	2.4	8	4.8
범죄유형에 대한 조사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0	0.0	3	1.8	1	0.6	4	2.4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 담당	11	6.6	27	16.3	15	9.0	53	31.9
조사기관의 역할중복(조사유형별 역할분장 부재)	1	0.6	6	3.6	1	0.6	8	4.8
소년범 전문 조사관 부재	4	2.4	3	1.8	3	1.8	10	6.0
조사기관간의 연계성 부족(조사기관간 정보 미공유)	0	0.0	1	0.6	2	1.2	3	1.8
조사대상 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1	0.6	0	0.0	0	0.0	1	0.6
조사대상 소년에게 진술거부권 미고지	0	0.0	2	1.2	0	0.0	2	1.2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	27	16.3	27	16.3	28	16.9	82	49.4
조사에 따른 개별처우 프로그램의 부족	2	1.2	5	3.0	7	4.2	14	8.4
소년조사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식 부재	2	1.2	2	1.2	6	3.6	10	6.0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이나 판결결과의 미통보	0	0.0	2	1.2	3	1.8	5	3.0
중요하지 않은 사건의 의뢰(조사의뢰 실적 때문)	10	6.0	9	5.4	15	9.0	34	20.5
법적인 강제력 부재	5	3.0	1	0.6	8	4.8	14	8.4
조사의뢰건수 불규칙	3	1.8	0	0.0	0	0.0	3	1.8
조사환경 미비	0	0.0	1	0.6	0	0.0	1	0.6
없다	1	0.6	1	0.6	6	3.6	1	0.6
합계	166	100	166	100	166	100	166	296

3)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이유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고 응답한 이유는 조사의 전문성 확보나 조사서의 질적 향상 및 부실조사서 작성 우려 등 조사서의 품질 향상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조사 전문 인력 부족이나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과중발생 및 전담직원 필요 등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과중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표 4-10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이유

이 유	빈도	백분율(%)
조사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	22	13.3
조사의 전문성 확보위해	22	13.3
업무과중으로 인한 부실조사서 작성우려 있어서	19	11.5
조사전문 인력수가 부족해서	12	7.3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과중발생	12	7.3

이 유	빈도	백분율(%)
전문성 향상위한 전담직원 필요	6	3.6
조사업무과다로 다른 업무에 지장 초래해서	6	3.6
보고서의 효용성 위해	5	3.0
조사업무 외 중복업무를 해야 해서	5	3.0
충분한 조사시간 확보가 어려워서	5	3.0
조사의 신뢰성 확보위해	3	1.8
보고서의 정확성 위해	3	1.8
전문가 양성을 위해	3	1.8
보호관찰등 업무소홀 우려가 있어서	3	1.8
업무과중으로 인한 직원스트레스 증가	3	1.8
조사담당 직원의 재교육 부재	2	1.2
조사담당 직원의 교육시간 부재	2	1.2
조사 비전문가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이 생겨서	2	1.2
회보기일에 맞춰 조급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2	1.2
전문성, 대외신뢰도 위해 조사과 신설필요	2	1.2
조사의 권위성 확보위해	1	0.6
18세 이하 관련 표준평가 도구가 없어서	1	0.6
소년사범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사 필요해서	1	0.6
판결 기간 내 재범방지를 위해서	1	0.6
판결 결정에 참고하는 조사 자료의 전문성 확보필요	1	0.6
조사의뢰시 보호관찰소에 대한 이해를 시켜줘야해서	1	0.6
조사기관 연계부족으로 자료와 어려움이 있어서	1	0.6
재범위험성에 대한 비객관적 판단 가능성 때문에	1	0.6
재범방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	0.6
조사정책의 부재 때문에	1	0.6
미미한 사건조사 의뢰로 중요사건 조사서 작성 소홀	1	0.6
개별적 처우를 통한 재범억제를 위해	1	0.6
범죄 예방센터와 심사위원회 통합기관 필요	1	0.6
심리전문가의 소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 필요	1	0.6
조사전문가의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해서	1	0.6
조사에 따른 처우의 개별화 실현	1	0.6
과중한 업무로 인한 가정내 갈등심화	1	0.6
전문가 양성으로 업무자신감 회복	1	0.6
잦은 보직 변경으로 전문성 미흡해서	1	0.6
조사근무환경이 열악해서	1	0.6
정확한 판결을 위해서	1	0.6
사실 조사의 적합성을 위해	1	0.6
합계	165	

※응답자 기준

라. 검사의 결정전 조사 제도에 대한 인식

1)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작성 건수 및 의뢰 조사 대상

지금까지 검사의 결정전조사서를 작성한 건수는 20건이상이 48.2%로 가장 많고 10건이상 20건미만이 25.9%, 5건이상 10건미만이 10.2%이며, 평균은 44.6건이었다. 주로 의뢰받은 조사대상은 초범이 32.7%, 재범이 12.2%, 3범이상이 3.2%이며 제한 없다가 51.9%로 가장 많았다.

표 4-11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작성 건수

건 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누적 검사 결정전조사서 작성건수	없음	10	6.0	44.6	60.7
	5건미만	16	9.6		
	5건이상~10건미만	17	10.2		
	10건이상~20건미만	43	25.9		
	20건이상	80	48.2		
	합계	166	100.0		

표 4-12 검사의 결정전조사 대상

대 상		빈도	백분율(%)
의뢰 조사대상	초범	51	32.7
	재범	19	12.2
	3범이상	5	3.2
	제한없다	81	51.9
	합계	156	100.0

2) 검사가 결정전조사 비의뢰 이유 및 필요성과 활용성

검사가 결정전조사를 의뢰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검사가 소년의 인성이나 환경보다는 죄질로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많았고, 임의규정으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 30.1%, 검사가 조사의 효용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26.3% 등의 순이었다.

표 4-13 검사가 결정전조사를 의뢰하지 않는 이유

이 유	빈도	백분율(%)
검사가 소년의 인성이나 환경보다는 죄질로 판단하기 때문에	56	35.9
임의규정으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47	30.1
검사가 조사의 효용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41	26.3
검사가 검사의 결정전조사제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13	8.3
조사서를 자세히 읽을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8	5.1
회보기간이 길기 때문에	1	0.6
죄질이 중하여 조사 맡기기 부적합해서	1	0.6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	0.6
모름	4	2.6
합계	156	110.3

검사의 결정전조사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 14.7%, 필요하다 55.8%로 70.5%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7.9%는 그저 그렇다, 11.6%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검사가 결정전조사를 활용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3.2%,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는 44.9%로 48.1%가 활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31.4%는 그저그렇다, 20.5%는 활용하고 있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조사관들은 검사의 결정전조사의 필요성을 5점 만점에 3.7점, 검사의 활용도는 3.3점으로 인식하여, 필요성에 비해서 활용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4-14 검사의 결정전조사 필요성 및 활용도

필요성 / 활용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검사의 결정전조사의 필요성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1.3	3.7	0.9
	별로 필요하지 않다	16	10.3		
	그저 그렇다	28	17.9		
	필요하다	87	55.8		
	매우 필요하다	23	14.7		
	합계	156	100.0		
검사의 결정전조사의 활용도	활용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32	20.5	3.3	0.8
	그저 그렇다	49	31.4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	70	44.9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5	3.2		
	합계	156	100.0		

3)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작성시 조사관의 전문성

검사의 결정전조사서를 작성하는 조사관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매우 높다는 2.6%, 높은 편이다는 35.9%로 38.5%가 높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보통이다는 56.4%, 낮은 편이다는 5.1%로 5점 만점의 평균은 3.4점으로 약간 높은 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표 4-15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작성 조사관의 전문성

전문성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조사관의 전문성	낮은 편이다	8	5.1	3.4	0.6
	보통이다	88	56.4		
	높은 편이다	56	35.9		
	매우 높다	4	2.6		
	합계	156	100.0		

조사관의 전문성이 낮은 경우도 있다면, 전문교육강화 13.5%, 주기적인 교육개설 7.7% 등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주요 해결책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보직유지 10.3%, 조사 전문 인력 양성 5.8%,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배치 5.1% 등의 전문 인력 배치를 제안하고 있었다.

표 4-16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작성 조사관의 전문성 해결 방안

개선방안	빈도	백분율(%)
전문교육강화	21	13.5
일정기간 보직유지	16	10.3
주기적인 교육개설	12	7.7
조사전문인력 양성	9	5.8
조사과 설치	8	5.1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배치	8	5.1
조사 직원 타업무 부여금지 필요	5	3.2
실무 경험자 배치	4	2.6
조사 직원 충원	4	2.6
조사 직원 업무량 경감	3	1.9

개선방안	빈도	백분율(%)
조사의뢰 남발개선	2	1.3
신임 조사관 대상 교육훈련	2	1.3
조사 직원 업무중복 개선	2	1.3
조사 전문교육 이수자 조사서 작성	1	0.6
다양한 교육활용	1	0.6
꾸준한 재교육 필요	1	0.6
관심 가질 수 있는 유인책 필요	1	0.6
충분한 면담시간 필요	1	0.6
조사관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	1	0.6
심리검사 도구 활용 능력 필요	1	0.6
소년면담기법 활용 능력 필요	1	0.6
폐쇄형 질문을 개방형 질문으로	1	0.6
교육프로그램 체계화	1	0.6
충분한 조사시간 필요	1	0.6
조사전문가 소내 방문강의개설	1	0.6
정규교육과정개설	1	0.6
모름/무응답	66	42.3
없다	23	14.7
합계	156	

※ 응답자 기준

4) 검사의 결정전조사에서 조사내용의 중요성

검사의 결정전조사에서 조사내용의 중요도는,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은 4점 만점에 3.7점으로 가장 높고, 생활환경은 3.6점으로 두 번째이며, 성장과정은 3.5점, 교우관계는 3.4점 등의 순서였다.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함이 71.2%로 높았고, 생활환경은 매우 중요함이 61.5%, 성장과정은 매우 중요함이 56.4%, 교우관계는 매우 중요함이 47.4%로 나타났다.

표 4-17 검사의 결정전조사에서 조사내용의 중요성

조사 내용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편차
범죄관련사항	중요하지 않은 편임	20	12.8	3.1	0.6
	중요한 편임	108	69.2		
	매우 중요함	28	17.9		
	합계	156	100.0		
범죄 경력	중요하지 않은 편임	10	6.4	3.2	0.6
	중요한 편임	101	64.7		
	매우 중요함	45	28.8		
	합계	156	100.0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중요한 편임	60	38.5	3.6	0.5
	매우 중요함	96	61.5		
	합계	156	100.0		
성장과정	중요하지 않은 편임	6	3.8	3.5	0.6
	중요한 편임	62	39.7		
	매우 중요함	88	56.4		
	합계	156	100.0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0.6	2.9	0.6
	중요하지 않은 편임	30	19.2		
	중요한 편임	104	66.7		
	매우 중요함	21	13.5		
	합계	156	100.0		
학력 및 학교생활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0.6	3.2	0.6
	중요하지 않은 편임	11	7.1		
	중요한 편임	107	68.6		
	매우 중요함	37	23.7		
	합계	156	100.0		
교우관계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0.6	3.4	0.6
	중요하지 않은 편임	2	1.3		
	중요한 편임	79	50.6		
	매우 중요함	74	47.4		
	합계	156	100.0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중요하지 않은 편임	1	0.6	3.7	0.5
	중요한 편임	44	28.2		
	매우 중요함	111	71.2		
	합계	156	100.0		
진술태도	중요하지 않은 편임	21	13.5	3.0	0.6
	중요한 편임	108	69.2		

조사 내용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편차
	매우 중요함	27	17.3		
	합계	156	100.0		
향후 생활계획	전혀 중요하지 않음	2	1.3	3.0	0.7
	중요하지 않은 편임	31	19.9		
	중요한 편임	88	56.4		
	매우 중요함	35	22.4		
	합계	156	100.0		
조사자의 의견	중요하지 않은 편임	8	5.1	3.3	0.6
	중요한 편임	89	57.1		
	매우 중요함	59	37.8		
	합계	156	100.0		

조사자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요인으로 1순위에서는 생활환경이 32.1%로 가장 높고,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이 25%, 성장과정이 21.8%이며, 1+2순위에서는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이 55.8%로 가장 높고, 생활환경 48.7%, 성장과정 42.3% 등의 순서였다.

표 4-18 조사자 의견 제안 시 비중 두는 요인

요 인	1순위		2순위		1+2순위	
	명	%	명	%	명	%
범죄관련사항	6	3.8	4	2.6	10	6.4
범죄 경력	11	7.1	14	9.0	25	16.0
생활환경 (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50	32.1	26	16.7	76	48.7
성장과정	34	21.8	32	20.5	66	42.3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1	0.6	1	0.6	2	1.3
학력 및 학교생활	1	0.6	1	0.6	2	1.3
교우관계	5	3.2	20	12.8	25	16.0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39	25.0	48	30.8	87	55.8
진술태도	3	1.9	3	1.9	6	3.8
향후 생활계획	0	0.0	6	3.8	6	3.8
조사자의 의견	6	3.8	1	0.6	7	4.5
합계	156	100	156	100	156	200

조사자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이유는 청소년 범죄는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19.2%,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이 되므로 12.8%, 성장과정이 범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9.0%, 범죄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서 8.3%, 보호자의 보호 능력이 범죄발생과 관련 있어서 7.7%, 보호자의 관심 여부가 범죄발생과 관련 있어서 7.1% 등으로 나타났다.

표 4-19 조사자 의견 제안 시 비중이 많이 두는 요인선택 이유

이 유	빈도	백분율(%)
청소년 범죄는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30	19.2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이 되므로	20	12.8
성장과정이 범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14	9.0
범죄원인을 파악할수 있어서	13	8.3
보호자의 보호 능력이 범죄 발생과 관련 있으므로	12	7.7
보호자의 관심 여부가 범죄 발생과 관련 있으므로	11	7.1
미성년은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9	5.8
불량 교우관계가 범죄발생에 영향을 끼치므로	8	5.1
개인의 인성형성에 영향 미치므로	6	3.8
보호자의 역할에 따라 재범요인이 달라지므로	5	3.2
범죄 경력이 많을수록 재범의 위험이 크므로	5	3.2
생활환경이 재범에 영향을 미치므로	5	3.2
가정내 보호유무가 향후 재범에 끼치는 영향이 커서	4	2.6
범죄 유발성향을 파악할 수 있어서	3	1.9
피조사자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어서	3	1.9
피조사자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주므로	3	1.9
열악한 환경에서의 범죄 유발률이 높아서	3	1.9
미성년은 주변의 관심도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2	1.3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높으면 개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2	1.3
또래 집단과의 연계로 범죄습득이 가능하므로	2	1.3
청소년 범죄는 부모의 훈육이 중요해서	2	1.3
성장과정이 향후 재범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어서	2	1.3
가족관계가 재범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2	1.3
보호자의 관심이 청소년의 환경을 좌우하므로	2	1.3
반성하는 태도로 재범위험성을 평가 하므로	1	0.6
진술태도가 반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하므로	1	0.6
범죄사실의 경중을 알 수 있어서	1	0.6
범죄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1	0.6

이 유	빈도	백분율(%)
정확한 조사자의 의견이 재범예방에 중요하므로	1	0.6
보호자의 높은 관심은 개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1	0.6
피조사자의 정체성을 알 수 있어서	1	0.6
교우관계에 따라 재범 유무가 결정되므로	1	0.6
개인의 미래예측의 척도가 될 수 있어서	1	0.6
가족관계, 경제적 환경이 대상자의 비행에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1	0.6
가정의 안정성이 중요하므로	1	0.6
가족의 결속력이 대상자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서	1	0.6
미성년은 가족력이 중요하므로	1	0.6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이 보호관찰의 성패에 영향 줌	1	0.6
관계형성의 중요성 때문에	1	0.6
주변지자체계에 따라 향후 개선가능성이 달라져서	1	0.6
사회내 처우 가능성	1	0.6
객관적인 사실 비중이 크기 때문에	1	0.6
기소 결정권 참작자료이므로	1	0.6
양형을 결정하는 중요요소이므로	1	0.6
범죄경력은 비행 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척도라서	1	0.6
평소의 생활태도와 밀접한 관련 있어서	1	0.6
환경 변화 없이 행동변화 기대할 수 없어서	1	0.6
개인의 가치관 파악의 단서가 되므로	1	0.6
모름/무응답	24	15.4
합계	156	

※ 응답자 기준

재범위험성에 대한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요인으로 1순위에서는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이 26.3%로 가장 높고, 범죄 경력이 24.4%, 생활환경이 18.6%, 교우관계가 11.5% 등의 순서였고, 1+2순위에서는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이 55.8%로 가장 높고, 생활환경이 41.0%, 범죄 경력이 34.0%, 교우관계가 32.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4-20 재범위험성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요인

요 인	1순위		2순위		1+2순위	
	명	%	명	%	명	%
범죄관련사항	6	3.8	2	1.3	8	5.1
범죄 경력	38	24.4	15	9.6	53	34.0

요 인	1순위		2순위		1+2순위	
	명	%	명	%	명	%
생활환경 (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29	18.6	35	22.4	64	41.0
성장과정	12	7.7	10	6.4	22	14.1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0	0.0	1	0.6	1	0.6
학력 및 학교생활	3	1.9	2	1.3	5	3.2
교우관계	18	11.5	33	21.2	51	32.7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41	26.3	46	29.5	87	55.8
진술태도	4	2.6	3	1.9	7	4.5
향후 생활계획	2	1.3	9	5.8	11	7.1
조사자의 의견	1	0.6	0	0.0	1	0.6
피조사자의 가치관과 태도	1	0.6	0	0.0	1	0.6
향후범죄유발가능성	1	0.6	0	0.0	1	0.6
합계	156	100	156	100	156	200

재범위험성에 대한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이유는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이 되므로 10.9%, 생활환경이 재범에 영향을 미치므로 9.6%, 범죄경력이 많을수록 재범의 위험이 크므로 7.1% 등 재범 예측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청소년 범죄는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9.6%, 보호자의 보호 능력이 범죄 발생과 관련이 있으므로 6.4%, 보호자의 관심 여부가 범죄 발생과 관련 있으므로 5.8% 등 생활환경이나 보호자의 관여도가 범죄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응답이 높았고, 불량 교우관계가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므로 7.1%, 교우관계에 따라 재범 유무가 결정되므로 5.8% 등 교우관계가 재범과 관계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4-21 재범위험성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많이 두는 요인선택 이유

이 유	빈도	백분율(%)
모름/무응답	34	21.8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이 되므로	17	10.9
생활환경이 재범에 영향을 미치므로	15	9.6
청소년 범죄는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15	9.6
범죄 경력이 많을수록 재범의 위험이 크므로	11	7.1
불량 교우관계가 범죄발생에 영향을 끼치므로	11	7.1
보호자의 보호 능력이 범죄 발생과 관련 있으므로	10	6.4

이 유	빈도	백분율(%)
교우관계에 따라 재범 유무가 결정되므로	9	5.8
보호자의 관심 여부가 범죄 발생과 관련 있으므로	9	5.8
보호자의 역할에 따라 재범요인이 달라지므로	9	5.8
가정내 보호유무가 향후 재범에 끼치는 영향이 커서	8	5.1
열악한 환경에서의 범죄 유발률이 높아서	5	3.2
보호자의 높은 관심은 개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4	2.6
성장과정이 범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4	2.6
가족관계가 재범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4	2.6
미성년은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4	2.6
범죄의 상습성 때문에	4	2.6
범죄 유발성향을 파악할 수 있어서	3	1.9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높으면 개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3	1.9
또래 집단과의 연계로 범죄습득이 가능하므로	3	1.9
불량 교우는 재범으로 이어지므로	2	1.3
가정의 안정성이 중요하므로	2	1.3
개인의 미래예측의 척도가 될 수 있어서	2	1.3
청소년 범죄는 부모의 훈육이 중요해서	1	0.6
성실한 진술태도는 행동개선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1	0.6
비행 심화정도에 따라 재범가능성에 차이 나므로	1	0.6
개인의 인성형성에 영향 미치므로	1	0.6
청소년 보호자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1	0.6
범죄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1	0.6
범죄사실의 경중을 알 수 있어서	1	0.6
범죄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서	1	0.6
의식이 태도를 결정하게 되므로	1	0.6
진술태도가 반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하므로	1	0.6
비행의 심화정도가 재범위험과의 상관관계 높아서	1	0.6
학교생활이 청소년 범죄발생에 중요역할을 해서	1	0.6
구체적 생활계획유무는 재범위험성과 관련 있어서	1	0.6
생활계획이 구체적이면 개선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	0.6
주변지지체계에 따라 향후 개선가능성이 달라져서	1	0.6
보호자의 관심이 청소년의 환경을 좌우하므로	1	0.6
규범, 준법의식은 성장과정에서 형성되므로	1	0.6
범죄경력은 비행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척도라서	1	0.6
성장과정이 향후 재범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어서	1	0.6
대상자 습성 및 보호요인을 중요시 하므로	1	0.6
개인의 가치관 파악의 단서가 되므로	1	0.6
합계	156	

※ 응답자 기준

조사자 의견 제안 시 소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이 78.8%로 가장 높고, 생활환경은 33.3%, 학력 및 학교생활은 32.1%, 진술태도는 32.1%, 향후 생활계획 27.6%, 범죄 경력 22.4% 등의 순서였으며,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범죄 경력이 58.3%로 가장 높았고,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48.7%, 교우관계 38.5% 등의 순서였다.

표 4-22 조사자 의견 제안시 소년에게 유리/불리하게 작용되는 요인

이 유	유리한 요인		불리한 요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죄관련사항	8	5.1	44	28.2
범죄 경력	35	22.4	91	58.3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52	33.3	35	22.4
성장과정	17	10.9	7	4.5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7	4.5	3	1.9
학력 및 학교생활	50	32.1	26	16.7
교우관계	24	15.4	60	38.5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123	78.8	76	48.7
진술태도	50	32.1	39	25.0
향후 생활계획	43	27.6	19	12.2
조사자의 의견	1	0.6	2	1.3
피해회복여부	1	0.6	1	0.6
직업	8	5.1	13	8.3
피조사자의 가치관과 태도	6	3.8	4	2.6
나이	1	0.6	0	0.0
합의여부	3	1.9	4	2.6
보호자의 지도에 대한 순응도	1	0.6	0	0.0
사회적지지	0	0.0	2	1.3
향후범죄유발가능성	4	2.6	4	2.6
모름	3	1.9	3	1.9
합계	156		156	

5)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작성양식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작성양식에 대해서 매우 만족은 3.2%, 만족하는 편은 87.8%로 응답자의 91%는 만족하고 있었다. 불만족하는 경우 개선방안은 구체화 및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4-23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작성 양식 만족도

만족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검사 결정전 조사서의 작성양식	매우만족	5	3.2	2.1	0.4
	만족하는 편	137	87.8		
	만족하지 않는편	13	8.3		
	전혀만족하지 않음	1	0.6		
	합계	156	100.0		

표 4-24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작성 양식 불만시 개선방안

이 유	빈도	백분율(%)
모름/무응답	2	14.3
포괄적인 양식내용 개선필요	2	14.3
포괄적인 간소화 필요	2	14.3
양식내용 중 불필요한 사항 유사하게 개선	2	14.3
포괄적인 간단한 질문지 형식으로 개선	1	7.1
양식내용 중 좀 더 집중화	1	7.1
포괄적인 질문지 형식으로 개선	1	7.1
양식내용 전문성 향상	1	7.1
양식내용 중 좀 더 구체화	1	7.1
기관평가상 조사 작성 시 실적 감점하지 말아야한다	1	7.1
객관적 평가도구 활용	1	7.1
합계	14	

※ 응답자 기준

6)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작성의 어려움 및 제도 전반적 개선과제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작성의 어려움으로 1순위에서는 진술에 크게 의존하나 진술의 진실성 판단이 쉽지 않은 점이 34%로 가장 높고, 회보기간이 너무 짧아 소년을 파악할 시간 부족이 32.7%로 두 번째이며, 1+2순위에서도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표 4-25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작성의 어려움

어려움	1순위		2순위		1+2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회보기간이 너무 짧아 소년을 파악할 시간 부족	51	32.7	21	14.0	72	46.2
피해자 면담, 접근이 어려운 점	25	16.0	21	14.0	46	29.5
검찰에서 수사 자료를 잘 주지 않는 점	9	5.8	8	5.3	17	10.9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가 없는 점	11	7.1	12	8.0	23	14.7
진술에 크게 의존하나 진술의 진실성 판단이 쉽지 않은 점	53	34.0	67	44.7	120	76.9
의견제시 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점	4	2.6	17	11.3	21	13.5
중복업무수행	2	1.3			2	1.3
인력부족			1	0.7	1	0.6
조사량이 많음			1	0.7	1	0.6
평가도구(심리검사)해석에 대한 전문성 부족			1	0.7	1	0.6
피조사자 태도 및 반응			1	0.7	1	0.6
없다	1	0.6			1	0.6
합계	156	100.0	150	100.0	156	

검사의 결정전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할 때,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충분한 조사기간이나 회보기간을 확보해야 하는 점이 있고, 특별히 조사해야 할 사건만 조사하고 죄질이 경미한 사건은 조사 의뢰를 생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조사 전담직원을 충원하여 조사서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하는 점이 있으며, 검사에게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조사관련 규정의 강제성을 강화하는 것 등의 개선점들이 제시되었다.

표 4-26 검사의 결정전조사제도 전반적 개선과제

개선과제	빈도	백분율(%)
모름/무응답	34	21.8
충분한 회보기간 확보	17	10.9
특별히 조사해야할 사건만 조사 필요	15	9.6
조사관 전문성 향상	8	5.1
없다	8	5.1
조사관련 규정 강제성 강화/업무수행제도화	7	4.5
죄질이 경미한 자에 대한 조사의뢰 생략	7	4.5
검사의 조사 중요성 인식필요	6	3.8

개선과제	빈도	백분율(%)
충분한 조사기간 확보	6	3.8
조사대상사건 기준의 범주화 필요	5	3.2
조사관 업무부담도 조정	4	2.6
피조사자 진술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 필요	4	2.6
검찰(경찰) 수사자료 공개	4	2.6
조사 전담 직원 충원	4	2.6
피조사자에게 조사에 대한 홍보필요	3	1.9
조사관 피해자 면담 및 적용필요	3	1.9
조사내용 반영에 대한 통지 필요	3	1.9
피해자, 가해자 조사에 응하도록 강제적 의무부과	3	1.9
조사서 신뢰성 확보	3	1.9
실적위주의 형식적인 의뢰 생략	3	1.9
조사서의 전문성 강화	3	1.9
조사요구에 대한 제도적 명문화	3	1.9
조사관 의견 적극반영 필요	2	1.3
조사인원, 확보기간 고려한 조사서의뢰	2	1.3
적시하는 부분 사항만 집중조사	2	1.3
활용에 대한 의무 규정	2	1.3
표준화된 위험성 평가도구 마련	2	1.3
의견제시시 객관적인 기준 필요	2	1.3
피해자 보호 및 치료차원의 접근 필요	2	1.3
자료 확보에 대한 근거 마련	2	1.3
중복의뢰 개선	2	1.3
조사의뢰시 좀 더 협조적이어야 함	2	1.3
조사서 의뢰 횟수 적정성 확보	1	0.6
범죄유형별 척도개발	1	0.6
조사요구선정의 표준화	1	0.6
자료조회 용이하도록 학교등 기관간 협조	1	0.6
조사관 진술 의존보다 실사 통한 확인 작업 병행	1	0.6
기소유예, 조사의뢰 생략	1	0.6
충분한 자료 검토 후 활용	1	0.6
조사의뢰 늘려야 함	1	0.6
조사의뢰시 피해자 연락처 기재	1	0.6
전문조사실 확보	1	0.6
조사서에 대한 피드백 필요	1	0.6
조사관의 조사서 중요성 인식	1	0.6
조사조직의 체계화	1	0.6
조사관 조사수요자 요청에 맞는 조사서 작성	1	0.6

개선과제	빈도	백분율(%)
피조사자 및 보호자조사 수긍, 법적강제성 강화	1	0.6
조사관 객관적 자료 확보 필요	1	0.6
조사관 조사내용 공정성 확보	1	0.6
조사관 의견에 대한 회답 필요	1	0.6
심리검사로 진술의존으로 생기는 단점보완	1	0.6
강력범의 경우 조사량 조절	1	0.6
동일한 피의자의 각기 다른 사건으로 의뢰개선필요	1	0.6
재범이상의 소년들에 대한 조사의뢰 생략	1	0.6
조사전력 활용	1	0.6
조사관 다양한 수사자료 접근 필요	1	0.6
조사관 의견에 대한 신뢰향상	1	0.6
범죄 경력 있을 경우 객관적 자료 마련	1	0.6
조사서 심리검사도구 사용 전문성 확보	1	0.6
조사관 다른 업무 부여지양	1	0.6
판결정문/중문으로 작성 불필요	1	0.6
인간적이면서 신중한 판단필요	1	0.6
조사서 활용 확대 필요	1	0.6
형식적인 회보 지양	1	0.6
합계	156	

※ 응답자 기준

검사의 결정전조사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사건은 제한 없다가 52.6%로 가장 높고, 폭행/상해가 21.2%, 절도범죄가 17.9%, 성폭력범죄가 10.9%로 나타났으며, 유용한 조사대상은 제한 없다가 39.1%, 초범이 38.5%, 재범이 19.9%로 나타났다.

표 4-27 검사의 결정전조사의 유용성

유용성		빈도	백분율 (%)
유용한 사건	폭행/상해(폭처법위반 등 폭력범죄)	33	21.2
	절도범죄	28	17.9
	성폭력범죄	17	10.9
	교통범죄	9	5.8
	살인/치사범죄	1	0.6
	풍속범죄(도박, 윤락행위 등)	3	1.9
	제한 없다	82	52.6

유용성		빈도	백분율 (%)
	소년사건전반	1	0.6
	합계	156	111.5
유용한 조사대상	초범	60	38.5
	재범	31	19.9
	3범이상	4	2.6
	제한 없다	61	39.1
	합계	156	100.0

7) 검사의 결정전조사 작성 시 활용자료

검사의 결정전조사서를 의뢰받을 때 경찰단계에서의 환경조사서가 첨부되는 경우는 22.4%로 나타났으며, 첨부된 경우 의뢰건수의 약 49%가 첨부되고 있었다.

표 4-28 경찰 단계에서 환경조사서 첨부 여부

첨부여부		빈도	백분율(%)
경찰단계 환경조사 첨부	그렇다	35	22.4
	아니다	121	77.6
	합계	156	100.0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작성을 위해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자료는 범죄경력조회 55.1%, 주민등록등본 60.3%, 가족관계등록부 34%, 주민등록 초본 35.3%, 제적등본 41.0%, 학생생활기록부 91.0%, 심리검사 25%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9 검사의 결정전조사에 활용하는 자료

활용 자료	빈도	백분율(%)
학생생활기록부	142	91.0
주민등록 등본	94	60.3
범죄경력조회	86	55.1
제적등본	64	41.0
주민등록 초본	55	35.3
가족관계등록부	53	34.0

활용 자료	빈도	백분율(%)
심리검사	39	25.0
보호관찰경력조회	21	13.5
범죄(수사)기록조회	21	13.5
문자완성검사	16	10.3
MMPI검사	16	10.3
진료기록부	15	9.6
PAI성격조사	13	8.3
소년원 경력기록	8	5.1
소년진술조서	7	4.5
호적등본	6	3.8
보호자진술	5	3.2
신문조서	5	3.2
분류심사서	5	3.2
성격검사지	5	3.2
무응답	5	3.2
이전 조사경력	4	2.6
의견서	4	2.6
의사소견서	3	1.9
정신과 치료여부	3	1.9
담임교사 의견	3	1.9
범죄자료	3	1.9
사건송치서	2	1.3
면담	2	1.3
SCT	2	1.3
MBTI 성격유형조사	2	1.3
지명수배조회	2	1.3
범죄사실통보서	2	1.3
재범위험성 평가서	2	1.3
진술조서	2	1.3
상담조사서	1	0.6
시설 및 수용시 생활태도	1	0.6
생활보호대상증명	1	0.6
인터넷중독검사지	1	0.6
원동기 면허증	1	0.6
소년원수용조회	1	0.6
주변사람 진술	1	0.6
자격증	1	0.6
피해자 진술조서	1	0.6

활용 자료	빈도	백분율(%)
판결문	1	0.6
합의서	1	0.6
검정고시학원등록증	1	0.6
환경조사서	1	0.6
가족질병사항	1	0.6
재직증명	1	0.6
경찰사건의견서	1	0.6
공범진술	1	0.6
주변관계인 진술	1	0.6
공소장	1	0.6
합계	156	

※ 응답자 기준

마. 판결전 조사 제도에 대한 인식

1) 판결전조사서 작성 건수 및 의뢰 조사 대상

지금까지 판결전조사서를 작성한 건수는 20건이상이 25.3%, 10건이상 20건미만이 30.7%, 5건이상 10건미만이 8.4%, 5건미만이 20.5%, 없음이 15.1%이며, 평균은 25.3건이었다. 주로 의뢰받은 조사대상은 초범이 7.8%, 재범이 25.5%, 3범이상이 17.7%이며 제한 없다가 48.9%로 가장 많았다.

표 4-30 판결전조사서 작성 건수

건 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누적 판결전조사서 작성 건수	없음	25	15.1	25.3	51.4
	5건미만	34	20.5		
	5건이상~10건미만	14	8.4		
	10건이상~20건미만	51	30.7		
	20건이상	42	25.3		
	합계	166	100.0		

표 4-31 판결전조사 대상

대 상		빈도	백분율(%)
조사대상	초범	11	7.8
	재범	36	25.5
	3범이상	25	17.7
	제한 없다	69	48.9
	합계	141	100.0

2) 판결전조사 비의뢰 이유 및 필요성과 활용성

판사가 판결전조사를 의뢰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임의규정으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 34.8%로 가장 높았고, 판사가 조사의 효용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34%로 두 번째이며, 판사가 소년의 인성이나 환경보다는 죄질로 판단하기 때문이 19.1%로 나타났다.

표 4-32 판사가 판결전조사를 의뢰하지 않는 이유

이 유	빈도	백분율(%)
임의규정으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49	34.8
판사가 조사의 효용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48	34.0
판사가 소년의 인성이나 환경보다 죄질로 판단하기에	27	19.1
양형조사관제도	9	6.4
판사가 판결전조사제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7	5.0
판사가 소년범 판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5	3.5
조사서를 자세히 읽을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5	3.5
자체조사관이 있어서	3	2.1
모름	2	1.4
회보기간이 길기 때문에	1	0.7
조사기관 주체에 대한 논쟁으로	1	0.7
대부분 소년원 송치되기 때문에	1	0.7
합계	141	

※ 응답자 기준

판결전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 42.6%, 필요하다 52.5%로 95.1%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3%는 그저 그렇다, 0.7%는 별로 필요하

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판사가 판결전조사를 활용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7.1%,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는 52.5%로 59.6%가 활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18.4%는 그저그렇다, 22.0%는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조사관들은 판결전조사의 필요성은 5점 만점에 4.4점, 판사의 활용도는 3.4점으로 인식하여, 필요성에 비해서 활용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4-33 판결전조사 필요성 및 활용도

필요성 / 활용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판결전조사의 필요성	별로 필요하지 않다	1	0.7	4.4	0.6
	그저 그렇다	6	4.3		
	필요하다	74	52.5		
	매우 필요하다	60	42.6		
	합계	141	100.0		
판결전조사의 활용도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다	1	0.7	3.4	0.9
	활용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30	21.3		
	그저 그렇다	26	18.4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	74	52.5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10	7.1		
	합계	141	100.0		

3) 판결전조사서 작성시 조사관의 전문성

판결전조사서를 작성하는 조사관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매우 높다는 2.8%, 높은 편이다는 40.4%로 43.2%가 높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보통이다는 51.8%, 낮은 편이다는 5.0%로 5점 만점의 평균은 3.4점으로 약간 높은 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표 4-34 판결전조사서 작성 조사관의 전문성

전문성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편차
조사관의 전문성	낮은 편이다	7	5.0	3.4	0.6
	보통이다	73	51.8		
	높은 편이다	57	40.4		
	매우 높다	4	2.8		
	합계	141	100.0		

조사관의 전문성이 낮은 경우도 있다면, 전문교육강화 8.5%, 주기적인 교육개설 5.7% 등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주요 해결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보직유지 5.7%, 조사 전문 인력 양성 3.5%,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배치 3.5% 등의 전문 인력 배치를 제안하고 있었다.

표 4-35 판결전조사서 작성 조사관의 전문성 해결 방안

개선방안	빈도	백분율(%)
모름/무응답	71	50.4
없다	22	15.6
전문교육강화	12	8.5
일정기간 보직유지	8	5.7
주기적인 교육개설	8	5.7
심리검사 도구 활용 능력 필요	5	3.5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배치	5	3.5
조사전문인력 양성	5	3.5
조사 직원 충원	4	2.8
조사과 설치	3	2.1
실무 경험자 배치	3	2.1
조사 직원 업무량 경감	2	1.4
조사 직원 타업무 부여금지 필요	2	1.4
정규교육과정개설	1	0.7
조사자로써 필요한 훈련과정 개설	1	0.7
소명의식 강화	1	0.7
조사의뢰 남발개선	1	0.7
조사 직원 업무중복 개선	1	0.7
관련유자격자 특채	1	0.7
자격증 유무관리	1	0.7

개선방안	빈도	백분율(%)
충분한 조사시간 필요	1	0.7
좀 더 다양한 케이스 선별	1	0.7
자격 취득을 위한 학비지원	1	0.7
소년면담기법 활용 능력 필요	1	0.7
폐쇄형 질문을 개방형 질문으로	1	0.7
꾸준한 재교육 필요	1	0.7
조사관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	1	0.7
합계	141	

※ 응답자 기준

4) 판결전조사에서 조사내용의 중요성

판결전전조사에서 조사내용의 중요도는,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은 4점 만점에 3.6점, 생활환경 역시 3.6점이며, 성장과정은 3.5점, 교우관계와 조사자의 의견은 각각 3.4점 등으로 인식되었다.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함이 65.2%로 높았고, 생활환경은 매우 중요함이 59.6%, 성장과정은 매우 중요함이 48.9%, 조사자의 의견과 교우관계는 매우 중요함이 각각 41.1%로 나타났다.

표 4-36 판결전조사에서 조사내용의 중요성

조사 내용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범죄관련사항	중요하지 않은 편임	9	6.4	3.3	0.6
	중요한 편임	85	60.3		
	매우 중요함	47	33.3		
	합계	141	100.0		
범죄 경력	중요하지 않은 편임	4	2.8	3.3	0.5
	중요한 편임	84	59.6		
	매우 중요함	53	37.6		
	합계	141	100.0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중요하지 않은 편임	1	0.7	3.6	0.5
	중요한 편임	56	39.7		
	매우 중요함	84	59.6		
	합계	141	100.0		
성장과정	중요하지 않은 편임	4	2.8	3.5	0.6
	중요한 편임	68	48.2		

조사 내용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매우 중요함	69	48.9		
	합계	141	100.0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중요하지 않은 편임	21	14.9	3.0	0.6
	중요한 편임	97	68.8		
	매우 중요함	23	16.3		
	합계	141	100.0		
학력 및 학교생활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0.7	3.1	0.6
	중요하지 않은 편임	10	7.1		
	중요한 편임	97	68.8		
	매우 중요함	33	23.4		
	합계	141	100.0		
교우관계	중요하지 않은 편임	2	1.4	3.4	0.5
	중요한 편임	81	57.4		
	매우 중요함	58	41.1		
	합계	141	100.0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중요하지 않은 편임	4	2.8	3.6	0.5
	중요한 편임	45	31.9		
	매우 중요함	92	65.2		
	합계	141	100.0		
진술태도	중요하지 않은 편임	16	11.3	3.1	0.6
	중요한 편임	96	68.1		
	매우 중요함	29	20.6		
	합계	141	100.0		
향후 생활계획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0.7	3.1	0.6
	중요하지 않은 편임	21	14.9		
	중요한 편임	84	59.6		
	매우 중요함	35	24.8		
	합계	141	100.0		
조사자의 의견	중요하지 않은 편임	6	4.3	3.4	0.6
	중요한 편임	77	54.6		
	매우 중요함	58	41.1		
	합계	141	100.0		

조사자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요인으로 1순위에서는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이 26.2%, 생활환경이 21.3%로 높고, 성장과정이 16.3%이며, 1+2순위에서는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이 51.1%로 가장 높고, 생활환경 46.1%, 성장과정 29.1%, 범죄 경력 27.0% 등의 순서였다.

표 4-37 조사자 의견 제안 시 비중 두는 요인

요 인	1순위		2순위		1+2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범죄관련사항	17	12.1	4	2.8	21	14.9
범죄 경력	20	14.2	18	12.8	38	27.0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30	21.3	35	24.8	65	46.1
성장과정	23	16.3	18	12.8	41	29.1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1	0.7			1	0.7
학력 및 학교생활	0	0.0	4	2.8	4	2.8
교우관계	3	2.1	14	9.9	17	12.1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37	26.2	35	24.8	72	51.1
진술태도	1	0.7	5	3.5	6	4.3
향후 생활계획	2	1.4	5	3.5	7	5.0
조사자의 의견	7	5.0	3	2.1	10	7.1
합계	141	100.0	141	100.0	141	200.0

조사자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이유는 청소년 범죄는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가 13.5%,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이 되므로 12.8%, 성장과정이 범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7.8%, 범죄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서 6.4%, 보호자의 보호 능력이 범죄발생과 관련 있어서 8.5%, 보호자의 관심 여부가 범죄발생과 관련 있어서 7.1% 등으로 나타났다.

표 4-38 조사자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이유

이 유	빈도	백분율 (%)
모름/무응답	26	18.4
청소년 범죄는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19	13.5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이 되므로	18	12.8
보호자의 보호 능력이 범죄 발생과 관련 있으므로	12	8.5
성장과정이 범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11	7.8
범죄 경력이 많을수록 재범의 위험이 크므로	10	7.1
보호자의 관심 여부가 범죄 발생과 관련 있으므로	10	7.1
범죄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서	9	6.4
불량 교우관계가 범죄발생에 영향을 끼치므로	7	5.0
생활환경이 재범에 영향을 미치므로	5	3.5

이 유	빈도	백분율 (%)
미성년은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5	3.5
보호자의 역할에 따라 재범요인이 달라지므로	5	3.5
개인의 인성형성에 영향 미치므로	4	2.8
양형을 결정하는 중요요소이므로	4	2.8
가정내 보호유무가 향후 재범에 끼치는 영향이 커서	3	2.1
범죄 유발성향을 파악할 수 있어서	2	1.4
개인의 잠재의식 파악의 단서가 되므로	2	1.4
가정의 안정성이 중요하므로	2	1.4
피조사자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주므로	2	1.4
시설내, 외의 처우 의견제시	2	1.4
환경변화없이 행동변화 기대할 수 없어서	2	1.4
또래 집단과의 연계로 범죄습득이 가능하므로	2	1.4
기소 결정권 참작자료이므로	2	1.4
생활계획에 따라 재범의 확률이 높아져서	1	0.7
범죄사실의 경중을 알 수 있어서	1	0.7
범죄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1	0.7
정확한 조사자의 의견이 재범예방에 중요하므로	1	0.7
열악한 환경에서의 범죄 유발률이 높아서	1	0.7
가족관계, 경제적 환경이 대상자의 비행에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1	0.7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높으면 개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1	0.7
범죄에 대한 인식의 단서가 되므로	1	0.7
범죄노출 정도 파악의 척도가 되므로	1	0.7
피조사자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어서	1	0.7
생활계획이 구체적이면 개선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	0.7
주변지지체계에 따라 향후 개선가능성이 달라져서	1	0.7
죄질에 따라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므로	1	0.7
교우관계에 따라 재범 유무가 결정되므로	1	0.7
사회내 처우 가능성	1	0.7
행위자의 책임요소에 대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1	0.7
객관적인 사실 비중이 크기 때문에	1	0.7
피조사자의 정체성을 알 수 있어서	1	0.7
개인의 미래예측의 척도가 될 수 있어서	1	0.7
범죄경력은 비행 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척도라서	1	0.7
범죄의 상습성 때문에	1	0.7
범죄경력과 현재 태도의 상관관계를 보기 때문에	1	0.7
조사자 의견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1	0.7

이 유	빈도	백분율 (%)
정신적 병력이 있는 경우 재범가능성 높아서	1	0.7
보호자의 높은 관심은 개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1	0.7
합계	141	

※ 응답자 기준

재범위험성에 대한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요인으로 1순위에서는 범죄 경력이 31.2%로 가장 높고,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이 25.5%, 생활환경 13.5%, 교우관계 11.3%이며, 1+2순위에서는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이 51.8%로 가장 높고, 범죄 경력이 41.8%, 생활환경이 40.4%, 교우관계가 24.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4-39 재범위험성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요인

요 인	1순위		2순위		1+2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범죄관련사항	8	5.7	5	3.5	13	9.2
범죄 경력	44	31.2	15	10.6	59	41.8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19	13.5	38	27.0	57	40.4
성장과정	5	3.5	10	7.1	15	10.6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1	0.7	1	0.7	2	1.4
학력 및 학교생활	2	1.4	3	2.1	5	3.5
교우관계	16	11.3	19	13.5	35	24.8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36	25.5	37	26.2	73	51.8
진술태도	5	3.5	2	1.4	7	5.0
향후 생활계획	3	2.1	10	7.1	13	9.2
조사자의 의견	2	1.4	1	0.7	2	1.4
피조사자의 가치관과 태도	0	0.0	0	0.0	1	0.7
합계	141	100.0	141	100.0	141	200.0

재범위험성에 대한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이유는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이 되므로 14.9%, 범죄경력이 많을수록 재범의 위험이 크므로 8.5%, 생활환경이 재범에 영향을 미치므로 7.1% 등 재범 예측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청소년 범죄는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5.7%, 보호자의 역할에 따

라 재범요인이 달라지므로 6.4%, 보호자의 보호 능력이 범죄 발생과 관련이 있으므로 6.4%, 보호자의 관심 여부가 범죄 발생과 관련 있으므로 5.0% 등 생활환경이나 보호자의 관여도가 범죄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응답이 높았고, 불량 교우관계가 범죄발생에 영향 미치므로 7.1%, 교우관계에 따라 재범 유무가 결정되므로 4.3% 등 교우관계가 재범과 관계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4-40 재범위험성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이유

이 유	빈도	백분율(%)
모름/무응답	40	28.4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이 되므로	21	14.9
범죄 경력이 많을수록 재범의 위험이 크므로	12	8.5
생활환경이 재범에 영향을 미치므로	10	7.1
불량 교우관계가 범죄발생에 영향을 끼치므로	10	7.1
보호자의 역할에 따라 재범요인이 달라지므로	9	6.4
보호자의 보호 능력이 범죄 발생과 관련 있으므로	9	6.4
청소년 범죄는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8	5.7
가정내 보호유무가 향후 재범에 끼치는 영향이 커서	7	5.0
보호자의 관심 여부가 범죄 발생과 관련 있으므로	7	5.0
교우관계에 따라 재범 유무가 결정되므로	6	4.3
미성년은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5	3.5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높으면 개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4	2.8
성장과정이 범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4	2.8
범죄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서	4	2.8
개인의 가치관 파악의 단서가 되므로	3	2.1
보호자의 높은 관심은 개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3	2.1
불량 교우는 재범으로 이어지므로	2	1.4
열악한 환경에서의 범죄 유발률이 높아서	2	1.4
범죄에 대한 인식의 단서가 되므로	2	1.4
범죄의 상습성 때문에	2	1.4
개인의 인성형성에 영향 미치므로	1	0.7
생활계획에 따라 재범의 확률이 높아져서	1	0.7
진술태도가 반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하므로	1	0.7
가정의 안정성이 중요하므로	1	0.7
범죄사실의 경중을 알 수 있어서	1	0.7
피조사자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주므로	1	0.7
피조사자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어서	1	0.7

이 유	빈도	백분율(%)
관계형성의 중요성 때문에	1	0.7
규범, 준법의식은 성장과정에서 형성되므로	1	0.7
범죄 유발성향을 파악할 수 있어서	1	0.7
청소년 범죄는 부모의 훈육이 중요해서	1	0.7
또래 집단과의 연계로 범죄습득이 가능하므로	1	0.7
비행의 심화정도가 재범위험과의 상관관계 높아서	1	0.7
주변지자체계에 따라 향후 개선가능성이 달라져서	1	0.7
가족 간의 갈등은 가출 후 범죄로 이어지므로	1	0.7
범죄경력은 비행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척도라서	1	0.7
범죄경력이 많을수록 사회부적응이 심화되므로	1	0.7
범죄경력이 많을수록 일탈행위가 심화되므로	1	0.7
범죄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1	0.7
범죄경력과 현재 태도의 상관관계를 보기 때문에	1	0.7
조사자 의견에 조사서 내용이 함축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1	0.7
단독범죄 보단 또래집단과의 범행이 많으므로	1	0.7
합계	141	

※ 응답자 기준

조사자 의견 제안 시 소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76.6%로 가장 높고, 생활환경은 40.4%, 학력 및 학교생활은 31.2%, 진술태도는 26.2%, 향후 생활계획 26.2%, 범죄 경력 20.6% 등의 순서였으며,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범죄 경력이 61.0%로 가장 높았고,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46.8%, 교우관계 34.8% 등의 순서였다.

표 4-41 조사자 의견 제안시 소년에게 유리/불리하게 작용되는 요인

이 유	유리한 요인		불리한 요인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범죄관련사항	14	9.9	38	27.0
범죄 경력	29	20.6	86	61.0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57	40.4	38	27.0
성장과정	19	13.5	9	6.4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6	4.3	6	4.3
학력 및 학교생활	44	31.2	23	16.3
교우관계	19	13.5	49	34.8

이 유	유리한 요인		불리한 요인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108	76.6	66	46.8
진술태도	37	26.2	32	22.7
향후 생활계획	37	26.2	16	11.3
조사자의 의견	1	0.7	5	3.5
피해회복여부	3	2.1	4	2.8
직업	7	5.0	10	7.1
피조사자의 가치관과 태도	7	5.0	4	2.8
나이	1	0.7	2	1.4
합의여부	4	2.8	1	0.7
향후범죄유발가능성	3	2.1	7	5.0
모름	1	0.7	1	0.7
합계	141		141	

※ 응답자 기준

5) 판결전조사서 작성양식

판결전조사서 작성양식에 대해서 매우 만족은 6.4%, 만족하는 편은 87.9%로 응답자의 94.3%는 만족하고 있었다. 불만족하는 경우 개선방안은 간소화 및 불필요한 사항을 유사한 것으로 개선할 것 등이었다.

표 4-42 판결전조사서 작성 양식 만족도

만족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판결전조사서의 작성양식	매우만족	9	6.4	2.0	0.3
	만족하는 편	124	87.9		
	만족하지 않는편	8	5.7		
	합계	141	100.0		

표 4-43 판결전조사서 작성 양식 불만시 개선방안

이 유	빈도	백분율(%)
양식내용 중 불필요한 사항 유사하게 개선	2	25.0
모름/무응답	2	25.0
포괄적인 간소화 필요	1	12.5
포괄적인 자유로운 형식으로 개선	1	12.5
교우관계를 대인관계로 바꿈	1	12.5
생활환경과 보호환경 분리 필요 없음	1	12.5
중복기재 영역 최소화	1	12.5
양식변경필요	1	12.5
합계	8	

※ 응답자 기준

6) 판결전조사서 작성의 어려움 및 제도 전반적 개선과제

판결전조사서 작성의 어려움으로 1순위에서는 진술에 크게 의존하나 진술의 진실성 판단이 쉽지 않은 점이 33.3%로 가장 높고, 회보기간이 너무 짧아 소년을 파악할 시간 부족이 27.7%로 두 번째이며, 피해자 면담 및 접근이 어려운 점이 20.6%로 나타났고, 1+2순위에서도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표 4-44 판결전조사서 작성의 어려움

어려움	1순위		2순위		1+2순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회보기간이 너무 짧아 소년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한 점	39	27.7	16	12.2	55	39.0
피해자 면담, 접근이 어려운 점	29	20.6	33	25.2	62	44.0
검찰에서 수사 자료를 잘 주지 않는 점	4	2.8	7	5.3	11	7.8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가 없는 점	11	7.8	11	8.4	22	15.6
진술에 크게 의존하나 진술의 진실성 판단이 쉽지 않은 점	47	33.3	52	39.7	99	70.2
의견제시 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점	2	1.4	11	8.4	13	9.2
중복업무수행						
인력부족	2	1.4			2	1.4
조사량이 많음	3	2.1			3	2.1
평가도구(심리검사)해석에 대한 전문성 부족	1	0.7	1	0.8	2	1.4
조사경험이 많지 않아서	1	0.7			1	0.7
교도소내 수용시설 안에서 조사를 해야 되어서	1	0.7			1	0.7
모름/무응답	1	0.7			1	0.7
합계	141	100	131	100	141	

※ 응답자 기준

판결전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할 때,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충분한 조사기간이나 회보기간을 확보해야 하는 점이 있고, 특별히 조사해야 할 사건만 조사하고 죄질이 경미한 사건은 조사 의뢰를 생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조사 전담 직원을 충원하여 조사서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하는 점이 있으며, 판사에게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조사관련 규정의 강제성을 강화하는 것 등의 개선점들이 제시되었다.

표 4-45 판결전조사제도 전반적 개선과제

개선과제	빈도	백분율(%)
모름/무응답	41	29.1
충분한 회보기간 확보	10	7.1
없다	10	7.1
표준화된 위험성 평가도구 마련	8	5.7
조사관 전문성 향상	7	5.0
조사관련 규정 강제성 강화/업무수행제도화	7	5.0
의견제시시 객관적인 기준 필요	5	3.5
조사 전담 직원 충원	5	3.5
충분한 조사기간 확보	4	2.8
적시하는 부분 사항만 집중조사	3	2.1
판사의 조사 효용성 인식	3	2.1
조사대상사건 기준의 범주화 필요	3	2.1
피조사자 진술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 필요	3	2.1
조사관 피해자 면담 및 적용필요	3	2.1
조사관 다양한 수사자료 접근 필요	2	1.4
검찰(경찰) 수사자료 공개	2	1.4
조사의뢰 늘려야 함	2	1.4
양형조사관 제도와의 합의	2	1.4
조사과 설치 필요	2	1.4
활용에 대한 의무 규정	2	1.4
조사서의 전문성 강화	2	1.4
범죄유형별 척도개발	2	1.4
조사의뢰시 피해자 연락처 기재	2	1.4
양식의 대상자에 맞는 자유로운 형식	2	1.4
충분한 자료 검토 후 활용	2	1.4
자료조회 용이하도록 학교등 기관간 협조	2	1.4
조사서 심리검사도구 사용 전문성 확보	1	0.7

개선과제	빈도	백분율(%)
자료 확보에 대한 근거 마련	1	0.7
특별히 조사해야할 사건만 조사 필요	1	0.7
조사인원, 확보기간 고려한 조사서의뢰	1	0.7
조사 요구 선정의 표준화	1	0.7
조사관 의견 적극반영 필요	1	0.7
조사관 업무부담도 조정	1	0.7
조사관 면담 기법 교육	1	0.7
조사전담 직원의 지속적인 교육 필요	1	0.7
조사서 신뢰성 확보	1	0.7
조사관 다른 업무 부여지양	1	0.7
조사관 심도 있는 조사서 작성 필요	1	0.7
미래지향적(가변요인)에 중점 필요	1	0.7
모든 소년범 실시 필요	1	0.7
피조사자 및 보호자 조사 수긍, 법적강제성 강화	1	0.7
피조사자에게 조사에 대한 홍보필요	1	0.7
피해자, 가해자 조사에 응하도록 강제적 의무부과	1	0.7
조사관 객관적 자료 확보 필요	1	0.7
죄질이 경미한 자에 대한 조사의뢰 생략	1	0.7
조사관 의견에 대한 회답 필요	1	0.7
조사 주체에 대한 권한 분쟁해결	1	0.7
조사요구에 대한 제도적 명문화	1	0.7
법원에서의 적극적인 조사의뢰	1	0.7
특정범죄에 대하여 조사 법규정 필요	1	0.7
조사내용 반영에 대한 통지 필요	1	0.7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에 대한 평가마련	1	0.7
조사서 적극적 활용의지 필요	1	0.7
양식의 단순화 필요	1	0.7
인간적이면서 신중한 판단필요	1	0.7
회보기간의 자유로운 조정	1	0.7
조사서 의뢰 횟수 적정성 확보	1	0.7
합계	141	

※ 응답자 기준

판결전조사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사건은 제한 없다가 61.0%로 가장 높고, 성폭력범죄가 19.9%, 폭행/상해가 15.6%, 절도범죄가 9.9% 로 나타났으며, 유용한 조사대상은 제한 없다가 51.8%, 초범이 17.0%, 재범이 22.0%로 나타났다.

표 4-46 판결전조사의 유용성

유용성		빈도	백분율(%)
유용한 사건	폭행/상해(폭처법위반 등 폭력범죄)	22	15.6
	절도범죄	14	9.9
	성폭력범죄	28	19.9
	교통범죄	2	1.4
	살인/치사범죄	6	4.3
	풍속범죄(도박, 윤락행위 등)	1	0.7
	제한 없다	86	61.0
	대인범죄	1	0.7
	합계	141	113.5
유용한 조사대상	초범	24	17.0
	재범	31	22.0
	3범이상	13	9.2
	제한 없다	73	51.8
	합계	141	100.0

7) 판결전조사 작성 시 활용자료

판결전조사서를 의뢰받을 때 검사의 결정전조사서가 첨부되는 경우는 2.8%로 나타났으며, 첨부된 경우 의뢰건수의 약 33%가 첨부되고 있었다.

표 4-47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첨부 여부

첨부여부		빈도	백분율(%)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첨부	그렇다	4	2.8
	아니다	137	97.2
	합계	141	100.0

판결전조사서 작성을 위해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자료는 학생생활기록부 84.4%, 범죄경력조회 53.2%, 주민등록등본 52.5%, 제적등본 37.6%, 주민등록초본 35.5%, 가족관계등록부 31.9%, 심리검사 2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8 판결전조사에 활용하는 자료

활용 자료	빈도	백분율(%)
학생생활기록부	119	84.4
범죄경력조회	75	53.2
주민등록 등본	74	52.5
제적등본	53	37.6
주민등록 초본	50	35.5
가족관계등록부	45	31.9
심리검사	42	29.8
보호관찰경력조회	24	17.0
MMPI검사	21	14.9
범죄(수사)기록조회	18	12.8
진료기록부	14	9.9
무응답	12	8.5
소년원 경력기록	10	7.1
문장완성검사	9	6.4
분류심사서	9	6.4
PAI성격조사	7	5.0
보호자진술	5	3.5
소년진술조서	5	3.5
호적등본	5	3.5
담임교사 의견	4	2.8
공소장	4	2.8
성격검사지	4	2.8
이전 조사경력	4	2.8
범죄사실 통보서	4	2.8
재범위험성 평가서	3	2.1
정신과 치료여부	3	2.1
의사소견서	3	2.1
시설 및 수용시 생활태도	3	2.1
면담	2	1.4
신문조서	2	1.4
상담자료	2	1.4
상담조사서	2	1.4
의견서	2	1.4
재직증명	2	1.4
SCT	2	1.4
환경조사서	2	1.4
인터넷중독 검사지	1	0.7

활용 자료	빈도	백분율(%)
알코올 장애선별 검사	1	0.7
원동기 면허증	1	0.7
소년원수용조회	1	0.7
사건송치서	1	0.7
생활보호대상증명	1	0.7
사회내처우 집행기록	1	0.7
범죄자료	1	0.7
진술조서	1	0.7
생활환경조사서	1	0.7
소년정보시스템	1	0.7
지명수배조회	1	0.7
자격증	1	0.7
표창선행기록	1	0.7
피조사자 응답지	1	0.7
합의서	1	0.7
기본증명서	1	0.7
이전 범죄판결문	1	0.7
결정전 조사	1	0.7
강간통념척도	1	0.7
경찰사건의견서	1	0.7
검정고시학원등록증	1	0.7
HTP	1	0.7
공범진술	1	0.7
합계	141	

※ 응답자 기준

바. 법원의 결정전조사 제도에 대한 인식

1) 법원의 결정전조사서 작성 건수 및 의뢰 조사 대상

지금까지 법원의 결정전조사서를 작성한 건수는 20건이상이 57.0%로 가장 많고 10건이상 20건미만이 27.9%, 5건이상 10건미만이 6.1%이며, 평균은 64.9건이었다. 주로 의뢰받은 조사대상은 초범이 11.0%, 재범이 24.4%, 3범이상이 3.7%이며 제한 없다가 61.0%로 가장 많았다.

표 4-49 법원의 결정전조사서 작성 건수

건 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누적 법원 결정전조사서 작성 건수	없음	2	1.2	64.9	84.8
	5건미만	13	7.9		
	5건이상~10건미만	10	6.1		
	10건이상~20건미만	46	27.9		
	20건이상	94	57.0		
	합계	165	100.0		

표 4-50 법원의 결정전조사 대상

대 상		빈도	백분율(%)
조사대상	초범	18	11.0
	재범	40	24.4
	3범이상	6	3.7
	제한 없다	100	61.0
	합계	164	100.0

2) 법원의 결정전조사 비의뢰 이유 및 필요성과 활용성

판사가 법원의 결정전조사를 의뢰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임의규정으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 32.9%, 판사가 조사의 효용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31.7%, 판사가 소년의 인성이나 환경보다는 죄질로 판단하므로 20.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4-51 법원의 결정전조사를 의뢰하지 않는 이유

이 유	빈도	백분율(%)
임의규정으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54	32.9
판사가 조사의 효용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52	31.7
판사가 소년의 인성이나 환경보다는 죄질로 판단하므로	33	20.1
조사서를 자세히 읽을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17	10.4
판사가 법원의 결정전조사제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7	4.3
판사가 소년범 판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5	3.0
회보기간이 길기 때문에	5	3.0

이 유	빈도	백분율(%)
모름	5	3.0
조사서를 신뢰하지 않아서	1	0.6
없다	1	0.6
합계	164	

※ 응답자 기준

법원의 결정전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 32.3%, 필요하다 62.8%로 95.1%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3%는 그저 그렇다, 0.6%는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판사가 법원의 결정전조사를 활용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11.0%,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는 75.0%로 86.0%가 활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9.8%는 그저그렇다, 4.3%는 활용하고 있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조사관들은 법원의 결정전조사의 필요성은 5점 만점에 4.3점, 판사의 활용도는 3.9점으로 인식하여, 검사의 결정전조사와 판결전조사에 비해서 활용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표 4-52 법원의 결정전조사 필요성 및 활용도

필요성 / 활용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법원의 결정전조사의 필요성	별로 필요하지 않다	1	0.6	4.3	0.6
	그저 그렇다	7	4.3		
	필요하다	103	62.8		
	매우 필요하다	53	32.3		
	합계	164	100.0		
법원의 결정전조사의 활용도	활용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7	4.3	3.9	0.6
	그저 그렇다	16	9.8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	123	75.0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18	11.0		
	합계	164	100.0		

3) 법원의 결정전조사서 작성시 조사관의 전문성

법원의 결정전조사서를 작성하는 조사관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매우 높다는 2.4%, 높은 편이다는 42.1%로 44.5%가 높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보통이다는

50.6%, 낮은 편이다는 4.9%로 5점 만점의 평균은 3.4점으로 약간 높은 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표 4-53 법원의 결정전조사서 작성 조사관의 전문성

전문성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편차
조사관의 전문성	낮은 편이다	8	4.9	3.4	0.6
	보통이다	83	50.6		
	높은 편이다	69	42.1		
	매우 높다	4	2.4		
	합계	164	100.0		

조사관의 전문성이 낮은 경우도 있다면, 전문교육강화 9.8%, 주기적인 교육개설 5.5% 등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주요 해결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보직유지 3.7%, 조사 전문 인력 양성 4.3%, 조사과 설치와 조사 직원 충원 각각 3.7% 등의 전문 인력 배치를 제안하고 있었다.

표 4-54 법원의 결정전조사서 작성 조사관의 전문성 해결 방안

개선방안	빈도	백분율(%)
모름/무응답	88	53.7
없다	29	17.7
전문교육강화	16	9.8
주기적인 교육개설	9	5.5
조사 전문 인력 양성	7	4.3
조사 직원 충원	6	3.7
조사과 설치	6	3.7
일정기간 보직유지	6	3.7
조사 직원 타업무 부여금지 필요	4	2.4
조사 직원 업무량 경감	3	1.8
정규교육과정개설	2	1.2
실무 경험자 배치	2	1.2
조사 전문교육 이수자 조사서 작성	2	1.2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배치	2	1.2
연고지 배치	1	0.6

개선방안	빈도	백분율(%)
소명의식 강화	1	0.6
조사 직원 사기 제고	1	0.6
조사 직원 업무중복 개선	1	0.6
조사관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	1	0.6
충분한 조사시간 필요	1	0.6
심리검사 도구 활용 능력 필요	1	0.6
소년면담기법 활용 능력 필요	1	0.6
교육프로그램 체계화	1	0.6
신임 조사관 대상 교육훈련	1	0.6
조사전문가 소내 방문강의개설	1	0.6
충분한 면담시간 필요	1	0.6
합계	164	

※ 응답자 기준

4) 법원의 결정전조사에서 조사내용의 중요성

법원의 결정전조사에서 조사내용의 중요도를 평가했을 때,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은 4점 만점에 3.7점으로 가장 높고, 생활환경은 3.6점으로 두 번째이며, 성장과정은 3.5점, 교우관계는 3.4점 등의 순서였다.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함이 71.3%로 높았고, 생활환경은 매우 중요함이 61.6%, 성장과정은 매우 중요함이 51.2%, 교우관계는 매우 중요함이 46.3%로 나타났다.

표 4-55 법원의 결정전조사에서 조사내용의 중요성

조사 내용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편차
범죄관련사항	중요하지 않은 편임	11	6.7	3.2	0.6
	중요한 편임	104	63.4		
	매우 중요함	49	29.9		
	합계	164	100.0		
범죄 경력	중요하지 않은 편임	9	5.5	3.3	0.6
	중요한 편임	92	56.1		
	매우 중요함	63	38.4		
	합계	164	100.0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중요하지 않은 편임	2	1.2	3.6	0.5

조사 내용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편차
및 경제적 여건)	중요한 편임	61	37.2		
	매우 중요함	101	61.6		
	합계	164	100.0		
성장과정	중요하지 않은 편임	6	3.7	3.5	0.6
	중요한 편임	74	45.1		
	매우 중요함	84	51.2		
	합계	164	100.0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0.6	3.0	0.6
	중요하지 않은 편임	24	14.6		
	중요한 편임	107	65.2		
	매우 중요함	32	19.5		
	합계	164	100.0		
학력 및 학교생활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0.6	3.3	0.6
	중요하지 않은 편임	9	5.5		
	중요한 편임	102	62.2		
	매우 중요함	52	31.7		
	합계	164	100.0		
교우관계	중요하지 않은 편임	4	2.4	3.4	0.5
	중요한 편임	84	51.2		
	매우 중요함	76	46.3		
	합계	164	100.0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중요하지 않은 편임	1	0.6	3.7	0.5
	중요한 편임	46	28.0		
	매우 중요함	117	71.3		
	합계	164	100.0		
진술태도	중요하지 않은 편임	17	10.4	3.1	0.6
	중요한 편임	109	66.5		
	매우 중요함	38	23.2		
	합계	164	100.0		
향후 생활계획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0.6	3.1	0.7
	중요하지 않은 편임	23	14.0		
	중요한 편임	92	56.1		
	매우 중요함	48	29.3		
	합계	164	100.0		
조사자의 의견	중요하지 않은 편임	8	4.9	3.3	0.6
	중요한 편임	97	59.1		
	매우 중요함	59	36.0		
	합계	164	100.0		

조사자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요인으로 1순위에서는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이 29.3%로 가장 높았고, 생활환경이 23.8, 성장과정이 16.5%이며, 1+2순위에서는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이 61.6%로 가장 높고, 생활환경 43.3%, 성장과정 28.0%, 범죄 경력 20.7% 등의 순서였다.

표 4-56 조사자 의견 제안 시 비중 두는 요인

요 인	1순위		2순위		1+2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범죄관련사항	12	7.3	3	1.8	15	9.1
범죄 경력	16	9.8	18	11.0	34	20.7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39	23.8	32	19.5	71	43.3
성장과정	27	16.5	19	11.6	46	28.0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1	0.6	1	0.6
학력 및 학교생활	2	1.2	4	2.4	6	3.7
교우관계	8	4.9	18	11.0	26	15.9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48	29.3	53	32.3	101	61.6
진술태도	3	1.8	6	3.7	9	5.5
향후 생활계획	3	1.8	9	5.5	12	7.3
조사자의 의견	6	3.7	0	0.0	6	3.7
사회적지지	0	0.0	1	0.6	1	0.6
합계	164	100	164	100	164	200

조사자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이유는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이 되므로 16.5%, 청소년 범죄는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10.4%,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범죄발생과 관련 있어서 7.3%, 보호자의 관심 여부가 범죄발생과 관련 있어서 6.1%, 가정내 보호유무가 향후 재범에 끼치는 영향이 커서 6.1% 등으로 나타났다.

표 4-57 조사자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이유

이 유	빈도	백분율(%)
모름/무응답	40	24.4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이 되므로	27	16.5
청소년 범죄는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17	10.4

이 유	빈도	백분율(%)
보호자의 보호 능력이 범죄 발생과 관련 있으므로	12	7.3
보호자의 관심 여부가 범죄 발생과 관련 있으므로	10	6.1
가정내 보호유무가 향후 재범에 끼치는 영향이 커서	10	6.1
범죄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서	9	5.5
보호자의 역할에 따라 재범요인이 달라지므로	8	4.9
생활환경이 재범에 영향을 미치므로	7	4.3
미성년은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6	3.7
범죄 경력이 많을수록 재범의 위험이 크므로	5	3.0
성장과정이 범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4	2.4
열악한 환경에서의 범죄 유발률이 높아서	4	2.4
불량 교우관계가 범죄발생에 영향을 끼치므로	3	1.8
교우관계에 따라 재범 유무가 결정되므로	3	1.8
피조사자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주므로	3	1.8
범죄 유발성향을 파악할 수 있어서	2	1.2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높으면 개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2	1.2
가족관계, 경제적 환경이 대상자의 비행에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2	1.2
또래 집단과의 연계로 범죄습득이 가능하므로	2	1.2
관계형성의 중요성 때문에	2	1.2
가정의 안정성이 중요하므로	2	1.2
보호자의 높은 관심은 개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2	1.2
개인의 인성형성에 영향 미치므로	2	1.2
환경변화없이 행동변화 기대할 수 없어서	2	1.2
양형을 결정하는 중요요소이므로	2	1.2
생활계획이 구체적이면 개선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	1.2
피조사자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어서	2	1.2
성장과정이 향후 재범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어서	1	0.6
문제행동원인 진단 후 해결책 도출에 도움 되어서	1	0.6
정확한 조사자의 의견이 재범예방에 중요하므로	1	0.6
불량 교우는 재범으로 이어지므로	1	0.6
반성하는 태도로 재범위험성을 평가 하므로	1	0.6
범죄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1	0.6
학교생활이 청소년 범죄발생에 중요역할을 해서	1	0.6
생활계획에 따라 재범의 확률이 높아져서	1	0.6
주변지자체계에 따라 향후 개선가능성이 달라져서	1	0.6
가족의 결속력이 대상자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서	1	0.6
가족관계가 재범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1	0.6
사회내 처우 가능성	1	0.6
객관적인 사실 비중이 크기 때문에	1	0.6

이 유	빈도	백분율(%)
범죄노출 정도 파악의 척도가 되므로	1	0.6
평소의 생활태도와 밀접한 관련 있어서	1	0.6
범죄관련 사항은 피해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1	0.6
조사자 의견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1	0.6
피조사자의 정체성을 알 수 있어서	1	0.6
개인의 가치관 파악의 단서가 되므로	1	0.6
합계	164	

※ 응답자 기준

재범위험성에 대한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요인으로 1순위에서는 범죄 경력이 29.3%로 가장 높고,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이 26.2%, 생활환경이 15.2%, 교우관계가 12.2% 등의 순서였고, 1+2순위에서는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이 56.7%로 가장 높고, 범죄 경력이 40.2%, 생활환경이 34.8%, 교우관계가 29.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4-58 재범위험성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요인

요 인	1순위		2순위		1+2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범죄관련사항	9	5.5	2	1.2	11	6.7
범죄 경력	48	29.3	18	11.0	66	40.2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25	15.2	32	19.5	57	34.8
성장과정	4	2.4	11	6.7	15	9.1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0	0.0	1	0.6	1	0.6
학력 및 학교생활	1	0.6	7	4.3	8	4.9
교우관계	20	12.2	28	17.1	48	29.3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43	26.2	50	30.5	93	56.7
진술태도	4	2.4	2	1.2	6	3.7
향후 생활계획	7	4.3	11	6.7	18	11.0
조사자의 의견	3	1.8	0	0.0	3	1.8
피조사자의 가치관과 태도	0	0.0	1	0.6	1	0.6
사회적 지지	0	0.0	1	0.6	1	0.6
합계	164	100.0	164	100.0	164	200

재범위험성에 대한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이유는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이

되므로 15.9%, 범죄경력이 많을수록 재범의 위험이 크므로 7.3%, 가정내 보호유무가 향후 재범에 끼치는 영향이 커서가 6.7%, 보호자의 보호 능력이 범죄 발생과 관련이 있으므로 6.1%, 생활환경이 재범에 영향을 미치므로 5.5%, 불량 교우관계가 범죄발생에 영향을 끼치므로 5.5%, 보호자의 역할에 따라 재범요인이 달라지므로 4.9%, 교우관계에 따라 재범 유무가 결정되므로 4.3% 등이었다.

표 4-59 재범위험성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이유

이 유	빈도	백분율(%)
모름/무응답	54	32.9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이 되므로	26	15.9
범죄 경력이 많을수록 재범의 위험이 크므로	12	7.3
가정내 보호유무가 향후 재범에 끼치는 영향이 커서	11	6.7
보호자의 보호 능력이 범죄 발생과 관련 있으므로	10	6.1
생활환경이 재범에 영향을 미치므로	9	5.5
불량 교우관계가 범죄발생에 영향을 끼치므로	9	5.5
보호자의 역할에 따라 재범요인이 달라지므로	8	4.9
교우관계에 따라 재범 유무가 결정되므로	7	4.3
미성년은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6	3.7
청소년 범죄는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5	3.0
보호자의 관심 여부가 범죄 발생과 관련 있으므로	4	2.4
불량 교우는 재범으로 이어지므로	4	2.4
범죄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서	3	1.8
열악한 환경에서의 범죄 유발률이 높아서	2	1.2
가족관계, 경제적 환경이 대상자의 비행에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2	1.2
범죄 유발성향을 파악할 수 있어서	2	1.2
보호자의 높은 관심은 개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2	1.2
가정의 안정성이 중요하므로	2	1.2
가족관계가 재범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2	1.2
범죄의 상습성 때문에	2	1.2
또래 집단과의 연계로 범죄습득이 가능하므로	2	1.2
개인의 가치관 파악의 단서가 되므로	2	1.2
성장과정이 범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1	0.6
피조사자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주므로	1	0.6
대상자의 생활의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1	0.6
성장과정이 향후 재범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어서	1	0.6
관계형성의 중요성 때문에	1	0.6

이 유	빈도	백분율(%)
범죄사실의 경중을 알 수 있어서	1	0.6
범죄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1	0.6
단독범죄 보단 또래집단과의 범행이 많으므로	1	0.6
범죄에 대한 인식의 단서가 되므로	1	0.6
비행의 심화정도가 재범위험과의 상관관계 높아서	1	0.6
재범위험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므로	1	0.6
구체적 생활계획유무는 재범위험성과 관련 있어서	1	0.6
생활계획이 구체적이면 개선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	0.6
주변지지체계에 따라 향후 개선가능성이 달라져서	1	0.6
가족의 결속력이 대상자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서	1	0.6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높으면 개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1	0.6
가족간의 갈등은 가출 후 범죄로 이어지므로	1	0.6
사회복귀여부를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1	0.6
정확한 문제인식이 행동개선에 도움 주므로	1	0.6
생활환경이 인성 및 사고조치를 결정하는 척도가 되므로	1	0.6
진술태도가 반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하므로	1	0.6
합계	164	

※ 응답자 기준

조사자 의견 제안 시 소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이 78.0%로 가장 높고, 생활환경은 34.8%, 학력 및 학교생활은 32.3%, 진술태도는 26.2%, 향후 생활계획 28.0%, 범죄 경력 23.2% 등의 순서였으며,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범죄 경력이 54.3%로 가장 높았고,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49.4%, 교우관계 33.5% 등의 순서였다.

표 4-60 조사자 의견 제안시 소년에게 유리/불리하게 작용되는 요인

이 유	유리한 요인		불리한 요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죄관련사항	11	6.7	47	28.7
범죄 경력	38	23.2	89	54.3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57	34.8	45	27.4
성장과정	16	9.8	5	3.0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6	3.7	3	1.8
학력 및 학교생활	53	32.3	28	17.1
교우관계	26	15.9	55	33.5

이 유	유리한 요인		불리한 요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128	78.0	81	49.4
진술태도	43	26.2	37	22.6
향후 생활계획	46	28.0	17	10.4
조사자의 의견	3	1.8	7	4.3
피해회복여부	2	1.2	2	1.2
직업	8	4.9	15	9.1
피조사자의 가치관과 태도	6	3.7	6	3.7
나이	2	1.2	6	3.7
합의여부	7	4.3	2	1.2
향후범죄유발가능성	2	1.2	5	3.0
모름	3	1.8	3	1.8
합계	164		164	

※ 응답자 기준

5) 법원의 결정전조사서 작성양식

법원의 결정전조사서 작성양식에 대해서 매우 만족은 5.5%, 만족하는 편은 87.8%로 응답자의 93.3%는 만족하고 있었다. 불만족하는 경우 개선방안은 간소화와 불필요한 사항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4-61 법원의 결정전조사서 작성 양식 만족도

만족도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 편차
법원의 결정전조사서의 작성양식	매우만족	9	5.5	2.0	0.3
	만족하는 편	144	87.8		
	만족하지 않는편	11	6.7		
	합계	164	100.0		

표 4-62 법원의 결정전조사서 작성 양식 불만시 개선방안

이 유	빈도	백분율(%)
모름/무응답	3	27.3
포괄적인 간소화 필요	2	18.2
포괄적인 질문지 형식으로 개선	1	9.1

이 유	빈도	백분율(%)
포괄적인 간단한 질문지 형식으로 개선	1	9.1
양식내용 중 불필요한 사항 유사하게 개선	1	9.1
양식내용 중 형식적인 사항 유사하게 개선	1	9.1
중복기재 영역 최소화	1	9.1
객관적 평가도구 활용	1	9.1
합계	11	100.0

6) 법원의 결정전조사서 작성의 어려움 및 제도 전반적 개선과제

법원의 결정전조사서 작성의 어려움으로 1순위에서는 진술에 크게 의존하나 진술의 진실성 판단이 쉽지 않은 점이 38.4%로 가장 높고, 회보기간이 너무 짧아 소년을 파악할 시간 부족이 22.0%로 두 번째이며, 피해자 면담 및 접근이 어려운 점이 20.1%로 세 번째였다. 1+2순위에서도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표 4-63 법원 결정전조사서 작성의 어려움

어려움	1순위		2순위		1+2순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회보기간이 너무 짧아 소년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한 점	36	22.0	23	15.8	59	36.0
피해자 면담, 접근이 어려운 점	33	20.1	19	13.0	52	31.7
검찰에서 수사 자료를 잘 주지 않는 점	4	2.4	11	7.5	15	9.1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가 없는 점	14	8.5	16	11.0	30	18.3
진술에 크게 의존하나 진술의 진실성 판단이 쉽지 않은 점	63	38.4	54	37.0	117	71.3
의견제시 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점	8	4.9	19	13.0	27	16.5
인력부족	3	1.8			3	1.8
조사량이 많음	2	1.2	3	2.1	5	3.0
평가도구(심리검사)해석에 대한 전문성 부족	0	0.0	1	0.7	1	0.6
없다	1	0.6	0	0.0	1	0.6
합계	164	100.0	146	100	164	

※ 응답자 기준

법원의 결정전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할 때,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충분한 회보기간 확보가 10.4%, 조사관 전문성 향상 9.8%, 조사관련 규정 강제성 강화/업무

수행 제도화 4.9%, 특별히 조사해야 할 사건만 조사 필요 4.9%, 의견제시시 객관적인 기준 필요 4.3%, 표준화된 위험성 평가도구 마련 3.7%, 조사 전담 직원 충원 3.0%,, 활용에 대한 의무규정 3.0% 등이 제시되었다.

표 4-64 법원의 결정전조사 제도 전반적 개선과제

개선과제	빈도	백분율 (%)
모름/무응답	47	28.7
충분한 회보기간 확보	17	10.4
조사관 전문성 향상	16	9.8
없다	12	7.3
특별히 조사해야할 사건만 조사 필요	8	4.9
조사관련 규정 강제성 강화/업무수행제도화	8	4.9
의견제시시 객관적인 기준 필요	7	4.3
표준화된 위험성 평가도구 마련	6	3.7
활용에 대한 의무 규정	5	3.0
조사 전담 직원 충원	5	3.0
적시하는 부분 사항만 집중조사	4	2.4
조사관 객관적 자료 확보 필요	4	2.4
조사관 업무부담도 조정	4	2.4
조사서 활용 확대 필요	3	1.8
충분한 조사기간 확보	3	1.8
조사대상사건 기준의 범주화 필요	3	1.8
결정전 조사서의 중요성 인식	2	1.2
조사관 다른 업무 부여지양	2	1.2
조사서 신뢰성 확보	2	1.2
조사요구에 대한 제도적 명문화	2	1.2
검찰(경찰) 수사자료 공개	2	1.2
조사의뢰시 피해자 연락처 기재	2	1.2
조사서 의뢰 횟수 적정성 확보	2	1.2
조사관 피해자 면담 및 적용필요	2	1.2
자료조회 용이하도록 학교등 기관간 협조	2	1.2
회보기간의 자유로운 조정	2	1.2
중복의뢰 개선	2	1.2
조사의뢰시 피해자 자료제공	1	0.6
조사요구선정의 표준화	1	0.6
조사관 다양한 수사자료 접근 필요	1	0.6

개선과제	빈도	백분율 (%)
범죄유형별 척도개발	1	0.6
충분한 자료 검토 후 활용	1	0.6
조사관 의견에 대한 회답 필요	1	0.6
동일한 피의자의 각기 다른 사건으로 의뢰개선필요	1	0.6
조사과 설치 필요	1	0.6
실적위주의 형식적인 의뢰 생략	1	0.6
전문조사실 확보	1	0.6
양식의 단순화 필요	1	0.6
피조사자 및 보호자 조사 수긍, 법적강제성 강화	1	0.6
피조사자에게 조사에 대한 홍보필요	1	0.6
조사의뢰시 피조사자 진술조서 제공	1	0.6
조사의뢰시 좀 더 협조적이어야 함	1	0.6
재범이산의 소년들에 대한 조사의뢰 생략	1	0.6
조사전력 활용	1	0.6
죄질이 경미한 자에 대한 조사의뢰 생략	1	0.6
조사관의 범위와 내용 구체화 필요	1	0.6
법원, 판사간 통일적인 요구 필요	1	0.6
조사의뢰시 참고 자료 첨부	1	0.6
조사서의 전문성 강화	1	0.6
조사서 적극적 활용의지 필요	1	0.6
1일 1명 정도 조사 적당	1	0.6
인간적이면서 신중한 판단필요	1	0.6
다양한 시점으로 판결	1	0.6
법원의 결정과 조사관 의견의 불일치 개선	1	0.6
조사인원, 확보기간 고려한 조사서의뢰	1	0.6
합계	164	

※ 응답자 기준

법원의 결정전조사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사건은 제한 없다가 67.1%로 가장 높고, 폭행/상해가 14.6%, 절도범죄가 12.8%, 성폭력범죄가 9.8%로 나타났으며, 유용한 조사대상은 제한 없다가 53.7%, 초범이 16.5%, 재범이 23.2%로 나타났다.

표 4-65 법원 결정전조사의 유용성

유용성		빈도	백분율 (%)
유용한 사건	폭행/상해(폭처법위반 등 폭력범죄)	24	14.6
	절도범죄	21	12.8
	성폭력범죄	16	9.8
	교통범죄	7	4.3
	살인/치사범죄	2	1.2
	제한 없다	110	67.1
	합계	164	109.8
유용한 조사대상	초범	27	16.5
	재범	38	23.2
	3범이상	11	6.7
	제한 없다	88	53.7
	합계	164	100.0

7) 법원의 결정전조사 작성 시 활용자료

법원의 결정전조사서를 의뢰받을 때 검사의 결정전조사서가 첨부되는 경우는 2.4%로 나타났으며, 첨부된 경우 의뢰건수의 약 45%가 첨부되고 있었다.

표 4-66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첨부 여부

첨부여부		빈도	백분율(%)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첨부	그렇다	4	2.4
	아니다	160	97.6
	합계	164	100.0

법원의 결정전조사서 작성을 위해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자료는 학생생활기록부 81.7%, 범죄경력조회 51.8%, 주민등록등본 53.0%, 제적등본 36.0%, 주민등록초본 32.9%, 심리검사 28.7%, 가족관계등록부 25.6%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7 법원의 결정전조사에 활용하는 자료

활용 자료	빈도	백분율(%)
학생생활기록부	134	81.7
주민등록 등본	87	53.0
범죄경력조회	85	51.8
제적등본	59	36.0
주민등록 초본	54	32.9
심리검사	47	28.7
가족관계등록부	42	25.6
범죄(수사)기록조회	27	16.5
보호관찰경력조회	26	15.9
MMPI검사	19	11.6
무응답	16	9.8
문자완성검사	14	8.5
진료기록부	13	7.9
PAI성격조사	11	6.7
소년원 경력기록	7	4.3
소년진술조서	6	3.7
분류심사서	6	3.7
호적등본	5	3.0
보호자진술	5	3.0
성격검사지	4	2.4
범죄사실통보서	4	2.4
의사소견서	3	1.8
지명수배조회	3	1.8
재범위험성 평가서	3	1.8
의견서	3	1.8
이전 조사경력	3	1.8
신문조서	2	1.2
소년원수용조회	2	1.2
결정전 조사	2	1.2
사회내처우 집행기록	2	1.2
면담	2	1.2
사건송치서	2	1.2
시설및 수용시 생활태도	2	1.2
정신과 치료여부	2	1.2
환경조사서	2	1.2
재직증명	2	1.2
이전 범죄판결문	1	0.6

활용 자료	빈도	백분율(%)
상담자료	1	0.6
비행사실	1	0.6
진술조서	1	0.6
범죄자료	1	0.6
기본증명서	1	0.6
자격증	1	0.6
인터넷중독 검사지	1	0.6
합의서	1	0.6
담임교사 의견	1	0.6
피조사자 응답지	1	0.6
가족의 직업	1	0.6
MBTI 성격유형조사	1	0.6
공범진술	1	0.6
공소장	1	0.6
SCT	1	0.6
HTP	1	0.6
상담조사서	1	0.6
합계	164	

※ 응답자 기준

8) 소년범 조사 수행시 애로사항

소년범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요 애로사항은 전반적으로 업무량 과중이 16.9%, 타업무와 병행 8.4%, 회보기간 짧아서 9.6%, 조사건수가 많아서 7.2%, 조사인력 부족 6.0%, 조사시간 부족 5.4% 등 업무량 과다와 시간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보호자의 비협조 6.0%, 조사의 질이 떨어짐 4.2% 등이 지적되었다.

표 4-68 소년범 조사 수행의 애로사항 – 전반적

애로사항	빈도	백분율(%)
업무량 과중	28	16.9
모름/무응답	19	11.4
회보기간이 짧아서	16	9.6
타업무와 병행	14	8.4
조사건수가 많아서	12	7.2

애로사항	빈도	백분율(%)
보호자가 비협조적이라서	10	6.0
조사인력 부족	10	6.0
조사시간 부족	9	5.4
없음	7	4.2
조사서의 질이 떨어져서	7	4.2
피조사자의 면담	6	3.6
전문성을 높이기 어려워서/전문성부족	6	3.6
피해자 면담	5	3.0
조사 의뢰 건수가 불규칙해서	4	2.4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도구가 미비	4	2.4
조사대상자의 소재파악이 어려워서	4	2.4
진술대상자가 비협조적이라서	4	2.4
조사의 객관성 확보문제	3	1.8
보호자 면담	3	1.8
소년진술의 신빙성 여부	3	1.8
조사대상과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3	1.8
조사과 부재	3	1.8
심층면담이 어려워서	3	1.8
전문 인력 부족	2	1.2
동시에 여러 조사를 진행시 집중력저하	2	1.2
불구속사건의 경우 면접조사가 어려워서	2	1.2
조사를 한번 한 피조사에 대해 다시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2	1.2
의견제시시 명확한 기준부재	2	1.2
조사건수를 실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개선	2	1.2
학생들이라 방과 후 야간조사를 해서	2	1.2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은 의뢰	2	1.2
피해자와의 접촉이 쉽지 않아서	2	1.2
조사실 설치	2	1.2
조사대상자 주거환경을 볼 기회가 부족해서	1	0.6
조사시 면접기술 교육이 필요	1	0.6
피조사의 진술을 확인할 수단이 많지 않아서	1	0.6
피조사자가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아서	1	0.6
정보조회 절차가 번거로워서	1	0.6
타업무와 병행조사에 필요한 시간부족	1	0.6
효과적 조사 위해 조사자료 송부 등 적극적인 업무협조 필요	1	0.6
조사결과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때	1	0.6
자료 확보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	1	0.6
피조사자에 대한 범죄사항 자료부족	1	0.6

애로사항	빈도	백분율(%)
조사서의 영향력 확대	1	0.6
조사서 작성 교육이 필요	1	0.6
중복된 업무에 대한 시간부족	1	0.6
실전경험이 부족해서	1	0.6
수사서류 미확보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1	0.6
조사업무가 부수적인 업무라 조사업무가 부담스러워서	1	0.6
소년에 대한 지나친 사생활 침해	1	0.6
성폭력 사건 외에는 강제성이 없어서	1	0.6
서무업무가 많아서	1	0.6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1	0.6
조사의견에 있어서 조사자와 확인자 의견이 다를 때	1	0.6
불구속자(학생)에 대한 비밀유지	1	0.6
출석요구일을 지키지 않아서	1	0.6
본 업무인 보호관찰수행에 지장이 있어서	1	0.6
보호자가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아서	1	0.6
회보기간의 확보	1	0.6
보호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0.6
보호자 직장관계로 야간조사를 해서	1	0.6
조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워서	1	0.6
범죄의 정황파악이 어려워서	1	0.6
업무관련 교육이 부족해서	1	0.6
경미한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서	1	0.6
조사대상자 학교생활을 볼 기회가 부족해서	1	0.6
조사담당자의 업무조정	1	0.6
합계	166	

※ 응답자 기준

검사의 결정전 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요 애로사항은 회보기간이 짧다 7.8%, 업무량 과중 5.4%, 조사건수가 많아서 3.0%, 조사시간 부족 4.8% 등 업무량 과다에 관련된 사항들이 지적되었다.

표 4-69 소년범 조사 수행의 애로사항 - 검사의 결정전조사

애로사항	빈도	백분율(%)
모름/무응답	74	44.6
없음	14	8.4
회보기간이 짧아서	13	7.8
업무량 과중	9	5.4
조사시간 부족	8	4.8
조사건수가 많아서	5	3.0
피해자 면담	4	2.4
조사의뢰 건수가 불규칙해서	4	2.4
경미한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서	4	2.4
타업무와 병행	3	1.8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은 의뢰	3	1.8
수사자료 공개 필요	3	1.8
강제적 법령조항 부재	3	1.8
조사대상자의 소재파악이 어려워서	3	1.8
피조사자의 면담	2	1.2
피해자와의 접촉이 쉽지 않아서	2	1.2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도구가 미비	2	1.2
조사인력 부족	2	1.2
조사건수를 실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개선	2	1.2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어려워서	2	1.2
전문 인력 부족	2	1.2
소년범에 국한되어 있어서	1	0.6
의뢰하는 건수가 적어서	1	0.6
진술대상자가 비협조적이라서	1	0.6
피조사자가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아서	1	0.6
검사의 이해부족으로	1	0.6
보호자가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아서	1	0.6
의견제시시 명확한 기준부재	1	0.6
보호자 면담	1	0.6
회보의 시기조정이 어려워서	1	0.6
자료 확보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	1	0.6
임의 규정이라 활용도가 낮아서	1	0.6
조사대상과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1	0.6
정보조회 절차가 번거로워서	1	0.6
비행의 재범방지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해서	1	0.6
피조사자에 대한 범죄사항 자료부족	1	0.6
조사가 필요 없는 범죄내용이 많아서	1	0.6

애로사항	빈도	백분율(%)
조사의 객관성 확보문제	1	0.6
검찰청과의 업무 협조관계	1	0.6
기소유예 사건의 경우도 결정전으로 외뢰하는 경우가 있어서	1	0.6
효과적 조사 위해 조사자료 송부 등 적극적인 업무협조 필요	1	0.6
소년진술의 신빙성 여부	1	0.6
학생들이라 방과 후 야간조사를 해서	1	0.6
조사의뢰건수 접수시기의 조정이 불가해서	1	0.6
검찰청 조사와 겹칠 때 피조사자 면담시간 확보가 어려워서	1	0.6
기소유무는 검찰 스스로 판단했으면	1	0.6
결정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잘 안되어 있어서	1	0.6
가출한 학생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서	1	0.6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1	0.6
조사서의 질이 떨어져서	1	0.6
합계	166	

※ 응답자 기준

판결전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요 애로사항은 회보기간이 짧다 9.0%, 조사시간 부족 4.2%, 업무량 과중 3.6%, 타업무와 병행 2.4% 등의 사항들이 지적되었다.

표 4-70 소년범 조사 수행의 애로사항 - 판결전조사

애로사항	빈도	백분율(%)
모름/무응답	80	48.2
없음	15	9.0
회보기간이 짧아서	15	9.0
조사시간 부족	7	4.2
업무량 과중	6	3.6
타업무와 병행	4	2.4
피해자와의 접촉이 쉽지 않아서	4	2.4
피해자 면담	4	2.4
조사대상자의 소재파악이 어려워서	3	1.8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도구가 미비	3	1.8
조사건수가 많아서	3	1.8
피조사자의 면담	2	1.2
신상정보가 부족해서	2	1.2
전문 인력 부족	2	1.2

애로사항	빈도	백분율(%)
조사의뢰 건수가 불규칙해서	2	1.2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은 의뢰	2	1.2
조사의 객관성 확보문제	2	1.2
의뢰하는 건수가 적어서	2	1.2
양형전자조사 등으로 의뢰건수 감소	1	0.6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1	0.6
피조사자가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아서	1	0.6
조사대상과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1	0.6
법원의 조사관제로 인한 보호관찰소 의뢰건수 감소	1	0.6
공범을 한꺼번에 의뢰하는 경우	1	0.6
보호자 면담	1	0.6
조사인력 부족	1	0.6
조사의뢰 건수가 법원에 따라 차이가 심해서	1	0.6
정신보건 전문위원부족	1	0.6
소년진술의 신빙성 여부	1	0.6
의견제시시 명확한 기준부재	1	0.6
강제적 법령조항 부재	1	0.6
진술대상자 비협조적이라서	1	0.6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어려워서	1	0.6
수사자료 공개 필요	1	0.6
정보조회 절차가 번거로워서	1	0.6
비행의 재범방지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해서	1	0.6
조사서 신빙성 확보의 어려움	1	0.6
피조사자에 대한 범죄사항 자료부족	1	0.6
조사내용에 대한 법관의 활용성 의구심	1	0.6
심리검사 해석이 어려워서	1	0.6
자료 확보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	1	0.6
조사건수를 실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개선	1	0.6
학생들이라 방과 후 야간조사를 해서	1	0.6
피해자의 의견조회가 쉽지 않아서	1	0.6
효과적 조사 위해 조사자료 송부 등 적극적인 업무협조 필요	1	0.6
양형조사관 제도 중복이라서	1	0.6
구속자 면담시간 일정 등 제약이 있어서	1	0.6
보호자가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아서	1	0.6
판사의 이해부족으로	1	0.6
합계	166	

※ 응답자 기준

법원의 결정전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요 애로사항은 회보기간이 짧다 7.8%, 조사시간 부족 4.8%, 업무량 과중 4.2%, 타업무와 병행 3.0% 등의 사항들이 지적되었다.

표 4-71 소년범 조사 수행의 애로사항 - 법원의 결정전조사

애로사항	빈도	백분율(%)
모름/무응답	79	47.6
없음	17	10.2
회보기간이 짧아서	13	7.8
조사시간 부족	8	4.8
업무량 과중	7	4.2
피해자와의 접촉이 쉽지 않아서	5	3.0
타업무와 병행	5	3.0
조사대상자의 소재파악이 어려워서	4	2.4
경미한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서	4	2.4
조사건수가 많아서	4	2.4
피해자 면담	3	1.8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도구가 미비	2	1.2
조사의뢰 건수가 불규칙해서	2	1.2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은 의뢰	2	1.2
진술대상자가 비협조적이라서	2	1.2
전문 인력 부족	2	1.2
신상정보가 부족해서	2	1.2
조사대상과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1	0.6
보호자 면담	1	0.6
보호자 소환문제	1	0.6
피조사자가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아서	1	0.6
조사인력 부족	1	0.6
조사과 부재로 타업무에 지장초래	1	0.6
보호자가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아서	1	0.6
조사의뢰 건수가 법원에 따라 차이가 심해서	1	0.6
의견제시시 명확한 기준부재	1	0.6
강제적 법령조항 부재	1	0.6
자료 확보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	1	0.6
피조사자 소환문제	1	0.6
수사자료 공개 필요	1	0.6
정보조회 절차가 번거로워서	1	0.6

애로사항	빈도	백분율(%)
비행의 재범방지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해서	1	0.6
한사람에 대해 법원별로 타사건에 대해 조사 요구하여 중복됨	1	0.6
피조사자에 대한 범죄사항 자료부족	1	0.6
동일 검사결정전 조사건이 다시 접수되면서 중복조사	1	0.6
조사내용에 대한 법관의 활용성 의구심	1	0.6
조사의 객관성 확보문제	1	0.6
조사를 한번 한 피조사에 대해 다시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1	0.6
소년진술의 신빙성 여부	1	0.6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어려워서	1	0.6
조사건수를 실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개선	1	0.6
학생들이라 방과 후 야간조사를 해서	1	0.6
피조사자의 면담	1	0.6
효과적 조사 위해 조사자료 송부 등 적극적인 업무협조 필요	1	0.6
전문성을 높이기 어려워서/전문성부족	1	0.6
심리검사 해석이 어려워서	1	0.6
합계	166	

※ 응답자 기준

조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요 애로사항은 업무량 과중 23.5%, 타업무와 병행 11.4%, 조사건수 많다 8.4%, 조사인력 부족 9.6%, 전문 인력부족 4.8%, 회보기간 짧다 8.4%, 조사시간 부족 6.0%, 전문성 부족 7.2%, 조사서의 질이 떨어짐 6.0% 등 업무량 과다와 시간 부족 그리고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었다.

표 4-72 조사직무 관련 애로사항

애로사항	빈도	백분율(%)
업무량 과중	39	23.5
모름/무응답	25	15.1
타업무와 병행	19	11.4
조사인력부족	16	9.6
조사건수가 많아서	14	8.4
회보기간이 짧아서	14	8.4
전문성을 높이기 어려워서/전문성부족	12	7.2
조사시간 부족	10	6.0
조사서의 질이 떨어져서	10	6.0
없음	10	6.0

애로사항	빈도	백분율(%)
전문 인력부족	8	4.8
조사의뢰건수가 불규칙해서	8	4.8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어려워서	5	3.0
강제적 법령조항 부재	3	1.8
업무관련 교육이 부족해서	3	1.8
조사과 부재	2	1.2
타업무와 병행조사에 필요한 시간부족	2	1.2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도구가 미비	2	1.2
조사항목의 간소화	2	1.2
피해자 면담	1	0.6
진술거부	1	0.6
소년범에 국한되어 있어서	1	0.6
전담조사관제제도가 확립되지 않아서	1	0.6
조사의견에 있어서 조사자와 확인자 의견이 다를때	1	0.6
검찰청과의 업무 협조관계	1	0.6
임상심리사 부족	1	0.6
법원과의 업무 협조관계	1	0.6
정해진 기간 안에 조사서를 작성해야 되어서	1	0.6
조사과 부재로 타업무에 지장초래	1	0.6
조사과정에서 생긴 소년의 위험요소를 도울 장치가 필요	1	0.6
정신보건 전문위원부족	1	0.6
전문 인력을 전국기관에 골고루 배치	1	0.6
보호자가 비협조적이라서	1	0.6
진술에만 의존해야 되어서	1	0.6
심층면담이 어려워서	1	0.6
소년범과 성인범 조사관이 달랐으면	1	0.6
법원의 활용인식 차이	1	0.6
조사결과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때	1	0.6
조사의 객관성 확보문제	1	0.6
경미한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서	1	0.6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은 의뢰	1	0.6
비슷한 내용의 조사가 반복되어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	1	0.6
조사만 전담할 수 없는 근무환경	1	0.6
조사서 첨부자료 다양화로 관계기관에 요구, 접수 등 절차미비	1	0.6
직원이 재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1	0.6
회보의 시기조정이 어려워서	1	0.6
회보기간의 확보	1	0.6
동시에 여러 조사를 진행시 집중력저하	1	0.6

애로사항	빈도	백분율(%)
서무업무가 많아서	1	0.6
업무량 감소	1	0.6
본소에서도 업무과중에 따른 해석지연	1	0.6
기출한 학생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서	1	0.6
보직이 자주 바뀌어서	1	0.6
업무의 연속성 유지가 어려워서	1	0.6
합계	166	

※ 응답자 기준

2. 분류심사관

가. 조사관의 일반적 특성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소년원에서 소년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의 일반적 특성을 몇 가지 항목을 통해 살펴보았다(표 4-73〉 참조).

먼저 성별로는 여자가 4명, 남자가 17명으로 남자가 다수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명, 40대가 16명, 50대가 2명이었으며, 연령의 평균은 44.3세였다. 조사담당자로서의 근무연수는 1년 미만 9명, 1년 이상 3년 미만 6명, 3년 이상 5년 미만이 3명, 5년 이상 7년 미만이 2명, 7년 이상이 1명이었으며, 근무연수의 평균은 28개월이었다.

표 4-73 분류심사관의 일반적 특징

특 성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 편차
성별	남자	17	81.0		
	여자	4	19.0		
	합계	21	100.0		
연령	30대	3	14.3	44.3 (세)	6.25 (세)
	40대	16	76.2		
	50대	2	9.5		
	합계	21	100.0		
조사담당 근무연수	1년미만	9	42.9	28.0 (개월)	39.44 (개월)
	1년이상~3년미만	6	28.6		
	3년이상~5년미만	3	14.3		

특 성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 편차
	5년이상~7년미만	2	9.5		
	7년이상	1	4.8		
	합계	21	100.0		
전부서 근무연수	1년미만	0	0	76.7 (개월)	77.37 (개월)
	1년이상~3년미만	8	50.0		
	3년이상~5년미만	1	6.3		
	5년이상~7년미만	1	6.3		
	7년이상	6	37.5		
	합계	16	100.0		

조사관의 현재 소속부서는 교무과 4명, 교무 생활지도 11명, 관찰과 6명이었다.

표 4-74 분류심사관의 소속 부서

부 서		빈도	백분율 (%)
현소속부서	교무과	4	19.0
	교무 생활지도	11	52.4
	관찰과	6	28.6
	합계	21	100.0
전근무부서	교무과	5	23.8
	교무 생활지도	1	4.8
	관찰과	2	9.5
	문보	1	4.8
	법무	2	9.5
	서무	1	4.8
	소년원	2	9.5
	소년원 교무과	1	4.8
	무응답	6	28.6
	합계	21	100.0

본 조사에 참여한 분류심사관의 소속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표 4-75 분류심사관의 소속 기관

기관명	응답자수
청주대안교육센터	1명
광주대안교육센터	2명
창원대안교육센터	1명
광주,고룡정보산업학교장(광주소년원)	2명
한길정보통신학교(제주소년원)	1명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3명
대구소년원	3명
법무부 부산대안교육센터장	2명
대전소년원	3명
춘천소년원	3명
합계	21명

조사관의 조사와 관련된 자격증은 조사관 자격이 7명, 학교 폭력 상담사 2급 2명 등이었다.

표 4-76 분류심사관의 보유 자격증

자 격 증		빈도	백분율(%)
조사와 관련 자격증	조사관 자격	7	33.3
	없음	5	23.8
	모름/무응답	2	9.5
	학교 폭력 상담사 2급	2	9.5
	범죄심리사 2급	1	4.8
	사회복지사 1급	1	4.8
	심리상담사	1	4.8
	임상심리사 2급	1	4.8
	약물상담전문가	1	4.8
	청소년 상담사 2급	1	4.8
	로샤	1	4.8
	청소년 지도사 3급	1	4.8
	청소년 지도사 2급	1	4.8
	학교 폭력 상담사	1	4.8
	학교 폭력 예방지도사 2급	1	4.8
	K-Wisc3	1	4.8
	MBTI	1	4.8
	국민윤리교사 정1급	1	4.8
	청소년 상담사	1	4.8

조사관의 조사 관련 교육시간은 2010년에는 0시간이 7건이었고, 평균 70.8시간 이었으나 2011년 10월현재에는 0시간이 10건으로 늘어나고, 평균은 19.1시간으로 감소하였다.

표 4-77 분류심사관의 조사관련 교육 시간

시 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2010년 조사관련 교육시간	0시간	7	35.0	70.8	67.92
	24시간이하	0	0		
	25~72시간	3	15.0		
	73~120시간	7	35.0		
	121시간이상	3	15.0		
	합계	20	100.0		
2011년 10. 조사관련 교육시간	0시간	10	50.0	19.1	27.88
	24시간이하	3	15.0		
	25~72시간	6	30.0		
	73~120시간	1	5.0		
	121시간이상	0	0		
	합계	20	100.0		

조사관의 조사 관련 교육과목은 표와 같다.

표 4-78 분류심사관의 조사관련 교육 과목

과 목		빈도	백분율(%)
2010년 교육과목	거짓말 생물학적 근거	1	7.7
	고급 법 심리학	1	7.7
	대상관계이론	1	7.7
	분류심사제도론	5	38.5
	비행청소년 상담기법	1	7.7
	소년보호 분류심사	1	7.7
	심리치료 심화과정	1	7.7
	살인범죄와 프로파일링	1	7.7
	심리검사의 이해	6	46.2
	심리학의 이해	5	38.5
	심리치료 심화과정	2	15.4
	상담기법	1	7.7

과 목		빈도	백분율(%)
	성격심리	1	7.7
	소년사법의 이해	1	7.7
	인지행동 치료의 이해	5	38.5
	이상심리와 정신병리 이해	5	38.5
	이상심리학	1	7.7
	약물관련	1	7.7
	조사제도론	2	15.4
	진로상담	1	7.7
	청구전조사 제도론	8	61.5
	판결전 조사 제도론	7	53.8
	MBTI	1	7.7
	분류심사 워크샵	1	7.7
	분류심사 컴퍼런스	1	7.7
	분류심사 전문교육	1	7.7
	모름/무응답	2	15.4
	합계	13	
2011년 교육과목	거짓말 생물학적 근거	1	10
	공문서 작성을 위한 한글 맞춤법	1	10
	대상관계이론	1	10
	분류심사제도론	1	10
	비행청소년 상담기법	1	10
	심리평가	1	10
	살인범죄와 프로파일링	1	10
	심리검사의 이해	2	20
	심리치료 심화과정	2	20
	상담기법	1	10
	성격심리	1	10
	이상심리와 정신병리 이해	1	10
	임상심리	1	10
	진로상담	1	10
	판단 및 결정이론	1	10
	MMPI	1	10
	분류심사 워크샵	1	10
	분류심사 컴퍼런스	1	10
	분류심사 전문교육	1	10
	조사관 인증자격시험과목	1	10
	모름/무응답	2	20
	합계	10	

※ 응답자 기준

나. 조사관의 조사 업무량

다음은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소년원에서 소년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의 조사 건수 및 조사서 작성 소요시간 등을 알아보았다(표 4-79〉 참조).

한 달 동안 담당하는 검사의 결정전조사 건수는 없다가 81%였으며, 10건 이하가 19%로, 평균 검사의 결정전조사 건수는 0.8건이었다. 한 달 동안 담당하는 분류심사서 건수는 없다가 42.9%였으며, 1건 이상 10건 이하가 4.8%, 11건 이상 20건 이하가 19%, 21건 이상 40건 이하가 33.3%였으며, 평균 분류심사서 건수는 12.8건이었다. 한 달 동안 담당하는 상담조사서 건수는 없다가 14.3%였으며, 1건 이상 10건 이하가 33.3%, 11건 이상 20건 이하가 19.0%, 21건 이상 40건 이하가 33.3%였으며, 평균 상담조사서 건수는 15.5건이었다.

검사의 결정전조사서를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6시간 이하였으며, 평균 작성시간은 5시간 이었다. 분류심사서를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6시간 이하 50%, 7시간에서 12시간이 50%였으며, 평균 작성시간은 7.2시간 이었다. 상담조사서를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6시간 이하가 66.7%, 7시간에서 12시간이 33.3%였으며, 평균 작성시간은 5.9시간이었다.

소년원에서 소년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이 생각하는 한 달에 적당한 조사 건수는 10건 이하 9.5%, 11건 이상 20건 이하 61.9%, 21건 이상 28.6%였으며, 평균 건수는 21.8건이었다.

표 4-79 분류심사관의 조사 업무량

건 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한 달 동안 검사의 결정전조사 건수	0건	17	81.0	0.8	1.82
	1건~10건	4	19.0		
	합계	21	100.0		
한 달 동안 분류심사서 조사건수	0건	9	42.9	12.8	13.29
	1건~10건	1	4.8		
	11건~20건	4	19.0		
	21건~40건	7	33.3		
	합계	21	100.0		
한 달 동안 상담조사서 조사건수	0건	3	14.3	15.5	12.80
	1건~10건	7	33.3		

건 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한 달 동안 검사의 결정전조사 건수	0건	17	81.0	0.8	1.82
	1건~10건	4	19.0		
	합계	21	100.0		
	11건~20건	4	19.0		
	21건~40건	7	33.3		
	합계	21	100.0		
검사의 결정전 조사 소요시간	6시간이하	4	100	5.0	0.81
	합계	4	100		
분류심사서 소요시간	6시간이하	6	50.0	7.2	2.51
	7시간~12시간	6	50.0		
	합계	12	100.0		
상담조사서 소요시간	6시간이하	12	66.7	5.9	2.39
	7시간~12시간	6	33.3		
	합계	18	100.0		
한 달 적당 조사 건수	10건이하	2	9.5	21.8	7.80
	11~20건	13	61.9		
	21건이상	6	28.6		
	합계	21	100.0		

다.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1) 소년조사제도에서 문제 사항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다음의 사항들이 얼마나 문제라고 인식하는 지를 알아보았다(표 4-80〉 참조).

먼저 조사관들은 조사전문인력의 부족과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을 4점 만점에 각각 3.4점으로 평가하여 제시된 19개의 사항 중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 담당, 조사기관의 역할 중복을 각각 3.1점으로 평가하여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조사 전문 인력의 부족에 대해서는 매우 문제있음이 38.1%, 약간 문제있는 편임이 61.9%로 100.0%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에 대해서는 매우 문제있음이 45%, 약간 문제있는 편임이 45%로 90%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4-80 소년조사제도의 문제 사항 인식

사 항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편차
조사전문인력의 부족	약간 문제있는 편임	13	61.9	3.4	0.5
	매우 문제있음	8	38.1		
	합계	21	100.0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 존재	별로 문제되지 않음	6	31.6	3.1	0.8
	약간 문제있는 편임	6	31.6		
	매우 문제있음	7	36.8		
	합계	19	100.0		
조사담담 직원에 대한 재교육 및 교육시간 부족	별로 문제되지 않음	7	35.0	2.7	0.6
	약간 문제있는 편임	12	60.0		
	매우 문제있음	1	5.0		
	합계	20	100.0		
전문가 자원봉사자의 미활용	별로 문제되지 않음	13	65.0	2.5	0.7
	약간 문제있는 편임	5	25.0		
	매우 문제있음	2	10.0		
	합계	20	100.0		
범죄유형별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 부재	별로 문제되지 않음	11	55.0	2.6	0.7
	약간 문제있는 편임	7	35.0		
	매우 문제있음	2	10.0		
	합계	20	100.0		
형사사법단계별 조사내용의 중복	별로 문제되지 않음	4	20.0	3.0	0.6
	약간 문제있는 편임	12	60.0		
	매우 문제있음	4	20.0		
	합계	20	100.0		
범죄유형에 대한 조사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별로 문제되지 않음	9	45.0	2.6	0.6
	약간 문제있는 편임	10	50.0		
	매우 문제있음	1	5.0		
	합계	20	100.0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 담당	별로 문제되지 않음	3	15.0	3.1	0.6
	약간 문제있는 편임	12	60.0		
	매우 문제있음	5	25.0		
	합계	20	100.0		
조사기관의 역할중복(조사유형별 역할분장 부재)	별로 문제되지 않음	3	15.0	3.1	0.6
	약간 문제있는 편임	13	65.0		
	매우 문제있음	4	20.0		
	합계	20	100.0		
소년범 전문 조사관 부재	별로 문제되지 않음	7	35.0	2.8	0.6

사 항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편차
	약간 문제있는 편임	11	55.0		
	매우 문제있음	2	10.0		
	합계	20	100.0		
조사기관간의 연계성 부족(조사기관간 정보 미공유)	전혀 문제되지 않음	2	10.0	2.7	0.8
	별로 문제되지 않음	4	20.0		
	약간 문제있는 편임	12	60.0		
	매우 문제있음	2	10.0		
	합계	20	100.0		
조사대상 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전혀 문제되지 않음	2	10.0	2.2	0.6
	별로 문제되지 않음	12	60.0		
	약간 문제있는 편임	6	30.0		
	합계	20	100.0		
조사 대상 소년에게 진술거부권 미고지	전혀 문제되지 않음	3	15.0	2.4	0.8
	별로 문제되지 않음	8	40.0		
	약간 문제있는 편임	8	40.0		
	매우 문제있음	1	5.0		
	합계	20	100.0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	별로 문제되지 않음	2	10.0	3.4	0.7
	약간 문제있는 편임	9	45.0		
	매우 문제있음	9	45.0		
	합계	20	100.0		
조사에 따른 개별처우 프로그램의 부족	별로 문제되지 않음	5	25.0	2.9	0.6
	약간 문제있는 편임	12	60.0		
	매우 문제있음	3	15.0		
	합계	20	100.0		
소년조사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식 부재	별로 문제되지 않음	9	45.0	2.8	0.8
	약간 문제있는 편임	6	30.0		
	매우 문제있음	5	25.0		
	합계	20	100.0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이나 판결결과의 미통보	전혀 문제되지 않음	2	10.0	2.3	0.7
	별로 문제되지 않음	12	60.0		
	약간 문제있는 편임	5	25.0		
	매우 문제있음	1	5.0		
	합계	20	100.0		
중요하지 않은 사건의 의뢰(조사의뢰 실적 때문)	전혀 문제되지 않음	3	15.0	2.6	0.9
	별로 문제되지 않음	4	20.0		
	약간 문제있는 편임	11	55.0		
	매우 문제있음	2	10.0		

사 항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편차
	합계	20	100.0		
법적인 강제력 부재	별로 문제되지 않음	10	50.0	2.6	0.7
	약간 문제있는 편임	8	40.0		
	매우 문제있음	2	10.0		
	합계	20	100.0		

2) 소년조사제도에서 개선 과제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표 4-81〉 참조).

개선과제 1순위로 응답자들의 33.3%는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이라고 응답했으며, 28.6%는 조사 전문 인력의 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1+2+3순위 복수응답에서는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이 57.1%, 조사전문인력의 부족이 47.6%였으며,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 담당과 중요하지 않은 사건의 의뢰(조사의뢰 실적 때문)가 각각 28.6%로 나타났다.

표 4-81 소년조사제도에서 개선 과제

개선해야 할 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1+2+3 순위	
	명	%	명	%	명	%	명	%
조사전문인력의 부족	6	28.6	1	5.0	3	15.0	10	47.6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 존재			1	5.0	1	5.0	2	9.5
조사담담 직원에 대한 재교육 및 교육시간 부족			2	10.0	1	5.0	3	14.3
전문가 자원봉사자의 미활용					1	5.0	1	4.8
범죄유형별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 부재			2	10.0			2	9.5
형사사법단계별 조사내용의 중복			2	10.0			2	9.5
범죄유형에 대한 조사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1	4.8	1	5.0			2	9.5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 담당			4	20.0	2	10.0	6	28.6
조사기관의 역할중복(조사유형별 역할분장 부재)			1	5.0	2	10.0	3	14.3
소년범 전문 조사관 부재	1	4.8			2	10.0	3	14.3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	7	33.3	2	10.0	3	15.0	12	57.1
조사에 따른 개별처우 프로그램의 부족	2	9.5			1	5.0	3	14.3
소년조사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식 부재			2	10.0	1	5.0	3	14.3

개선해야 할 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1+2+3 순위	
	명	%	명	%	명	%	명	%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이나 판결결과의 미통보					1	5.0	1	4.8
중요하지 않은 사건의 의뢰(조사의뢰 실적 때문)	3	14.3	1	5.0	2	10.0	6	28.6
법적인 강제력 부재	1	4.8	1	5.0			2	9.5
합계	21	100	20	100	20	100	21	

3)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이유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고 응답한 이유는 조사업무량이 많아 양질의 조사서 작성이 어려워서가 23.8%로 가장 높았고, 조사전문 인력이 부족해서가 14.3%였다.

표 4-82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이유

이 유	빈도	백분율(%)
모름/무응답	8	38.1
조사업무량이 많아 양질의 조사서 작성이 어려워서	5	23.8
조사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3	14.3
실적위주의 평가 폐지 필요해서	1	4.8
조사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1	4.8
재범가능성에 대한 객관성을 위해서	1	4.8
위험성 평가가 조사관의 개인 판단에 영향	1	4.8
처우프로그램 전문 담당자 부재라서	1	4.8
전문가적 자질 향상 위한 정기교육 필요해서	1	4.8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문제 파악할 시간이 부족	1	4.8
조사업무외 중복 업무가 많아서	1	4.8
업무량 과중으로 인한 보직기피	1	4.8
사실 증명의 어려움 때문에	1	4.8
합계	21	

라. 검사의 결정전 조사 제도에 대한 인식

1)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작성 건수 및 의뢰 조사 대상

지금까지 검사의 결정전조사서를 작성한 건수는 없음이 47.6%, 1건에서 10건 이하가 9.5%, 11건에서 100건 이하가 38.1%, 101건 이상이 4.8%이며, 평균은 18.4건이었다. 주로 의뢰받은 조사대상은 초범이 63.6%, 재범이 9.1%, 제한 없다가 27.3%로, 초범이 가장 많았다.

표 4-83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작성 건수

건 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누적 검사 결정전조사서 작성건수	없음	10	47.6	18.4	33.64
	1건~10건이하	2	9.5		
	11건~100건	8	38.1		
	101건~500건	1	4.8		
	합계	21	100.0		

표 4-84 검사의 결정전조사 대상

대 상		빈도	백분율(%)
의뢰 조사대상	초범	7	63.6
	재범	1	9.1
	3범이상	0	0.0
	제한없다	3	27.3
	합계	11	100.0

2) 검사가 결정전조사 비의뢰 이유 및 필요성과 활용성

검사가 결정전조사를 의뢰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임의규정으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 검사가 소년의 인성이나 환경보다는 죄질로 판단하기 때문, 검사가 조사의 효용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들이 제시되었다.

표 4-85 검사가 결정전조사를 의뢰하지 않는 이유

이 유	빈도	백분율(%)
임의규정으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4	36.4
검사가 소년의 인성이나 환경보다는 죄질로 판단할 것	3	27.3
검사가 조사의 효용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3	27.3
의뢰한다	1	9.1
합계	11	100.0

검사의 결정전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 9.1%, 필요하다 72.7%로 81.8%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검사가 결정전조사를 활용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가 60.0%로 나타났다. 조사관들은 검사의 결정전조사의 필요성을 5점 만점에 3.8점, 검사의 활용도는 3.4점으로 평가하여, 필요성에 비해서 활용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4-86 검사의 결정전조사 필요성 및 활용도

필요성 / 활용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검사의 결정전조사의 필요성	별로 필요하지 않다	1	9.1	3.8	0.75
	그저 그렇다	1	9.1		
	필요하다	8	72.7		
	매우 필요하다	1	9.1		
	합계	11	100.0		
검사의 결정전조사의 활용도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다	1	10.0	3.4	0.96
	그저 그렇다	3	30.0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	6	60.0		
	합계	10	100.0		

3)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작성시 조사관의 전문성

검사의 결정전조사서를 작성하는 조사관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높은 편이다가 18.2%, 보통이다는 81.8%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표 4-87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작성 조사관의 전문성

전문성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조사관의 전문성	보통이다	9	81.8	3.2	0.40
	높은 편이다	2	18.2		
	합계	11	100.0		

조사관의 전문성이 낮은 경우도 있다면, 전문 인력 배치, 순환보직 제도 개선, 조사업무에 대한 기피현상 개선,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표 4-88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작성 조사관의 전문성 해결 방안

개선방안	빈도	백분율(%)
모름/무응답	5	45.5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실시	2	18.2
순환보직 제도 개선	2	18.2
전문 인력배치	2	18.2
조사업무에 대한 기피현상 개선	2	18.2
실적위주의 조사 지양	1	9.1
업무과중개선	1	9.1
관련 전공학과 직원활용	1	9.1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기적 교육실시	1	9.1
적정 인력분배	1	9.1
합계	11	

과 목		빈도	백분율(%)
2010년 교육과목	거짓말 생물학적 근거	1	7.7
	고급 법 심리학	1	7.7
	대상관계이론	1	7.7
	분류심사제도론	5	38.5
	비행청소년 상담기법	1	7.7
	소년보호 분류심사	1	7.7
	심리치료 심화과정	1	7.7
	살인범죄와 프로파일링	1	7.7
	심리검사의 이해	6	46.2
	심리학의 이해	5	38.5
	심리치료 심화과정	2	15.4

과 목		빈도	백분율(%)
	상담기법	1	7.7
	성격심리	1	7.7
	소년사법의 이해	1	7.7
	인지행동 치료의 이해	5	38.5
	이상심리와 정신병리 이해	5	38.5
	이상심리학	1	7.7
	약물관련	1	7.7
	조사제도론	2	15.4
	진로상담	1	7.7
	청구전조사 제도론	8	61.5
	판결전 조사 제도론	7	53.8
	MBTI	1	7.7
	분류심사 워크샵	1	7.7
	분류심사 컴퍼런스	1	7.7
	분류심사 전문교육	1	7.7
	모름/무응답	2	15.4
	합계	13	
2011년 교육과목	거짓말 생물학적 근거	1	10
	공문서 작성을 위한 한글 맞춤법	1	10
	대상관계이론	1	10
	분류심사제도론	1	10
	비행청소년 상담기법	1	10
	심리평가	1	10
	살인범죄와 프로파일링	1	10
	심리검사의 이해	2	20
	심리치료 심화과정	2	20
	상담기법	1	10
	성격심리	1	10
	이상심리와 정신병리 이해	1	10
	임상심리	1	10
	진로상담	1	10
	판단 및 결정이론	1	10
	MMPI	1	10
	분류심사 워크샵	1	10
	분류심사 컴퍼런스	1	10
	분류심사 전문교육	1	10
	조사관 인증자격시험과목	1	10
	모름/무응답	2	20
	합계	10	

※ 응답자 기준

4) 검사의 결정전조사에서 조사내용의 중요성

검사의 결정전조사에서 조사내용의 중요도는,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은 4점 만점에 3.8점으로 가장 높고, 생활환경은 3.7점으로 두 번째이며, 교우관계는 3.6점 등의 순서였다.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함이 81.8%로 높았고, 생활환경은 매우 중요함이 72.7%, 교우관계는 매우 중요함이 63.6%로 높았다.

표 4-89 검사의 결정전조사에서 조사내용의 중요성

조사 내용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편차
범죄관련사항	중요한 편임	6	54.5	3.5	0.5
	매우 중요함	5	45.5		
	합계	11	100.0		
범죄 경력	중요하지 않은 편임	1	9.1	3.5	0.7
	중요한 편임	4	36.4		
	매우 중요함	6	54.5		
	합계	11	100.0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중요한 편임	3	27.3	3.7	0.5
	매우 중요함	8	72.7		
	합계	11	100.0		
성장과정	중요하지 않은 편임	1	9.1	3.5	0.7
	중요한 편임	4	36.4		
	매우 중요함	6	54.5		
	합계	11	100.0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중요하지 않은 편임	1	9.1	3.3	0.6
	중요한 편임	6	54.5		
	매우 중요함	4	36.4		
	합계	11	100.0		
학력 및 학교생활	중요한 편임	7	63.6	3.4	0.5
	매우 중요함	4	36.4		
	합계	11	100.0		
교우관계	중요한 편임	4	36.4	3.6	0.5
	매우 중요함	7	63.6		
	합계	11	100.0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중요한 편임	2	18.2	3.8	0.4
	매우 중요함	9	81.8		

조사 내용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편차
	합계	11	100.0		
진술태도	중요하지 않은 편임	1	9.1	3.3	0.6
	중요한 편임	6	54.5		
	매우 중요함	4	36.4		
	합계	11	100.0		
향후 생활계획	중요한 편임	9	81.8	3.2	0.4
	매우 중요함	2	18.2		
	합계	11	100.0		
조사자의 의견	중요한 편임	8	72.7	3.3	0.5
	매우 중요함	3	27.3		
	합계	11	100.0		

조사자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요인으로 1순위에서는 범죄 경력, 생활환경,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이 각각 27.3%로 높았고, 1+2순위에서는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이 각각 54.5%로 높았다.

표 4-90 조사자 의견 제안 시 비중 두는 요인

요 인	1순위		2순위		1+2순위	
	명	%	명	%	명	%
범죄관련사항	1	9.1	1	9.1	2	18.2
범죄 경력	3	27.3	2	18.2	5	45.5
생활환경	3	27.3	3	27.3	6	54.5
성장과정			1	9.1	1	9.1
교우관계	1	9.1			1	9.1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3	27.3	3	27.3	6	54.5
진술태도			1	9.1	1	9.1
합계	11	100	11	100	11	200

조사자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이유는 생활환경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27.3%, 보호자의 보호력이 향후 재범의 중요 요인이라서 18.2%, 범죄성의 고착화 참조를 위해서 18.2% 등이 제시되었다.

표 4-91 조사자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이유

이 유	빈도	백분율(%)
생활환경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3	27.3
보호자의 보호력이 향후 재범의 중요요인이라서	2	18.2
범죄성의 고착화 참조를 위해	2	18.2
비행의 상습성 파악을 위해	1	9.1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해	1	9.1
생활환경이 재비행 유무를 결정하므로	1	9.1
비행의 심화정도 파악을 위해	1	9.1
생활환경과 범죄환경의 고착화의 연관성파악위해	1	9.1
보호자의 관심이 재범에 영향이 크므로	1	9.1
교우관계가 범죄와의 연관성이 커서	1	9.1
진술태도가 재비행 가능성 판단의 중요자료가 되므로	1	9.1
모름/무응답	1	9.1
합계	11	

재범위험성에 대한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요인으로 1순위에서는 범죄경력이 36.4%, 생활환경이 27.3%로 높았고, 1+2순위에서는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이 54.5%로 가장 높았고, 범죄경력은 36.4%로 나타났다.

표 4-92 재범위험성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요인

요 인	1순위		2순위		1+2순위	
	명	%	명	%	명	%
범죄관련사항			1	9.1	1	9.1
범죄 경력	4	36.4			4	36.4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3	27.3	3	27.3	6	54.5
성장과정	1	9.1			1	9.1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1	9.1	1	9.1
교우관계	1	9.1	1	9.1	2	18.2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2	18.2	4	36.4	6	54.5
진술태도			1	9.1	1	9.1
합계	11	100	11	100	11	200

재범위험성에 대한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이유는 보호자의 보호력이나 보호의지 및 관심이 재범의 중요 요인이기 때문이며, 생활환경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었다.

표 4-93 재범위험성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이유

이 유	빈도	백분율(%)
모름/무응답	3	27.3
보호자의 보호력이 향후 재범의 중요요인이라서	2	18.2
범죄 상황에 따라 비중을 달리 적용하려고	1	9.1
생활환경이 재비행 유무를 결정하므로	1	9.1
생활환경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1	9.1
보호자의 보호의지가 중요하므로	1	9.1
비행 종류에 따라 비중을 달리 적용하려고	1	9.1
보호자의 무관심이 비행의 요인이 되므로	1	9.1
교우관계가 범죄와의 연관성이 커서	1	9.1
진술태도가 재비행 가능성 판단의 중요자료가 되므로	1	9.1
범죄경력이 많으면 재범 가능성이 높아서	1	9.1
보호자의 관심이 재범에 영향이 크므로	1	9.1
합계	11	

과 목		빈도	백분율(%)
2010년 교육과목	거짓말 생물학적 근거	1	7.7
	고급 법 심리학	1	7.7
	대상관계이론	1	7.7
	분류심사제도론	5	38.5
	비행청소년 상담기법	1	7.7
	소년보호 분류심사	1	7.7
	심리치료 심화과정	1	7.7
	살인범죄와 프로파일링	1	7.7
	심리검사의 이해	6	46.2
	심리학의 이해	5	38.5
	심리치료 심화과정	2	15.4
	상담기법	1	7.7
	성격심리	1	7.7
	소년사법의 이해	1	7.7
	인지행동 치료의 이해	5	38.5
	이상심리와 정신병리 이해	5	38.5
	이상심리학	1	7.7
	약물관련	1	7.7
	조사제도론	2	15.4
	진로상담	1	7.7
	청구전조사 제도론	8	61.5
	판결전 조사 제도론	7	53.8

과 목		빈도	백분율(%)
	MBTI	1	7.7
	분류심사 워크샵	1	7.7
	분류심사 컴퍼런스	1	7.7
	분류심사 전문교육	1	7.7
	모름/무응답	2	15.4
	합계	13	
2011년 교육과목	거짓말 생물학적 근거	1	10
	공문서 작성을 위한 한글 맞춤법	1	10
	대상관계이론	1	10
	분류심사제도론	1	10
	비행청소년 상담기법	1	10
	심리평가	1	10
	살인범죄와 프로파일링	1	10
	심리검사의 이해	2	20
	심리치료 심화과정	2	20
	상담기법	1	10
	성격심리	1	10
	이상심리와 정신병리 이해	1	10
	임상심리	1	10
	진로상담	1	10
	판단 및 결정이론	1	10
	MMPI	1	10
	분류심사 워크샵	1	10
	분류심사 컴퍼런스	1	10
	분류심사 전문교육	1	10
	조사관 인증자격시험과목	1	10
	모름/무응답	2	20
	합계	10	

※ 응답자 기준

조사자 의견 제안 시 소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이 90.9%로 가장 높고, 생활환경, 학력 및 학교생활, 향후 생활계획이 각각 36.4%로 높았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범죄 경력이 63.6로 가장 높았고,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54.5%, 교우관계 45.5% 등의 순서였다.

표 4-94 조사자 의견 제안시 소년에게 유리/불리하게 작용되는 요인

이 유	유리한 요인		불리한 요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죄관련사항	1	9.1	1	9.1
범죄 경력	2	18.2	7	63.6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4	36.4	3	27.3
성장과정	1	9.1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1	9.1
학력 및 학교생활	4	36.4	1	9.1
교우관계	1	9.1	5	45.5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10	90.9	6	54.5
진술태도	3	27.3	3	27.3
향후 생활계획	4	36.4		
합의여부			1	9.1
직업			2	18.2
모름	1	9.1	1	9.1
합계	11	281.8	11	281.8

5)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작성양식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작성양식에 대해서 만족하는 편은 72.7%였고, 불만족하는 경우 개선방안은 내용의 일목요연하였다.

표 4-95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작성 양식 만족도

만족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검사 결정전 조사서의 작성양식	만족하는 편	8	72.7	2.3	0.46
	만족하지 않는편	3	27.3		
	합계	11	100.0		

표 4-96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작성 양식 불만시 개선방안

방 안	빈도	백분율(%)
모름/무응답	2	66.7
내용 일목요연하게 개선	1	33.3
합계	3	100.0

6)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작성의 어려움 및 제도 전반적 개선과제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작성의 어려움으로 1순위에서는 진술에 크게 의존하나 진술의 진실성 판단이 쉽지 않은 점이 54.5%로 가장 높았고, 회보기간이 너무 짧아 소년을 파악할 시간 부족함과 피해자 면담 및 접근이 어려운 점을 언급하였다.

표 4-97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작성의 어려움

어려움	1순위		2순위		1+2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회보기간이 너무 짧아 소년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한 점	2	18.2	1	9.1	3	27.3
피해자 면담, 접근이 어려운 점	2	18.2	3	27.3	5	45.5
검찰에서 수사 자료를 잘 주지 않는 점	1	9.1	1	9.1	2	18.2
진술에 크게 의존하나 진술의 진실성 판단이 쉽지 않은 점	6	54.5	5	45.5	11	100.0
의견제시 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점			1	9.1	1	9.1
합계	11	100.0	11	100.0	11	200.0

검사의 결정전조사제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충분한 회보기간을 확보 등이 제시되었다.

표 4-98 검사의 결정전조사제도 전반적 개선과제

개선과제	빈도	백분율(%)
충분한 회보기간 확보	2	18.2
조사인력충원	1	9.1
소년사건인 경우 법적 강제력 강화	1	9.1
시안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양식으로 재정비	1	9.1
실적위주의 조사 작성 지양	1	9.1
처우에 대한 객관적 도입 필요	1	9.1
교육을 병행한 조사 필요	1	9.1
조사대상자의 신병확보	1	9.1
조사대상자의 객관적 진실성 확보	1	9.1

개선과제	빈도	백분율(%)
조사대상자의 조사자료 첨부	1	9.1
검사 조사의 중요성(필요성) 인식	1	9.1
소년범에 한해 경각심을 위해 경미한 비행도 기소해야 함	1	9.1
모름/무응답	1	9.1
합계	11	127.3

검사의 결정전조사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사건은 절도범죄가 45.5%로 가장 높고, 제한없다가 36.4%이며, 유용한 조사대상은 초범이 81.8%로 가장 높았다.

표 4-99 검사의 결정전조사의 유용성

유용성		빈도	백분율(%)
유용한 사건	폭행/상해(폭처법위반 등 폭력범죄)	1	9.1
	절도범죄	5	45.5
	제한 없다	4	36.4
	범죄 관계없이 초범대상	1	9.1
	합계	11	100.0
유용한 조사대상	초범	9	81.8
	재범	1	9.1
	제한없다	1	9.1
	합계	11	100.0

7) 검사의 결정전조사 작성 시 활용자료

검사의 결정전조사서를 의뢰받을 때 경찰단계에서의 환경조사서가 첨부되는 경우는 18.2%로 나타났으며, 첨부된 경우 의뢰건수의 약 10%가 첨부되고 있었다.

표 4-100 경찰 단계에서 환경조사서 첨부 여부

첨부여부		빈도	백분율(%)
경찰단계 환경조사 첨부	그렇다	2	18.2
	아니다	9	81.8
	합계	11	100.0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작성을 위해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자료는 학생생활기록부, 심리검사,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조회서, 수사경력조회서 등이 높았다.

표 4-101 검사의 결정전조사에 활용하는 자료

활용 자료	빈도	백분율(%)
학교생활기록부	10	90.9
심리검사	7	63.6
주민등록등본	7	63.6
범죄경력조회서	5	45.5
수사경력조회서	4	36.4
환경조사서	2	18.2
자기기록보고서	2	18.2
가족관계증명서	2	18.2
범죄사실	1	9.1
공소사실	1	9.1
지능검사	1	9.1
비행력조회	1	9.1
특수인성검사	1	9.1
특수지능적성검사	1	9.1
피의자신문조서	1	9.1
행동관찰부	1	9.1
주민등록초본	1	9.1
진단서	1	9.1
무응답	1	9.1
합계	11	

과 목		빈도	백분율(%)
2010년 교육과목	거짓말 생물학적 근거	1	7.7
	고급 법 심리학	1	7.7
	대상관계이론	1	7.7
	분류심사제도론	5	38.5
	비행청소년 상담기법	1	7.7
	소년보호 분류심사	1	7.7
	심리치료 심화과정	1	7.7
	살인범죄와 프로파일링	1	7.7
	심리검사의 이해	6	46.2
	심리학의 이해	5	38.5
	심리치료 심화과정	2	15.4

과 목		빈도	백분율(%)
	상담기법	1	7.7
	성격심리	1	7.7
	소년사법의 이해	1	7.7
	인지행동 치료의 이해	5	38.5
	이상심리와 정신병리 이해	5	38.5
	이상심리학	1	7.7
	약물관련	1	7.7
	조사제도론	2	15.4
	진로상담	1	7.7
	청구전조사 제도론	8	61.5
	판결전 조사 제도론	7	53.8
	MBTI	1	7.7
	분류심사 워크샵	1	7.7
	분류심사 컴퍼런스	1	7.7
	분류심사 전문교육	1	7.7
	모름/무응답	2	15.4
	합계	13	
2011년 교육과목	거짓말 생물학적 근거	1	10
	공문서 작성을 위한 한글 맞춤법	1	10
	대상관계이론	1	10
	분류심사제도론	1	10
	비행청소년 상담기법	1	10
	심리평가	1	10
	살인범죄와 프로파일링	1	10
	심리검사의 이해	2	20
	심리치료 심화과정	2	20
	상담기법	1	10
	성격심리	1	10
	이상심리와 정신병리 이해	1	10
	임상심리	1	10
	진로상담	1	10
	판단 및 결정이론	1	10
	MMPI	1	10
	분류심사 워크샵	1	10
	분류심사 컴퍼런스	1	10
	분류심사 전문교육	1	10
	조사관 인증자격시험과목	1	10
	모름/무응답	2	20
	합계	10	

※ 응답자 기준

마. 분류심사제도에 대한 인식

1) 분류심사서 작성 건수 및 의뢰 조사 대상

지금까지 분류심사서를 작성한 건수는 없음이 28.6%, 10건 이하 9.5%, 11건 이상 100건 이하가 14.3%, 101건 이상 500건 이하가 33.3%, 501건 이상이 14.3%로 평균은 278.8건이었다. 주로 의뢰받은 조사대상은 3범 이상이 26.7%이며 제한 없다가 73.3%로 가장 많았다.

표 4-102 분류심사서 작성 건수

건 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누적 분류심사서 작성 건수	없음	6	28.6	278.8	412.5
	10건이하	2	9.5		
	11건~100건	3	14.3		
	101건~500건	7	33.3		
	501건이상	3	14.3		
	합계	21	100.0		

표 4-103 분류심사 대상

대 상		빈도	백분율(%)
조사대상	3범이상	4	26.7
	제한 없다	11	73.3
	합계	15	100.0

2) 분류심사 비의뢰 이유 및 필요성과 활용성

판사가 분류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판사가 소년의 인성이나 환경보다는 죄질로 판단하기 때문이 40%로 가장 높았고, 임의규정으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 20%, 판사가 분류심사제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 20%로 나타났다.

표 4-104 판사가 분류심사를 의뢰하지 않는 이유

이 유	빈도	백분율(%)
판사가 소년의 인성이나 환경보다는 죄질로 판단할 것	6	40.0
임의규정으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3	20.0
판사가 분류심사제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3	20.0
조사서를 자세히 읽을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1	6.7
판사가 조사의 효용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1	6.7
위탁수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1	6.7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되어서	1	6.7
의뢰함	1	6.7
합계	15	

과 목		빈도	백분율(%)
2010년 교육과목	거짓말 생물학적 근거	1	7.7
	고급 법 심리학	1	7.7
	대상관계이론	1	7.7
	분류심사제도론	5	38.5
	비행청소년 상담기법	1	7.7
	소년보호 분류심사	1	7.7
	심리치료 심화과정	1	7.7
	살인범죄와 프로파일링	1	7.7
	심리검사의 이해	6	46.2
	심리학의 이해	5	38.5
	심리치료 심화과정	2	15.4
	상담기법	1	7.7
	성격심리	1	7.7
	소년사법의 이해	1	7.7
	인지행동 치료의 이해	5	38.5
	이상심리와 정신병리 이해	5	38.5
	이상심리학	1	7.7
	약물관련	1	7.7
	조사제도론	2	15.4
	진로상담	1	7.7
	청구전조사 제도론	8	61.5
	판결전 조사 제도론	7	53.8
	MBTI	1	7.7
	분류심사 워크샵	1	7.7
	분류심사 컴퍼런스	1	7.7
	분류심사 전문교육	1	7.7

과 목		빈도	백분율(%)
	모름/무응답	2	15.4
	합계	13	
2011년 교육과목	거짓말 생물학적 근거	1	10
	공문서 작성을 위한 한글 맞춤법	1	10
	대상관계이론	1	10
	분류심사제도론	1	10
	비행청소년 상담기법	1	10
	심리평가	1	10
	살인범죄와 프로파일링	1	10
	심리검사의 이해	2	20
	심리치료 심화과정	2	20
	상담기법	1	10
	성격심리	1	10
	이상심리와 정신병리 이해	1	10
	임상심리	1	10
	진로상담	1	10
	판단 및 결정이론	1	10
	MMPI	1	10
	분류심사 워크샵	1	10
	분류심사 컴퍼런스	1	10
	분류심사 전문교육	1	10
	조사관 인증자격시험과목	1	10
	모름/무응답	2	20
	합계	10	

※ 응답자 기준

분류심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 73.3%, 필요하다 26.7%로 조사관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판사가 분류심사를 활용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57.1%,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는 35.7%로 92.8%가 활용한다고 인식하였다. 조사관들은 분류심사의 필요성은 5점 만점에 4.7점, 판사의 활용도는 4.5점으로 인식하여, 필요성과 활용도 모두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표 4-105 분류심사 필요성 및 활용도

필요성 / 활용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분류심사의 필요성	필요하다	4	26.7	4.7	0.45
	매우 필요하다	11	73.3		
	합계	15	100.0		
분류심사의 활용도	그저 그렇다	1	7.1	4.5	0.65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	5	35.7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8	57.1		
	합계	14	100.0		

3) 분류심사서 작성시 조사관의 전문성

분류심사서를 작성하는 조사관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매우 높다는 6.7%, 높은 편이다는 33.3%로 40%가 높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보통이다는 53.3%, 낮은 편이다는 6.7%로 5점 만점의 평균은 3.4점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4-106 분류심사서 작성 조사관의 전문성

전문성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조사관의 전문성	낮은 편이다	1	6.7	3.4	0.76
	보통이다	8	53.3		
	높은 편이다	5	33.3		
	매우 높다	1	6.7		
	합계	15	100.0		

조사관의 전문성이 낮은 경우도 있다면, 전문 인력배치, 특채자 타업무 수행 개선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표 4-107 분류심사서 작성 조사관의 전문성 해결 방안

개선방안	빈도	백분율(%)
모름/무응답	7	46.7
전문인력배치	2	13.3

개선방안	빈도	백분율(%)
특채자 타업무 수행개선	2	13.3
순환보직 제도 개선	1	6.7
조사관 인성 및 자질 중요시	1	6.7
실적위주의 조사 지양	1	6.7
조사업무에 대한 기피현상 개선	1	6.7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실시	1	6.7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기적 교육실시	1	6.7
관련교육을 이수한자에 자격부여	1	6.7
없다	1	6.7
관련 전공학과 직원활용	1	6.7
합계	15	

4) 분류심사에서 조사내용의 중요성

분류심사에서 조사내용의 중요도는, 생활환경 3.7점,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 3.7점, 성장과 생활환경에서는 매우 중요함이 66.7%, 중요한 편임이 33.3%로 조사관 모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에서는 매우 중요함이 73.3%, 중요한 편임이 20.0%로 매우 중요함의 인식이 높았고, 성장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함이 60.0%, 중요한 편임이 33.3%로 조사관의 대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교우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함은 53.3%, 중요한 편임은 40.0%이며,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에서는 매우 중요함이 60%, 중요한 편임은 33.3%로 나타났다.

표 4-108 분류심사에서 조사내용의 중요성

조사 내용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범죄관련사항	중요하지 않은 편임	2	13.3	3.1	0.6
	중요한 편임	9	60.0		
	매우 중요함	4	26.7		
	합계	15	100.0		
범죄 경력	중요한 편임	10	66.7	3.3	0.5
	매우 중요함	5	33.3		
	합계	15	100.0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중요한 편임	5	33.3	3.7	0.5
	매우 중요함	10	66.7		

조사 내용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합계	15	100.0		
성장과정	중요하지 않은 편임	1	6.7	3.5	0.6
	중요한 편임	5	33.3		
	매우 중요함	9	60.0		
	합계	15	100.0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중요하지 않은 편임	1	6.7	3.7	0.6
	중요한 편임	3	20.0		
	매우 중요함	11	73.3		
	합계	15	100.0		
학력 및 학교생활	중요하지 않은 편임	1	7.1	3.4	0.6
	중요한 편임	7	50.0		
	매우 중요함	6	42.9		
	합계	14	100.0		
교우관계	중요하지 않은 편임	1	6.7	3.5	0.6
	중요한 편임	6	40.0		
	매우 중요함	8	53.3		
	합계	15	100.0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중요하지 않은 편임	1	6.7	3.5	0.6
	중요한 편임	5	33.3		
	매우 중요함	9	60.0		
	합계	15	100.0		
진술태도	중요하지 않은 편임	1	6.7	3.3	0.6
	중요한 편임	9	60.0		
	매우 중요함	5	33.3		
	합계	15	100.0		
향후 생활계획	중요하지 않은 편임	1	6.7	3.2	0.6
	중요한 편임	10	66.7		
	매우 중요함	4	26.7		
	합계	15	100.0		
조사자의 의견	중요하지 않은 편임	1	6.7	3.2	0.6
	중요한 편임	10	66.7		
	매우 중요함	4	26.7		
	합계	15	100.0		

조사자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요인으로 1순위에서는 범죄경력과 생활환경을 각각 20%로 비중을 높게 두고 있으며, 1+2순위에서는 생활환경이 53.3%로 가장 높았다.

표 4-109 조사자 의견 제안 시 비중 두는 요인

요 인	1순위		2순위		1+2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범죄관련사항	1	6.7	1	6.7	2	13.3
범죄 경력	3	20.0			3	20.0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3	20.0	5	33.3	8	53.3
성장과정	2	13.3	1	6.7	3	20.0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2	13.3	3	20.0	5	33.3
학력 및 학교생활	1	6.7	1	6.7	2	13.3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1	6.7	1	6.7
진술태도	2	13.3	1	6.7	3	20.0
향후 생활계획			2	13.3	2	13.3
조사자의 의견	1	6.7			1	6.7
합계	15	100.0	15	100.0	15	200.0

조사자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이유는 청소년 범죄는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보호자의 보호 능력이 범죄발생과 관련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표 4-110 조사자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이유

이 유	빈도	백분율(%)
모름/무응답	4	26.7
보호자의 보호력이 향후 재범의 중요요인이라서	2	13.3
재비행 예방을 위해서	2	13.3
생활환경이 재비행 유무를 결정하므로	1	6.7
생활환경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1	6.7
범죄경력과 가정환경의 연관성이 커서	1	6.7
생활환경의 변화가 재범과 연관 있어서	1	6.7
비행의 질을 중요시하므로	1	6.7
현재 생활 상태를 중요시 하므로	1	6.7
보호자의 무관심이 비행의 요인이 되므로	1	6.7
생활환경 작성에 따라 지도방향 및 처분의견이 작성되므로	1	6.7
재비행 가능성의 판단 통해 예후를 알 수 있어서	1	6.7
처분결과가 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1	6.7
보호자의 관심이 재비행성 유무에 영향 주므로	1	6.7
합계	15	

재범위험성에 대한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요인으로 1순위에서는 범죄 경력이 46.7%로 가장 높고, 1+2순위에서는 범죄 경력이 53.3%로 가장 높고,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33.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4-111 재범위험성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요인

요 인	1순위		2순위		1+2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범죄관련사항	1	6.7			1	6.7
범죄 경력	7	46.7	1	7.1	8	53.3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2	13.3	1	7.1	3	20.0
성장과정	1	6.7			1	6.7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1	6.7	4	28.6	5	33.3
학력 및 학교생활			3	21.4	3	20.0
교우관계	1	6.7	1	7.1	2	13.3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2	14.3	2	13.3
진술태도	1	6.7	2	14.3	3	20.0
모름	1	6.7			1	6.7
합계	15	100.0	14	100.0	15	

재범위험성에 대한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이유는 재범과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표 4-112 재범위험성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이유

이 유	빈도	백분율(%)
모름/무응답	8	57.1
생활환경이 재비행 유무를 결정하므로	1	7.1
가족간 갈등이 가출과 재비행으로 연결되므로	1	7.1
생활환경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1	7.1
현재 생활 상태를 중요시 하므로	1	7.1
비행의 심화정도 파악을 위해	1	7.1
교우관계가 범죄와의 연관성이 커서	1	7.1
재비행 예방을 위해서	1	7.1
비행력의 많고 적음이 재비행예측의 중요자료가 되므로	1	7.1
심리적인 안전이 재범위험성에 영향 주므로	1	7.1

이 유	빈도	백분율(%)
보호자의 보호력이 향후 재범의 중요요인이라서	1	7.1
합계	14	

조사자 의견 제안 시 소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가 66.7%로 가장 높고, 생활환경이 46.7%이며,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범죄 경력이 60%로 가장 높고,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가 46.7%로 높았다.

표 4-113 조사자 의견 제안시 소년에게 유리/불리하게 작용되는 요인

이 유	유리한 요인		불리한 요인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범죄관련사항	2	13.3	2	13.3
범죄 경력	2	13.3	9	60.0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7	46.7	6	40.0
성장과정	1	6.7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10	66.7	7	46.7
학력 및 학교생활	5	33.3	3	20.0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2	13.3	1	6.7
진술태도			1	6.7
조사자의 의견			1	6.7
교우관계	1	6.7	3	20.0
향후생활계획	1	6.7		
진술태도(반성)	3	20.0	2	13.3
직업			1	6.7
모름	2	13.3	2	13.3
합계	15		15	

5) 분류심사서 작성양식

분류심사서 작성양식에 대해서 매우 만족은 6.4%, 만족하는 편은 73.3%로 응답자의 80%는 만족하고 있었다. 불만족하는 경우 개선방안은 중복 항목 생략 및 항목의 구체화였다.

표 4-114 분류심사서 작성 양식 만족도

만족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분류심사서의 작성양식	매우만족	1	6.7	2.1	0.51
	만족하는 편	11	73.3		
	만족하지 않는 편	3	20.0		
	합계	15	100.0		

표 4-115 분류심사서 작성 양식 불만시 개선방안

이 유	빈도	백분율(%)
중복 항목 생략	2	66.6
항목 구체화 기준 마련	1	33.3
모름/무응답	1	33.3
합계	3	

6) 분류심사서 작성의 어려움 및 제도 전반적 개선과제

분류심사서 작성의 어려움으로 1순위에서는 진술에 크게 의존하나 진술의 진실성 판단이 쉽지 않은 점이 66.7%로 가장 높았고, 1+2순위에서는 진술의 진실성 판단이 쉽지 않은 점이 86.7%로 가장 높고, 의견제시 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점이 40.0%로 두 번째로 높았다.

표 4-116 분류심사서 작성의 어려움

어려움	1순위		2순위		1+2순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회보기간이 너무 짧아 소년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한 점	2	13.3	1	7.7	3	20.0
피해자 면담, 접근이 어려운 점	1	6.7	1	7.7	2	13.3
검찰에서 수사 자료를 잘 주지 않는 점			1	7.7	1	6.7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가 없는 점	1	6.7			1	6.7
진술에 크게 의존하나 진술의 진실성 판단이 쉽지 않은 점	10	66.7	3	23.1	13	86.7
의견제시 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점			6	46.2	6	40.0
짧은 시간에 작성해야할경우			1	7.7	1	6.7
모름/무응답	1	6.7			1	6.7
합계	15	100.0	13	100.0	15	

분류심사제도 전반을 고려할 때,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전문 인력 확보, 조사 인력 충원의 인력적인 문제와 법원과 심사관의 간담회 정례화 등이 제시되었다.

표 4-117 분류심사제도 전반적 개선과제

개선과제	빈도	백분율(%)
모름/무응답	6	40.0
전문 인력 확보	2	13.3
재비행 방지를 위한 처분 필요	1	6.7
조사인력충원	1	6.7
조사업무과중개선	1	6.7
충분한 회보기간 확보	1	6.7
실적위주의 조사 작성 지양	1	6.7
상담조사서 양식 간소화 필요	1	6.7
보호관찰관의 1차 조사 필요	1	6.7
법원과 심사관과의 간담회 정례화 필요	1	6.7
합계	15	

과 목		빈도	백분율(%)
2010년 교육과목	거짓말 생물학적 근거	1	7.7
	고급 법 심리학	1	7.7
	대상관계이론	1	7.7
	분류심사제도론	5	38.5
	비행청소년 상담기법	1	7.7
	소년보호 분류심사	1	7.7
	심리치료 심화과정	1	7.7
	살인범죄와 프로파일링	1	7.7
	심리검사의 이해	6	46.2
	심리학의 이해	5	38.5
	심리치료 심화과정	2	15.4
	상담기법	1	7.7
	성격심리	1	7.7
	소년사법의 이해	1	7.7
	인지행동 치료의 이해	5	38.5
	이상심리와 정신병리 이해	5	38.5
	이상심리학	1	7.7
	약물관련	1	7.7
	조사제도론	2	15.4
	진로상담	1	7.7

과 목		빈도	백분율(%)
	청구전조사 제도론	8	61.5
	판결전 조사 제도론	7	53.8
	MBTI	1	7.7
	분류심사 워크샵	1	7.7
	분류심사 컴퍼런스	1	7.7
	분류심사 전문교육	1	7.7
	모름/무응답	2	15.4
	합계	13	
2011년 교육과목	거짓말 생물학적 근거	1	10
	공문서 작성을 위한 한글 맞춤법	1	10
	대상관계이론	1	10
	분류심사제도론	1	10
	비행청소년 상담기법	1	10
	심리평가	1	10
	살인범죄와 프로파일링	1	10
	심리검사의 이해	2	20
	심리치료 심화과정	2	20
	상담기법	1	10
	성격심리	1	10
	이상심리와 정신병리 이해	1	10
	임상심리	1	10
	진로상담	1	10
	판단 및 결정이론	1	10
	MMPI	1	10
	분류심사 워크샵	1	10
	분류심사 컴퍼런스	1	10
	분류심사 전문교육	1	10
	조사관 인증자격시험과목	1	10
	모름/무응답	2	20
	합계	10	

※ 응답자 기준

분류심사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사건은 제한 없다가 66.7%로 가장 높고, 절도범죄가 26.7% 로 나타났으며, 유용한 조사대상은 제한 없다가 66.7% 로 나타났다.

표 4-118 분류심사의 유용성

유용성		빈도	백분율(%)
유용한 사건	절도범죄	4	26.7
	성폭력범죄	1	6.7
	제한없다	10	66.7
	합계	15	100.0
유용한 조사대상	초범	1	6.7
	재범	2	13.3
	3범이상	2	13.3
	제한없다	10	66.7
	합계	15	100.0

7) 분류심사 작성 시 활용자료

분류심사서를 의뢰받을 때 검사의 결정전조사서가 첨부되는 경우는 20%로 나타났으며, 첨부된 경우 의뢰건수의 약 35%가 첨부되고 있었다.

표 4-119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첨부 여부

첨부여부		빈도	백분율(%)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첨부	그렇다	3	20.0
	아니다	12	80.0
	합계	15	100.0

분류심사서 작성을 위해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자료는 학생생활기록부 60.0%, 심리검사 46.7%, 행동관찰부 46.7%, 환경조사서 40% 등 다양하였다.

표 4-120 분류심사에 활용하는 자료

활용 자료	빈도	백분율(%)
학교생활기록부	9	60.0
심리검사	7	46.7
행동관찰부	7	46.7
환경조사서	6	40.0
주민등록등본	5	33.3

활용 자료	빈도	백분율(%)
건강조사서	4	26.7
무응답	4	26.7
범죄경력조회서	4	26.7
비행력조회	3	20.0
자기기록보고서	3	20.0
수사경력조회서	3	20.0
보호자면담	2	13.3
신상조사서	2	13.3
범죄사실	2	13.3
담임면담	2	13.3
진단서	2	13.3
대상자 면담	2	13.3
특수지능적성검사	2	13.3
개인회고록	2	13.3
가족관계증명서	2	13.3
지능검사	2	13.3
성격검사	1	6.7
인성검사	1	6.7
면회기록	1	6.7
분류심사 메뉴얼	1	6.7
관계인 면담	1	6.7
청소년 직업 흥미검사	1	6.7
특수인성검사	1	6.7
분류심사 진단지	1	6.7
소년의 진술서	1	6.7
결정전조사	1	6.7
담임평가지	1	6.7
소년관계 법령집	1	6.7
합계	15	

과 목		빈도	백분율(%)
2010년 교육과목	거짓말 생물학적 근거	1	7.7
	고급 법 심리학	1	7.7
	대상관계이론	1	7.7
	분류심사제도론	5	38.5
	비행청소년 상담기법	1	7.7
	소년보호 분류심사	1	7.7
	심리치료 심화과정	1	7.7
	살인범죄와 프로파일링	1	7.7
	심리검사의 이해	6	46.2
	심리학의 이해	5	38.5

과 목		빈도	백분율(%)
	심리치료 심화과정	2	15.4
	상담기법	1	7.7
	성격심리	1	7.7
	소년사법의 이해	1	7.7
	인지행동 치료의 이해	5	38.5
	이상심리와 정신병리 이해	5	38.5
	이상심리학	1	7.7
	약물관련	1	7.7
	조사제도론	2	15.4
	진로상담	1	7.7
	청구전조사 제도론	8	61.5
	판결전 조사 제도론	7	53.8
	MBTI	1	7.7
	분류심사 워크샵	1	7.7
	분류심사 컴퍼런스	1	7.7
	분류심사 전문교육	1	7.7
	모름/무응답	2	15.4
	합계	13	
2011년 교육과목	거짓말 생물학적 근거	1	10
	공문서 작성을 위한 한글 맞춤법	1	10
	대상관계이론	1	10
	분류심사제도론	1	10
	비행청소년 상담기법	1	10
	심리평가	1	10
	살인범죄와 프로파일링	1	10
	심리검사의 이해	2	20
	심리치료 심화과정	2	20
	상담기법	1	10
	성격심리	1	10
	이상심리와 정신병리 이해	1	10
	임상심리	1	10
	진로상담	1	10
	판단 및 결정이론	1	10
	MMPI	1	10
	분류심사 워크샵	1	10
	분류심사 컴퍼런스	1	10
	분류심사 전문교육	1	10
	조사관 인증자격시험과목	1	10
	모름/무응답	2	20
	합계	10	

※ 응답자 기준

바. 상담조사제도에 대한 인식

1) 상담조사서 작성 건수 및 의뢰 조사 대상

지금까지 상담조사서를 작성한 건수는 없음 14.3%, 10건 이하 14.3%, 11건에서 100건 23.8%, 101건에서 500건 33.3%, 501건 이상 14.3%이며, 평균은 201건이었다. 주로 의뢰받은 조사대상은 초범이 33.3%, 재범이 16.7%, 3범이상이 5.6%이며 제한 없다가 44.4%로 가장 많았다.

표 4-121 상담조사서 작성 건수

건 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누적 상담조사서 작성 건수	없음	3	14.3	201.0	276.0
	10건이하	3	14.3		
	11건~100건	5	23.8		
	101건~500건	7	33.3		
	501건이상	3	14.3		
	합계	21	100.0		

표 4-122 상담조사 대상

대 상		빈도	백분율(%)
조사대상	초범	6	33.3
	재범	3	16.7
	3범이상	1	5.6
	제한없다	8	44.4
	합계	18	100.0

2) 상담조사 비의뢰 이유 및 필요성과 활용성

판사가 상담조사를 의뢰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임의규정으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 판사가 조사의 효용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 판사가 상담조사제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 등의 이유가 제시되었다.

표 4-123 상담조사를 의뢰하지 않는 이유

이 유	빈도	백분율(%)
의뢰하고 있음	5	27.8
임의규정으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3	16.7
판사가 상담조사제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3	16.7
판사가 조사의 효용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3	16.7
조사서를 자세히 읽을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2	11.1
판사가 소년의 인성이나 환경보다는 죄질로 판단할 것	2	11.1
절차가 번거로워서	1	5.6
합계	18	

과 목		빈도	백분율(%)
2010년 교육과목	거짓말 생물학적 근거	1	7.7
	고급 법 심리학	1	7.7
	대상관계이론	1	7.7
	분류심사제도론	5	38.5
	비행청소년 상담기법	1	7.7
	소년보호 분류심사	1	7.7
	심리치료 심화과정	1	7.7
	살인범죄와 프로파일링	1	7.7
	심리검사의 이해	6	46.2
	심리학의 이해	5	38.5
	심리치료 심화과정	2	15.4
	상담기법	1	7.7
	성격심리	1	7.7
	소년사법의 이해	1	7.7
	인지행동 치료의 이해	5	38.5
	이상심리와 정신병리 이해	5	38.5
	이상심리학	1	7.7
	약물관련	1	7.7
	조사제도론	2	15.4
	진로상담	1	7.7
	청구전조사 제도론	8	61.5
	판결전 조사 제도론	7	53.8
	MBTI	1	7.7
	분류심사 워크샵	1	7.7
	분류심사 컴퍼런스	1	7.7
	분류심사 전문교육	1	7.7
	모름/무응답	2	15.4

과 목		빈도	백분율(%)
	합계	13	
2011년 교육과목	거짓말 생물학적 근거	1	10
	공문서 작성을 위한 한글 맞춤법	1	10
	대상관계이론	1	10
	분류심사제도론	1	10
	비행청소년 상담기법	1	10
	심리평가	1	10
	살인범죄와 프로파일링	1	10
	심리검사의 이해	2	20
	심리치료 심화과정	2	20
	상담기법	1	10
	성격심리	1	10
	이상심리와 정신병리 이해	1	10
	임상심리	1	10
	진로상담	1	10
	판단 및 결정이론	1	10
	MMPI	1	10
	분류심사 워크샵	1	10
	분류심사 컴퍼런스	1	10
	분류심사 전문교육	1	10
	조사관 인증자격시험과목	1	10
	모름/무응답	2	20
	합계	10	

※ 응답자 기준

상담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 44.4%, 필요하다 38.9%로 83.3%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1.2%는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판사가 상담조사를 활용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47.1%,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는 47.1%로 94.2%가 활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관들은 상담조사의 필요성은 5점 만점에 4.1점, 판사의 활용도는 4.4점으로 인식하여, 필요성과 활용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표 4-124 상담조사 필요성 및 활용도

필요성 / 활용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상담조사의 필요성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5.6	4.1	1.13
	별로 필요하지 않다	1	5.6		
	그저 그렇다	1	5.6		
	필요하다	7	38.9		
	매우 필요하다	8	44.4		
	합계	18	100.0		
상담조사의 활용도	그저 그렇다	1	5.9	4.4	0.61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	8	47.1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8	47.1		
	합계	17	100.0		

3) 상담조사서 작성시 조사관의 전문성

상담조사서를 작성하는 조사관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매우 높다는 5.6%, 높은 편이다는 38.9%로 44.5%가 높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보통이다는 50.0%, 낮은 편이다는 5.6%로 5점 만점의 평균은 3.4점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게 인식되고 있었다.

표 4-125 상담조사서 작성 조사관의 전문성

전문성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조사관의 전문성	낮은 편이다	1	5.6	3.4	0.70
	보통이다	9	50.0		
	높은 편이다	7	38.9		
	매우 높다	1	5.6		
	합계	18	100.0		

조사관의 전문성이 낮은 경우도 있다면, 순환보직 제도 개선,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등 전문성 강화와 조사업무 수행 방식 개선을 제안하였다.

표 4-126 상담조사서 작성 조사관의 전문성 해결 방안

개선방안	빈도	백분율(%)
모름/무응답	11	61.1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실시	2	11.1
순환보직 제도 개선	2	11.1
특채자 타업무 수행개선	1	5.6
실적위주의 조사 지양	1	5.6
적정 시간 확보	1	5.6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1	5.6
없다	1	5.6
적정 인력분배	1	5.6
합계	18	

※ 응답자 기준

4) 상담조사에서 조사내용의 중요성

상담조사에서 조사내용의 중요도를 평가했을 때, 생활환경과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가 3.7점으로 가장 높았고, 성장과정과 학력 및 학교생활은 3.6점,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은 3.5점이었다.

생활환경은 매우 중요함이 70.6%이며,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도 매우 중요함이 70.6%이며, 성장과정은 매우 중요함이 64.7%, 학력 및 학교생활은 매우 중요함이 58.8%,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은 매우 중요함이 58.8%였다.

표 4-127 상담조사에서 조사내용의 중요성

조사 내용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편차
범죄관련사항	중요한 편임	10	58.8	3.4	0.5
	매우 중요함	7	41.2		
	합계	17	100.0		
범죄 경력	중요한 편임	10	58.8	3.4	0.5
	매우 중요함	7	41.2		
	합계	17	100.0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중요한 편임	5	29.4	3.7	0.5
	매우 중요함	12	70.6		
	합계	17	100.0		

조사 내용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편차
성장과정	중요한 편임	6	35.3	3.6	0.5
	매우 중요함	11	64.7		
	합계	17	100.0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중요한 편임	5	29.4	3.7	0.5
	매우 중요함	12	70.6		
	합계	17	100.0		
학력 및 학교생활	중요한 편임	7	41.2	3.6	0.5
	매우 중요함	10	58.8		
	합계	17	100.0		
교우관계	중요하지 않은 편임	2	11.8	3.2	0.6
	중요한 편임	10	58.8		
	매우 중요함	5	29.4		
	합계	17	100.0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5.9	3.5	0.8
	중요한 편임	6	35.3		
	매우 중요함	10	58.8		
	합계	17	100.0		
진술태도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5.9	3.4	0.8
	중요한 편임	8	47.1		
	매우 중요함	8	47.1		
	합계	17	100.0		
향후 생활계획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5.9	3.2	0.8
	중요하지 않은 편임	1	5.9		
	중요한 편임	9	52.9		
	매우 중요함	6	35.3		
	합계	17	100.0		
조사자의 의견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5.9	3.2	0.8
	중요한 편임	10	58.8		
	매우 중요함	6	35.3		
	합계	17	100.0		

조사자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요인으로 1순위에서는 생활환경이 33.3%로 가장 높았고, 범죄 경력이 22.2%였으며, 1+2순위에서는 생활환경과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가 각각 50%로 가장 높았고, 범죄 경력은 38.9%였다.

표 4-128 조사자 의견 제안 시 비중 두는 요인

요 인	1순위		2순위		1+2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범죄관련사항	1	5.6			1	5.6
범죄 경력	4	22.2	3	16.7	7	38.9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6	33.3	3	16.7	9	50.0
성장과정	2	11.1	2	11.1	4	22.2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2	11.1	7	38.9	9	50.0
학력 및 학교생활	2	11.1	1	5.6	3	16.7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1	5.6	1	5.6
진술태도	1	5.6	1	5.6	2	11.1
합계	18	100.0	18	100.0	18	200.0

조사자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이유는 재범과의 연관성이 높은 요인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표 4-129 조사자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이유

이 유	빈도	백분율(%)
모름/무응답	7	38.9
생활환경이 재비행 유무를 결정하므로	2	11.1
보호자의 보호력이 향후 재범의 중요요인이라서	2	11.1
비행의 심화정도 파악을 위해	1	5.6
비행 상습성과 재비행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1	5.6
열악한 생활환경은 재범가능성이 높아서	1	5.6
생활환경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1	5.6
평소 생활이 향후 재범의 중요요인이라서	1	5.6
비행의 질을 중요시하므로	1	5.6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범죄와 연관 있어서	1	5.6
조사서 작성하기가 편리해서	1	5.6
보호자의 보호의지가 중요하므로	1	5.6
보호자의 관심이 재범에 영향이 크므로	1	5.6
보호자의 무관심이 비행의 요인이 되므로	1	5.6
재비행예측을 통해 지도방향과 처분의결의 결정되므로	1	5.6
재비행 가능성의 판단 통해 예후를 알 수 있어서	1	5.6
보호자의 관심이 재비행성 유무에 영향 주므로	1	5.6
합계	18	

재범위험성에 대한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요인으로 1순위에서는 범죄 경력이 33.3%로 가장 높았고 1+2순위에서는 범죄 경력과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가 각각 50%로 높았다.

표 4-130 재범위험성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요인

요 인	1순위		2순위		1+2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범죄관련사항	2	11.1	1	5.6	3	16.7
범죄 경력	6	33.3	3	16.7	9	50.0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3	16.7	3	16.7	6	33.3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3	16.7	6	33.3	9	50.0
학력 및 학교생활	2	11.1	3	16.7	5	27.8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1	5.6			1	5.6
진술태도	1	5.6	2	11.1	3	16.7
합계	18	100.0	18	100.0	18	200.0

재범위험성에 대한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이유는 생활환경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보호자의 보호력이 향후 재범의 중요 요인이어서 등 범죄나 재범과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표 4-131 재범위험성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이유

이 유	빈도	백분율(%)
모름/무응답	9	50.0
생활환경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3	16.7
보호자의 보호력이 향후 재범의 중요요인이라서	3	16.7
평소 생활이 향후 재범의 중요요인이라서	1	5.6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범죄와 연관 있어서	1	5.6
보호자의 무관심이 비행의 요인이 되므로	1	5.6
비행의 심화정도 파악을 위해	1	5.6
학교생활 유무가 재비행에 영향 주므로	1	5.6
재비행 예방을 위해서	1	5.6
재비행 가능성의 판단 통해 예후를 알 수 있어서	1	5.6
행동관찰 통해 예후를 예측할 수 있어서	1	5.6
청소년은 또래 지향성으로 인해 왜곡된 학습이 이루어지므로	1	5.6
합계	18	

조사자 의견 제안 시 소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66.7%, 생활환경 55.6%, 학력 및 학교생활 33.3% 등이며, 불리한 요인은 범죄 경력과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가 각각 50.0%로 가장 높았고, 생활환경은 44.4%였다.

표 4-132 조사자 의견 제안시 소년에게 유리/불리하게 작용되는 요인

이 유	유리한 요인		불리한 요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죄관련사항	2	11.1	5	27.8
범죄 경력	2	11.1	9	50.0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10	55.6	8	44.4
성장과정	1	5.6	2	11.1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12	66.7	9	50.0
학력 및 학교생활	6	33.3	4	22.2
교우관계	2	11.1	3	16.7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3	16.7	1	5.6
향후생활계획	2	11.1		
진술태도(반성)	3	16.7	2	11.1
합의여부	1	5.6	1	5.6
조사자의 의견			1	5.6
모름	1	5.6	1	5.6
합계	18		18	

* 응답자 기준

5) 상담조사서 작성양식

상담조사서 작성양식에 대해서 매우 만족은 5.6%, 만족하는 편은 66.7%로 응답자의 72.2%는 만족하고 있었다. 불만족하는 경우 양식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4-133 상담조사서 작성 양식 만족도

만족도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 편차
상담조사서의 작성양식	매우만족	1	5.6	2.2	0.54
	만족하는 편	12	66.7		
	만족하지 않는 편	5	27.8		
	합계	18	100.0		

표 4-134 상담조사서 작성 양식 불만시 개선방안

이 유	빈도	백분율(%)
양식간소화	7.2	40
모름/무응답	7.2	40
교육에 중점을 두어 양이 많은 작성서 양조절 필요	3.6	20
합계	5	100

6) 상담조사서 작성의 어려움 및 제도 전반적 개선과제

상담조사서 작성의 어려움으로 1순위에서는 회보기간이 너무 짧아 소년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한 점과 진술에 크게 의존하나 진술의 진실성 판단이 쉽지 않은 점이 각각 38.9%로 가장 높았고, 1+2순위에서도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표 4-135 법원 결정전조사서 작성의 어려움

어려움	1순위		2순위		1+2순위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회보기간이 너무 짧아 소년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한 점	7	38.9	3	16.7	10	55.6
피해자 면담, 접근이 어려운 점	3	16.7	4	22.2	7	38.9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가 없는 점	1	5.6			1	5.6
진술에 크게 의존하나 진술의 진실성 판단이 쉽지 않은 점	7	38.9	9	50.0	16	88.9
의견제시 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점			2	11.1	2	11.1
합계	18	100.0	18	100.0	18	200.0

상담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할 때,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실적위주의 조사 작성 지양 16.7%, 전문 인력확보와 조사인력 충원, 충분한 회보기간 확보 등이 제안되었다.

표 4-136 상담조사 제도 전반적 개선과제

개선과제	빈도	백분율(%)
모름/무응답	6	33.3
실적위주의 조사 작성 지양	3	16.7
충분한 회보기간 확보	2	11.1
전문 인력 확보	2	11.1
조사인력충원	2	11.1
조사업무과중개선	1	5.6
중요사건만 조사의뢰	1	5.6
전담기관설치필요	1	5.6
사실 확인 위주의 조사 필요	1	5.6
제한적인 면담 횟수 개선 필요	1	5.6
상담조사서 양식 간소화 필요	1	5.6
조사서 양식에 대한 재정비	1	5.6
조사 대상자의 가정환경 현장조사 필요	1	5.6
전문 인력양성	1	5.6
합계	18	

상담조사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사건은 제한 없다가 72.2%로 가장 높고, 절도범죄가 22.2로 나타났으며, 유용한 조사대상은 제한 없다가 50%, 초범이 50%로 나타났다.

표 4-137 상담조사의 유용성

유용성		빈도	백분율(%)
유용한 사건	폭행/상해(폭처법위반 등 폭력범죄)	1	5.6
	절도범죄	4	22.2
	살인/치사범죄	1	5.6
	제한 없다	13	72.2
	합계	18	105.6
유용한 조사대상	초범	9	50.0
	제한없다	9	50.0
	합계	18	100.0

7) 상담조사 작성 시 활용자료

상담조사서를 의뢰받을 때 검사의 결정전조사서가 첨부되는 경우는 11.2%로 나타났으며, 첨부된 경우 의뢰건수의 약 36%가 첨부되고 있었다.

표 4-138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첨부 여부

첨부여부		빈도	백분율(%)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첨부	그렇다	2	11.1
	아니다	16	88.9
	합계	18	85.7

상담조사서 작성을 위해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가 72.2%로 가장 많고, 심리검사가 50%이며, 주민등록등본, 환경조사서가 44.4%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었다.

표 4-139 상담조사에 활용하는 자료

활용 자료	빈도	백분율(%)
학교생활기록부	13	72.2
심리검사	9	50.0
환경경조사서	8	44.4
주민등록등본	8	44.4
범죄경력조회서	5	27.8
행동관찰부	5	27.8
자기기록보고서	5	27.8
수사경력조회서	5	27.8
비행력조회	5	27.8
신상조사서	4	22.2
범죄사실	3	16.7
교육태도	3	16.7
보호자면담	3	16.7
특수지능적성검사	3	16.7
건강조사서	3	16.7
무응답	3	16.7

활용 자료	빈도	백분율(%)
대상자 면담	2	11.1
가족관계증명서	2	11.1
개인회고록	2	11.1
특수인성검사	2	11.1
지능검사	2	11.1
진단서	2	11.1
장애인 등록증	1	5.6
소년의 진술서	1	5.6
생각그리기	1	5.6
인성검사	1	5.6
이전조사기록	1	5.6
소년개인기록	1	5.6
분류심사 메뉴얼	1	5.6
관계인 면담	1	5.6
SCT	1	5.6
HTP	1	5.6
성격검사	1	5.6
합계	18	

8) 소년범 조사 수행시 애로사항

소년범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요 애로사항은 전반적으로 진술에 의존해야 돼서 19.0%, 업무량이 많아서 14.3% 등이 제시되었다.

표 4-140 소년범 조사 수행의 애로사항 – 전반적

애로사항	빈도	백분율(%)
모름/무응답	6	28.6
진술에 의존해야 되어서	4	19.0
업무량이 많아서	3	14.3
의뢰건수가 많아서	2	9.5
보호자의 관심이 미흡할 때	2	9.5
현장조사가 미흡해서	2	9.5
조사시간이 부족해서	2	9.5
일시에 많은 인원을 조사할 때	1	4.8
실적위주의 조사가 많아서	1	4.8

애로사항	빈도	백분율(%)
경찰수사 자료가 미흡해서	1	4.8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사건수의 변화	1	4.8
합계	21	

검사의 결정전 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요 애로사항은 검사의 조사인식 부족이 9.5%로 높았다.

표 4-141 소년범 조사 수행의 애로사항 - 검사의 결정전조사

애로사항	빈도	백분율(%)
모름/무응답	15	71.4
검사의 조사인식 부족	2	9.5
업무량이 많아서	1	4.8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사건수의 변화	1	4.8
대상자의 신원확보	1	4.8
현장조사가 미흡해서	1	4.8
없음	1	4.8
합계	21	

분류심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요 애로사항은 업무량이 많아서 19.0%, 의뢰건수가 많아서 9.5%, 조사시간이 부족해서 14.3% 등 업무량 관련 사항들이 높았다.

표 4-142 소년범 조사 수행의 애로사항 - 분류심사

애로사항	빈도	백분율(%)
업무량이 많아서	4	19.0
조사시간이 부족해서	3	14.3
의뢰건수가 많아서	2	9.5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사건수의 변화	1	4.8
법원공소사실등 서류협조가 미흡	1	4.8
진술에 의존해야 되어서	1	4.8
현장조사가 미흡해서	1	4.8
피해자의 진술확보	1	4.8
합계	21	

상담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요 애로사항은 업무량과 관련된 사항들이 다수 제시되었다.

표 4-143 소년범 조사 수행의 애로사항 - 상담조사

애로사항	빈도	백분율(%)
모름/무응답	10	47.6
조사시간이 부족해서	3	14.3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사건수의 변화	1	4.8
실적위주의 조사가 많아서	1	4.8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의뢰했으면	1	4.8
의뢰건수가 많아서	1	4.8
업무량이 많아서	1	4.8
진술에 의존해야 되어서	1	4.8
교육이 재학생 학교 수업과 겹쳐 일정 조정이 어려워서	1	4.8
관찰기간이 짧아서	1	4.8
보호자의 관심이 미흡할 때	1	4.8
관련 자료와 면담만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해서	1	4.8
합계	21	

조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요 애로사항은 업무량이 많음이 42.9%로 가장 높았고, 조사시간 부족이나 수행방식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조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표 4-144 조사직무 관련 애로사항

애로사항	빈도	백분율(%)
업무량이 많아서	9	42.9
모름/무응답	5	23.8
의뢰건수가 많아서	2	9.5
조사의 질이 떨어져서	2	9.5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사건수의 변화	1	4.8
조사관이 부족해서	1	4.8
관련 자료와 면담만으로 재비행을 예측해야 되어서	1	4.8
조사시간이 부족해서	1	4.8

애로사항	빈도	백분율(%)
전문조사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인정과 대우 미흡	1	4.8
비행센터를 조사교육 중심 기관으로 육성	1	4.8
조사 분야를 통합 운영했으면	1	4.8
심층면담이 어려워서	1	4.8
없음	1	4.8
심리기일에 대한 부담감	1	4.8
합계	21	

3. 법원의 소년조사관 대상 설문조사

가. 법원 소년조사관의 일반적 특성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법원 소년조사관은 여자가 12명으로 남자의 5명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명, 50대가 3명이었으며, 연령의 평균은 39.1세였다. 조사관 근무연수는 1년 이하가 3명, 1년 초과 3년 미만 3명, 5년 이상 7년 미만이 4명, 7년 이상이 7명으로 , 근무연수의 평균은 79.5개월이었다. 전 부서 근무가 없다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 부서 근무 경험이 있는 4명의 경우 평균 재직기간은 101개월이었다.

표 4-145 조사관의 일반적 특징

특 성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 편차
성별	남자	5	29.4		
	여자	12	70.6		
	합계	17	100.0		
연령	30대	12	75.0	39.1 (세)	6.76 (세)
	40대	1	8.3		
	50대	3	18.7		
	합계	16	100.0		
조사관 근무연수	1년 이하	3	17.6	79.5 (개월)	77.25 (개월)
	1년 초과~3년 미만	3	17.6		
	3년 이상~5년 미만	0	0.0		
	5년 이상~7년 미만	4	23.5		

특 성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 편차
	7년 이상	7	41.3		
	합계	17	100.0		
전 부서 재직기간	없다	13	76.5	101.0 (개월)	119.21 (개월)
	1년 이하	1	5.9		
	1년 초과~3년 미만	0	0.0		
	3년 이상~6년	2	11.7		
	23년	1	5.9		
	합계	17	100.0		

본 조사에 참여한 소년조사관의 소속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표 4-146 조사관의 소속 기관

기관명	응답자수
서울가정법원	3명
의정부지방법원	1명
인천지방법원	1명
수원지방법원	4명
대전가정지원	2명
대구가정지원	1명
부산가정지원	1명
광주가정지원	2명
전주지방법원	2명
합계	17명

나. 조사관의 업무량

법원소년조사관이 한 달 동안 작성하는 총 조사서 건수는 평균 12.0건이며, 지금까지 작성한 소년보호사건 조사보고서 건수는 평균 187건이며, 한 달 동안 적당한 조사서 건수는 평균 11.9건이었다. 소년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8시간 이하가 7건, 1일이 5건, 2일이 5건이었다.

표 4-147 소년조사관의 업무량

부 서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 편차
한 달 동안 소년범 조사서 작성 건수	5건 이하	6	35.3	12.0	10.18
	6건~10건 이하	5	29.4		
	11건 이상	6	35.3		
	합계	17	100.0		
소년보호사건 조사보고서 작성 건수	100건 이하	8	47.0	187.3	169.08
	101건~499건	5	29.5		
	500건~1000건	4	23.5		
	합계	17	100.0		
한 달 동안 적당한 조사 건수	5건 이하	4	23.5	11.9	6.64
	6건~10건 이하	4	23.5		
	11건~20건 이하	7	41.2		
	21건 이상	2	11.8		
	합계	17	100.0		
조사서 작성 시간	8시간 이하	7	41.2	-	-
	1일	5	29.4		
	2일	5	29.4		
	합계	17	100.0		

다.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1) 소년조사제도에서 문제 사항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서, 조사에 따른 개별처우 프로그램의 부족이 3.59점, 조사전문인력의 부족이 3.47점, 소년범 전문 조사관 부재가 3.41점으로 높았다.

조사에 따른 개별처우 프로그램의 부족에서는 매우 문제있음이 64.7%, 약간 문제있는 편임이 29.4%로 94.1%는 문제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조사전문인력의 부족에서는 매우 문제있음이 70.6%, 약간 문제있는 편임이 5.9%로 76.1%가 문제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소년범 전문 조사관 부재에서는 매우 문제있음이 52.9%, 약간 문제있는 편임이 35.3%로 88.2%가 문제있다고 인식하였다.

표 4-148 소년조사제도의 문제 사항 인식

사 항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편차
조사전문인력의 부족	별로 문제되지 않음	4	23.5	3.47	0.87
	약간 문제있는 편임	1	5.9		
	매우 문제있음	12	70.6		
	합계	17	100.0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지원 존재	전혀 문제되지 않음	3	17.6	3.00	1.22
	별로 문제되지 않음	3	17.6		
	약간 문제있는 편임	2	11.8		
	매우 문제있음	9	52.9		
	합계	17	100.0		
조사담담 직원에 대한 재교육 및 교육시간 부족	별로 문제되지 않음	3	17.6	3.00	0.61
	약간 문제있는 편임	11	64.7		
	매우 문제있음	3	17.6		
	합계	17	100.0		
전문가 자원봉사자의 미활용	전혀 문제되지 않음	1	5.9	2.47	0.72
	별로 문제되지 않음	8	47.1		
	약간 문제있는 편임	7	41.2		
	매우 문제있음	1	5.9		
	합계	17	100.0		
범죄유형별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 부재	전혀 문제되지 않음	1	5.9	2.53	0.87
	별로 문제되지 않음	9	52.9		
	약간 문제있는 편임	4	23.5		
	매우 문제있음	3	17.6		
	합계	17	100.0		
형사사법단계별 조사내용의 중복	별로 문제되지 않음	4	23.5	2.82	0.53
	약간 문제있는 편임	12	70.6		
	매우 문제있음	1	5.9		
	합계	17	100.0		
범죄유형에 대한 조사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전혀 문제되지 않음	1	5.9	2.41	0.80
	별로 문제되지 않음	10	58.8		
	약간 문제있는 편임	4	23.5		
	매우 문제있음	2	11.8		
	합계	17	100.0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 담당	전혀 문제되지 않음	3	17.6	2.41	1.00
	별로 문제되지 않음	7	41.2		
	약간 문제있는 편임	4	23.5		
	매우 문제있음	3	17.6		
	합계	17	100.0		

사 항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편차
조사기관의 역할중복(조사유형별 역할분장 부재)	전혀 문제되지 않음	1	5.9	2.47	0.80
	별로 문제되지 않음	9	52.9		
	약간 문제있는 편임	5	29.4		
	매우 문제있음	2	11.8		
	합계	17	100.0		
소년범 전문 조사관 부재	별로 문제되지 않음	2	11.8	3.41	0.71
	약간 문제있는 편임	6	35.3		
	매우 문제있음	9	52.9		
	합계	17	100.0		
조사기관간의 연계성 부족 (조사기관간 정보 미공유)	전혀 문제되지 않음	1	5.9	2.88	0.70
	별로 문제되지 않음	2	11.8		
	약간 문제있는 편임	12	70.6		
	매우 문제있음	2	11.8		
	합계	17	100.0		
조사대상 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전혀 문제되지 않음	1	5.9	2.06	0.43
	별로 문제되지 않음	14	82.4		
	약간 문제있는 편임	2	11.8		
	합계	17	100.0		
조사 대상 소년에게 진술거부권 미고지	전혀 문제되지 않음	7	41.2	1.65	0.61
	별로 문제되지 않음	9	52.9		
	약간 문제있는 편임	1	5.9		
	합계	17	100.0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	별로 문제되지 않음	4	23.5	3.00	0.71
	약간 문제있는 편임	9	52.9		
	매우 문제있음	4	23.5		
	합계	17	100.0		
조사에 따른 개별처우 프로그램의 부족	별로 문제되지 않음	1	5.9	3.59	0.62
	약간 문제있는 편임	5	29.4		
	매우 문제있음	11	64.7		
	합계	17	100.0		
소년조사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식 부재	별로 문제되지 않음	3	17.6	3.18	0.73
	약간 문제있는 편임	8	47.1		
	매우 문제있음	6	35.3		
	합계	17	100.0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이나 판결결과의 미통보	전혀 문제되지 않음	2	11.8	2.00	0.50
	별로 문제되지 않음	13	76.5		
	약간 문제있는 편임	2	11.8		
	합계	17	100.0		

사 항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편차
중요하지 않은 사건의 의뢰 (조사의뢰 실적 때문)	전혀 문제되지 않음	4	23.5	1.82	0.53
	별로 문제되지 않음	12	70.6		
	약간 문제있는 편임	1	5.9		
	합계	17	100.0		
법적인 강제력 부재	별로 문제되지 않음	9	52.9	2.59	0.71
	약간 문제있는 편임	6	35.3		
	매우 문제있음	2	11.8		
	합계	17	100.0		

2) 소년조사제도에서 개선 과제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의 1순위로 조사 전문 인력의 부족, 조사담당 직원에 대한 재교육 및 교육시간 부족과 조사에 따른 개별처우 프로그램의 부족이 각각 29.4%로 가장 높았고, 1+2+3순위 복수응답에서는 조사 전문 인력의 부족이 64.7%로 가장 높았고, 소년범 전문 조사관 부재가 52.9%로 두 번째로 높았다.

표 4-149 소년조사제도에서 개선 과제

개선해야할 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1+2+3순위	
	명	%	명	%	명	%	명	%
조사전문인력의 부족	5	29.4	6	35.3			11	64.7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 존재			2	11.8	2	12.5	4	23.5
조사담담 직원에 대한 재교육 및 교육시간 부족	3	17.6	2	11.8	2	12.5	7	41.2
전문가 자원봉사자의 미활용			1	5.9			1	5.9
범죄유형별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 부재	1	5.9					1	5.9
형사사법단계별 조사내용의 중복					1	6.3	1	5.9
범죄유형에 대한 조사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12.5	2	11.8
조사기관의 역할중복(조사유형별 역할분장 부재)					1	6.3	1	5.9
소년범 전문 조사관 부재	4	23.5	5	29.4			9	52.9
조사기관간의 연계성 부족(조사기관간 정보 미공유)	1	5.9	1	5.9			2	11.8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					2	12.5	2	11.8
조사에 따른 개별처우 프로그램의 부족	3	17.6			4	25.0	7	41.2

개선해야할 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1+2+3순위	
	명	%	명	%	명	%	명	%
소년조사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식 부재					2	12.5	2	11.8
합계	17	100	17	100	16	100	17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이유는, 전문인력 부족과 업무과중 등을 지적하고 있었다.

표 4-150 우선 개선해야 하는 이유

이유	빈도	백분율 (%)
전문인력 부족으로 사건조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3	17.6
업무과중으로 인해 교육연구 시간 부족해서	1	5.9
교육적 차원의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1	5.9
프로그램 부족으로 복지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1	5.9
소년사건은 심리적,물리적 환경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므로	1	5.9
심층조사 후에도 결과적으로 해줄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므로	1	5.9
조사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1	5.9
장기간 동일근무 수행으로 인한 매너리즘경계위해	1	5.9
새로운 정책에 맞는 업무 추진 위해 전문교육이 필요해서	1	5.9
표준화된 평가 도구는 효율적 조사에 도움되므로	1	5.9
조사관의 정확한 조사는 능력을 나타내므로	1	5.9
모름/거절	7	

라. 소년보호사건 조사제도에 대한 인식

1) 소년보호사건 조사보고서 작성 건수

지금까지 조사보고서를 건수는 100건 이하가 47.0%, 101건에서 499건 이하가 29.5%, 500건에서 1000건 이하가 23.5%로 평균 187건이었다.

표 4-151 조사보고서 작성 건수

건 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소년보호사건 조사보고서 작성 건수	100건 이하	8	47.0	187.3	169.08
	101건~499건	5	29.5		
	500건~1000건	4	23.5		
	합계	17	100.0		

2) 주로 의뢰받은 조사대상

주로 의뢰받은 조사대상은 초범이 52.9%, 제한없다가 47.1%였다.

표 4-152 주로 의뢰받은 조사대상

의뢰대상	빈도	백분율 (%)
초범	9	52.9
제한없다	8	47.1
합계	17	100.0

3) 판사가 소년보호사건 조사보고서를 의뢰하지 않는 이유

판사가 조사보고서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는 회보기간이 길기 때문이 29.4%로 가장 높았고, 판사가 소년의 인성이나 환경보다는 죄질로 판단하기 때문과 조사관 인원이 부족해서가 각각 17.6%로 높았다.

표 4-153 조사보고서를 의뢰하지 않는 이유

이 유	빈도	백분율 (%)
회보기간이 길기 때문에	5	29.4
검사가 소년의 인성이나 환경보다는 죄질로 판단하기 때문에	3	17.6
조사관 인원이 부족해서	3	17.6
임의규정으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2	11.8
검사가 조사의 효용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1	5.9
내용이 중복되어서	1	5.9

이 유	빈도	백분율 (%)
불필요한 사건이라서	1	5.9
조사관 전문성 부족해서	1	5.9
무응답	1	5.9
합계	17	

4) 조사보고서의 필요성, 판사의 활용성, 조사관의 전문성 인식

조사보고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 47.1%, 필요하다 52.9%로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판사가 조사보고서를 활용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가 23.5%,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가 70.6%로 94.1%가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조사관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매우 높다 5.9%, 높은 편이다 76.5%로 82.4%가 높다고 생각하였다. 조사관들은 조사보고서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으나 조사관의 전문성은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4-154 조사보고서의 필요성, 활용성, 전문성 인식

평가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 편차
조사보고서의 필요성	필요하다	8	47.1	4.52	0.51
	매우 필요하다	9	52.9		
	합계	17	100.0		
조사보고서의 활용성	그저 그렇다	1	5.9	4.17	0.52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	12	70.6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4	23.5		
	합계	17	100.0		
조사관의 전문성	보통이다	3	17.6	3.88	0.48
	높은 편이다	13	76.5		
	매우 높다	1	5.9		
	합계	17	100.0		

조사관의 전문성이 낮은 경우의 해결 방안으로는 전문교육 강화, 일반조사관의 순환보직제 개선, 조사관 채용시 경력이나 연령 참조, 형사재판 참여 경험 등을 제시하였다.

표 4-155 조사관 전문성이 낮은 경우 해결방안

방 안	빈도	백분율(%)
전문교육강화	2	11.8
일반조사관의 순환보직제 개선	1	5.9
조사관 채용시 경력 참조 필요	1	5.9
조사관 채용시 연령 참조 필요	1	5.9
요구사항 파악하기 위해 상호 의사소통 필요	1	5.9
형사재판에 대한 참여 경험 필요	1	5.9
모름/무응답	11	64.7

5) 조사보고서에서 조사내용의 중요성

조사보고서에서 조사내용의 중요도는,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이 4점 만점에 3.88점으로 가장 높았고, 생활환경은 3.76점으로 두번째로 높았다.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함이 88.2%였으며, 생활환경에서는 매우 중요함이 76.5%로 높았다.

표 4-156 조사보고서에서 조사내용의 중요성

조사 내용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편차
범죄관련사항	중요하지 않은 편임	1	5.9	3.06	0.43
	중요한 편임	14	82.4		
	매우 중요함	2	11.8		
	합계	17	100.0		
범죄 경력	중요하지 않은 편임	1	5.9	3.06	0.43
	중요한 편임	14	82.4		
	매우 중요함	2	11.8		
	합계	17	100.0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중요한 편임	4	23.5	3.76	0.44
	매우 중요함	13	76.5		
	합계	17	100.0		
성장과정	중요한 편임	6	35.3	3.65	0.49
	매우 중요함	11	64.7		
	합계	17	100.0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중요한 편임	7	41.2	3.59	0.51
	매우 중요함	10	58.8		

조사 내용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편차
	합계	17	100.0		
학력 및 학교생활	중요한 편임	11	64.7	3.35	0.49
	매우 중요함	6	35.3		
	합계	17	100.0		
교우관계	중요한 편임	8	47.1	3.53	0.51
	매우 중요함	9	52.9		
	합계	17	100.0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중요한 편임	2	11.8	3.88	0.33
	매우 중요함	15	88.2		
	합계	17	100.0		
진술태도	중요한 편임	11	64.7	3.35	0.49
	매우 중요함	6	35.3		
	합계	17	100.0		
향후 생활계획	중요한 편임	12	70.6	3.29	0.47
	매우 중요함	5	29.4		
	합계	17	100.0		
조사자의 의견	중요한 편임	8	47.1	3.53	0.51
	매우 중요함	9	52.9		
	합계	17	100.0		

6) 조사자 의견 제안시 비중 두는 요인

조사자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요인으로 1순위에서는 생활환경이 35.3%로 가장 높았고,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은 29.4%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1+2순위에서는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이 76.5%로 가장 높았다.

표 4-157 조사자 의견 제안시 비중 두는 요인

요 인	1순위		2순위		1+2순위	
	명	%	명	%	명	%
범죄관련사항	1	5.9			1	5.9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6	35.3	3	17.6	9	52.9
성장과정	2	11.8	1	5.9	3	17.6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1	5.9			1	5.9
학력 및 학교생활	1	5.9			1	5.9

요 인	1순위		2순위		1+2순위	
	명	%	명	%	명	%
교우관계			1	5.9	1	5.9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5	29.4	8	47.1	13	76.5
향후 생활계획			1	5.9	1	5.9
조사자의 의견	1	5.9	1	5.9	2	11.8
최근생활양상			2	11.8	2	11.8
합계	17	100.0	17	100.0	17	200.0

조사자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이유는 비행의 동기 파악에 도움 되고, 범죄와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 등 이었다.

표 4-158 조사자 의견 제안시 비중 두는 이유

조사내용	빈도	백분율 (%)
비행의 동기 파악에 도움되므로	3	17.6
생활 환경이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2	11.8
청소년은 보호력에 영향을 받으므로	2	11.8
보호자의 관심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2	11.8
가족 관계가 범죄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1	5.9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판단은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1	5.9
생활환경이 언행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1	5.9
생활여건이 재비행의 요인이 되므로	1	5.9
환경이 재비행 방지에 중요하므로	1	5.9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재비행에 영향미치므로	1	5.9
학교 부적응이 범죄로 이어지므로	1	5.9
현 교우상태가 비행 연루성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1	5.9
심리상태가 지비행 예측에 중요하므로	1	5.9
현 생활태도가 개선의 흐름을 알수 있어서	1	5.9
성장과정이 현상태의 중요 단서가 되므로	1	5.9
모름/무응답	3	17.6
합계	17	

7) 재범위험성 의견 제안시 비중 두는 요인

재범위험성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요인으로 1순위에서는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이 58.8%로 가장 높았고, 1+2순위에서도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이 82.4%로 가장 높았다.

표 4-159 재범 위험성 의견 제안시 비중 두는 요인

요 인	1순위		2순위		1+2순위	
	명	%	명	%	명	%
범죄 경력	1	5.9	4	23.5	5	29.4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4	23.5	2	11.8	6	35.3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1	5.9			1	5.9
교우관계			4	23.5	4	23.5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10	58.8	4	23.5	14	82.4
진술태도			1	5.9	1	5.9
향후 생활계획			2	11.8	2	11.8
최근생활양상	1	5.9			1	5.9
합계	17	100.0	17	100.0	17	200.0

재범위험성 의견 제안 시 비중을 두는 이유는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재비행에 영향 미치므로 23.5%, 청소년은 보호력에 영향을 받으므로 17.6% 등이 제시되었다.

표 4-160 재범위험성 의견 제안시 비중 두는 이유

조사내용	빈도	백분율(%)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재비행에 영향미치므로	4	23.5
청소년은 보호력에 영향을 받으므로	3	17.6
생활여건이 재비행의 요인이 되므로	2	11.8
환경이 재비행 방지에 중요하므로	2	11.8
교우관계가 재 비행에 영향미치므로	2	11.8
반복비행 경향성 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1	5.9
범죄경력으로 비행의 양상이 파악되므로	1	5.9
보호자의 관심/보호여부에 따라 다른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1	5.9
보호자의 관심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1	5.9

조사내용	빈도	백분율(%)
보호자의 무관심은 소년의 감호부재상태를 초래하므로	1	5.9
현 교우상태가 비행 연루성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1	5.9
반성의 정도가 재비행 예측이 가능 하므로	1	5.9
현 생활태도가 개선의 흐름을 알수 있어서	1	5.9
모름/무응답	3	17.6
합계	17	

8) 조사자 의견 제안시 소년에게 유리/불리한 요인

소년에게 유리한 요인은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이 52.9%로 가장 높고, 진술태도가 35.3%로 두 번째로 높고, 불리한 요인은 진술 태도 52.9%, 교우관계 및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이 각각 35.3%로 높았다.

표 4-161 소년에게 유리/불리한 요인

이 유	유리한 요인		불리한 요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죄관련사항	2	11.8	1	5.9
범죄 경력	2	11.8	5	29.4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3	17.6	2	11.8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0	0.0	1	5.9
성장과정	2	11.8	0	0.0
학력 및 학교생활	5	29.4	2	11.8
교우관계	0	0.0	6	35.3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9	52.9	6	35.3
진술태도	6	35.3	9	52.9
향후 생활계획	5	29.4	2	11.8
최근생활양상	3	17.6	1	5.9
피해자와 합의 여부	2	11.8	2	11.8
모름	2	11.8	3	17.6
합계	17		17	

9) 소년보호사건 조사보고서의 작성양식

조사보고서 작성양식에 대해서 매우 만족은 7.7%, 만족하는 편은 84.6%로 응

답자의 92.3%는 만족하고 있었다. 불만족하는 경우 사건 유형별로 다양한 보고서 양식 개발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4-162 조사보고서 작성 양식 만족도

만족도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 편차
상담조사서의 작성양식	매우만족	1	5.9	2.05	0.42
	만족하는 편	14	82.4		
	만족하지 않는편	2	11.8		
	합계	17	100.0		

10) 조사보고서 작성의 어려움 및 제도 전반적 개선과제

조사보고서 작성의 어려움으로 1순위에서는 진술에 크게 의존하나 진술의 진실성 판단이 쉽지 않은 점이 35.3%로 가장 높았고, 1+2순위에서도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표 4-163 조사보고서 작성의 어려움

어려움	1순위		2순위		1+2순위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회보기간이 너무 짧아 소년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한 점	3	17.6	2	14.3	5	29.4
피해자 면담, 접근이 어려운 점	3	17.6	2	14.3	5	29.4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가 없는 점			2	14.3	2	11.8
진술에 크게 의존하나 진술의 진실성 판단이 쉽지 않은 점	6	35.3	3	21.4	9	52.9
의견제시 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점	1	5.9	3	21.4	4	23.5
인력부족	3	17.6			3	17.6
부모의 인식부족			1	7.1	1	5.9
다른업무와중복			1	7.1	1	5.9
소년의 특성에 적절한 보호처분이 다양하지 않은 점	1	5.9			1	5.9
합계	17	100.0	14	100.0	17	

소년보호사건 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할 때,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전문조사관의 확충이 29.4%로 가장 높았다.

표 4-164 소년보호사건 조사제도 전반적 개선과제

개선과제	빈도	백분율(%)
전문조사관의 확충	5	29.4
절차 간소화로 조기개입 필요	1	5.9
부모에게 부과할수 있는 처분 필요	1	5.9
조사된 내용을 기반으로 가시화 될수 있는 처분 연계	1	5.9
소년상황에 맞는 법정제도 필요	1	5.9
소년상황에 맞는 적절한 접근 방향제시	1	5.9
소년 비행 개선을 위한 선행조치 가능한 환경마련	1	5.9
조사절차에서도 소년의 보호를 위한 법원의 개입요구	1	5.9
충분한 인력 확보	1	5.9
지속적인 교육제공	1	5.9
충분한 조사기간 확보	1	5.9
가정방문등 현장 접근적인 사실 파악 필요	1	5.9
송치전 충분한 조사 필요	1	5.9
모름/거절	5	29.4
합계	17	

소년보호사건 조사보고서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건은 제한없다가 70.6%로 가장 높고, 유용한 조사대상은 초범이 52.9%, 제한없다가 41.2%였다.

표 4-165 소년보호사건 조사보고서의 유용한 사건 및 조사 대상

유용성		빈도	백분율(%)
유용한 사건	폭행/상해(폭처법위반 등 폭력범죄)	3	17.6
	절도범죄	2	11.8
	성폭력범죄	4	23.5
	풍속범죄(도박, 윤락행위 등)	1	5.9
	제한 없다	12	70.6
	유해화학물 흡입관련 범죄	1	5.9
	합계	17	135.3
유용한 조사대상	초범	9	52.9
	재범	1	5.9
	제한없다	7	41.2
	합계	17	100.0

11) 조사보고서 작성 시 활용자료

조사보고서를 의뢰받을 때 검사의 결정전조사서가 첨부되는 경우는 58.8%로 나타났으며, 첨부된 경우 의뢰건수의 약 19%가 첨부되고 있었다.

표 4-166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첨부 여부

첨부여부		빈도	백분율(%)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첨부	그렇다	10	58.8
	아니다	7	41.2
	합계	17	100.0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자료는 학생생활기록부가 64.7%로 가장 높고, 학교 교사 면담자료 29.4%였다.

표 4-167 상담조사에 활용하는 자료

활용 자료	빈도	백분율(%)
학생생활기록부	11	64.7
학교 교사 면담자료	5	29.4
소년 진술서	3	17.6
피해자 진술	3	17.6
사건기록	3	17.6
심리검사	3	17.6
모름/거절	3	17.6
결정전 조사서	2	11.8
전문가 진단의견서	2	11.8
상담기관 면담자료	2	11.8
보호자 진술서	1	5.9
수사기관의 의견서	1	5.9
범행 CCTV	1	5.9
목격자 진술서	1	5.9
피해소년측 탄원서	1	5.9
피해소년의 모습	1	5.9
조사관 앞에서의 소년모습	1	5.9
친구 전화 통화	1	5.9
집행조사시 출장을 통한 관계자 면접조사	1	5.9

활용 자료	빈도	백분율(%)
법원단계 이전의 사건 기록	1	5.9
가족관계 증명서	1	5.9
청소년 관력 서적	1	5.9
인터넷	1	5.9
실무제도	1	5.9
편람	1	5.9
전과사항	1	5.9
문장완성검사	1	5.9
피의자 심문조서	1	5.9
소년 환경 조사	1	5.9
소년 및 보호자 면담	1	5.9
소년에게 과제 부과	1	5.9
합계	17	

12) 소년범 조사 수행시 애로사항

소년범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요 애로사항은 조사관 부족이 23.5%로 가장 높았다.

표 4-168 소년범 조사 수행의 애로사항 - 전반적

애로사항	빈도	백분율(%)
조사관이 부족해서	4	23.5
배당사건수가 많아서	1	5.9
업무량이 많아서	1	5.9
연락처가 불분명해서 소환이 잘 안될때	1	5.9
임의로 출석하지 않을때	1	5.9
처분의 한계가 있어서	1	5.9
재판장과 조사관의 시각차이	1	5.9
다양한 부가처분(지역사회 전문가 연계) 필요	1	5.9
조사 후 의견제시 할 수 있는 처분이 제한적	1	5.9
새로운 제도 도입시 사전교육 필요	1	5.9
피해소년측에서 과장진술을 할때	1	5.9
소년의 비행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접근방법 제한	1	5.9
개인의견을 말했는데 어느 한쪽편을 든다는 말을 들을때	1	5.9
모름/거절	5	29.4
합계	17	

소년보호사건 조사보고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요 애로사항은 보고서 양식의 간소화 필요, 회기기간 짧음 및 다른 업무와 병행 등이 제시되었다.

표 4-169 소년보호사건 조사보고서 수행의 애로사항

애로사항	빈도	백분율(%)
보고서 양식의 간소화 필요	2	11.8
빠른시일안에 작성해야 되어서	1	5.9
다른 업무와 병행해야 되어서	1	5.9
처분의견의 선택 범위가 좁고 획일적이라서	1	5.9
보호관찰소 결정전조사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1	5.9
현장조사, 환경조정을 위한 접근과 보고서 반영이 어려워	1	5.9
가해소년과 피해소년의 진술이 서로 다른경우	1	5.9
소년이 조사에 비협조적 일때	1	5.9
모름/거절	8	47.1
합계	17	100.0

조사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요 애로사항은 조사관의 부족, 전문 소년조사관 부족, 업무량 많음 등이 제시되었다.

표 4-170 조사직무 관련 애로사항

애로사항	빈도	백분율(%)
조사관이 부족해서	3	17.6
전문 소년 조사관 부족해서	2	11.8
업무량이 많아서	2	11.8
다른 업무와 병행해야 되어서	1	5.9
조사업무 중복	1	5.9
사건당사자의 조사관에 대한 무례한 태도	1	5.9
보호자의 조사관에 대한 무례한 태도	1	5.9
조사후에도 적절한 처분연계가 어려운경우	1	5.9
전문조사관에 대한 인식부족	1	5.9
개인의견을 말했는데 어느 한쪽편을 든다는 말을 들을 때	1	5.9
모름/거절	7	41.2
합계	17	

4.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조사관 의견 종합

가. 소년조사제도에서 문제 사항

다음은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관 204명 전체를 대상으로 소년범에 대한 조사 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다음의 사항들이 얼마나 문제라고 인식하는 지를 분석하였다(표4-170-1〉 참조).

먼저 조사관들은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가 존재한다'는 사항이 문제 있다는 인식이 4점 만점에 3.34점으로 제시된 19개의 사항 중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는 '조사 전문 인력의 부족'이 3.29점,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이 3.27점,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 담당'이 2.98점, '조사담당 직원에 대한 재교육 및 교육시간 부족'이 2.96점으로 문제 사항 상위 5개에 포함되었다.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가 존재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문제있음이 50.0% 약간 문제있는 편임이 38.2%로 88.2%가 문제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에 대해서는 매우 문제있음이 42.2%, 약간 문제있는 편임이 44.1%로 86.3%가 문제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4-170-1 소년조사제도의 문제 사항 인식

사 항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편차
조사전문인력의 부족	전혀 문제되지 않음	3	1.5	3.29	0.74
	별로 문제되지 않음	26	12.7		
	약간 문제있는 편임	84	41.2		
	매우 문제있음	91	44.6		
	합계	204	100.0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 존재	전혀 문제되지 않음	9	4.4	3.34	0.80
	별로 문제되지 않음	15	7.4		
	약간 문제있는 편임	78	38.2		
	매우 문제있음	102	50.0		
	합계	204	100.0		
조사담당 직원에 대한 재교육 및 교육시간 부족	전혀 문제되지 않음	3	1.5	2.96	0.64
	별로 문제되지 않음	37	18.1		

사 항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편차
	약간 문제있는 편임	130	63.7		
	매우 문제있음	34	16.7		
	합계	204	100.0		
전문가 자원봉사자의 미활용	전혀 문제되지 않음	34	16.7	2.18	0.80
	별로 문제되지 않음	115	56.4		
	약간 문제있는 편임	39	19.1		
	매우 문제있음	16	7.8		
	합계	204	100.0		
범죄유형별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 부재	전혀 문제되지 않음	14	6.9	2.47	0.76
	별로 문제되지 않음	100	49.0		
	약간 문제있는 편임	71	34.8		
	매우 문제있음	19	9.3		
	합계	204	100.0		
형사사법단계별 조사내용의 중복	전혀 문제되지 않음	8	3.9	2.67	0.72
	별로 문제되지 않음	73	35.8		
	약간 문제있는 편임	101	49.5		
	매우 문제있음	22	10.8		
	합계	204	100.0		
범죄유형에 대한 조사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전혀 문제되지 않음	11	5.4	2.46	0.68
	별로 문제되지 않음	99	48.5		
	약간 문제있는 편임	83	40.7		
	매우 문제있음	11	5.4		
	합계	204	100.0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 담당	전혀 문제되지 않음	9	4.4	2.98	0.83
	별로 문제되지 않음	45	22.1		
	약간 문제있는 편임	92	45.1		
	매우 문제있음	58	28.4		
	합계	204	100.0		
조사기관의 역할중복 (조사유형별 역할분장 부재)	전혀 문제되지 않음	6	2.9	2.67	0.75
	별로 문제되지 않음	84	41.2		
	약간 문제있는 편임	85	41.7		
	매우 문제있음	29	14.2		
	합계	204	100.0		
소년범 전문 조사관 부재	전혀 문제되지 않음	10	4.9	2.63	0.75
	별로 문제되지 않음	78	38.2		
	약간 문제있는 편임	93	45.6		
	매우 문제있음	23	11.3		
	합계	204	100.0		

사 항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편차
조사기관간의 연계성 부족 (조사기관간 정보 미공유)	전혀 문제되지 않음	16	7.8	2.40	0.71
	별로 문제되지 않음	102	50.0		
	약간 문제있는 편임	75	36.8		
	매우 문제있음	11	5.4		
	합계	204	100.0		
조사대상 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전혀 문제되지 않음	50	24.5	1.90	0.62
	별로 문제되지 않음	124	60.8		
	약간 문제있는 편임	30	14.7		
	매우 문제있음				
	합계	204	100.0		
조사 대상 소년에게 진술거부권 미고지	전혀 문제되지 않음	79	38.7	1.81	0.78
	별로 문제되지 않음	90	44.1		
	약간 문제있는 편임	29	14.2		
	매우 문제있음	6	2.9		
	합계	204	100.0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	전혀 문제되지 않음	3	1.5	3.27	0.73
	별로 문제되지 않음	25	12.3		
	약간 문제있는 편임	90	44.1		
	매우 문제있음	86	42.2		
	합계	204	100.0		
조사에 따른 개별처우 프로그램의 부족	전혀 문제되지 않음	6	2.9	2.80	0.73
	별로 문제되지 않음	61	29.9		
	약간 문제있는 편임	105	51.5		
	매우 문제있음	32	15.7		
	합계	204	100.0		
소년조사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식 부재	전혀 문제되지 않음	12	5.9	2.62	0.81
	별로 문제되지 않음	83	40.7		
	약간 문제있는 편임	79	38.7		
	매우 문제있음	30	14.7		
	합계	204	100.0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이나 판결결과의 미통보	전혀 문제되지 않음	18	8.8	2.50	0.78
	별로 문제되지 않음	84	41.2		
	약간 문제있는 편임	84	41.2		
	매우 문제있음	18	8.8		
	합계	204	100.0		
중요하지 않은 사건의 의뢰(조사의뢰 실적 때문)	전혀 문제되지 않음	16	7.8	2.79	0.88
	별로 문제되지 않음	56	27.5		
	약간 문제있는 편임	86	42.2		

사 항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편차
	매우 문제있음	46	22.5		
	합계	204	100.0		
법적인 강제력 부재	전혀 문제되지 않음	12	5.9	2.52	0.75
	별로 문제되지 않음	93	45.6		
	약간 문제있는 편임	79	38.7		
	매우 문제있음	20	9.8		
	합계	204	100.0		

나. 소년조사제도에서 개선 과제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표4-170-2〉 참조). 개선과제 1순위로 응답자들의 34.3%는 조사 전문 인력 부족이라고 답했으며, 16.7%는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이라고, 11.8%는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 존재라고 응답하였다. 1+2+3순위에서는 응답자들의 55.4%는 조사 전문 인력의 부족이라고 답했으며, 47.1%는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이라고, 37.3%는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 존재라고, 28.9%는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 담당과 조사담당 직원에 대한 재교육 및 교육시간 부족이라고, 19.6%는 중요하지 않은 사건의 의뢰(조사의뢰 실적 때문)라고 응답하였다.

표 4-170-2 소년조사제도에서 개선 과제

개선해야할 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1+2+3순위	
	명	%	명	%	명	%	명	%
조사전문인력의 부족	70	34.3	26	12.9	17	8.7	113	55.4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 존재	24	11.8	31	15.3	21	10.7	76	37.3
조사담당 직원에 대한 재교육 및 교육시간 부족	10	4.9	22	10.9	27	13.8	59	28.9
전문가 자원봉사자의 미활용	4	2.0	5	2.5	5	2.6	14	6.9
범죄유형별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 부재	6	2.9	5	2.5	7	3.6	18	8.8
형사사법단계별 조사내용의 중복			6	3.0	5	2.6	11	5.4
범죄유형에 대한 조사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1	0.5	4	2.0	3	1.5	8	3.9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 담당	11	5.4	31	15.3	17	8.7	59	28.9
조사기관의 역할중복(조사유형별 역할분장 부재)	1	0.5	7	3.5	4	2.0	12	5.9
소년범 전문 조사관 부재	9	4.4	8	4.0	5	2.6	22	10.8

개선해야할 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1+2+3순위	
	명	%	명	%	명	%	명	%
조사기관간의 연계성 부족(조사기관간 정보 미공유)	1	0.5	2	1.0	2	1.0	5	2.5
조사대상 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1	0.5					1	0.5
조사대상 소년에게 진술거부권 미고지			2	1.0			2	1.0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	34	16.7	29	14.4	33	16.8	96	47.1
조사에 따른 개별처우 프로그램의 부족	7	3.4	5	2.5	12	6.1	24	11.8
소년조사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식 부재	2	1.0	4	2.0	9	4.6	15	7.4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이나 판결결과의 미통보			2	1.0	4	2.0	6	2.9
· 중요하지 않은 사건의 의뢰(조사의뢰 실적 때문)	13	6.4	10	5.0	17	8.7	40	19.6
법적인 강제력 부재	6	2.9	2	1.0	8	4.1	16	7.8
조사의뢰건수 불규칙			1	0.5			1	0.5
조사환경 미비	3	1.5					3	1.5
없다	1	0.5					1	0.5
합계	204	100.0	202	100.0	196	100.0	204	

제2절 조사의뢰자의 소년조사제도의 인식

본 연구에서는 소년조사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를 의뢰하는 판사와 검사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전국의 검찰청에 근무하는 소년범 담당검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판사는 소년부 판사와 형사소년 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다만, 판사의 경우에는 10월 말 현재 설문지 수거가 미흡하여 앞에서 기술한 심층면접에서 나온 의견을 검사의 의견 뒤에 덧 붙였다.

1. 검사

가. 조사 대상 검사의 일반적 특성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검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여자가 14명, 남자가 40명으로 남자가 다수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명, 30대가 41명, 40대가 8명이었으며, 연령의 평균은 35.3세였다. 검사로서의 근무연수는 1년 이하가 9명, 1년 초과 3년 미만 12명, 3년 이상 5년 미만이 17명, 5년 이상 7년

미만이 8명, 7년 이상이 8명이었으며, 근무연수의 평균은 48.8개월이었다. 소년 담당 재직기간은 없다가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이하 13명, 1년 초과 3년 미만 3명, 3년 이상 5년 미만 6명이었다.

표 4-171 검사의 일반적 특징

특 성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성별	남자	40	74.1		
	여자	14	25.9		
	합계	54	100.0		
연령	20대	5	9.3	35.3	4.04
	30대	41	75.9		
	40대	8	14.8		
	합계	54	100.0		
검사 근무연수	1년 이하	9	16.7	48.8 (개월)	31.50 (개월)
	1년 초과~3년 미만	12	22.2		
	3년 이상~5년 미만	17	31.5		
	5년 이상~7년 미만	8	14.8		
	7년 이상	8	14.8		
	합계	54	100.0		
소년 담당 재직기간	없다	30	57.7	12.5 (개월)	12.71 (개월)
	1년 이하	13	25.0		
	1년 초과~3년 미만	3	5.8		
	3년 이상~5년 미만	6	11.5		
	합계	52	100.0		

이 외에 심층면접에 응한 형사소년판사의 7명의 평균 연령은 43.1세, 소년범 담당 근무연수는 평균 9.3개월, 판사 근무연수는 평균 128.8개월이었다.

소년부 판사의 평균 연령은 41.3세, 소년범 담당 근무연수는 평균 18.9개월, 판사 근무연수는 평균 129.1개월이었다.

본 조사에 참여한 검사의 소속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표 4-172 검사의 소속 기관

기관명	응답자수	기관명	응답자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명	밀양지청	1명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명	부천지청	1명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명	상주지청	1명
의정부지방검찰청	2명	서산지청	1명
수원지방검찰청	1명	속초지청	1명
춘천지방검찰청	2명	순천지청	1명
대전지방검찰청	2명	안양지청	1명
청주지방검찰청	1명	여주지청	1명
대구지방검찰청	2명	영덕지청	1명
부산지방검찰청	2명	영동지청	1명
창원지방검찰청	2명	영월지청	1명
울산지방검찰청	2명	원주지청	1명
광주지방검찰청	2명	의성지청	1명
제주지방검찰청	2명	정읍지청	1명
강릉지청	1명	제천지청	1명
거창지청	1명	진주지청	1명
김천지청	1명	천안지청	1명
남원지청	1명	충주지청	1명
논산지청	1명	통영지청	1명
동부지청	1명	해남지청	1명
마산지청	1명	홍성지청	1명
목포지청	1명	합계	54명

나. 검사의 업무량

검사가 한 달 동안 담당하는 총 사건 수는 평균 174.6건이며, 한 달 동안 소년 담당 사건 수는 평균 14.6건이었다. 검사가 지금까지 의뢰한 결정전조사서 건수는 평균 25건이며, 한 달 동안 의뢰한 결정전조사서 건수는 평균 3.0건이었다. 소년범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은 30분이 38.0%, 1시간이 48.0%로 86%는 1시간 이내였다.

표 4-173 검사의 업무량

부 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한달동안 담당 총 사건수	150건 이하	18	34.6	174.6	30.70
	151건~200건	32	61.5		
	201건~250건	2	3.8		
	합계	52	100.0		
한달동안 소년 담당 사건수	10건 이하	29	54.7	14.6	10.14
	11건~20건	16	30.2		
	21건~30건	7	13.2		
	31건~50건	1	1.9		
	합계	53	100.0		
조사서 의뢰 건수	없다	6	11.1	25.0	43.78
	5건 미만	10	18.5		
	5건~10건 미만	10	18.5		
	10건~20건 미만	9	16.7		
	20건 이상	19	35.2		
	합계	54	100.0		
한달동안 조사서 의뢰 건수	없다	7	13.2	3.0	3.23
	1건	20	37.7		
	2건~5건	17	32.1		
	6건~10건	8	15.1		
	11건 이상	1	1.9		
	합계	53	100.0		
소년범 자료 검토시간	30분	19	38.0		
	1시간	24	48.0		
	2~5시간	6	12.0		
	6시간 이상	1	2.0		
	합계	50	100.0		

형사소년 판사가 한 달 동안 담당하는 총 사건수는 평균 105건이며, 한 달 동안 소년 담당 사건수는 평균 18.4건이었다. 소년부 판사가 한달 동안 담당하는 총 사건수는 평균 185.7건,소년 담당 사건수는 평균 134.3건이었다.

다.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1) 검사의 결정전조사 의뢰

검사가 한 달 동안 의뢰하는 결정전조사서는 없다가 13.2%, 1건이 37.7%, 2건에서 5건이 32.1%, 6건에서 10건이 15.1%, 11건 이상이 1.9%로 평균 3건이었으며, 의뢰 기관은 100% 보호관찰소였다.

표 4-174 한 달 동안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의뢰 건수

부 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한 달 동안 조사서 의뢰 건수	없다	7	13.2	3.0	3.23
	1건	20	37.7		
	2건~5건	17	32.1		
	6건~10건	8	15.1		
	11건 이상	1	1.9		
	합계	53	100.0		

검사의 결정전조사서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는 사안이 경미해서가 50.0%로 가장 높고, 초범이라서가 31.5%로, 사안이 경미하거나 초범인 경우 의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년법원의 판사들은 판결전조사서를 의뢰하는 않는 이유에 대해 '사안이 경미한 경우'나 '사안이 명백하여 형사처벌을 할 경우', '향후 비행가능성이 낮은 경우'라고 응답하였다.

소년부판사들은 소년범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미 경찰이나 형사재판 단계에서 조사가 충분히 된 경우', '사안이 경미하거나 조사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초범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나 과실범 사건' 등으로 초범이나 경미한 경우 및 검찰이나 형사재판에서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라는 응답이 많았다.

표 4-175 검사의 결정전조사서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

사 항	평균(점)	표준 편차
사안이 경미해서	27	50.0
사안이 매우 중해서	7	13.0
처벌 전력 있어서 이전 조사가 이루어진 사건	1	1.9
경찰에서 전반적인 조사를 해와서	3	5.6
타청 관할지역 거주라서	1	1.9
범죄 전력이 적어서	1	1.9
전과가 많아서	5	9.3
동종 전과가 많아 소년부 송치 필요 사건이라서	1	1.9
초범이라서	17	31.5
합의가 되어서	6	11.1
보호자에 의해 재범방지 할수 있어서	3	5.6
처벌여부가 명백해서	2	3.7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어서	1	1.9
우발적 사건이어서	1	1.9
없다	1	1.9
모름/거절	10	18.5
합계	54	

2) 소년조사제도에서 문제 사항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서, 검사는 조사에 따른 개별처우 프로그램의 부족을 4점 만점에 2.93점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았고, 조사 전문 인력의 부족은 2.80점,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 담당은 2.80점, 소년범 전문 조사관 부재 2.78점 등 조사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높았다. 조사대상 소년에 대한 인권침해는 2.04점, 조사 대상 소년에게 진술거부권 미고지는 1.96점으로 평가하여 문제점으로서의 인식이 낮았다.

조사에 따른 개별 처우 프로그램의 부족에서는 매우 문제있음이 20.4%, 약간 문제있는 편임이 53.7%로 74.1%가 문제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조사 전문 인력의 부족에서는 매우 문제있음이 13.0%, 약간 문제있는 편임이 53.7%로 66.7%가 문제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 담당에서는 70.4%가 문제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소년범 전문 조사관 부재에서는

66.7%가 문제있다고 인식하였다.

표 4-176 소년조사제도의 문제 사항 인식

사 항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편차
조사전문인력의 부족	별로 문제되지 않음	18	33.3	2.80	0.66
	약간 문제있는 편임	29	53.7		
	매우 문제있음	7	13.0		
	합계	54	100.0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 존재	전혀 문제되지 않음	2	3.7	2.70	0.69
	별로 문제되지 않음	17	31.5		
	약간 문제있는 편임	30	55.6		
	매우 문제있음	5	9.3		
	합계	54	100.0		
조사담담 직원에 대한 재교육 및 교육시간 부족	별로 문제되지 않음	22	40.7	2.59	0.50
	약간 문제있는 편임	32	59.3		
	합계	54	100.0		
전문가 자원봉사자의 미활용	전혀 문제되지 않음	2	3.7	2.50	0.67
	별로 문제되지 않음	26	48.1		
	약간 문제있는 편임	23	42.6		
	매우 문제있음	3	5.6		
	합계	54	100.0		
범죄유형별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 부재	별로 문제되지 않음	22	40.7	2.76	0.73
	약간 문제있는 편임	23	42.6		
	매우 문제있음	9	16.7		
	합계	54	100.0		
형사사법단계별 조사내용의 중복	전혀 문제되지 않음	2	3.7	2.76	0.75
	별로 문제되지 않음	17	31.5		
	약간 문제있는 편임	27	50.0		
	매우 문제있음	8	14.8		
	합계	54	100.0		
범죄유형에 대한 조사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전혀 문제되지 않음	2	3.7	2.69	0.70
	별로 문제되지 않음	18	33.3		
	약간 문제있는 편임	29	53.7		
	매우 문제있음	5	9.3		
	합계	54	100.0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 담당	전혀 문제되지 않음	2	3.7	2.80	0.71
	별로 문제되지 않음	14	25.9		

사 항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편차
	약간 문제있는 편임	31	57.4		
	매우 문제있음	7	13.0		
	합계	54	100.0		
조사기관의 역할중복(조사유형별 역할분장 부재)	전혀 문제되지 않음	2	3.7	2.54	0.66
	별로 문제되지 않음	24	44.4		
	약간 문제있는 편임	25	46.3		
	매우 문제있음	3	5.6		
	합계	54	100.0		
소년범 전문 조사관 부재	전혀 문제되지 않음	2	3.7	2.78	0.74
	별로 문제되지 않음	16	29.6		
	약간 문제있는 편임	28	51.9		
	매우 문제있음	8	14.8		
	합계	54	100.0		
조사기관간의 연계성 부족(조사기관간 정보 미공유)	전혀 문제되지 않음	1	1.9	2.76	0.73
	별로 문제되지 않음	19	35.2		
	약간 문제있는 편임	26	48.1		
	매우 문제있음	8	14.8		
	합계	54	100.0		
조사대상 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전혀 문제되지 않음	10	18.5	2.04	0.67
	별로 문제되지 않음	33	61.1		
	약간 문제있는 편임	10	18.5		
	매우 문제있음	1	1.9		
	합계	54	100.0		
조사 대상 소년에게 진술거부권 미고지	전혀 문제되지 않음	11	20.4	1.96	0.64
	별로 문제되지 않음	35	64.8		
	약간 문제있는 편임	7	13.0		
	매우 문제있음	1	1.9		
	합계	54	100.0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	전혀 문제되지 않음	5	9.3	2.54	0.77
	별로 문제되지 않음	19	35.2		
	약간 문제있는 편임	26	48.1		
	매우 문제있음	4	7.4		
	합계	54	100.0		
조사에 따른 개별처우 프로그램의 부족	전혀 문제되지 않음	1	1.9	2.93	0.72
	별로 문제되지 않음	13	24.1		
	약간 문제있는 편임	29	53.7		
	매우 문제있음	11	20.4		

사 항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편차
	합계	54	100.0		
소년조사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식 부재	전혀 문제되지 않음	1	1.9	2.61	0.66
	별로 문제되지 않음	23	42.6		
	약간 문제있는 편임	26	48.1		
	매우 문제있음	4	7.4		
	합계	54	100.0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이나 판결결과의 미통보	전혀 문제되지 않음	1	1.9	2.50	0.69
	별로 문제되지 않음	30	55.6		
	약간 문제있는 편임	18	33.3		
	매우 문제있음	5	9.3		
	합계	54	100.0		
중요하지 않은 사건의 의뢰(조사의뢰 실적 때문)	전혀 문제되지 않음	4	7.4	2.15	0.53
	별로 문제되지 않음	38	70.4		
	약간 문제있는 편임	12	22.2		
	합계	54	100.0		
법적인 강제력 부재	전혀 문제되지 않음	3	5.6	2.35	0.65
	별로 문제되지 않음	31	57.4		
	약간 문제있는 편임	18	33.3		
	매우 문제있음	2	3.7		
	합계	54	100.0		

형사소년판사는 소년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전문가 자원봉사자의 미활용', '소년범 전문조사관 부재', '조사에 따른 개별처우프로그램의 부족'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리커트식 4점 척도에서 평균 2.86점으로 가장 높았다.

소년부판사는 '조사인력의 부족',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 담당', '소년조사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식 부재' 등의 응답이 많았다.

3) 소년조사제도에서 개선 과제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 1순위에서는 조사전문인력의 부족이 20.4%로 가장 높고, 소년범 전문 조사관 부재는 16.7%, 범죄유형별 표준화된 위험성 평가도구 부재는 14.8%, 조사에 따른 개별처우 프로그램의 부족은 13.0%로 나타났다. 1+2+3순위의 복수응답에서는 조

사에 따른 개별처우 프로그램의 부족이 42.6%로 가장 높았고, 범죄유형별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 부재는 35.2%, 소년범 전문 조사관 부재는 33.3로 높았다.

표 4-177 소년조사제도에서 개선 과제

개선해야 할 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1+2+3순위	
	명	%	명	%	명	%	명	%
조사전문인력의 부족	11	20.4	1	2.0	4	8.0	16	29.6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 존재	1	1.9	2	4.0			3	5.6
조사담담 직원에 대한 재교육 및 교육시간 부족					4	8.0	4	7.4
전문가 자원봉사자의 미활용	1	1.9			5	10.0	6	11.1
범죄유형별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 부재	8	14.8	8	16.0	3	6.0	19	35.2
형사사법단계별 조사내용의 중복	1	1.9	7	14.0			8	14.8
범죄유형에 대한 조사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3	5.6	2	4.0	4	8.0	9	16.7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 담당	4	7.4	6	12.0	4	8.0	14	25.9
조사기관의 역할중복(조사유형별 역할분장 부재)			4	8.0	2	4.0	6	11.1
소년범 전문 조사관 부재	9	16.7	5	10.0	4	8.0	18	33.3
조사기관간의 연계성 부족(조사기관간 정보 미공유)	5	9.3	2	4.0	3	6.0	10	18.5
조사대상 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1	2.0			1	1.9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			2	4.0	2	4.0	4	7.4
조사에 따른 개별처우 프로그램의 부족	7	13.0	8	16.0	8	16.0	23	42.6
소년조사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식 부재		2	4.0	3	6.0	5	9.3	
중요하지 않은 사건의 의뢰(조사의뢰 실적때문)					2	4.0	2	3.7
법적인 강제력 부재					2	4.0	2	3.7
조사시간 지연	1	1.9					1	1.9
없다/무응답	3	5.6					3	5.6
합계	54	100.0	50	100.0	50	100.0	54	

형사소년판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 것은 '전문조사 인력의 부족'에 7명 중 3명이 응답하였고, 범죄유형별 표준화된 위험성평가척도 부재, 조사기관의 역할중복, 소년범 전문조사관 부재, 법적인 강제력 부재라고 응답하였다. 1, 2, 3순위를 다 고려했을 때는 소년범 전문조사관의 부재를 모든 응답자가 지적하였다.

소년부판사는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로 '전문조사 인력의 부족'에 7명 중 3명이 1순위로 응답하였고, 2순위에 1명이 응답하였다.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담당'이 3순위까지 포함하여 7명 중 4명이 응답하였다. 이외에 '조사기관의 연계성부족'과 '조사관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이 각각 3순위까지 2명있었다.

라. 검사의 결정전 조사 제도에 대한 인식

1)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의뢰 건수

지금까지 검사의 결정전조사서를 의뢰한 건수는 없음이 11.1%, 5건 미만이 18.5%, 5건에서 10건 미만이 18.5%, 10건에서 20건 미만이 16.7%, 20건 이상이 35.2%로 평균 25건이었다.

표 4-178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의뢰 건수

건 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누적 조사서 의뢰 건수	없다	6	11.1	25.0	43.78
	5건 미만	10	18.5		
	5건~10건 미만	10	18.5		
	10건~20건 미만	9	16.7		
	20건 이상	19	35.2		
	합계	54	100.0		

2) 검사가 결정전조사 비의뢰 이유

검사가 결정전조사를 의뢰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회보가 늦기 때문이 37.0%로 가장 높았고, 처분에 대한 기준이 이미 있기 때문이 20.4%로 높았다.

표 4-179 결정전조사를 의뢰하지 않는 이유

이 유	빈도	백분율(%)
회보가 늦기 때문에	20	37.0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5	9.3
조사서를 읽을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2	3.7
조사자가 소년 또는 소년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1	1.9
처분에 대한 기준이 이미 있기 때문에	11	20.4
소년범을 담당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3	5.6
결정전조사서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5	9.3
결정전 조사를 의뢰할 만한 사건이 많지 않아서	5	9.3
소년환경조사서 활용하기 때문에	2	3.7
의뢰함	7	13.0
무응답	4	7.4
합계	54	

형사소년 판사는 판결전조사를 의뢰하지 않는 이유는 7명이 모두 회보가 늦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3) 의뢰시 고려 사항

검사가 결정전조사를 의뢰할 때 주로 고려하는 사항은 범죄유형이 52.9%, 전과여부가 51.0%로 높았다.

표 4-180 결정전조사를 의뢰 시 주 고려사항

고려사항	빈도	백분율(%)
범죄유형	27	52.9
전과여부	26	51.0
연령	7	13.7
제한없다	8	15.7
가정환경	2	3.9
합계	51	

4) 주요 의뢰사건 및 의뢰대상

검사가 결정전조사를 주로 의뢰하는 사건은 절도범죄가 47.1%, 폭행/상해가 39.2%로 높았으며, 제한없다도 43.1%로 높았다.

표 4-181 결정전조사를 의뢰 시 주 의뢰 사건

의뢰사건	빈도	백분율(%)
폭행/상해(폭처법위반 등 폭력범죄)	20	39.2
절도범죄	24	47.1
성폭력범죄	5	9.8
살인/치사범죄	1	2.0
제한 없다	22	43.1
사안이 복잡하고 위험성 판단 곤란시	1	2.0
합계	51	

검사가 결정전조사를 주로 의뢰하는 대상은 재범이 43.1%로 가장 높았고, 3범 이상도 21.6%로 높았으나 초범은 5.9%로 높지 않았다.

표 4-182 결정전조사를 의뢰 시 주 의뢰 대상

의뢰대상	빈도	백분율(%)
초범	3	5.9
재범	22	43.1
3범이상	11	21.6
제한없다	15	29.4
합계	51	100.0

5) 결정전조사서의 필요성, 조사관의 전문성, 조사서의 활용성

검사의 결정전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 11.8%, 필요하다 80.4%로 92.2%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조사관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매우 높다 3.9%, 높은 편이다 41.2%로 45.1%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검사가 결정전조사를 활용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가 11.8%,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가 58.8%로 나타났다. 조사관들은 검사의 결정전조사의 필요성을 5점 만점에 4.04점, 조사관의 전문성은 3.45점, 검사의 활용도는 3.70점으로 평가하여, 필요성에 비해서 전문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4-183 검사의 결정전조사 필요성, 전문성 및 활용도

평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검사의 결정전조사의 필요성	그저 그렇다	4	7.8	4.04	0.44
	필요하다	41	80.4		
	매우 필요하다	6	11.8		
	합계	51	100.0		
조사관의 전문성	낮은 편이다	2	3.9	3.45	0.64
	보통이다	26	51.0		
	높은 편이다	21	41.2		
	매우 높다	2	3.9		
	합계	51	100.0		
검사의 결정전조사의 활용도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다	1	2.0	3.70	0.85
	활용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4	7.8		
	그저 그렇다	10	19.6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	30	58.8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6	11.8		
	합계	51	100.0		

형사소년 판사는 판결전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7명 모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조사관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3명 보통, 4명은 높은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7명 중 6명은 판결전조사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6)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활용 및 비활용 이유

검사의 결정전조사서를 활용하는 경우 주로 참고하는 내용은 가정환경/생활환경이 45.1%로 가장 높고, 재범위험성이 15.7%, 조사관 의견과 보호자의 의지 및 관심이 각각 9.8%였다. 도움이 되는 측면은 적절한 처분이 가능해져서 17.6%, 재범가능성 판단할 수 있어서 9.8%였다. 활용하지 않는 경우는 조사시간이 지연되어서가 11.8%로 가장 높았다.

표 4-184 활용 이유

구 분	사 항	빈도	백분율(%)
활용시 참고하는 내용	범죄관련사항	2	3.9
	범죄경력	1	2.0
	가정환경/생활환경	23	45.1
	성장과정	4	7.8
	조사관 의견	5	9.8
	학력 및 학교생활	2	3.9
	교우관계	4	7.8
	보호자의 의지,관심	5	9.8
	진술태도	1	2.0
	향후 생활계획	3	5.9
	재범위험성	8	15.7
	피의자의 성향	4	7.8
	피의자의 반성	1	2.0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2	3.9
	개선가능성 여부	1	2.0
도움되는 측면	재범가능성 판단할수 있어서	5	9.8
	범행의 원인을 알수 있어서	1	2.0
	적절한 처분 가능케해서	9	17.6
	소년부 송치여부 판단할수 있어서	2	3.9
	대상소년의 심리상태	1	2.0
	가정환경 파악	2	3.9
	소년의 비행성을 알수 있어서	1	2.0
	선도유예 여부 결정시	1	2.0
	본질적인 부분 이해하기 쉬워서	1	2.0
	깊이 있는 면담이 가능해서	1	2.0

형사소년 판사들이 판결전조사에서 주로 참고하거나 도움이 되는 측면은 주로 보호처분(소년부송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활용하지 않는 이유의 해결책으로는 신속한 회보를 위해 충분한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4-184-1 비활용 이유

구 분	사 항	빈도	백분율(%)
비활용 이유	재범방지에 전혀 도움이 안되어서	1	2.0
	필요성 및 효과 등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1	2.0
	깊이 반성해서	1	2.0
	재범의 위험성이 적어서	1	2.0
	기소유예 처분인 경우가 많아서	1	2.0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해서	1	2.0
	사건 처리 기한 준수를 위해서	1	2.0
	조사시간이 지연되어서	6	11.8
	차별성이 없어서	1	2.0
	획일적이고 단편적이라서	1	2.0
해결책	검사의 요청시 꼭 필요사항만 요청	1	2.0
	수사지휘단계에서 조사실시할수 있도록	1	2.0
	개별소년에 대한 심층적 판단할수있도록	1	2.0
	아직 해결책이 없다	1	2.0

7) 검사의 결정전조사에서 조사내용의 중요성

검사의 결정전조사에서 조사내용의 중요도는,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은 4점 만점에 3.59점으로 가장 높고, 생활환경은 3.49점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함이 58.8%, 중요한 편임이 41.2%였으며, 생활환경에서는 매우 중요함이 49.0%, 중요한 편임은 51.0%로 높았다.

표 4-185 검사의 결정전조사에서 조사내용의 중요성

조사 내용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범죄관련사항	중요하지 않은 편임	7	13.7	3.02	0.55
	중요한 편임	36	70.6		
	매우 중요함	8	15.7		
	합계	51	100.0		
범죄 경력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2.0	3.00	0.66
	중요하지 않은 편임	8	15.7		
	중요한 편임	32	62.7		
	매우 중요함	10	19.6		

조사 내용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합계	51	100.0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중요한 편임	26	51.0	3.49	0.50
	매우 중요함	25	49.0		
	합계	51	100.0		
성장과정	중요하지 않은 편임	2	3.9	3.33	0.55
	중요한 편임	30	58.8		
	매우 중요함	19	37.3		
	합계	51	100.0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중요하지 않은 편임	8	15.7	2.96	0.53
	중요한 편임	37	72.5		
	매우 중요함	6	11.8		
	합계	51	100.0		
학력 및 학교생활	중요하지 않은 편임	2	3.9	3.16	0.46
	중요한 편임	39	76.5		
	매우 중요함	10	19.6		
	합계	51	100.0		
교우관계	중요하지 않은 편임	2	3.9	3.16	0.46
	중요한 편임	39	76.5		
	매우 중요함	10	19.6		
	합계	51	100.0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중요한 편임	21	41.2	3.59	0.50
	매우 중요함	30	58.8		
	합계	51	100.0		
진술태도	중요하지 않은 편임	8	15.7	3.04	0.60
	중요한 편임	33	64.7		
	매우 중요함	10	19.6		
	합계	51	100.0		
향후 생활계획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2.0	3.18	0.68
	중요하지 않은 편임	5	9.8		
	중요한 편임	29	56.9		
	매우 중요함	16	31.4		
	합계	51	100.0		
조사자의 의견	중요하지 않은 편임	3	5.9	3.22	0.54
	중요한 편임	34	66.7		
	매우 중요함	14	27.5		
	합계	51	100.0		

처분 시에 비중을 두는 요인으로 1순위에서는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이

21.6%로 가장 높았고, 1+2순위에서도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이 60.8%로 가장 높았다.

표 4-186 처분 시 비중 두는 요인

요 인	1순위		2순위		1+2순위	
	명	%	명	%	명	%
범죄관련사항	7	13.7	3	5.9	10	19.6
범죄 경력	7	13.7	6	11.8	13	25.5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10	19.6	10	19.6	20	39.2
성장과정	2	3.9	1	2.0	3	5.9
교우관계			1	2.0	1	2.0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11	21.6	20	39.2	31	60.8
진술태도	1	2.0	2	3.9	3	5.9
향후 생활계획	2	3.9	6	11.8	8	15.7
조사자의 의견	11	21.6	2	3.9	13	25.5
합계	51	100.0	51	100.0	51	200.0

8) 결정전조사의 완성도

검사의 결정전조사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완성도는 매우 만족스럽다가 9.8%, 만족스런 편이 66.7%로 평균은 5점 만점에 3.83점으로 평가되었다. 완성도가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는 조사자 의견이 구분되는 기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표 4-187 검사의 결정전조사 완성도

완성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검사의 결정전조사의 완성도	만족스럽지 않은 편	1	2.0	3.83	0.61
	보통이다	11	21.6		
	만족스런 편	34	66.7		
	매우 만족스럽다	5	9.8		
	합계	51	100.0		

9) 결정전조사의 작성양식의 만족도

검사의 결정전조사의 작성 양식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한다가 5.9%, 만족하는 편이다가 90.2%이며 평균은 2.01점으로 만족하는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는 결정근거에 대한 정리가 산만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형사소년 판사는 판결전조사의 작성 양식에 대해서는 7명 모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4-188 검사의 결정전조사 작성양식 만족도

만족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검사의 결정전조사의 양식	매우 만족한다	2	3.9	2.01	0.31
	만족하는 편이다	46	90.2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3	5.9		
	합계	51	100.0		

10) 가장 우선적 및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

검사의 결정전조사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1순위에서는 회보기간이 너무 늦은 점이 31.4%로 가장 높았고,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가 없는 점이 21.6%로 높았다. 1+2순위 복수평가에서는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가 없는 점이 45.1%, 회보기간이 너무 늦은 점이 45.1%, 조사관의 의견제시 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점이 47.1%였다.

표 4-189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

문제점	1순위		2순위		1+2순위	
	명	%	명	%	명	%
회보기간이 너무 늦은 점	16	31.4	7	14.6	23	45.1
임의규정으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점	2	3.9	2	4.2	4	7.8
조사자가 소년 또는 소년범 전문가가 아닌 점	9	17.6	3	6.3	12	23.5
조사서의 내용이 부실한 점	1	2.0			1	2.0
조사자가 의견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점	2	3.9	2	4.2	4	7.8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가 없는 점	11	21.6	12	25.0	23	45.1
조사기관이 일원화되지 않은 점	1	2.0	1	2.1	2	3.9

문제점	1순위		2순위		1+2순위	
	명	%	명	%	명	%
조사관의 의견제시 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점	6	11.8	18	37.5	24	47.1
조사인력의 부족	3	5.9	3	6.3	6	11.8
합계	51	100.0	48	100.0	51	

그 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조사 이외에 해결프로그램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과 전문 인력의 양성이 지적되었다.

형사소년판사는 판결전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조사관의 의견제시 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점을 7명 모두가 지적하였고 조사자가 소년 또는 소년범 전문가 아니라는 점과 표준화된 위험성 평가도국 없는 점을 반정도가 지적하였다.

소년부판사는 결정전조사제도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조사자가 소년 또는 소년범 전문가가 아닌 점', '조사관의 의견제시 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점', '조사서의 내용이 부실한 점'이 각각 2명씩 1순위로 지적하였다. 이에 비해 분류심사제도에 대해서는 '조사관의 의견제시 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점', '조사서의 내용이 부실한 점'을 들었다.

11) 의뢰시 경찰의 환경조사서 첨부 여부

검사의 결정전조사서를 의뢰시에 경찰 환경조사서를 첨부하는 지에 대해서 43.1%가 첨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0 의뢰시 경찰의 환경조사서 첨부 여부

첨부여부		빈도	백분율(%)
경찰 환경조사 첨부	그렇다	22	43.1
	아니다	29	56.9
	합계	51	100.0

경찰 환경조사서를 첨부하지 않는 이유는 내용이 부실해서 32.1%,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서가 25.0%로 높았다.

표 4-191 첨부하지 않는 이유

이유	빈도	백분율(%)
내용이 부실해서	9	32.1
전문성이 의심스러워서	1	3.6
경찰의 환경조사서를 받지 못해서	1	3.6
필요성이 없어서	2	7.1
객관성이 부족해서	1	3.6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서	7	25.0
보호관찰소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1	3.6
무응답	7	25.0
합계	28	

2.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조사의뢰자 의견 종합

가. 소년조사제도에서 문제 사항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서, 판검사는 '조사에 따른 개별처우 프로그램의 부족'을 4점 만점에 2.90점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았고, '소년범 전문 조사관 부재' 2.78점, '조사 전문 인력의 부족'은 2.76점,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 담당' 등 조사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높았다.

조사에 따른 개별 처우 프로그램의 부족에서는 매우 문제있음이 15.7%, 약간 문제있는 편임이 51.5%로 67.8%가 문제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4-191-1 소년조사제도의 문제 사항 인식

사 항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편차
조사전문인력의 부족	전혀 문제되지 않음			2.76	0.69
	별로 문제되지 않음	24	38.1		
	약간 문제있는 편임	30	47.6		
	매우 문제있음	9	14.3		
	합계	63	100.0		

사 항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편차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 존재	전혀 문제되지 않음	2	3.2	2.67	0.67
	별로 문제되지 않음	22	34.9		
	약간 문제있는 편임	34	54.0		
	매우 문제있음	5	7.9		
	합계	63	100.0		
조사담담 직원에 대한 재교육 및 교육시간 부족	전혀 문제되지 않음			2.54	0.50
	별로 문제되지 않음	29	46.0		
	약간 문제있는 편임	34	54.0		
	매우 문제있음				
	합계	63	100.0		
전문가 자원봉사자의 미활용	전혀 문제되지 않음	2	3.2	2.54	0.67
	별로 문제되지 않음	29	46.0		
	약간 문제있는 편임	28	44.4		
	매우 문제있음	4	6.3		
	합계	63	100.0		
범죄유형별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 부재	전혀 문제되지 않음			2.71	0.71
	별로 문제되지 않음	27	42.9		
	약간 문제있는 편임	27	42.9		
	매우 문제있음	9	14.3		
	합계	63	100.0		
형사사법단계별 조사내용의 중복	전혀 문제되지 않음	3	4.8	2.65	0.77
	별로 문제되지 않음	24	38.1		
	약간 문제있는 편임	28	44.4		
	매우 문제있음	8	12.7		
	합계	63	100.0		
범죄유형에 대한 조사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전혀 문제되지 않음	3	4.8	2.60	0.71
	별로 문제되지 않음	24	38.1		
	약간 문제있는 편임	31	49.2		
	매우 문제있음	5	7.9		
	합계	63	100.0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 담당	전혀 문제되지 않음	3	4.8	2.75	0.74
	별로 문제되지 않음	18	28.6		
	약간 문제있는 편임	34	54.0		
	매우 문제있음	8	12.7		
	합계	63	100.0		
조사기관의 역할중복(조사유형별 역할분장 부재)	전혀 문제되지 않음	3	4.8	2.48	0.67
	별로 문제되지 않음	30	47.6		
	약간 문제있는 편임	27	42.9		

사 항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편차
	매우 문제있음	3	4.8		
	합계	63	100.0		
소년범 전문 조사관 부재	전혀 문제되지 않음	2	3.2	2.78	0.73
	별로 문제되지 않음	19	30.2		
	약간 문제있는 편임	33	52.4		
	매우 문제있음	9	14.3		
	합계	63	100.0		
조사기관간의 연계성 부족(조사기관간 정보 미공유)	전혀 문제되지 않음	2	3.2	2.70	0.73
	별로 문제되지 않음	23	36.5		
	약간 문제있는 편임	30	47.6		
	매우 문제있음	8	12.7		
	합계	63	100.0		
조사대상 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전혀 문제되지 않음	12	19.0	2.02	0.66
	별로 문제되지 않음	39	61.9		
	약간 문제있는 편임	11	17.5		
	매우 문제있음	1	1.6		
	합계	63	100.0		
조사 대상 소년에게 진술거부권 미고지	전혀 문제되지 않음	12	19.0	1.95	0.61
	별로 문제되지 않음	43	68.3		
	약간 문제있는 편임	7	11.1		
	매우 문제있음	1	1.6		
	합계	63	100.0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	전혀 문제되지 않음	5	7.9	2.54	0.76
	별로 문제되지 않음	24	38.1		
	약간 문제있는 편임	29	46.0		
	매우 문제있음	5	7.9		
	합계	63	100.0		
조사에 따른 개별처우 프로그램의 부족	전혀 문제되지 않음	1	1.6	2.90	0.69
	별로 문제되지 않음	15	23.8		
	약간 문제있는 편임	36	57.1		
	매우 문제있음	11	17.5		
	합계	63	100.0		
소년조사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식 부재	전혀 문제되지 않음	2	3.2	2.52	0.67
	별로 문제되지 않음	30	47.6		
	약간 문제있는 편임	27	42.9		
	매우 문제있음	4	6.3		
	합계	63	100.0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이나 판결결과의 미통보	전혀 문제되지 않음	3	4.8	2.40	0.71

사 항		빈도	백분율 (%)	평균	표준편차
	별로 문제되지 않음	37	58.7		
	약간 문제있는 편임	18	28.6		
	매우 문제있음	5	7.9		
	합계	63	100.0		
중요하지 않은 사건의 의뢰(조사의뢰 실적 때문)	전혀 문제되지 않음	6	9.5		
	별로 문제되지 않음	45	71.4		
	약간 문제있는 편임	12	19.0	2.10	0.53
	합계	63	100.0		
법적인 강제력 부재	전혀 문제되지 않음	4	6.3		
	별로 문제되지 않음	37	58.7		
	약간 문제있는 편임	20	31.7	2.32	0.64
	매우 문제있음	2	3.2		
	합계	63	100.0		

3) 소년조사제도에서 개선 과제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 1순위에서는 조사전문인력의 부족이 22.2%로 가장 높고, 소년범 전문 조사관 부재는 15.9%, 범죄유형별 표준화된 위험성 평가도구 부재는 14.3%, 조사에 따른 개별처우 프로그램의 부족은 12.7%로 나타났다. 1+2+3순위의 복수응답에서는 조사에 따른 개별처우 프로그램의 부족이 42.9%로 가장 높았고, 소년범 전문 조사관 부재는 34.9%, 범죄유형별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 부재는 33.3%로 높았다.

표 4-177 소년조사제도에서 개선 과제

개선해야 할 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1+2+3순위	
	명	%	명	%	명	%	명	%
조사전문인력의 부족	14	22.2	1	1.7	4	6.9	19	30.2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 존재	1	1.6	2	3.4	1	1.7	4	6.3
조사담담 직원에 대한 재교육 및 교육시간 부족					4	6.9	4	6.3
전문가 자원봉사자의 미활용	1	1.6	1	1.7	7	12.1	9	14.3
범죄유형별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 부재	9	14.3	9	15.5	3	5.2	21	33.3
형사사법단계별 조사내용의 중복	1	1.6	7	12.1			8	12.7
범죄유형에 대한 조사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3	4.8	2	3.4	4	6.9	9	14.3

개선해야 할 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1+2+3순위	
	명	%	명	%	명	%	명	%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 담당	4	6.3	6	10.3	5	8.6	15	23.8
조사기관의 역할중복(조사유형별 역할분장 부재)	1	1.6	5	8.6	2	3.4	8	12.7
소년범 전문 조사관 부재	10	15.9	8	13.8	4	6.9	22	34.9
조사기관간의 연계성 부족(조사기관간 정보 미공유)	5	7.9	2	3.4	3	5.2	10	15.9
조사 대상 소년에게 진술거부권 미고지			1	1.7	1	1.7	2	3.2
조사대상 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	1	1.6	2	3.4	4	6.9	7	11.1
조사에 따른 개별처우 프로그램의 부족	8	12.7	10	17.2	9	15.5	27	42.9
소년조사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식 부재			2	3.4	3	5.2	5	7.9
중요하지 않은 사건의 의뢰(조사의뢰 실적때문)								
법적인 강제력 부재					2	3.4	2	3.2
조사환경 미비	1	1.6			2	3.4	3	4.8
없다/무응답	3	4.8					3	4.8
합계	63	100.0	58	100.0	58	100.0	63	

제3절 검사 결정전조사의 조사자의견 결정요인

기록조사 분석은 검사 결정전조사서 조사항목인 범죄관련 요인, 생활환경관련 요인, 학교 관련 요인, 피해회복관련 요인,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진술태도, 향후 생활계획 등의 항목 중 어떤 요인이 조사관의 처분 결정(기소유예 대 소년부송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 분석을 위한 자료는 홍영오 등(2009)의 연구에서 검사의 결정전조사에서 검사의 처분에 대한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기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기록조사 자료는 2008년에 전국의 보호관찰소와 소년보호기관(서울분류심사원과 소년원)에서 작성된 검사 결정전조사서 1,240사례의 자료이다.

1. 개별요인과 조사의 최종의견 결정간의 관계 분석

본 절에서는 검사 결정전 조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소년범의 다양한 특성요인들과 조사자의 최종의견의 통계적 관계를 교차분석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살펴보았다.

가. 범행관련 요인

1) 본건관련 요인

죄명과 최종의견의 관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를 〈표 4-192〉에 제시하였다. 경합범의 경우에는 죄명이 여러 개인 경우도 있지만 죄명이 하나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첫 번째 죄명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폭력범죄와 기타범죄의 비율이 62.0%와 61.1%로 재산범죄(53.4%)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소년부송치의 경우에는 폭력범죄의 비율(44.9%)이 가장 높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차이는 카이자승 값이 8.57로 α=.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4-192 죄명과 최종의견

구분	죄명1			
	재산범죄	폭력범죄	기타범죄	계
기소유예	270 53.4%	243 62.0%	91 61.1%	604 57.7%
소년부송치	227 44.9%	140 35.7%	55 36.9%	422 40.3%
기소	9 1.8%	9 2.3%	3 2.0%	21 2.0%
계	506 100%	392 100%	149 100%	1047 100%

x 2=8.57(4)

공범의 수와 조사자의 최종의견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표 4-193〉 참조) 카이자승 값이 .696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193 공범수와 최종의견

구분	공범수				
	0	1	2	3명이상	계
기소유예	130 57.3%	146 58.9%	64 60.0%	173 58.4%	584 58.6%
소년부송치	89 39.2%	99 39.9%	86 38.2%	118 39.9%	392 39.4%
기소	8 3.5%	3 1.2%	4 1.8%	5 1.7%	20 2.0%
계	227 100%	248 100%	225 100%	296 100%	996 100%

x 2=.696(6)

소년이 범행에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가의 여부도 조사자의 최종의견과 카이자승 값이 8.12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표 4-194〉 참조).

표 4-194 범행에서의 역할과 최종의견

구분	범행에서의 역할				
	보조적	동등	주도적	단순가담	계
기소유예	71 68.3%	302 55.9%	64 58.7%	23 67.6%	460 58.4%
소년부송치	32 30.8%	232 43.0%	44 40.4%	10 29.4%	318 40.4%
기소	1 1.0%	6 1.1%	1 .9%	1 2.9%	9 1.1%
계	104 100%	540 100%	109 100%	34 100%	787 100%

x 2=8.12(6)

다음은 범행의 내용적인 측면들이 최종의견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범행시에 흉기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조사자의 최종의견의 관계를 살펴보았다(〈표 4-195) 참조). 기소유예의 경우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비율이 58.2%로서 사용한 비율(58.3%)과 비슷하며, 소년부송치의 경우에는 흉기를 사용하지 않

은 비율(39.9%)이 사용한 비율(38.9%)보다 조금 높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기소의 경우에 흉기를 사용한 비율이 높다. 또한 그 결과는 카이자승 값이 .14로서 α=.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범행시에 흉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소년부송치나 기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흉기를 사용한 경우가 36건으로 그 비율이 극히 낮아서 해석에 한계를 가진다.

표 4-195 흉기사용여부와 최종의견

구분	흉기사용		
	없음	있음	계
기소유예	577 58.2%	21 58.3%	598 58.2%
소년부송치	395 39.9%	14 38.9%	409 39.8%
기소	19 1.9%	1 2.8%	20 1.9%
계	991 100%	36 100%	1027 100%

x 2=.14(2) ***

폭력사용여부와 조사자의 최종의견의 관계를 〈표 4-196〉에 제시하였다.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폭력을 사용한 비율이 높고, 소년부송치의 경우에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 비율이 높지만, 기소의 경우 폭력을 사용한 비율이 높아 일관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카이자승 값도 4.76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폭력의 사용여부만 기준으로 하였고, 폭력사용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정보가 무시되었다는 측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196 폭력사용여부와 최종의견

구분	폭력사용		
	없음	있음	계
기소유예	414 56.4%	186 63.1%	600 58.3%
소년부송치	307 41.8%	102 34.6%	409 39.7%
기소	13 1.8%	7 2.4%	20 1.9%
계	734 100%	295 100%	1029 100%

x 2=4.76(2)

범행 중에 위협이나 강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카이자승 값이 7.65로서 조사자의 최종의견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표 4-197〉 참조). 기소유예의 경우 위협이나 강압이 있는 비율이 높고, 소년부송치의 경우 위협이나 강압이 없는 비율이 높지만, 전체적인 패턴은 〈표 4-196〉의 폭력사용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표 4-197 위협이나 강압여부와 최종의견

구분	위협이나 강압		
	없음	있음	계
기소유예	398 56.1%	192 65.5%	590 58.9%
소년부송치	298 42.0%	96 32.8%	394 39.3%
기소	13 1.8%	5 1.7%	18 1.8%
계	709 100%	293 100%	1002 100%

x 2=7.65(2)

그렇지만 범행시에 성적인 요소가 존재하였는가 여부, 즉 성폭력의 요소가 존재하는가 여부와 조사자의 최종의견은 카이자승 값이 2.81로서 α=.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표 4-198〉 참조). 기소유예의 경우 성적인 요소가 없는 비율이 58.6%로서 있는 비율 51.3%보다 높은 반면, 소년부송치와 기소의 경우에는 성적인 요소가 있는 비율 각각 43.6%와 5.1%로서 없는 비율인 39.7%와 1.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이는 성폭력이 포함된 범죄는 저지른 소년들은 더 강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198 성적인 요소의 존재여부와 최종의견

구분	성적인 요소		
	없음	있음	계
기소유예	576 58.6%	20 51.3%	596 58.3%
소년부송치	390 39.7%	17 43.6%	407 39.8%
기소	17 1.7%	2 5.1%	19 1.9%
계	983 100%	39 100%	1022 100%

χ 2=2.81(2) ***

범행의 사전계획여부와 조사자의 최종의견의 관계를 〈표 4-199〉에 제시하였다. 기소유예의 경우 범행이 우발적인 비율(59.9%)이 계획적인 비율(51.0%)보다 높지만, 소년부송치나 기소의 경우에는 범행이 계획적인 비율(45.6%와 3.4%)이 우발적인 비율(38.6%와 1.5%)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카이자승 값도 8.70로서 α=.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행이 우발적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등의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사전에 계획된 범행의 경우에는 소년부송치나 기소의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표 4-199 사전계획여부와 최종의견

구분	사전계획여부		
	우발적	계획적	계
기소유예	397 59.9%	151 51.0%	548 57.1%
소년부송치	256 38.6%	135 45.6%	391 40.8%
기소	10 1.5%	10 3.4%	20 2.1%
계	663 100%	296 100%	959 100%

χ 2=8.70(2) ***

범행시 음주여부와 환각제사용여부와 조사자의 최종의견의 관계를 〈표 4-200〉에 제시하였다. 범행시에 술을 마신 정도는 카이자승 값이 4.93로서 검사가 최종의견을 내리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범행시 환각제 사용여부는 카이자승이 7.44로서 α=.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소년부송치의 경우에 환각제를 사용한 비율이 81.8%로 사용하지 않은 비율인 41.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 사건 중에서 환각제를 사용한 것이 11차례에 불과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표 4-200 범행시 음주여부, 환각제사용여부와 최종의견

구분	범행시 음주여부				범행시 환각제사용여부		
	없음	약간	만취	계	없음	있음	계
기소유예	503 57.3%	27 57.4%	5 41.7%	535 57.1%	525 57.1%	2 18.2%	527 56.6%
소년부송치	360 41.0%	18 38.3%	6 50.0%	384 41.0%	378 41.1%	9 81.8%	387 41.6%
기소	15 1.7%	2 4.3%	1 8.3%	18 1.9%	17 1.8%	0 .0%	17 1.8%
계	878 100%	47 100%	12 100%	937 100%	920 100%	11 100%	931 100%
	χ 2=4.93(4)				χ 2=7.44(2)		

다음으로 범행의 동기가 조사자의 최종의견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표 4-201〉부터 〈표 4-203〉에 제시하였다. 범행 동기는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따라서 각 범행동기의 유무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살펴보았다.

범행동기로서 유혹과 호기심인 경우, 생활비마련인 경우, 유흥비와 용돈마련인 경우가 조사자의 최종의견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지를 〈표 4-201〉에 제시하였다. 먼저 유혹과 호기심은 최종의견과 일정한 경향성은 보인다. 즉 기소유예는 유혹 호기심이 있는 비율이 62.9%로 없는 비율 56.2%보다 높고, 소년부송치와 기소의 경우에는 없는 비율(41.7%와 2.1%)이 있는 비율(35.5%와 1.6%)보다 더 높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계는 카이자승 값이 3.54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며, 따라서 유혹, 호기심의 존재여부는 최종의견과 유의미한 관계가 아니다. 다음으로 생활비마련을 위해서 범행을 한 경우에는 기소유예의 경우 생활비마련이 아닌 비율이 58.1%로서 생활비마련을 위한 경우(51.7%)보다 높고, 소년부송치와 기소의 경우에는 생활비마련이 동기가 된 비율(46.6%와 1.7%)이 높다. 이러한 관계는 카이자승 값이 1.02로서 α=.05수준에서 유의미하지만, 생활비마련을 위한 경우가 58건으로 전체사례중의 비율이 상당히 낮다. 유흥비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앞의 생활비 경우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유흥비나 용돈마련이 아닌 비율(62.7%)이 높고, 소년부송치와 기소는 유흥비나 용돈마련이 동기인 비율(55.3%와 2.4%)이 더 높다. 이러한 관계는 카이자승 값이 33.64로서 α=.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범행동기가 유흥비나 용돈마련인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201 범행동기(유혹, 생활비마련, 유흥비마련)와 최종의견

구분	유혹, 호기심			생활비마련			유흥비, 용돈마련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기소유예	450 56.2%	156 62.9%	606 57.8%	576 58.1%	30 51.7%	606 57.8%	497 62.7%	108 42.4%	605 57.8%
소년부송치	334 41.7%	88 35.5%	422 40.2%	395 39.9%	27 46.6%	422 40.2%	281 35.4%	141 55.3%	422 40.2%

구분	유혹, 호기심			생활비마련			유흥비, 용돈마련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기소	17	4	21	20	1	21	15	6	21
	2.1%	1.6%	2.0%	2.0%	1.7%	2.0%	1.9%	2.4%	2.0%
계	801	248	1049	991	58	1049	793	255	104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χ 2=3.54(2)			χ 2=1.02(2) *			χ 2=33.64(4) ***		

범행동기로서 음주로 인한 술기운인 경우, 원한과 분노에 의한 범행인 경우, 스릴추구를 위한 범행인 경우가 조사자의 최종의견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지를 〈표 4-202〉에서 알 수 있다. 세 가지 경우 모두 카이자승 값은 12.88, 6.73, 1.66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동기의 존재여부는 최종의견과 큰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4-202 범행동기(음주, 원한분노, 스릴추구)와 최종의견

구분	음주(취중)			원한,분노			스릴추구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기소유예	594	12	606	533	73	606	592	14	606
	57.5%	75.0%	57.8%	56.5%	69.5%	57.8%	58.1%	46.7%	57.8%
소년부송치	420	2	422	392	30	422	407	15	422
	40.7%	12.5%	40.2%	41.5%	28.6%	40.2%	39.9%	50.0%	40.2%
기소	19	2	21	19	2	21	20	1	21
	1.8%	12.5%	2.0%	2.0%	1.9%	2.0%	2.0%	3.3%	2.0%
계	1033	16	1049	944	105	1049	1019	30	104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χ 2=12.88(2)			χ 2=6.73(2)			χ 2=1.66(2)		

범행동기로서 가정불화, 성적 동기, 우발 또는 충동과 최종의견의 교차분석 결과를 〈표 4-203〉에 제시하였다. 가정불화의 경우 범행의 원인이 가정불화인 소년사건은 전체 중에서 3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카이자승 값이 유의미하기는 하지만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적 동기는 카이자승 값이 1.11로서 α=.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데 기소유예의 경우 범행동기로서 성적 동기가 없는 비율(57.9%)이 있는 비율(50.0%)보다 훨씬 높지만, 소년부송치와 기소의 경우에는 성적 동기가 있는 비율(45.5%와 4.5%)이 없는 비율(40.1%와

1.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성적 동기에 의해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벌을 받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전체 중에서 성적 동기에 의해서 범행을 한 경우가 22건에 불과해서 전체적인 관계의 의미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우발, 충동의 경우에는 앞의 〈표 4-199〉에서 살펴본 사전계획여부와 연관되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카이자승 값이 32.78로서 α=.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며, 기소유예의 경우 우발 충동이 있는 비율(67.2%)이 없는 비율(49.8%)보다 높으며, 소년부송치나 기소의 경우에는 우발, 충동이 없는 비율(48.1%와 2.1%)이 있는 비율(30.9%와 1.9%)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203 범행동기(가정불화, 성적 동기, 우발충동)와 최종의견

구분	가정불화			성적 동기			우발, 충동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기소유예	605 57.8%	1 33.3%	606 57.8%	595 57.9%	11 50.0%	606 57.8%	284 49.8%	322 67.2%	606 57.8%
소년부송치	420 40.2%	2 66.7%	422 40.2%	412 40.1%	10 45.5%	422 40.2%	274 48.1%	148 30.9%	422 40.2%
기소	21 2.0%	0 .0%	21 2.0%	20 1.9%	1 4.5%	21 2.0%	12 2.1%	9 1.9%	21 2.0%
계	1046 100%	3 100%	1049 100%	1027 100%	22 100%	1049 100%	570 100%	479 100%	1049 100%
	x 2=.89(2) *			x 2=1.11(2) ***			x 2=32.78(2) ***		

이상에서 현재 범행사건의 내용과 조사자의 최종의견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요인은 범행에 성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흉기를 사용하였는지,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었는지가 중요하며,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는 유흥비나 용돈을 위한 것이었는지, 성적인 동기가 있었는지, 우발, 충동적인 것이었는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흉기사용, 성적인 동기는 있다고 응답한 사례가 너무 적고, 범행동기에서 우발 충동은 사전계획여부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종의견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것은 사전계획여부와 범행동기로서 유흥비, 용돈마련이라고 볼 수 있다.

2) 피해자의 특성관련 요인

다음으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특성에 관련된 요인이 최종의견과 보이는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피해자의 수와 최종의견의 교차분석 결과를 〈표 4-204〉에서 볼 수 있다. 피해자 수와 최종의견은 카이자승 값이 10.31로서 유의미하지 않다. 즉 최종의견은 피해자의 수가 달라져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수가 많고 적음은 최종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표 4-204 피해자 수와 최종의견

구분	피해자 수			
	1	2	3명이상	계
기소유예	338 62.0%	58 55.2%	83 62.9%	479 61.3%
소년부송치	200 36.7%	41 39.0%	44 33.3%	285 36.4%
기소	7 1.3%	6 5.7%	5 3.8%	18 2.3%
계	545 100%	105 100%	132 100%	782 100%

x 2=10.31(4)

피해자의 성별은 카이자승 값이 13.88로서 최종의견과 α=.01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표 4-205〉 참조).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남자가 피해를 당한 경우(71.0%)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남녀 모두 피해를 당한 경우의 비율이 62.5%이다. 소년부송치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여성이 비율이 41.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둘다(31.3%), 남자(27.2%)의 순이다.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기는 했지만 분석에 사용된 사례가 575건으로서 전체 사례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조사서에서 피해자의 성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이다.

표 4-205 피해자의 성별과 최종의견

구분	피해자의 성별			
	남자	여자	둘다	계
기소유예	269 71.0%	92 56.1%	20 62.5%	381 66.3%
소년부송치	103 27.2%	68 41.5%	10 31.3%	181 31.5%
기소	7 1.8%	4 2.4%	2 6.3%	13 2.3%
계	379 100%	164 100%	32 100%	575 100%

χ 2=13.88(4) **

피해자의 연령대와 최종의견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피해자의 연령은 카이자승 값이 5.53이지만 자유도가 8로 높아서 최종의견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석사례가 513건으로 결측치가 많아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표 4-206〉 참조).

표 4-206 피해자의 연령과 최종의견

구분	피해자의 연령					
	초등학생이하	중고등학생	20대	30대	40대이상	계
기소유예	17 70.8%	203 65.3%	33 73.3%	27 71.1%	58 61.1%	338 65.9%
소년부송치	7 29.2%	101 32.5%	10 22.2%	11 28.9%	34 35.8%	163 31.8%
기소	0 .0%	7 2.3%	2 4.4%	0 .0%	3 3.2%	12 2.3%
계	24 100%	311 100%	45 100%	38 100%	95 100%	513 100%

χ 2=5.53(8)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따라서 최종의견이 달라지는가를 〈표 4-207〉에 제시하였다. 기소유예의 경우로 아는 사람인 60.5% 비율이 낯선 사람인 56.5%보다 높게 나타나고 소년부송치의 경우에는 낯선 사람의 비율이 41.5%로 아는 사

람인 비율인 36.3%보다 높다. 반대로 기소의 경우에는 아는 사람의 비율이 3.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카이자승 값도 2.27로서 α=.001수준에서 유의미하지만, 앞의 경우와 유사하게 결측치의 수가 많아서 전체적인 결과의 확실성을 제한한다.

표 4-207 피해자와의 관계와 최종의견

구분	피해자와의 관계		
	아는 사람	낯선 사람	계
기소유예	135 60.5%	279 56.5%	414 57.7%
소년부송치	81 36.3%	205 41.5%	286 39.9%
기소	7 3.1%	10 2.0%	17 2.4%
계	223 100%	494 100%	717 100%

x 2=2.27(2)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특성과 최종의견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성별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최종의견이 차이를 보였지만, 피해자 관련 요인의 경우 조사서에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많아서 다른 변인의 영향을 통제하고 분석하는 다변인분석에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3) 범행에 대한 태도관련 요인

범행에 관련된 영역의 세 번째 부분은 소년의 범행에 대한 태도요인이다. 여기서는 다시 범행사실의 인정여부와 범행에 대한 태도와 범행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과 최종의견이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조사자의 최종의견에 있어서 범행의 죄질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소년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는 요보호성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범행사실의 인정여부와 최종의견의 관계를 〈표 4-208〉에 제시하였다. 카이자승 값은 59.83로서, α=.001수준에서 유의미하며 상당히 강한 관계를 보인다. 기

소유예의 경우에는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서 65.4%이지만 인정하는 부분이 적어질수록 36.3%와 21.1%로 낮아진다. 소년부송치의 경우에는 범행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서 63.2%에 이르고, 범행을 더 많이 인정할수록 그 비율이 59.8%와 33.2%로 낮아진다. 기소에 있어서는 전부 부인한 사례는 세건 있으며, 일부 인정한 비율이 전부 인정한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검사의 결정에 범행에 대한 인정여부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208 범행사실 인정여부와 최종의견

구분	범행사실 인정여부			
	전부인정	일부인정	전부부인	계
기소유예	536 65.4%	37 36.3%	4 21.1%	577 61.3%
소년부송치	272 33.2%	61 59.8%	12 63.2%	345 36.7%
기소	12 1.5%	4 3.9%	3 15.8%	19 2.0%
계	820 100%	102 100%	19 100%	941 100%

x 2=59.83(4) ***

소년이 범행 후에 범행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치는지 여부와 조사자의 최종의견이 관계가 있는지 〈표 4-209〉에 제시하였다. 이 관계 역시 상당히 강한 관계를 보이는데, 카이자승 값이 69.78로서 α=.001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기소유예의 경우에 범행에 대해서 후회하는 비율(69.1%)이 그렇지 않은 비율(27.4%)보다 훨씬 높으며, 소년부송치와 기소의 경우에는 후회하지 않는 비율(63.0%와 9.6%)이 후회하는 비율(30.0%와 .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 역시 범행에 대해서 뉘우치는 태도가 검사의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표 4-209 범행에 대한 태도와 최종의견

구분	범행에 대한 태도		
	후회함	후회없음	계
기소유예	529 69.1%	20 27.4%	549 65.4%
소년부송치	230 30.0%	46 63.0%	276 32.9%
기소	7 .9%	7 9.6%	14 1.7%
계	766 100%	73 100%	839 100%

x 2=69.78(2) ***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정당했다고 생각하는 믿음과 검사의 결정의 관계를 〈표 4-210〉에 제시하였다. 이 관계는 카이자승 값이 12.43로서 α=.05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기소유예의 경우에 자신의 범행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비율이 68.5%로서 반대(45.9%)보다 높았지만, 소년부송치나 기소의 경우에는 자신의 범행이 정당하다고 보는 비율이 48.6%와 5.4%로 그렇지 않다고 보는 비율 30.6%와 .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정당성에 대한 믿음은 앞에서 살펴본 범행에 대한 후회나 뉘우침과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최종의견과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결측치의 수가 많고, 범행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소년의 수가 37명으로 그리 많지 않아서 결과의 해석을 제한한다.

표 4-210 범행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여부와 최종의견

구분	범행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		
	있음	없음	계
기소유예	17 45.9%	452 68.5%	469 67.3%
소년부송치	18 48.6%	202 30.6%	220 31.6%
기소	2 5.4%	6 .9%	8 1.1%

구분	범행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		
	있음	없음	계
계	37 100%	660 100%	697 100%

x 2=12.43(2)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년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는 검사의 결정과 상당히 강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범행사실의 인정여부, 범행에 대한 후회와 뉘우침 여부는 최종의견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나. 범죄전력관련 요인

조사자의 최종의견을 위해서 고려하는 두 번째 중요한 영역은 소년의 범죄전력 부분이다. 과거의 범죄경력은 성인뿐만 아니라 소년에 있어서도 양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부분이다.

범죄경력 중에서 첫 번째 범죄의 유형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고 이것이 최종의견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표 4-211〉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범죄의 유형과 최종의견간에는 카이자승 값이 3.80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즉 첫 번째 범죄가 무엇이었건 관계없이 검사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표 4-211 범죄경력(첫 번째 범죄유형)과 최종의견

구분	범죄경력: 첫 번째 범죄유형			
	재산범죄	폭력범죄	기타범죄	계
기소유예	103 35.8%	47 42.7%	51 41.1%	201 38.5%
소년부송치	176 61.1%	60 54.5%	72 58.1%	308 59.0%
기소	9 3.1%	3 2.7%	1 .8%	13 2.5%
계	288 100%	110 100%	124 100%	522 100%

x 2=3.80(4)

과거 처분유형의 빈도와 최종의견의 관계를 〈표 4-212〉에 제시하였다. 과거 처분유형의 빈도란 소년의 범죄경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소년의 과거 범죄로 받았던 처분이나 결정의 빈도를 계산한 후에 몇 가지의 처분을 받았는지를 의미한다. 과거의 처분에는 기소유예, 벌금, 소년부송치, 소년원, 구금 또는 징역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는 카이자승 값이 145.97로 매우 높아, α=.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소유예의 경우 과거처분의 빈도가 적을수록 비율이 73.3% → 39.9% → 28.0%로 낮아진다. 반대로 소년부송치의 경우 과거처분유형의 빈도가 높을수록 비율이 25.2% → 57.3% → 69.5%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과거 범죄경력으로 형사 또는 보호처분을 많이 받을수록 본건으로 인한 검사의 결정이 무거워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4-212 과거 처분유형의 빈도와 최종의견

구분	범죄경력: 과거 처분유형 빈도			
	0	1	2이상	계
기소유예	442 73.3%	131 39.9%	33 28.0%	606 57.8%
소년부송치	152 25.2%	188 57.3%	82 69.5%	422 40.2%
기소	9 1.5%	9 2.7%	3 2.5%	21 2.0%
계	603 100%	328 100%	118 100%	1049 100%

χ 2=145.97(4) ***

동종전과, 즉 본건 범행과 유사한 과거범행의 유형과 검사의 결정의 관계를 〈표 4-213〉에 제시하였다. 카이자승 값이 3.53로 α=.05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기는 하지만 동종전과가 있는 사례가 331건으로 극히 적어서 분석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표 4-213 동종전과 유형과 최종의견

구분	동종전과1 유형			
	재산범죄	폭력범죄	기타범죄	계
기소유예	63 30.0%	23 35.9%	17 29.8%	103 31.1%
소년부송치	141 67.1%	37 57.8%	39 68.4%	217 65.6%
기소	6 2.9%	4 6.3%	1 1.8%	11 3.3%
계	210 100%	64 100%	57 100%	331 100%

x 2=3.53(4) *

동종전과의 수와 조사자의 최종의견의 관계를 〈표 4-214〉에 제시하였다. 범죄경력이 양형을 결정하고 처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동종전과는 범죄의 전문화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 범죄경력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동종전과의 빈도는 카이자승 값이 153.87로 α=.001수준에서 최종의견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며 관계의 방향성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소유예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을 때에 비율이 가장 높아 70.0%에 이르지만 동종전과의 건수가 많아질수록 42.1%, 27.0%, 23.4%로 줄어든다. 반대로 소년부송치는 동종전과가 없을 때 28.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지만 동종전과가 많아질수록 53.7%, 69.8%, 74.5%로 늘어난다. 동종전과의 빈도가 많을수록 무거운 결정을 받으며 빈도가 낮을수록 가벼운 결정을 받게 된다. 기소유예나 소년부송치에 있어서 뚜렷한 구분 기준점이 되는 것은 동종전과가 있는가 여부이다.

표 4-214 동종전과 건수와 최종의견

구분	동종전과건수				
	0	1	2	3이상	계
기소유예	504 70.0%	51 42.1%	17 27.0%	34 23.4%	606 57.8%
소년부 송치	205 28.5%	65 53.7%	44 69.8%	108 74.5%	422 40.2%

구분	동종전과건수				
	0	1	2	3이상	계
기소	11 1.5%	5 4.1%	2 3.2%	3 2.1%	21 2.0%
계	720 100%	121 100%	63 100%	145 100%	1049 100%

x 2=153.87(6) ***

대인범죄전력 유무도 카이자승 값이 127.60로서 조사자의 최종의견과 상당히 강한 유의도를 가진다(〈표 4-215〉 참조). 기소유예는 과거 대인범죄의 전력이 없는 비율(67.2%)이 있는 비율(29.4%)보다 훨씬 높으며, 소년부송치나 기소는 과거 대인범죄의 전력이 있는 비율(67.9%와 2.8%)이 없는 비율(31.3%와 1.5%)보다 훨씬 높았다. 과거 사람에 대한 범죄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 더 중한 처벌을 결정함을 알게 한다.

표 4-215 대인범죄전력과 최종의견

구분	대인범죄전력		
	없음	있음	계
기소유예	528 67.2%	74 29.4%	602 58.0%
소년부송치	246 31.3%	171 67.9%	417 40.2%
기소	12 1.5%	7 2.8%	19 1.8%
계	786 100%	252 100%	1038 100%

x 2=127.60(4) ***

이상에서 범죄전력과 조사자의 최종의견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범죄전력은 조사자의 최종의견과 유의미하며, 강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양형과 마찬가지로 소년범에 대한 결정에서도 과거 범죄경력은 중요하게 간주되는 요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과거 처분유형의 빈도, 동종전과의 건수, 대인범죄전력의 유무가 유의미한 관련을 보였다.

다. 피해관련 요인

결정전 조사의 세 번째 영역은 피해에 관련된 부분이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되며, 피해의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은 처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 피해내용 및 영향

신체피해여부와 검사의 결정의 관계를 〈표 4-216〉에 제시하였다. 기대와는 달리 신체피해여부는 카이자승 값이 18.62로 검사의 결정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표에 따르면 기소유예의 경우 전치4주초과한 경우가 73.3%로 가장 높고, 소년부송치는 신체피해가 없는 비율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표 4-216 신체피해여부와 최종의견

구분	신체피해여부			
	없음	전치4주이하	전치4주초과	계
기소유예	422 56.3%	96 71.1%	11 73.3%	529 58.8%
소년부송치	314 41.9%	33 24.4%	4 26.7%	351 39.0%
기소	13 1.7%	6 4.4%	0 .0%	19 2.1%
계	749 100.0%	135 100.0%	15 100.0%	899 100.0%

x 2=18.62(4)

2) 피해회복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는가와 조사자의 최종의견의 관계를 〈표 4-217〉에 제시하였다. 카이자승이 70.17로서 α=.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 기소유예는 피해에 대해서 합의한 비율(71.6%)이 합의하지 않은 비율(42.3%)보다 더 높은 반면 소년부송치와 기소의 경우 합의하지

않은 비율(55.8%와 1.8%)이 합의한 비율(27.9%와 .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검사들이 최종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여부를 중요하고 고려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4-217 피해합의여부와 최종의견

구분	피해 합의여부		
	합의함	합의하지 않음	계
기소유예	267 71.6%	185 42.3%	452 55.8%
소년부송치	104 27.9%	244 55.8%	348 43.0%
기소	2 .5%	8 1.8%	10 1.2%
계	373 100%	437 100%	810 100%

x 2=70.17(2) ***

3) 피해자의 감정

피해자가 가해소년의 처벌의 원하는지 아니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의 여부가 최종의견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를 〈표 4-218〉에 제시하였다. 두 요인의 관계는 카이자승 값이 20.09로 α=.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정전 조사서에 피해자의 처벌관련 의견이 제시된 것은 199건으로 전체의 1/6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예상과 같이 기소유예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비율(74.6%)이 높지만, 소년부송치는 처벌을 원하는 비율(50.0%)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218 피해자의 처벌의견과 최종의견

구분	피해자처벌 의견		
	처벌원함	처벌 원치않음	계
기소유예	13 43.3%	126 74.6%	139 69.8%
소년부송치	15 50.0%	43 25.4%	58 29.1%

구분	피해자처벌 의견		
	처벌원함	처벌 원치않음	계
기소	2 6.7%	0 .0%	2 1.0%
계	30 100%	169 100%	199 100%

x 2=20.09(2)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피해의 종류와 내용은 검사의 결정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보다는 오히려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하였는가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소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검사의 결정시에 더 중요하고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조사대상자(소년) 관련요인

결정전 조사서에서 네 번째 영역은 대상자, 즉 소년에 관한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소년범의 경우 성인과는 달리 보호처분을 실시함에 있어서 요보호성이 중요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소년의 성장배경, 환경, 소년의 행태, 학업 및 교우 관계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결정전 조사서는 소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입수해서 검사에게 알려주는 역학을 담당한다고 보았을 때 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영역인 대상자에 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최종의견에서 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표 4-219〉에 제시하였다. 그 관계는 카이자승 값이 1.3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4-219 성별과 최종의견

구분	성별		
	남자	여자	계
기소유예	514 57.2%	92 62.2%	606 57.9%
소년부송치	367 40.8%	53 35.8%	420 40.1%

구분	성별		
	남자	여자	계
기소	18 2.0%	3 2.0%	21 2.0%
계	899 100%	148 100%	1047 100%

x 2=1.34(2) *

1) 성장환경

범죄와 관련해서 소년의 성장환경에서 주로 고려할 부분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관계, 부모가 가진 부정적 생활습관, 부모로부터 받은 부정적 경험 등이다.

부의 학력과 최종의견의 관계가 〈표 4-220〉에 제시되어 있다. 카이자승 값이 5.65로 α=.05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기는 하지만 관계가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를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인 비율이 68.3%로 가장 높았으며, 소년부송치의 경우에는 중졸이하의 학력의 비율이 41.1%로 가장 높았다. 반면 모의 학력은 카이자승 값이 3.43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앞의 성별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학력과 직업 등은 배경적인 요인으로서 전체적인 관계를 살펴본다는 정도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식의 해석은 곤란하다.

표 4-220 부모의 학력과 최종의견

구분	부의 학력				모의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계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계
기소유예	132 57.1%	285 63.3%	110 68.3%	527 62.6%	134 64.7%	318 66.7%	64 63.4%	516 65.7%
소년부송치	95 41.1%	156 34.7%	48 29.8%	299 35.5%	70 33.8%	152 31.9%	33 32.7%	255 32.5%
기소	4 1.7%	9 2.0%	3 1.9%	16 1.9%	3 1.4%	7 1.5%	4 4.0%	14 1.8%

구분	부의 학력				모의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계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계
계	231 100%	450 100%	161 100%	842 100%	207 100%	477 100%	101 100%	785 100%
	x 2=5.65(4) *				x 2=3.43(4)			

아버지의 직업과 최종의견의 교차분석 결과를 〈표 4-221〉에서 볼 수 있다. 카이자승값은 38.85로서 α=.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5사례이하가 들어 있는 셀이 많아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사무직과 전문직의 비율이 75%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소년부송치에서는 관리직, 미취업, 생산직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4-221 부의 직업과 최종의견

구분	부의 직업							
	미취업	생산직	서비스직	판매직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	계
기소유예	51 52.6%	243 55.1%	54 60.7%	68 61.8%	105 76.1%	11 34.4%	22 75.9%	554 59.2%
소년부송치	42 43.3%	191 43.3%	33 37.1%	41 37.3%	31 22.5%	21 65.6%	6 20.7%	365 39.0%
기소	4 4.1%	7 1.6%	2 2.2%	1 .9%	2 1.4%	0 .0%	1 3.4%	17 1.8%
계	97 100%	441 100%	89 100%	110 100%	138 100%	32 100%	29 100%	936 100%
	x 2=38.85(12) ***							

어머니의 직업과 최종의견의 관계도 카이자승 값이 42.03로 α=.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하지만 5사례 이하의 셀이 많음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표 4-222〉 참조). 기소유예의 경우 사무직, 전문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소년부송치의 경우 생산직과 서비스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222 모의 직업과 최종의견

구분	모의 직업							
	미취업	생산직	서비스직	판매직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	계
기소유예	182	47	148	66	69	2	24	538
	62.1%	51.6%	53.6%	63.5%	80.2%	40.0%	70.6%	60.5%
소년부송치	109	43	119	38	16	2	9	336
	37.2%	47.3%	43.1%	36.5%	18.6%	40.0%	26.5%	37.8%
기소	2	1	9	0	1	1	1	15
	.7%	1.1%	3.3%	.0%	1.2%	20.0%	2.9%	1.7%
계	293	91	276	104	86	5	34	88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x 2=42.03(12) ***

친부모의 결혼 상태와 조사자의 최종의견의 관계가 〈표 4-223〉에 제시되어 있다. 친부모의 결혼 상태는 카이자승 값이 49.05로 최종의견과 α=.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 기소유예의 경우 친부모가 동거하는 비율(67.4%)이 별거나 이혼(45.4%), 가출 또는 사망(49.4%)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소년부송치의 경우 별거나 이혼(52.8%), 가출 또는 사망(48.2%)의 비율이 동거(30.9%)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친부모가 동거하는 경우에 자녀에 대한 보호능력의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표 4-223 친부모의 결혼 상태와 최종의견

구분	친부모의 결혼 상태			
	동거	별거 또는 이혼	가출 또는 사망	계
기소유예	377	176	42	595
	67.4%	45.4%	49.4%	57.7%
소년부송치	173	205	41	419
	30.9%	52.8%	48.2%	40.6%
기소	9	7	2	18
	1.6%	1.8%	2.4%	1.7%
계	559	388	85	1032
	100%	100%	100%	100%

x 2=49.05(4)***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활습관이나 행태 중에서 보호자의 가진 음주벽과 보호자의 범죄경력 유무에 따라서 최종의견에 차이가 있는지 〈표 4-224〉에서 볼 수 있다. 보호자의 음주벽은 카이자승 값이 6.29로 α=.01수준에서, 보호자의 범죄경력은 9.78로 α=.05수준에서 최종의견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 기소유예의 경우 음주벽이 없는 비율이 56.2%로 있는 비율 42.9%보다 높으며, 소년부송치와 기소는 음주벽이 있는 경우가 54.9%, 2.2%로 그렇지 않은 경우인 42.8%, 1.0%보다 더 높다. 보호자의 음주벽 역시 소년에 대한 보호능력과 관련하여 검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보호자의 범죄경력에 있어서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이 없는 비율(55.9%)이 높고, 소년부송치와 기소는 범죄경력이 있는 비율(67.6%, 2.7)이 높다.

표 4-224 보호자의 음주벽유무, 범죄경력유무와 최종의견

구분	보호자 음주벽			보호자 범죄경력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기소유예	348 56.2%	39 42.9%	387 54.5%	332 55.9%	11 29.7%	343 54.4%
소년부송치	265 42.8%	50 54.9%	315 44.4%	255 42.9%	25 67.6%	280 44.4%
기소	6 1.0%	2 2.2%	8 1.1%	7 1.2%	1 2.7%	8 1.3%
계	619 100%	91 100%	710 100%	594 100%	37 100%	631 100%
	x 2=6.29(2) **			x 2=9.78(2) *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적 및 언어적 폭력경험과 조사자의 최종의견의 관계를 〈표 4-225〉에 제시하였다. 소년이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적 폭력은 카이자승 값이 12.31로 최종의견과 α=.001수준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신체적 폭력이나 학대를 받지 않은 비율이 59.8%로 학대를 받은 비율(43.7%)보다 높게 나타나고, 소년부송치나 기소의 경우에는 신체적 폭력이나 학대의 경험이 있는 비율(52.9%, 3.4%)이 없는 경우(38.9%, 1.2%)보다 높다. 한편 부모로부터 언어적 폭력이나 학대의 경험이 있는 소년들은 카이자승 값이

11.69로 α=.05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체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기소유예는 언어적 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소년부송치와 기소는 언어적 폭력이나 학대의 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225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및 언어적 폭력경험과 최종의견

구분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학대) 경험			부모로부터 언어적 폭력(학대) 경험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기소유예	389 59.8%	52 43.7%	441 57.3%	392 60.2%	22 37.3%	414 58.3%
소년부송치	253 38.9%	65 52.9%	316 41.1%	252 38.7%	36 61.0%	288 40.6%
기소	8 1.2%	4 3.4%	12 1.6%	7 1.1%	1 1.7%	8 1.1%
계	650 100%	119 100%	769 100%	651 100%	59 100%	710 100%
	x 2=12.31(2) ***			x 2=11.69(2) *		

성장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부정적 경험이 조사자의 최종의견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이유를 본 자료를 통해서 직접 검증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의 경우로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적 폭력을 당한 소년이 저지르는 범죄의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더 무거운 결정을 받게 된다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을 부모의 보호의지 또는 능력과 연결시켜서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은 그러한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해서 무거운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년의 성장환경에 관련된 요인들은 조사자의 최종의견과 대체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 부모의 직업, 친부모의 결혼상태,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언어적 폭력 및 학대 경험 등이 최종의견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데, 이러한 성장환경 관련요인이 검사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를 어려우며, 단지 이러한 요인들이 소년의 범행이나 다른 측면에 영향을 줌으로써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나

중에 볼 다변인분석 방법을 통해서 분석할 때 그 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2) 생활환경

생활환경은 소년의 처한 환경들을 말하는데 주로 가정환경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부모의 양육방식, 부모에 대한 애정, 가족 간의 유대 등의 요인들과 최종의견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소년이 친부모와 동거하고 있는지 여부와 최종의견의 관계를 〈표 4-226〉에 제시하였다. 소년이 친부모와 동거하는지 여부는 카이자승 값이 56.75로 조사자의 최종의견과 α=.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는데, 기소유예의 경우 친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비율(67.9%)이 편부(47.2%), 편모(46.9%)나 두 분 모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45.5%)보다 훨씬 높으며, 소년부송치는 편부(51.8%), 편모(51.2%)로 친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비율(30.5%) 보다 훨씬 높았다. 이러한 관계 역시 친부모와의 동거여부는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과 관련지을 수 있다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226 친부모 동거여부와 최종의견

구분	친부모 동거여부				
	친부친모	친부만	친모만	모두 없음	계
기소유예	372 67.9%	91 47.2%	97 46.9%	46 45.5%	606 57.8%
소년부 송치	167 30.5%	100 51.8%	106 51.2%	49 48.5%	422 40.2%
기소	9 1.6%	2 1.0%	4 1.9%	6 5.9%	21 2.0%	
계	548 100.0%	193 100.0%	207 100.0%	101 100.0%	1049 100.0%

χ 2=56.75(6) ***

아버지가 소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애착 및 관심의 정도와 조사자의 최종의견의 관계가 〈표 4-227〉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는 카이자승 값이 67.73

로서 α=.01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아버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소유예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많은 비율이 72.3%로 가장 높고 애착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57.7%, 37.6%로 낮아진다. 소년부송치는 반대로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없을 때가 58.4%로 가장 높은 비율이고 애착이 많아질수록 40.5%, 27.1%로 감소한다. 즉 아버지의 애착과 관심은 양형과 부적인 관계를 보인다.

표 4-227 아버지의 애착 및 관심과 최종의견

구분	아버지의 애착 및 관심				
	아버지 없음	많음	보통	무관심	계
기소유예	47 54.0%	256 72.3%	192 57.7%	74 37.6%	569 58.6%
소년부송치	39 44.8%	96 27.1%	135 40.5%	115 58.4%	385 39.6%
기소	1 1.1%	2 .6%	6 1.8%	8 4.1%	17 1.8%
계	87 100%	354 100%	333 100%	197 100%	971 100%

x 2=67.73(6) **

어머니의 애착 및 관심과 조사자의 최종의견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관계 역시 카이자승 값이 63.41로서 α=.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아버지의 애착과 관심보다 더 강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표 4-228〉 참조). 즉 검사의 결정에 따른 차이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애착과 관심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방향 역시 아버지의 경우와 같아서 기소유예의 경우 어머니의 소년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클수록 높은 비율을 보이고, 소년부송치의 경우는 어머니의 애착과 관심이 적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인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환경에서 나타나는 부모와의 관계 등의 변인들도 소년에 대한 가정의 보호의지와 능력의 차원에서 연관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표 4-228 어머니의 애착 및 관심과 최종의견

구분	어머니의 애착 및 관심				
	어머니 없음	많음	보통	무관심	계
기소유예	45 46.9%	352 68.8%	144 55.6%	35 33.0%	576 59.2%
소년부송치	48 50.0%	152 29.7%	108 41.7%	71 67.0%	379 39.0%
기소	3 3.1%	8 1.6%	7 2.7%	0 .0%	18 1.8%
계	96 100%	512 100%	259 100%	106 100%	973 100%

χ 2=63.41(6) ***

아버지 및 어머니의 훈육방식 또는 감독과 검사의 결정의 관계를 〈표 4-229〉와 〈표 4-230〉에 제시하였다. 두 관계 모두 카이자승 값이 90.88과 82.92로 α=.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아버지의 훈육방식에 있어서 기소유예는 아버지가 지지적인 비율(75.9%)과 독재적/권위적, 무원칙인 경우가 52%대로 높게 나타났으며, 소년부송치에서는 아버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버지가 방임적이거나 무관심한 경우(58.0%), 독재적이거나 권위적인 비율(45.1%)이 더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좀 차이를 보이는데, 기소유예의 경우 어머니가 지지적인 훈육방식을 가진 비율(71.9%)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독재적/권위적인 경우가 52.9%로 나타났으며, 방임적/무관심이 37.9%로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에 소년부송치에 있어서는 방임적/무관심이 가장 높은 비율(60.9%)을 보였다. 지지적 훈육방식을 가진 경우는 26.5%로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모의 훈육방식이 지지적인 경우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기타 방임적/무관심, 독재적/권위적, 무원칙 등을 부정적인 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기소유예와 소년부송치의 구분에 있어서 부모의 훈육방식이 지지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차이를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 역시 가정의 보호능력과 연관되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229 아버지의 훈육 및 감독과 최종의견

구분	아버지의 훈육 및 감독					
	아버지없음	지지적	방임적/무관심	독재적/권위적	무원칙	계
기소유예	53	277	80	109	19	538
	52.5%	75.9%	37.7%	52.9%	52.8%	58.5%
소년부송치	47	85	123	93	16	364
	46.5%	23.3%	58.0%	45.1%	44.4%	39.6%
기소	7	3	9	4	1	18
	1.0%	.8%	4.2%	1.9%	2.8%	2.0%
계	101	365	212	206	36	920
	100%	100%	100%	100%	100%	100%

χ 2=90.88(8) ***

표 4-230 어머니의 훈육 및 감독과 최종의견

구분	어머니의 훈육 및 감독					
	어머니없음	지지적	방임적/무관심	독재적/권위적	무원칙	계
기소유예	47	394	66	27	17	551
	46.1%	71.9%	37.9%	52.9%	50.0%	60.6%
소년부송치	52	145	106	23	17	343
	51.0%	26.5%	60.9%	45.1%	50.0%	37.7%
기소	3	9	2	1	0	15
	2.9%	1.6%	1.1%	2.0%	.0%	1.7%
계	102	548	174	51	34	909
	100%	100%	100%	100%	100%	100%

χ 2=82.92(8) ***

소년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가지는 애정의 정도와 조사자의 최종의견의 관계를 〈표 4-231〉과 〈표 4-232〉에 제시하였다. 이 두 관계 모두 카이자승 값이 69.62와 50.69로 α=.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관계의 형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서 차이를 보인다. 아버지에 대한 애정의 경우 기소유예는 소년이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많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렇지만 소년부송치의 경우는 반대로 소년이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적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인다. 어머니의 경우도 아버지에 대한 애정의 경우가 마찬가지로 기소유예는 소년이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많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이며 소년부송치의 경우는 반대로 소년이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적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인다.

표 4-231 아버지에 대한 애정과 최종의견

구분	아버지에 대한 애정				
	아버지 없음	많음	보통	무관심	계
기소유예	47 55.3%	142 76.3%	168 55.4%	65 34.4%	422 55.3%
소년부송치	37 43.5%	43 23.1%	129 42.6%	115 60.8%	324 42.5%
기소	1 1.2%	1 .5%	6 2.0%	9 4.8%	17 2.2%
계	85 100%	186 100%	303 100%	189 100%	763 100%

x 2=69.62(6) ***

표 4-232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최종의견

구분	어머니에 대한 애정				
	어머니 없음	많음	보통	무관심	계
기소유예	40 46.5%	182 70.3%	167 53.9%	29 30.9%	418 55.8%
소년부송치	44 51.2%	74 28.6%	134 43.2%	63 67.0%	315 42.1%
기소	2 2.3%	3 1.2%	9 2.9%	2 2.1%	16 2.1%
계	86 100%	259 100%	310 100%	94 100%	749 100%

x 2=50.69(6) ***

가족구성원간의 유대 및 친밀감과 최종의견의 관계를 〈표 4-233〉에 제시하였다. 이 관계 역시 카이자승 값이 86.89로 a=.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소유예는 가족구성원간의 관계가 양호할수록 높은 비율을 보이고, 소년부송치는 가족구성원간의 유대가 약할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4-233 가족구성원간의 유대와 최종의견

구분	가족구성원간의 유대(친밀감)			
	양호	보통	미약	계
기소유예	234 76.7%	236 55.7%	72 35.6%	542 58.2%
소년부송치	68 22.3%	178 42.0%	125 61.9%	371 39.8%
기소	3 1.0%	10 2.4%	5 2.5%	18 1.9%
계	305 100%	424 100%	202 100%	931 100%

χ 2=86.89(4)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년의 가정환경은 모든 요인이 조사자의 최종의견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이는 조사자의 최종의견에 있어서 소년의 가정환경의 측면들이 어떤 형태로든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앞에서도 몇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소년에 대한 보호능력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경제상태

경제 상태에서는 가족의 월수입과 생활정도와 최종의견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가족의 월수입과 최종의견의 관계를 〈표 4-234〉에 제시하였다. 가족의 월수입은 조사서를 통해서 입수하고 기록하기 쉽지 않은 요인이다. 월수입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으며, 소년이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 가족의 월수입이라는 것이 가족의 수입으로 해야 할지 소년의 수입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월수입과 최종의견의 관계는 카이자승 값이 8.18로 α =.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소유예의 경우는 가족의 월수입이 많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고, 소년부송치와 기소는 가족의 월수입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4-234 가족의 월수입과 최종의견

구분	가족의 월수입			
	150만이하	150~300만이하	300만이상	계
기소유예	98 41.0%	136 47.6%	90 52.9%	324 46.6%
소년부송치	134 56.1%	147 51.4%	78 45.9%	359 51.7%
기소	7 2.9%	3 1.0%	2 1.2%	12 1.7%
계	239 100%	286 100%	170 100%	695 100%

x 2=8.18(4) *

가족의 생활정도가 최종의견과 보이는 관계는 카이자승값이 12.11로 유의도 측면에서는 생활정도가 더 강한 관계를 보이지만 관계의 방향에 있어서는 일관성을 보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표 4-235〉 참조). 기소유예의 경우 생활정도가 중일 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생활정도가 상인 경우와 하인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 반대로 소년부송치의 경우에는 생활정도가 중인 경우가 34.0%로 가장 낮았고, 상인 경우가 48.6%로 가장 높았다.

이상과 같이 가정의 경제적 상태와 최종의견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기는 하지만 관계의 방향성이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표 4-235 생활정도와 최종의견

구분	생활정도			
	상	중	하	계
기소유예	18 51.4%	273 64.8%	301 54.8%	592 58.9%
소년부송치	17 48.6%	143 34.0%	236 43.0%	396 39.4%
기소	0 .0%	5 1.2%	12 2.2%	17 1.7%
계	35 100%	421 100%	549 100%	1005 100%

x 2=12.11(4) ***

4) 학업관계

소년의 학교생활에 관련한 요인으로는 현재 재학여부, 학교성적, 무단결석이나 왕따 경험, 학교에서의 징계경험, 학교에 대한 태도, 전학횟수 등과 최종의견의 관계는 살펴보았다.

소년의 조사당시 학력상태와 최종의견의 관계를 〈표 4-236〉에 제시하였다. 소년의 재학상태는 카이자승 값이 59.69로서, 조사자의 최종의견과 α=.001수준에서 상당히 강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기소유예에서는 재학의 비율이 가장 높아서 64.8%이며, 다음이 중퇴로 38.8%, 졸업이 37.5%로 가장 낮다. 반면 소년부송치의 경우에는 중퇴의 비율이 가장 높아서 59.8%에 이르고, 재학이 가장 낮아서 33.5%에 불과하다. 기소에서는 졸업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학업지속성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양형은 죄질이 중요하게 작용하겠지만 그와는 별도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은 경우에는 학업을 지속하게 하려는 배려로서 기소유예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4-236 학력과 최종의견

구분	학력			
	재학	중퇴	졸업	계
기소유예	499 64.8%	85 38.8%	21 37.5%	605 57.9%
소년부송치	258 33.5%	131 59.8%	33 58.9%	422 40.4%
기소	13 1.7%	3 1.4%	2 3.6%	18 1.7%
계	770 100%	219 100%	56 100%	1045 100%

x 2=59.69(4) ***

학업성적과 최종의견의 관계를 〈표 4-237〉에 제시하였다. 학업성적도 카이자승 값이 25.38로 α=.01수준에서 최종의견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데, 관계의 방향은 선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기소유예는 학업성적이 중인 비율이 75.0%로

높고, 하인 비율인 52.2%로 가장 낮다. 그렇지만 소년부송치는 학업성적이 하인 비율이 46.1%로 가장 높고, 중인 비율이 22.3%로 가장 낮다. 학업성적을 중상과 하로 구분할 때 기소유예와 소년부송치에 차이가 존재함을 볼 수 있다.

표 4-237 학업성적과 최종의견

구분	학업성적			
	상	중	하	계
기소유예	27 67.5%	84 75.0%	386 52.2%	497 55.8%
소년부송치	13 32.5%	25 22.3%	341 46.1%	379 42.5%
기소	0 .0%	3 2.7%	12 1.6%	15 1.7%
계	40 100%	112 100%	739 100%	891 100%

x 2=25.38(4) **

무단결석 및 학교징계경험 유무와 최종의견의 관계를 〈표 4-238〉에 제시하였다. 두 관계 모두 카이자승 값이 92.42와 82.33로 α=.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결석에서 기소유예는 무단결석의 경험이 없는 학생의 비율이 80.7%로 매우 높은 반면, 있다는 비율은 47.6%로 그보다 훨씬 낮다. 반대로 소년부송치는 무단결석의 경험이 있는 비율이 50.5%로 상당히 높지만, 무단결석이 없는 비율은 17.9%로 매우 낮다. 학교징계경험도 두 처분이 뚜렷하게 대비된다. 기소유예의 경우 학교에서 징계경험이 없는 학생의 비율이 68.2%로 높은 반면 있는 비율은 29.4%로 상당히 낮다. 반면 소년부송치의 경우 학교에서 징계경험이 있는 비율이 69.9%로 높은 반면 징계경험이 없는 비율은 29.7%로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생활양태가 조사자의 최종의견에도 어떤 식으로든 반영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학교생활이 양호한 소년들에 대해서 더 가벼운 처분이 결정되는 것이다.

표 4-238 무단결석과 학교징계경험 유무와 최종의견

구분	무단결석 유무			학교징계 경험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기소유예	234 80.7%	333 47.6%	567 57.3%	381 68.2%	45 29.4%	426 59.8%
소년부송치	52 17.9%	353 50.5%	405 41.0%	166 29.7%	107 69.9%	273 38.3%
기소	4 1.4%	13 1.9%	17 1.7%	12 2.1%	1 .7%	13 1.8%
계	290 100%	699 100%	989 100%	559 100%	153 100%	712 100%
	χ 2=92.42(2) ***			χ 2=82.33(2) ***		

자퇴 또는 퇴학경험과 최종의견의 관계를 〈표 4-239〉에 제시하였다. 자퇴경험과 퇴학경험 유무도 카이자승 값이 22.57과 8.09로 α=.001수준에서 최종의견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 자퇴경험이 있는 학생은 204명에 달하지만, 퇴학경험이 있는 학생은 36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흥미롭다. 자퇴경험에서 기소유예는 자퇴경험이 없는 소년이 61.4%로 높지만, 자퇴경험이 있는 소년은 43.1%로 낮다. 반면 소년부송치는 자퇴경험이 있는 소년의 비율이 54.9%로 높고, 없는 학생의 비율이 36.8%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퇴학경험에서 기소유예는 퇴학경험이 없는 소년이 58.7%이지만, 퇴학경험이 있는 학생은 35.5%로 차이를 보였고, 소년부송치는 퇴학경험이 있는 소년이 64.5%로 높지만, 없는 소년은 39.4%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양호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최종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의 하나라는 것을 보여준다.

표 4-239 자퇴와 퇴학경험 유무와 최종의견

구분	자퇴경험			퇴학경험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기소유예	492 61.4%	88 43.1%	580 57.7%	571 58.7%	11 35.5%	582 58.0%
소년부송치	295 36.8%	112 54.9%	407 40.5%	383 39.4%	20 64.5%	403 40.2%

구분	자퇴경험			퇴학경험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기소	14 1.7%	4 2.0%	18 1.8%	18 1.9%	0 .0%	18 1.8%
계	801 100%	204 100%	1005 100%	972 100%	31 100%	1003 100%
	x 2=22.57(2) ***			x 2=8.09(2) ***		

소년이 학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와 조사자의 최종의견의 관계를 〈표 4-240〉에 제시하였다. 이 관계도 카이자승 값이 75.91로서 α=.001수준에서 유의미한데, 기소유예의 경우 학교에 대한 태도가 수용적인 학생의 비율이 75.6%로 높은 반면, 매우 싫어하거나 무관심한 소년은 그 비율이 각각 50.0%, 47.9%로 낮게 나타났다. 소년부송치는 학교에 대해 매우 싫어하거나 무관심한 비율이 각각 50.0%와 49.5%로 높은 반면에 학교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 소년은 22.7%에 불과하였다.

표 4-240 학교에 대한 태도와 최종의견

구분	학교에 대한 태도			
	수용적	무관심	매우 싫어함	계
기소유예	326 75.6%	210 47.9%	32 50.0%	568 60.9%
소년부송치	98 22.7%	217 49.5%	32 50.0%	347 37.2%
기소	7 1.6%	11 2.5%	0 .0%	18 1.9%
계	431 100%	438 100%	64 100%	933 100%
	x 2=75.91(4) ***			

소년이 왕따 등 학교에 대한 적응문제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최종의견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 4-241〉에 제시하였다. 이 관계는 카이자승 값이 18.29로서 α=.001수준에서 유의미하다. 기소유예의 경우 적응문제가 없는 소년의 비율이 60.7%인 반면 적응문제가 있는 소년의 비율은 41.0%로 차이가 나타난다. 소년

부송치는 적응문제가 있는 학생이 59.0%, 없는 학생이 36.9%이다. 즉 학교에 대한 적응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소년부송치와 기소처분을 받는 가능성이 높다.

표 4-241 왕따 등 적응문제와 최종의견

구분	왕따등 적응문제		
	없음	있음	계
기소유예	342 60.7%	41 41.0%	383 57.8%
소년부송치	208 36.9%	59 59.0%	267 40.3%
기소	13 2.3%	0 .0%	13 2.0%
계	563 100%	100 100%	663 100%

x 2=18.29(2) ***

전학횟수와 최종의견의 관계를 〈표 4-242〉에 제시하였다. 이 관계는 카이자승값이 14.29로서 α=.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전학의 경험이 없는 비율이 63.2%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년부송치의 경우에는 전학의 경험이 1-2회 있는 소년들의 비율이 51.8%, 3회 이상 있는 비율이 47.5%로 더 높다. 기소의 경우에는 3회 이상이 5.1%, 1-2회가 3.9%로 더 높다.

표 4-242 전학횟수와 최종의견

구분	전학횟수			
	없음	1-2회	3회이상	계
기소유예	452 63.2%	101 44.3%	28 47.5%	581 58.0%
소년부송치	257 35.9%	118 51.8%	28 47.5%	403 40.2%
기소	6 .8%	9 3.9%	3 5.1%	18 1.8%

구분	전학횟수			
	없음	1-2회	3회이상	계
계	715 100.0%	228 100.0%	59 100.0%	1002 100.0%

x 2=36.5(4) ***

이상과 같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요인들은 모두가 조사자의 최종의견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재학여부, 학교성적, 학교에서의 징계경험, 무단결석과 자퇴 등 학교에서의 문제행동, 학교에 대한 태도, 전학횟수 등 모든 요인이 최종의견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은 학교생활에 있어서의 성실성 등이나 양호함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검사의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학교생활에서 양호함이 나타날수록 가벼운 처분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5) 생활행태

생활행태에서는 소년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 특히 그중에서도 부정적인 생활습관들과 조사자의 최종의견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대인관계와 교우관계의 원만성 여부와 최종의견의 관계를 〈표 4-243〉에 제시하였다. 이 두 요인은 비슷한 차원으로 보이지만, 조사자의 최종의견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대인관계 원만성은 최종의견과 유미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반면, 교우관계 원만성은 카이자승 값이 68.59로서 상당히 강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대인관계에서 기소유예는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비율과 부정적이라는 비율이 64.4%와 55.6%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소년부송치 역시 유사하게 대인관계가 부정적이라는 비율과 원만하다는 비율이 43.9%와 32.7%로서 차이가 별로 없다. 반면 교우관계 원만성에 있어서 기소유예는 교우관계가 원만하다는 비율이 65.4%, 불량하다는 비율이 33.0%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며, 소년부송치는 교우관계가 불량하다는 비율이 65.9%로 높고, 원만하다는 비율이 32.0%로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특징 중의 하나가 친구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우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여부가 최종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4-243 대인관계와 교우관계 원만성과 최종의견

구분	대인관계			교우관계 원만성		
	원만	부정적	계	원만	불량	계
기소유예	357 64.4%	104 55.6%	461 62.2%	405 65.4%	61 33.0%	466 58.0%
소년부송치	181 32.7%	82 43.9%	263 35.5%	198 32.0%	122 65.9%	320 39.8%
기소	16 2.9%	1 .5%	17 2.3%	16 2.6%	2 1.1%	18 2.2%
계	554 100%	187 100%	741 100%	619 100%	185 100%	804 100%
	x 2=10.04(2)			x 2=68.59(2) ***		

비행친구의 유무와 최종의견의 관계를 〈표 4-244〉에 제시하였다. 교우관계의 상태가 최종의견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면 비행친구가 있는가의 여부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예상과 같이 비행친구 유무는 카이자승 값이 62.76으로서 최종의견과 상당히 강한 관계를 보인다. 820명 중에서 526명이 비행친구가 있어 비행친구가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기소유예의 경우 비행친구가 없다는 비율이 72.1%인 반면에 있다는 비율은 43.3%로서 차이가 많이 난다. 소년부송치는 비행친구가 있다는 비율이 54.4%로서 높고, 없다는 비율은 26.9%로 낮게 나타난다. 소년에 대한 처우를 결정함에 있어서 요보호성도 중요한 개념이지만 재비행가능성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비행친구가 있다는 점은 함께 어울려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관계의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표 4-244 비행친구 유무와 최종의견

구분	비행친구 유무		
	없음	있음	계
기소유예	212 72.1%	228 43.3%	440 53.7%
소년부송치	79 26.9%	286 54.4%	365 44.5%
기소	3 1.0%	12 2.3%	15 1.8%
계	294 100%	526 100%	820 100%

x 2=62.76(2) ***

소년의 부정적인 생활습관으로서 음주 및 흡연여부와 최종의견의 관계를 〈표 4-245〉에 제시하였다. 음주와 흡연과 같은 부정적인 생활습관은 검사의 결정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여부는 카이자승 값이 54.94이며, 흡연여부는 58.63로서 모두 α=.001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음주여부의 경우 기소유예는 음주하지 않는 비율이 73.7%이며, 음주한다는 비율이 51.1%였다. 반면 소년부송치는 음주한다는 비율이 47.5%이며 음주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3.9%였다. 흡연여부도 관계의 방향은 음주와 비슷하다. 기소유예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비율이 77.3%로 상당히 높게 나왔지만 흡연을 한다는 비율은 53.0%에 불과하다. 반면 소년부송치는 흡연한다는 비율이 45.0%인데 비해 흡연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1.5%에 불과하다. 이처럼 소년들의 일상적인 부정적 습관도 그런 습관이 있을수록 검사의 결정은 이 더 무거워지는 등의 관계를 보인다.

표 4-245 음주 및 흡연여부와 최종의견

구분	음주여부			흡연여부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기소유예	275 73.7%	316 51.1%	591 59.6%	191 77.3%	402 53.0%	593 59.0%
소년부송치	89 23.9%	294 47.5%	383 38.6%	53 21.5%	341 45.0%	394 39.2%

구분	음주여부			흡연여부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기소	9	9	18	3	15	18
	2.4%	1.5%	1.8%	1.2%	2.0%	1.8%
계	373	619	992	247	758	1005
	100%	100%	100%	100%	100%	100%
	x 2=54.94(2)***			x 2=45.55(2)***		

부정적인 생활습관으로서 약물복용여부 및 성경험여부와 검사의 최종의견의 관계를 〈표 4-246〉에 제시하였다. 약물복용여부와 성경험여부 역시 최종의견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데, 카이자승 값이 각각 9.69와 55.31로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약물복용에서 기소유예의 경우 약물은 복용하지 않는다는 62.5%로서 높은 반면 복용한다는 비율은 31.3%로 낮다. 소년부송치는 반대로 약물 복용한 적이 있다는 경우가 68.8%로 높고, 복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5.9%이다. 그렇지만 약물복용은 경험이 있는 소년이 16명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성경험여부도 기소유예는 성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70.9%인데 반해 성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33.7%이지만, 소년부송치는 성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64.0%로 높은 반면 성경험이 없다는 비율은 28.0%로서 차이가 많다. 그런데 소년의 성경험여부는 조사서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636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표 4-246 약물복용과 성경험여부와 최종의견

구분	약물복용여부			성경험여부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기소유예	529	5	534	390	29	419
	62.5%	31.3%	61.9%	70.9%	33.7%	65.9%
소년부송치	304	11	315	154	55	209
	35.9%	68.8%	36.5%	28.0%	64.0%	32.9%
기소	13	0	13	6	2	8
	1.5%	.0%	1.5%	1.1%	2.3%	1.3%
계	846	16	862	550	86	636
	100%	100%	100%	100%	100%	100%
	x 2=7.35(2)*			x 2=45.77(2)***		

소년이 고정된 주거가 있는지 여부 및 가출경험과 조사자의 최종의견의 관계를 〈표 4-247〉에 제시하였다. 고정된 주거여부는 카이자승이 10.06로서 α=.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가출경험유무 역시 카이자승 값이 65.45로서 α=.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된 주거여부에서 기소유예의 경우 고정된 주거가 있는 비율이 59.3%로 높은 반면, 소년부송치는 고정된 주거가 없는 비율이 65.8%로 높았다. 가출경험에서 기소유예의 경우 가출경험이 없는 비율이 71.0%로 높은 반면, 가출경험이 있는 비율은 45.0%이다. 반대로 소년부송치는 가출경험이 있는 비율이 52.5%로서 가출경험이 없는 28.2%보다 훨씬 높다. 즉 가출경험이 있는 경우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표 4-247 고정된 주거여부와 최종의견

구분	고정된 주거여부			가출경험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기소유예	10 31.3%	587 59.3%	597 58.4%	357 71.0%	192 45.0%	549 59.0%
소년부송치	21 65.6%	387 39.1%	408 39.9%	142 28.2%	224 52.5%	366 39.4%
기소	1 3.1%	16 1.6%	17 1.7%	4 .8%	11 2.6%	15 1.6%
계	32 100%	990 100%	1022 100%	503 100%	427 100%	930 100%
		x 2=10.06(2)***			x 2=65.45(2) ***	

소년이 폭력집단에 가입했는지의 여부와 최종의견의 관계를 〈표 4-248〉에 제시하였다. 카이자승이 10.89로서 α=.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폭력집단의 가입경험이 있을 경우에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조사대상 소년 중에서 폭력집단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고 한 소년이 16명에 불과하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이상에서 소년의 일상적인 생활습관, 부정적인 행동양식 등과 조사자의 최종의견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소년의 부정적인 생활습관이나

생활양식은 교차분석결과 조사자의 최종의견과 부정적인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을수록 조사자의 최종의견은 더 무거워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4-248 폭력집단가입여부와 최종의견

구분	폭력집단 가입여부		
	없음	있음	계
기소유예	318 63.0%	4 25.0%	322 61.8%
소년부송치	176 34.9%	12 75.0%	188 36.1%
기소	11 2.2%	0 .0%	11 2.1%
계	505 100%	16 100%	521 100%

x 2=10.89(2) ***

6) 변화의지 및 지지환경

변화의지 및 지지환경은 소년이 범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보호자들이 소년에 대한 보호의지가 있는지, 실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과 같은 요인을 의미한다. 논리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은 조사자의 최종의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최종의견을 내림에 있어서 범죄의 내용, 소년의 환경 등과 같은 요인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소년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의지 및 환경도 요보호성 등의 측면에서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소년과 보호자가 조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진술하는 태도와 검사의 결정과의 관계를 〈표 4-249〉에 제시하였다. 두 요인 모두 조사자의 최종의견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데 소년의 진술태도는 카이자승 값이 49.63이며, 보호자의 진술태도는 35.69로서 모두 α=.001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소년의 진술태도는 기소유예의 경우 협조적이라는 비율이 62.6%로서 비협조적이라는 비율인 30.1%보다 높았지만, 소년부송치의 경우 비협조적인 비율이 61.3%인 반면 협조적이라는 비율이 36.0%로 낮았다. 유사하게 보호자의 진술태도는 기소유예

의 경우 협조적이라는 비율이 61.2%이지만 비협조적이라는 비율이 15.2%로 낮았으며 소년부송치는 비협조적이라는 비율이 75.8%이지만 협조적이라는 비율은 37.5%에 불과하였다. 즉 두 경우 모두 진술태도가 협조적일 때 기소유예의 비율이 높았고, 비협조적일 때 소년부송치와 기소의 비율이 높았다.

표 4-249 소년과 보호자의 진술태도와 최종의견

구분	소년의 진술태도			보호자의 진술태도		
	협조적	비협조적	계	협조적	비협조적	계
기소유예	566 62.6%	28 30.1%	594 59.6%	566 61.2%	5 15.2%	571 59.6%
소년부송치	325 36.0%	57 61.3%	382 38.3%	347 37.5%	25 75.8%	372 38.8%
기소	13 1.4%	8 8.6%	21 2.1%	12 1.3%	3 9.1%	15 1.6%
계	904 100%	93 100%	997 100%	925 100%	33 100%	958 100%
	x 2=49.63(2) ***			x 2=35.69(2) ***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가족의 보호의지와 검사의 결정의 관계를 〈표 4-250〉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카이자승 값이 89.19로서 α=.001수준에서 유의미하다. 기소유예의 경우 가족의 보호의지가 강할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데, 보호의지가 없는 비율이 14.5%, 보통인 비율이 48.7%, 강한 비율이 67.3%이다. 반면 소년부송치는 반대의 방향을 보이는데 보호의지가 없는 비율이 79.0%, 보통인 비율이 48.4%, 강한 비율이 32.1%이다. 반면 기소의 경우는 가족의 보호의지가 강할수록 비율이 높아진다. 이는 가족이 소년을 보호할 의지를 얼마나 강하게 보이는가가 조사자의 최종의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4-250 가족의 보호의지와 최종의견

구분	가족의 보호의지			
	없음	보통	강함	계
기소유예	9 14.5%	164 48.7%	426 67.3%	599 58.0%

구분	가족의 보호의지			
	없음	보통	강함	계
소년부송치	49 79.0%	163 48.4%	203 32.1%	415 40.2%
기소	4 6.5%	10 3.0%	4 .6%	18 1.7%
계	62 100%	337 100%	633 100%	1032 100%

x 2=89.19(4) ***

가족들의 실질적 보호능력과 조사자의 최종의견의 관계를 〈표 4-251〉에 제시하였다. 실질적 보호능력은 보호의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조사자의 최종의견에 중요한 고려사항이라 할 수 있다. 가족의 보호의지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보호능력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실질적 보호능력은 카이자승값이 127.03로서 α=.001수준에서 최종의견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 기소유예의 경우 실질적 보호능력이 강한 비율이 74.9%이며, 보통이 59.0%, 없음이 23.8%로서 보호의지와 마찬가지로 실질적 보호능력이 강할수록 비율이 늘어난다. 반면 소년부송치는 실질적 보호능력이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아서 72.4%에 이르며, 보통이 39.3%, 강함이 24.5%로 낮은 비율을 보인다. 이처럼 보호의지와 더불어 실질적 보호능력도 조사자의 최종의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표 4-251 가족들의 실질적 보호능력과 최종의견

구분	가족들의 실질적 보호능력			
	없음	보통	강함	계
기소유예	43 23.8%	272 59.0%	248 74.9%	563 57.9%
소년부송치	131 72.4%	181 39.3%	81 24.5%	393 40.4%
기소	7 3.9%	8 1.7%	2 .6%	17 1.7%
계	181 100%	461 100%	331 100%	973 100%

x 2=127.03(4) ***

소년의 변화를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의 유형과 조사자의 최종의견의 관계가 〈표 4-252〉에 제시되어 있다. 카이자승 값은 58.48로서 α=.001수준에서 유의미하지만, 사회적 지지망의 유형들이 일관된 관계형태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망으로 가족이나 친지를 들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기소유예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기관이나 기타(82.8%)이며, 다음이 가족 및 친지(62.4%)이다. 가장 낮은 비율은 없음으로 16.3%이다. 반면 소년부송치에서 가장 높은 비율은 없음으로 79.1%이지만 나머지 가족 및 친지는 36.1%, 기관 또는 기타는 15.2%로 낮은 비율은 보인다. 이 표에서 결국 기소유예나 소년부송치에서 큰 차이를 보는 사회적 지지망의 유형은 지지망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구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사회적 지지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가볍고, 그렇지 않은 경우 처분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표 4-252 사회적 지지망과 최종의견

구분	사회적 지지망				
	없음	가족, 친지	친구	기관, 기타	계
기소유예	7 16.3%	439 62.4%	2 50.0%	82 82.8%	530 62.4%
소년부송치	34 79.1%	254 36.1%	2 50.0%	15 15.2%	305 35.9%
기소	2 4.7%	10 1.4%	0 .0%	2 2.0%	14 1.6%
계	43 100%	703 100%	4 100%	99 100%	849 100%

x 2=58.48(6) ***

향후 생활계획의 존재여부 및 범죄에서 벗어나려는 동기 및 의지와 최종의견의 관계를 〈표 4-253〉에 제시하였다. 향후 생활계획의 존재여부는 카이자승이 37.31이며, 범죄에서 벗어나려는 동기 및 의지는 117.51로서 모두 α=.001수준에서 유의미하다. 향후 생활계획의 존재여부에서 기소유예는 생활계획이 있는 비율이 65.2%로서 없는 비율 42.1%보다 높으며, 소년부송치는 생활계획이 없는

비율이 53.8%로서 있는 비율 33.5%보다 높다. 이는 향후에 뚜렷한 생활계획이 있는 경우에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범죄에서 벗어나려는 동기 및 의지에서 기소유예는 동기나 의지가 있는 비율이 74.7%로서 높게 나타지만 없는 경우는 29.7%로 낮다. 반면 소년부송치는 동기 및 의지가 없는 경우가 66.7%로 높지만 동기나 의지가 있는 비율은 24.3%로 불과하다. 즉 범죄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나 동기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운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표 4-253 향후 생활계획 존재여부 및 범죄에서 벗어나려는 동기(의지)와 최종의견

구분	향후 생활계획 존재여부			범죄에서 벗어나려는 동기(의지)		
	없음	있음	계	없음	있음	계
기소유예	83 42.1%	500 65.2%	583 60.5%	49 29.7%	470 74.7%	519 65.4%
소년부송치	106 53.8%	257 33.5%	363 37.7%	110 66.7%	153 24.3%	263 33.1%
기소	8 4.1%	10 1.3%	18 1.9%	6 3.6%	6 1.0%	12 1.5%
계	197 100%	767 100%	964 100%	165 100%	629 100%	794 100%
	χ 2=37.31(2) ***			χ 2=117.51(2)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년의 변화의지 및 지지환경은 전체적으로 조사자의 최종의견과 유의미하며 상당히 강한 관계를 보여준다. 특히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의지, 실질적인 보호능력과 더불어 향후 생활계획과 범죄에서 벗어나려는 동기 및 의지 등은 조사자의 최종의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조사자의 최종의견에 대한 다변인 분석결과

조사자의 최종의견에 대한 다변인 분석은 홍영오 등(2009)의 연구에서 검사의 처분결정요인 분석에서 행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즉 앞서 개별

요인들과 조사자의 최종의견의 관계를 교차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조사자의 최종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영향을 다른 독립변인들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조사자의 최종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변인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홍영오 등(2009)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결정전 조사서에 나타난 요인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다변인분석에 모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몇 가지의 기준을 사용해서 이차분석에 사용할 변인들을 선택하였다.

첫 번째 기준은 앞서 분석한 교차분석결과에서 최종의견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는가 여부이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두 변인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변인들은 다변인분석에서 다른 변인의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도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기준은 결측치의 수이다. 결정전 조사서에 대한 자료수집에 있어서 해당 요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결측치가 많은 요인들이 존재한다.[60]. 결측치가 많은 경우에는 다변인분석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두 변인의 관계가 유의미하다고 해도 결측치가 200개 이상인 요인들은 제외하였다[61]. 세 번째 기준은 분포가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지 않았는가의 정도이다.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나머지 범주의 수가 너무 적으면 분포자체가 통계적 분석에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이러한 요인들은 비록 교차분석 결과가 유의미하더라도 이차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서 이차분석에 사용할 변인을 선택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18개의 변인들이 추출되었다.

통제요인 : 성별

범행 관련요인 : 흉기사용, 사전계획, 성적 동기, 유흥비마련, 우발 충동, 범행

60) 조사서에서 해당 사항이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미상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경우는 모두 결측치로 처리하였기에 요인에 따라서 결측치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이차분석에서 제외하였다.

61) 실제로 결측치가 많은 이러한 변인들을 포함시켜서 처음 분석하였을 때 분석에 포함된 사례수는 300개이하로 결측된 사례수가 70%이상이어서 분석의 의미가 사라진다.

인정 여부, 범행에 대한 태도

범죄전력 관련요인 : 과거처분유형, 동종전과건수, 대인범죄전력

피해 관련 요인 : 피해합의 여부

가정환경 관련요인 : 친부모 결혼상태, 아버지의 애착, 어머니의 애착, 가족유대

경제상태 관련요인 : 생활정도

학업 관련요인 : 재학여부, 학력, 무단결석, 자퇴, 학교에 대한 태도

생활행태 관련요인 : 흡연, 음주, 가출

변화의지 및 지지환경 관련요인 : 진술태도, 보호의지, 보호능력, 생활계획

한편 종속변인인 조사자의 최종의견은 세 개의 범주를 가지며, 그 분포는 〈표 4-80〉과 같다. 따라서 다범주로짓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따른다. 본 조사에서 검사가 기소한 사례가 21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에서와 같이 결측치가 많은 변인을 제외하고 18개의 변인만을 추출하여 분석해도 32개의 사례 중에서 31개가 결측으로 빠지고 1개의 사례만 남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결측사례의 문제로 인하여 조사자의 최종의견은 사실상 로짓회귀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차분석에서 종속변인은 기소유예와 소년원송치의 두 범주에 대해서만 수행하였다. 기소유예를 0으로, 소년원송치를 1로 재부호화하여 로짓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254 모델의 적합도 검증

구분	통계치	유의도
-2 Log likelihood	805.270	
Model chi-square	255.337	.000
Nagelkerke R Square	.372	
Cox & Snell R Square	.274	

먼저 〈표 4-254〉에는 모델의 적합도 검증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2 log likelihood는 카이자승 값이 805.270이다. 모델카이자승은 255.337의 값을 보이

며 α=.001수준에서 유의도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아래에서 추정된 모델이 적합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델에서 직접적인 R2 값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유사 R2 값이 표의 아래 두 열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수치는 모델에서 독립변인의 설명력이 대략 25~40%사이에 있음을 보여 준다.

〈표 4-255〉는 모델에서 각각의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조사자의 최종의견, 즉 기소유예인지 소년부송치인지를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11개로서, 사전계획여부, 범행동기의 유흥미·용돈마련여부, 범행동기의 우발·충동여부, 동종전과건수, 대인범죄전력여부, 피해합의여부, 친부모동거여부, 모 애착정도, 음주여부, 학력, 가족의 보호능력이다. 즉 범행 관련하여 사전계획여부, 범행동기가 유흥비·용돈마련인지, 우발·충동적으로 한 것인지가 중요하며, 범죄전력과 피해회복 측면에서는 동종전과 수, 대인범죄 전력, 피해합의 여부가 중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해서는 친부모와 동거여부, 모 애착정도가 중요하며, 학업과 관련하여서는 학력이 중요하며, 생활행태에서 음주여부, 그리고 변화의지 및 지지환경에서는 가족의 보호능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5 로짓회귀분석에 의한 모델구성

변인	B	S.E.	Wald	df	Sig.	Exp(B)
흉기사용	.020	.351	.003	1	.955	1.020
성적 요소	-.115	.366	.098	1	.754	.891
사전계획	-.285	.144	3.937	1	.047	.752
유흥비용돈 마련	.558	.210	7.097	1	.008	1.748
우발충동	-.630	.201	9.877	1	.002	.532
성적 동기	1.220	.657	3.450	1	.063	3.386
범행인정여부	.189	.117	2.608	1	.106	1.208
범행에 대한 후회	.131	.200	.431	1	.511	1.140
과거처분유형	.199	.185	1.157	1	.282	1.220
동종전과건수	.430	.117	13.438	1	.000	1.537
대인범죄 전력	.545	.227	5.747	1	.017	1.724
피해합의 여부	-.233	.088	7.064	1	.008	.792
성별	-.251	.260	.931	1	.334	.778

변인	B	S.E.	Wald	df	Sig.	Exp(B)
친부모 동거여부	.450	.197	5.195	1	.023	1.568
부 애착	.042	.094	.204	1	.651	1.043
모 애착	.194	.093	4.403	1	.036	1.215
가족유대	-.001	.130	.000	1	.996	.999
생활정도	-.240	.159	2.292	1	.130	.786
학력	.518	.251	4.256	1	.039	1.679
무단결석	.168	.197	.721	1	.396	1.183
자퇴	-.409	.215	3.605	1	.058	.664
학교에 대한 태도	.007	.215	.001	1	.974	1.007
음주여부	.414	.113	13.488	1	.000	1.512
흡연여부	-.090	.147	.371	1	.543	.914
가출경험	.060	.141	.177	1	.674	1.061
진술태도(협조여부)	.196	.229	.732	1	.392	1.217
가족의 보호의지	.004	.195	.000	1	.984	1.004
가족의 보호능력	-.414	.161	6.612	1	.010	.661
향후 생활계획여부	-.187	.184	1.033	1	.309	.830
상수	-.789	.655	1.451	1	.228	.454

이 중에서 범행동기가 유흥비·용돈마련인 경우, 동종전과건수, 대인범죄전력여부, 친부모 동거여부, 모 애착정도, 학력, 음주여부는 정적인 방향을 보이고, 나머지 변인은 부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행동기가 유흥비·용돈마련일 때, 동종전과건수가 많을수록, 대인범죄전력이 있을 때, 친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때, 재학중이 아닐 때, 음주경험이 있을 때는 기소유예보다는 소년원송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범행에 대해 사전 계획이 없을 때, 계획적이기보다는 우발·충동적으로 했을 때, 피해합의를 했을 때, 가족의 보호능력이 강할수록 소년원송치가 아니라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위의 모델의 변인들을 사용해서 기소유예인지 소년원송치인지 예측하고, 그러한 예측치가 실제의 최종의견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표 4-256〉이다.

표 4-256 예측값의 분류표

구분		예측치		
		0	1	올바로 분류된 비율
관찰치	0	411	83	83.2
	1	130	174	57.2
	전체 비율			73.3

* 0은 기소유예, 1은 소년원송치

전체적으로 올바로 분류된 비율은 73.3%이다. 기소유예의 결정을 받은 소년 중에서 올바로 분류된 비율은 83.2%이며, 소년원송치를 받은 소년 중에서 올바로 분류된 비율은 57.2%이다. 즉 이 모델은 기소유예를 받은 소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5장

외국의 소년조사제도 비교

홍 영 오

05

외국의 소년조사제도 비교

제1절 일본의 소년조사제도

1. 일본의 소년사건에서의 조사절차

최근 일본에서는 소년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경찰청 통계 "소년비행 등의 개요" 및 일본법무성 범죄백서(2010년판) '소년비행의 동향'에 의하면[62], 2010년의 형법범소년(14세 이상 20세 미만)의 검거인원은 75,846명으로 2년 연속 감소되었지만(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검거인원은 1983년의 196,783명), 인구비(같은 연령층인구 1,000명 당 검거인원)는 18.5명으로 성인범의 약 1.4배 이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최근 개정을 거듭한 일본의 소년법은 全件送致主義를 채택함으로써 소년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가정법원에서 심리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이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현행 소년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조사관을 비롯한 과학적 조사기구를 구축한 가정법원에 모든 소년비행에 관한 선별기능을 부여한 취지라고 평가되고 있다.[63]

---

62) 日本警察廳, "平成23(2011)年警察白書", 統計資料[統計1－43 刑法犯少年の男女別検挙人員及び人口比の推移 (平成13～22年)] : http://www.npa.go.jp/hakusyo/h23/mokuji.htm 및 日本法務省, "平成22(2010)年版犯罪白書" : http://www.moj.go.jp/content/000057052.pdf 參照.

따라서 일본의 소년사건 절차는 비행소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으로서의 조사절차와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종국판단을 내리는 공판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전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공판절차에 앞서 반드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64] 특히 일본의 소년조사제도는 소년사건에 대해서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을 구분하기에 앞서 가정법원에서 소년의 요보호성에 대한 모든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65], 요보호성 조사는 가정법원 조사관과 소년감별소가 조사하는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66] 이처럼 소년조사제도를 이원화한 것은 소년보호사건의 조사대상이 외적인 사정과 내심의 상황에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단일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가정법원 조사관의 조사를 주체로 하여 소년감별소의 감별(우리나라의 '분류심사'에 해당한다)을 부가하도록 한 것이다.[67]

결국 요보호성 조사는 대체로 가정법원 조사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조사 및 시험관찰과 소년감별소에서 이루어지는 자질감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조사를 종합한 결과를 처분의견과 함께 가정법원 조사관이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68]

한편 이러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소년의 보호사건은 '심판에 회부하여야 할 소년의 발견[일본소년법 제6조(통고) 제1항]', '소년의 피의사건에 대한 수사[일본소년법 제41조(사법경찰원의 송치), 제42조(검찰관의 송치)]'라는 발견활동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할 소년을 발견하기 위한 특정의 전문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공적인 기관으로서는 일본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사법경찰직원), 검찰관, 都道府縣知事 및 아동상담소장, 기타 일반인도 비행소년

63) 有田禎宏, 調査官から見た少年非行の實態, "少年法のあらたな展開", 有斐閣, 2001, 211面.

64) 日本少年法[最終改正:平成23(2011)年6月3日法律第六一号]第八條(事件の 調査) : 日本總務省法令データ提供システム ; http://law.e-gov.go.jp/cgi-bin/idxsearch.cgi 參照.

65) 日本少年法[最終改正:平成23(2011)年6月3日法律第六一号]第七條(家庭裁判所調査官の 報告) 第二項 參照.

66) 日本少年法[最終改正:平成23(2011)年6月3日法律第六一号]第九條(調査の 方針) 參照.

67) 平場安治, "少年法", 有斐閣, 1991, 228-229面 ; 菊田幸一, "少年法", 北樹出版, 2002, 33-34面 參照.

68) 平場安治, "少年法", 有斐閣, 1991, 203-243面 ; 平野龍一, 少年非行と少年審判, "講座少年保護2", 大成出版社, 1982, 155-195面 ; 법무부, "분류심사 Case Study", 2009.10., 5쪽 등 참조.

의 발견에 관여한다.[69]

다음에서는 비행사실이 발견된 비행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를 소년조사제도를 중심으로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형사사법단계별 소년조사제도

가. 경찰단계

소년의 피의사건에 대하여 일본소년법 제41조는 사법경찰원[70]이 수사한 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혐의가 있는 때에는 검찰에의 송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법원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直送主義).

이러한 소년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일본에서는 국가공안위원회(우리나라의 경찰위원회에 해당한다)규칙으로 '소년경찰활동규칙'과 경찰청차장통달로'소년경찰활동 추진상의 유의사항에 대하여'를 제정하여 소년사건에 대처하고 있으며, 소년에 대한 조사업무를 소년경찰활동의 주요업무로 규정하고 있다.[71]

1) 근거법령

범죄소년에 대한 경찰조사의 직접적인 법령상 근거는 앞에서 언급한 국가공안위원회규칙인 '소년경찰활동규칙'을 들 수 있다. 즉 '소년경찰활동규칙' 제13조

69) 菊田幸一, "少年法", 北樹出版, 2002, 29面.

70) 사법경찰직원은 사법경찰원 및 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일반사법경찰직원(경찰관)이라 한다(일본형사소송법 제189조 제1항 및 제2항). 일반사법경찰직원 가운데 순사부장 이상을 사법경찰원이라 하고 순사를 사법순사라 한다 : 菊田幸一, "少年法", 北樹出版, 2002, 29面 參照.

71) "少年警察活動規則[平成14(2002)年9月27日國家公安委員會規則第二十号] 第十二條(非行少年についての活動)" 日本警察廳홈페이지 http://www.npa.go.jp/pdc/notification/seian/shounen/shounen20020927.pdf : "少年警察活動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規則[平成19(2007)年10月30日國家公安委員會規則第二十四号] 第十三條(非行少年에 대한 活動)" 日本警察廳홈페이지 http://www.npa.go.jp/safetylife/syonen8/zyoubun.pdf 참조 및 "少年警察活動推進上の留意事項について(依命通達)[平成19(2007)年10月31日警察廳乙生發第7号警察廳次長]" 8面以下 : 日本警察廳홈페이지 http://www.npa.go.jp/pdc/notification/seian/shounen/shounen20071031.pdf 참조.

(비행소년에 대한 활동)[72] 제1항은 '비행소년에 대한 사건의 수사 또는 조사 외에 그 적절한 처우에 이바지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에서 시의적절하게 본인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조언, 학교 기타 관계기관에의 연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같은 조 제2항은 '촉법조사 또는 우범조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특히 가정법원 및 아동상담소와의 연대를 긴밀히 하면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같은 조 제3항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법 제6조의6 제1항에 따라 송치하여야 할 자 또는 아동복지법[73]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통고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14세 미만의 우범소년으로 아동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통고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처우에 대하여는 제1항이 규정한 외에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1조(취지) 제2항은 '소년경찰활동에 관하여는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소년법, 형사소송법, 아동복지법, 범죄수사규범[74], 규칙 기타 법령(지방공공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포함한다)'을 그 간접적인 법령상의 근거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로는 都道府縣의 '청소년보호육성조례'를 들 수 있다.

2) 담당기관

일본경찰의 소년사건 담당부서와 관련하여 '소년경찰활동규칙' 제4조(부문간의 연락등) 제1항은 비행소년에 대한 소년경찰활동을 관장하는 부서를 少年警察部門(이하 소년경찰전담부서로 번역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경찰청의 생활안전국 산하 소년과, 경찰본부(東京都警視廳, 道府縣경찰본부 및 각 방면경찰본부를 말한다)의 소년과, 소년육성과, 소년사건과, 비행집단대책과 등의 소년경찰활동을 관장하는 부서 및 경찰서의 소년과 또는 소년담당계(생활안전과장

72) "少年警察活動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規則[平成19(2007)年10月30日國家公安委員會規則第二十四号] 第十三條(非行少年에 대한 活動)" 日本警察廳홈페이지 http://www.npa.go.jp/safetylife/syonen8/zyoubun.pdf 參照.

73) 昭和22(1947)年法律第164号 : http://law.e-gov.go.jp/cgi-bin/idxsearch.cgi 參照.

74) 昭和32(1957)年國家公安委員會規則第2号 : http://law.e-gov.go.jp/cgi-bin/idxsearch.cgi 參照.

등을 포함한다) 등을 말하며 그 명칭은 불문한다.

東京都警視廳의 경우 생활안전부 소년육성과는 우범소년에 대한 자질감별업무와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에 대한 補導(이하 '指導'라 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75], 여기서 '지도'란 '소년경찰활동규칙' 제6조(조기발견)에 의하면 '비행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처우(즉 소년비행의 방지를 위한 소년상담과 가두지도 및 소년에 대한 사회조사 등)'를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행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처우'라는 소년경찰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년경찰활동규칙' 제2조(정의) 제12호는 경찰본부의 내부조직 가운데 소년지도직원 등을 배치하고, 전문적인 지식 및 기능을 필요로 하거나 계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하는 소년경찰활동에 대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경찰본부장(경시총감 및 道府縣경찰본부장을 말한다)이 정하는'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히 전문적인 지식 및 기능을 필요로 하는 활동을 전담시키고 그 활동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지닌 경찰직원(경찰관을 제외한다) 가운데 경찰본부장이 '소년지도직원(각 都道府縣경찰에서 활동 중인 소년지도직원 및 소년상담직원을 포함한다)'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규칙 같은 조 제11호).

따라서 일본소년법 제6조의2(경찰관등의 조사) 제3항에 의거하여 경찰관은 촉법소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소년의 심리 기타 특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닌 경찰직원(경찰관을 제외한다)에게 압수, 수색, 검증 또는 감정의 촉탁을 제외한 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 경찰본부장은 '경찰직원의직무등에관한규칙'[76] 제1조(경찰직원의 직무)에 의거하여 소년지도직원 가운데 저연령층 소년(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질문 기타 직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77]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을 지녔다고 인정된 자를 당해경찰직원[78]에 지정할 수 있다. 또한

75) 東京都警視廳홈페이지 http://www.keishicho.metro.tokyo.jp/toukei/hikou/hikou_22.pdf 참조.

76) "少年法第六條の二第三項の規定に基づく警察職員の職務等に關する規則[平成19(2007)年10月30日國家公安委員會規則第二十三号]" : 日本警察廳홈페이지 http://www.npa.go.jp/safetylife/syonen10/zyoubun.pdf 參照.

77) '교육훈련'이란 촉법소년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 지식인 저연령소년 일반의 특성, 발달장애 등의 특별한 사정을 지닌 소년의 특성 및 저연령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질문 등의 조사요령에 대한 연수 등을 말한다.

당해경찰직원은 상관인 경찰관의 명을 받아 사건의 원인 및 동기, 당해소년의 성격, 行狀, 경력, 교육정도, 환경, 가정상황, 교우관계 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3) 조사절차 및 방법

'소년경찰활동규칙' 제12조(수사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部門) 제1항은 범죄소년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는 소년의 특성을 배려하면서 개개 소년의 적정한 처우에 진력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이 원칙적으로 소년경찰전담부서에 소속된 경찰관에게 담당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경찰전담부서의 인적 체제나 각 담당부서간의 역할분담의 상황에는 각 都道府縣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찰본부장은 사건의 내용 및 당해 都道府縣의 실정을 감안하여 비행소년과 관련된 사건 중 소년경찰전담부서 이외의 담당부서에 소속된 경찰관에게 수사·조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소년경찰전담부서 이외의 전담부서에 소속된 경찰관에게 수사·조사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한 사건의 예로는, ① 성인피의자를 주체로 하는 사건에 관련된 범죄소년사건, ② 소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검찰관에게 송치되는 범죄소년사건, ③ 소년법 제22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죄와 관련된 범죄소년사건, ④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중요하여 소년경찰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 소속된 경찰관이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소년사건, ⑤ 교통법령위반(범죄통계세칙(1971년 경찰청훈령 제16호)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범죄와 관련된 범죄소년사건 또는 촉법소년사건, ⑥ 교통사고와 관련된 형법 제208조의2(위험운전치사상) 또는 제211조(업무상과

78) 물론 당해경찰직원은 소년의 심리 기타 특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상관인 경찰관의 명을 받아 우범소년과 관련된 사건의 조사도 담당할 수 있다 : "少年警察活動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規則[平成19(2007)年10月30日國家公安委員會規則第二十四号] 第二十八條(虞犯調査를 담당할 수 있는 警察職員)" 日本警察廳홈페이지 http://www.npa.go.jp/safetylife/syonen8/zyoubun.pdf 參照.

실치사상)의 죄와 관련된 범죄소년사건 또는 촉법소년사건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소년경찰활동규칙' 제13조(비행소년에 대한 활동)[79]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조사의 일반적인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법, 소년법 및 아동복지법의 적용에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비행소년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조사에 있어서는 특히 현재 및 행위시 당해소년의 정확한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연령의 확인).

둘째 수사·조사는 관계기관에의 송치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비행소년의 처우 및 당해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재활에 공헌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 그치는 것으로 하여 관계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년의 보호자 기타 소년에 대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선입관과 추측에 빠지지 않은 채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한다(명백히 하여야 할 사항).

셋째 수사·조사가 현저히 지연되는 것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응의 관점에서도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조사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신속한 대응).

넷째 범죄소년사건의 수사를 담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 아동상담소, 학교 기타 관계기관과의 연락을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의 지휘 하에 긴밀하게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범죄수사규범 제206조, 제202조, 제24조).

또한 촉법조사 및 우범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조사시 소년의 行狀 등 필요사항을 연락하는 등, 특히 가정법원 및 아동상담소와의 연대를 긴밀하게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년경찰활동규칙 제13조 제2항, 관계기관과의 연락).

다섯째 범죄소년사건에 대하여는 당해소년의 성명, 주거 외에 학교명, 회사명 등 당해소년을 추측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신문 기타 보도기관에서 발표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범죄수사규범 제209조), 촉법소년사건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보도기관에서의 발표는 특히 신중을 기하여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보도상의 주의).

여섯째 소년경찰전담부서에서는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적정한 처우 및 건전

79) "少年警察活動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規則[平成19(2007)年10月30日國家公安委員會規則第二十四号] 第十三條(非行少年에 대한 活動)" 日本警察廳홈페이지 http://www.npa.go.jp/safetylife/syonen8/zyoubun.pdf 參照.

한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소년사건처리부[촉법조사또는우범조사에관한서류양식을정하는훈령(2007년 경찰청훈령 제23호) 별지양식 제44호의 소년사건처리부를 말한다]'를 구비하고, 조사의 지휘 및 사건의 송치 또는 통고 기타 사건처리의 경과를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년경찰활동규칙 제17조(조사지휘) 제2항, 제30조(조사주임관등) 제1항].

한편 범죄소년에 대하여는 소년사건처리부의 작성을 요하지 않지만, 사건을 송치하거나 송부한 때에는 범죄수사규범 제201조에 따라 범죄사건처리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4) 조사내용

'소년경찰활동규칙' 제15조(촉법조사의 기본) 제1항은 촉법소년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소년법 및 아동복지법에 기초한 조치를 염두에 두고,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한다는 정신으로 조사에 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년의 적정한 처우를 꾀하기 위해서는 비행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개정소년법에 의해 경찰관에게는 수색, 압수 등의 권한이 인정되었지만, 개개 촉법조사에 있어서는 저연령소년의 특성을 배려하면서 이를 적정하게 운용하여 비행사실의 규명 등을 적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촉법조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특히 저연령소년이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비행으로부터 재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 영합의 경향이 있다[80]는 점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특히 타인의 이목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고 소년에 대한 언동을 주의하는 등 온정과 이해로 임함으로써 소년의 심정과 조기재활에 배려하여야 한다(소년경찰활동규칙 제15조 제2항).

한편 촉법조사에 있어서는 소년경찰활동규칙 제16조(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의거하여 사건의 사실, 원인 및 동기 외에 당해소년의 성격, 行狀, 경력, 교육정도 및 가정이나 학교 또는 직장의 상황, 교우관계, 거주지의 환경, 소년비행의 방지 및 재활에 협력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유무 등에 대한 조사를 행하게 된

80) '영합의 경향이 있다'란 소년은 질문자의 위압감에 위축되고, 반론이 곤란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자신의 의식 등을 포기하고 담당자의 의도에 따르는 듯 한 답변을 하기 쉽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 촉법조사에 있어서는 소년경찰활동 제16조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사안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때 가정법원, 아동상담소 등의 관계기관과의 연대 외에 당해소년, 보호자 또는 관계자의 프라이버시에 배려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81] 촉법소년사건에 대하여는 소년사건처리부를 작성하여 촉법조사의 지휘 및 사건의 송치 또는 통고 기타 사건의 처리경과를 명기하여야 한다[소년경찰활동규칙 제17조(조사지휘) 제2항].

또한 촉법조사를 위하여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함에 있어서는 전화, 소환장[촉법조사또는우범조사에관한서류양식을정하는훈령(2007년경찰청훈령제23호) 별지양식 제39호의 호출장을 말한다]의 송부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출석일시, 장소, 용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피소환인에게 확실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소년을 소환함에 있어서는 당해소년이 긴장 또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언동에 주의함과 동시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에 소환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소년경찰활동규칙 제20조(촉법조사를 위한 소환 및 질문) 제3항].[82]

한편 범죄수사, 촉법조사, 소년상담 기타 활동에 있어서 우범소년으로 인정되는 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년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조치를 염두에 두면서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한다는 정신으로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소년경찰활동규칙 제27조(우범조사의 기본) 제1항].

또한 우범조사에 있어서도 사건의 사실, 원인 및 동기 외에 당해소년의 성격, 行狀, 경력, 교육정도 및 가정이나 학교 또는 직장의 상황, 교우관계, 거주지의 환경, 소년비행의 방지 및 재활에 협력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유무 등에 대한 조사를 행하게 된다[소년경찰활동규칙 제29조(조사하여야 할 사항)]. 우범조사에 있어서는 소년경찰활동규칙 제29조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사안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때 가정법원, 아동상담소 등의 관계기

81) "少年警察活動推進上の留意事項について(依命通達)[平成19(2007)年10月31日警察廳乙生發第7号警察廳次長]" 16面以下 : 日本警察廳홈페이지 http://www.npa.go.jp/pdc/notification/seian/shounen/shounen20071031.pdf 參照.

82) 예컨대 학교로 직접 소환연락을 하거나, 소년이 수업 중에 소환하는 것,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소환에 임하는 등 당해소년이 경찰에 소환된다는 사실을 주위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소환방법은 범죄수사규범 제204조의 취지에 따라 피하여야 한다.

관과의 연대 외에 당해소년, 보호자 또는 관계자의 프라이버시에 배려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촉법조사의 과정에서 소년이 요보호아동이어서 바로 아동상담소에 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아동통고서[촉법조사또는우범조사에관한서류양식을정하는훈령(2007년경찰청훈령제23호) 별지양식 제37호의 아동통고서를 말한다]로써 통고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아동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당해양식의 기재사항을 연락함으로써 통고하고 사후에 지체없이 아동통고서를 작성하여 송부한다.

나. 검찰단계

사법경찰원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 사건을 검찰관에게 송치[일본형사소송법 제246조(사법경찰원의 검찰관에의 사건송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소년법 제41조(사법경찰원의 송치)는 '소년의 피의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이를 가정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이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直送 및 直送事件).

또한 검사는 소년의 피의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이를 가정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이와 같다[소년법 제42조(검찰관의 송치)]. 벌금이하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가정법원이 검사에게 송치할 수 없기 때문에[소년법 제20조(검찰관에의 송치) 제1항] , 이상의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특칙을 규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83]

이처럼 일본은 소년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선의주의를 취하고 있는 관계로 검사에게는 소년의 처우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할 권한은 거의 없고 형사처분에 해당하는 벌금이상의 형(특히 사형,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해당

83) 이 점에서 일본의 소년사건은 일반형사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선의주의, 보호우선주의 및 全件송치주의와 함께 기소강제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菊田幸一, "少年法", 北樹出版, 2002, 57面.

하는 범죄혐의가 있는 소년에 대한 수사활동을 담당할 수 있을 뿐이다.[84] 이와 관련하여 소년법 입법당시 소년보호사건절차에서 검사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주장은 있었지만, 종래 소년법상 검사는 가정법원에 사건을 송치할 때에 처우의견을 첨부하는 외에 소년심판절차에 관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00년 소년법개정으로 인하여 소년심판에 있어서 사실인정절차를 적정화하기 위하여 비행사실의 인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일정 사건에 대하여는 소년심판에 검사가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소년법 제22조의2(검찰관의 관여)].

이상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에게는 소년의 처우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할 권한은 거의 없고 형사처분에 해당하는 벌금이상의 형(특히 사형,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해당하는 범죄혐의가 있는 소년에 대한 수사활동을 담당할 수 있을 뿐이다.

다. 재판단계(법원)

가정법원조사관 및 醫務室技官(의사 및 간호사인 법원기관)의 제도는 가정법원의 특색을 보여주는 제도의 하나이다. 이 제도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과학적 성격이 유지되고, 소년심판에 있어서 개별처우나 교육주의의 실현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85] 가정법원조사관은 각 가정법원 및 고등법원 50개소, 지원 202개소에 약 1,500여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사, 관호 및 관찰업무 외에 소년심판규칙에서 규정한 보호처분결정 후의 소년동향의 관찰, 성적의 시찰 등 광범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적 지식을 지닌 사례연구가라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소년사건의 실질적인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가정법원의 조사관 및 의무실기관제도, 소년감별소의 鑑別技官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84) 平野龍一, 少年非行と少年審判, "講座少年保護2", 大成出版社, 1982, 155面.

85) 原口幹雄, 少年事件と家庭裁判所調査官の役割, "少年法のあらたな展開", 有斐閣, 2001, 211面 ; 菊田幸一, "少年法", 北樹出版, 2002, 35面.

1) 근거법령

의무실기관은‘裁判所法[昭和二十二(1947)年四月十六日法律第五十九号]’第六十一条(裁判所技官) 에서 그 법령상의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가정법원조사관은 같은 법 第六十一条の二(家庭裁判所調査官) 제2항에 의해 소년법에서 규정한 소년보호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조사를 담당할 수 있다. 또한 가정법원조사관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같은 법 第六十一条の三(家庭裁判所調査官補) 제1항은 각 가정법원에 가정법원조사관보를 두고 가정법원조사관의 명을 받아 사무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한편 소년감별소는 가정법원의 관호조치결정[소년법 제17조(관호조치) 제1항 제2호]에 의해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면서 가정법원에서 행하는 소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기 위하여,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소년의 자질을 감별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무대신 관리 하의 국가기관이다[少年院法(昭和二十三(1948)年七月十五日法律第百六十九号) 제16조, 제17조].[86] 소년감별소의 감별기관제도는 심판전조사제도 및 과학주의를 확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87]

또한 소년사건의 조사와 관련한 직접적인 법령상의 근거는 상위규범인 소년법 제8조(사건의 조사)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소년법 제8조 제1항은 ‘가정법원은 제6조 제1항의 통고 또는 전조 제1항의 보고에 따라 심판에 부하여야 할 소년이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검찰관, 사법경찰원, 경찰관, 都道府縣知事 또는 아동상담소장이 가정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야 할 소년사건을 송치하여 수리한 때에도 이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가정법원조사관에 명하여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취조 기타 필요한 조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년법 제7조(가정법원조사관의 보고) 제2항은 ‘가정법원조사관은 전항의 보고에 앞서 소년 및

86) 田宮裕編, 少年法條文解說, 有斐閣, 1986, 72面. 少年鑑別所는 현재 일본 전국에 52개소(분소 1개소 포함)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少年院及び少年鑑別所組織規則平成十三(2001)年一月六日法務省令第四号 第十二条(少年鑑別所의 名称 및 位置) 第十八条(分所의 名称 및 位置)] : 日本總務省法令データ提供システム http://law.e-gov.go.jp/htmldata/H13/H13F12001000004.html 參照.

87) 菊田幸一, “少年法”, 北樹出版, 2002, 35面.

보호자에 대하여 사정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고전조사[少年審判規則(昭和二十三(1948)年十二月二十一日最高裁判所規則第三十三号) 第10條(家庭裁判所調査官の報告前の調査 · 法第七条)][88]를 제도화하고 있다.

2) 담당기관

재판단계에서 소년사건의 조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은 가정법원조사관이다. 가정법원조사관은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사례연구가로서 소년보호사건조사의 주된 담당자이다.[89] 가정법원조사관은 조사[소년법 제8조(사건의 조사) 제2항], 관호[같은 법 제17조(관호의 조치) 제1항 제1호] 및 관찰[소년법 제25조(가정법원조사관의 관찰) 제1항]업무 외에 소년심판규칙에서 규정한 보호처분결정 후의 소년의 동향관찰 · 성적시찰[소년법 제38조(보호처분결정 후의 조치) 제1항] 등 광범한 직무를 담당한다.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지만[재판소법 제61조의2(가정법원조사관) 제4항],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문적 직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독립된 직책을 행사할 수 있다. 가정법원조사관은 수석 · 차석 · 총괄주임 · 주임조사관으로 구분할 수 있고, 특히 수석조사관은 각 가정법원에 1명씩 임명되어 주로 조사업무의 감독 · 관계행정기관과의 연락, 조정 등의 직무를 담당한다(재판소법 제61조의2 제3항).[90]

또한 오늘날 선진제국의 소년법원에는 의학적 측면에서 소년을 진단하여 그 결과를 소년심판절차에 반영하려는 동향이 현저하며,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정신의학자, 정신분석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 등으로 조직된 법원의무실(court clinic)이 소년법원에 설치되어 소년심판에 참여하는 방식이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다. 일본도 이를 모델로 하여 가정법원의 '의무실제도'가 가정법원본원은

88) 日本最高裁判所홈페이지 : http://www.courts.go.jp/kisokusyu/kazi_syonen_kisoku/kazi_kisoku_10.html 참조.

89) 佐佐木光明, 少年法改正というけれど、何がどう変わるのか, "ちょっと待って少年法改正", 日本評論社, 1999, 45面.

90) 가정법원조사관의 직역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인 "首席家庭裁判所調査官等に關する規則[昭和57(1982)年最高裁判所規則第4号]"에 의하면, 총괄주임가정법원조사관 이상은 최고재판소가 임명하며, 주임가정법원조사관은 고등법원이 임명한다.

물론 비교적 규모가 큰 지원에도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의무실설치의 목적은 소년법 제9조(조사의 방침) 및 소년심판규칙 제11조(조사의 방침 법제9조)의 과학주의의 취지를 실현하고, 특히 의학적 측면에 입각한 과학적 진단기능의 충실을 구체화하려는 데에 있다.[91]

한편 소년법의 특색인 소년사건에 대한 과학주의의 구현을 위한 또 하나의 제도는 자질감별의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는 소년감별소[92]의 鑑別技官제도이다(소년원법 제16조). 가정법원은 자질의 감별에 대하여는 가능한 전문기관인 소년감별소를 활용하고, 그 감별결과와 사회조사의 결과를 종합화하여야 하는데(소년법 제9조), 이는 '심신의 상황에 대하여는 가능한 소년감별소로 하여금 과학적 감별방법으로 검사시켜야 한다'는 소년심판규칙 제11조 제3항과 같은 취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년감별소 내에서 자질감별의 담당은 감별기관과 감별기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법무교관[93]이 담당한다.

3) 조사절차 및 방법

가정법원은 소년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 심판할 수 없고, 통고, 송치 등 외부의 권한있는 자의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조사, 심판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불고불리원칙의 지배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보호기관으로서의 성격이 현저한 가정법원에서도 사법기관인 이상 불가결의 요소로 일컬어지고 있다.

가정법원조사관은 가정법원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할 소년을 법관에게 보고하기에 앞서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사정을 조사할 수 있다[소년법 제7조(가정법

91) 田宮裕編, 少年法條文解說, 有斐閣, 1986, 75面.

92) 소년감별소는 각 都道府縣廳소재지 등 일본 전국에 52개소(분소 1개소를 포함)에 설치되어 약 200명의 감별기관이 근무하고 있다 : 日本法務省홈페이지 http://www.moj.go.jp/kyousei1/kyousei_kyouse06.html 참조.

93) 법무교관이란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꾀하기 위하여 개개 소년의 문제성에 착안하여 집단활동, 면접, 상담조언, 講話 등을 통하여 건전한 사고와 행동을 지도하는 생활지도, 레크레이션지도 기타 교정교육에 종사하는 자로 전국 52개소(분원 1개소를 포함한다)에 약 800명이 근무하고 있다 : 日本法務省少홈페이지 http://www.moj.go.jp/kyousei1/kyousei_kyouse12.html 참조.

원조사관의 보고) 제2항. 이러한 가정법원조사관의 보고전 조사는 가정법원조사관이 가정법원법관의 명령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인의 사정청취가 허용되지 않는 등 '보고에 필요한 한도의 조사에 그치며, 심도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소년심판규칙 제10조(가정법원조사관의 보고전 조사 · 법제7조)].'

소년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가정법원조사관의 조사는 법관의 조사명령으로 개시되며 이를 위하여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취조 및 기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소년법 제8조(사건의 조사) 제2항. 이러한 조사는 광의로는 심판대상인 비행사실과 요보호성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활동과 수집된 자료 및 사건기록 등에 기초한 종합적 판단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협의로는 심판의 준비절차 내지는 심판전 조사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실무상 조사는 가정법원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의미한다.[94]

가정법원조사관의 조사방법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가정법원에 소년, 보호자 및 참고인을 호출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직접 소년 및 보호자의 주거, 학교, 직장 등을 방문하여 진술의 청취 및 정황의 시찰, 학교 및 직장에 서면으로 조회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조사관 자신이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소년심판규칙 제6조(서류의 작성자, 조서에의 인용)]. 소년 및 보호자, 참고의 진술을 녹취한 조서에는 진술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하며[소년심판규칙 제12조(진술녹취조서의 작성) 제2항], 그 진술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가정법원조사관이 담당하는 사회조사의 방법으로는, ① 기록조사(사건기록 · 소년조사기록 등), ② 조회조사(본적, 학교, 직업, 보호자 등의 조회), ③ 면접조사(소년, 보호자 등)[95], ④ 관찰조사(소년의 행동, 환경 등), ⑤ 심리학적 검사 및

94) 法曹會, 少年法實務講義案, 法曹會, 1991, 160面 ; 田宮裕編, 少年法條文解說, 有斐閣, 1986, 64面.

95) 면접조사는 전문적 판단을 도출하기 위한 생생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방법임과 동시에, 교육적 계기를 부여하여 자기이해를 유발하는 등 보호적 조치로서의 의미까지도 가진 것이므로 극히 중요한 조사방법이다. 따라서 조사 시에는 항상 간절하고 성의있는 태도로 임하여야 하며 소년이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소년심판규칙 제1조(이 규칙의 해석

의학적 검사 등이 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의무실제도의 당면의 운영방침은, ① 소년감별소의 감별결과와 가정법원조사관의 사회조사의 종합적 판단을 실시함에 있어 법관을 보좌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 ② 재택사건처럼 관호의 조치가 불요 또는 불가능한 사건에 대하여 '과학조사실[96]'과 협력하거나 단독으로 과학적 진단을 하여 필요한 경우 치료조치를 가하는 것, ③ 소년감별소의 감별을 받기 위한 예비적 진단을 행하는 것, ④ 가정법원조사관의 조사기술의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과학적 연구를 하고, 조사에 대한 기술적인 조언이나 협력을 담당하는 것 등이다.

4) 조사내용

소년심판절차에 있어서 조사는 가정법원조사관이 담당하는 '사회조사' 및 '시험관찰'과 가정법원법관이 스스로 담당하는 '법적 조사'로 구분된다. 다음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소년법 제8조(사건의 조사) 제2항은 '가정법원이 조사관에게 명하여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취조 기타 필요한 조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법문상의 가정법원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사회조사'라 한다. 사회조사는 소년에게 가장 적절한 처우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범죄적 위험성, 교정가능성, 보호상당성 등의 요보호성에 관한 조사를 의미한다. 비행사실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비행사실을 제외한 사회조사는 실시할 수 없다는 데 견해가 일치한다. 즉 요보호성의 중요한 판단자료는 소년의 비행행동에서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법적 조사'는 비행사실의 존부인정을 위한 조사임에 대하여, 사회조

과 운용, 보호사건취급의 태도) 제2항].

96) '과학조사실'이란 규모가 큰 가정법원에서 자질감별을 주된 역할로 하는 가정법원조사관으로 조직한다. 주로 재택사건의 심리테스트 등 자질감별의 일익을 담당하는 제도라 할 수 있으며, 개개 가정법원조사관 자신도 특수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심리테스트 등을 시의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훈련과정을 이수하여 가정법원에서 사회조사의 일부로서 필요에 따라 심리테스트를 실시하여 자질감별과 사회조사의 종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 田宮裕編, 少年法條文解說, 有斐閣, 1986, 73面.

사는 비행사실의 존부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행의 동기, 원인 등에 기초한 요보호성에 관한 조사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97]

가정법원조사관의 사회조사는 소년, 보호자 또는 관계인의 行狀, 경력, 소질, 환경 등에 대하여[소년법 제9조(조사의 방침)], 구체적으로는 소년에 대한 가정 및 보호자의 관계, 심신상황 등 심판 및 처우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고[소년심판규칙 제11조(조사의 방침 · 법제9조) 제1항], 가족 및 관계인의 경력, 교육정도, 성향 및 유전관계 등에 대해서도 가능한 범주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같은 규칙 같은 조 제2항]. 가정법원조사관의 조사 중에 소년이 비행사실을 부인하거나 가정법원조사관 자신이 비행사실 자체에 의문을 품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가정법원법관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법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가정법원조사관의 조사결과는 적어도 범죄사실의 인정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사회조사는 요보호성의 조사, 즉 범죄적 위험성, 교정가능성 및 보호상당성의 유무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과학적인 범죄위험성의 예측, 교육적 재활에의 이해, 소년이 지닌 장래가능성에의 동찰이 필요하고, 조사의 과학성, 종합성, 전문성이 요청된다. 따라서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전문적 지식, 특히 소년감별소의 감별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소년법 제9조(조사의 방침)].

가정법원조사관은 사회조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법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그 서면에는 가정법원조사관의 처우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소년심판규칙 제13조(가정법원조사관의 조사보고, 법제8조) 제1항 및 제2항]. 또한 가정법원조사관은 서면에 의한 보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조사 및 심판의 모든 단계에서 가정법원법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소년의 처우에 대하여 조사담당자로서의 입장에서 적절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같은 조 제3항].

가정법원은 '보호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당기간 가정법원조사관의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소년법 제25조(가정법원조사관의 관

97) 家庭裁判所, "改訂少年執務資料集(一) 家庭裁判資料第107号", 家庭裁判所, 1978, 298面 ; 法曹會, 少年法實務講義案, 法曹會, 1991, 162面 ; 田宮裕編, 少年法條文解說, 有斐閣, 1986, 70面 ; 菊田幸一, "少年法", 北樹出版, 2002, 76面 ; 原口幹雄, 少年事件と家庭裁判所調査官の役割, "少年法のあらたな展開", 有斐閣, 2001, 213面.

찰) 제1항. 소년법 조문에는 시험관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제25조의 관찰을 '시험관찰'이라 부르고 있다. 시험관찰은 보호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종국처분의 결정을 일정기간 유보하여 그 기간 동안 가정법원조사관이 소년을 관찰하여 그 경과를 참고로 종국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중간적 조치라 할 수 있다.[98]

가정법원조사관의 '시험관찰'은 사회조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시험관찰은 가정법원조사관의 사회조사를 보강하고 수정하여 요보호성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더욱 적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험관찰 중의 가정법원조사관의 활동은 모두 사회조사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시험관찰은 소년을 정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을 특정 조건 아래 가정법원조사관이 소년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조언, 지도, 환경정비 등의 교육적 재활을 실시하면서 소년의 행동을 능동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시험관찰은 일반적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정법원 담당조사관이, ① 소년 및 보호자를 정기적으로 출두시키거나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가정법원조사관이 직접 카운슬링, 작문지도, 일기지도, 심리검사, 가정관계 조정 등을 실시하거나, ② 직장의 고용주, 학교교사 등에게 협력이나 원조를 의뢰, 즉 소년이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학교교사와 비밀리 연대하여 관찰을 실시하거나, ③ 교통관계사건, 독극물단속법위반사건 등에서 강습 등의 형식으로 집단상담, 집단토의, 과제연구 등의 방법으로 관찰지도를 실시하거나, ④ 관찰소년의 신병을 지도위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된다.[99] 가정법원 담당조사관은 시험관찰 중 끊임없이 소년의 동향을 주시하고 관찰 중의 조사결과는 가정법원법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소년심판규칙 제40조(가정법원조사관의 관찰에 부하는 결정의 방식 등, 법제25조) 제5항 및 제13조(가정법원조사관의 조사보고, 법제8조)].

한편 '관호조치'는 가정법원이 조사 및 심판을 하기 위하여 소년의 심정안정을 꾀하면서 그 신병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서 '가정법원조사관관호(재택관호)'

98) 菊田幸一, "少年法", 北樹出版, 2002, 78面.

99) 法曹會, 少年法實務講義案, 法曹會, 1991, 220-221面 ; 菊田幸一, "少年法", 北樹出版, 2002, 79面.

와 소년감별소에 송치하여 신병을 구속하는 '관호조치(수용관호)'로 구분할 수 있다[소년법 제17조(관호의 조치)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가정법원조사관관호는 소년의 신병을 실제로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을 가정 등에 둔 채로 조사관이 수시로 소년과 접촉하면서 조사관의 인격적 영향력으로 소년에게 일종의 심리적 구속을 부여함으로써 관호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제도이다. 가정법원조사관의 관호결정으로 조사관에게는 관호의 권한과 의무가 발생하지만, 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는 불가능하다고 한다.[100] 가정법원조사관관호의 결정은 가정법원조사관을 지정하여[소년심판규칙 제20조(관호조치 등의 방식, 법제17조등) 제1항], 원칙적으로 소년의 면전에서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소년심판규칙 제3조(결정의 고지) 제2항 제1호]. 또한 지정된 가정법원조사관의 변경(같은 규칙 제20조 제3항)이나 관호조치의 변경(소년법 제17조 제8항)도 결정으로써 가능하지만, 이 또한 소년의 면전에서 선고하여야 한다. 소년 및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시설, 단체 등에 소년을 위탁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을 가정법원이 지불할 수 없다고 이해되고 있다.[101]

가정법원조사관에 의한 관호의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상소년의 특성과 그 생활환경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으며, 가정법원 담당조사관이 대상소년과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상호 신뢰관계를 두텁게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조사관의 입장에서는 사건수리 시에는 대상소년의 특성, 생활환경 등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가정법원조사관관호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재택관호는 그 실질에 있어서 시험관찰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가정법원조사관의 인격적인 영향력에 의존하는 재택관호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부수적으로 다양한 편의를 꾀할 수 있는 시험관찰을 취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102] 이처럼 소년의 신병보전으로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조사관관호는 실무상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고 한다.[103]

100) 家庭裁判所, "改訂少年執務資料集(一) 家庭裁判資料第107号", 家庭裁判所, 1978, 439面.
101) 家庭裁判所, "改訂少年執務資料集(一) 家庭裁判資料第107号", 家庭裁判所, 1978, 442面.
102) 須須木主一, 觀護措置をめぐる諸問題, "少年法改正", 慶応通信, 1972, 136面.
103) 法曹會, 少年法實務講義案, 法曹會, 1991, 132面 ; 菊田幸一, "少年法", 北樹出版, 2002, 66-67面.

소년의 심신상황에 대해서는 소년감별소에서 과학적 감별의 방법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소년심판규칙 제11조(조사의 방침 · 법 제9조) 제3항]. 관호조치결정에 따라 소년감별소에 수용된 소년에 대한 소년감별소의 '감별(자질감별 또는 심신감별이라 한다)'은 주로 심리검사, 행동관찰 등을 통하여 소년의 심신상황을 파악하고 비행행동을 이해하여 장래의 처우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104] 이러한 감별은 가정법원의 관호조치에 의해 수용되는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용감별', 가정법원의 의뢰를 받은 소년에 대한 감별로서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년이 가정법원이나 소년감별소를 방문하여 감별받는 '재택감별', 검찰관 · 소년원 · 보호관찰소 등에서 의뢰하는 감별인 '의뢰감별'로 구분된다.[105]

다음으로 가정법원이 소년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가정법원법관은 가정법원조사관에게 사회조사를 명령함에 앞서, 주로 사건기록을 토대로 심판조건이나 비행사실존재의 개연성에 대하여 '법적 측면에서 조사(소위 법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처럼 가정법원법관의 법적 조사를 가정법원조사관의 사회조사에 선행시키는 이유는 사회조사가 소년이나 보호자의 프라이버시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므로 심판조건이나 비행사실존재의 개연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사회조사를 실시하면 소년에 대한 권리침해, 목적의 제약 등 부적절한 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106]

법적 조사는 가정법원법관이 스스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실무상으로는 담당서기관의 보좌 하에 실시된다. 즉 담당서기관은 소위 진행관리사무의 일환으로 소년의 연령, 관할의 유무 등과 같은 심판조건의 존부, 소년이 비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기록을 토대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법관에게 보고하게 된다. 따라서 가정법원법관은 담당서기관의 보고를 참고로 법률기록을 정밀하게 심사하여 심판조건이나 비행사실존재의 개연성을 판단하게 된다.

104) 少年鑑別所処遇規則[昭和二十四(1949)年五月三十一日法務庁令第五十八号] 第17條 以下 參照 ; 日本總務省法令データ提供システム http://law.e-gov.go.jp/cgi-bin/idxsearch.cgi 參照.

105) 森下忠, "刑事政策大綱 Ⅱ", 成文堂, 1990, 370-371面 ; 법무부보호국, "외국의 소년사법제도", 법무부, 2005 참조.

106) 法曹會, 少年法實務講義案, 法曹會, 1991, 161面 ; 田宮裕編, 少年法條文解說, 有斐閣, 1986, 67面 ; 菊田幸一, "少年法", 北樹出版, 2002, 77面.

가정법원법관은 법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심판조건이나 비행사실존재의 개연성에 대한 심증이 있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조사관에게 사회조사명령을 내리게 되지만, 심판조건의 부존재가 명백한 경우(단, 관할 및 연령초과를 제외한다)이거나 비행사실존재의 개연성에 대한 아무런 심증이 없는 경우에는 심판불개시결정을 내리게 된다. 또한 심판조건이나 비행사실존재의 개연성에 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가정법원이 경찰관, 보호관찰관, 보호사, 아동복지사 또는 아동위원에게 원조의뢰[소년법 제16조(원조, 협력) 제1항]하거나, 공무소, 공사단체, 학교, 병원 기타에 대하여 필요한 협력을 의뢰(같은 조 제2항)하거나,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 검증, 감정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같은 법 제14조(증인신문, 감정, 통역, 번역) 및 제15조(검증, 압수, 수색)]. 특히 비행사실존재의 개연성에 대한 가정법원의 심리는 심판을 개시하고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판기일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07]

라. 교정단계

1) 분류처우의 개요 및 분류기준

일본의 少年院은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소년법 제24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 제3호]된 비행소년(12세 이상 20세 미만)에 대하여 사회부적응의 원인을 제거하고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교정교육을 담당하는 법무성소관의 시설로서 2010년 4월 현재 일본 전국에 52개소(분원 1개소 포함)가 설치·운영되고 있다[少年院法昭和二十三(1948)年七月十五日法律第百六十九号 第3條 第1項 및 少年院및少年鑑別所組織規則平成十三(2001)年一月六日法務省令第四号 第一條(少年院의 名称 및 位置), 第8條(分院의 名称 및 位置)].[108] 즉 소년원은 강제력으로써 비행소년을 시설 내에 구속하여 교정교육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생활에 적응시켜 갱생의

107) 法曹會, 少年法實務講義案, 法曹會, 1991, 161面 ; 菊田幸一, "少年法", 北樹出版, 2002, 77面.

108) 日本法務省홈페이지 http://www.moj.go.jp/kyousei1/kyousei_kyouse04.html ; http://www.moj.go.jp/kyousei1/kyousei_kyouse16-04.html 및 日本總務省法令データ提供システム http://law.e-gov.go.jp/cgi-bin/idxsearch.cgi ; http://law.e-gov.go.jp/htmldata/H13/H13F12001000004.html 參照

결실을 획득하려는 목적을 가진 소년보호제도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설내 처우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소년원은 교정교육의 효율성을 촉진하고 범죄오염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심신장애의 유무, 범죄적 경향의 정도라는 네 가지 점을 기초로 초등, 중등, 특별, 의료소년원으로 분류·법정됨으로써 소년원에 있어서 교정교육의 기반이 이러한 분류처우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소년원법 제2조 제1항).

소년원에는 비행의 진행정도에 따라, 조기개선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의 계속적, 집중적인 지도와 훈련에 의해 그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대할 수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단기처우'(단기교과교육처우과정, 단기생활훈련처우과정 등, 수용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조기개선의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개방처우에 적합한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단기처우'(수용기간은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 및 단기처우에 적합하지 않은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처우'(생활훈련과정, 직업능력개발과정, 교과교육과정, 특수교육과정, 의료조치과정 등, 수용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단기처우와 장기처우에는 비행소년의 문제성, 교육의 필요성 등에 따른 단기과정이 개설되어 있다.[109]

다음에서는 교정단계에서의 비행소년에 대한 분류처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근거법령

소년원에 수용된 비행소년에 대한 개별처우를 위한 조사의 법적 근거로는 소년법 제56조(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제3항[110]과 소년심판규칙 및 소년원처우규

109) 日本法務省, "平成22(2010)年版犯罪白書" http://hakusyo1.moj.go.jp/jp/57/nfm/n_57_2_4_2_4_2.html 및 日本法務省홈페이지 http://www.moj.go.jp/kyousei1/kyousei_kyouse04.html ; "少年院の運營について", 昭和52(1977)年5月25日矯政局長依命通達 ; 錦川徹, 少年院の現代史, 比較法制研究 第30号, 國士館大學, 2007, 122面 參照.

110) 소년법 제56조 제3항은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된 16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형법 제12조 제2항 또는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6세에 이를 때 까지 소년원에서 그 형을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년에 대해서는 교정교육을 받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

칙(이들 규칙에 대해서는 담당기관 및 조사절차 및 내용의 개소에서 후술한다) 그리고 소년원법을 들 수 있다.

상위규범인 소년원법 제1조의2는 '소년원에 있어서 처우는 개개 재원자의 연령 및 심신의 발달정도를 고려하여 그 특성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소년원법 제2조 제1항은 소년원을 초등소년원, 중등소년원, 특별소년원 및 의료소년원으로 구분하여 법정함으로써 소년원에 있어서 교정교육의 기반이 이러한 분류처우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소년원법 제2조 제2항은 '초등소년원은 현저한 심신장애가 없는 12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를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중등소년원은 현저한 심신장애가 없는 16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를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특별소년원은 현저한 심신장애는 없지만, 범죄적 경향이 진행된 16세 이상 23세 미만의 자를 수용하거나 16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소년원수용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의료소년원은 현저한 심신장애가 있는 12세 이상 26세 미만의 자를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수용할 자의 남녀구별에 따라 소년원을 설치하고, 의료소년원의 경우 남녀를 分隔[111]하여 수용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단서)'고 규정함으로써 교정교육의 효율성을 촉진하고 범죄오염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행소년의 성별에 따른 분류처우를 천명하고 있다.

3) 담당기관 및 구체적 절차

소년원수용소년의 분류처우는 먼저 가정법원법관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즉 가정법원법관은 소년원송치를 결정함에 있어 송치하여야 할 소년원의 종류를 소년원법 제2조에 규정된 4종류의 소년원에서 선택하여 지정하게 된다[소년심판규칙 제37조(각종 보호처분의 형식과 통지 등, 법 제24조) 제1항]. 여기서 유의하

해 소년원에서 형의 집행을 받는 16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원수용수형자'라 한다(소년원법 제1조).

111) '분격'이란, 수용의 장소를 서로 격리하여 단절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격수용시설이 있는 의료소년원은 남녀를 혼용수용하게 된다 : 日本矯正協會, 研修教材 '少年院法' 全訂版, 2003, 29面.

여야 할 점은 가정법원법관의 소년원송치의 결정은 소년원의 종류를 지정하는 것일 뿐,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소년원을 특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112]

다음으로 가정법원법관에 의한 소년원의 종류가 지정되면, 소년의 수용분류를 더욱 철저히 하고 처우의 개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각 방면교정관구장의 '보호소년분류규정'에 의한 개개 소년원의 세밀하고 명확한 분류에 따라 소년감별소장이 감별업무를 관장하는 수석전문관 및 총괄전문관의 보좌 아래 구체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소년원을 지정하게 된다[少年院및少年鑑別所組織規則 제16조(소년감별소 수석전문관의 업무), 제21조(소년감별소의 총괄전문관) 제3항].

마지막으로 지정된 소년원에서는 입원한 소년에 대한 개별처우를 위한 분류를 실시한다. 소년원에는 서무과, 의무과 및 수석전문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석전문관이 처우에 관한 분류조사업무와 입출원사무를 관장하게 된다[少年院및少年鑑別所組織規則 제6조(소년원 수석전문관의 직무) 제1항 제1호 및 제4호].

4) 조사내용

가정법원이 비행소년에 대한 소년원의 종류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분류의 기준이 되는 성별, 연령은 가정법원법관의 명확한 판정이 가능하지만, 현저한 심신장애의 유무와 범죄적 경향의 심도에 관한 자료는 가정법원조사관이 작성한 조사결과의 보고 및 의견[소년심판규칙 제13조(가정법원조사관의 조사보고, 법제8조) 제1항 및 제2항]과 소년감별소의 감별결과[소년법 제9조(조사의 방침)]를 활용하여 심리를 담당하는 가정법원법관이 판단하여야 한다. 이 때 '감별을 위한 조사'는 대체로 근친자 및 보호자, 성장력, 교육력 및 직업력, 신체상황 및 정신상황, 불량행위력 및 본사건의 행위, 입소 후의 동정, 기타 참고사항 등을 가정법원의 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에는 市町村役長, 경찰관서, 학교 등에 조회하여 소년감별소의 수석전문관이 담당하게 된다. 또한 자료조사가 가능한 사항에 관하여는 소년과의 면접조사는 금지된다.[113]

---

112) 田宮裕編, 少年法條文解說, 有斐閣, 1986, 305面.

113) 소년감별소처우규칙 제19조 및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 소년원및소년감별소조직규칙 제16조(소년감별소 수석전문관의 직무) 제3호 참조.

이러한 방법으로 수용할 소년원이 지정되면 지정소년원의 수석전문관의 관장 아래 입원소년에 대한 개별처우를 위한 분류가 실시된다[소년원및소년감별소조직규칙 제6조(소년원 수석전문관의 직무) 제1항 제4호]. 입원절차를 마친 소년은 단독실에서 1-2주 정도 대기하게 되는 데, 이 기간 동안 소년원 수석전문관의 총괄 아래 소년원의 통괄전문관이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소년감별소에서 실시한 감별결과와 각종 테스트를 통하여 개개 소년의 비행과 관련된 인격상의 문제나 가정환경, 학교에서의 문제 등이 다양한 각도에서 철저하게 분석된다.[114] 또한 필요한 경우 소년원장은 수용소년에 대한 자질감별을 소년감별소에 요구할 수 있다[소년원법 제16조의2 제1항].

한편 소년원의 처우과정은 재원자를 범죄적 경향, 학력정도, 장래진로희망, 심신상황 등에 따라 분류하고 재원자의 특성에 알맞은 가장 효과적인 처우를 행하기 위하여 교정교육의 실시영역에 경중을 설정하는데, 소년원의 처우과정의 종류 및 대상자를 〈표 4-1〉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15]

표 5-1 일본소년원의 처우과정 등 2010년 현재]

처우구분	처우과정	처우과정의 세분	대상자
일반단기 처우	단기교과교육과정(SE)	-	의무교육과정의 이수를 필요로 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교육을 필요로 하고 이를 이수할 의욕이 인정되는 자
	단기생활훈련과정(SG)	-	사회생활에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설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지도를 필요로 하는 자
특수단기 처우(O)	-	-	일반단기처우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비행의 경향이 비교적 진행되어 있지 않는 동시에 개방처우에 적합한 자
장기처우	생활훈련 과정	G1	성격의 편향이 현저하고 반사회적인 행동경향이 현저하기 때문에 치료적인 지도 및 심신훈련을 특히 필요로 하는 자
		G2	외국인이어서 일본인과 다른 처우를 필요로 하는 자
		G3	비행의 중대성 등에 의해 소년이 지닌 문제성이 극히 복잡·심각하기 때문에 그 교정과 사회복귀의 도모에 특별처우를 필요로 하는 자
	직업능력 개발과정	V1	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한 직업훈련(10개월 이상)의 이수를 필요로 하는 자
		V2	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한 직업훈련(10개월 미만)의 이수를 필요로 하는

114) 關力, 非行少年はこう扱われる, 有信堂高文社, 1991, 132面 ; 이춘화, "소년조사제도론", 한국학술정보(주), 2007, 134-135쪽 참조.

115) 日本法務省, 犯罪白書平成22년(2010)年版第4編第2章第4節2.少年院での処遇 : 日本法務省홈페이지 http://hakusyo1.moj.go.jp/jp/57/nfm/n_57_2_4_2_4_2.html#h04020409 參照.

처우구분	처우과정	처우과정의 세분	대상자
			자 또는 직업상의 의식, 자식, 기능 등을 고양시키기 위한 직업지도를 필요로 하는 자
	교과교육 과정	E1	의무교육과정의 이수를 필요로 하는 자 중 12세에 달한 날 이후 최초의 3월 31일이 경과한 자
		E2	고등학교교육을 필요로 하고 이를 이수할 의욕이 인정되는 자
		E3	의무교육과정의 이수를 필요로 하는 자 중 12세에 달한 날 이후 최초의 3월 31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특수교육 과정	H1	지적 장애자로서 전문적 의료조치를 필요로 하는 현저한 심신장애가 없는 자 및 지적 장애자에 대한 처우에 준하는 처우를 필요로 하는 자
		H2	정서적 미성숙 등에 의해 비사회적인 형태의 사회 부적응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전문적 치료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
	의료조치 과정	P1	신체질환자
		P2	지체부자유 등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
		M1	정신병자 및 정신병의 의심이 있는 자
		M2	정신병질자 및 정신병질의 의심이 있는 자

3. 소년조사 담당 주체

가. 조사관의 소속 및 역할과 현황

소년법상 비행소년의 조사를 총괄하는 가정법원조사관은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등 소위 인간관계 제과학의 지식이나 기법과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소년비행의 원인 등을 조사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 가정법원 및 각 고등법원에 소속된 법원직원으로 활동한다(재판소법 제61조의2(가정법원조사관) 제1항].[116] 현재 가정법원조사관은 각 가정법원 및 각 고등법원 50개소, 지원 202개소에 약 1,500여명이 배치되어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사례연구가로 활동하고 있다.

가정법원조사관은 조사 시 소년에 대하여 반성을 촉구하고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면접지도를 실시하는 외에, 소년을 지역미화활동 등에 참가시키거나, 피해자의 고충을 청취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보호자에 대해서도 양육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감호책임의 자각을 촉구하는 등 소년의 갱생을 위하여 필요한 조

116) 日本最高裁判所홈페이지http://www.courts.go.jp/saiban/syurui syonen syonen_kankei.html#kasaityousakan 參照.

언과 지도를 실시한다.[117]

法務技官(鑑別技官)은 심리학을 전공한 전문직 공무원으로 원칙적으로 소년감별소에 채용되어 소년의 자질감별업무에 종사한다. 감별기관은 일본 전국에 설치된 소년감별소 52개소(분소 1개소 포함)에서 약 200명이 자질감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감별기관의 주된 역할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송치된 비행소년에 대하여 각종 전문적 검사, 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지능이나 성격 등 자질상의 특징, 그 소년이 비행에 빠지게 된 원인, 향후 건전한 소년으로 갱생시킬 수 있는 처우의 지침 등을 명백하게 하는 데 있다. 감별기관의 감별결과는 '감별결과통지서'로서 가정법원에 송부되어 가정법원의 심판이나 소년원의 지도, 원조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소년감별소에서는 일반인(자녀문제로 고민하는 보호자, 학교관계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행문제, 지능이나 성격문제, 가정폭력, 왕따, 등교거부 등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감별기관이 담당하는 주된 역할의 하나라 할 수 있다.[118]

法務教官은 소년감별소에 송치된 소년의 신병을 보호하여 소년이 안심하고 심판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심정의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소년의 문제성, 개선가능성 등을 탐구하여 그 자질감별에 도움이 되도록 면접, 상담조언 기타 업무에 종사하는 법무공무원으로 일본 전국의 52개(분원 1개소 포함) 소년원에 약 2,200명이, 52개(분소 1개소 포함) 소년감별소에 약 800명이 근무하고 있다.[119]

나. 조사관의 자격 및 선발기준 : 전문성 확보기준 1

가정법원조사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직원(가정법원조사관보)채용Ⅰ종 시험에 합격하여 가정법원조사관보로 채용될 필요가 있다. 채용은 일본최고법원이 일괄적으로 실시하여 각 법원에 가정법원조사관보로 배치된다. 그 후 법원직원종합연수소에 입소하여 약 2년간의 연수과정을 수료하면 가정법원조사관으로

117) 日本最高裁判所홈페이지http://www.courts.go.jp/saiban/syurui/syonen/syonen_tyousa.html 參照.
118) 日本法務省 홈페이지 http://www.moj.go.jp/kyousei1/kyousei_kyouse15.html 參照.
119) 日本法務省 홈페이지 http://www.moj.go.jp/kyousei1/kyousei_kyouse12.html 參照.

임명된다. 가정법원조사관으로 임명되는 단계에서 하나 이상의 심리테스트에 관한 기법, 직무영역에 있어서 판사보 수준의 법적 지식 등을 지득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조사관으로 임명된 후에는 주임가정법원조사관의 지도 아래 개별 사건을 담당한다.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소년이나 가정의 실지조사, 파악 등이 주된 임무로 부여된다.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는 일정한 경우 가정법원법관의 명령없는 조사도 인정되고 있는데[소년법 제7조(가정법원조사관의 보고) 제2항], 이는 일반적으로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관의 명령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원직원에 대하여 인정된 권한으로서 이례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다.[120]

가정법원조사관보채용Ⅰ종시험의 수험자격은 30세 미만의 일본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가공무원법[昭和二十二(1947)年十月二十一日法律第百二十号] 제38조(결격조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다.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차 시험종목은 일반적 지식 및 능력에 대한 필기시험 40문제가 출제되는 교양시험(택일식)과 전문적 지식 및 능력에 대한 필기시험인 전문시험(기술식)으로 구분되는데, 전문시험(기술식)은 심리학분야, 사회학분야, 사회복지학분야, 교육학분야의 4분야 가운데 1분야를 선택하여야 한다. 제2차 시험은 과제에 대한 식견, 판단력 및 이해력에 대한 필기시험 1문제가 출제되는 교양시험(논문식)과 전문적 지식 및 이론의 응용능력에 대한 필기시험 2문제가 출제되는 전문시험(논문식) 및 성품 등에 대한 개별면접인 구술시험으로 구성된다. 전문시험(논술식) 2문제는 임상심리학, 발달심리학, 사회심리학, 가족사회학, 사회병리학, 사회복지원조기술, 아동복지론, 노인복지론, 교육방법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민법, 형법 등에서 출제되는 15문제 가운데 2과목 2문제를 선택하여야 한다.[121]

法務技官(鑑別技官)의 응모자격은 대학원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소년의 건전육성에 관심과 열의를 가진 자로서 대학원에서 심리학관련학과를 전공하여 비행소년의 자질감별에 필요한 심리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 경험, 기능을 가진 자로 한정하여 채용하고 있다.[122]

120) 日本最高裁判所홈페이지 http://www.courts.go.jp/saiyo/siken/saiyo_h1_siken.html 參照.
121) 日本最高裁判所홈페이지 http://www.courts.go.jp/saiyo/siken/saiyo_h1_siken.html 參照.

法務敎官은 30세 미만의 일본국적을 가진 자로 대학졸업 및 졸업예정자, 이들과 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人事院이 인정한 자, 단기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이들과 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人事院이 인정한 자가 응모할 수 있으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다.[123]

다. 조사관에 대한 교육내용 : 전문성 확보기준 2

가정법원조사관은 가정법원조사관보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법원직원종합연수소에서 2년간의 연수를 수료하면 가정법원조사관으로 임명된다. '법원직원종합연수소'는 가정법원조사관의 양성, 연수, 연구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재판소법' 제14조의2(법원직원종합연수소)에 의거하여 최고법원에 설치된 부속연수기관이다. 법원직원종합연수소는 연수부문과 사무국부문으로 구분되어, 연수부문은 법원서기관연수부, 가정법원조사관연수부, 일반연수부로 구성된다.

법원직원종합연수소에서의 연수는 가정법원조사관을 양성하기 위한 연수(양성과정)와 양성과정이외의 연수로 구분되는데, 가정법원조사관양성과정에서는 헌법, 민법, 형법, 가사심판법, 소년법 등의 법률과목과 임상심리학, 발달심리학, 가족사회학, 범죄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등의 관련과학과목 외에, 조사사무, 사례연구, 심리테스트기법연습, 면접기법연습 등 가정법원조사관에 필요한 관련법규나 전문적 지식, 기법에 관한 다양한 과목이 설강되어 있다. 이들 과정을 수료하면 가정법원조사관에 임명된다.

한편 양성과정이외의 연수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담당직무의 지식이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정법원조사관의 경험년수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124] 이들 양 과정의 교관 대부분은 실무를 떠나 연수교육의 직무를 수행하는 가정법원조사관이 담당한다.

A種認定法務技官(鑑別技官)選考採用者 및 법무교관채용자의 경우는 각 소년감별

122) 日本法務省 홈페이지 http://www.moj.go.jp/kyousei1/kyousei_kyouse15.html 參照.
123) 日本法務省 홈페이지 http://www.moj.go.jp/kyousei1/kyousei_kyouse12.html 參照.
124) 日本最高裁判所홈페이지 http://www.courts.go.jp/saikosai/syokuinkensyujo/ 參照.

소에서 준비한 연수프로그램 외에 채용 1년째에 기초과(신채용직원)연수, 5년째에 응용과(전문직)연수를 동경지소나 교정연수소지소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10년째에는 고도의 학술 및 실무를 습득시키기 위한 특별과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125] 교정연수소에서는 강의형식의 수업 외에 세미나형식의 연습, 호신술훈련, 피수용자체험실습 등 다양한 연수방법을 채택하여 감별기관이나 법무교관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의 육성을 꾀하고 있다. 또한 응용과연수는 전문관으로 승진한 자가 수강하는 과정으로 입소시험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126]

제2절 독일의 소년조사제도

1. 독일의 소년사건에서의 조사절차

독일의 소년심판절차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직권주의가 채택되어 있지만, 소년법원보조기관의 대표자가 심판에 출석하고 [소년법원법(Jugendgerichtgesetz, JGG) 제38조],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심판이 진행(같은 법 제48조)되는 점이 형사소송절차와 크게 다른 점이다. 또한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관할법원과 심판절차에의 관여자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독일소년사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일정 중대사건[127]은 직업법관 3명과 남녀 각 1인의 참심원으로 구성되는 지방법원의 대소년재판부(grosses Jugendgericht)가 관할한다(소년법원법 제41조 제1항). 교육처분이나 훈계처분, 1년 미만의 소년형이 부과되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은 소년부법관의 단독심리가 행해지는 구법원의 절차에 繫屬한다(소년법원법 제39조). 이들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년부법관 1명

125) 日本法務省 홈페이지 http://www.moj.go.jp/kyousei1/kyousei_kyouse15.html 參照.

126) 日本法務省 홈페이지 http://www.moj.go.jp/kyousei1/kyousei_kyouse18-03.html 參照.

127) 구체적으로는 '법원조직법'상 참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건, 소년참심법원의 제안에 의해 사건의 특별한 중대성을 감안하여 수리된 사건, 소년사건과 성인사건을 병합한 경우로 일반법의 규정에 따라 성인에 관하여 대형사부가 관할권을 갖는 경우 등이다.

과 남녀 각 1명씩의 참심원으로 구성되는 구법원(Amtsgericht)[128]의 소년참심법원[129]이 관할권을 가진다(소년법원법 제40조).

이러한 독일의 소년심판절차에서 소년심사제도는 비행소년에 대한 검사의 조사절차를 보조하는 소년법원보조기관(Jugendgerichtshilfe)이라는 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소년심판절차에서는 교육적, 사회적 및 보호적인 견지가 채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소년심판절차는 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구성되는데, 소년사건으로 취급될 수 있는 사건의 준비절차에서 소년부검사(Jugendstaatsanwalt)는 보조자를 활용할 수 있다. 준비절차에서는 사실을 규명할 뿐만 아니라 소년피의자의 인격도 조사의 대상이 된다. 즉 소년법원법 제31조 제1항은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피의자의 생활상황 및 육체적, 정신적 평가에 도움이 되는 모든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비절차에서는 비행사실과 인격 및 생활환경조사가 함께 이루어지는데,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는 검사가 담당하지만, 인격 및 생활환경조사는 소년법원보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며, 소년 등의 심판절차에는 그 소년 등의 조사를 담당한 소년법원보조기관의 대표자를 출석시키도록 하고 있다(소년법원법 제38조 제2항 제4문).

2. 형사사법단계별 소년조사제도

가. 경찰단계

독일에서도 비행소년에 대한 조사절차의 개시는 연방형사국(Bundeskriminalamt)[130]과 각 주의 지방경찰(Landespolizei)에 의해 개시되는데, 경찰은 검사와 소

128) 독일의 구법원은 위경죄, 경죄 및 중죄에 대하여 제1심의 관할을 갖는 형사법원이다.

129) 독일에서 소년법원이란 참심법원으로(소년법원법 제17조 제1항) 구법원의 部이다. 소년법원법은 제1심의 소년법원관할사건을 모두 구법원에 집중하고 있다.

130) 독일의 경찰(Law enforcement in Germany)은 세 가지 기구로 대별할 수 있다. 즉 연방수준의 경찰인 연방경찰[Bund, 연방형사국(Bundeskriminalamt)과 연방경찰국(Bundespolizei)]과 주수준의 경찰인 지방경찰(Landespolizei) 및 지구수준의 경찰(Kommunen) 이 그것이다 : http://ja.wikipedia.org/

년법원보조기관제도의 보조기관[131]으로서 검사가 준비절차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와 소년법원보조기관이 실시하는 인격조사 및 생활환경조사에 필요한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보조하게 된다.

독일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이라는 용어는 찾아 볼 수 없으며, 경찰이라는 용어조차도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임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제161조)'으로 표기하고 있는 관계로 경찰의 소년조사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찰의 소년조사절차단계에서는 '기소법정주의(Legalitätsgrundsatz : Legalitätsprinzip)'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의 일반규정[예컨대 제160조(검사의 임무) 제3항의 법원보조(Gerichtshilfe)[132], 제161조(검사의 권한), 제163조(경찰의 임무), 제152조(기소법정주의) 제2항 등]이 적용되어 소년조사에 대한 간접적인 근거법령으로 작용한다.[133]

보조기관으로서의 경찰은 검사의 비행사실조사와 소년법원보조기관의 인격조사에 기초가 되는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경찰의 조사권한은 객관적인 비행사실과 그 비행여부에 대한 조사로 국한된다.

나. 검찰단계

소년부검사(Jugendstaatsanwalt)제도는 독일소년사법의 특징적인 제도의 하나이다. 독일연방 전체 약 6,000여명의 검사 중 약 900명이 소년부검사로 활동하

---

wiki/%E3%83%89%E3%82%A4%E3%83%84%E3%81%AE%E8%AD%A6%E5%AF%9F 참조.

131) 독일은 각 주(Land)가 자치정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지방경찰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경찰은 치안유지라는 행정경찰기능과 범죄수사라는 사법경찰기능을 함께 수행하는데 사법경찰기능을 담당하는 경찰을 사법경찰이라고 한다. 즉 독일은 사법경찰을 경찰의 기능에서 분리하여 검찰기능의 일부로 흡수해서 검사의 보조자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사법경찰관리는 경찰 중에서 검사의 보조자가 되는 특정부류의 경찰을 말한다 : 서울고등검찰청, 수사지휘론, 1998, 46쪽 참조.

132) 여기서 법원보조란 독일형법시행법[Einführungsgesetz zum Strafgesetzbuch(EGStGB)] 제294조에 의하여 주사법행정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물론 주정부는 법규명령을 통하여 사회행정범위 내의 다른 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다), 그 주요내용은 검사나 법원의 법률효과 판단을 위한 피의자의 성격, 성장 및 환경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 Beck-Texte im dtv, StGB 42. Auflage. 2006, S.168.

133) Peter-Alexis Albrecht, Jugendstrafrecht 2. Aufl., C.H.Beck, 1993, S.336f.

고 있다고 한다. 소년부법관이 구법원의 관할사건을 취급함에 대하여 소년부검사는 그 보다 광범위한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을 담당하기 때문에 양형이나 사건취급에 있어서 보다 광범위하게 소년범죄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어 소년절차에서 검사의 지위는 과소평가될 수 없다는 것이다.[134]

독일의 소년형사절차에 있어서는 검사에게 기소·불기소의 권한 외에 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고 소년법원의 관할에 속한 절차를 위하여 소년부검사가 임명되지만(소년법원법 제36조), 소년부검사는 소년법원의 법관과 동일하게 소년에 대한 교육적인 능력이나 교육의 경험, 즉 전문적인 자질이 요구되고 있다(같은 법 제37조). 이러한 소년부검사는 지역에 따라 양육경험, 교육기관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되어 검사의 직무를 5년에서 10년 정도 계속 담당하는 등 전문화하고 있다.[135]

소년부검사의 권한이나 의무도 기본적으로는 일반형사절차와 동일하다고 이해되고 있다. 즉 수사, 절차중지(기소유예)에 관한 판단, 공소의 제기, 심판에 있어서 공소의 유지라는 기본적인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136] 독일에서 검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면 소추가능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의무[형사소송법 제152조(기소법정주의) 제2항]를 지고 있으므로 소년에 대해서도 성인의 경우와 같이 혐의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불기소하게 되지만, 소년에 대해서는 성인에 비하여 기소법정주의가 완화되어 소년부검사에 의한 절차중지(기소유예)가 인정된다[소년법원법 제45조].[137] 또한

134) Dieter Dölling, Jugendgerichtsgesetz 11. Aufl., Berlin, 2002, §36 Rndr. 4a.

135) 廣瀬健二, 海外少年司法制度-英, 米, 獨, 仏を中心に-, 家庭裁判月報 第48卷第10号, 1995, 49面.

136) Friedlich Schaffstein/Werner Beulke, Jugendstrafrecht 14. Aufl., Stuttgart, 2002, S.200.

137) 소년법원법 제45조에 의하면 소년사건에 대하여 소년부검사의 절차중지(기소유예)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즉 ① 검사는 사안이 경미한 때에는 소년부법관의 동의없이 기소를 유예할 수 있고(제1항), ② 검사는 교육적 조치(erzieherischen Maßnahme)가 이미 실시 또는 개시되거나 소년법원법 제45조 제3항에 의거한 법관의 관여뿐만 아니라 공소의 제기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소추를 보류하고(제2항 제1문) 피해자에게 보상을 마친 소년 등의 노력은 교육적 조치와 동일하게 취급하며(제2항 제2문), ③ 검사는 소년 등이 자백한 경우에 법관에 의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공소제기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소년부법관에 대하여 징계, 지시의 부여(일정한 노동의무의 이행,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노력, 교통강습에의 참가) 또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하고 이 권고에 소년부법관이 응한 때(지시나 의무에 대하여는 소년

소년형의 부과가 예상되는 때에는 소년부검사 또는 소년법원의 재판장은 공소제기 전에 소년을 심문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조)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 성인과는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년부검사는 공소제기 및 절차중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160조 제3항의 조사절차(법원보조)를 활용할 수 있다.[138]

1)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소년심판절차에 있어서 소년사건의 조사는 소년부검사가 총괄하는데, 이 때 소년부검사는 독일형법시행법[Einführungsgesetz zum Strafgesetzbuch(EGStGB)] 제294조(법원보조)에 따라 경찰[형사소송법 제163조(경찰의 임무) 제1항]과 소년법원보조기관의 보조 아래, 소년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절차중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자료의 수집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하는 조사절차의 직접적인 법령상 근거는 독일형사소송법 제160조(검사의 임무) 제3항이다. 즉 같은 조 제3항은 '검사는 행위의 법률효과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정에 대해서도 수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법원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사절차 및 방법과 내용

소년심판절차에서 공판절차 개시 전 소년부검사의 소년사건에 대한 조사절차는 공소제기 및 절차중지를 위한 준비절차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소년사건으로 취급될 수 있는 소년사건의 준비절차에서 소년부검사(Jugendstaatsanwalt)는 보조자를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준비절차에서는 비행사실을 규명할 뿐만 아니라 소년피의자의 인격도 조사의 대상이 된다. 즉 소년법원법 제31조 제1항은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피의자의 생활상황 및 육체적, 정신적 평가에 도움이 되는 모

등이 소년부법관이 부과한 지시나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소추를 보류한다(제3항 제1문 및 제2문).

138) Peter-Alexis Albrecht, Jugendstrafrecht 2. Aufl., C.H.Beck, 1993, S.358f.

든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비절차에서는 비행사실의 규명과 객관적인 비행사실, 인격 및 생활환경조사가 함께 이루어지는데,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139]는 검사가 담당하지만, 인격 및 생활환경조사는 소년법원보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며, 소년 등의 심판절차에는 그 소년 등의 조사를 담당한 소년법원보조기관의 대표자를 출석시켜야 한다(같은 법 제38조 제2항 제4문).

다. 재판단계(법원)

독일의 소년심판절차에 있어서는 교육적, 사회적 및 보호적인 견지의 실효적인 반영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년조사와 관련하여 소년법원보조기관(Jugendgerichtshilfe)이라는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소년법원보조는 지방자치단체(시 또는 군)의 소년국(Jugendamt)이 관장하는 소년원조(Jugendhilfe)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일본의 가정법원조사관제도와 유사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기능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년부 조사관과 유사한 임무를 수행한다.

독일의 소년법원보조기관은 조사권한 외에도 소송법상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소년형사절차에 있어서 독특한 기관으로서 형사소추기관도 아니고 피의자의 보좌인도 아니며 단순한 증거수단도 아니다.[140] 소년법원보조기관의 대표자는 절차관여자로서 공판에 출석할 권리를 가지며(소년법원법 제50조 제3항) 공판에 출석하여 소년에 대해서 부과하여야 할 소년법원의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같은 법 제38조 제2항 제2문). 소년법원보조기관 대표자의 공판출석권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소년 및 그 가족이나 기타 관계자와 면접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한 소년법원보조인이 공판에도 출석함으로써 비로소 소년법원보조인 자신이 책임있고 독립적인 사무가 가능해 지고 법원에서

139) 이때에는 경찰에 의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경찰의 소년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소년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는데, 피의자신문을 통해 소년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춘화, 소년조사제도론, 한국학술정보(주), 2007, 131-132쪽 참조.

140) Peter-Alexis Albrecht, Jugendstrafrecht 2. Aufl., C.H.Beck, 1993, S.358f.

자신있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조직상의 이유 내지 직원부족으로 인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소년법원보조인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소년법원보조인 대신 소년사건의 심리에 출석하는 '법원출정인(Gerichtsgeher)'이 존재하는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141]

다음에서는 준비절차 및 공판절차에서 소년의 인격 및 성품조사, 생활환경조사(예컨대 생활관계, 가족관계, 성장과정, 行狀, 심적·정신적·성격적 특성 등) 등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여 소년사건 조사제도의 중핵을 이루는 소년법원보조기관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독일소년형법의 특별예방적 목표는 교육적·사회적·보호적인 관점을 주장하는 특별기관을 소년법원보조의 형태로 소년심판절차에 형성시켰으며, 소년법원보조의 법적 승인은 이미 1923년의 소년법원법에서 이루어져 1953년의 소년법원법 제38조에서 그 임무범위가 상세하게 규정되고 1990년의 소년법원법 개정으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142] 따라서 소년법원보조의 법적 근거에 관한 중핵적인 규정은 소년법원법 제38조와 아동및소년구호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 제52조이다.

즉 소년법원법 제38조(소년법원보조) 제1항은 '소년법원보조는 소년구호를 위한 모든 단체와 협력하여 소년국에 의해 실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소년법원보조기관의 대표자는 교육적, 사회적 및 복지적인 견해를 소년법원의 절차에서 주장한다(제1문). 소년법원보조기관의 대표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피의자의 인격, 성장과정 및 환경을 조사함으로써 관계당국을 보조하고 선택하여야 할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한다(제2문). 신병구속사건에 대하여 소년법원보조기관의 대표자는 신속히 조사결과를 보고한다(제3문). 공판에는 조사를 담당한 소년법원보조기관의 대표자가 출석하여야 한다(제4문). 소년이 지시와 의무의 이행을 다할 수 있도록 감독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이 임명되지 않는 한 소

141) Ruth Herz, Jugendstrafrecht, 1982, S.95.

142) Friedlich Schaffstein/Werner Beulke, Jugendstrafrecht 14. Aufl., Stuttgart, 2002, S.205.

년법원보조기관의 대표자가 이를 감독한다(제5문). 현저한 위반에 대해서는 소년법원보조기관의 대표자가 법관에게 통보한다(제6문). 제10조 제1항 제3문 제5호에 의한 감독 하에 있는 경우에 법관이 소년법원보조기관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이 감독을 결정하지 않는 때에는 소년법원보조기관의 대표자가 지도와 감독을 담당한다(제7문). 보호관찰기간 중 소년법원보조기관의 대표자는 보호관찰관과 긴밀히 협력한다(제8문). 집행기간 중 소년법원보조기관의 대표자는 소년과 연락을 취하며 소년의 사회복귀를 인도하여야 한다(제9문).'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소년에 대한 모든 절차에 있어서 소년법원보조기관은 절차에 참가하여야 한다(제1문). 이는 가급적 신속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제2문). 지시(제10조)를 부과하기 전에 소년법원보조기관 대표자의 의견을 항상 청취하여야 한다(제3문). 지도의 지시를 결정하여야 할 때에는 누구를 지도의 보조자로 임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년법원보조기관의 대표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4문).'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및소년구호법 제52조(소년법원에 의한 절차에의 협력) 제1항은 '소년국은 소년법원법 제38조 및 제50조 제3항 제2문에 따라 소년부법관의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제1문). 소년국은 소년(14세 이상 18세 미만) 또는 성인(18세 이상 27세 미만)에 대한 소년구호의 급부결정을 조기에 심사하여야 한다(제2문).'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소년법원법 제38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활동하는 소년국 또는 공인된 임의의 소년지원단체 직원은 소년 또는 성인을 모든 절차를 통하여 지원한다(제1문). 직원은 절차의 상황에 따라 검사 또는 법관에 대하여 제1항 제2문에 의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제2문).'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소년법원보조와 관련된 소년법원법의 규정은 제38조만은 아니다. 즉 제43조(조사의 범위)[143], 제50조 제3항(공판기일의 통지·발언허가), 제65조 제1항(지시 및 의무이행에 대한 추가결정에 관하여 소년법원보조기관 대표자의 의견

143)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법원보조기관의 인격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소년법원법 제38조인지 제43조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형사대법원(BGHSt)은 소년법원법 제43조상의 소송절차에 있어서 소년법원보조인은 소년부검사와 동일한 이행기능과 감독기능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BGHSt 27, S.250.

을 청취하는 것), 제70조(절차의 개시와 종료에 대한 통지), 제72조a(신병구속사건에의 소년법원보조기관의 참가), 제93조 제3항(미결구금 중인 피의자와의 교통), 제109조(연장소년에 대한 절차) 등의 규정 또한 소년법원보조제도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이다.

소년법원보조기관은 범죄를 범한 소년 및 연장소년의 조사시 교육적·사회적·복지적인 견지를 소년법원이 도입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임무가 맡겨진 특별소송기관이자 소년범죄에 대한 특별예방을 위한 목적 아래 도입된 독일 특유의 제도라 할 수 있다.[144] 따라서 소년심판절차에서 소년의 실질적인 조사, 즉 비행소년의 인격에 대해서 조사하여 소년부검사 및 소년부법관에게 보고하고 소년부법원이 결정하여야 할 처분에 대하여 제안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사는 소년법원보조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인격조사의 의미에서는 소년법원보조는 법원의 심판보조의 성격을 지니지만, 소년법원법 제38조 제2항 제9문의 의미에서는 소년보조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소년법원보조는 피고인보조도 아니고 소년피의자의 변호인도 아니며 단지 소년형법상의 全 절차에 있어서 비행소년을 위한 보조자 및 협력자의 지위를 갖는다. 또한 소년법원보조기관은 '사회통제제도'이며 '범죄극복을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구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소년법원보조인은 법원과 공동하여 법률효과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145]

2) 조사절차 및 방법

소년이 형사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도의적·정신적으로 성숙한지 여부(소년법원법 제3조), 연장소년의 도의적·정신적인 발육정도가 소년과 동일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교육적으로 합목적적인 법률효과의 선택을 위해서도 소년, 연장소년의 인격 및 그 성장과정이나 생활환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소년부법관이나 소년부검사, 경찰도 각고의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조사활동을 담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경찰의 경우에는 형사소

144) Friedlich Schaffstein/Werner Beulke, Jugendstrafrecht 14. Aufl., Stuttgart, 2002, S.166f.

145) Peter-Alexis Albrecht, Jugendstrafrecht 2. Aufl., C.H.Beck, 1993, S.311f.

추의 관점에서 일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더욱이 조사대상인 소년 자신, 그 양친이나 교사, 기타 관계자는 경찰보다도 소년국의 복지사(Fürsorger)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쉽게 여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점에서 소년법원보조기관의 본질적인 역할은 행위자의 인격조사를 통한 소년법원의 보조이다.[146]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소년법원보조인(Jugendgerichtshelfer)은 소년부법관에 대하여 가능한 소년의 현존하는 인격상을 보고하여야 할 객관의무를 지닌다. 즉 소년법원보조인이 변호인처럼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객관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다.[147] 한편 소년법원보조인은 소년의 교호적인 보조인으로서 소년의 신뢰를 획득하여 그 신뢰를 조언과 행동으로써 확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므로 소년법원보조인의 양심상 갈등이 발생한다.[148]

소년법원조사보조인의 조사보조는 범죄행위의 규명에 관련하는 것이 아니다. 범죄행위의 규명은 오로지 형사소추당국(검찰 · 경찰)의 문제로서 조사보조는 행위자의 인격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관련한다.[149] 소년부검사는 '가급적 신속하게 피의자의 생활관계, 가족관계, 경력, 지금까지의 행동 및 피의자의 심리적, 정신적, 성격적인 특성에 대한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타 모든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소년법원법 제43조 제1항). 이 규정에 따라 동시에 소년법원보조기관의 조사활동의 범위가 명시되는 것으로 소년법원법은 이 임무에 소년법원보조기관을 관여시키도록 검사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같은 조 같은 항 제4문). 따라서 소년법원보조기관은 법원이 행위자의 장래 행동을 예측하여 부과하여야 할 법률효과를 선택할 수 있게 보조한다.[150]

교육적 · 사회적 · 복지적 견지와 관련된 조사결과의 보고와 이를 토대로 선택할 조치에 대한 소년법원보조인의 제안은 소년법원보조기관의 활동 중에서도 실천적으로 중심적인 의미를 갖는다.[151] 이 보고가 소년법원에 문서로써 제출되어

146) Friedlich Schaffstein/Werner Beulke, Jugendstrafrecht 14. Aufl., Stuttgart, 2002, S.166f.

147) Gerhard Grieswelle, Sozialarbeit, Pädagogik und Jugendstrafrecht, 1972, S.39.

148) Peter-Alexis Albrecht, Jugendstrafrecht 2. Aufl., C.H.Beck, 1993, S.311f.

149) 소년법원보조기관은 경찰기관도 아니고 검찰청의 대리도 아니며 소년법원보조기관이 관심을 갖는 것은 행위가 아닌 행위자라 한다. Wilhelm Müller, Jugendstrafrecht und Jugendgerichtsbarkeit, 1975, S.131.

150) Friedlich Schaffstein/Werner Beulke, Jugendstrafrecht 14. Aufl., Stuttgart, 2002, S.166f.

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소년법원의 입장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 실시준칙(소년법원법 제38조에 대한 제1호)에서는 문서에 의한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152]

재판기록의 구성요소인 조사보고서는 기록열람권을 향유하는 모든 자, 특히 변호인(형사소송법 제147조)이 입수가능한 서류이다. 공판절차에서의 보고서의 낭독은 직접주의와 구두주의(형사소송법 제250조)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히 대도시의 소년국에서는 소년법원보조인이 법원출정인(Gerichtsgeher)으로 공판기일에 출두하여 다른 소년법원보조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낭독한다는 문제가 있다. 소년은 조사단계에서 아무런 면식도 없는 이 법원출정인을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하는 것으로 법원출정인은 보고서의 설명을 요구하는 소년부법관에 대하여 거의 대답하지 못한다고 한다.[153] 본래 소년법원법은 '공판에는 조사를 담당한 소년법원보조기관의 대표자가 참가하여야 한다.'(제38조 제2항 제4문)는 추가입법으로 개정하였기 때문에 향후 실무상 운영의 개선이 기대된다.

소년심판절차에서는 인격평가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조사보고서는 소년에 대한 처분의 종류와 선택에 있어 종종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년법원보조인의 조사보고서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지적되고 있지만, 우수하고 책임감 있는 소년법원보조인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소년법원보조기관의 조사에 대한 공적을 폄하할 수 없다는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다.[154]

3) 조사내용

소년법원보조인의 조사보고서의 내용 및 형식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규정은 존

151) Wilhelm Müller, Jugendstrafrecht und Jugendgerichtsbarkeit, 1975, S.131.

152) 문서에 의한 보고가 소년법원에 제출되는 경우는 모든 절차의 6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 Rolf Momberg, Die Ermittlungstätigkeit der Jugendgerichtshilfe und ihr Einfluss auf die Entscheidung des Jugendrichters, Diss., 1982, S.290.

153) Alexander Böhm, Einführung in das Jugendstrafrecht 2. Aufl., 1985, S.94.

154) Alexander Böhm, Einführung in das Jugendstrafrecht 2. Aufl., 1985, S.94.

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조사보고서의 내용과 형식은 다음과 같다.[155]

(A)

① 절차의 대상소년에 대한 당국관련 기재사항

- 검찰청, 소년법원, 소년국의 서류정리번호
- 피고인(피의자)의 성명 및 주소
- 개인신상(생년월일, 출생지, 가족상황, 성별, 학력 등)
- 비난받고 있는 위법행위 내지 기소의 대상
- 보고기관

② 양친(계친)의 개인신상

- 부모(경우에 따라서는 계친 기타 관계자)의 성명, 직업, 주거, 이혼의 유무, 부모상호의 관계, 정신적·경제적 부담(장애)의 유무, 질병 등
- 양친(계친)의 가족상황
- 형제자매(중요자료)

(B)

① 피고인의 약력

- 장애, 질병, 보호시설·유치원입원의 유무 등
- 가족(내부적 연대와 환경에의 통합)
- 경제적 상황
- 주택사정
- 양친, 형제자매, 기타 관계자와 피고인의 관계
- 육체적, 정신적 상황

② 학교생활

- 입학시의 연령, 학교의 종류, 전학

155) Rolf Momberg, Die Ermittlungstätigkeit der Jugendgerichtshilfe und ihr Einfluss auf die Entscheidung des Jugendrichters, Diss., 1982, S.16.

- 당시의 학급과 학교, 졸업
- 전체적인 성적(우수한 과목, 낙제한 과목)
- 학우 및 고사와의 관계

③ 직업훈련, 직업, 수입

- 직업에 대한 전망(실제와의 일치)
- 직업, 당시 담당하던 일, 견습수업의 중단 여부
- 신분(노동자, 회사원, 공무원)
- 상사, 직업훈련지도자, 동료와의 관계
- 저축, 용돈 및 그 사용처

④ 여가활동

- 취미에의 종사, 스포츠, 디스코, 동아리입회의 유무
- 동년배와의 친교(그룹, 단체, 임의의 소년그룹 등)
- 특정 친구(남, 녀)와의 관계

⑤ 전력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
- 이전의 가벌적 행위

(C)

① 피고인의 심리적 상황의 평가

- 어떻게 해야 가족이나 친구관계에서 상호의 기대가 충족될 수 있는가? 피고인의 자화상
- 피고인의 주거지역의 사회구조 평가(문화적인 가치에 대한 태도, 규범, 그룹 형성, 귀속계층 등)

② 범죄행위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의 자화상

- 자신의 태도에 대한 자기평가(행위동기, 원인, 조건, 행위상황)
- 본인은 법원의 어떠한 처분을 기대하고 있는지, 결정되는 처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자신이 제안을 한다면 어떠한 처분을 제안할 것인지 등
- 이전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떠한 느낌이었는가, 현재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낙인찍혔다, 포기했다, 방치되었다 등)

③ 인격상을 고려한 자료의 집약적 요약

(D) 예측과 법률효과(제재)에 대한 제안
- 적법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이유를 첨부한 예측
- 피고인에 대한 보조수단과 보조가능성(협력의 의사 유무)
- 이유를 첨부한 조치제안(대체안)

라. 교정단계

교정단계에서의 소년조사제도와 관련된 특별한 근거규정은 소년법원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년법원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 소년 등에 대한 처분으로 선고된 교육처분(소년법원법 제5조 제1항), 훈교처분 및 소년형의 부과(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대하여 소년법원보조인과 보호관찰관은 감독임무와 보호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사(예컨대 行狀調査)를 실시할 수 있다.[156]

소년법원법 제38조 제2항은 '소년이 지시와 준수사항[157]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독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이 임명되지 않는 한 소년법원보조기관의 대표자가 이를 감독'하고(제4문), 소년을 특정인의 지도와 감독에 배속시켜야 할 경우에 소년부법관이 이를 소년법원보조기관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위임하지 않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지도와 감독을 담당한다(제7문)고 규정하여 소년법원법관이 선고한 지시와 준수사항을 소년이 이행하고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임무를 소년법원보조기관에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가벼운 위반에 대해서는 소년법원보조기관이 소년을 훈교할 수 있지만[158], 현저한 위반에 대해서는 소년법원법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6문). 감독 중에 소년의 상황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는 이에 소년법원법관이 적절하게 대

156) Ulich Eisenberg, Jugendgerichtsgesetz 7. Aufl., C.H.Beck, 1997, §98 Rdnr. 7a ; §10 Rdnr. 30a.

157) 이행의무(Auglagen)는 훈교수단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소년법원법 제15조).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를 능력에 따라 배상한다,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죄한다, 노무를 제공한다, 공공시설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기부한다 등.

158) Ruth Herz, Jugendstrafrecht, 1982, S.97.

응할 수 있도록 소년법원보조기관은 그러한 상황변화를 소년법원법관에게 보고한다. 예컨대 16세의 여학생에게 일정기간 내에 15시간의 사회봉사(Sozialdienst) 처분을 부과하였지만, 소년법원보조기관이 봉사장소를 감독한 후 그 여학생이 임신 중이어서 사회봉사처분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임이 명백히 판명된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변화는 소년법원법관에게 보고된다. 소년법원보조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소년법원법관은 다른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159]

소년법원법관이 선고한 지시와 준수사항을 감독한다는 임무는 과소평가될 수 없는 임무이다. 이러한 임무가 없다면 소년은 소년법원법관의 결정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다는 감정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독의무는 종종 소년지원단체에 위임된다.[160]

형의 집행유예시 보호관찰기간 중의 지시나 준수사항의 감독(소년법원법 제23조, 제24조)은 법률상 제1차적으로는 보호관찰관에게 위임된다.[161] 이로써 소년은 사법기관의 직접적 관할에 속하게 된다. 보호관찰기간 중 소년법원보조인은 보호관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하지만(소년법원법 제38조 제2항 제8문), 이때 소년법원보조인이 어떠한 임무를 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실제로는 보호관찰관만 활동하게 된다.[162]

한편 보호적·교육적인 지도(Betreuung)는 수사개시부터 절차의 모든 과정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원법(제38조 제2항 제9문)은 소년법원보조기관에 대하여 소년구금이나 소년형의 집행 동안 소년과의 접촉을 유지하고 석방 후의 재사회화에 즈음하여 소년을 지원할 것을 의무지우고 있다.[163] 이에 더하여 소년법원법 제93조 제3항에 따르면 소년법원보조기관 대표자에 대한 미결구금 중인 소년과의 접견교통이 변호인과 동일한 범위에서 허용되고 있다.

또한 소년법원보조기관은 법률적으로 기도되지 않은 절차의 부정적인 작용에

159) Ruth Herz, Jugendstrafrecht, 1982, S.97.

160) Peter-Alexis Albrecht, Jugendstrafrecht 2. Aufl., C.H.Beck, 1993, S.313f.

161) 소년법원법 제113조에 의하면 각 소년부법관의 관할구에 적어도 1명의 전임보호관찰관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162) Alexander Böhm, Einführung in das Jugendstrafrecht 2. Aufl., 1985, S.98.

163) Gerhard Grieswelle, Sozialarbeit, Pädagogik und Jugendstrafrecht, 1972, S.142 ; Alexander Böhm, Einführung in das Jugendstrafrecht 2. Aufl., 1985, S.98.

반작용을 하는 점, 범죄수행에 있어 의미있는 일정한 외부적 사정을 제거하는 점, 적어도 소년에 대한 외부적 사정의 영향을 약화시키는 점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적절한 시기에 소년의 직장과 거주지를 모색하는 것, 붕괴된 가족의 연대를 회복시키는 것 등은 석방전후 지도(Betreuung)의 중요한 예이지만, 그러나 소년법원보조기관은 일면적으로 조사기능을 우선함으로써 특히 중요한 지도임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비판도 가해지고 있다.[164]

제3절 영국의 소년조사제도

1. 영국의 소년사건에서의 조사절차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로서 각기 상이한 소년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동일한 사법제도를 운영하지만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는 상이한 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법무부, 2005). 이 절에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소년사법제도를 중심으로 영국의 소년조사제도를 살펴보았다.

1990년대 이전의 영국의 소년사법제도는 시설수용만 증가시켰을 뿐 실질적인 효율성과 비행예방에 실패하였다는 비난과 각성으로 1990년대 후반에 소년사법체계 전반에 걸친 개혁을 통해 다기관협력체계(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 MAPPA)를 도입하였고, 영국 소년사법체계의 핵심인 소년사법위원회(Youth Justice Board)와 소년비행대응팀(Youth Offending Team, YOT)이 출범하게 되었다(박지현, 2007). 이 절에서는 소년조사제도의 핵심인 YOT와 판결전조사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164) Friedlich Schaffstein/Werner Beulke, Jugendstrafrecht 14. Aufl., Stuttgart, 2002, S.168f.

2. 영국의 소년조사제도

영국에서의 소년사건처리는 경찰단계, 조사 및 기소단계, 법원단계, 집행단계로 구분된다. 소년사건처리절차의 첫 단계인 경찰에서는 소년범을 체포한 경우 부모, 보호자 등에게 신속하게 고지되어야 하며 보호자의 참석이후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 2003년 형사사법(The Criminal Justice Act 2003)이 제정된 이후 소년범에 대한 견책(reprimand)이나 경고(Warning)처분은 검사에게 이관되었다. 견책처분은 경미한 초범자에게 공식적인 구두 경고 방식으로써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YOT프로그램 참가명령이 수반되기도 한다. 경고처분은 구두 경고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견책과 같지만, 소년은 비행원인에 대한 분석과 재활프로그램을 위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소년법원(Youth Court)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심리를 진행하거나 형사법원(Crown Court)으로 송치하게 된다. 치안판사(Magistrate)는 판결이 연기될 경우에는 조건부보석(Conditional Bail), 무조건적 보석(Unconditional Bail) 또는 지역시설구금(Remand to Local Authority Accomodation) 이나 보호소구금(Secure Remand) 등과 같은 보석이나 미결구금 명령을 내릴 수 있다(박지현, 2007). 소년 법원은 임시조치로 미결구금, 보석명령, 조사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최종조치는 '선고'로 하게 되는데 구금명령(custodial sentences), 비구금명령(non-custodial sentences), 그리고 부가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법무부, 2005).

소년법원의 조사명령에 참여하여 조사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각 지역별로 설치된 Youth Offending Team(YOT)이며, 성인사건은 별도의 보호관찰기관에서 판결전 조사를 수행하고 있어 소년과 성인의 조사기관이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김용운, 2005).

가. 소년비행대응팀(Youth Offending Team, YOT)

YOT는 1998년 범죄와 무질서법(Crime and Disorder Act)에 의해 설립된 기구로 소년의비행과 재비행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소년범에게 상담과 재활을 돕는 역할을 한다. 영국에서는 모든 지방벙부는 교육과 사회복지 담당부서 아래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YOT를 구성하고 있으며, 지역간의 연합YOT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한데, 적어도 한명 이상의 보호관찰직원, 지역사회복지 부서의 사회복지사, 경찰, 의료담당부서에서 임명한 의료요원 및 교육부서에서 임명한 교육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박지현, 2007). YOT는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소년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찰서, 교정·보호조직, 복지조직, 교육조직 등 국가와 지방의 각 조직을 횡적으로 결합시킨 조직으로서 단순히 정보만을 공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행소년의 사회조사, 심신감별, 사회내 처우에서는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김양곤, 2004).

소년사법제도 내에서의 YOT와 타 기관의 역할은 소년사법국가기준안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기준안은 범죄소년의 감독, 재판과정, 정보의 공유, 범죄 피해자의 요구(피해자가 원할 시에는 배상을 포함), 범죄예방에의 중점, 지방정부에서의 청소년범죄 예방에 있어서의 YOT 역할 및 소년들에 대한 개입이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행해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양곤, 2004).

YOT는 지방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받고는 있으나 특정 부처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하부인프라로 활동하고 있는데, YOT의 업무는 ① 대상소년 조사 및 비행소년관리단 자격으로 보고서 작성, ② 피해회복프로그램 운영에 피해자 참여 기회 부여, ③ 비행소년관리단(Youth Offender Panels, YOP) 위원 또는 YOP의 조언자 역할, ④ 감독자로서 비행소년이 계약사항이행감시 등으로서, 이를 위해 비행소년관리단 등의 확보, 지역사회 관리단 교육훈련 및 지원, 초기 회의시 소년평가, 피해자 지원, 비행소년관리단 소집, 회의 주관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소년에게 적절한 전문가 YOP를 구성하기 위해 소년범의 성향과 비행의 원인분석 등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법무부, 2005).

YOT에 위탁된 소년은 ASSET을 통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는 소년범의 비행 및 비행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화된 평가도구이다. 이 평가결과는 보석감독(Bail Supervision and Support), 판결전보고서(Pre-Sentence Report), 사회명령(Community Disposals), 구금명령(Custodial Sentence) 등에 사용된다(박지현, 2007). ASSET ASSESSMENT는 2000년 10월 1일 이후에는

전산화되어 YOIS(Youth Offending Information System)이라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통합되고 있다. YOIS는 소년범 분야의 정보시스템으로서 평가, 모니터링, 통합된 보고와 평가도구 결합, YOT 통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확하고 다양한 자료를 통해 youth offending system 종사자들의 활동에 최대한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

ASSET 평가자인 YOT요원은 소년과 적어도 한번 이상 면접을 하여야 하며, 소년이 16세 이하인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와도 면접을 해야 한다. 특히 이전의 ASSET기록 경력이 있거나 특별히 주의해야 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박시현, 2007).

나. 판결전조사 보고서(Pre-sentence Reports, PSR)

판결전조사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소년사건조사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개별 소년범에게 가장 적합한 처우를 결정하기 위해 판결전에 소년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보호관찰관이나 법원조사관에게 의뢰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에서는 소년범이 거주하는 지역의 YOT에게 의뢰한다. 이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해당사건의 범죄의 심각성(the seriousness of offence)과 특정한 판결에 대한 적합성(suitability for particular sentence)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김용운, 2005).

판결전조사서는 법원에 의해 구금이나 훈련, 약물치료와 시험명령을 내리기 전에 주로 요구되며, 또한 관련문제들이 복합적인 범죄, 정신적 문제가 명백하거나 공공의 안전에 현저하게 중요한 관련성이 있는 유죄범죄자(성범죄, 방화, 인종적 동기의 범죄를 포함)에게 요구되는 경향이 있다.

1) 조사절차 및 내용

판렬전조사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YOT 담당자에 의해 작성되나 보호관찰관, 사회복지사에 의해 작성되기도 하는데, 보고서를 누가 작성하느냐는 주로 사건의 개별적인 특성에 의해 좌우되나 보고서 작성자의 조정 및 법원에의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업무는 YOT가 수행한다(김양곤, 2004).

YOT 직원이 PSR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1회 이상 면담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금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면담해야 한다. 부모나 보호자와도 면답을 하는 경우가 있다. YOT 요원은 대상자를 아는 담담교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주치의 나 대상자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전문가도 면담할 수 있다. YOT 요원은 해당사건의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가정환경, 성장배경, 학력, 직업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사하게 되며, 피해자에 대해서도 범죄로 인한 영향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김용운, 2005).

PSR은 내무부(Home Office)의 국가기준(National standards)의 규정에 따라 ① 정보의 출처, ② 피해자의 범죄에 따른 충격과 범죄자의 본인, 가족, 피해자에 대한 결과인식의 평가, ③ 범죄자 평가, ④ 해악의 위험과 재범 위험을 포함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위험의 평가, ⑤ 결론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PSR 작성시 평가(assessment)는 앞에서 언급한 'ASSET'이라고 도구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1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소년의 범죄행동, 주거환경, 가족상황, 학업 및 직장관계, 지역사회환경, 생활스타일, 약물사용관계, 건강상태, 정서·심리상태,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인식, 범행에 대한 태도, 변화의 동기, 지지적 요소(positive Factor), 범죄취약성지표(indicator of vulnerability), 타인에 대한 중대한 해를 끼칠 위험성 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양곤, 2004).

최종적으로 작성된 PSR에는 ① 범죄의 세부사항과 정황, ② 범죄의 심각성 정도, ③ 피해자에 대한 충격을 포함한 범죄결과에 대한 평가, ④ 재범위험성, ⑤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다른 개인적 환경들, ⑥ 특정 처분결정의 적합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 지역의 YOT의 경우, 'court team'이라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법원의 명령에 의한 PSR 작성을 담당하기도 하는데, 주요임무는 ① YOT 소재지 형사재판에서의 법원서비스, ② 법원의 명령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PSR 작성, ③ 대리인과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운영, ④ Youth Offenders Institution(YOI)에 수용된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등이다.

2) PSR의 열람범위

영국 PSR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① 본인, 부모, 보호자, ② 변호사(Solicitor, Barrister), ③ 판사 또는 치안판사(The Judge or Magistrates), ④ 법원의 법률 조언자(The Court Legal Adviser), ⑤ 검사(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⑥ 법원의 YOT 직원, ⑦ 교도소(구금되어 있는 경우), ⑧ 대상자의 사회복지사(대상자가 담당자를 두고 있는 경우)와 같은 관계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열람이 허용된다.

YOT의 판결전조사 보고서는 소년이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사본을 열람할 수 있으며 만약 부당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법정에서 본인, 부모 또는 보호자나 변호사가 그 사실에 대해 발언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법정에서 보고서는 낭독되지는 않지만 변호사가 그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있으며 법원도 그 내용에 대해 언급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김용운, 2005).

다. 소년보호관찰관 자격요건

영국의 보호관찰관 자격요건으로는 사회사업분야, 사회학, 심리학, 아동학 및 기타 사회과학분야의 학사학위가 요구되었으나, 1998년 이후 이전 학력이나 전공과는 상관없이 2년 과정의 보호관찰학위(Diploma in Probation Studies)가 요구되고 있다. 보호관찰학위(Diploma in Probation Studies)는 지역사회와 형사정책학위(BA in Community and Criminal Justice)와 지역사회 정의(Community Justice)에 대한 4등급의 국가직업자격증(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NVQ)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직업자격증(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NVQ)은 실무능력이 증명되었을 경우에만 획득할 수 있는 직무 관련 자격증으로서 실무개발평가자(Practice Development Assessor)의 감독하에 보호관찰관의 활동을 모두 수행하게 된다. 이 수습직 보호관찰관(Trainee probation officers)이 NVQ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정규직의 보호관찰관이 된다(김혜정·황만성, 2003).

제4절 미국의 소년조사제도

1. 미국의 소년사건에서의 조사절차

미국의 소년사법제도에서 소년사법기관들은 50개 이상의 주와 연방정부의 입법부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미국전역을 걸쳐 상당히 다른데 소년법원의 구조뿐만 아니라 행정적 책임들조차 주마다 상당히 다양하다. 연방과 주 및 카운티 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비행·범죄손녀에 대한 소년사법절차는 소년에 대한 보호를 우선으로 한 약식 또는 자유방식이라는 절차로 진행되는데, 소년법원의 사건 접수과정에서 분류절차를 거쳐 소년법원의 정식 심판을 청구하게 전에 다이버전에 의해 소년 본인 및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비공식적 보호관찰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의 사법제도는 각주의 사법관할권이 인정되는 분권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인 소년사건 처리과정은 대체로 체포(arrest), 초기면접(intake), 심리(adjudication), 처분결정(disposition), 사후지도(aftercare)로 이어진다.

즉 소년범죄 발생 시 형사범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이 임의적 또는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여 수사 활동이 시작되고 이를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기소함으로써 형사사건의 절차는 시작된다. 경찰에 범죄행위가 보고될 경우 소년사법절차는 경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경찰은 관련 소년을 다이버전(diversion)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귀가조치를 하거나 소년을 구속하고 그 사건을 소년법원의 접수관에게 이송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접수단계에서의 면접단계에서 접수관(Intake Officer)은 사건이 재판절차로 이행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접수관은 관련 소년을 훈방하거나 다이버전 프로그램에 등록하거나 소년법원 직원의 비공식적 보호관찰에 응하는 조건하에 석방할 수 있다. 한편 접수관은 기소(file petition)의견을 붙여 사건을 소년검사에게 회부할 수 있다.

심리단계를 보면, 소년법원 판사는 심리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검토하여 혐의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판사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는 석방해야 하고 혐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소년이 다이버전 프로그램에 등록한

다는 조건하에서 유죄판결을 유예할 수 있다.

보호처분을 할 경우 판사는 관련 소년에게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의 권고를 검토하고 처분이 소년 본인이나 지역사회에 이득을 주지 않을 경우 불처분결정을 할 수 있다. 보호처분은 사회내처분과 시설내처분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내처분에는 보호관찰, 경고 또는 훈계, 사회봉사명령, 벌금 또는 자택구금 등이 있다. 시설내처분에는 포스터케어(foster care)와 그룹홈(group home), 소년원수용조치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후지도에 관해 보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든 간에 법원은 관련 소년의 사후지도 수락의 조건하에 보호처분을 소멸시킬 수 있는데 사후지도로는 보호관찰, 상담, 다이버전 프로그램 등록 및 기타 소년들의 재범 가능성을 줄이고자 고안된 조치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소년이 범죄를 범하면 먼저 수사단계를 거쳐 소년법원으로 송치되어 조사와 심판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소년법원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결과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관할이전을 한다.

미국은 영미법계에 속한 형사사법시스템이므로 유죄인정심사와 재판결정이 이분화되어 진행되는데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보석 적부심사(Bail Hearing)를 통해서 보석여부를 결정한다. 이 단계에서부터 보호관찰관이 최초로 개입하여 조사하게 되는데 보석여부 결정에 대한 조사 등은 신규 보호관찰관이 담당하고 약물사범의 경우, 약물검사도 병행하게 된다. 유죄인정 공판절차에 배심원 참석여부에 대해서 판사가 결정하고, 피의자의 유죄가 확정되고 난 후, 판사는 관할구역의 해당 보호관찰관에게 인트라넷을 통해서 직접 조사를 명령한다. 또한 미국에서는 4개 관리구역(Region)과 20개의 순회재판으로 구분된다. 미국의 교정은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여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보호관찰소는 법원에 소속되지 않고 행정청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형사사법단계별 소년조사제도

가. 수사단계의 소년조사제도

미국의 소년법제상 소년사건의 처리절차는 크게 나누어 위탁, 접수, 심리 치처분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소년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원이 가지고 있다. 미국의 소년사법체계에서 가장 먼저 소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곳은 경찰이다. 미국의 경찰조직 내에서 소년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범죄예방국(Crime Prevention Bureau)이나 소년국(Juvenil Bureau), 청소년원조국(Youth Aid Bureau)이 있으며 최근에는 소년통제국(Juvenile Control Bureau)으로 불리고 있는데, 소년국은 형사사법체계에서 특별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문제를 다루게 된다(김양곤, 2004).

미국의 경우 경찰 내 소년담당부서의 명칭이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어떤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공통적인 역할은 탈선, 잠재적 탈선 및 탈선을 이루는 요건의 규명, 탈선과 탈선의 원인조사, 사건의 심리 또는 이송, 어린이와 청소년보호, 지역사회 조직화 등이다.

탈선행위에 대한 경찰에서의 조사기간 동안 혐의자는 구속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관련 소년을 잘못 처리함으로써 비행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경찰이 철저히 그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년담당부서는 소년 범죄자를 처리함에 있어서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고, 소년담당조사관이 조사에 참여해 관련 소년에 관한 사실과 개인 정보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사회적 배경을 조사한다. 소년담당조사관은 모든 소년범죄자의 심문에 참여해야 한다. 관할 경찰관은 나이, 범죄의 성격, 사전기록, 소년담당공무원의 소견 및 기타의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청소년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청소년보고서는 작성된 후에 관련 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청소년담당관(youth officer)에게 송부되는데, 그 목적은 피해자, 학교, 가족, 친구, 그 밖의 관련된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포함하기 위해서이다. 소년의 비행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그의 부모는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된다(이춘화, 2002).

접수관의 조사과정에 개입하는 검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접수관은 기소청구(file)와 기소불청구(nofile)의 결정을 하고, 검사는 정식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해서만 그 청구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또한 정확성을 갖고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둘째, 접수관은 검사의 동의 없이는 중죄를 기각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시킬 수 없다. 셋째, 보다 심각한 범죄혐의 사항은 접수관의 권한을 넘을 수 있다. 따라서 그 혐의사항은 검사가 검토하여 기소할 수 있다. 검사는 특정혐의를 수정하여 비공식적 해결수단으로써 접수관에게 이송시킬 수 있다. 검사는 모든 청구의 내용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검사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소년에 대한 접수단계에서의 면접절차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권한남용을 제거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소년들은 그들이 범행을 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비법률가에 의해 기소되는 부당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위법행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접수관이 소년을 재판절차로부터 회피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검사의 조사절차감독은 이같이 접수관의 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이춘화, 2002).

검사의 기소여부 결정은 검사 집무실 내에서 접수단계에서의 면접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법적 요건충족 여부를 결정한 후 당해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이송할 것인가, 소년법원으로 이송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결정은 소년사건에 대해 관심이 있고 경험이 있는 검사 또는 검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진다.

나. 재판단계의 소년조사제도

초기접수단계(the intake process)란 소년범죄자가 소년법원과 갖는 첫 대면을 의미한다. 그것은 어떤 사례에 대해 기소청구(file)를 할 것인가 그리고 해당소년을 구금시킬 것인가와 관련된 초기사정과 권고를 의미한다. 몇몇의 사법관할구역에서는 접수관(intake officers)이 소년형사사법시스템에서 특별하면서 분리된 전문적인 범주에 속한다. 다른 사법기관들에서는 소년보호관찰관(juvenile probation officers)이나 다른 법원 전문가들이 최기면접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어떤 모델이 사용되어지는가와 상관없이 초기접수단계란 다소 빠

른 시일 안에 만들어지는 예비적 성격의 결정이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빨리 소년들을 소년형사사법시스템 절차를 밟도록 하기 위함이다.

접수단계에서의 면접의 담당기구는 접수관(intake officer)이다. 접수관은 보통 소년법원 산하 보호관찰소 조직의 일부에 속해 있다. 접수관은 소년을 그의 부모에게 돌려보낼지 또는 어떤 유형의 보호관찰을 부과해야 할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권고를 한다. 또한 어떤 소년법원에서는 그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인지도 심사한다. 접수관은 청구의 이유가 타당한지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하고, 관련 소년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한 조사를 하며, 소년과 그의 부모에 대해 비공식적 심리를 행하거나 경찰이나 변호인과 당 사건에 관해 토의할 수 있다. 접수관(Intake officer)의 첫 결정은 일반적으로 구금을 권유할 것인지와 관계된다. 이러한 결정에 고려되어지는 요소들은 아동의 개인적 안전, 도주위험성, 그리고 시민에 대한 위험성들이 포함된다. 엄밀히 접수관이 구금을 명하지는 않지만, 구금에 대한 정당성을 결정하는 소년법원판사들에게 구금에 대한 추천을 내릴 수 있다. 주에 따라서는 구금기간이 규정되어 있다(최소 6시간에서 최대 48시간까지). 접수관에 의해 구금이 권유되어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사례의 절반이상이 공식 판결로 진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Puzzanchera, Stahl, Finnegan, Tierney, & Snyder 2003). 그 이유는 접수관이 소년들의 즉각적인 postintake placement를 결정하거나 권유하는 것과 관계된 중요한 자율재량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위험성이 있는 소년들에 대한 구금 권유, 소년법원이 아닌 다른 소년사법시스템으로 소년을 전환시키도록 권유, 평가가 내려지고 처우가 발생할 때까지 구체적인 비용들에 대한 고려를 연기, 법정에서의 판결을 위해 기소청구를 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경찰에서 법원으로 인계된 소년이 거치게 되는 최초의 사법절차인 접수단계에서의 면접과정은 소년법원이 계속해서 사건을 취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예비적인 심사(screen)과정인 것이다.

초기 접수단계(Intake Process)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것은 아동들이 소년법원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례들을 선별하는 것이다. 둘째,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면 구금하는 것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법원이 조기에 소년과 그의 부모, 경찰 및 기타 관련된 사람들의

태도를 탐색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법원의 과도한 업무량(caseloads)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넷째, 경미한 사례와 같이 공식사법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례들을 법원 외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으로 하여금 적절한 지역사회 기관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Griffin and Torget 2002).

몇몇의 보호관찰소에는 접수 기구(intake units)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년보호관찰관(juvenile probation officers)이 그들 임무의 하나로서 초기접수결정(intake decisions)을 한다. 접수관(Intake personnel)의 첫 번째 결정은 사례에 대한 사법권 처리유무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staff는 반드시 아동이나 아동의 범죄가 범죄항목에 대하여 아동의 나이가 그에 부합되는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Staff의 두 번째 결정은 사례를 기각할 것인지 혹은 그것을 적절한 사회기관이나 성인형사법원으로 송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관계된다. 셋째, staff은 소년들이 안전하게 구금될 수 있는 지를 결정해야 한다. must decide whether the youth before them requires secure detention. 다른 대안들로, 사례들을 비공식적인 조정(informal adjustment)을 통해 비사법적 기관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해당되며, 혹은 소년들을 비공식적 보호관찰(informal probation)을 받게 하거나, 두 당사자들의 화해에 대한 법원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거나 기소청구를 하는 것이다.

소년을 심판절차에 붙일지의 여부는 체포영장이 아니라 심판청구를 통해서 결정된다. 이는 경찰, 피해자, 부모, 학교직원이나 사회사업가에 의해서 제기된다.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동 청구는 혐의가 있는 범죄 또는 탈선, 관련소년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그의 부모의 이름과 거주지, 범행 상황설명 등을 적시해야 한다. 이 같은 심판청구가 소년의 정식 재판절차의 출발이다. 심판청구 이후 그 사건의 사실에 대한 예비조사 차원으로 법원에 의한 접수단계에서의 면접심리가 열린다(이춘화, 2002).

소년법원의 접수관은 법적 심사와 사회적 심사의 두가지 유형의 심사를 한다. 법적 심사는 이는 범죄의 내용에 관해 심사하는 것으로서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가 현재 어떤 유형의 보호관찰 하에 있는지를 심사한다. 사회적 심사는 이는 소년 및 그의 가족과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하고 그의 품행, 학교기록, 병

력, 심리학적 경력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접수관은 해당소년이 인계된 후 48시간 내지 72시간 내에 구금여부 등을 결정하는 구금심리(detention hearing)를 개최하여야 하며, 접수단계에서의 면접과 구금심리 이후에 접수관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건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고 종결시키는 경우, 즉 판사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접수단계에서의 면접단계에서 종결시켜 가정으로 소년을 돌려보내는 것, 둘째, 사건을 계속 취급하되 구치소(Detention Center)와 같은 곳에 수용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낸 상태에서 법원의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것, 셋째,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 즉 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소년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어 위협적인 존재인지, 도주의 위험이 있는지, 누군가에게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는지, 가정환경의 안정성이 결핍된 상태인지 여부 등이 고려된다(이춘화, 2002).

처분심리는 목적 면에서 접수단계에서의 면접심리와 유사하나 법원의 정식심리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주체는 치안판사이다. 판사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비행소년의 행동에 따라 법원의 정식심리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의 처분심리 과정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보호관찰소로서, 접수단계에서의 면접에서 사건이 종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사실 확인단계, 즉 유죄 확인단계를 거쳐서 처분결정을 하기 위한 처분심리단계로 진행된다. 일단 유죄가 확인되면 사건에 지정된 보호관찰관은 조사 자료를 준비하여 처분심리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 보고서에는 비행의 동기분석 및 비행가치관, 가족의 구조적 특성과 양육, 학교생활과 성적, 친구관계, 성숙도와 책임감정도, 지역사회활동의 참여 및 직업력, 사법당국에 대한 태도 및 인성적 특성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김준호, 이동원, 1994).

보고서의 사본은 사법심리관, 검사 그리고 가해자 변호인에게 배포되고, 가해청소년과 그의 부모도 공유할 수 있으며, 처분심리는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보고서상의 구술요약부터 시작되며 처분심리의 결과로 시설에 수용되는 처분을 받게 될 소년은 본격적인 분류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보내지게 된다(이춘화, 2002).

다. 교정단계의 소년조사제도

1) 소년원의 분류심사

미국에서는 소년을 보호시설에 수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 또는 리셉션센터(reception center)라고도 불리는 분류심사원에서 소년에게 적합한 수용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분류조사를 실시한다. 소년분류심사 기관은 주에 따라 명칭이나 소속기관도 다른데, 알래스카의 경우는 별도의 기구 없이 보호관찰관(probation and parole officer)이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시간에 분류심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소년국 산하의 분류심사원(Reception Center and Clinic)에서 분류심사관(casework specialist)이 분류심사업무를 수행한다(이춘화, 2002).

소년법원에서는 비행소년을 분류심사원에 위탁하면서 과거 경찰이나 법원의 자료를 함께 송부하게 된다. 분류심사원에서는 소년을 담당할 책임자를 선정하고 책임자는 소년에게 필요한 검사와 조사가 무엇인가를 검토하여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캘리포니아 분류심사원의 경우 42일 내에 각종 검사와 상담, 부모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소년의 행동과 비행의 원인 등을 분석하여 작성한 임상보고서(clinic summary report)를 생활담당 직원, 분류심사관, 교사 등을 포함하는 청소년처우심사위원회(youth offender parole board)에 제출하게 된다. 한편 캘리포니아의 분류심사원에서는 법원에서위탁 수용한 소녀의 처우를 결정하는 분류심사기능과 아울러 치료기능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가석방 중에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심사를 하기도 한다.

최근 미국에서 발전되고 있는 분류방법으로 계약분류와 전자분류있다. 계약분류의 기본절차는 다른 분류유형과 유사하나, 수형자와 분류위원회의 장의 서명에 의한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다. 수형자에게 필요한 사항과 요구조건이 계약에 명시된다. 또한 미국의 과학·기술의 성장으로 전자분류가 최근에 진단의 수단으로서 도입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수형자의 공격적 행동, 우울증, 자살기도 가능성 및 지적수준, 직업적 능력과 관심, 사회화, 범죄의 치밀성, 육체적·정신적 건강 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이춘화, 2002).

미국의 소년원 분류시 요인별 기준은 ① 보안: 소년의 위험성에 따라 경비를

달리할 폐쇄, 중급, 보통, 제한시설에 수용, ② 연령·성숙성: 생리적, 정식적 연령, 신체의 크기 등 심시발달 정도와 전체적인 성숙도 평가 후 구분, 유소년·소년·청소년·성인으로 구분, ③ 처우·관리: 성격에 따라 처우(치료방법에 따른 처우), 병원치료·집중처우·정규처우, ④ 작업·학과교육·직업훈련: 직업훈련대상자 대부분의 17세 이후 퇴원자, 학과교육은 초등·중고등·대학과정, ⑤ 성인·미성년: 성인형사법원에 송치된 자, 성인형사법원에서 송치된 미성년자, ⑥ 기타: 범죄단체관계, 공범관계(제한적으로 실시), 행적적인 이송 등이다(원혜욱, 2001).

2) 교도소의 분류심사

비행소년이 교도소에 수용되게 되면 먼저 분류를 하기 위한 분류심사가 이루어지진다. 분류를 광의의 의미로는 범죄자의 교육적, 직업적, 처방적 보호상의 필요성 등이 결정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교정 분류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유죄판결 이후 신입 분류심사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법무부, 1997).

분류를 담당하는 조직은 수용·안내과, 분류위원회, 수용·진단센터 등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수용·안내과(Reception and Orientation Units)는 일부 관할지역에서는 그 기관 내에 분류클리닉을 보유하며, 심리학자, 사회봉사자, 기타 전문가로 구성된 이 조직들은 일련의 진단연구를 행하고 수형자들의 의료, 직업, 처방에 관한 사항을 당국에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분류위원회는 전문직, 행정인사로 구성되어 있고 통합 분류제도의 형태로서 부상하고 있으며, 교도소장 또는 부교도소장이 의장이 되고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목사, 교사 등이 참여하고 있고 위원회의 결정은 교도소 행정에 구속력을 갖고 있다. 셋째, 수용·진단센터(Reception - Diagnostic Center)는 중죄인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분류를 하기 위한 핵심시설로서, 분류에 대한 권한을 구체적인 교도소보다는 교정 시스템 담당자에게 맡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분류절차를 주 차원으로 표준화하고 분류와 오리엔테이션에 전문화된 직원과 시설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진단에 근거한 권고는 분류된 수형자가 궁극적으로 이송된 개개의 교도소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미국에서는 구금시설간의 수용분류에 있어서 연방정부에서는 연방교정국 관할하에 연방교도소 시스템을 지역별(동남부, 동북부, 중앙남부, 중앙북부, 서부)로 운영하고 있고, 주정부에서는 주 단위별로 주립교도소시설을 운영하며 지방정부 및 소단위지역의 시정부에서는 단기형교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수형자에 대한 판결전조사제도를 운영하여 형확정 자료로 활용하고 행형과정에서도 범죄인의 과학적 분류와 개별적 처우 및 석방 시 보호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권태정, 1992).

마. 소년보호관찰관 채용조건

소년보호관찰관은 임무는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사건의 접수(Intake)·선별(Screening)·평가(Asessment), 판결전조사(Pre-sentence Investigation), 지도감독(Supervision)의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소년보호관찰관의 임무 중 사건의 접수(Intake)·선별(Screening)·평가(Asessment)는 체포되어 소년사법체계로 들어온 소년에 대해 이들을 공식적인 재판절차로 진행할지 아니면 범행이 경미한 경우 비공식적 절차로 다이버전을 결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소년과 관련된 가족, 사회기관들, 학교출석,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행동,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과 같은 배경정보를 파악하게 된다. 판결전조사는 소년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소년에게 가장 적절한 판결이나 처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조사로서, 일반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범행 관련 정황, 사건에서 소년의 역할, 소년의 사회 및 직업경력에 대한 평가, 범행이 피해자들에게 끼친 영향,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처분유형, 소년에게 적절한 처분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보호관찰관들은 가족, 처우 담당자, 공무원 등 소년에게 적합한 처분을 내리는데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면담한다. 마지막으로 소년보호관찰관의 중요한 임무는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감독하는 것이다(김양곤, 2004).

이와 같이 막중한 임무를 하게 되는 소년보호관찰관은 미국에서는 성인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과 구별되어 있다. 모든 주에서 소년보호관찰관의 채용은 소년법원의 법관이 하고 있으며, 법률에 급여 등의 대우도 법관이 결정한다고 규

정되어 있다. 성인담당 보호관찰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가 형사정책, 범죄학, 심리학, 사회학, 인간관계, 행정 등의 학사학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사회과학 또는 행동과학 전공을 조건으로 명시한 경우도 있다. 하와이 주처럼 석사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하는 주도 있으며, 많은 주에서는 1년 또는 2년 이상 보호관찰, 공판 서비스, 가석방, 교정, 범죄 수사, 또는 약물/중독 치료 등의 업무 현장에서의 실무경력을 채용요건으로 정하고 있다(김혜정·황만성, 2003). 이에 비해 소년보호관찰관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에 관한 기준 및 목적에 관한 전미 자문위원회(The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가 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 심리학, 사회사업, 상담, 법률에 관련한 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미교정협회의 기준에 소년보호관찰관의 결격요건 중에는 전과자가 규정되어 있다(김양곤, 2004).

제6장

소년조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홍 영 오

06

소년조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 장에서는 문헌연구, 공식통계분석, 설문 및 면접조사, 기록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소년조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년조사제도의 중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조사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되, 전문조사관이 있는 검찰단계와 법원(재판)단계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제1절 조사의 중복 문제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년에 대해서는 수사·재판·교정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조사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검찰단계의 검사 결정전조사, 재판단계의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 보호관찰관에 의한 판결전조사, 법원 결정전조사, 소년조사관에 의한 보호사건에 대한 소년조사, 분류심사관에 의한 검사 결정전조사, 분류조사, 상담조사 등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검찰단계에서 검사 결정전조사를 의뢰한 이후 기소된 경우에 형사법원에서 판결전조사를 위탁할 가능성과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은 경우에 소년부에서 법원 결정전조사를 또다시 위탁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형사법원에서 판결전조사를 받은 이후 소년부송치된 경우에 소년부에서 법원 결정전조사를 다시 의뢰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또한 정보의 공유문제와도 관련있다. 즉 소년사건의 조사는 소년의 자질,

경력, 환경 등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를 필요로 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각 조사단계별로 자료의 공유가 중요하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년에 대한 조사자료의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김용운, 2006).

소년에 대한 조사는 소년의 요보호성을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처우를 선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년의 인격과 환경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년사법의 일정한 단계에서는 이러한 조사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조사의 중첩은 사법자원의 낭비라는 거시적인 측면 이외에도 소년에 대하여 중복조사에 따르는 번거로움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로 적절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이춘화(2002)의 연구에서 설문조사에 응한 소년들 역시 '옮겨가는 기관마다 중복되는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모든 조사를 처음 한 번에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한 경우가 많아 조사대상의 소년들이 특히 불만이 드러났다.

또한 대법원이 2005년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통하여 신설한 법원조사관에 의한 조사제도에 의해 실무적으로 양형자료조사의 영역에서 조사 주체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현황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판결전조사의 경우 2009년 전체 3,597에서 2010년 1,599건으로, 특히 성인의뢰건수는 2009년 2,419건에서 2010년 897건, 2011년 9월현재 612건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소년의 경우에는 2009년 1,178건에서 2010년 701건, 2011년 9월 현재 498건으로 역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법원에서 법원조사관에게 의뢰하면서 보호관찰관에게 의뢰하던 조사건수를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조사의 중복문제와 조사주체의 문제 또는 조사주체의 중복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1. 조사기관간 정보공유 · 협력 강화

가. 정보공유의 기본방향

소년조사제도에 있어서 조사절차의 중복과 정보공유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기본적으로는 각 조사기관간의 정보 및 자료수집에 대한 상호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보의 집적과 융합의 부작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소년에 대한 정보가 소년에 대한 처우라는 명목 아래 지나치게 공유되는 것은 또 정보의 집중으로 인한 다른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집적 및 공유범위의 설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 소년법이 소년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하고(법 제24조 제2항),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으며(법 제30조의2), 소년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도록 하고 하면서(법 제57조),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법 제67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일련의 규정들은 소년법의 중요한 이념 중 하나인 '밀행성(密行性)'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소년에 대한 책임비난은 최소화하고 처우의 가능성은 최대화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소년사건의 조사절차 또한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와 처우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로 나누고, 양자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전자에 대한 정보의 집적과 공유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후자에 대한 정보는 소년에 대한 가장 적절한 처우를 위해 폭넓게 공유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2000년 10월 이후 전산화되어 YOIS(Youth Offending Informaiton System)이라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통합된다. 이에 우리나라도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시행중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의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Korean Integrated Criminal System)이 시행중이나 주로 수사·기소·재판관련 전자문서공유 위주의 시스템으로서 소년사건처리에 필요한 자질이나 환경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보는 공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이를 다루거나 영국의 YOIS

와 같이 소년사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한국판 소년사범정보시스템(Korean Youth Offending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형사사법 전체자료를 시스템에서 공유하는 것이 정보의 과도한 집적이나 형사사법망의 과도한 확장이라는 비판을 받거나 범죄사실 이외에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국가기관이 관리하는데 따른 인권침해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는 것도 틀림없다(김용운, 2006). 예를 들어, 조사서에는 소년범 당사자이외에도 가족관계 등 사건당사자가 아닌 개인에 대한 정보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비행사실이 아닌 처우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자료만을 이 시스템을 통해 공유한다면 시간과 비용의 절약뿐만 아니라 소년들이 중복적으로 조사받는 것에 대한 불만과 정신적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현재 경찰에서 작성하고 있는 소년환경조사서(소년카드)나 비행성예측자료표, 검사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결정전 조사,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상담심사 등은 후자에 속하는 정보이므로 이러한 자료는 검사와 법원에 송치될 때까지 뿐 아니라 이후 교정·보호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나. 기관간 상호협력사례

일본의 경우 교정시설과 보호시설이 긴밀하게 상호 연계하여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그 처리경과, 평가결과, 처우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가 있는바, 아래에서는 이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165] 소년조사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기관간 상호협력에 대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

① 기록 등의 상호통지 : 먼저 교정시설에서 성범죄자조사를 받은 자가 가석방되거나 형기종료 후 재범을 범함으로써 보호관찰소에서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

165) 황태정, "일본의 성범죄 재범방지정책-우리 법제도에의 시사점", 법학연구 제18권 제3호(2008/09),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13-214면 참조.

을 수강하는 경우, 교정시설은 보호관찰소의 요청에 따라 성범죄자조사의 결과 및 그 후 실시한 정기평가의 결과를 포함한 처우프로그램 실시상황을 통지하고, 반대로 보호관찰소에서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을 수강한 자가 재범이나 집행유예·가석방 취소 등에 의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성범죄자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요청에 따라 보호관찰소에서의 처우프로그램의 실시상황을 통지하기로 한다.

② 평가결과의 공유 : 교정시설 및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각종 평가결과 및 필요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여 이후의 처우에 활용하고, 위험성이나 요구성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처우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전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교정 및 보호 분야에서 동일한 평가도구(일본의 경우 Static-99 등을 기초로 한 RAT2005, SONAR를 기초로 한 NAT2005 등)를 사용한다.

③ 처우경과, 처우성과 및 처우기술의 공유 : 교정시설 및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처우프로그램의 경과 및 성과를 상호 송부하여 이후의 처우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처우프로그램을 재검토함으로써 재범방지에 보다 효과적인 형태로 개량해 가도록 한다. 또한 양 시설의 성범죄자처우 담당자에 대한 연수를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운용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④ 처우이론의 공유 : 동일한 처우이론에 따라 처우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밖에 프로그램의 내용 중 사용용어나 설정단계 등 세부적인 차이를 조정하고, 교정시설과 보호관찰소 중 한 쪽 프로그램만 수강한 경우에도 최종적인 재범방지계획은 공통의 서식으로 작성하며, 각 실무진이 작성한 과제 중 필요한 것은 공유한다.

2. 조사방식 및 조사서 양식의 개선

현재 검사의 결정전조사제도의 조사내용은 법무부훈령 제623호(2008. 6. 9.)의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규정에 조사절차, 회보기간, 조사방법 및 검찰청 대응 조사 담당기관 등과 함께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및 조사서양식이 규정되어 있다(〈부록〉 참조).

* 접수번호, 요구기관, 사건번호, 요구검사
① 인적 사항 : 성명, 죄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업, 출생지, 주소지, 거주지, 가족상황
② 범죄관련 사항 : 범행개요 및 동기, 피해회복 여부, 범죄경력
③ 생활환경 : 가족사항, 생활여건
④ 성장과정
⑤ 학교·교우
⑥ 직업관계
⑦ 신체 및 정신상태 : 신체특징, 건강상태, 병력진단, 심리검사
⑧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⑨ 진술태도(소년 및 관계인)
⑩ 향후 생활계획
⑪ 기타 필요한 사항
⑫ 조사자 의견
단, 병력진단과 심리검사는 조사 대상 소년이 정신과적 치료력이나 정신과적 장애가 있거나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판결전조사의 내용은 법원의 양형에 참고가 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써, 공소사실이나 공판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피고인의 환경, 심리적·정서적 상태, 성격특성, 직업 등 경력, 과거범죄경력, 가족구조의 건정성 여부, 재범위험성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판결전조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조사의 내용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검사의 결정전조사서와 유사한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부록〉 참조).

* 접수번호, 요구기관, 사건번호, 요구검사
① 인적 사항 : 성명, 죄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업, 출생지, 주소지, 거주지, 가족상황
② 범죄관련 사항 : 범행개요 및 동기, 피해회복 여부, 범죄경력
③ 생활환경 : 가족사항, 생활여건
④ 성장과정
⑤ 학교·교우
⑥ 직업관계
⑦ 신체 및 정신상태 : 신체특징, 건강상태, 병력진단, 심리검사
⑧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⑨ 진술태도(소년 및 관계인)
⑩ 향후 생활계획
⑪ 기타 필요한 사항
⑫ 조사자 의견

분류조사와 상담조사의 내용 역시 조사서 형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아래에서 보듯이 조사내용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다만, 가장 큰 차이는 소년원에 수용한 이후의 행동관찰이라 하겠다(〈부록〉 참조).

① 환경적 측면 : 가정, 학교, 사회환경으로 구분
 ○ 가정
 - 출생지, 출생순위, 성장환경
 - 거주사항(거주이전, 거주 종류, 가옥구조, 생활정도)
 - 가족관계
 - 가정의 보호감독
 - 소년의 개인력(신체 및 정신과적 병력)
 ○ 학교
 - 교육과정 이수
 - 학교생활(학습태도, 성적, 급우 및 교사와의 관계, 출결상황, 행동발달 상황, 상벌관계, 학습능력, 장래 학업 및 진로계획)
 ○ 사회
 - 교우관계, 여가생활, 가출횟수, 취업력, 문제행동, 비행력, 본 비행
② 심리적 측면
 ○ 지능, 성격, 적성 및 흥미, 정신의학적 진단, 종합 심리 평가
③ 행동관찰
 ○ 생활관찰(입원장면, 면회장면, 교육장면, 대인관계)
 ○ 면담관찰9태도, 행동, 언어, 사고, 정서, 지적 수준, 판단력)
④ 비행분석
 ○ 비행 분석에 있어서 환경적, 심리적, 행동관찰 내용 중 비행과 관련된 원인을 고려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⑤ 지도방향 - 실현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⑥ 재비행예측
 ○ 가정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에서 가능성 여부
 ○ 학교생활을 통해 본 가능성
 ○ 문제행동과 관련된 가능성(가출, 취업력, 문신, 자해)
 ○ 비행력, 비행내용, 비행수법 측면에서의 가능성
 ○ 합의 여부, 반성태도
 ○ 행동관찰 측면에서의 가능성
 ○ 심리적 측면에서의 가능성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로는 검사 결정전조사나 판결전조사에서 조사내용의 중요성이나 조사자의견 제안시 비중을 두는 요인 그리고 재범위험성에 대한 의견제안시 비중을 두는 요인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면담한 판사 중에서는 검사 결정전조사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전조사를 다시 의뢰하게 되는데 이때는 조사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서 조사를 의뢰할 때 검사 결정전조사서를 첨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본 연구자가 면담한 소년부 판사들에 의하면 검사 결정전조사서가 첨부된 경우나 판결전조사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가능하면 법원 결정전조사 의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검사 결정전조사나 판결전조사 이후 소년부에서의 판결전까지의 공백기에 대한 자료는 처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공백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조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은 각 조사유형별로 조사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여 조사서 양식을 동일하게 통일하되, 각

조사유형별로 필요한 내용만을 추가로 첨가하고, 조사기간간 공백기에 대한 생활 및 환경조사만을 추가로 조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각 조사유형별로 조사서 양식을 통일하되 검사 결정전조사서나 판결전조사서의 내용에 분류심사시의 행동관찰 등을 추가하는 방법이다.

3. 조사대상의 범위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검사가 주로 의뢰하는 대상은 재범이 43.1%로 가장 높았고, 3범 이상도 21.6%로 높았으나 초범은 5.9%로 높지 않았고, 제한없다는 의견이 29.4%를 차지하였다. 검사 결정전조사의 주 의뢰사건은 중복응답을 하도록 했을 때 절도범죄가 응답자의 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폭행/상해범죄가 39.2%였고, 제한없다는 의견도 43.1%였다. 제3장의 조사현황에서 제시했듯이 소년사건의 판결전조사에서도 절도사범이 43.8%, 폭력사범이 15.7%였다. 처분유형별로는 실제로 보호관찰소에서 회보한 사건을 분석한 결과에서 기소유예와 소년부송치 처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홍영오 등, 2009).

설문 및 심층면접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가 필요없을 정도의 아주 경미한 사건 등이 형식적으로 의뢰되는 경우도 있으나 조사인력의 부족 등 현실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를 바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검찰에서의 소년범죄자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 형법범은 70,045명이었는데, 보호관찰소관에 의해 2010년에 검사 결정전조사를 받은 인원은 4,524명(6.5%)에 불과하였다. 물론 현행법에서는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게 되어 있어 모든 소년범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처분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0년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받은 인원은 45,090명이었는데 분류심사 및 상담조사를 받은 인원은 11,024명으로 24.4%에 불과하였다. 대부분의 소년들이 소년보호이념에 따라 개별처우를 받기 위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기초자료없이 처분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지선(2000)이 강조했듯이 조사자료없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신문조사나 진술조사에만 의존하는 것은 요보호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는 부적당하여 정보가 누락된 경우와 누락되지 않은 경우에 처분에 큰 차이를 유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사인력을 고려할 때 모든 소년들을 조사할 수도 없고, 경미한 사건까지 모두 조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년조사제도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로 정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판결전조사와 관련하여 이태형(2006)은 모든 형사사건 피고인에 대해 양형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인적·물적 한계가 있으므로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려우므로 판사의 양형합리화를 도모화고 피고인 갱생을 위하여 양형조사의 필요성이 높은 합의부 재판관할 사건 등 중요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판결전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소년범의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전조사를 명할 수 있다고 한 현행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규정은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실시하도록 형사소송법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형조사의 경우 미국은 1년 이상 구금형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 외의 범죄는 법원의 재량으로 하고 있으며, 영국은 구금형에 상당하는 경우나 집중 사회내 처우(보호관찰, 사회봉사, 야간통행금지) 부과할 경우 판결전조사는 의무적이다. 또한 독일의 경우, 소년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보조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이태형, 2006).

소년법과 소년조사제도의 취지, 그리고 요보호성의 판단자료의 유무에 따른 처분의 차이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모든 소년범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무엇보다 먼저 조사인력의 대폭 증원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에 의하면 조사관들은 지금도 과도한 업무량으로 힘들다고 호소하며 조사인력의 증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년사건의 발생현황 등을 고려할 때 소년범에 대한 조사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조사인력의 대폭 증원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현재의 조사인력과 업무량 그리고 수사 및 재판기간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궁극적으로 조사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를 정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통한 요보호성 판단자료의 유무에 따른 처분의 차이가능성에 대한 실증연구와 조사인력 충원 및 조사기관의 증설 계획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사를 통한 요보호성 판단자료의 유무에 따른 처분의 차이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조사대상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조사를 통해 소년에게 얼마나 다양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각 처분유형에 적합한 소년의 특성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될 것이다. 즉 개별처우를 위해 소년에게 적합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역으로 각각의 처분에 적합한 소년의 특성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검사 결정전조사, 법원 결정전조사, 분류심사 및 상담조사와 같이 조사결과에 따라 다양하게 처분할 수 있는 조사에 그렇다. 예를 들어 검사 결정전조사에서는 단순히 기소, 기소유예, 소년부송치가 아니라 각 처분결정에 따라 다양한 다이버전의 대안이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소년법의 취지에 맞는 개별처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최근 개정된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의 유형이 보다 더 다양해 진 상황에서 다음의 조사기관별 역할 조정에서 설명하겠지만 개정 소년법에 부응하여 화해권고제도를 비롯하여 청소년참여법정, 심리상담조사명령, 처분전 훈육 등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보호처분 유형과 다양한 제도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소년부 판사 중에서는 다양한 보호처분 유형 중에서 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처분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판사 자신들이 아니라 전문조사관이 이므로 조사보고서에 보다 조사자 의견제안시에 구체적으로 처분유형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166]도 있었다.

166) 물론 판사에 따라서는 처분은 판사의 권한이므로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제시보다는 처분을 내리기 위한 자료만 충실히 제시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4. 조사기관별 역할 조정

조사의 중복과 관련하여 기관 실무자에 따라서는 경찰·검찰의 수사단계와 법원단계의 조사관 조사, 분류심사, 판결전조사가 성격과 절차, 방법이 다른 각각 고유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관점에서 절차의 중복이라고만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즉 법원의 조사와 분류심사, 판결전조사가 각각 동일한 소년에 대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절차의 중복은 조사내용의 중복이라기보다는 유사한 기능을 기관별로 따라 수행한다는 지적이 정확하다는 주장이다(김용운, 2006).

따라서 조사기관별 역할 조정을 통해 조사의 중복 또는 기능의 중복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검찰의 소년범 처리현황를 분석한 결과, 소년부송치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부송치비율은 2008년 21%에서 2009년 32%에서 2010년에는 89,776명 중 소년부 송치가 30,143명(33.6%)이나 된다. 또한,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결과, 소년부 송치율은 2008년 34.2%, 2009년 32%, 2010년 29.9%로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2010년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결과에서도 5,294명중에서 29.9%(1,584명)가 소년부송치 판결을 받았다.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이 더욱 다양해져서, 종래 보호관찰에만 병합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하여 활용을 확대하고, 이른바 '쇼크구금'에 해당하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처분이 신설되었고, 인성교육 위주의 소년원 대안교육, 청소년단체 상담·교육, 외출제한명령, 보호자 교육명령제도 등이 도입되었다(천진호, 2008).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소년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및 화해권고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는데, 피해자의 요구를 고려하고, 가해자를 지역사회에 재통합시키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당사자 간의 자율적 갈등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소년보호재판의 회복적 사법의 실천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및 전문조사관을 중심으로 대법원 산하에 구성된 소년보호재판개선연구반을 구성하였고 이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5월경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회복적 사법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 절차인 화해권고제도[167]를 비롯하여 청소년참여법정[168], 심리상담조사명령[169], 처분전 훈육[170] 등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신한미, 2011).

따라서 한정된 조사인력과 앞에서 살펴본 여러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는 각 조사기관별로 조사유형을 구분하여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조사의 내용상에 크게 차이가 없는 검사 결정전조사, 판결전조사, 법원 결정전조사를 행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타 조사관들은 조사가 불가능한 위탁된 소년의 자질심사만을 위해 분류심사와 상담조사만을 전담하고, 법원의 형사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조사관은 소년부에서 보호소년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앞에서도 기술했다시피, 검찰의 처리결과 소년부 송치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개정 소년법에 의해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매우 다양해 진 상황에서 소년법의 이념에 부응하여 가장 적절한 개별처우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조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가정법원에서 이들을 조사하는 소년조사관은 전국적으로 29명 그도 대부분 겸임 또는 겸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법원조사관이 이들과 함께 보호소년

167)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법 제25조의 3이 정한 취지에 따라 보호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보호처분을 하기에 앞서 화해권고절차에 회부하여 법원이 위촉한 화해권고위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화해권고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화해권고에 따라 보호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함으로써 가해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소년보호재판절차를 통하여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구현하려는 데 의의가 있음.

168) 청소년참여법정이란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또래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이 사건을 심리한 후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하여 판사에게 건의하면, 소년부 판사가 소년에게 선정된 부과과제의 이행을 명하고 소년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는 제도로서, 제도의 취지는 소년의 책임의식 함양과 자존감 회복, 또래에 의한 비행소년 문제 해결, 청소년 및 진행인에 대한 사법교육을 하는 것이다.

169) 심리상담조사명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소년에 대하여 심리상담전문가에게 법원의 비용부담으로 조사관의 개입하에 3개월가량 심리상담 및 가족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소년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조사절차의 일환이다.

170) 보호처분 전에 소년전문조사관이 판사가 지정한 소년과 보호자들에게 1시간가량 교육을 실시하고 바로 판사에게 인계하여 당일 판사로부터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제도로서, 소년에 대하여는 재비행을 예방하고 보호자에게도 소년의 양육 및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줌과 동시에 적절한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가정법원에는 소년범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참여법정, 심리상담조사명령, 처분전 훈육 등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여 다양한 조사가 필요가 실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호관찰 이행사항 점검이 필요한 보호관찰처분 경험이 있는 소년에 대한 법원 결정전 조사는 보호관찰관에게 조사의뢰하고 나머지는 소년조사관을 통해 조사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다.

5. 조사주체의 중복문제 해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9세 미만의 소년형사범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만 판결전조사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중복조사의 문제는 실무적으로는 양형자료조사의 영역에서, 특히 보호관찰관에 의한 판결전 조사와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자료조사의 중첩 문제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분야는 성인범과 소년형사범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므로 양형자료조사의 주체에 대한 논의가 소년형사사건에 직접적인 의미를 가짐은 물론이다. 그러나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도 보호관찰관에 의한 결정전 조사와 법원의 소년조사관에 의한 조사 역시 본질적으로 이러한 중첩구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의 논의는 상당한 실익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양형자료조사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을 상세히 살펴보고,[171] 이를 통하여 소년조사의 영역에서는 조사의 창구가 어느 쪽으로 단일화되는 것이 바람직할지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171) 이에 대해서는 김재봉, "형사소송법개정안의 양형자료조사제도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 제18권 제2호(2006/12), 한국형사정책학회, 213-236면; 서보학, "양형기준의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한국형사법학회 2011년 추계학술회의 자료집(2011.09.24), 한국형사법학회, 57-98면; 천진호, "양형기준제 시행의 문제점과 양형자료 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2009/09), 한국형사법학회, 251-272면; 최석윤, "양형조사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법연구 제23권 제1호(2011/03), 한국형사법학회, 309-336면 등 참조.

가. 견해의 대립과 장단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당연히 조사의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검사와 법관은 수사·공판 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밝히고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는 점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인격과 환경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항을 다른 기관에 위임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양형자료조사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법무부 소속의 보호관찰관으로 하자는 견해와 법원 소속의 법원조사관으로 하자는 견해로 대별된다.

이러한 논쟁의 시발점은 법원이 2009년 7월 1일 8개 범죄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제를 시행하면서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에 근거하여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부산·광주·대구 등 전국 7개 주요 지방법원에 5급 조사관 9명과 6·7급 조사관보 12명 등 법원조사관 21명을 임명하여 자체적인 양형자료조사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172]로 구치소 내 구속피고인 접견을 금지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였고, 피고인 면담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조사관의 조사는 결국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에만 의지하게 되는 등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자료조사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게 되었다. 이러던 가운데 대법원이 2010년 5월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가 법적 근거가 없고 당사자주의에 위배된다는 검사의 주장[173]을 배척하고 법원조직법에 의한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를 적법한 것으로

172) 법원조직법 제54조의3 제2항은 "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그밖에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활동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고,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활동은 위법한 행위가 된다는 지적이다(천진호, "양형기준제 시행의 문제점과 양형자료 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2009/09), 한국형사법학회, 265면 참조).

173) "원심은 아무런 소송법상 근거가 없이 법원 소속 조사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후,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당사자주의에 배치되는 위법이 있으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검사의 항소이유).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① 2005.3.24. 개정되어 2005.7.1.부터 시행된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은 제1항에서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조사

판시하면서[174] 이 논쟁은 정점으로 치닫게 되었다.

제도의 장·단점과 관련하여 먼저 법원 소속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에 대해서는 ① 재판부와 상시적이고 유기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결과에 대한 법원의 신뢰가 향상되고, ② 범죄심리학, 범죄사회학, 형사정책학 등 관련 학문분야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문가를 조사관으로 채용할 수 있으므로 양형자료조사의 전문성 또한 제고되며, ③ 양형자료조사의 업무효율성 및 신속성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양형심리와도 연계성이 높아져 효율적인 조사와 심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논의된다. 또한 ④ 조사명령으로부터 조사착수에 이르는 시기가 단축되고 이의제기에 대한 보완, 추가조사 등이 신속히 이루어진다는 점, ⑤ 양형조사업무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력을

관을 둘 수 있다.' 제2항에서 '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 소속 양형조사관의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볼 것인 점, ② 현행법상 보호관찰관에 의하여 양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형조사는 수사가 아니며,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법원 소속 조사관의 양형조사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는 없다고 볼 것인 점, ③ 양형자료에는 당사자가 직접 수집하기 곤란한 것들도 포함되므로 사실인정 단계와 달리 취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주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 점, ④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자료에 대하여는 원진술자의 증언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등 직접주의의 예외가 현행법상으로도 인정되고, 양형에 있어서는 전문법칙의 배제 등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될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원 소속 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가 현행법상 위법이라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시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09.12.31. 선고 2009노514 판결 참조).

174) 대법원 2010. 5.12. 선고 2010도750 판결.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등 참조),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형의 양정에 관한 절차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단계와 달리 취급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직권으로 양형조건에 관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수집·조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1심법원이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에 의하여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소속 조사관에게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수집·조사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정상 관계 사실과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8월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거기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의 수집·조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고려할 때 로비나 금품수수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추궁과 제재가 용이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① 법원 내부에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고 양형조사관을 새로 채용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사법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고, ② 양형조사관은 법관의 보조자인데 양형에 관한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면 입증을 위하여 법관을 대리하여 조사관이 증언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당사자주의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으며, ③ 법원의 심증을 사전에 노출함으로써 피고인이 판결결과에 불복할 우려가 있다는 점, ④ 유죄심증 전 양형자료를 조사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하여 보호관찰관을 양형조사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① 우리의 법체계상 검사 등 수사기관이 1차적으로 양형자료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보호관찰관이 2차적으로 양형자료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② 이미 보호관찰관은 소년범 및 성인범에 대하여 판결전조사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기존에 축적된 조사업무기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③ 형사사건 심리 단계에서의 양형조사와 판결선고 이후 보호관찰 단계에서의 준수사항 이행 정도 등 보호관찰을 위한 조사를 하나의 기관에서 담당함으로써 업무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히는 반면, ① 법원 밖의 기관이 조사를 담당함으로써 양형의 주체인 법원의 지휘감독이나 유기적 협력이 결여되고 법원의 신뢰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고, ② 소송의 신속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③ 보호관찰소 소속 조사관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175]

나. 개선방안

양형자료에 대한 조사의 담당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히 소송의 구조나 법체계의 차이 등을 이유로 기계적으로 구분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누가 양형인자의 조사에 있어서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업무의 독자성을 가지고 공

17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의안번호 174221) 검토보고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06/09, 25-26면 참조.

정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를 통하여 적절한 양형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 할 것이다. 또한 어떠한 제도의 도입 여부와 같은 입법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는 항상 제도의 이상과 함께 사법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가치가 더불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법체계 내에서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보호관찰 등 피고인의 처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관찰관이 양형자료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2009년 2월 국회에 제출된 양형조사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176]에 대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검토보고서(이하 '사개추위보고서'라 함)가 이와 관련하여 "합리적 관점에서 판단하면 법원 소속의 법원조사관으로 하여금 양형자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Desirability)한 반면, 법원조사관의 충원과 전문성 배양을 위한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예산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1989년부터 현재까지 20여년간 실시한 판결전 조사의 노하우를 축적한 보호관찰조직이 실행가능성(Feasibility) 측면에서 실용적"이라고 지적한 것도 이러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 있다고 보여진다. 조직상·업무상 검찰과 연관을 맺고 있는 보호관찰조직에 대한 법원의 불신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문제가 법원에 대한 조사보고의무, 법원의 지휘감독권 강화 등을 통하여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극적인 견해로부터, 법원의 불신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보호관찰소를 법무부로부터 독립시켜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177] 등이 제시되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방안일 수는 있겠으나 전면적인 입법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그 전까지 갈등의 소지가 너무 많다고 생각된다.

주장되는 견해 중에는 논거는 다르지만 보호관찰관과 법원조사관의 2원적 조사구조를 지지하는 견해도 있다. ① 재범위험성 예측이라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17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03680).

177) 김재봉, "형사소송법개정안의 양형자료조사제도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 제18권 제2호(2006/12), 한국형사정책학회, 230면; 서보학, "양형기준의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한국형사법학회 2011년 추계학술회의 자료집(2011.09.24), 한국형사법학회, 80면.

판결전 조사와 사실조사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양형조사는 기능적으로 분리되어야 하고, 전자는 보호관찰관이 후자는 법원조사관이 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정비하고 적정수의 보호관찰관과 법원조사관의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178]와, ② 공판중심주의가 철저히 관철된다는 전제 아래 수사단계에서 검사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보호관찰관에 의한 양형자료조사를 원칙적인 양형자료조사로 하면서, 공판단계에서 법원이 필요한 경우 보충적으로 법원 소속의 양형조사관으로 하여금 양형자료를 조사하게 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있다는 견해[179]이다. 두 견해 모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점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실용성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견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핀다면, 전자의 견해에 대해서는 판결전 조사와 양형조사가 실질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180] 특히 이 견해에 의하면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소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비할 수밖에 없다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후자의 견해의 경우 '필요한 경우 보충적으로'라는 것이 과연 현실에서 합리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지만, 보호관찰관에 의한 조사가 표준모델에 의하여 전문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그 조사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되고 그 한도에서는 법원의 양형조사가 생략될 수 있어 시간·비용·인력의 절감과 중복조사로 인한 피의자·피고인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바, 현실적으로 가장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양형조사의 주체에 대한 논쟁과는 관련없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소년부송치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개정 소년법에 의해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매우 다양해지고, 가정법원에서는 이에 부응하여 소년범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참여법정, 심리상담조사명령, 처분전 훈육 등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여 다양한 조

178) 최석윤, "양형조사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법연구 제23권 제1호(2011/03), 한국형사법학회, 315·332면 참조.

179) 천진호, "양형기준제 시행의 문제점과 양형자료 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제안", 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2009/09), 한국형사법학회, 268면 참조.

180) 서보학, "양형기준의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한국형사법학회 2011년 추계학술회의 자료집(2011.09.24), 한국형사법학회, 80면.

사가 필요가 실정이기도 하므로, 소년조사관을 포함한 법원조사관들은 보호소년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제2절 조사관 및 조사의 전문성 향상

본 연구의 설문결과, 보호관찰관, 분류심사원, 소년조사관들은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가 존재한다'는 사항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고, 다음으로는 '조사 전문 인력의 부족',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 담당', '조사담당 직원에 대한 재교육 및 교육시간 부족' 등이 문제점의 상위 5개에 포함되었다. 또한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개선과제 1순위로 응답자들의 34.3%는 조사 전문 인력 부족이라고 답했으며, 16.7%는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이라고, 11.8%는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 존재라고 응답하였다. 1+2+3순위에서는 응답자들의 55.4%는 조사 전문 인력의 부족이라고 답했으며, 47.1%는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이라고, 37.3%는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 존재라고, 28.9%는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 담당과 조사담당 직원에 대한 재교육 및 교육시간 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각종 조사를 의뢰하는 판검사 역시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서, '조사에 따른 개별처우 프로그램의 부족'을 가장 문제라고 지적하기는 했지만 이 외에는 '소년범 전문 조사관 부재', '조사 전문 인력의 부족',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 담당' 등 조사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높았다. 또한,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 1순위에서는 '조사전문인력의 부족'이 가장 높고, '소년범 전문 조사관 부재', '범죄유형별 표준화된 위험성 평가도구 부재', '조사에 따른 개별처우 프로그램의 부족'의 순이었다. 1+2+3순위의 복수응답에서는 '조사에 따른 개별처우 프로그램의 부족'이 42.9%로 가장 높았고, '소년범 전문 조사관 부재', '범죄유형별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 부재'의 순이었다.

요약하면, 조사를 의뢰하는 판검사나 조사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분류심사관, 소년조사관 대부분이 조사관 및 조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1. 조사인력의 전문화

조사관의 전문화와 관련하여 보호관찰 직원의 인력부족은 기본적으로 직원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한 배치를 어렵게 만들게 되므로 과중한 업무량으로 조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새로운 조사제도의 신설 등으로 보호관찰소관뿐만 아니라 분류심사관 및 법원의 소년조사관들의 조사업무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직원의 충원없이 각종 조사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인력의 충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설문 및 면접조사 결과, 조사관들의 업무부담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보호관찰관은 한달 평균 10.4건, 분류심사관 30건, 소년조사관 12건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에서도 보호관찰관은 업무량 및 조사건수과다, 조사인력 및 시간 부족, 회복기간 너무 짧다는 의견이 많았고, 분류심사관 및 소년조사관들도 업무량이 및 의뢰건수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물론 최근 형기 후 보호관찰제의 도입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조사업무만을 담당하는 인력을 충원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소년보호이념에 따른 개별처우를 달성하기 위한 조사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조사인력의 충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형사사법절차상에서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잘 운영되어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성인과 소년의 특성은 다르기 때문에 소년 전문 조사관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인력은 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보호관찰관의 경우, 소년범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소년 전문 조사관 체계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고, 심지어 보호관찰소의 본 소에만 조사팀이 구성되어 있을 뿐 각 지소에는 인력의 부족으로 조사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보호관찰과 업무를 병행해서 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으로 업무이다. 법원의 경우에도 소년조사만을 하는

소년조사 전담 조사관은 전국적으로 불과 몇 명이 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채용과정에서부터 관련 학위나 전문성을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 각국에서는 보호관찰관의 채용과정에서부터 전문성을 고려하고 있다. 영국은 보호관찰관의 자격요건으로 1998년 이후 이전 학력이나 전공과는 상관없이 지역사회와 형사정책학위(BA in Community and Criminal Justice)와 지역사회 정의(Community Justice)에 대한 4등급의 국가직업자격증(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NVQ)으로 구성되어 있는 2년 과정의 보호관찰학위(Diploma in Probation Studies)가 요구되고 있다. 보호관찰학위(Diploma in Probation Studies)는 국가직업자격증(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NVQ)은 실무능력이 증명되었을 경우에만 획득할 수 있는 직무 관련 자격증으로서 실무개발평가자(Practice Development Assessor)의 감독하에 보호관찰관의 활동을 모두 수행하게 되고, 이 수습직 보호관찰관(Trainee probation officers)이 NVQ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정규직의 보호관찰관이 된다(김혜정·황만성, 2003).

미국에서는 소년보호관찰관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에 관한 기준 및 목적에 관한 전미 자문위원회(The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가 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 심리학, 사회사업, 상담, 법률에 관련한 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독일의 보호관찰관 채용기준은 대학에서의 사회교육학(Sozialpädagogik)이나 사회사업학위(Sozialarbeit)가 필수이다. 구체적으로 바덴뷔르템베르크州에서는 실무위주의 교육을 받는 4년제 대학인 전문대학(Fachhochschule)에서 사회교육이나 사회사업전공에 총 8학기를 다니면서 2학기 정도(보통 3학기 때와 6학기 E)의 실습학기를 이수해야 한다. 단, 州에 따라서 자격요건이 다소 차이가 난다. 스웨덴의 보호관찰관은 국가 공무원으로 국가시험이나 보호관찰관 채용 전문시험은 없으나 대학졸업자격이 필요한데 주로 사회사업학, 사회학, 심리학, 법학 전공자들이 많다. 스웨덴에서는 교정 보호기관에 채용된 자에 대해 이론과 경험의 통합을 목적으로 다양한 연수과정과 선임보호관찰관의 지도·보조시스템이 있다(정우식·정소은·김희자, 2000).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의 보호관찰관 자격요건은 영어와 프랑스어에 능숙해야 하며, 공인된 대학의 사회과학이나 이와 관련된 학사 학위가 요구된다. 또한 평가, 상담, 사례관리, 면담, 재활 등과 같은 사회복지(social work)의 원리와

실행에 대한 고급 지식을 갖춰야 하며, 관련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지식 및 보호관찰과 가석방 프로그램, 사례담당, 그리고 관련된 법정과 법률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채용 때부터 조사와 관련있거나 조사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최근 법무부에서는 조사서의 신뢰도를 제고할 목적으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에 한해 조사업무를 부여하는 조사관 인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가 훈령으로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조사관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조)하고 있다. 그리고 제3조에 조사관의 직무를 판결전조사, 결정전조사, 환경조사, 보호관찰 사안조사, 청구전조사, 분류심사, 검사 결정전조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181]. 교육훈련[182], 교과목 시험과조사서 평가[183], 등 3단계를 거쳐 조사관 인정을 하게 되며, 교육훈련은 조사제도론, 심리학의 이해, 심리검사, 이상심리와

181) 1.『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판결전조사; 2.『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결정전조사; 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환경조사; 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보호관찰 사안조사; 5.『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청구전조사; 6. 법률 제9112호『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청구전조사; 7.『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청구전조사; 8.『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조사 또는 분류심사; 9.『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른 검사의 결정전조사; 10.『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따른 조사; 11.『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사; 1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수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 또는 검찰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

182) 제8조(조사관 자격인정을 위한 교육) ① 조사관 자격 인정시험에 응시하려느 자는 "조사제도론"과 "심리학"분야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1급 임상심리사 또는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심리한 분야의 교육 이수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법무연수원의 사이버교육에 의한다.

183) 제9조(조사관 자격 인정시험) ① 조사관 자격 인정시험은 제8조 제1항의 "조사제도론"과 "심리학"분야의 객관식 필기시험 및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로 한다. ② 제1항의 객관식 필기시험은 각 분야별 60점 이상 취득시 합격한 것으로 보며, 60점 이상 취득 분야에 대해서는 차후 시험을 면제한다. ③ 1급 임상심리사 또는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심리학 분야의 시험을 면제한다. ④ 제1항의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는 85점 이상 취득 시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정신병리의 이해, 인지행동치료의 이해 등 7과목의 교육훈련을 받고, 교과목 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조사서 평가는 평가위원단에서 평가 대상 직원이 작성한 실제 조사서 3개를 무작위 추출하여 내용을 평가하게 된다. 동법 제15조에는 조사관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조항을 규정하여 제1항에 '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보호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인사권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관 자격 취득자를 제3조의 직무에 우선 보직토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사관 자격 취득자를 조사업무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였다. 2010년 제 1회 시험에서는 142명(보호관찰 103명, 소년보호 39명)이 합격하였다.

앞으로는 조사관인정제와 관련하여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조사관인정제에서 나아가 보다 전문적으로 '소년범 전문 조사관인정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년의 심리와 특성, 소년의 비행 및 범죄 특성, 소년의 재범관련 특성 및 요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식견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

또한, 순환보직제도가 조사관의 전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순환보직제도에 의하여 조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일반 직원들이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보직의 변경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 직무의 전문화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직원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한 적재적소의 인력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로 인해 조사제도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표면적이고 단편적인 범죄경력이나 가정관계 등의 자료수집에만 그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조사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조사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이 아닌 조사업무 전담 인원을 임용·배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심리학, 형사정책학, 범죄학, 사회학 등이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보호관찰관 중 양형조사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은 보직을 순환하지 않고 전문성을 쌓도록 하고 있다.

2. 조사관 교육 확대를 통한 전문성 제고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에도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의 교육과정만으로는 조사담당 보호관찰 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심지어 조사관과의 심층면접에서 조사관들은 과도한 업무로 인해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또한 법무연수원이나 법원연수원이 아닌 외부의 전문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음으로 인해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심지어 개인적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받을 의향이 있을 때조차도 조사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부담으로 인해 교육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인력의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조사 역량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새로운 제도나 검사도구 등이 개발되므로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조사담당 보호관찰직의 직무분석을 통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핵심역량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현재의 인력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적재적소의 배치와 더불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조사담당 보호관찰관은 각종 검사에 대한 수행능력 못지않게 피의자를 온화하게 설득시켜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고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면담능력이나 설득능력 등도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할 수 있다.

앞에서 주장한 선발과정이나 채용요건의 강화가 쉽지 않다면, 자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법무연수원에서의 교육이 시간적으로 얼마되지도 않는 등 몇가지 면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법무연수원에서의 공식적인 교육과정 이외에도 특별채용된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수시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례연구(case study) 모임을 만들어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조사관 경력이 짧은 경우에는 이들 전문가들로부터 주기적으로 수퍼비전(supervision)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조사담당 직원들의 조사 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학습동아리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또한, 조사관의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대학이나 전문 상담기관 또

는 워크숍등을 통해 각종 심리검사 등 조사관련 과목에 대한 교육 등 지속적인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원이나 전문상담기관의 각종 교육을 수강하거나 워크숍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문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전문 상담기관과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현재 각종 조사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심리검사 및 점차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각종 재범위험성평가의 요강과 지침서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된다. 예를 들어, 청구전조사가 시행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가 중요해졌으므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Korean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인 PCL-R(The Hare Psychopathy Check List-Revised)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 검사는 단순히 자기보고식의 평가도구가 아니라 면접을 통해 피조사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전문적인 평가도구이다(홍영오 등, 2009).

3. 범죄유형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 조사의뢰자인 판·검사의 57.2%와 조사관의 59.3%는 '범죄유형별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 부재'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의뢰자의 14.3%와 조사관의 14.8%는 소년조사제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로 '범죄유형별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 부재'를 제1순위로 선택하였다.

검사들은 검사의 결정전조사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1순위에서는 '회보기간이 너무 늦은 점'이 가장 높았고,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가 없는 점'이 다음이었다. 하지만 1+2순위 복수평가에서는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가 없는 점'이 가장 높았고, '회보기간이 너무 늦은 점', '조사관의 의견제시 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점'의 순이었다. 형사소년판사는 판결전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조사관의 의견제시 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점'을 7명 모두가 지적하였다. 소년부판사는 결정전조사제도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조사자가 소년 또

는 소년범 전문가가 아닌 점', '조사관의 의견제시 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점', '조사서의 내용이 부실한 점'이 각각 2명씩 1순위로 지적하였다. 이에 비해 분류심사제도에 대해서는 '조사관의 의견제시 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점', '조사서의 내용이 부실한 점'을 들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처분을 결정하거나 조사의견을 제안할 때, 검사와 판사들 간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조사관들간에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위험성 평가를 위한 주 고려요인에서도 검사는 조사관의견과 더불어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경력, 생활환경을 제1순위로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보호관찰관은 재범위험성 평가에서는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생활환경에 대한 응답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조사자의견 제안시에는 생활환경,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분류심사관은 검사 결정전조사에서 조사자의견 제안시에는 범죄경력, 생활환경,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재범위험성평가에서는 범죄경력과 생활환경,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을, 분류심사에서는 조사자의견 제안시에는 범죄경력과 생활환경을,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범죄경력을 제1순위로 지적하였다. 즉 조사의뢰자와 조사관 모두 조사자의견과 재범위험성 평가시에 각각의 집단내에서도 다양할뿐만 아니라 조사의뢰자와 조사관간에도 서로 고려하는 내용이 상이하였다. 이는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먼저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검사 결정전조사에서 조사자의 최종의견, 즉 기소유예인지 소년부송치인지를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전계획여부, 범행동기의 유흥미·용돈마련여부, 범행동기의 우발·충동여부, 동종전과건수, 대인범죄전력여부, 피해합의여부, 친부모동거여부, 모 애착정도, 음주여부, 학력, 가족의 보호능력이었다. 이에 비해 조윤오(2010)의 연구에서 분류심사원 조사관의 시설내 처우 또는 사회내 처우의 최종결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범죄형태, 전과횟수, 가중요인 중 가출, 가족결손, 감점요인 내 피해합의, 보호의지 유무였다. 마지막으로 법무부(2006)에서 분석한 판결전조사에서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를 결정하는 관련있는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직업, 범죄경력, 동종전과, 최초 범죄연령, 보호관찰 성적, 부모관계, 기능적 결손사유(부모의 무관심 등), 부 학력, 부 직업, 가정 월수입, 보호자 보호능력, 가

출횟수, 최초 가출연령, 이사 횟수, 최종학력, 중퇴경험, 학교성적, 행동발달 상황, 출결상황, 교우관계, 죄명, 범행동기, 범죄계획성, 범행 가담정도, 범행시 음주여부, 피해회복 여부 등이 관련있었다. 홍영오 등(2009)의 연구에서 밝혀진 검사의 처분 결정 즉 기소유예와 소년부송치에 영향을 끼친 요인은 성적인 요소, 과거 처분유형의 수, 동종전과수, 흡연여부, 보호자의 보호능력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조사관의 의견 및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가 시급히 개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영국의 경우에는 YOT에 위탁되면 기본적으로 위험성 평가도구를 근거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소년범의 비행 및 범행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화된 평가도구, ASSET을 통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자료는 보석결정, 판결전조사서, 사회명령, 구금명령 등에 사용된다.

홍영오 등(2009)은 소년범에 대한 5년간의 추적조사를 바탕으로 위험성평가도구를 개발하였으나, 타당성을 검증하지는 못하였으므 이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범죄유형별 위험성평가도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현재 보호관찰소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특히 살인, 상해, 폭력사범에 적합한 성인판결전조사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 System-General, KORAS-G), '성범죄자 위치추적법'시행에 따라 한국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평가척도(Korean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K-SORAS)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재범위험성평가도구의 신뢰도와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폭력범이냐 재산범이냐 또는 성폭력범이냐에 따라 재범위험성 평가도구가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소년범의 경우에는 위험요인이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소년사범에 적합한 범죄유형별 재범위험성평가도구를 세분하여 개발해야 할 것이다. 다만, 현단계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도구의 신뢰도와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지 하나의 도구만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도구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국내에서 위험성평가도구의 개발 및 시행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로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범요인을 밝

히기 위한 재범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재범연구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재범연구를 위해서는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어야하나, 현재는 개인의 정보보호에 대한 강조가 너무 강하여 재범연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재범연구에서 학자들의 관심은 범죄자 개개인의 정보에 관심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재범여부만이 관심있을 뿐이므로 학술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재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경찰청이나 검찰의 제한된 장소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거나, 더 나아가 경찰청이나 검찰청 내의 제한된 컴퓨터만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 조사유형별 조사자의견 결정요인 비교

가. 판결전조사서 최종의견 및 법관의 판결과 관련 요인(법무부, 2006)

법무부(2006)[184]에서 2005년에 판결전조사가 의뢰된 소년조사대상자 1,948명의 판결전조사서를 분석하여 조사자의견 제시에 고련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결과, 개인특성요인 중에서는 성별, 연령, 직업, 범죄경력, 동종전과, 최초 범죄연령, 보호관찰 성적이 관련있었고, 가정환경 요인 중에서는 부모관계, 기능적 결손사유(부모의 무관심 등), 부 학력, 부 직업, 가정 월수입, 보호자 보호능력, 가출횟수, 최초 가출연령, 이사 횟수가 관련있었다. 학교환경 요인 중에서는 최종학력, 중퇴경험, 학교성적, 행동발달 상황, 출결상황, 교우관계 등이 관련있었고, 범행관련 요인 중에서는 죄명, 범행동기, 범죄계획성, 범행 가담정도, 범행시 음주여부, 피해회복 여부 등이 관련있었다. 이에 비해, 개인특성 요인 중 심신경함여부는 관련없었고, 가정환경 요인 중에서는 구조적 결손사유(부모의 사망, 이혼 등), 범행관련 요인 중에서는 공범유무 등은 조사자의견과 관련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서 발간한 「판결전조사 분석」에는 조사자의견 제시에 고려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을 뿐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한 로지스틱회귀분석

184) 최근에는 법무부에서 「판결전조사 성과분석」을 발간하나 성인범에 대해서만 분석할 뿐 소년범에 대해서는 분석자료를 발간하지 않고 있다.

을 하지 않아 변인들간의 관계만을 알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참고로 판사들의 판결결과는 개인특성요인 중에서는 연령, 직업, 범죄경력, 동종전과, 최초 범죄연령, 보호관찰 성적이 관련있었고, 가정환경 요인 중에서는 부모관계, 부 학력, 부 직업, 가정 월수입, 보호자 보호능력, 가출횟수, 최초 가출연령, 이사 횟수가 관련있었다. 학교환경 요인 중에서는 최종학력, 중퇴경험, 학교성적, 행동발달 상황, 출결상황, 교우관계 등이 관련 있었고, 범행관련 요인 중에서는 죄명, 범행동기, 범죄계획성, 피해회복 여부, 공범유무 등이 관련있었다. 이에 비해, 개인특성 요인 중 성별, 심신경함여부는 관련없었고, 가정환경 요인 중에서는 구조적 결손사유(부모의 사망, 이혼 등), 기능적 결손사유, 범행관련 요인 중에서는 범행 가담정도, 범행시 음주여부 등은 판사들의 판결결과와 관련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자 의견과 판사의 판결간에 대부분은 일치하였으나, 성별, 기능적 결손사유, 가담정도, 범행시 음주여부 등은 조사자의견과는 관련있었으나, 판결결과와는 관련없었다. 이에 비해 공범유무는 조사자의견과는 관련없었으나 판결결과와는 관련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 분류심사서 최종의견 결정요인(조윤오, 2010)

조윤오(2010)의 연구에서 총 808건의 분류심사서를 분석하여 전문 조사관의 최종 의견결정(시설내 처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분류심사원 조사관의 시설내 처우 최종결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범죄형태, 전과횟수, 가중요인 중 가출, 가족결손, 감점요인 내 피해합의, 보호의지 유무였다. 이에 비해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에 대한 최종의견 결정에 대해 성별, 연령, 학력중퇴, IQ, 공범유무, 생활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내 처우 최종결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범죄형태를 절도사범과 비교한 결과, 다른 변수를 모두 통제했을 때 폭력사범 청소년의 절도사범보다 시설내 처우 결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더 적었으나, 강도사법은 절도사법보다 시설내 처우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고, 성폭력사범 또한 그 죄질의 심각성으로 절도사범에 비해 시설내 처우 결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에 비해 교통사범은 절도사범보다 시설내 처우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더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변수를 모두 통제했을 때 조사관으로부터 시설내 처우의견을 받을 가능성은, 전과가 1회 증가할 때마다 조사관에게 시설내 처우 결정을 받을 확률이 1.3배씩 증가,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3.1배 증가, 친척이나 고아원, 친부모 이외의 보호자와 살고 있는 소년이 양친이 모두 있는 소년보다 약 2.1배 증가, 피해합의를 한 소년집단이 합의를 하지 않는 소년집단보다 67.4% 감소, 보호자의 보호의지가 명확하다는 평가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약 7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검사 결정전조사, 판결전조사, 분류심사의 조사자의견 결정요인 비교

소년조사제도의 각 조사유형에 따라 조사의 목적이나 취지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조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때의 결정요인도 다를 것이다. 또한 한가지 분석틀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조사방법이나 조사에 포함된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먼저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검사 결정전조사에서 조사자의 최종의견, 즉 기소유예인지 소년부송치인지를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전계획여부, 범행동기의 유흥미·용돈마련여부, 범행동기의 우발·충동여부, 동종전과 건수, 대인범죄전력여부, 피해합의여부, 친부모동거여부, 모 애착정도, 음주여부, 학력, 가족의 보호능력이었다. 즉 범행 관련하여 사전계획여부, 범행동기가 유흥비·용돈마련인지, 우발·충동적으로 한 것인지가 중요하며, 범죄전력과 피해회복 측면에서는 동종전과 수, 대인범죄 전력, 피해합의 여부가 중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해서는 친부모와 동거여부, 모 애착정도가 중요하며, 학업과 관련하여서는 학력이 중요하며, 생활행태에서 음주여부, 그리고 변화의지 및 지지환경에서는 가족의 보호능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조윤오(2010)의 연구에서 분류심사원 조사관의 시설내 처우 또는 사회내 처우의 최종결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범죄형태, 전과횟

수, 가중요인 중 가출, 가족결손, 감점요인 내 피해합의, 보호의지 유무였다. 이에 비해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에 대한 최종의견 결정에 대해 성별, 연령, 학력중퇴, IQ, 공범유무, 생활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법무부(2006)에서 분석한 판결전조사에서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를 결정하는 관련있는 요인으로는 개인특성요인 중에서는 성별, 연령, 직업, 범죄경력, 동종전과, 최초 범죄연령, 보호관찰 성적이 관련있었고, 가정환경 요인 중에서는 부모관계, 기능적 결손사유(부모의 무관심 등), 부 학력, 부 직업, 가정 월수입, 보호자 보호능력, 가출횟수, 최초 가출연령, 이사 횟수가 관련있었다. 학교환경 요인 중에서는 최종학력, 중퇴경험, 학교성적, 행동발달 상황, 출결상황, 교우관계 등이 관련있었고, 범행관련 요인 중에서는 죄명, 범행동기, 범죄계획성, 범행 가담정도, 범행시 음주여부, 피해회복 여부 등이 관련있었다. 이에 비해, 개인특성 요인 중 심신경함여부는 관련없었고, 가정환경 요인 중에서는 구조적 결손사유(부모의 사망, 이혼 등), 범행관련 요인 중에서는 공범유무 등은 조사자의견과 관련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검사 결정전조사에서 검사의 처분 결정 즉 기소유예와 소년부송치에 영향을 끼친 요인은 성적인 요소, 과거 처분유형의 수, 동종전과수, 흡연여부, 보호자의 보호능력이었다. 이에 비해 판사들의 판결결과는 개인특성요인 중에서는 연령, 직업, 범죄경력, 동종전과, 최초 범죄연령, 보호관찰 성적이 관련있었고, 가정환경 요인 중에서는 부모관계, 부 학력, 부 직업, 가정 월수입, 보호자 보호능력, 가출횟수, 최초 가출연령, 이사 횟수가 관련있었다. 학교환경 요인 중에서는 최종학력, 중퇴경험, 학교성적, 행동발달 상황, 출결상황, 교우관계 등이 관련 있었고, 범행관련 요인 중에서는 죄명, 범행동기, 범죄계획성, 피해회복 여부, 공범유무 등이 관련있었다. 이에 비해, 개인특성 요인 중 성별, 심신결함여부는 관련없었고, 가정환경 요인 중에서는 구조적 결손사유(부모의 사망, 이혼 등), 기능적 결손사유, 범행관련 요인 중에서는 범행 가담정도, 범행시 음주여부 등은 판사들의 판결결과와 관련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조사유형별로 조사자의견의 결정요인과 관련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피해합의여부와 범죄경력 등은 공통적으로 포함되었으나 구조적 결손사유는 조사유

형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물론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조사방법과 분석에 포함된 요인이 상이함으로 인한 한계가 있으므로 이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추후에는 동일한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요인)을 바탕으로 조사자의견에 대한 결정요인 연구가 해해져야 할 것이며, 조사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사서 양식을 개정하거나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과 이를 통한 조사자의 의견제시에 일관성 및 검사 및 판사의 처분결정에서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제7장

결론

홍 영 오

07 결론

제1절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1. 소년범죄의 발생추세

최근 10년 동안 전체 소년범은 2000년 143,643명을 기록한 이후 2005년 67,478명에 이르기까지 계속 감소하였다가 2006년 69,211명, 2007년 88,104명, 2008년 134,992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2009년에는 113,022명으로 전년대비 1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8년 6월 22일 시행된 개정소년법에 따라 소년범의 나이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변경되어 연령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감소된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19세(19,429명)를 포함할 경우에는 132,451명으로 2008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89,776명으로 2009년에 비해 20.6%가 감소하였다. 2010년에 19세(18,570명)를 포함할 경우에도 108,346명으로 나타나, 2009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년범은 2005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이후에는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되었다. 19세를 포함하여 계산했을 경우에도 2008년 이후에는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인구 10만명당 범죄자수를 살펴 보면, 2009년에는 14세 미만 9.4명, 14~15세 2,293.8명, 16~17세 2,552.7명, 18세 2,189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14세 미만 5.8명, 14~15세 1,777.4명, 16~17세 2,533.3명, 18세 2,123.1명으로 나타나 16~17세에 소년인구 10만명당 범죄자 수가 가장 많았고, 전년에 비해서는 14세 미만과 14~15세의 인구비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자 중 전과가 없는 범죄자의 비율은 2000년 64.5%에서 2010년 61.7%에 이르기까지 60%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에는 다소 감소추세에 있고, 전과자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범 이상자의 비율이 2008년 7.1%에서 2009년 8.8%, 2010년 10.7%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이후의 소년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리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0년에는 기소 30.7%, 불기소 50.4%, 소년부송치 17%로 불기소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기소, 소년부 송치의 순이었다. 하지만 2005년 기소 16.8%, 불기소 60%, 소년부 송치 20.1%로서 처음으로 소년부 송치의 비율이 기소 비율보다 높았고, 그 이후에는 현재까지 이 순서가 이어지고 있다. 2010년에는 기소 6.1%, 불기소 58.7%, 소년부 송치 33.6%로 나타나 기소율이 2000년에 비해 1/5수준으로 낮아졌고, 소년부 송치율은 거의 배 이상 높아졌다.

2000년 이후의 소년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리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0년에는 기소 30.7%, 불기소 50.4%, 소년부송치 17%로 불기소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기소, 소년부 송치의 순이었다. 하지만 2005년 기소 16.8%, 불기소 60%, 소년부 송치 20.1%로서 처음으로 소년부 송치의 비율이 기소 비율보다 높았고, 그 이후에는 현재까지 이 순서가 이어지고 있다. 2010년에는 기소 6.1%, 불기소 58.7%, 소년부 송치 33.6%로 나타나 기소율이 2000년에 비해 1/5수준으로 낮아졌고, 소년부 송치율은 거의 배 이상 높아졌다.

2. 소년범에 대한 조사현황

보호관찰관에 의한 소년범만의 조사현황을 살펴보면, 법원의 결정전조사는 2009년 3.274건에서 2010년 5,758건, 2011년 8월 현재 5,270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검사 결정전조사 역시 2009년 3,670건에서 2010년 4,524건으로 대폭 증가

하였으나, 판결전조사는 2009년 1,178건에서 2010년 701건, 2011년 8월 현재 498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판결전조사의 감소는 법원에서 법원조사관에게 의뢰하면서 보호관찰관에게 의뢰하는 조사건수를 줄였기 때문이다.

보호관찰관에 의한 소년범만의 조사현황을 살펴보면, 법원의 결정전조사는 2009년 3.274건에서 2010년 5,758건, 2011년 8월 현재 5,270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검사 결정전조사 역시 2009년 3,670건에서 2010년 4,524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판결전조사는 2009년 1,178건에서 2010년 701건, 2011년 8월 현재 498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판결전조사의 감소는 법원에서 법원조사관에게 의뢰하면서 보호관찰관에게 의뢰하는 조사건수를 줄였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 소년조사관의 조사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0년에는 총 1,128건 중 일반조사가 34.3%로 가장 많았고, 교육 33%, 청소년법정이 12.5%였다. 2011년 10월 27일 현재 총 1,144건 중 일반조사가 40%로 가장 많았고, 교육 27.9%, 청소년법정 12.9%였다.

3. 조사의뢰자와 조사관 대상 설문/심층면접 및 기록조사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관 204명 전체를 대상으로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 전반에 대해서 조사관들은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가 존재한다'는 사항이 문제 있다는 인식이 4점 만점에 3.34점으로 제시된 19개의 사항 중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는 '조사 전문 인력의 부족'이 3.29점,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이 3.27점,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담당'이 2.98점, '조사담당 직원에 대한 재교육 및 교육시간 부족'이 2.96점으로 문제 사항 상위 5개에 포함되었다.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가 존재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문제있음이 50.0% 약간 문제있는 편임이 38.2%로 88.2%가 문제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에 대해서는 매우 문제있음이 42.2%, 약간 문제있는 편임이 44.1%로 86.3%가 문제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개선과제 1순위로 응답자들의 34.3%가 '조사 전문 인력 부족'이라고

답했으며, 16.7%는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이라고, 11.8%는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 존재'라고 응답하였다. 1+2+3순위에서는 응답자들의 55.4%는 '조사 전문 인력의 부족'이라고 답했으며, 47.1%는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이라고, 37.3%는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 존재'라고, 28.9%는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 담당'과 '조사담당 직원에 대한 재교육 및 교육시간 부족'이라고, 19.6%는 '중요하지 않은 사건의 의뢰(조사의뢰 실적 때문)'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조사를 의뢰하는 판사와 검사들은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서, '조사에 따른 개별처우 프로그램의 부족'을 4점 만점에 2.90점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았고, '소년범 전문 조사관 부재' 2.78점, '조사 전문 인력의 부족'은 2.76점,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 담당' 등 조사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높았다. 조사에 따른 개별 처우 프로그램의 부족에서는 매우 문제있음이 15.7%, 약간 문제있는 편임이 51.5%로 67.8%가 문제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 1순위에서는 조사전문인력의 부족이 22.2%로 가장 높고, 소년범 전문 조사관 부재는 15.9%, 범죄유형별 표준화된 위험성 평가도구 부재는 14.3%, 조사에 따른 개별처우 프로그램의 부족은 12.7%로 나타났다. 1+2+3순위의 복수응답에서는 조사에 따른 개별처우 프로그램의 부족이 42.9%로 가장 높았고, 소년범 전문 조사관 부재는 34.9%, 범죄유형별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 부재는 33.3%로 높았다.

조사자의견의 결정요인에 대한 검사 결정전조사서 기록조사 결과, 검사 결정전조사에서 조사자의 최종의견, 즉 기소유예인지 소년부송치인지를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전계획여부, 범행동기의 유흥미·용돈마련여부, 범행동기의 우발·충동여부, 동종전과건수, 대인범죄전력여부, 피해합의여부, 친부모동거여부, 모 애착정도, 음주여부, 학력, 가족의 보호능력이었다. 즉 범행 관련하여 사전계획여부, 범행동기가 유흥비·용돈마련인지, 우발·충동적으로 한 것인지가 중요하며, 범죄전력과 피해회복 측면에서는 동종전과 수, 대인범죄 전력, 피해합의 여부가 중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해서는 친부모와 동거여부, 모 애착정도가 중요하며, 학업과 관련하여서는 학력이 중요하며, 생활행태에서 음주

여부, 그리고 변화의지 및 지지환경에서는 가족의 보호능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오 등(2009)에서 밝힌 결정전조사에서 검사의 처분 결정 즉 기소유예와 소년부송치에 영향을 끼친 요인은 성적인 요소, 과거 처분유형의 수, 동종전과 수, 흡연여부, 보호자의 보호능력이었다. 이에 비해 판사들의 판결결과(법무부, 2006)는 연령, 직업, 범죄경력, 동종전과, 최초 범죄연령, 보호관찰 성적, 부모관계, 부 학력, 부 직업, 가정 월수입, 보호자 보호능력, 가출횟수, 최초 가출연령, 이사 횟수, 최종학력, 중퇴경험, 학교성적, 행동발달 상황, 출결상황, 교우관계, 죄명, 범행동기, 범죄계획성, 피해회복 여부, 공범유무 등이 관련있었다. 이에 비해, 성별, 심신경함여부, 구조적 결손사유(부모의 사망, 이혼 등), 기능적 결손사유, 범행 가담정도, 범행시 음주여부 등은 판사들의 판결결과와 관련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소년조사제도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본 장에서는 문헌연구, 공식통계분석, 설문 및 면접조사, 기록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소년조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년조사제도의 중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조사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되, 전문조사관이 있는 검찰단계와 법원(재판)단계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1. 조사의 중복문제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년에 대해서는 수사·재판·교정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조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한 조사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였다. 크게 조사기관간 정보공유·협력 강화, 조사방식 및 조사서 양식의 개선, 조사대상의 범위, 조사기관별 역할 조정, 조사주체의 중복문제 해소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가. 조사기관간 정보공유·협력 강화

소년조사제도에 있어서 조사절차의 중복과 정보공유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각 조사기관간의 정보 및 자료수집에 대한 상호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의 YOIS(Youth Offending Informaiton System)라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이 우리나라도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시행중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의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Korean Integrated Criminal System)이 시행중이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단, KICS는 주로 수사·기소·재판관련 전자문서공유 위주의 시스템으로서 소년사건처리에 필요한 자질이나 환경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보는 공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이를 다루거나 영국의 YOIS와 같이 소년사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한국판 소년사범정보시스템(Korean Youth Offending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형사사법 전체자료를 시스템에서 공유하는 것이 정보의 과도한 집적이나 형사사법망의 과도한 확장이라는 비판을 받거나 범죄사실 이외에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국가기관이 관리하는데 따른 인권침해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는 것도 틀림없다(김용운, 2006). 예를 들어, 조사서에는 소년범 당사자이외에도 가족관계 등 사건당사자가 아닌 개인에 대한 정보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비행사실이 아닌 처우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자료만을 이 시스템을 통해 공유한다면 시간과 비용의 절약뿐만 아니라 소년들이 중복적으로 조사받는 것에 대한 불만과 정신적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나. 조사방식 및 조사서 양식의 개선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로는 검사 결정전조사나 판결전조사에서 조사내용의 중요성이나 조사자의견 제안시 비중을 두는 요인 그리고 재범위

험성에 대한 의견제안시 비중을 두는 요인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면담한 판사 중에서는 검사 결정전조사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전조사를 다시 의뢰하게 되는데 이때는 조사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서 조사를 의뢰할 때 검사 결정전조사서를 첨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본 연구자가 면담한 소년부 판사들에 의하면 검사 결정전조사서가 첨부된 경우나 판결전조사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가능하면 법원 결정전조사 의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검사 결정전조사나 판결전조사 이후 소년부에서의 판결전까지의 공백기에 대한 자료는 처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공백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조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은 각 조사유형별로 조사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여 조사서 양식을 동일하게 통일하되, 각 조사유형별로 필요한 내용만을 추가로 첨가하고, 조사기간간 공백기에 대한 생활 및 환경조사만을 추가로 조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각 조사유형별로 조사서 양식을 통일하되 검사 결정전조사서나 판결전조사서의 내용에 분류심사시의 행동관찰 등을 추가하는 방법이다.

다. 조사대상의 범위

검찰에서의 소년범죄자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 형법범은 70,045명이었는데, 보호관찰소관에 의해 2010년에 검사 결정전조사를 받은 인원은 4,524명(6.5%)에 불과하였고,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처분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0년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받은 인원은 45,090명이었는데 분류심사 및 상담조사를 받은 인원은 11,024명으로 24.4%에 불과하였다. 대부분의 소년들이 소년보호이념에 따라 개별처우를 받기 위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기초자료없이 처분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지선(2000)이 주장한 바와 같이 조사를 통한 요보호성 판단자료의 유무에 따른 처분의 차이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조사대상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조사를 통해 소년에게 얼마나 다양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그리

고 각 처분유형에 적합한 소년의 특성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될 것이다. 즉 개별처우를 위해 소년에게 적합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역으로 각각의 처분에 적합한 소년의 특성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검사 결정전조사, 법원 결정전조사, 분류심사 및 상담조사와 같이 조사결과에 따라 다양하게 처분할 수 있는 조사에 그렇다. 예를 들어 검사 결정전조사에서는 단순히 기소, 기소유예, 소년부송치가 아니라 각 처분결정에 따라 다양한 다이버전의 대안이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소년법의 취지에 맞는 개별처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최근 개정된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의 유형이 보다 더 다양해 진 상황에서 다음의 조사기관별 역할 조정에서 설명하겠지만 개정 소년법에 부응하여 화해권고제도를 비롯하여 청소년참여법정, 심리상담조사명령, 처분전 훈육 등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보호처분 유형과 다양한 제도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소년부 판사 중에서는 다양한 보호처분 유형 중에서 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처분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판사 자신들이 아니라 전문조사관이 이므로 조사보고서에 보다 조사자 의견제안시에 구체적으로 처분유형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라. 조사기관별 역할 조정

조사의 중복과 관련하여 기관 실무자에 따라서는 경찰·검찰의 수사단계와 법원단계의 조사관 조사, 분류심사, 판결전조사가 성격과 절차, 방법이 다른 각각 고유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관점에서 절차의 중복이라고만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조사기관별 역할 조정을 통해 조사의 중복 또는 기능의 중복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조사의 내용상에 크게 차이가 없는 검사 결정전조사, 판결전조사, 법원 결정전조사를 행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타 조사관들은 조사가 불가능한 위탁된 소년의 자질심사만을 위해 분류심사와 상담조사만을 전담하고, 법원의 형사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조사관은 소년부에서 보호소년을 조사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앞에서도 기술했다시피, 검찰의 처리결과 소년부 송치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개정 소년법에 의해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매우 다양해 진 상황에서 소년법의 이념에 부응하여 가장 적절한 개별처우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조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가정법원에서 이들을 조사하는 소년조사관은 전국적으로 29명 그도 대부분 겸임 또는 겸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법원조사관이 이들과 함께 보호소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가정법원에는 소년범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참여법정, 심리상담조사명령, 처분전 훈육 등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여 다양한 조사가 필요가 실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호관찰 이행사항 점검이 필요한 보호관찰처분 경험이 있는 소년에 대한 법원 결정전 조사는 보호관찰관에게 조사의뢰하고 나머지는 소년조사관을 통해 조사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다.

마. 조사주체의 중복문제 해소

중복조사의 문제는 실무적으로는 양형자료조사의 영역에서, 특히 보호관찰관에 의한 판결전 조사와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자료조사의 중첩 문제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양형자료조사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을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소년조사의 영역에서는 조사의 창구가 어느 쪽으로 단일화되는 것이 바람직할지를 제안하였다.

양형자료에 대한 조사의 담당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히 소송의 구조나 법체계의 차이 등을 이유로 기계적으로 구분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누가 양형인자의 조사에 있어서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업무의 독자성을 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를 통하여 적절한 양형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 할 것이다. 또한 어떠한 제도의 도입 여부와 같은 입법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는 항상 제도의 이상과 함께 사법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가치가 더불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법체계 내에서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보호관찰 등 피고인의 처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관찰관

이 양형자료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제안과 함께 법원조사관에 대해서는 소년부송치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개정 소년법에 의해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매우 다양해지고, 가정법원에서는 이에 부응하여 소년범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참여법정, 심리상담조사명령, 처분전 훈육 등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여 다양한 조사가 필요가 실정이기도 하므로, 소년조사관을 포함한 법원조사관들은 보호소년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2. 조사관 및 조사의 전문성 향상

본 연구의 설문결과, 보호관찰관, 분류심사원, 소년조사관들은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가 존재한다'는 사항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고, 다음으로는 '조사 전문 인력의 부족',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 담당', '조사담당 직원에 대한 재교육 및 교육시간 부족' 등이 문제점의 상위 5개에 포함되었다. 또한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개선과제 1순위로 응답자들의 34.3%는 조사 전문 인력 부족이라고 답했으며, 16.7%는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이라고, 11.8%는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 존재라고 응답하였다. 1+2+3순위에서는 응답자들의 55.4%는 조사 전문 인력의 부족이라고 답했으며, 47.1%는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이라고, 37.3%는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 존재라고, 28.9%는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 담당과 조사담당 직원에 대한 재교육 및 교육시간 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가. 조사인력의 전문화

조사관의 전문화와 관련하여 보호관찰 직원의 인력부족은 기본적으로 직원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한 배치를 어렵게 만들게 되므로 과중한 업무량으로 조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새로운 조사제도의 신설 등으로

보호관찰소관뿐만 아니라 분류심사관 및 법원의 소년조사관들의 조사업무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직원의 충원없이 각종 조사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인력의 충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최근 형기 후 보호관찰제의 도입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조사업무만을 담당하는 인력을 충원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소년보호이념에 따른 개별처우를 달성하기 위한 조사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조사인력의 충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형사사법절차상에서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잘 운영되어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성인과 소년의 특성은 다르기 때문에 소년 전문 조사관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인력은 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법무부에서 조사서의 신뢰도를 제고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조사관인정제와 관련하여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조사관인정제에서 나아가 보다 전문적으로 '소년범 전문 조사관인정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년의 심리와 특성, 소년의 비행 및 범죄 특성, 소년의 재범관련 특성 및 요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식견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 또한 조사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조사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이 아닌 조사업무 전담 인원을 임용·배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심리학, 형사정책학, 범죄학, 사회학 등이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보호관찰관 중 양형조사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은 보직을 순환하지 않고 전문성을 쌓도록 하고 있다.

나. 조사관 교육 확대를 통한 전문성 제고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에도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의 교육과정만으로는 조사담당 보호관찰 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심지어 조사관과의 심층면접에서 조사관들은 과도한 업무로 인해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또한 법무연수원이나 법원연수원이 아닌 외부의 전문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음으로 인해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심지어 개인적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받을 의향이 있을 때조차도 조사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부담으로 인해 교육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관의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대학이나 전문 상담기관 또는 워크숍등을 통해 각종 심리검사 등 조사관련 과목에 대한 교육 등 지속적인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원이나 전문상담기관의 각종 교육을 수강하거나 워크숍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문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전문 상담기관과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현재 각종 조사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심리검사 및 점차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각종 재범위험성평가의 요강과 지침서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된다.

다. 범죄유형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 조사의뢰자인 판·검사의 57.2%와 조사관의 59.3%는 '범죄유형별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 부재'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의뢰자의 14.3%와 조사관의 14.8%는 소년조사제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로 '범죄유형별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 부재'를 제1순위로 선택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재범위험성과 조사자의견 제안시에 비중을 두는 요인들에 대한 결과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검사 결정전조사에서 조사자의 최종의견, 즉 기소유예인지 소년부송치인지를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법무부(2006)의 판결전조사 조사자의견 관련 요인 및 조윤오(2010) 분류심사원의 최종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을 고려해 볼 때 조사관의 의견 및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개인의 경험에 많이 의존하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조사관의 의견 및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가 시급히 개발되어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재범위험성이 평가되고 조사자의견에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국내에서 위험성평가도구의 개발 및 시행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로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범요인을 밝

히기 위한 재범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재범연구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재범연구를 위해서는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어야하나, 현재는 개인의 정보보호에 대한 강조가 너무 강하여 재범연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재범연구에서 학자들의 관심은 범죄자 개개인의 정보에 관심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재범여부만이 관심있을 뿐이므로 학술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재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경찰청이나 검찰의 제한된 장소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거나, 더 나아가 경찰청이나 검찰청 내의 제한된 컴퓨터만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향후과제

본 연구는 소년의 요보호성에 따른 개별처우를 통해 소년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소년범의 특성에 적합한 조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요구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의 중복 및 지연으로 인한 효율성 문제 및 전문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소년조사제도의 개선방안 및 소년조사 담당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년조사제도에 대해 현재 시행중인 각종 조사의 운영실태분석과 운영당사자인 검사와 판사 및 조사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각종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이 더욱 다양해졌고, 최근 소년범에 대한 처우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이념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소년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및 화해권고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즉 피해자의 요구를 고려하고, 가해자를 지역사회에 재통합시키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당사자 간의 자율적 갈등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소년보호재판의 회복적 사법의 실천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부응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회복적 사법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 절차인 화해권고제도를 비롯하여 청소년참여법

정, 심리상담조사명령, 처분전 훈육 등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등 보호소년에 대한 처분 유형은 매우 다양해 졌으므로 이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재판단계에서 소년조사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록조사 연구에서 조사방법이나 조사내용의 차이로 인해 검사 결정전조사, 판결전조사, 분류심사에 대한 조사자의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한가지 틀에서 비교하지 못했다. 따라서 한가지 틀로 각조 조사서에 대한 기록조사를 통해 조사자의 의견제시 결정요인을 밝힐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고, 검사와 판사 등의 처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도 각각의 조사서에 대한 분석으로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보다 기본적으로 조사자의 의견제시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소년범의 재범요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범죄경력조회가 쉽지 않아 소년범에 대한 재범예측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도 조사관들의 재범위험성평가에서 비중을 두는 요인과 조사자의견제시에서 비중을 두는 요인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조사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담당자뿐만 아니라 조사의뢰자인 검사나 판사도 재범위험성평가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범죄유형별로 소년범의 재범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가 개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영철(1998). 소년사건처리절차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년범죄연구 창간호, 한국소년보호학회, 75-113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0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의안번호 174221) 검토보고서.

권태정(1992). 재소자 분류수용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동림(2000). 소년법. 서울: 화성사.

김성돈(2005). 우리나라 소년법상의 검사선의주의 모델의 개선방안. 부부재산제·법원선의주의 공청회 자료집,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89-119면.

김양곤(2004). 주요 국가의 소년보호관찰제도 연구 - 미국, 영국, 일본의 소녀보호관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용운(2006). 소년법상 조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은경 외(2007).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 : 청소년비행 및 소년사법정책 현황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일수(2009), 바람직한 양형조사주체 및 조사방식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김재민(2010). 경찰의 소년범 다이버전 정책에 관한 고찰 -회복적 사법 이념의 반영 가능성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15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19-262면.

김재봉(2006). 형사소송법개정안의 양형자료조사제도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 18(2), 한국형사정책학회, 213-236.

김지선(2000). 소년보호처분유형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혜정(2002). 판결전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혜정(2002). 판결전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혜정(2006). 개정법률안에 도입된 양형자료조사제도에 관한 검토 - 형사소송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6,

김혜정·황만성(2003). 선진 각국의 보호관찰조직 및 인력의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도중진, 류병관(2006). 소년법상 선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도중진·이순래·이천현(2005). 소년사범의 적절한 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민학기(1997). 소년보호사건 심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사건의 개선을 위한 회의결과 보고서, 법원행정처.

박상기·손동권·이순래(2010). 형사정책(제11판).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태영(1994). 조사업무의 실태와 개선방안. 청소년범죄연구, 3, 205-223.

배종대(2006). 형사정책. 서울: 홍문사.

법무부(1997). 각국의 소년보호제도. 서울: 법무부 보호국.

법무부(2005a). 외국의 소년사법제도. 서울: 법무부 보호국.

법무부(2005b). 일본의 소년보호제도. 서울: 법무부 보호국.

법무부(2008). 영·미의 소년사법제도. 서울: 법무부 보호국.

법무부(2009). 분류심사 Case Study. 법무부.

서보학(2011). 양형기준의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한국형사법학회 2011년 추계학술회의 자료집, 57-98.

서울고등검찰청(1998). 수사지휘론. 서울고등검찰청.

송광섭·점승헌(1999). 소년원 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11, 121-155.

송인택(2008). 소년사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입법연구논문. 서울: 법무부.

신한미(2011a).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 운영실무. 서울가정법원 법관교육자료.

신한미(2011b). 화해권고제도의 현황과 과제. RJ포럼 발제논문.

오영근(2004).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년보호사건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7호, 한국소년보호학회, 3-41.

오영근·최병각(1994).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원혜욱(2001). 소년원의 분류조사제도. 소년보호연구. 4, 한국소년보호학회, 3-29.

원혜욱(2002). 소년범죄에 대한 시설내 처우의 문제점 I. - 미결구금제도(소년분류심사원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교정연구, 15, 7-29.

원혜욱(2003).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6, 3-35.

유진식(1982). 소년법. 서울: 육법사.

유진식(1991). 소년조사관제도의 분석과 그 개선방안. 청소년범죄연구, 제9집, 177-199.

유학희(2009). 소년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원광대학교.

이 옥(2005). 검사선의주의와 법원선의주의. 소년보호연구, 8, 한국소년보호학회, 89-131.

이상철(1994). 판결전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상현(2004). 소년비행학. 서울: 박영사.

이순래(2007). 소년사법의 현황과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전략. 형사정책연구, 18(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47-1080.

이윤호(2003). 교정학개론. 서울: 박영사.

이창한(2000). 판결전조사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보호, 12, 38-67

이춘화(2000). 소년에 대한 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제3호, 한국소년보호학회, 26-85면.

이춘화(2002a). 소년사건의 조사제도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심판전 조사제도를 중심으로. 소년법연구, 창간호, 421-433.

이춘화(2002b). 소년사건에서의 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이춘화(2007). 소년조사제도론. 서울: 한국학술정보.

이춘화(2009). 소년법상의 검사 결정전 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9-91.

이춘화(2009).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소년보호연구 제13호, 한국소년정책학회, 97-129면.

이춘화(2009a). 소년법상 검사 결정전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092),

59-91.

이춘화(2009b).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소년보호연구, 12, 97-129.

이태형(2006). 캐나다 양형조사제도에 관한 연구-우리나라 양형조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국외단기개인훈련보고서.

이현정 · 임 웅(2009).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균관법학 21(1),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장영민, 김구슬(2005).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0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73-102.

장영민 · 김구슬(2005).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화여대 법학논집, 10(1), 7-102.

정우식 · 정소은 · 김희자 (2000). 선진각국의 보호관찰제도 운영현황연구. 한국보호관찰학회.

정해룡(2002). 소년분류심사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 소년보호연구 제5호, 한국소년보호학회, 35-80.

조윤오(2010). 법무부 조사제도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분류심사서 최종의견 결정 요인을 중심으로. 2010 범죄예방정책연구, 3-23.

천진호(2008). 한국의 소년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10(2), 555-580.

천진호(2009). 양형기준제 시행의 문제점과 양형자료 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형사법연구, 21(4), 251-270.

최병각(2007). 소년법개정과 소년사법의 건전한 육성. 형사정책연구 18(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81-1104.

최병각 · 오영근(1995). 소년사건처리절차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석윤(2008).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10(2), 719-742.

최석윤(2011). 양형기준제 시행의 문제점과 양형자료 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형사법연구 21(3), 251-272.

최종식(2007). 소년비행의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19(2), 87-113.

한국소년법학회 編(2006). 소년법. 서울: 세창출판사.

한숙희(2008). 촉법소년 연령인하에 따른 가정법원의 역할과 과제.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63-92.
허경미(2005). 소년강력범의 사법처우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28, 87-112.
홍영오・노성호・이수정・고려진(2009). 소년범의 검사 결정전조사제도를 위한 위험성평가도구 개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태정(2008). 일본의 성범죄 재범방지정책 -우리 법제도에의 시사점-, 법학연구, 18(3).
家庭裁判所(1978). 改訂少年執務資料集(一) 家庭裁判資料第107号. 家庭裁判所.
關力(1991). 非行少年はこう扱われる. 有信堂高文社..
廣瀨健二(1995). 海外少年司法制度-英, 米, 獨, 仏を中心に-. 家庭裁判月報 第48卷第10号.
菊田幸一(2002). 少年法. 北樹出版.
錄川徹(2007). 少年院の現代史. 比較法制研究 第30号, 國士館大學.
法曹會(1991). 少年法實務講義案. 法曹會.
森下忠(1990). 刑事政策大綱 Ⅱ. 成文堂.
須須木主一(1972). 觀護措置をめぐる諸問題. 少年法改正, 慶応通信.
原口幹雄(2001). 少年事件と家庭裁判所調査官の役割. 少年法のあらたな展開, 有斐閣.
有田禎宏(2001). 調査官から見た少年非行の實態. 少年法のあらたな展開, 有斐閣.
日本矯正協會(2003). 研修教材 少年院法 全訂版.
田宮裕編(1986). 少年法條文解說. 有斐閣.
佐佐木光明(1999). 少年法改正というけれど、何がどう変わるのか, “ちょっと待って少年法 改正”. 日本評論社.
平野龍一(1982). 少年非行と少年審判 “講座少年保護2”, 大成出版社, 1982.
平場安治(1991). 少年法. 有斐閣.
Albrecht, P-A.(1993). Jugendstrafrecht 2. Aufl, C.H.Beck.
Bartollas, C(2008). JuvenileJusticeinAmerica.PearsonEducation,Inc.
Beck-Texte im dtv(2006). StGB 42. Auflage.
Böhm, A.(1985). Einführung in das Jugendstrafrecht 2, Aufl.
Dölling, D(2002). Jugendgerichtsgesetz 11. Aufl, Berlin.
Eisenberg, U.(1997). Jugendgerichtsgesetz 7. Aufl, C.H.Beck.
Grieswelle,G.(1972). Sozialarbeit, Pädagogik und Jugendstrafrecht. Library of Congress.

Griffin, P. and Patricia Torget,(2002). Desktop Guide to Good Juvenile Probation Practice(Washington,DC:NationalCenterforJuvenile Justice,),41-48

Herz, R.(1982). Jugendstrafrecht..

Martin, Gus (2005). Juvenilejustice:processandsystems.SagePublications,Inc.

Momberg, R.(1982). Die Ermittlungstätigkeit der Jugendgerichtshilfe und ihr Einfluss auf die Entscheidung des Jugendrichters. Diss.

Müller, W.(1975). Jugendstrafrecht und Jugendgerichtsbarkeit. Walhalla u Praetoria Verlag, Regensburg.

Puzzanchera, C., Stahl, A. L., Finnegan, T.A., Snyder, H.N., Poole, R.S., and Tierney, N. (2000). Juvenile court statistics 1997 (p. 37).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Schaffstein, F., & Beulke, W.(2002). Jugendstrafrecht 14. Aufl, Stuttgart.

Snyder, Howard N, and Sickmund Melissa.(2006).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2006 National Report(Washington,DC: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p.105

“少年鑑別所処遇規則[昭和二十四(1949)年五月三十一日法務庁令第五十八号]”; 日本總務省法令データ提供システム http://law.e-gov.go.jp/cgi-bin/idxsearch.cgi

“少年警察活動規則[平成14(2002)年9月27日國家公安委員會規則第二十号])” 日本警察廳홈페이지http://www.npa.go.jp/pdc/notification/seian/shounen/shounen20020927.pdf

“少年警察活動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規則[平成19(2007)年10月30日國家公安委員會規則第二十四号]” : 日本警察廳홈페이지 http://www.npa.go.jp/safetylife/syonen8/zyoubun.pdf

“少年警察活動推進上の留意事項について(依命通達)[平成19(2007)年10月31日警察廳乙生發第7号警察廳次長]”: 日本警察廳홈페이지 http://www.npa.go.jp/pdc/notification/ seian/shounen/shounen20071031.pdf

“少年法第六條の二第三項の規定に基づく警察職員の職務等に關する規則[平成19(2007)年10月30日國家公安委員會規則第二十三号]” : 日本警察廳홈페이지 http://www.npa.go. jp/safetylife/syonen10/zyoubun.pdf 參照

“少年院及び少年鑑別所組織規則平成十三(2001)年一月六日法務省令第四号”: 日本總務省法令データ提供システム http://law.e-gov.go.jp/cgi-bin/idxsearch.cgi

“少年院の運營について[昭和52(1977)年5月25日矯政局長依命通達”

日本警察廳, “平成23(2011)年警察白書”, 統計資料[統計１－43 刑法犯少年の男女別検挙人員及び人口比の推移（平成13～22年）]http://www.npa.go.jp/hakusyo/h23/mokuji.htm

日本法務省, 犯罪白書平成22년(2010)年版第4編第2章第4節2. 少年院での処遇 : 日本法務省홈페이지 http://hakusyo1.moj.go.jp/jp/57/nfm/n_57_2_4_2_4_2.html#h04020409

日本法務省少홈페이지 http://www.moj.go.jp/kyousei1/kyousei_kyouse12.html

日本法務省홈페이지 http://www.moj.go.jp/kyousei1/kyousei_kyouse04.html

日本法務省홈페이지 http://www.moj.go.jp/kyousei1/kyousei_kyouse04.html ; http://www.moj.go.jp/kyousei1/kyousei_kyouse16-04.html

日本法務省홈페이지 http://www.moj.go.jp/kyousei1/kyousei_kyouse06.html

日本總務省法令データ提供システム http://law.e-gov.go.jp/cgi-bin/idxsearch.cgi ; http://law.e-gov.go.jp/htmldata/H13/H13F12001000004.html

日本總務省法令データ提供システム ; http://law.e-gov.go.jp/cgi-bin/idxsearch.cgi

日本最高裁判所홈페이지 : http://www.courts.go.jp/kisokusyu/kazi_syonen_kisoku/kazi_kisoku_10.html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vestigation system in Juvenile Justice

Hong, Young-Oh
Hwang, Tae-Jeong

1. Purposes

Approximate 100,000 young offenders committed crimes every year, and ratio of young offenders occupied almost 40% so that young offenders should be given better treatment to prevent them from committing a crime again. To fulfil an ideology of the Juvenile Act by giving young offenders better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protection of the youth, investigation into the youth should be done enough to meet young offender's characteristics. This study examined not only reformation of investigation into young offenders but also professionalism of the ones who investigated young offenders to solve problems of efficiency and professionalism that were made by overlap and delay of the investigation system.

2. Methodologies

In this study, literature research, statistical analysis, in-depth interview, questionnaires, prosecutor pre-determination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 into

records, etc were used. The literature research investigated values history and functions of not only the Juvenile Act but also investigation into young offenders, and statistical analysis did actual conditions, trends and treatment of young offenders, and various kinds of investigations. And, questionnair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were used to investigate prosecutors, judges, probation officers,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institution's officers, and the court's investigators of juvenile delinquents, and to examine actual conditions, problems and reformation of juvenile investigations. Lastly, investigation into prosecutor pre-determination investigation was done to examine disposal determinants when investigators gave opinions.

3. The Findings

A) Trends of Juvenile Crimes

Last 10 years, number of young offenders fluctuated: The number decreased from 2000 to 2005, that is to say, 143,643 persons in 2000 and 67,478 persons in 2005;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increased from 2006 to 2008, that is to say, 69,211 persons in 2006, 88,104 persons in 2007 and 134,992 persons in 2008: And, the number recorded 113,022 persons in 2009, 16.3% down than that in 2008 that needed to consider changes of age basis of young offenders in accordance with revision of the Juvenile Act that was effective on June 22, 2008 to lower age basis from 19-years old to 18-years old. If 19-years old young offenders (19,429 persons) were included in 2009, number of young offenders recorded 132,451 persons not to decrease much than that in 2008. In 2010, number of young offenders recorded 89,776 persons to be 20.6% down than that in 2009. If 19-years old young offenders (18,570 persons) were included in 2010, number of young offenders recorded 108,346 persons to decrease greatly than that in 2009. Since 2005, number of young offenders increased, and since 2008, the number decreased again. Even when 19-years

old young offenders were included, the number decreased since 2008.

Number of criminals per 100,000 young people was to increase when they were old, for instance, 9.4 persons at less than 14-years old, 2,293.8 persons at 14 to 15-years old, 2,552.7 persons at 16 to 17-years old, and 2,189 persons at 18-years old. In 2010, number of young offenders was: 5.8 persons at less than 14-years old, 1,777.4 persons at 14 to 15-years old, 2,533.3 persons at 16 to 17-years old, and 2,123.1 persons at 18-years old. Number of criminals per 100,000 young people at 16 to 17-years old was the largest, and ratio of young offenders at less than 14-years old as well as 14 to 15-years old decreased greatly than it was in previous year.

The ratio of young offenders who had no ex-conviction fluctuated at 60% level, for instance, 64.5% in 2000 and 61.7% in 2010. Since 2008, the ratio rather decreased to increase ex-convict. In particular, ratio of ex-convict with four criminal convictions increased, for instance, 7.1% in 2008, 8.8% in 2009 and 10.7% in 2010.

Since 2000, prosecutors' office prosecuted young offenders: In 2000, non-prosecution recorded 50.4% to be the highest, followed by prosecution of 30.7% and sending of juvenile court at criminal court (소년부송치) of 17% in order: On the other hand, in 2005, non-prosecution recorded 60% to be the highest, followed by sending of juvenile court at criminal court (소년부송치) of 20.1% and prosecution of 16.8% in order so that the order made change. Since then, the order remained unchanged.

In 2010, non-prosecution recorded 58.7% to be the highest, followed by sending of juvenile court (소년부송치) of 33.6% and prosecution of 6.1%: So, rate of prosection was lowered to be one fifth of that in 2000, and that of sending of juvenile court rose almost 2 times.

B) Investigation into Young Offenders

The probation officers investigated young offenders: Number of court

pre-determination investigation increased remarkably, for instance, 3,274 cases in 2009, 5,758 cases in 2010 and 5,270 cases as of August 2011; On the other hand, number of prosecutor pre-determination investigation also increased remarkably, for instance, 3,670 cases in 2009, and 4,524 cases in 2010. And, number of presentence investigation decreased remarkably, for instance, 1,178 cases in 2009, 701 cases in 2010, and 498 cases as of August, 2011: This was because the court asked investigation officer of court to investigate criminal cases to lessen number of investigation cases that probation officers investigated.

The Seoul Family Court's investigation officer of juvenile crimes investigated criminal cases: In 2010, number of juvenile crimes recorded 1,128 cases, in other words, common investigation of 34.3% to be the highest, followed by education of 33% and teen court of 12.5%. As of October 27, 2011, number of juvenile crimes recorded 1,144 cases in total, for instance, common investigation of 40% to be the highest, followed by education of 27.9% and teen court of 12.9%.

C) Questionnaire Survey/ in-depth Interview, and Record Investigation to investigate judges and prosecutors who asked for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 officers

In this study, 204 investigation officers said that 'probation and parole office having no investigation department' was of problem to be the largest problem among 19 questions (3.34 of 4 points), followed by 'shortage of investigation officers' (3.29), 'overburden of investigation of each investigation officer' (3.27), 'non-investigation officer's investigation because of job rotation' (2.98), and 'shortage of reeducation and education time in favor of investigation officers' (2.96) in order.

The probation and parole office without investigation department was of

serious problem (50.0%) and of a little problem (38.2%), and job burden of investigation officer was of serious problem (42.2%) and of a little problem (44.1%).

The investigation officers thought of reformation of investigation system; for instance, 'shortage of investigation officers' (34.3%), 'job burden of each one of the officer' (16.7%), and 'probation and parole office without investigation department' (11.8%). On the other hand, the officers thought of problems of investigation system; for instance, 'shortage of investigation officers' (55.4%), 'job burden of each one of the officer' (47.1%), 'probation and parole office without investigation department' (37.3%), 'non-inspection officers' inspection because of job rotation' and 'shortage of reeducation and education time of inspection officers (28.9%), and 'request for inspection of unimportant cases (because of performance of request for inspection)' (19.6%).

The judges and prosecutors thought of reformation of investigation system, for instance, 'shortage of treatment program in accordance with the inspection' (2.90 of 4 points) to be the highest, followed by 'absence of inspection officer in charge of young offenders' (2.78 points), 'shortage of professional inspectors' (2.76 points), and 'inspection of non-professional inspectors because of job rotation' in order. The judges and prosecutors thought of problem of shortage of treatment program at inspection, for instance, very much problem (15.7%) and a little problems (51.5%).

The inspection system of young offenders needed to reform, for instance, shortage of inspection officers (22.2%) to be the highest, followed by absence of inspection officers in charge of young offenders (15.9%), no standard risk assessment tool by crime type (14.3%) and shortage of treatment program at inspection (12.7%). Multiple answers of the 1st, 2nd and 3rd order were: shortage of treatment program at inspection (42.9%) to be the highest, followed by absence of inspection officers in charge of young offenders (34.9%) and no standard risk assessment tool by crime type (33.3%).

The study inspected records of prosecutor pre-determination investigation on factors of inspection officers opinions: The inspection officers' final opinions, in other words, determination on whether stay of prosecution or sending of juvenile court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prior planning, interest in crime motives, preparation for pocket money, accidental crime motives, number of same kinds of ex-conviction case, history of crimes against persons, agreement with damages and losses, living at same house with biological parents, mother's affection, educational background and family's protection ability. In other words, important factors included; 1) prior planning of the crime, crime motives of making of walking around money and/or pocket money, accidental crime motives, 2) crime history and recovery of damages and losses such as number of same kind of ex-conviction, prior crime history of crimes against persons, 3) living environment such as living at same house with biological parents, and mother's affection, 4) educational background, 5) drinking, 6) family's protection ability (will of the changes, and supporting environment).

Prosecutors' disposal decision, in other words, factors having influence upon stay of prosecution and sending of juvenile court was influenced by gender, number of disposal type in the past, number of same kinds of ex-conviction, smoking, and protector's protection ability (Hong Yeong-oh et al (2009)).

On the other hand, judges' judgment was influenced by ages, occupation, crime history, same kind of ex-conviction, age of first commitment of the crime, performance of probation and parole, parental relations, father's educational background, father's occupation, monthly income of household, protector's protection ability, number of times of runaway from home, age of first runaway from home, number of times of movement, final educational background, experience of drop out of school, academic performance, behavioral development, attendance at school, peer relation, name of the crime, crime motives, crime planning, recovery of losses and damages, and companion in crime. But, judge's judgement was not influenced by gender,

physical and mental disability, structural defect such as parents' death and/or divorce, functional defects, joining in the crime and drinking when committing a crime.

4. Problems and Political Alternatives of Juvenile Delinquent Investigation System

The study suggested reformation that could solve overlap of juvenile delinquent investigation and develop investigation officers' professionalism based on the findings of questionnaire survey and interview, and it discussed not only stage of prosecutors' office but also stage of court (trial) that had inspection officers.

A) Overlap of the Investigation

In this study, various kinds of investigation against young offenders could be done in overlap at stages of investigation, trial and corrections. So, the study suggested reformation, for instance, information sharing and cooperation between inspection agencies, improvement of investigation methods as well as forms of investigation documents, scope of the ones for inspection, adjustment of roles of each investigation agency, and settlement of overlap between investigation agencies.

1) Information Sharing and Cooperation between Inspection Agencies

Investigation into young offenders shall solve not only overlap of investigation procedures but also shortage of information sharing. So, each inspection agency shall strengthen connection of information and material collection. As YOIS(Youth Offending Information System) in the UK did, KICS(Korean Integrated Criminal System) in Korea was valid and effective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IT Promotion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dures

from the year of 2010 to promote IT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nd to produce prompt, fair and transparent criminal justice procedures. So, the study examined use of KICS. But, KICS that shares electronic document of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trial is not permitted to share investigation and disposal of quality and environment for processing of cases of young offenders: So, Korean Youth Offending Information System is needed to set up and to share information on juvenile justice as YOIS in the UK does.

2) Reformation of Investigation Methods and Forms of Investigation

In this study, the questionnaire survey found that not only investigation contents' values and inspection officers' opinions at prosecutor pre-determination investigation as well as judge pre-judgment investigation but also opinion on second offense risks was almost similar each other.

An alternative can avoid overlap of the investigation to reflect realities of which investigation types did not differ much, and to unify forms of the investigation, and to add necessary contents only of each investigation type, and to add investigation into life and environment during vacant investigation time. For instance, forms of investigation can be unified by each investigation type, and behavior observation at classification and investigation shall be added to either prosecutor pre-determination inspection or court pre-determination inspection.

3) Scope of the Subject

In 2010, prosecutors prosecuted 70,045 young offenders according to the Criminal Act, and no more than 4,524 young offenders (6.5%) were given prosecutor pre-determination inspection by probation and parole office.

The young offender protection cases (소년보호사건) were prosecuted as follow: In 2010, 45,090 young offenders were prosecuted according to young offender protection case (소년보호사건), and no more than 11,024 young

offenders (24.4%) were given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as well as counseling and investigation. Most of juvenile delinquents were prosecuted without scientific and professional material that followed ideology of protection of young people. To decide upon scope of the subject, investigation shall be done to determine prosecution and young offender's characteristics being suitable to each prosecution. To give young offenders individual treatment and prosecute them properly, an analysis shall be done to find out young offenders' characteristics that can be suitable to each prosecution. The case was applied to prosecutor pre-determination investigation, court pre-determination investigation,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and counseling & investigation that young offenders could be prosecuted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investigation results. For instance, prosecutor pre-determination investigation shall do not prosecution, stay of prosecution and sending of juvenile court (소년부송치) but investigation into young offenders who have various kinds of diversions depending upon disposal determination to give young offenders individual treatment according to purposes of the Juvenile Act. At investigation into young offenders who have been given sending of juvenile court, protection types varied according to recent revision of the Juvenile Act to meet revision of the Act and to adopt new systems such as reconciliation (화해권고), juvenile participatory trial system,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investigation order (심리상담조사명령), and education before disposal. And, various kinds of protection disposal types and systems need to investigate them.

4) Roles of Investigation Agencies

Working group of investigation agencies can investigate in overlap. Not only the police but also prosecutors' office may investigate at investigation stage and court stage to have different and inherent functions of officers' inspection,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and pre-sentence investigation system that have

different nature, procedures and methods.

The probation and parole office can do prosecutor pre-determination investigation, presentence investigation and court pre-determination investigation, and juvenile classification institution can do classification inspection as well as counseling investigation to investigate talent and qualification of young offenders consigned whom other inspection officers could not inspect, and inspection officers who investigated juvenile criminals had better inspect young offenders requiring protection at juvenile court.

As said before, ratio of sending of juvenile court increased remarkably, and various kinds of probation were applied to young offenders according to the Juvenile Act. To meet the Juvenile Act's ideology and give the most proper individual treatment, in-depth investigation should be done. 29 investigation officers in the nation who are currently investigating young offenders at family court mostly had multiple jobs so that inspection officers at the court had better inspect young offenders requiring protection (보호소년). In particular, the family court shall put new systems into practic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young offenders, for instance, juvenile participatory trial,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investigation order (심리상담조사명령), and education before disposal. At the court per-determination investigation, probation officer had better inspect young offenders who have experienced probation, and inspection officers in charge of young offenders had better inspect remaining young offenders.

5) Overlapping of Investigation Officers

Overlapped investigation was practically discussed at investigation into sentencing material, in particular, overlapping of not only presentence investigation by probation officer but also presentence investigation by investigation officer of court. This study examined argument on investigation officers of presentence investigation to suggest unified direction at the area of

delinquent youth investigation.

The study suggested desirable unification of delinquent youth investigation:

Officer of presentence investigation shall be elected not by difference of litigation structure and/or legal system but by collection of presentence investigation by fair and objective investigation based on knowledge and job independence of professionals at investigation into sentencing factors. Legislative policy such as introduction of a system shall always consider not only ideals of the system but also effective use of justice resources. Therefore, considering legal system in Korea, probation officers had better do presentence investigation because they have long time experience and excellent knowhow and have close relations with probation as well as treatment of defendants.

Rate of sending of juvenile court of inspection officers of court rose, and probation against young offenders varied very much in accordance with revision of the Juvenile Act, and the Family Court introduced new systems such as juvenile participatory trial system,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investigation order, and education before disposal (처분전 훈육) depending upon young offenders' characteristics to require various kinds of investigations: So, delinquent youth investigation officers (소년조사관) and inspection officers of court had better inspect young offenders requiring protection (보호소년).

B) Inspection Officers and Professional Inspection

In this study, probation officers,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officers and delinquent youth inspection officers thought of the greatest problem that probation and parole office had no inspection department, followed by shortage of inspection officers, job burden of each one of inspection officer, non-inspection officer's involvement in inspection according to job rotation, and shortage of reeducation and education time of inspection officers. The interviewees thought that shortage of inspection officers was the greatest problem considering inspection system of delinquent youth (34.3%), followed

by job burden of each one of the officer (16.7%), and probation and parole office without inspection department (11.8%). The interviewees said that shortage of inspection officers was the 1st, 2nd and 3rd ranked problem (55.4%), followed by job burden of each one of the officer (47.1%), probation and parole office without inspection department (37.3%), and not only non-inspection officer's involvement in inspection according to job rotation but also shortage of reeducation and education time of inspection officers (28.9%).

1) Professional Inspection of the Officers

Probation and parole officers could not be appointed properly considering their ability and characteristics because of shortage of the officers to have difficulties at investigation because of job burden. Jobs of probation and parole officers,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officers and delinquent youth inspection officers of court increased every year because of introduction of new inspection systems: So, the officers were unable to inspect young offenders without recruitment and to be difficult to meet purposes of various kinds of investigation systems. The recruitment was essentially needed. Introduction of probation after imprisonment has been recently discussed so that recruitment of officers in charge of investigation only would be difficult. Considering values of investigation to do individual treatment according to ideology of protection of delinquent youth, investigation officers should be recruited. The criminal justice procedure had better have good system, and investigation officers should be recruited to attain goals and purposes of the system. Considering young people's nature being different form that of the adult, inspection officers in charge of young offenders are needed, and they are in short supply.

The Ministry of Justice recently introduced accreditation system of inspection officers to elevate reliability of the inspection. As said before, not only

accreditation system of inspection officers but also accreditation system of inspection officers in charge of young offenders is needed. Investigation officers in charge of young offenders shall have knowledge and ideas on juvenile psychology and characteristics, young people's delinquent behavior and crimes, and characteristics and factors of juvenile second offense. Inspection officers shall be employed and appointed not by job rotation but by good inspection ability to let them devote to inspection job. For instance, in the United States, probation officers in charge of presentence investigation who have bachelor's degree of psychology, criminal policy science, crime science, and sociology shall be employed and recruited not by job rotation but by professional knowledge and ability.

2) Educational Opportunity for Inspection Officers

Inspection officers has been educated and trained until now, and current curriculum is unable to elevate probation officers' professional knowledge and ability of probation officers in charge of presentence inspection. At in-depth interview with the officers, they said that they were unable to be educated because of job burden. When the inspection officers were educated at other places than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nd/or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of court, they were forced to pay tuition fees privately. Even if the officers wanted to be educated by paying tuition fees privately, they were not given educational opportunity because of job burden at shortage of investigation officers.

And, the officers could be given educational opportunities of either psychological inspection and other inspection subjects or reeducation at colleges and/or consulting organizations. The officers are demanded to attend lectures and/or workshops of graduate schools and consulting organizations. Business cooperation agreement with a college shall be made to develop special curriculum, and business agreement with counseling organization shall

be made to develop a curriculum to educate and train the officers continuously. The officers shall be educated outlines and guidelines of testing of second offense risks that is being used at various kinds of investigations and psychological tests.

3) Assessment Tools of Second Offense Risks by Each Type of Crime

Judges and prosecutors (57.2%) thought that no standard risk assessment tool of each crime type would be of problem, and inspection officers (59.3%) did. And, applicants to the inspection (14.3%) and inspection officers (14.8%) that 'no standard risk testing tool of each crime type should be firstly solved.

Investigation officers' opinions and assessment on second offense risks were not made based on objective standards to rely upon personal experience according to the followings: Second offense risks at the questionnaire survey, factors weighted at suggestion of inspection officers' opinions, inspection officers' final opinions at prosecutor pre-determination inspection, in other words, factors having significant influence upon decision of either stay of prosecution or sending of juvenile court, and inspection officers' opinions at presentence investiga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2006), and factors having influence upon final decision of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Therefore, not only inspection officers' opinions but also second offense risks should be tested according to objective standards, for which standardized risk assessment tools shall be urgently developed to test second offense risks in scientific way and to suggest it to inspection officers' opinions.

Development and enforcement of risk assessment tool is said to be at intial stage so that studies on second offense shall be developed to make use of reliable and appropriate tool continuously and to clarify second offense factors.

But, in Korea, research on second offense is not easy to do. The inspection officers shall be allowed to inquire of crime history to research second offense: However, currently,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has been

emphasized so much to be difficult to research second offense. Scholars of second offense research were interested in not criminals' private information but second offense. For scientific purpose, a way that can inspect second offense to exclude information of private persons shall be developed. If not, information analysis can be done at National Police Agency and/or Prosecution Service and other places, and computers of National Police Agency and/or Prosecution Service shall be allowed to make use of them for analysis purpose.

5. Summary

In this study, investigation system should be used to realize ideology of the Juvenile Act by individual treatment according to protection of young people and to make use of inspection system that can meet characteristics of the Act: And, the study suggested not only reformation of investigation system of young offenders but also professionalism of inspection officers to solve low efficiency and special skills that could be produced because of overlap and delay of current inspection systems. The study investigated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operations of various kinds of investigations, judges, prosecutors and inspection officers by questionnair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Revision of the Juvenile Act that was effective from June 22, 2008 diversified kinds and contents of protection disposal (보호처분) to put an emphasis upon ideology of restorative justice of treatment of young offenders: And, revision of the Juvenile Act that was effective from June 22, 2008 introduced not only guarantee of victim's right to make a statement but also reconciliation (화해권고). In other words, the Act considered a victim's requests to enact provision that could incorporate offenders into the community again, so that it could settle conflicts between concerned parties autonomously to make base of

restorative justice. Seoul Family Court put new systems into practice to realize restorative justice; for instance, reconciliation (화해권고), juvenile participatory trial system, psychological counseling & investigation order, and education prior to disposal (처분전 훈육). Juvenile delinquents requiring protection could be given various kinds of disposals, so that delinquent youth investigation system should be developed at the stage of trial to meet its purposes.

As said before, the study could not investigate factors having influence upon inspection officers' opinions on prosecutor pre-determination inspection, presentence investigation and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because of difference of research methods and contents of the records by using one frame. Therefore, researches shall be done to investigate records by using one frame to clarify factors of opinions of inspection officers and to examine factors that can have influence upon decisions of prosecutors and judges. In-depth study is needed to give ground of inspection officer's opinions by inspecting second offense factors of young offenders. Inquiry into crime history was difficult so far to prevent researchers from investigating forecast of second offense of young offenders. In this study, weight of second offense risk assessment of investigation officers differed from that of check of the officers a little. The weights varied depending upon inspection officers.

Inspection officers, prosecutors and judges have put an emphasis upon development of second crime risk assessment tools, for which justice authority shall actively support to inquire of crime history and to investigate second offense risk factors of young offenders by each type of crime and to develop assessment tools.

부록

소년조사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보호관찰관)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대책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금년에 소년조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소년조사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검사 또는 판사가 의뢰한 소년을 직접 조사하고 있는 여러분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자료는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귀하의 의견은 소년조사제도에 대한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단지 통계적으로만 처리되며, 개별응답은 절대 비밀이 보장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연구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1년 9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영오 연구위원(☎02-3460-519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먼저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한 달 동안 대략 몇 건 정도의 조사서를 작성하십니까?
   전체 : 약 _____건, 그 중 소년범은 약 _____건
   조사유형별: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 약 _____건, 판결전조사서 : 성인-약_____건, 소년-약_____건
   법원의 결정전조사서 : 약 _____건

2. 개별 비행소년별로 소년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1)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 ___시간 2) 판결전조사서 : ___시간 3) 법원의 결정전조사서 : ___시간

3.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다음의 사항이 얼마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용	전혀 문제 되지 않음	별로 문제 되지 않은 편임	약간 문제 있는 편임	매우 문제 있음
1) 조사전문인력의 부족	1	2	3	4
2)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 존재	1	2	3	4
3) 조사담당 직원에 대한 재교육 및 교육시간 부족	1	2	3	4
4) 전문가 자원봉사자의 미활용	1	2	3	4
5) 범죄유형별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 부재	1	2	3	4
6) 형사사법단계별 조사내용의 중복	1	2	3	4
7) 범죄유형에 대한 조사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1	2	3	4
8)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 담당	1	2	3	4
9) 조사기관의 역할중복(조사유형별 역할분장 부재)	1	2	3	4
10) 소년범 전문 조사관 부재	1	2	3	4
11) 조사기관간의 연계성 부족(조사기관간 정보 미공유)	1	2	3	4
12) 조사대상 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1	2	3	4
13) 조사 대상 소년에게 진술거부권 미고지	1	2	3	4
14)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	1	2	3	4
15) 조사에 따른 개별처우 프로그램의 부족	1	2	3	4
16) 소년조사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식 부재	1	2	3	4
17)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이나 판결결과의 미통보	1	2	3	4
18) 중요하지 않은 사건의 의뢰(조사의뢰 실적때문)	1	2	3	4
19) 법적인 강제력 부재	1	2	3	4
20)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	2	3	4

3-1.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 3번의 예에서 순서대로 3가지만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3-2.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Ⅱ. 다음은 **검사의 결정전조사제도**와 관련하여 귀하의 평소 의견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지금까지 검사의 결정전조사서를 몇 건이나 작성하셨습니까? 약 _____건

2. 귀하는 주로 어떤 조사대상을 의뢰받았습니까?

1) 초범 2) 재범 3) 3범 이상 4) 제한 없다

3.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결정전조사를 의뢰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회보기간이 길기 때문에
2) 임의규정으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3) 조사서를 자세히 읽을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4) 검사가 소년의 인성이나 환경보다는 죄질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5) 검사가 소년범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6) 검사가 조사의 효용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7) 검사가 검사의 결정전조사제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8)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4. 귀하는 검사의 결정전조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별로 필요하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5.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결정전조사서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다 2) 활용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
5)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6. 귀하는 결정전조사서를 작성하기에 현재의 조사관의 전문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낮다 2) 낮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높은 편이다 5) 매우 높다

6-1. 조사관의 전문성이 낮은 경우도 있다면, 그 이유 및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검사의 결정전조사에서, 귀하께서는 다음의 조사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내용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 편임	중요한 편임	매우 중요함
1) 범죄관련사항	1	2	3	4
2) 범죄 경력	1	2	3	4
3)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1	2	3	4
4) 성장과정	1	2	3	4
5)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1	2	3	4
6) 학력 및 학교생활	1	2	3	4
7) 교우관계	1	2	3	4
8)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1	2	3	4
9) 진술태도	1	2	3	4
10) 향후 생활계획	1	2	3	4
11) 조사자의 의견	1	2	3	4
12)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	2	3	4

7-1. 위 사항 중 조사자 의견 제안 시, 귀하께서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위 7번의 예에서 순서대로 2가지만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7-1-1. 귀하께서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7-2. 위 사항 중 재범위험성에 대한 의견 제안 시,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위 7 번의 예에서 순서대로 2가지만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7-2-1. 귀하께서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8. 조사자 의견 제안 시 소년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1) _____ 2) _____ 3) _____

8-1. 조사자 의견 제안 시 소년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1) _____ 2) _____ 3) _____

9. 귀하는 검사의 결정전조사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검사 결정전조사서의 작성양식에 대해 얼마 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9-1.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10. 검사의 결정전조사서를 작성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 (2순위: ____)

1) 회보기간이 너무 짧아 소년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한 점
2) 피해자 면담, 접근이 어려운 점
3) 검찰에서 수사 자료를 잘 주지 않는 점
4)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가 없는 점
5) 진술에 크게 의존하나 진술의 진실성 판단이 쉽지 않은 점
6) 의견제시 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점
7)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1. 귀하는 현행 검사의 결정전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_____

_____

12. 귀하는 검사의 결정전조사는 어떤 사건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폭행/상해(폭처법위반 등 폭력범죄) 2) 절도범죄
3) 성폭력범죄 4) 교통범죄
5) 살인/치사범죄 6) 풍속범죄(도박, 윤락행위 등)
7) 제한 없다 8)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3. 귀하는 검사의 결정전조사가 어떤 조사대상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초범 2) 재범 3) 3범 이상 4) 제한 없다

14. 검사의 결정전조사서를 의뢰받을 때 경찰단계에서의 환경조사서가 첨부되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14-1. 첨부되었다면 어느 정도나 첨부되어 있었습니까? 의뢰건수의 약 _____%

15. 검사 결정전조사를 위해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자료는 무엇입니까? 모두 적어 주십시오.

Ⅲ. 다음은 **소년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제도**와 관련하여 귀하의 평소 의견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지금까지 소년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서를 몇 건이나 작성하셨습니까?
약 _____건

2. 귀하는 소년범의 판결전조사시 주로 어떤 조사대상을 의뢰받았습니까?
1) 초범 2) 재범 3) 3범 이상 4) 제한 없다

3. 귀하는 판사가 판결전조사를 의뢰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회보기간이 길기 때문에
2) 임의규정으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3) 조사서를 자세히 읽을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4) 판사가 소년의 인성이나 환경보다는 죄질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5) 판사가 소년범 판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6) 판사가 조사의 효용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7) 판사가 판결전조사제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8)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4. 귀하는 판결전조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별로 필요하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5.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판사는 판결전조사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다
2) 활용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
5)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6. 귀하는 판결전조사서를 작성하기에 현재의 조사관의 전문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낮다 2) 낮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높은 편이다 5) 매우 높다

6-1. 조사관의 전문성이 낮은 경우도 있다면, 그 이유 및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7. 귀하는 소년범의 판결전조사에서 다음의 조사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내용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 편임	중요한 편임	매우 중요함
1) 범죄관련사항	1	2	3	4
2) 범죄 경력	1	2	3	4
3)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1	2	3	4
4) 성장과정	1	2	3	4
5)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1	2	3	4
6) 학력 및 학교생활	1	2	3	4
7) 교우관계	1	2	3	4
8)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1	2	3	4
9) 진술태도	1	2	3	4
10) 향후 생활계획	1	2	3	4
11) 조사자의 의견	1	2	3	4
12)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	2	3	4

7-1. 위 사항 중 조사자 의견 제안 시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위 7번의 예에서 순서대로 2가지만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7-1-1. 귀하께서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7-2. 재범위험성에 대한 의견 제안 시,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위 8번의 예에서 순서대로 2가지만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7-2-1. 귀하께서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8. 판결전조사의 조사자 의견 제안 시 소년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1) _____t_____ 2) _____ 3) _____

8-1. 판결전조사의 조사자 의견 제안 시 소년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1) _____ 2) _____ 3) _____

9. 귀하는 판결전조사 취지를 고려할 때, 현재의 판결전조사서의 작성양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9-1.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10. 소년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서를 작성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 (2순위: ____)

1) 회보기간이 너무 짧아 소년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한 점
2) 피해자 면담, 접근이 어려운 점
3) 검찰에서 수사 자료를 잘 주지 않는 점
4)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가 없는 점
5) 진술에 크게 의존하나 진술의 진실성 판단이 쉽지 않은 점
6) 의견제시 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점
7)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1. 소년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_____

12. 귀하는 판결전조사는 어떤 사건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폭행/상해(폭처법위반 등 폭력범죄)
2) 절도범죄
3) 성폭력범죄
4) 교통범죄
5) 살인/치사범죄
6) 풍속범죄(도박, 윤락행위 등)
7) 제한 없다
8)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3. 귀하는 판결전조사가 어떤 조사대상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초범 2) 재범 3) 3범 이상 4) 제한 없다

14. 판결전조사를 의뢰받을 때, 검사의 결정전조사서가 첨부되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14-1. 첨부되었다면 어느 정도나 첨부되어 있었습니까? 의뢰건수의 약 _____%

15. 소년범에 대한 판결전조사를 위해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자료는 무엇입니까? 모두 적어 주십시오.

Ⅳ. 다음은 소년범에 대한 법원의 결정전조사제도와 관련하여 귀하의 평소 의견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지금까지 소년범에 대한 법원의 결정전조사서를 몇 건이나 작성하셨습니까?
약 _____건

2. 귀하는 법원 결정전조사시 주로 어떤 조사대상을 의뢰받았습니까?

1) 초범 2) 재범 3) 3범 이상 4) 제한 없다

3. 귀하는 판사가 법원 결정전조사를 의뢰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회보기간이 길기 때문에
2) 임의규정으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3) 조사서를 자세히 읽을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4) 판사가 소년의 인성이나 환경보다는 죄질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5) 판사가 소년범 판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6) 판사가 조사의 효용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7) 판사가 법원의 결정전조사제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8)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4. 귀하는 법원 결정전조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별로 필요하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5.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판사는 법원 결정전조사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다　　2) 활용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
5)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6. 귀하는 법원 결정전조사서를 작성하기에 현재의 조사관의 전문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낮다　2) 낮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높은 편이다　5) 매우 높다

6-1. 조사관의 전문성이 낮은 경우도 있다면, 그 이유 및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7. 귀하는 결정전조사에서 다음의 조사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내용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 편임	중요한 편임	매우 중요함
1) 범죄관련사항	1	2	3	4
2) 범죄 경력	1	2	3	4
3)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1	2	3	4

조사내용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 편임	중요한 편임	매우 중요함
4) 성장과정	1	2	3	4
5)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1	2	3	4
6) 학력 및 학교생활	1	2	3	4
7) 교우관계	1	2	3	4
8)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1	2	3	4
9) 진술태도	1	2	3	4
10) 향후 생활계획	1	2	3	4
11) 조사자의 의견	1	2	3	4
12)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	2	3	4

7-1. 위 사항 중 조사자 의견 제안 시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위 7번의 예에서 순서대로 2가지만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7-1-1. 귀하께서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7-2. 재범위험성에 대한 의견 제안 시,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위 8번의 예에서 순서대로 2가지만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7-2-1. 귀하께서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8. 법원 결정전조사의 조사자 의견 제안 시 소년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1) _____ 2) _____ 3) _____

8-1. 법원 결정전조사의 조사자 의견 제안 시 소년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1) _____ 2) _____ 3) _____

9. 귀하는 법원 결정전조사 취지를 고려할 때, 현재의 결정전조사서 작성양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9-1.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10. 소년범에 대한 법원의 결정전조사서를 작성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 (2순위: ____)

1) 회보기간이 너무 짧아 소년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한 점
2) 피해자 면담, 접근이 어려운 점
3) 검찰에서 수사 자료를 잘 주지 않는 점
4)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가 없는 점
5) 진술에 크게 의존하나 진술의 진실성 판단이 쉽지 않은 점
6) 의견제시 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점
7)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1. 소년범에 대한 법원의 결정전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_____

_____

12. 귀하는 법원의 결정전조사는 어떤 사건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폭행/상해(폭처법위반 등 폭력범죄)
2) 절도범죄
3) 성폭력범죄
4) 교통범죄
5) 살인/치사범죄
6) 풍속범죄(도박, 윤락행위 등)
7) 제한 없다
8)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3. 귀하는 법원의 결정전조사가 어떤 조사대상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초범 2) 재범 3) 3범 이상 4) 제한 없다

14. 법원 결정전조사를 의뢰받을 때 검사의 결정전조사서가 첨부되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14-1. 첨부되었다면 어느 정도나 첨부되어 있었습니까? 의뢰건수의 약 _____%

15. 법원 결정전조사를 위해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자료는 무엇입니까? 모두 적어 주십시오.

Ⅴ. 마지막으로 귀하의 신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세

3. 조사담당자로서 귀하의 근무연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년 _____개월

3-1. 현재 귀하의 소속 부서는 어디입니까? _____부

3-2. 조사업무를 담당하기 전에는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였습니까? _____부에서 _____년 _____개월

4. 귀하는 조사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습니까?(예를 들어, 임상심리전문가 등) 모두 적어 주십시오.

5. 귀하는 조사와 관련된 교육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2010년 _____시간, 2011년 _____시간

5-1. 2010년에 받은 교육과목을 모두 적어 주십시오.

5-2. 2011년에 받은 교육과목을 모두 적어 주십시오.

6. 귀하께서는 한 달에 몇 건 정도의 조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달에 _____건

7. 소년범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적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_____
검사의 결정전조사 : _____
_____
판결전조사 : _____
_____

법원의 결정전조사 : _____

_____

8. 마지막으로 조사직무와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적어 주십시오.

_____

_____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소년조사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분류심사원, 소년원)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대책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금년에 소년조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소년조사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검사 또는 판사가 의뢰한 소년을 직접 조사하고 있는 여러분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자료는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귀하의 의견은 소년조사제도에 대한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단지 통계적으로만 처리되며, 개별응답은 절대 비밀이 보장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연구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1년 9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영오 연구위원(☎02-3460-519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먼저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한 달 동안 대략 몇 건 정도의 조사서를 작성하십니까?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 약 _____건, 분류심사서 : 약 _____건, 상담조사서 : 약 _____건

2. 개별 비행소년별로 소년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1) 검사의 결정전조사서 : _____시간 2) 분류심사서 : _____시간(_____일)
   3) 상담조사서 : _____시간

3.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다음의 사항이 얼마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용	전혀 문제되지 않음	별로 문제되지 않은 편임	약간 문제있는 편임	매우 문제있음
1) 조사전문인력의 부족	1	2	3	4
2)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 존재	1	2	3	4
3) 조사담당 직원에 대한 재교육 및 교육시간 부족	1	2	3	4
4) 전문가 자원봉사자의 미활용	1	2	3	4
5) 범죄유형별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 부재	1	2	3	4
6) 형사사법단계별 조사내용의 중복	1	2	3	4
7) 범죄유형에 대한 조사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1	2	3	4
8)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 담당	1	2	3	4
9) 조사기관의 역할중복(조사유형별 역할분장 부재)	1	2	3	4
10) 소년범 전문 조사관 부재	1	2	3	4
11) 조사기관간의 연계성 부족(조사기관간 정보 미공유)	1	2	3	4
12) 조사대상 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1	2	3	4
13) 조사 대상 소년에게 진술거부권 미고지	1	2	3	4
14)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	1	2	3	4
15) 조사에 따른 개별처우 프로그램의 부족	1	2	3	4
16) 소년조사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식 부재	1	2	3	4
17)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이나 판결결과의 미통보	1	2	3	4
18) 중요하지 않은 사건의 의뢰(조사의뢰 실적때문)	1	2	3	4
19) 법적인 강제력 부재	1	2	3	4
20)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	2	3	4

3-1.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 3번의 예에서 순서대로 3가지만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3-2.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Ⅱ. 다음은 검사의 **결정전조사제도**와 관련하여 귀하의 평소 의견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지금까지 검사의 결정전조사서를 몇 건이나 작성하셨습니까? 약 _____건

2. 귀하는 주로 어떤 조사대상을 의뢰받았습니까?
   1) 초범 2) 재범 3) 3범 이상 4) 제한 없다

3.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결정전조사를 의뢰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회보기간이 길기 때문에
   2) 임의규정으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3) 조사서를 자세히 읽을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4) 검사가 소년의 인성이나 환경보다는 죄질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5) 검사가 소년범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6) 검사가 조사의 효용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7) 검사가 검사의 결정전조사제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8)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4. 귀하는 검사의 결정전조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별로 필요하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5.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결정전조사서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다 2) 활용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
   5)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6. 귀하는 결정전조사서를 작성하기에 현재의 조사관의 전문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낮다 2) 낮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높은 편이다 5) 매우 높다

6-1. 조사관의 전문성이 낮은 경우도 있다면, 그 이유 및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검사의 결정전조사에서, 귀하께서는 다음의 조사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내용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 편임	중요한 편임	매우 중요함
1) 범죄관련사항	1	2	3	4
2) 범죄 경력	1	2	3	4
3)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1	2	3	4
4) 성장과정	1	2	3	4
5)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1	2	3	4
6) 학력 및 학교생활	1	2	3	4
7) 교우관계	1	2	3	4
8)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1	2	3	4
9) 진술태도	1	2	3	4
10) 향후 생활계획	1	2	3	4
11) 조사자의 의견	1	2	3	4
12)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	2	3	4

7-1. 위 사항 중 조사자 의견 제안 시, 귀하께서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위 7번의 예에서 순서대로 2가지만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7-1-1. 귀하께서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7-2. 위 사항 중 재범위험성에 대한 의견 제안 시,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위 7 번의 예에서 순서대로 2가지만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7-2-1. 귀하께서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8. 조사자 의견 제안 시 소년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1) _____ 2) _____ 3) _____

8-1. 조사자 의견 제안 시 소년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1) _____ 2) _____ 3) _____

9. 귀하는 검사의 결정전조사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검사 결정전조사서의 작성양식에 대해 얼마 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9-1.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10. 검사의 결정전조사서를 작성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 (2순위: ____)

1) 회보기간이 너무 짧아 소년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한 점
2) 피해자 면담, 접근이 어려운 점
3) 검찰에서 수사 자료를 잘 주지 않는 점
4)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가 없는 점
5) 진술에 크게 의존하나 진술의 진실성 판단이 쉽지 않은 점
6) 의견제시 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점
7)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1. 귀하는 현행 검사의 결정전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_____

_____

12. 귀하는 검사의 결정전조사는 어떤 사건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폭행/상해(폭처법위반 등 폭력범죄) 2) 절도범죄
3) 성폭력범죄 4) 교통범죄
5) 살인/치사범죄 6) 풍속범죄(도박, 윤락행위 등)
7) 제한 없다 8)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3. 귀하는 검사의 결정전조사가 어떤 조사대상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초범 2) 재범 3) 3범 이상 4) 제한 없다

14. 검사의 결정전조사서를 의뢰받을 때 경찰단계에서의 환경조사서가 첨부되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14-1. 첨부되었다면 어느 정도나 첨부되어 있었습니까? 의뢰건수의 약 _____%

15. 검사 결정전조사를 위해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자료는 무엇입니까? 모두 적어 주십시오.

Ⅲ. 다음은 **분류심사제도**와 관련하여 귀하의 평소 의견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지금까지 소년범에 대한 분류심사서를 몇 건이나 작성하셨습니까? 약 _____건

2. 귀하는 분류심사시 주로 어떤 조사대상을 의뢰받았습니까?
1) 초범 2) 재범 3) 3범 이상 4) 제한 없다

3. 귀하는 판사가 분류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회보기간이 길기 때문에
2) 임의규정으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3) 조사서를 자세히 읽을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4) 판사가 소년의 인성이나 환경보다는 죄질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5) 판사가 소년범 판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6) 판사가 조사의 효용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7) 판사가 분류심사제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8)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4. 귀하는 분류심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별로 필요하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5.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판사는 분류심사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다 2) 활용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
5)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6. 귀하는 분류심사서를 작성하기에 현재의 조사관의 전문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낮다 2) 낮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높은 편이다 5) 매우 높다

6-1. 조사관의 전문성이 낮은 경우도 있다면, 그 이유 및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7. 귀하는 분류심사에서 다음의 조사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내용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 편임	중요한 편임	매우 중요함
1) 범죄관련사항	1	2	3	4
2) 비행분석(범죄 경력)	1	2	3	4
3)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1	2	3	4
4) 성장과정	1	2	3	4
5) 보호자상담(관심 및 보호능력)	1	2	3	4
6) 학교 및 사회생활	1	2	3	4
7) 심리적 특성	1	2	3	4
8) 행동관찰	1	2	3	4
9) 비행성진단(재비행예측)	1	2	3	4
10) 조사자의 지도방향	1	2	3	4
11) 조사자의 처분의견	1	2	3	4
12)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	2	3	4

7-1. 위 사항 중 조사자 의견 제안 시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위 7번의 예에서 순서대로 2가지만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7-1-1. 귀하께서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7-2. 재범위험성에 대한 의견 제안 시,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위 8번의 예에서 순서대로 2가지만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7-2-1. 귀하께서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8. 분류심사의 조사자 의견 제안 시 소년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1) _____t_____ 2) _____ 3) _____

8-1. 분류심사의 조사자 의견 제안 시 소년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1) _____ 2) _____ 3) _____

9. 귀하는 분류심사 취지를 고려할 때, 현재의 분류심사서의 작성양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9-1.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10. 분류심사서를 작성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 (2순위: ____)

1) 보호자상담이 쉽지 않은 점
2) 피해자 면담, 접근이 어려운 점
3) 검찰에서 수사 자료를 잘 주지 않는 점
4)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가 없는 점
5) 진술의 진실성 판단이 쉽지 않은 점
6) 의견제시 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점
7)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1. 분류심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_____

_____

12. 귀하는 분류심사는 어떤 사건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폭행/상해(폭처법위반 등 폭력범죄) 2) 절도범죄

3) 성폭력범죄 4) 교통범죄
5) 살인/치사범죄 6) 풍속범죄(도박, 윤락행위 등)
7) 제한 없다 8)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3. 귀하는 분류심사가 어떤 조사대상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초범 2) 재범 3) 3범 이상 4) 제한 없다

14. 분류심사를 의뢰받을 때, 검사의 결정전조사서가 첨부되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14-1. 첨부되었다면 어느 정도나 첨부되어 있었습니까? 의뢰건수의 약 _____%

15. 분류심사를 위해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자료는 무엇입니까? 모두 적어 주십시오.

Ⅳ. 다음은 **상담조사제도**와 관련하여 귀하의 평소 의견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지금까지 상담조사서를 몇 건이나 작성하셨습니까? 약 _____건

2. 귀하는 상담조사시 주로 어떤 조사대상을 의뢰받았습니까?
1) 초범 2) 재범 3) 3범 이상 4) 제한 없다

3. 귀하는 판사가 상담조사를 의뢰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회보기간이 길기 때문에
2) 임의규정으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3) 조사서를 자세히 읽을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4) 판사가 소년의 인성이나 환경보다는 죄질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5) 판사가 소년범 판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6) 판사가 조사의 효용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7) 판사가 상담조사제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8)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4. 귀하는 상담조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별로 필요하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5.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판사는 상담조사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다　　2) 활용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
5)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6. 귀하는 상담조사서를 작성하기에 현재의 조사관의 전문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낮다　　2) 낮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높은 편이다　　5) 매우 높다

6-1. 조사관의 전문성이 낮은 경우도 있다면, 그 이유 및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7. 귀하는 상담조사에서 다음의 조사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내용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 편임	중요한 편임	매우 중요함
1) 범죄관련사항	1	2	3	4
2) 비행분석(범죄 경력)	1	2	3	4
3)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1	2	3	4
4) 성장과정	1	2	3	4
5) 보호자상담(관심 및 보호능력)	1	2	3	4
6) 학교 및 사회생활	1	2	3	4
7) 심리적 특성	1	2	3	4
8) 행동관찰	1	2	3	4
9) 비행성진단(재비행예측)	1	2	3	4
10) 조사자의 지도방향	1	2	3	4
11) 조사자의 처분의견	1	2	3	4
12)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	2	3	4

7-1. 위 사항 중 조사자 의견 제안 시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위 7번의 예에서 순서대로 2가지만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7-1-1. 귀하께서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7-2. 재범위험성에 대한 의견 제안 시,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위 8번의 예에서 순서대로 2가지만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7-2-1. 귀하께서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8. 상담조사의 조사자 의견 제안 시 소년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1) _____t_____ 2) _____ 3) _____

8-1. 상담조사의 조사자 의견 제안 시 소년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1) _____ 2) _____ 3)_____

9. 귀하는 상담조사 취지를 고려할 때, 현재의 상담조사서의 작성양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9-1.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10. 상담조사서를 작성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 (2순위: ____)

1) 회보기간이 너무 짧아 소년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한 점
2) 피해자 면담, 접근이 어려운 점
3) 검찰에서 수사 자료를 잘 주지 않는 점
4)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가 없는 점
5) 진술에 크게 의존하나 진술의 진실성 판단이 쉽지 않은 점
6) 의견제시 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점
7)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1. 상담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_____

_____

12. 귀하는 상담조사는 어떤 사건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폭행/상해(폭처법위반 등 폭력범죄)
2) 절도범죄
3) 성폭력범죄
4) 교통범죄
5) 살인/치사범죄
6) 풍속범죄(도박, 윤락행위 등)
7) 제한 없다
8)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3. 귀하는 상담조사가 어떤 조사대상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초범 2) 재범 3) 3범 이상 4) 제한 없다

14. 상담조사를 의뢰받을 때, 검사의 결정전조사서가 첨부되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14-1. 첨부되었다면 어느 정도나 첨부되어 있었습니까? 의뢰건수의 약 _____%

15. 상담조사를 위해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자료는 무엇입니까? 모두 적어 주십시오.

Ⅳ. 마지막으로 귀하의 신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세

3. 현재 귀하의 근무처는 어디입니까? 1) 분류심사원 2) 소년원 3) 비행예방센터

3-1. 조사담당자로서 귀하의 근무연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년 _____개월

3-2. 조사업무를 담당하기 전에는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였습니까? _____부에서 _____년 _____개월

4. 귀하는 조사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습니까?(예를 들어, 임상심리전문가 등) 모두 적어 주십시오.

5. 귀하는 조사와 관련된 교육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2010년 _____시간, 2011년 _____시간

5-1. 2010년에 받은 교육과목을 모두 적어 주십시오.

5-2. 2011년에 받은 교육과목을 모두 적어 주십시오.

6. 귀하께서는 한 달에 몇 건 정도의 조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달에 _____건

7. 소년범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적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_____
검사의 결정전조사 : _____
분류심사 : _____
_____
상담조사 : _____

8. 마지막으로 조사직무와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적어 주십시오.

_____
_____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소년조사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가정・지방법원판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대책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금년에 소년조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사는 소년조사제도에 있어 소년범에 대한 조사를 직접 의뢰하는 판사 여러분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자료는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귀하의 의견은 소년조사제도에 대한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단지 통계적으로만 처리되며, 개별응답은 절대 비밀이 보장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연구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1년 9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영오 연구위원(☎02-3460-519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먼저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한 달 동안 대략 몇 건 정도의 소년사건을 담당하십니까? 약_____건

2. 귀하는 한 달 동안 대략 몇 건 정도의 소년범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십니까?
약 _____건

2-1. 법원 결정전조사 : 약_____건, 분류심사 : 약_____건, 상담조사 : 약_____건

2-2. 의뢰하지 않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3.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다음의 사항이 얼마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용	전혀 문제되지 않음	별로 문제되지 않은 편임	약간 문제있는 편임	매우 문제있음
1) 조사전문인력의 부족	1	2	3	4
2) 조사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보호관찰소 존재	1	2	3	4
3) 조사담당 직원에 대한 재교육 및 교육시간 부족	1	2	3	4
4) 전문가 자원봉사자의 미활용	1	2	3	4
5) 범죄유형별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 부재	1	2	3	4
6) 형사사법단계별 조사내용의 중복	1	2	3	4
7) 범죄유형에 대한 조사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1	2	3	4
8) 순환보직을 통한 비전문가의 조사 담당	1	2	3	4
9) 조사기관의 역할중복(조사유형별 역할분장 부재)	1	2	3	4
10) 소년범 전문 조사관 부재	1	2	3	4
11) 조사기관간의 연계성 부족(조사기관간 정보 미공유)	1	2	3	4
12) 조사대상 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1	2	3	4
13) 조사 대상 소년에게 진술거부권 미고지	1	2	3	4
14) 조사관 개인당 조사업무의 과중	1	2	3	4
15) 조사에 따른 개별처우 프로그램의 부족	1	2	3	4
16) 소년조사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인식 부재	1	2	3	4
17) 조사관에게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이나 판결결과의 미통보	1	2	3	4
18) 중요하지 않은 사건의 의뢰	1	2	3	4
19) 법적인 강제력 부재	1	2	3	4
20)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	2	3	4

3-1. 소년범에 대한 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 2번의 예에서 순서대로 3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Ⅱ. 다음은 소년범에 대한 **결정전조사제도**와 관련하여 귀하의 평소 의견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지금까지 소년범에 대한 결정전조사를 대략 몇 건이나 의뢰하셨습니까?
   약 _____건

1-1. 의뢰한 적이 별로 없거나 잘 의뢰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회보가 늦기 때문에
   2)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3) 조사서를 읽을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4) 조사자가 소년 또는 소년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5) 판결에 대한 기준이 이미 있기 때문에
   6) 소년범을 판결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7) 결정전조사서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8) 조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9)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2. 귀하는 결정전조사서 의뢰 시에 주로 무엇을 고려하십니까?
   1) 범죄 유형 2) 전과 여부 3) 연령
   4) 제한 없다 5) 기타 (_____)

3. 귀하는 주로 어떤 사건을 의뢰하십니까?
   1) 폭행/상해(폭처법위반 등 폭력범죄) 2) 절도범죄
   3) 성폭력범죄 4) 교통범죄
   5) 살인/치사범죄 6) 풍속범죄(도박, 윤락행위 등)
   7) 제한 없다 8)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4. 귀하는 주로 어떤 소년범을 의뢰하십니까?
   1) 초범 2) 재범 3) 3범 이상 4) 제한 없다

5. 귀하는 결정전조사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필요한 편이다 5) 매우 필요하다

6. 결정전조사서를 작성하는 조사관의 전문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낮다 2) 낮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높은 편이다 5) 매우 높다

7. 귀하는 결정전조사서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으십니까?

1)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다 2) 활용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 5)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7-1. (활용하시는 경우) 판결전조사의 어떤 내용을 주로 참고하시고, 특히 어떤 측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7-2. (활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귀하는 소년범에 대한 결정전조사에서 다음의 조사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내용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 편임	중요한 편임	매우 중요함
1) 범죄관련사항	1	2	3	4
2) 범죄 경력	1	2	3	4
3)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1	2	3	4
4) 성장과정	1	2	3	4
5)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	1	2	3	4
6) 학력 및 학교생활	1	2	3	4
7) 교우관계	1	2	3	4
8)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1	2	3	4
9) 진술태도	1	2	3	4
10) 향후 생활계획	1	2	3	4
11) 조사자의 의견	1	2	3	4
12)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	2	3	4

8-1. 귀하께서 판결을 내릴 때 가장 많은 비중을 두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 8번의 예에서 순서대로 2가지만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8-2. 이 외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적어주십시오.

9. 귀하는 결정전조사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결정전조사서의 완성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2) 만족스럽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만족스런 편이다　　5) 매우 만족스럽다

9-1.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10. 귀하는 결정전조사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결정전조사서의 작성양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0-1.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_____

11. 귀하는 현행 결정전조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 (2순위: ____)
1) 회보기간이 너무 늦은 점
2) 임의규정으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점
3) 조사자가 소년 또는 소년범 전문가가 아닌 점
4) 조사서의 내용이 부실한 점
5) 조사자가 의견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점
6)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가 없는 점
7) 조사기관이 일원화되지 않은 점
8) 조사관의 의견제시 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점
9) 조사인력의 부족
10)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1-1. 이 외에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_____

12. 결정전조사를 의뢰할 때, 검사의 결정전조사서를 첨부하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12-1. 첨부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예를 들어, 검사로부터 받지 못했다던가)

Ⅱ. 다음은 소년범에 대한 **분류심사제도**와 관련하여 귀하의 평소 의견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지금까지 분류심사를 대략 몇 건이나 의뢰하셨습니까? 약 _____건

1-1. 의뢰한 적이 별로 없거나 잘 의뢰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회보가 늦기 때문에
2)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3) 조사서를 읽을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4) 조사자가 소년 또는 소년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5) 판결에 대한 기준이 이미 있기 때문에
6) 소년범을 판결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7) 결정전조사서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8) 조사가 부실하기 때문에
9)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2. 귀하는 분류심사 의뢰 시에 주로 무엇을 고려하십니까?

1) 범죄 유형 2) 전과 여부 3) 연령
4) 제한 없다 5) 기타 (_____)

3. 귀하는 주로 어떤 사건을 의뢰하십니까?

1) 폭행/상해(폭처법위반 등 폭력범죄) 2) 절도범죄
3) 성폭력범죄 4) 교통범죄
5) 살인/치사범죄 6) 풍속범죄(도박, 윤락행위 등)
7) 제한 없다 8)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4. 귀하는 주로 어떤 소년범을 의뢰하십니까?

1) 초범 2) 재범 3) 3범 이상 4) 제한 없다

5. 귀하는 분류심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필요한 편이다 5) 매우 필요하다

6. 분류심사서를 작성하는 조사관의 전문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낮다 2) 낮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높은 편이다 5) 매우 높다

7. 귀하는 분류심사서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으십니까?

1)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다 2) 활용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 5)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7-1. (활용하시는 경우) 판결전조사의 어떤 내용을 주로 참고하시고, 특히 어떤 측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7-2. (활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귀하는 분류심사에서 다음의 조사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내용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 편임	중요한 편임	매우 중요함
1) 범죄관련사항	1	2	3	4
2) 비행분석(범죄 경력)	1	2	3	4
3) 생활환경(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적 여건)	1	2	3	4
4) 성장과정	1	2	3	4
5) 보호자상담(관심 및 보호능력)	1	2	3	4
6) 학교 및 사회생활	1	2	3	4
7) 심리적 특성	1	2	3	4
8) 행동관찰	1	2	3	4
9) 비행성진단(재비행예측)	1	2	3	4
10) 조사자의 지도방향	1	2	3	4
11) 조사자의 처분의견	1	2	3	4
12)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	2	3	4

8-1. 귀하께서 판결을 내릴 때 가장 많은 비중을 두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 8번의 예에서 순서대로 2가지만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8-2. 이 외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적어주십시오.

9. 귀하는 분류심사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분류심사서의 완성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2) 만족스럽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만족스런 편이다 5) 매우 만족스럽다

9-1.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10. 귀하는 분류심사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분류심사서의 작성양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0-1.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_____

11. 귀하는 현행 분류심사제도 전반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 (2순위: ____)

1) 조사(수용)기간이 너무 긴 점
2) 임의규정으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점
3) 조사자가 소년 또는 소년범에 대한 전문성 부족
4) 조사서의 내용이 부실한 점
5) 조사자가 의견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점
6)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가 없는 점
7) 과학적인 분류기법이 미흡한 점
8) 조사관의 의견제시 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점
9) 조사인력의 부족
10)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1-1. 이 외에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_____

12. 분류심사를 의뢰할 때, 검사의 결정전조사서를 첨부하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12-1. 첨부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예를 들어, 검사로부터 받지 못했다던가)

Ⅲ. 마지막으로 귀하의 신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2. 판사로서의 귀하의 근무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만 _____년 _____개월
3. 소년범 담당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년 _____개월
4. 개별 비행소년별로 소년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_____시간
5.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세

〈부록〉 조사관 대상 교육과목

분야	교과목	최소 이수시간
1.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기법 및 사례연구 분야 (101시간)	1. 보호관찰과 사회사업	2
	2. 보호관찰 상담론	6
	3. 보호관찰 사례연구	10
	4.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기법	10
	5. 보호관찰 상황관리	10
	6. 제재조치 업무의 이해	4
	7. 계호실무	2
	8. 범죄행동의 이해	4
	9. 신고서 작성접수 요령	4
	10. 생활보고서 작성접수 요령	4
	11. 현장방문 지도요령	4
	12. 케이스 의 이해	4
	13. 성폭력보호관찰대상자 사례연구	6
	14. 가정폭력대상자 사례연구	6
	15. 약물남용대상자 사례연구	6
	16. 보호관찰 실천기술	10
	17. 보호관찰관 윤리	3
	18. 전자감독 사례연구	6
2. 보호관찰 관련 법령·제도 분야 (77시간)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	10
	2. 보호관찰 관련 법령의 이해	10
	3. 보호관찰제도론	4
	4. 선진보호관찰제도의 이해	4
	5. 전자감독제도의 이해	4
	6.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업무의 이해	3
	7. 약물 관련 법령의 이해	6
	8. 가정폭력 관련 법령의 이해	6
	9. 형법총론	10
	10. 형법각론	10
	11. 형사소송법	10
3. 소년 보호관찰 분야 (54시간)	1. 소년법의 이해	10
	2. 소년사법제도론	6
	3. 인간의 발달과정	6
	4. 인간행동의 이해	6
	5.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의 이해	6
	6. 동기형성과 행동변화	6
	7. K-WAIS 검사의 이해	4
	8. 소년범 재범사례 연구	10
4. 사회봉사명령 분야 (16시간)	1. 사회봉사명령 집행실무	6
	2. 사회봉사명령 사례연구	6
	3.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제재조치	4
5. 수강명령 분야 (118시간)	1. 수강명령 집행실무	8
	2. 수강명령 사례연구	10
	3. 인지행동치료의 연구	10
	4. 수강명령 프로그램 구성의 이해	6
	5. 음주운전 수강명령 프로그램	10
	6. 그룹 의 이해	10
	7. 성폭력 수강명령 프로그램	10
	8. 중독에 대한 이해	6
	9. 중독진단 및 절차	6
	10. 중독의 진행 및 회복단계별 전략	6

분야	교과목	최소 이수시간
	11. 필로폰, 대마, 흡입제, 알코올 등 약물의 특성	6
	12. 약물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	10
	13. 가정폭력 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	10
	14. 소년 수강명령 프로그램	10
6. 판결전조사 등 조사 분야 (80시간)	1. 판결전조사제도론	6
	2. 판결전조사 실무	10
	3. 재범위험성 예측도구 활용	10
	4. 청구전 조사제도의 이해	6
	5. KSORAS의 이해	6
	6. 결정전조사의 이해	6
	7. 판결전조사 사례연구	10
	8. 청구전조사 사례연구	10
	9. 결정전조사 사례연구	10
	10. PCL-R의 이해	6
7. 심리학심리검사 관련 분야 (60시간)	1. 심리학의 이해	10
	2. 이상심리와 정신병리의 이해	10
	3. 심리검사의 이해	10
	4. 심리치료의 이해	10
	5. MMPI의 이해	10
	6. PAI검사 이해	10
8. 범죄유형별 대상자 특성 및 재범사례 연구 분야 (83시간)	1. 약물남용자 특성과 재활	3
	2. 약물검사기법	10
	3. 가정폭력사범의 특성	10
	4. 교통사범 재범사례 연구	10
	5. 집중보호관찰대상자 재범사례 연구	10
	6. 일반관리대상자 재범사례 연구	10
	7. 성폭력사범의 특성	10
	8.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 예측도구 이해	10
	9. 가정폭력사범의 유형	10
9. 리더십 관련 분야 (12시간)	1. 중간관리자의 역할	3
	2. 보호관찰 기관장의 역할	3
	3. 행정환경 변화와 리더의 자세	3
	4. 조직내 갈등 관리	3
총 9개 분야	83개 교과목	601시간

〈검사 결정전조사서 양식〉

결 정 전 조 사 서

사 건 번 호 : 2000푸 0000
죄　　명 : 상 해
성　　명 : ○ ○ ○ (여)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00세)

2009. 0. 0.

서 울 보 호 관 찰 소

1. 보호소년 인적사항

성 명	O O O(O O O)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 소	서울 OO구 OO동 000-000	학 력	OO여자중학교 2학년 유예
거 소	경기 OOO시 OOO면 OO리 00-00	직 업	무 직
등 록 기준지	서울 O구 OO가 00-0	종 교	불 교
전 화	010-0000-0000(소년), 010-0000-0000(모 OOO), 010-0000-0000(동거남 OOO),	비 고	現 보호관찰 대상자 (기간 : '00. 0. 0. ~ ' 00. 0. 0.)

2. 비행 관련 사항

본건의 개요

○ 소년은 '09. 0. 0. 03:30경 OO시 OO구 OO로 소재 호프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OOO(24세, 여)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 으로 때리고 목 부위를 손톱으로 수차례 할퀴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및 경부좌상,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힘

본건의 정황 및 동기 (소년의 진술)

○ 소년은 초교 1학년 때 부모가 이혼하고 2학년 때 부가 자살한 후, 조모·고모 가족 등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고모와의 갈등 등으로 중학교 2학년('05년)때부터 가출을 반복해 왔으며, '06. 4.경부터는 현재의 동거남과 동거하고 있음

- 동거남과의 동거 중에는 가출하는 일은 없었으나, 동거남이 주거지를 비운 사이 유흥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을 벌이는 등, 무절제한 생활태도를 보여 왔음

○ 본건 즈음 동거남이 장기간 주거지를 떠나 있던 상황에서, 본건 당일 '아는 언니'와 함께 OO 소재의 호프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소주 2병 가량을 마시고는 피해자가 곁눈질로 자신을 쳐다보는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먼저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소년의 머리채를 잡는 식으로 대응 하면서 싸움이 시작되어 본건에 이름

- 소년은 본건 당시 자신도 피해자에 의해 목 부분이 할퀴어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면서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였고, 경찰조사를 받은 후 더 이

상 사건이 확대되지 않고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

본건 이후의 정황

○ 소년은 본건 전후로(정확한 시기는 기억하지 못함), 인천 OO에서 '아는 언니들'과 어울려 음주한 상태에서, 경적을 울리는 자동차의 백미러를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받았다 함

○ 본건 이후로도 동거남의 주거지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으며, '09. 0. 00.에는 본건 이전에 일으켰던 교통사고 관련 건으로 '단기보호관찰' 처분받아, 현재 보호관찰 기간 중임

피해회복 여부

○ <u>미합의 상태</u>

• 소년은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 현재로서는 피해자와 합의할 의향이 없다 함. 그러나 모는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태도임

3. 비행 경력(본건 제외)

○ '06. 00. 00./절도/OO지검/절도/기소유예

• 중학교 2학년 때 가출 상태에서 '아는 언니'의 돈을 절취(소년의 진술)

○ '08. 00. 00./성매매/서울중앙지검/기소유예

• '07. 0.말경부터 '08. 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성매매(서울 OO경찰서 수사의견서 참조)

○ '09. 00. 00./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정부지검/소년 보호사건(단기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 '09. 0. 00.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단기보호관찰(수강명령 40시간)의 처분받아, '09. 0. 00. OO보호관찰소에 개시신고하였고, 현재 보호관찰 중(보호관찰 기간 : '09. 00. 00. ~ '10. 00. 00.)

4. 생활환경

1. 가족 관계

관계	성명	연령	학력	직업	동거여부	비고
망부	OOO	-	중졸	-	-	'00. 1. 음독자살
모	OOO	41세	고졸	마트 계산원	별거	전북 OO 거주
오빠	OOO	20세	대학 휴학	군인	별거	군 복무 중
조모	OOO	83세	불상	-	별거	
고모	OOO	52세(추정)	불상	음식점 운영	별거	

○ 망부 OOO은 '60년생으로 중졸 후 소년 조모가 운영하는 OO 관리 일을 해왔음. 소년 조모의 강한 성격으로 인해 모자갈등이 심하였고, 고부갈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해 부부 갈등으로까지 비화되다, '98년(소년 초교 1학년) 소년의 모와 이혼함. '99. 00. 재혼하였으나 '00. 0. 부부싸움 끝에 음독자살함

○ 모 OOO은 '03년경 재혼하여 전북 OO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남편과 생활하고 있음. 소년의 부와 이혼 후 소년의 조모와는 연락을 유지하였으나, 조모의 반대로 소년과는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중, 소년이 직접 동사무소를 통해 모의 연락처를 수소문하면서 '09. 6.경 모녀상봉이 이루어졌음

- 소년은 모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과 함께 어린 시절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음. 모와 재회한 것은 좋지만, 향후 모와 함께 지내기보다 동거남과의 현재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함

○ 오빠 OOO은 'OO대학 OOO과'에 다니다 휴학하고, '09. 0.말 현역으로 군입대하여 현재 군복무 중임. 소년에 따르면, 활발한 성격이나 어린 시절부터 소년과의 대화가 많지 않았고 남매간에 상호 무관심한 편이었다 함

○ 조모 OOO는 서울 OO동에서 OO라는 OO을 운영하다, 최근 서울 OO구 시흥동으로 이전하였고, 소년의 고모 가족과 함께 생활함. 소년 및 소년의 모에 따르면, 완고하고 고지식하며 '독불장군'같은 면이 강하다 함

- 소년 부모의 이혼과 부의 자살 이후 소년 남매의 보호자 역할을 하였으나, 소년의 모에 따르면 소녀에게 따뜻하게 보살피는 면은 부족하였다 함. 현재, 소년은 고령인 조모를 안쓰러워하며 함께 생활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조모와 함께 지내고 있는 고모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조모의 주거지로 귀가하기를 꺼리고 있음

○ 고모 OOO는 남편과의 사이에 2남을 두었고, 소년 부의 자살 이후 소년 남매· 조모와 함께 생활해 왔음. 소년 및 소년의 모에 따르면, 조모와 마찬가지로 완고 하고 자기중심적인 면이 많은 사람으로, 소년과는 중학교 입학 후 관계가 악화 되었다 함. 소년은 고모에 대해 '말로만 걱정할 뿐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없다' 고 하며, 가족 중 가장 싫은 사람을 고모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감정이 표현함

2. 현 동거인

관계	성명	연령	학력	직업	비고
동거남	OOO	30세	고교2학년 중퇴	노동(전기설비)	'06. 0.경 동거 시작
동거남의 부	OOO	72세	불 상	무 직	
동거남의 모	OOO	65세	무 학	채소가게 운영	

○ 동거남 OOO은 1남4녀 중 막내로 서울에서 출생하였고 서울 OO고 2학년을 중퇴함. '06. 1.경 매형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중 소년을 만나 교제하다, '06. 4.경부터 동거해왔음(동거남은 당시 소년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고 동거 후에야 실제 나이를 알게 되었다 함). 현재, 소년과 결혼 의사를 가지고 있음

- 동거남은 경북 OO 등 주로 지방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번 일이 시작되면 한 두 달에서 세 달까지 계속하여 장기간 소년과 떨어져 지내곤 하였음. 소년은 동거남과 함께 생활하는 기간에는 문제행동을 일으키지 않지만, 동거남이 집을 비운 사이에 행동 문제를 일으키곤 하였음(동거남의 진술)
- 동거남의 수사 및 범죄경력조회 결과, 청소년기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특수 절도'등으로 보호처분 받았고, 19세 이후로도 '절도', '특가법(도주차량)' 등으로 수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 '08. 00. 00.에는 ' 절도,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점유 이탈물 횡령, 공기호부정사용'등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최근 출소한 것으로 보여짐
  - ※ 동거남은 청소년기의 비행 전력은 인정하였으나, 최근에 '업무로 지방에 다녀왔다'고 하는 등 범죄 및 복역 사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음

• 동거남의 부는 건강문제로 집안에서 소일하며, 모는 야채가게를 운영하고 있음. 동거남에 따르면, 동거남의 부모는 소년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동거남의 부재 시 동거남을 대신하여 소년의 행동이나 생활태도 등을 통제하는 식의 관심 이나 관여는 없다 함

3. 주거 상태

○ 소년의 거소는 '경기도 OO시 OO' 소재 동거남 부모 소유의 빌라〔넓이 00㎡ (00평)/방 3개〕로, 동거남·동거남의 부모 등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

•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조모의 거주지로 고모 가족이 함께 생활하였으나, 현재 조모와 고모 가족은 서울 OO구 OO동으로 이주하였음

• 모는 전북 OO에서 재혼한 남편과 생활함(아파트/15평/방 2개/자가)

4. 경제 여건

○ 소년은 무직상태로, 동거남 OOO의 수입으로 생활함

○ 동거남은 일당 8만원의 전기설비 일에 종사하였는데, 현재는 일감이 없어 수입도 없는 상황이며, 600만원 가량의 저축이 있고 부채는 없음. 동거남의 모가 OO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동거남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 아님(동거남의 진술)

5. 성장 과정

○ '91. 4. 서울 OO동에서 1남1녀 중 둘째로 출생, 당시 부모는 조모가 운영하는 OO의 관리 일을 하였는데 OO의 수입이 좋아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었음. 그러나 조모의 독불장군 식의 성격으로 인해 부와 조모의 사이가 불편하였고, '98년경(초교 1학년 때)에는 고부갈등 등으로 인한 부부갈등으로 부모가 이혼하였음

○ 이혼 후, 부·조모·오빠 등과 함께 생활하다 '99. 11.(초교 2학년 때) 부가 재혼하면서 계모와도 함께 지내던 중, '00. 1. 부가 재혼한 처와 다투고 음독자살하였음. 이후, 고모의 가족이 조모의 집으로 들어왔고, 소년 남매는 조모·고모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음

○ 초등학교 재학 중에는 소년은 고모와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중학교 입학 이후로는 고모와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였음. 특히, 중학교 2학년('00년) 때부터는 고모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집에 있기가 싫다는 생각이 커지면서, '00년 여름부터 가출하기 시작함

- 한편, 가출한 소년을 찾기 위해 고모가 학교에 찾아올 수 있다고 예상되자 소년은 학교에도 무단결석하였음. 이에, 2학년때 무단결석이 97일에 이르렀고, 결국 '00. 00. 중학교 2학년에서 유예됨

○ 가출 중 소년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들과 '조건 만남' 식의 성매매를 하여 생활비 등을 충당하던 중, 현금 절도 건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모 등 가족 에게 인계되었음. 그러나 귀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가출하였고, 또다시 '조건 만남'을 하면서 생활하였음

○ '06. 1.경에는 PC방에서 현재의 동거남을 만났고, '06. 4.경부터 동거남의 부모 집에서 동거하기 시작함. 그러나 동거 중에도 용돈이 필요하면 성매매를 하였고, 특히 동거남의 부재 시에는 또래들과 어울려 음주하고 늦게 귀가하는 등 불성실한 생활태도를 보이던 중, '09. 0. 본건에 이름

- 소년은 '09. 0. 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OO지방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현재 OO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이며, 동거남의 주거지에서 일정하게 하는 일 없이 지내고 있음

6. 정신 및 신체 상태

1. 신체 및 건강상태

신장	체중	혈액형	문신	건강상태	비고
165cm	65kg	A형	있음	양호	- 최초 음주 및 흡연 : 중2학년 - 흡연량 : 하루 한 갑 - 음주량 : 소주 한 병

○ '09. 1.경 우측 팔에 'OO' 문양, 좌측 어깨에 'OO' 문양, 허리 부분에 'OO' 문양, 가슴 아래에 OO 등을 문신함. 문신에 대한 타인의 시선을 의식 하기는 하나, 당장은 문신을 없앨 생각이 없음

○ 소년은 16세경부터 거의 매일 소주 1~2병 가량을 마셔 왔고, 약 한 달 전부터 음주하지 않고 있음. 음주 상태에서는 평소와 달리 쉽게 화가 나고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임(소년의 진술)

2. 정서 상태 및 성격 특성 (MMPI-A 결과표 별첨)

○ 현재, 울적한 기분과 함께 무엇을 하겠다는 의욕이나 목표의식이 저하된 상황으로, 주변의 일들에 대해 무신경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미래에 대해서도 별다른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는 모습이겠음. 자신에 대해 광범위하게 부적절감을 경험하겠고 적절한 수준의 자존감을 유지하지 못하는 양상임

○ 가정 내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다는 느낌이 많으며 전반적인 대인관계 에서도 친밀한 관계형성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 특히, 내면에 누적된 부정적 감정이 많아, 사소한 일에도 부정적인 감정이 자극되면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소지가 다분함

7. 학교생활 (생활기록부 별첨)

○ OO OO초등학교 입학, 졸업('98. 3. ~ '04. 2.)

• 출결상황 양호하며, 행동특성 상 '남을 이해하는 마음을 키워 급우 간에 원만히 지내야겠음(3학년)',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나 칭찬하고 배려해 주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함(5학년)', '옳고 그름을 분별 하여 행동하는 신중함을 길러야겠음(6학년)' 등의 평을 받음

○ OO OO여자중학교 입학, 2학년 유예('04. 0. ~ '05. 00. 00.)

• 학업성적은 하위권이며, 2학년에서의 무단결석 97일로 유예됨

• 행동특성 상 '다소 행동이 엉뚱하나 의리가 있음. 기초학력이 부진하므로 전반 적인 노력이 필요함(1학년)'이라는 평을 받음

8. 대인 관계

○ 소년은 현재 초·중학교 동창생 중에는 연락하는 사람이 없고, 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또래들 5~6명과 연락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생활행태가 불성실하고 소년과의 관계는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보여짐

• 소년은 동거남이 주거지에 함께 있을 경우에는 동거남 이외의 다른 또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함

9.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능력

○ 조모는 고령으로 소년을 지도·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고모의 경우 소년이 가지고 있는 고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매우 커, 실제로 고모의 지도·감독에 순응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임. 강제로 귀가시킬 경우, 재차 가출할 위험성이 있음

○ 모는 소년을 맡아서 보살필 의지가 있으나, 소년이 동거남과 함께 생활하기를 강력히 주장하여 소년을 강압적으로 OO로 이주시킬 방법이 없다는 입장임

• 고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조모나 고모의 주거지로 돌아가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여김. 따라서, 소년이 가출하지 않고 동거남의 집에서 동거남의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것이 그나마 '차선책'이라고 여기는 바, 동거남과의 관계를 묵인하고 있음

○ 동거남은 '소년이 무분별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지도하겠다'고 다짐함

✤ 미성년자인 소년이 성인 남성과 동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동거남의 범죄경력 등을 고려할 때 동거남이 보호자로서의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나, 동거남 이외에는 일정한 보호자가 마땅치 않은 상황임

10. 기타 조사에 참고할 사항

1. 진술태도

○ 소년은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로 조사에 임했으나, 본건에 대해서는 쌍방폭행임 에도 일방적으로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사건화되었다며 억울해 하였음. 전반적으로 나이에 비해 생각이 어리고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 피상적인 수준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짐

○ 동거남은 소년과 동행하여 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했고 소년에 대한 지도의지를 밝히면서 선처를 호소함. 그러나 자신의 범죄경력 등에 대해서는 밝

히지 않았음

○ 모는 그동안 소년을 보살피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소년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함

2. 향후 생활 계획

○ 소년은 현재처럼 동거남과 계속 함께 지내면서 여유가 되면 검정고시를 준비 하겠다고 하나, 동거남과의 현재 생활을 유지하겠다는것 외에는 뚜렷한 계획이 없어 보임

조사자 : OO보호관찰소 책 임 관 O O O (인)
조사관 : OO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O O O (인)

▶ 첨부서류
1.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등 각 1부
3. 범죄경력조회서 1부
4. 초등·중학교 생활기록부 각 1부
5. MMPI-A 결과표 및 문장완성검사 각 1부

조사자 의견

□ 보호소년 : ○ ○ ○

1. 소년에 대한 평가

○ 소년은 초교 1학년 때 부모가 이혼하고 2학년 때 부가 자살한 후, 조모 및 고모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음. 초등학교 재학 중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생활하였으나, 중학교 입학 이후 생활을 통제하는 고모와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출을 시작하였음

○ 특히, '조건만남' 식의 성매매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장기간의 가출 상태를 지속하였고, '06. 4.경부터는 현재의 동거남과 동거하고 있음. 이후로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 건을 벌였고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행동문제를 일으켰음. 본건은 음주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분노 감정을 표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짐

2. 처분 의견

○ 소년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고 지도할만한 가족 내 보호자가 부재하며, 범죄경력이 다수인 동거남과 동거생활을 하는 등 보호환경이 불안정한 점, 부정적 감정에 대한 통제력이 미약하여 충동적으로 문제행동에 연루될 소지가 있는 점, 뚜렷한 목표나 생활의 규율 없이 무기력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위법 행동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및 본건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미흡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소년에게는 종국처분 결정전에 일정기간 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등을 통해 법에 대한 경각심과 엄격하고 절제된 생활을 경험하도록 한 뒤,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통해 재비행을 예방하고, 개인 상담 등을 통해 정서적 문제에 대한 개입이 이루진다면 성행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조사자 : ○○보호관찰소 책 임 관 ○ ○ ○(인)
조사관 :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 ○ ○(인)

〈분류심사서 사례〉

분류심사서

○ 성 명 :	전 △ △ (남)
○ 주민등록번호 :	950000-1000000 (만15세)
○ 사 건 번 호 :	2011푸△△△
○ 비 행 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011. △. △△.

분류심사관

1. 기본사항

성 명	전 △ △	주민등록번호	950000-1000000
직 업	학생	학 력	고1재
의 뢰 일	2011. 4. 0.	의뢰기관	△△지법
주 소	△△ △△시 △△면 △△리 000 △△아파트 000동 0000호		
거 소	위와 같음		
신체특징	정신지체장애 2급(2005년 판정)		

보호자	성명(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또는 거소)
	전△△(부)	620000-1	000-0000-0000	소년 주소와 같음
	박△△(모)	610000-2	000-0000-0000	위와 같음

2. 환경조사

가. 가 정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나이	학 력	직 업	동거여부	비 고
부	전△△	48	고졸	노동	동거	
모	박△△	49	초졸	전업주부	동거	
누나	전△△	20	대2재	대학생	별거	자취생활

【생활환경】

○ △△ △△에서 남매의 둘째로 태어나 부모의 보살핌 속에 성장함

○ 현재 4인 가족이 부의 예전 직장이었던 '△△△ △△' 사원 아파트(66㎡ -20평, 방 2개)에서 부의 노동 수입(월 100만 원 정도)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아파트는 금년 여름까지 비워줘야 함

【특이사항】

○ 소년은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3세경부터 언어 능력 향상 훈련, 2010.

8.부터는 주의력 산만 및 미약한 충동조절력 등을 이유로 꾸준히 정신과 진료(충동조절 및 주의력 집중력 향상제 투약)를 받아 왔음(△△정신과의원 의사 강△△, 의사면허번호 제00000호)

○ 진단명은 '①심각한 행동장애가 있어 주의나 치료를 요하는 증증도 정신발육 지연, ②활동 및 주의력 장애'로써(※진단서 붙임)

○ 판단력과 충동조절이 어려우므로 부정 장기간 동안 가족의 보호 아래 반복 교육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음

【가족】

○ 부는 '△△△△△' 서비스 기사(연봉 4천만 원)로 일하던 중 2009년 구조 조정으로 실직한 이후 노동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음

- 실직하기 전까지 소년의 사회성을 길러줄 목적으로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임이나 직장에 자주 데리고 다니는 등 애정과 정성을 갖고 훈육하였음
- 주의가 매우 산만하고 분별력이 부족하여 밖에서 문제행동을 많이 하였음에도 질책이나 체벌 등 없이 반복하여 타이르며 교육하는 등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 모는 소년의 장애 때문에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소년 보호에만 전념하였음

- 소년 4세경부터 항상 데리고 다니며 언어치료실, 정신과 등에서 심리치료 등을 계속 받게 하였고,
- 밖에서 또래나 후배들과 어울리면 쉽게 휩쓸리며 문제행동을 많이 하였음에도 질책 대신 나쁜 행동을 배우지 못하도록 수시로 옳고 그름에 대한 규범교육과 분별력 훈련을 반복하여 시키는 등 교육 및 훈육지도를 포기하지 않았음

○ 소년은 부모의 헌신적 보호를 받은 결과,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이 깊고, 부모를 의지의 대상으로 여기는 등 가정에서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음

【보호자 상담】

○ 주로 모가 거의 매일 면회하는 등 관심이 깊으며, 부모와 직접 상담함(2011.0.00, 2011.0.00)

○ 진단은 정신지체장애지만, 주의가 매우 산만하고, 집중력이 부족하며, 충동성이 강해 예상 밖의 행동을 자주 하는 것이 불안해 늘 곁에서 지켜보며 보호하였다 함

○ 동네 또래나 후배들이 소년을 이용하여 나쁜 짓을 한 후 소년에게 뒤집어씌우는 경우가 많았고, “분별력이 부족해서 기인된 행동 때문에 당한 수모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이라며 담담하게 탄식함

○ 상담 결과, 소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으나, 최소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도하며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함

나. 학교 및 사회

【학교생활】

○ △△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2011년 △△고등학교에 진학, 1학년 재학 중임(이번 비행으로 2011. 0. 00.부 교도소에 수감 및 위탁으로 한 번도 등교하지 못했으나, 학적 유지 상태임)

○ 초등학교 6년 간 특수반으로서, 모가 등·하교를 시켜주었긴 하나 6년 간 개근하는 등 학교생활에 흥미가 있었음

- 소년과의 면담 결과, 몇 학년인지 기억하지는 못하나, 친구의 성기를 만져 질책 받은 적이 있다 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이 초등학교 때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임

○ 중학교 때 특수반에서 수업 받으며 3년 개근함(모가 항상 등교시켰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하교시간에도 모가 동행하였음)

- 2학년 때 전국장애인체육대회(e스포츠 혼성 카트라이더) 3위 입상하였고, 행동평가 의견은 ‘자기표현을 분명히 함(1학년), 밝고 명랑, 책임감

이 강하고 예의바름(2학년), 즐겁게 생활하며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함(3학년)'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2학년 때 화장실에서 친구의 성기를 만지는 사건이 발생, 학교의 권고로 '△△ 장애인 성폭력센터'에서 위탁 전까지 성교육 등을 받음. 소년과 부모는 한 차례로 답변하고 있지만, 학교의 권고를 받은 점과 소년과의 상담 결과 등으로 볼 때 여러 차례 반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판단됨

○ 퇴원하면 고등학교에 계속 다닐 생각이며, 장차 족구 선수를 희망하고 있음(부가 족구 동호회에 자주 데리고 다녔고, 함께 족구를 한 적도 있어 관심이 많다 함)

【거주지환경 및 교우관계】

○ 사원 아파트 4개 동과 농구장 등 직원 복지용 운동시설 외에는 다른 시설물이 거의 없는 지역임

○ 소년은 동네 또래나 후배들과 함께 놀이터 등에서 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방과 후 집에서 약 4시간 동안 '마구마구' 컴퓨터 게임이나 TV시청 등을 하며 지냈고, 주말에는 부모의 관리 아래 학교 주변 PC방에서 홀로 게임을 하는 등 교제 중인 친구가 없음

【일탈행동】

○ 중학교 1학년 때 부모가 컴퓨터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통장에서 20만 원을 인출하여 가출, 약 1주일 간 모텔에서 피자 등을 시켜 먹어가며 지내다 가출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인도되어 귀가한 적이 있음

○ 음주나 흡연, 성 경험 등은 없다 답변함

【성적 일탈행동】

○ 중학교 1학년 때 집에서 부모 몰래 인터넷 사이트인 '당나귀'에서 '음란물'을 다운받아 본 후로 성적 호기심과 성욕이 증가, 꿈속에서도 성교

장면이 자꾸 나타날 정도였다 함

○ 당시 처음 본 내용은 '구강성교와 항문성교' 장면이었으며, 부모에게 발각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 시청하였음

○ 이후 소년은 성기를 만지면 발기되면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았고,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친구의 성기를 만져 발기시키려 한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성교육센터에서 성교육을 받을 때 '자위행위'를 배워 이후 자위를 하며 성욕을 해소하였다 함

○ 소년과의 상담 결과,

- 음란물 경험 및 자위행위를 알게 된 후 여성 성기를 만지거나 직접 성교 행위를 하고 싶은 충동이 급격하게 증가함
- 성인 여성은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관심을 갖지 않았으나, 어린 여자 아이들은 그럴 필요가 없고, 약하므로 강제로 할 수 있다고 생각, 어린 여자 아이들에게 성적 호기심과 충동이 집중됨

3. 행동관찰

【생활관찰】

○ 사회의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음. 행동이 매우 산만함(2011.0.00)

○ 밝고 명랑하나, 언어성이 떨어지고, 매우 산만하여 가만히 있지 못함. 동료들을 놀리거나 욕설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으면서도 매번 부인하는 경향이 있음(2011.0.00)

【면접관찰】

○ 말투가 어눌하고, 상담 태도가 다소 산만하긴 하였으나, 약 2시간에 걸친 상담 동안 집중력과 긴장감을 유지하였고,

○ 이번 사건 내용은 물론, 이전에 경험한 많은 일들을 구체적 정황을 들어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분별력과 지남력이 미약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음

○ 상황 판단력을 파악하기 위해 "산만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소년원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자 두려운 기색을 보이며 거듭 "잘 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에는 실제로 안정된 생활을 하였음. 따라서 잘잘못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정해 반복 지도한다면 산만한 행동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임

○ 이번 비행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모 지도에 따라 바르게 생활하겠다 다짐하며 용서를 구하는 등 주변의 합리적 지도가 있다면 원만한 생활이 기대됨

4. 심리적 특성

【지능 및 적성】

○ 지능지수는 77임. 지각속도력과 논리적 사고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진학적성은 '법정계열'과 '인문계열'임

○ 태도적성 검사 결과, 다양한 영역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바, 자기 이해가 부족하거나 진로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해석됨. 검사 결과는 '기술적성'과 '운동적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 직업흥미검사 결과는 현실형(R유형)으로써, 기계나 기구, 사물을 다루는 활동을 선호함

【성격특성】

○ 주어진 일을 성실한 자세로 완수하려는 책임감이 있고, 대인관계에서도 갈등 대신 융통성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려 함

○ 자신의 연령에 맞는 사회규범이나 규칙을 어기거나 일탈행동을 반복할 수 있는 성향이고, 소년의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지는바, 주변의 부정적 요인들의 자극을 받을 경우 도덕적·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겠음

【심리검사】

○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할 경우 감정 대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평소 감

정 관리가 미숙하며, 자기절제력도 부족해 보임

○ 하고 싶은 일에는 흥미를 보이나, 포부 수준이 낮고, 끈기가 부족하여 중도에 포기하기 쉬운 성향인바, 작은 것들로부터 성취감을 반복 경험하게 하는 등 동기 부여가 필요하겠음

5. 비행분석

가. 비행력

【비행력조회】

○ 조회 결과는 없으나, 이번 비행 전인 2010. 11~12월 경 "△△버스터미널 내 화장실로 여자 아이를 데려가 강제로 입맞춤을 하자 싫다며 도망 친 일이 있었다"고 답변함

나. 이번 비행

【비행개요】

○ 2011. 00. 00. 16:52경 △△ 소재 아파트 상가 건물 화장실로 피해자(여, 10세)를 유인하여 "말을 듣지 않으면 목 졸라 죽이겠다"며 위협한 후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 입 속에 혀를 집어넣고, 옷을 벗기고 질과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대신 성기를 빨게 하던 중 경비원의 순찰 소리에 놀라 도망침

【비행동기】

○ 평소 여자 아이에 대한 비정상적인 성욕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며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실제 강간하려 하였다 답변함

○ 여자 아이만 보면 성기를 만지거나 특히 항문에 삽입하고 싶은 욕구가 강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뒤에서 항문에 삽입하려 하였다 함

○ 피해자가 소리치며 반항할 경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목을 졸라 죽이려 했다"고 답변하고 있는 등 매우 우려되는 비행 동기임

【공범관계 및 피해회복】

○ 단독 비행이며, 합의를 위해 어렵게 피해자 연락처를 알아 내 전화했으나, 다시는 악몽을 떠올리기 싫다며 연락하지 말라 했다 함(모의 답변)

다. 비행성 진단

【비행요인 분석】

○ 선천적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소년이 '음란물'을 경험하게 되자 옳고 그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나 경험의 재해석 없이 그대로 믿고 모방하려 하는 등 미약한 사리분별력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임

○ 음란물을 통해 잘못된 성의식을 이미 갖게 된 소년이 '장애인 성폭력센터'에서 성교육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만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성적 가치관이 더욱 왜곡되는 결과로 이어짐

【비행성 정도】

○ 일반적인 성 비행 청소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성교육과 법적 자극 등을 통한 개선이 가능한 수준의 '초기 단계' 비행으로 여겨지나,

○ 소년은 사리분별력과 판단력 등이 모두 미약하여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맹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즉, 잘못된 경험을 아무 의심 없는 신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바, 비행성은 '심화 단계'로 판단됨

【재비행 예측】

○ 부모의 소년에 대한 보호의지가 매우 강하고, 늘 곁에서 보살피며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고 있는 점은 보호 요인이나,

○ 성관계 음란물과 자위 등을 통해 쾌감이라는 '보상'을 이미 경험하였고, '반항하면 죽여 버릴 생각이었다'는 답변처럼 매우 왜곡된 신념이 소년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이며,

○ 위탁 중에도 동료들과 신체 접촉을 반복하는 등 교육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인바, 재비행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6. 지도방향

○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써, 성의식의 왜곡이 심하고, 재비행 위험성도 높으므로 소년의료보호시설 처분이 적절할 수 있겠으나,

○ 사리분별력이 미약하여 교육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고, 위탁 중 동료들과 반복하여 신체접촉을 시도,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등 집단생활에 원만히 적응하기 어려우며,

○ 특히, 소년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깊은 부모의 보호 및 인성교육 의지가 매우 강한바, 부모 곁에서 생활하며 보호받게 하는 것이 재비행 예방 및 행동발달을 위한 최선의 처분이라 판단됨

○ 소년의 미약한 분별력과 산만한 행동 경향으로 볼 때 보호관찰 등 준법교육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바,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음

○ 가정에서의 보호 방법 및 의지가 매우 긍정적이므로 특별한 주문은 필요하지 않으나, 재비행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늘 가까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 상담 결과, 정해진 기준을 어길 시 '처벌'이 주어질 때 이를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바, 가정에서도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정한 후 '보상과 처벌'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교육한다면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음

○ 아동에 대한 성적 호기심 내지 집착 증세는 신경정신과적인 분류기준으로 '소아성기호증'에 해당,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로 인식되며, 치료감호 대상 범죄임

○ 따라서, 가정에서는 신경정신과에서 '소아성기호증'에 대한 정밀 진단을 받아본 후 이에 따른 향후 치료 계획 등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음

7. 처분의견

○ 소년을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음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의견)

분류심사관 (인)

분석 및 검토 자료

1. 외부기관 조회 및 발급 자료
   주민등록등본, 비행력조회, 범죄사실, 학교생활기록부
2. 소년 및 보호자 작성 자료
   가정환경조사서(보호자), 지나온 나의생활 및 회상록(자기기록)
3. 심리검사
   지능 및 적성검사, 특수인성검사, 청소년 직업흥미검사, B.G.T, MMPI-A
4. 자체 생산 자료
   신상 및 건강조사서, 행동관찰표, 분류심사진단지, 면회기록

〈상담조사서 사례〉

상 담 조 사 서

ㅇ 성 명 :	김 △ △ (남)
ㅇ 주민등록번호 :	940000-100000 (만17세)
ㅇ 사 건 번 호 :	2010푸0000
ㅇ 비 행 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1. △. △△.

상담조사관

1. 기본사항

성 명	김 △ △	주민등록번호	940000-1000000
직 업	학생	학 력	고2재(△△고)
의 뢰 일	2011. 00. 00.	의뢰기관	△△지방법원
주 소	△△시 △△구 △△동 00-0 △△아파트 000동 000호		
거 소	위와같음		
신체특징	눈이 약간 사시임(거의 표시가 나지 않음)		

보호자	성명(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또는 거 소)
	김△△(부)	610000-000000	000-0000-0000	위 와 같 음
	남△△(모)	650000-000000	없음	위 와 같 음

2. 환경조사

가. 가 정

【가족사항】

관 계	이 름	나이	학 력	직 업	동거여부	비 고
부	김△△	49	고졸	용접공	동거	
모	남△△	45	줄졸	가사	동거	
누나	김△△	22	대졸	구직중	동거	
누나	김△△	20	대2재	학생	동거	

【생활환경】

○ △△에서 1남 2녀 중 막내로 출생, 줄곧 부모슬하에서 성장하였음

○ 자가 아파트(79㎡, 방3칸)에서 부의 수입(월 250만원)으로 5인 가족이 생활함

【부모, 기타가족】

○ 부는 건축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함. 부부사이가 원만하고, 소년 지도

시 대화로 타이르는 방식을 사용하며, 소년과 장래에 관한 대화를 자주 나눔. 소년은 부의 지도에 잘 순응함

○ 모는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고, 소년의 일상생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 소년이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주말에 소년이 집에 오면 소년이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마련하고, 식탁에서 학교생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등 모자관계가 좋음

○ 큰 누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중이며, 작은 누나는 △△도립대학에 다니고 있음. 누나들과는 사이가 좋음

【보호자 상담】

○ 참석자 : 김△△(부)

○ 부는 상담 시 소년이 그동안 말썽을 피운 적이 없었고, 부모의 말도 잘 순종하던 아이라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매우 당황스러웠다며 부모의 책임으로 알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나. 학교 및 사회

【학교생활】

○ △△ △△초등학교, △△중학교를 각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2학년에 재학 중임

○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부터 현재까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음

○ 고등학교 1학년 학업성적은 석차등급 6~7등급 수준으로 하위권이었고, 출결상황은 결석 없이 양호하였음

○ 고등학교 1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학생으로 차분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 기록됨

○ 고등학교 1학년 때 '효행상', '개근상' 등 총 4회의 교내상을 수상하였음

○ 소년은 조경에 관심이 많아 조경관련 대학에 진학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장래희망은 '조경설계업자'가 되는 것임

【사회생활】

○ 평소 방과 후 수업을 받고, 동아리활동(조경)을 한 후 기숙사로 돌아가 20:00에 취침, 06:30에 기상하고 있음. 평소에는 친구들과 놀 시간이 거의 없고, 주말에 청주에서 같은 동네 친구 4~5명과 당구장에 가거나 시내를 돌아다니며 여가시간을 보냄

○ 술, 담배, 가출, 성경험, 문신 등의 일탈행동은 없었음

※ 중학교 때 눈 치료(사시로 인해 눈을 자주 깜빡거려 치료가 필요함)를 자주 받았음

3. 교육태도

【상담 및 행동관찰】

○ 출결상황 : 지각, 조퇴, 결석은 없었음

○ 1일차 : 모범적인 태도로 수업에 참여하였음

○ 2일차 : 성격이 진중하고,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며, 수업태도가 양호하였음

○ 3일차 : 자아성장프로그램 시간에 학교에 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하였고, 그 이유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런 것 같다.”고 하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음

○ 4일차 : 학교에서 실시하는 영어듣기시험평가를 마치고 출석하였고, 오후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등 교육태도가 좋았음

○ 조사관 면담 시 눈이 약간 사시가 있었고, 용모가 단정하고 안정된 모습이었음. 예의바른 태도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등 전체적으로 면담태도가 양호하였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갖고 있었음

4. 심리적 특성

【지능 및 적성】

○ 지능 : 89 (보통)

○ 적성 : 진학계열 - 법정계열, 공학계열
태도적성 - 음악적성, 미술적성

○ 직업 : 경찰관, 교도관, 보험사무원, 우편물분류원, 대중가요가수, 사진작가, 미용사, 제품디자이너 등

【성격】

○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에 도달하려는 성취동기나 의지력이 강하고, 사소한 일도 열심히 노력하며, 가족에 대해 호의적이고, 타인과 의견차가 있을 때 적절히 설득할 줄 아는 융통성이 있음

○ 다만, 일상생활에서 부주의하고 덤벙거려 물건을 챙기지 못하는 등의 사소한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음

5. 비행분석

가. 비행력

【범죄 및 수사경력】

○ 해당사항 없음

나. 이번 비행

【비행개요】

○ 소년은 공범 홍△△, 최△△과 함께 2010.12.04. 12:00경 △△읍 △△리 소재 △△△△고등학교 뒷산에서 피해자가 학교에서 mp3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임

【비행동기】

○ 피해자가 자꾸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서 때리게 된 것임(소년의 진술)

【공범관계】

○ '최△△', '김△△', '홍△△'은 같은 고등학교 친구들임. 모두 소년과 함께 상담조사를 받음

【피해회복】

○ 피해자 부모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만날 의사가 없다고 하여 합의하지 못함(부의 진술)

다. 비행성 진단

【비행요인 분석】

○ 가정이나 학교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이번 비행 외에는 일탈행동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이번 비행은 평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터에 피해자가 거짓말을 반복하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던 공범들과 마음이 맞아 함께 때리게 된 것으로 보임

【재비행 예측】

○ 피해회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있으나 보호환경이 양호하고, 부모-자녀관계가 원만한 점, 부모의 보호의지가 강한 점, 초발 비행이고, 이번 비행 외에는 일탈행동이 없었던 점, 재학생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재비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6. 지도방향

○ 보호자는 평일에는 소년이 학교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수시로 전화연락을 하거나 방문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주말에는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자주 마련하여 가족 간에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겠음

○ 또한, 보호자는 소년이 조경에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꿈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중도에 힘들어서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와 지지가 필요하겠음

○ 보호관찰소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을 길러 것이 좋겠음

7. 처분의견

○ 소년을 보호자에게 위탁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음(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상담조사관 (인)

분석 및 검토 자료

1. 외부기관 조회 및 발급 자료
   주민등록등본, 비행력조회, 범죄사실, 학교생활기록부
2. 소년 및 보호자 작성 자료
   가정환경조사서(보호자), 지나온 나의생활 및 회상록(자기기록)
3. 심리검사
   특수지능적성검사, 특수인성검사
4. 자체생산 자료
   신상 및 건강조사서, 행동관찰표